



2025. 4.

국회에산정책처 | 대한민국 조세

2025 대한민국 조세

Tax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 대한민국 조세

Tax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2025 대한민국 조세

총괄 | 상지원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작성 | 신흥철, 강민지, 김효경,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
이정훈, 박성은, 장설희, 최천규 추계세제분석관
박정환, 이수인, 신미정, 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지원 | 이하영 행정실무원
김서현 자료분석연구원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5. 3. 2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조세는 국가재정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기능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경기 안정화 등의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위험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세의 재원 확보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무역 및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한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2025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조세정책은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추진·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세법개정 및 조세정책 동향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2020년 이후 매년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5 대한민국 조세」의 구성을 보면, 제1부 조세의 이해에서는 조세의 개념 및 기능, 성립과정 등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2부 국세 및 제3부 지방세에서는 각 세목별 과세체계뿐만 아니라 각 세목별 주요 현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연혁과 2025년 시행 개정세법 주요내용 및 국제동향을 담았습니다. 제4부 조세지출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세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과정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일러두기

본 보고서의 통계는 발행일 기준 최신 통계 자료를 사용함. 이에 연도별 통계의 경우 2024년도 통계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인용하였으나 ① 국제비교를 위한 OECD 통계, ② 국세통계연보에 따른 신고 기준 통계, ③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른 지방세 관련 통계의 경우에는 2023년도 통계 자료가 최신 자료로서 이를 인용함.



차례

제1부 조세의 이해

제1장 개요 2

제1절 조세의 개념 2

제2절 조세의 기능 3

1. 재원조달 기능 3
2. 경제·사회정책적 기능 3

제3절 조세의 분류 6

제2장 조세의 규범체계 9

제1절 우리나라 조세의 법원(法源) 및 법률체계 9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11

1. 조세법률주의 11
2. 조세평등(公平)주의 13
3. 실질과세의 원칙 14

제3장 과세요건 15

제1절 개요 15

제2절 납세의무자 15

제3절 과세대상 18

제4절 과세표준 20

제5절 세율 21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23

제1절 개요 23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24

1. 의의 24
2. 성립시기 24

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27

1. 의의 27
2. 확정절차 27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30

1. 의의 30
2. 일반적 소멸: 납부 및 총당 30
3. 과세권자의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 31

제5장 납세자 권리구제 33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 33

1.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 33
2.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 35

제2절 사후적 권리구제: 조세불복 37

1. 불복청구(행정심판) 37
2. 조세소송 45

제6장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48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48

제2절 조세수입 현황 55

제3절 예산과정과 조세 61

1. 국세수입 예산과정 61
2. 국세수입의 예산과 결산 현황 66
3. 국세수입의 배분 68

제4절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71

1. 조세부담률 71
2. 국민부담률 72

제2부 국세

제1장 소득세 76

제1절 개요 76

1. 개념 및 의의 76
2. 기능 및 특징 77
3. 최근 현황 84

제2절 주요 개정연혁 93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93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조정 94
3.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및 과세요건 등 조정 100
4.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폐지 102
5.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103

제3절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 109

1. 과세체계 109
2. 납세의무자 111
3. 과세대상 소득 111
4. 종합소득과세표준 116
5. 세율 121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125
7. 최저한세 134
8. 결정세액 135

제4절 분류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 137

1. 퇴직소득세 137
2. 양도소득세 140

제5절 신고와 납부 148

1. 종합소득 세액의 신고와 납부 148
2. 분류소득 세액의 신고와 납부 152

제6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 154

제7절 국제동향 161

1. 소득세 세부담 및 세율 동향 161
2. 결혼·출산·양육 관련 소득세 세제지원 현황 .. 171
3. 양도소득세제 운영 현황 국제비교 176

제2장 법인세 181

제1절 개요 181

1. 개념 및 의의 181
2. 기능 및 특징 182
3. 최근 현황 189

제2절 주요 개정연혁 193

1. 과세표준 구간 확대 및 세율 조정 193
2.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194
3.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197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200

1. 과세체계 200
2. 납세의무자 202
3. 과세대상 204
4. 과세표준 220
5. 세율 225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225
7. 최저한세 228
8. 부담세액 230

제4절 신고와 납부 231

1. 신고와 납부 231
2. 납세지 233

제5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 234

제6절 국제동향 241

1. 법인세율 동향 241
2. R&D 투자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43
3.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대응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 244

차례

제3장 부가가치세 247

제1절 개요 247

1. 개념 및 의의 247
2. 기능 및 특징 248
3. 최근 현황 251

제2절 주요 개정연혁 255

1.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 .. 255
2.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255
3.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확대 256
4.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257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259

1. 과세체계 259
2. 납세의무자 260
3. 과세대상 261
4. 과세표준 266
5. 세율 266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268
7. 납부세액 272

제4절 신고와 납부 273

1.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273
2. 신고와 납부 274

제5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276

1. 간이과세 276
2.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특례 280
3.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 282

제6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 283

제7절 국제동향 283

1. 부가가치세 부담 추이 283
2. 부가가치세율 동향 285

제4장 개별소비세 288

제1절 개요 288

1. 개념 및 의의 288
2. 기능 및 특징 288
3. 최근 현황 289

제2절 주요 개정연혁 291

1. 과세대상 및 세율 조정 291
2. 유가 변동에 따른 유류 등 탄력세율 조정 .. 291
3. 자동차에 대한 세율 조정 292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 292
5.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293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296

1. 납세의무자 296
2. 과세대상 296
3. 과세표준 297
4. 세율 297
5. 비과세 및 면세 등 300
6. 세액의 공제 및 환급 302
7. 납부세액 303

제4절 신고와 납부 303

제5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 304

제6절 국제동향 305

1. 담배 가격 및 제세부담금 비교 305
2. 유류 등의 세금 비율 및 과세방식 비교 306
3.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방식 비교 .. 310

제5장 교통·에너지·환경세 311

제1절 개요 311

1. 개념 및 의의 311
2. 기능 및 특징 311
3. 최근 현황 312

제2절 주요 개정연혁 314

- 1. 1994년 도입 후 8차례 일몰 연장 314
- 2.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탄력세율 조정 314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318

- 1. 과세대상·세율·납세의무자 318
- 2. 비과세 및 면세 318
- 3. 신고현황 320

제4절 신고와 납부 321

제5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321

제6절 국제동향 322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 327

제1절 개요 327

- 1. 개념 및 의의 327
- 2. 기능 및 특징 328
- 3. 최근 현황 336

제2절 주요 개정연혁 340

- 1. 상속세 340
- 2. 증여세 343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346

- 1. 상속세 346
- 2. 증여세 356

제4절 신고와 납부 365

- 1. 상속세 365
- 2. 증여세 366

제5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367

제6절 국제동향 368

제7장 종합부동산세 372

제1절 개요 372

- 1. 개념 및 의의 372
- 2. 기능 및 특징 372
- 3. 최근 현황 375

제2절 주요 개정연혁 378

-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378
-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379
-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 381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382

- 1. 과세체계 382
- 2. 납세의무자 383
- 3. 과세대상 383
- 4. 과세표준 385
- 5. 세율 386
-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388
- 7. 결정세액 391

제4절 신고와 납부 392

제5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393

제8장 기타 국세 394

제1절 증권거래세 394

- 1. 개요 394
- 2. 주요 개정연혁 397
- 3.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398

제2절 인지세 402

- 1. 개요 402
-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03

제3절 주세 407

- 1. 개요 407
-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08
- 3.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412
- 4. 국제동향 412

차례

제4절 교육세 414

1. 개요 414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15

제5절 농어촌특별세 418

1. 개요 418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19

제9장 관세 422

제1절 개요 422

1. 개념 및 의의 422
2. 최근 현황 423

제2절 주요 개정연혁 424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26

1. 과세체계 426
2. 납세의무자 426
3. 과세대상 426
4. 과세표준 427
5. 세율 429
6. 비과세 및 면세 435
7. 결정세액 436

제4절 신고와 납부 437

제5절 보세 및 통관제도 438

1. 보세제도 438
2. 통관제도 439

제6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440

제7절 국제동향 441

1. 총조세 대비 관세 비중 441
2.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현황 442
3.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입 환경 변화 443

제10장 국제조세 445

제1절 개요 445

1. 개념 및 의의 445
2. 기능 및 특징 446
3. 국제조세 관련 법률체계 446

제2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448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구조 448
2.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449
3.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450

제3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451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구조 451
2.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방법 451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454

제4절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455

1. 개요 455
2. 이전가격과세제도 455
3. 과소자본과세제도 457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458
5.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458
6. 글로벌 최저한세 459

제5절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462

1.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462
2. 개인의 이중과세 조정 463

제6절 국가 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465

1. 국가 간 조세협력 465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466

제7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467

제8절 국제동향 469

1. OECD의 BEPS 프로젝트 469
2. 디지털세제의 도입 471

제3부 지방세

제1장 취득세 478

제1절 개요 478

1. 개념 및 의의 478
2. 최근 현황 479

제2절 주요 개정연혁 482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84

1. 과세요건 484
2. 세액계산 490

제4절 신고와 납부 492

제5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493

제6절 국제동향 495

제2장 재산세 498

제1절 개요 498

1. 개념 및 의의 498
2. 기능 및 특징 498
3. 최근 현황 499

제2절 주요 개정연혁 502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04

1. 과세체계 504
2. 납세의무자 505
3. 과세대상 505
4. 과세표준 507
5. 세율 508
6. 도시지역분 510
7.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510

제4절 부과와 징수 511

제5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513

제6절 국제동향 513

제3장 지방소득세 516

제1절 개요 516

제2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17

1. 과세요건 517
2. 세액계산 519

제3절 신고와 납부 522

제4장 지방소비세 523

제1절 개요 523

제2절 과세요건 524

제3절 지방소비세의 납입 525

1. 납입 절차 525
2.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526

제5장 기타 지방세 528

제1절 자동차세 528

1. 개요 528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30
3. 신고와 납부 533
4. 국제동향 535

제2절 담배소비세 536

1. 개요 536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39
3. 신고와 납부 542
4.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543

차례

제3절 등록면허세	545
1. 개요	545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47
3. 신고와 납부	552
제4절 레저세	553
1. 개요	553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55
3. 신고와 납부	556
제5절 지역자원시설세	557
1. 개요	557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59
3. 신고와 납부	561
제6절 지방교육세	562
1. 개요	562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64
3. 신고와 납부	565
제7절 주민세	566
1. 개요	566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68
3. 신고와 납부	569

제4부 조세지출

제1장 조세지출의 이해 572

제1절 개념 및 의의 572

제2절 조세지출의 유형 573

제2장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576

제1절 국세 감면현황 576

1. 국세 감면액 규모 576
2. 최근 10년 국세 감면 추이 577
3. 유형별 국세 감면현황 578

제2절 지방세 감면현황 588

1. 지방세 감면액 규모 및 추이 588
2. 유형별 지방세 감면현황 589

제3절 2025년 일몰도래 조세특례 현황 ... 592

1. 2025년 국세 조세지출 일몰도래 항목 592
2. 2025년 지방세 조세지출 일몰도래 항목 ... 595

제3장 조세지출 관리 600

제1절 의의 600

제2절 조세지출 관리제도의 연혁 601

제3절 현행 조세지출 관리제도 603

1. 조세지출예산제도 603
2.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605
3. 국세감면을 및 지방세감면을 한도제 611
4. 국회의 조세지출 관리 614

글상자 차례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32	30. 친환경자동차 관련 세제 현황	326
2.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주요 개정연혁	50	31. 상속세제의 과세방식: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비교	330
3. OECD 주요국의 국제·지방세 비중	57	32.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개편안	331
4. 총 조세수입 대비 세원별 비중	60	33. 가업상속공제제도	352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제도	64	34. 상속세율 개정연혁	353
6.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국제수입 경정 현황 ..	67	35.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359
7. 총수입 대비 국제수입의 비중 변화	68	36. 부동산교부세	373
8. 소득금액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1인당 평균 소득 및 결정세액	83	3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384
9. 가상자산소득 과세체계	103	38. 부동산 공시가격	386
10.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12	39. 관세평가	428
11. 주택임대소득 과세	124	40. 관세율의 적용순위	429
12. 주권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141	41. 할당관세	432
13.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156	42. 간이세율	433
14.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 및 물가연동제 도입 등 관련 국회 입법동향	160	43. 실효관세율	434
1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206	44. 조세조약 남용사례	459
16.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의 주요 개정 연혁 ..	207	45. 시가표준액	486
17.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210	46.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 비교	514
18. 기부금 관련 주요 개정 연혁	215	47.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518
19.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개정 연혁	217	48.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신고와 납부	522
20.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관련 주요 개정 연혁 ..	221	49. 담배소비세 도입 및 개정연혁	537
2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23	50.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현황	540
22.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제도	223	51. 합성니코틴 등 신종원료 기반 담배에 대한 규제 및 과세 논의	544
2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유형별 세액 흐름 차이 ..	265	52. 12대 분야별 조세지출 분류	580
24.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구조 및 현황	267	53.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581
25. 미국의 판매세(Sales Tax)	287	54. 「국가재정법」 중 조세지출 관련 주요 내용 ..	602
26. 개별소비세율 변동내역	294	55. 「국회법」 제79조의3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615	
27.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제세부담금 현황	309		
28. 휘발유 및 경유의 제세부담금과 소비자가격 구성	316		
29. 탄소가격제 관련 국제동향	323		

Tax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제1부 조세의 이해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1장

개요

제1절 조세의 개념

조세(租稅)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의 충족 또는 경제·사회적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과세권에 기초하여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제주체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급부(給付)를 의미한다. 조세의 정의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명확한 실정법상 정의는 없으나,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제59조)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조세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 “조세란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공법상의 공동체가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급부의무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로 정의하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¹⁾로 정의한 바 있다.

조세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의 부과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에 기반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둘째,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이거나 경제·사회적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성을 가진다.

셋째, 조세의 부과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로 정한 조세부과에 대한 요건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넷째, 조세는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부과·징수하는 급부로서 비대가성(非代價性) 또는 비보상성(非補償性)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수수료, 의무이행 확보 및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1) 헌법재판소 2001.4.26. 선고 99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과징금 등과는 구별된다.

다섯째, 조세는 강제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급부로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여섯째, 조세는 급부(給付)로서 납세의무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납세자)의 행위이다. 조세의 급부는 금전급부(金錢給付)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물급부를 포함한다.

제2절 조세의 기능

1. 재원조달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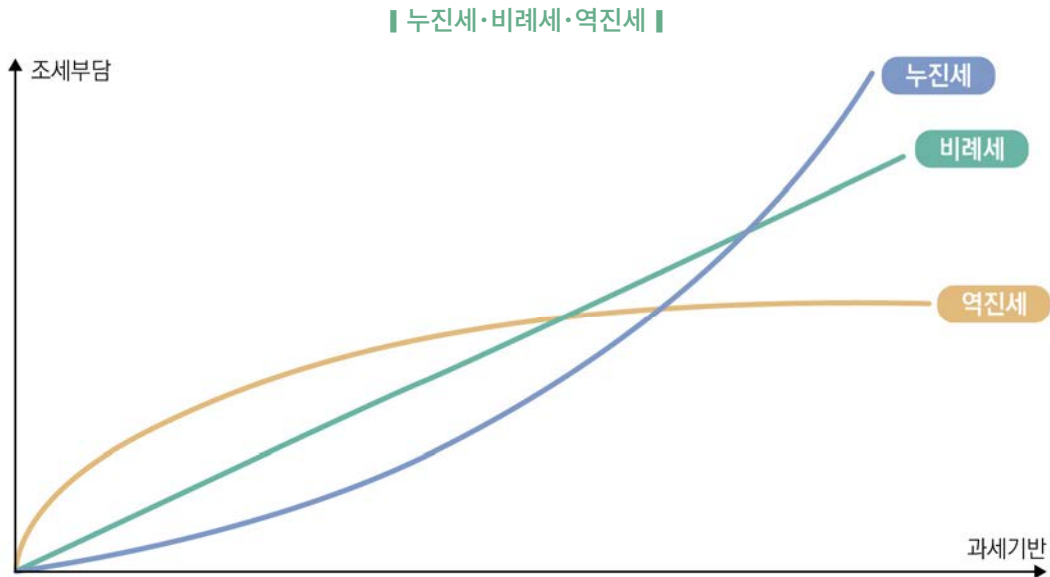
조세의 본질적인 기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국민 또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경제활동으로 번 소득 또는 경제주체가 지출하는 소비로부터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원조달 수단으로는 조세 외에도 부담금, 재산수입, 사용료, 임대료, 수수료 등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조세수입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는 조세를 정부 재정의 주된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 경제·사회정책적 기능

소득과 부의 재분배

조세는 사회보장지출 등 재정지출과 함께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누진적(progressive), 역진적(regressive), 비례적(proportional) 조세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정책의 관점에서 직접적인 소득재분배의 수단이 되는 조세제도인 누진적 조세이다. 누진적 조세란 납세자의 소득·소비·자산 등 과세기반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상승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반대로 과세기반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하락하는 조세를 역진적 조세라고 하며, 과세기반이 증가하더라도 세율이 변하지 않는 조세를 비례적 조세라고 한다.

누진적 조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개인소득세를 들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세율의 구조를 누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고소득층의 소득대비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가처분소득의 격차는 감소하게 되며,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명목세율의 누진적인 설계와 별개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적용 수준에 따라 실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거시경제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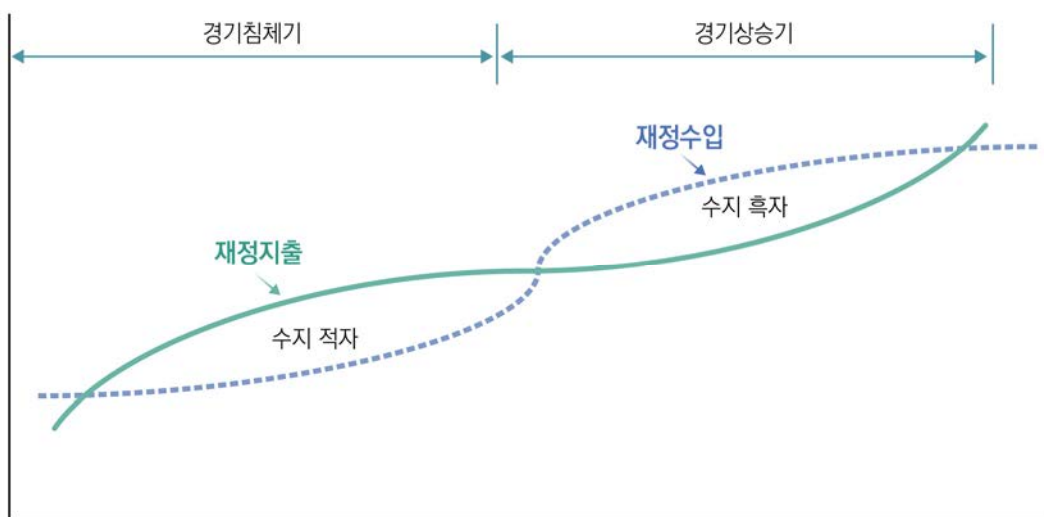
거시경제 안정화는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경기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경기침체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세율인하·조세감면 등을 통해 조세수입 증가율을 둔화시킴으로써 경기 부양을 도모할 수 있다. 반대로 경기상승기에는 재정지출 억제 및 세율인상·감면축소 등을 통해 경기과열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²⁾이라 하며, 조세는 이러한 재량적 재정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기상황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2) 정부가 인위적으로 세율을 변화시키거나 지출 조정을 통해 재정의 경기안정화 효과를 더 크게 하려는 것을 의미함

이 변동함으로써 경기 변동성이 완화되는 기능을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ation)라 한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경기불황이나 경기호황기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정지출과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이 변동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시켜 주는 기제이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재량적 재정정책에 비해 경기 하락기에는 확장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긴축적으로 작동하여 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돕는다. 조세의 경기 안정화 기능은 조세수입의 규모가 크고, 누진도가 높을수록 더욱 커진다.

■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 ■



시장실패 교정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교정하는 것 역시 조세의 기능 중의 하나이다. 시장실패란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사회적 비용이 가격의 결정에 있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등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조세를 통해 외부불경제 등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정책목표를 수립한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반대로 외부경제의 예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들 수 있다. 연구개발 활동은 성공할 경우 사회 전체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하지만, 장기간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높은 실패 확률로 인해 적정 수준 이하에서 과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제3절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부과·징수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대상 물건이 국경을 넘는 거래인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내국세는 각 세목별로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세의 경우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과세주체가 되어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및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는데, 지방세의 과세권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되어 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다르게 「지방세법」에서 모든 지방세 세목의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세수의 용도에 대한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보통세와 목적세

조세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한다. 보통세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조세이다. 대부분의 국세와 지방세는 보통세에 해당한다. 반면 목적세는 조세수입의 특정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조세이다. 현행 국세 중 목적세로는 교육세(교육기반 확충 목적),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시설 확충, 에너지 관련 사업, 환경보전 및 개선 목적), 농어촌특별세(농어촌산업 기반시설 확충 목적)가 있다. 지방세 중에는 지방교육세(지방교육재정 확충 목적)와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사업 재원 및 소방사무 제반비용 확충 목적)가 목적세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와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 직접세와 간접세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적인 조세부담자(담세자)가 일치하는지 여부³⁾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로서 소득세·법인세·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조세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입법자가 예정⁴⁾하는 조세로서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대표적인 간접세 세목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인세와 물세

조세를 과세할 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세(人稅)와 물세(物稅)로 구분할 수 있다. 인세는 납세의무자 개인의 인적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능력을 조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소득세·상속세·증여세와 같이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각종 인적공제가 인정된다.⁵⁾ 물세는 거래자나 소유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판매 행위, 보유 재산과 같은 목적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취득세 등이 있다.

3) 이는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일치를 뜻하는 법적 귀착의 개념으로서, 실제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은 간접세뿐만 아니라 직접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에 법적 귀착만으로 실질적인 최종 담세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음.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가격 인상, 임금 전가, 배당 감소 등의 형태로 일정 부분 전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OECD는 직접세와 간접세 구분보다는 소득/소비/자산과세와 같이 세원별로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함

4)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후 동법 제31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거래징수 제도를 둬으로써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의 특성이 입법에 반영되어 있음

5) 다만, 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과 같이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료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이자소득자의 소득은 부양가족 등의 인적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물세에 해당하는 요소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음

Ⅱ 조세의 분류

구분기준	종류
과세주체	①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②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세수의 용도	① 보통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조세 - 대부분의 국세와 지방세가 보통세에 해당 ② 목적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해당 특정 경비에만 충당하는 조세 - 국세 중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	① 직접세 : 법률상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조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② 간접세 : 경제거래를 통해 타인에게 조세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가되어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부담자(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납세의무자 인적요건 고려	① 인세 : 소득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경제주체의 납세력 결정 시 납세의무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는 조세 -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② 물세 : 거래자나 소유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판매 행위, 보유 재산과 같은 목적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취득세 등
과세대상 측정단위	① 총가세 : 과세대상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금액으로 측정하여 과세표준으로 삼는 조세 - 소득·재산·소비 등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대부분의 조세 ② 종량세 : 과세표준을 종량·용량·건수·인원 등 물량으로 측정하는 조세 - 국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 및 경유의 1ℓ당 과세), 일부 주세(주정 1kℓ당 과세), 개별소비세(특정 입장행위 :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1인 1회 입장시 과세) 등
다른 조세에의 부가(附加) 여부	① 독립세 : 소득, 재산, 소비 등과 같이 독자적으로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② 부가세(surtax) : 다른 조세의 세액 등에 부가(附加)하여 과세하는 조세 - 국세 중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주행분 자동차세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장

조세의 규범체계

제1절 우리나라 조세의 법원(法源) 및 법률체계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침해적인 성격을 지님에 따라 조세의 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 관련 규범은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된다. 조세에 관한 법의 존재 형식을 뜻하는 법원(法源)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 조세조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조세 법률체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헌법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자의적 과세를 금지하고 있다(조세법률주의). 헌법은 조세법의 최고법원으로서 헌법에 위반하는 조세법규 또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무효이다.

법률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률에서 규정한다. 국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외하고는 1세목 1세법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세목별 과세요건 등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일반 공통사항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다. 지방세는 다세목 1세법주의를 채택하여 각 세목별 과세요건은 「지방세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일반 공통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다.

명령, 조례·규칙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행정부는 명령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세 관련 하위법령으로는 법률의 개별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있다. 지방세와 관련해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⁶⁾,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⁷⁾

조세조약

조세조약이란 국제적인 거래에서 일어나는 이중과세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국가 간 체결하는 조약을 의미한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⁸⁾

6) 「지방세기본법」 제5조제1항

7) 「지방세기본법」 제5조제2항

8) 헌법 제6조제1항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조세법의 입법 및 해석·적용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적 지침을 의미한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다.

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국가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조세의 종류·내용·부과징수 절차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 행사와 국민의 조세부담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함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보장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8조⁹⁾와 제59조¹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 규정에 관한 헌법상 원칙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 이에 파생되는 원리에 해당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소급과세금지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¹¹⁾ 국가의 과세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 및 행정영역의 전문화로 인해 국회가 제·개정하는 법률보다는 탄력성·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입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그 내용이 일정부분 위임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임입법¹²⁾ 역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따라 구체적이고

9)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10)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1) 헌법재판소 2001.8.30. 선고 99헌바90 결정 등

12) 통상적 의미의 위임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전제로 하여 국회가 그 입법권을 법률적 위임의 형태로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의미함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을 의미하므로 포괄적인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¹³⁾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보완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 및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조세법이 규율해야 하는 경제현상은 복잡하고 유동적이므로 이를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 등 불확정 개념¹⁴⁾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의 취지나 목적, 전후 문맥의 내용 등에 대한 문리적·논리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와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③ 소급과세금지 원칙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조세납부 의무가 이미 성립된 소득·수익·재산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이후에 제정된 새로운 세법 또는 달라진 해석 및 관행을 적용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현행 조세법 및 해석·관행을 신폐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헌법과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14) 불확정 개념의 예시로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 “경기대책상 필요가 있는 때” 등이 있으며, 현행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의 경우 “(중략)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략)”으로 규정하여 불확정 개념을 사용한 바 있음.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동 법률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조세 법령의 소급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새로운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진정소급과 과세기간 중(납세의무의 성립일 이전)에 개정된 세법 등을 그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이 있다. 대법원은 진정소급은 허용하지 않지만 부진정소급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 조항의 경우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¹⁵⁾

2. 조세평등(공평)주의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¹⁶⁾의 세법적 구현으로,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정의의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조세평등(공평)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¹⁷⁾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의 개념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개념인 ‘수평적 공평’과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에 다르게 조세부담을 배분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개념인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조세평등주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담세력은 동일하지만 정책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담을 감경 또는 가중하는 조세특례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세특례조치는 담세력이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감경 또는 가중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 관점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¹⁸⁾

조세특례조치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세특례조치에 대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 때 조세특례의 정책목적이 합리적인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조치가 유효한 것인지, 조세특례조치에 의하여 공평부담이 어느 정도로 침해되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¹⁹⁾

15) 대법원 1983.4.26. 선고 81누423 결정 등

16) 평등의 원칙은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것을 명하는 법내용상의 평등과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구현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취급을,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다른 취급’을 하는 합리적 차별을 핵심으로 함

17) 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2001헌바44 결정

18)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6.26. 93헌바2)

3.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부원칙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인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게 되고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게 된다.²⁰⁾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국세 부과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끝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을 통해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러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대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게 된다.

19)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0. p.44.

20) 헌법재판소 2009.2.26. 선고 2006헌바65 결정

제3장

과세요건

제1절 개요

과세요건(課稅要件)이란 납세의무라는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조세부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과세권자 역시 조세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과세요건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고(과세요건 법정주의), 그 내용은 명확(과세요건 명확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과세주체), 납세의무자, 과세물건(과세대상), 과세표준(과세물건을 화폐가치 또는 물량으로 측정한 것), 세율(과세표준의 단위당 세액)로 구성된다. 과세요건을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재분류하면 과세권자 및 납세의무자는 인적요건, 그 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은 물적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2절 납세의무자

개념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란 세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²¹⁾ 납세의무자는 경제적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인 담세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세인 개인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최종적인 담세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주요 세목별 납세의무자는 다음 표와 같다.

21) 「국세기본법」 제2조제9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

Ⅱ 주요 세목별 납세의무자

구분	세목	납세의무자
국세	소득세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비거주자),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세	•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자(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경우 위탁자)
	부가가치세	•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과세장소의 경영자
	주세	•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 주류를 수입하는 자
	증권거래세	•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교통·에너지·환경세	• 과세물품(휘발유, 경유)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교육세	•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납세의무자
지방세	농어촌특별세	•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등록분) 감면을 받은 자 •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또는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광업권, 어업권 등 과세대상 취득자
	레저세	• 경륜, 경정 및 경마 사업자 • 소싸움 경기 시행자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소, 지하수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등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납세의무자
	주민세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개인, (사업소분) 법인
	재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 및 선박 등 소유자
	자동차세	• (소유분) 자동차소유자,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	•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납세의무의 범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범위는 과세대상(물건)의 범위와 국내 주소·거소²²⁾ 또는 본점 등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즉 국내에 주소·거소 또는 본점 등을 두고 있는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비거주자의 조세부담 범위가 다르다.

개인인 납세자의 경우 거주자²³⁾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국내에 주소·거소 또는 본점 등을 두고 있는 거주자인 납세의무자는 무제한 납세의무²⁴⁾를 부담한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발생원천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한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법인은 영리목적의 유무(영리/비영리법인)와 국내 본점소재지 여부(내국/외국법인)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이 열거한 수익사업 소득에 한정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외국법인은 본점 소재지 등이 국외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한정하여 제한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납세의무의 확장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확장된 납세의무’라고 칭하며, 연대납세의무와 보충적 납세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는 복수의 자가 연대하여 하나의 납세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 또는 전원을 대상으로 납부 청구가 가능하다.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이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그 한도에서 소멸한다.

보충적 납세의무란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납부할 국세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본래 납세의무자와 법정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개별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 외에 보충적 납세의무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끝으로 납세의무자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인 납세의무가 아닌 ‘징수하여 납부’할 협력의

22)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거소(居所)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장소임(소득령 § 2의②)

23)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임(「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24) 귀속소득의 발생장소 또는 취득재산의 소재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속인주의(屬人主義)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함

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징수의무자²⁵⁾가 있다.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징수의무자를 합하여 납세자라고 부른다.²⁶⁾

제3절 과세대상

개념

과세대상(課稅對象)은 법률로 정한 과세의 대상으로서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뜻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핵심적인 물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통 납세의무자의 재산,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취득·소유·이용·소비·이전 등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능력(담세력)을 파악하는 물적 기초로 활용된다.

분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은 소득·소비(또는 지출)·자산(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소득

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 기간에 걸쳐 노동·토지·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정의된다. 소득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국세 중 소득세 및 법인세,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가 소득과세 세목에 속한다.

소득과세는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담세력이 높은 것으로 보며,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을 과세에 반영함으로써 응능부담원칙²⁷⁾의 구현에 적합하다. 또한 세율구조를 누진적으로 설정할 경우 수직적 공평을 실현함으로써 소득재분배에도 기여할 수 있다.

25) 징수의무자는 본질적인 납세의무가 아닌 징수하여 납부할 협력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1.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지급할 때 조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과세권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거래징수의무자: 부가가치세의 공급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
3.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 징수에 있어 징수편의가 있는 자로 하요금 징수시킨 뒤 이를 과세권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6) 「국세기본법」 제2조제10호

27) 응능부담원칙(應能負擔原則)은 조세는 납세자의 부담능력(담세력)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조세부담의 공평성 관점과 연계되는 개념임

② 소비(지출)

소비란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service)을 사용하여 효용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비과세는 이러한 소비·지출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구매력이 곧 담세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국세 중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고,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이 소비과세 세목에 해당한다.

소비과세는 세원의 포착이 비교적 용이하고 소비금액의 산정이 단순하여 징세절차가 간소한 편이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반소비세는 과세대상의 범위가 넓고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조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소비·지출행위에 부과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한 면세, 사치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소비과세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③ 자산(재산)

자산(재산)이란 예금·주식·펀드·보험 등 금융자산과 토지·건물·주택과 같은 부동산 및 자동차·선박 등 비금융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산에 대한 과세는 경제가치의 저장(stock)에 대한 과세로서, 자산 보유에 따른 효용, 부(富)의 집중방지·소득재분배, 소득·소비과세의 보완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자산과세는 대부분 물적 과세²⁸⁾로서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자산의 총액 또는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 중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이 자산(재산)과세에 해당하며,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8) 물적 과세는 소득세 등 인적 과세와 달리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과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物件)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조세로서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의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로 과세되는 특징이 있음

제4절 과세표준

조세의 크기인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을 금액화하거나 수량화하여 측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세대상을 금액·건수·용량·인원 등의 화폐가치 또는 물량으로 측정한 값을 과세표준(課稅標準)이라 한다. 납부할 세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의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이며,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세목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과세대상을 측정하는 척도로 종가세의 경우 금액이 사용되고, 종량세의 경우 수량이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은 대부분 과세대상을 금액화하는 종가세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일부(주정·탁주·맥주),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와 같은 일부 세목의 경우 과세대상을 수량으로 측정하는 종량세이다.

Ⅱ 주요 세목의 과세표준 Ⅱ

구분	세목	과세표준
국세	소득세	• 개인의 1역년(曆年) 소득금액을 기초로 소득공제 또는 기본공제 차감 (단,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차감)
	법인세	• 법인의 1회계연도 소득금액(또는 청산소득금액)을 기초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차감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가액) ¹⁾
	교통·에너지·환경세	• 과세물품(휘발유 및 경유) 제조 반출수량, 수입신고 수량
	개별소비세	• (유류) 유류량(ℓ, kg) • (담배) 담배 개비수, 중량, 니코틴 용액 용량 •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입장행위) 입장인원 수 및 횟수
	주세	• (주정·탁주·맥주) 출고량 • (그 외 주류)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
	관세	• 수입물품의 가격
지방세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광업권, 어업권 등 취득가액
	재산세	•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지역자원시설세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및 선박) 가액, 시가표준액 • (발전용수 및 지하수) 용수량, (컨테이너) TEU ²⁾ , (발전소) 발전량
	담배소비세	• 담배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 용량
	지방소득세	•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주: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중 공급가액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며, 공급대가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

2) TEU(Twenty foot Equivalent Unit)는 가로길이 20피트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5절 세율

개념

세율(稅率)은 세액 산출을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통 과세표준이 금액일 경우 비율(%)로 표시하고, 과세표준이 수량일 경우 단위당 일정금액(예 : 원/kl)으로 표시한다.

세율의 종류, 크기, 누진구조의 완급 등은 국가의 자본축적도, 소득분배도, 재정수요의 크기,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세율의 결정은 역사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영향에 기반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거래가 국제화되고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자본에 대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국가 간의 관계도 세율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분류

세율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비율이 일정한 비례세율과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액의 비율이 커지는 누진세율로 구분한다. 그 외에 경제학적 개념에 해당하는 한계세율·실효(유효)세율과 조세법적 개념에 해당하는 법정세율·탄력세율, 그 외 지방세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인 표준세율·제한세율·임의세율 등의 분류가 존재한다.

① 비례세율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비율이 일정한 세율을 의미하며, 단순비례세율과 차등비례세율로 구분한다. 단순비례세율은 모든 과세대상에 동일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율(10%)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차등비례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 및 대체유류 475원/ℓ, 경유 및 대체유류 340원/ℓ)가 여기에 해당한다.

② 누진세율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액의 비율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한다. 단순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표준 전체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취득세 과세대상 가운데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율이 이에 해당한다.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 단계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이 이에 해당한다.

③ 법정세율 및 탄력세율

세법에서 정한 명목세율을 법정세율(法定稅率)이라고 한다. 법정세율 가운데 탄력세율(彈力稅率)은 기본세율을 법률로 정해두고 일정한 범위에서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로서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율의 조정권을 위임받은 하위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기본세율의 일정한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현행 세법 중 「개별소비세법」²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³⁰⁾, 「지방세법」 등에서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④ 한계세율 및 실효세율

한계세율(限界稅率)은 추가되는 1단위의 과세표준(과세소득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조세의 부과에 따른 세후소득 변화 등 경제적 왜곡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실효세율(實效稅率)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과세소득금액) 대비 총 결정세액(실제 부담한 세액)의 비율로서 납세의무자의 실제 세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각종 비과세·감면 등이 적용됨에 따라 실효세율은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과 달라질 수 있다.

29) 한편, 개별소비세의 경우 탄력세율 외에 기술개발 선도 및 환경친화적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간 기본세율의 10% 이후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잠정세율을 두고 있음(「개별소비세법」 제1조의2)

30) 증권거래세의 경우 기본세율은 1만분의 35이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규정할 수 있음(「증권거래세법」 제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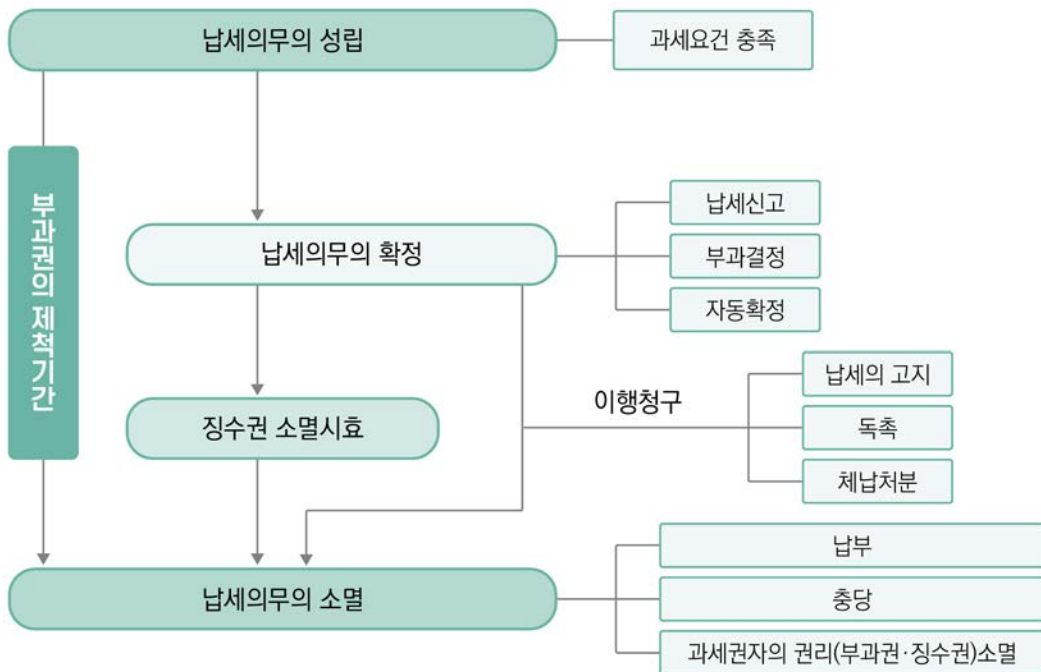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1절 개요

조세의 납세의무는 각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립한다.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과세권자는 조세채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고,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라는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과세요건 충족을 통해 성립된 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고 정부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로 확정된다. 이후 확정된 조세의 납세의무는 통상적으로 이를 납부하거나 충당함으로써 소멸되고, 당초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취소·무효 등의 이유로 과세권자의 부과권·징수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소멸된다.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흐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조세의 납세의무는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한다. 이는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법률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의미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세법의 적용기준으로서 조세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데 의의가 있다. 만약 세법이 개정되면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새로운 세법에 따른 소급과세는 금지되며, 이를 ‘소급과세금지 원칙’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세목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해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고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의 성립 단계에서는 납세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부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과 및 징수라는 과세권 행사를 위해서는 성립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확인하는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성립시기

원칙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요건의 기초가 된 사실이나 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이다. 크게 과세기간의 종료시점, 과세사실의 발생시점, 과세기준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간과세(期間課稅)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³¹⁾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때와 같이 ‘과세사실이 발생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 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목도 있다.

31) 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11~12.31), 법인세는 회계기간(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부가가치세는 1년 기준으로 6개월씩 구분(일반과세자: 1기 1.1~6.30 / 2기 7.1~12.31)함. 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특례로서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함

■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

구분	해당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국세	소득세, 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하는 때) - 납세조합의 징수 및 예정신고: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수입재화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는 때)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 판매할 때 -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단, 수입물품의 경우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관세	수입신고를 하는 때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교육세	-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지방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 등록분: 재산권 등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 면허분: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자동차 주행분: 과세표준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전에 사용하는 때 -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입항·출항하는 때 -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건축물 및 선박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자료: 「국세기본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34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및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예외가 존재한다.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아울러 가산세의 일반적인 납세의무는 가산할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되지만, 국세 및 지방세 중 일부 가산세의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의 성립시기를 두고 있다.

■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예외 ■

구분	납세의무 성립시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및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법인세법(§ 67)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신고일(수정신고일)
국세 및 지방세 중 다음 가산세 - 무신고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자료: 「국세기본법」 제21조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2항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행사를 위해서는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인해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공적인 수단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해당 납세의무가 이행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성립한 납세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다만 이때의 ‘확정’은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변경이 허용되는 잠정적인 확정³²⁾을 의미한다.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을 때 또는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³³⁾되고, 지방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하는 때 확정된다.³⁴⁾

2. 확정절차

조세채무에 대한 납세의무가 법규상 성립하였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납세의무의 확정’은 「국세기본법」 제22조와 「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의 경우 해당 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조세의 세목별로 납세의무의 확정 주체가 과세권자일 수도 있고(정부부과방식), 납세의무자 스스로일 수도 있으며(신고납부방식),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동시에 확정(자동확정방식) 되기도 한다.

32) 따라서 판결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결정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33) 「국세기본법」 제22조

34) 「지방세기본법」 제35조

■ 세목별 납세의무 확정방식 ■

구분			세목
신고납부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한 경우), 관세(원칙)
	지방세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
정부부과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관세(예외)
	지방세	도세	등록면허세(갱신,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시·군세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분)
자동확정	국세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등
	지방세	시·군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등

주 : 관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지방방식이 사용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한 확정: 신고납부방식

신고납부³⁵⁾ 방식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세법을 적용하여 해당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신고납부방식 세목은 국세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이며, 지방세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다.

신고납부방식은 자기부과방식이라고도 하며 민주적인 납세방식에 부합하는 반면 납세의무자의 윤리성과 세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신고납부방식에 따르면 1차적인 확정권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자진신고에 의한 세액계산 등이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세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35) 지방세의 경우 신고과세를 '신고납부'라 칭함(「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6호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한 확정: 정부부과방식

정부부과방식은 과세권자인 정부(과세관청)의 행정처분(부과)³⁶⁾에 의하여 납부할 조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부과방식은 조세의 확정권한이 정부(과세관청)에게만 부여되며, 정부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납세고지)할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현재 정부부과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은 상속세³⁷⁾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등이 있다.

③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확정: 자동확정방식

자동확정방식은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확정된 이후에는 징수(원천징수 포함)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자동확정방식 세목으로는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 제외) 등이 있다.

36) '부과'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결정처분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함

37)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하는 상속세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1. 의의

납세의무의 소멸은 확정된 납세의무가 납부 등을 통해 실현되었거나 부과취소와 같은 법정사유에 의해 없어지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과세권자인 정부와 납세의무자 간의 과세관계는 종료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는 조세의 납부 및 충당을 통해 소멸되지만, 그 밖에 부과취소·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을 통해서도 소멸한다. 만약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납부 등이 없을 경우 과세권자는 자력집행권을 기초로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납부를 실현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2. 일반적 소멸: 납부 및 충당

① 납부

납부(納付)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등을 포함)가 세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뜻한다. 조세의 납부는 납세의무의 확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신고납부방식의 경우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부부과방식의 경우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납부는 채무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부에 의하여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납부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물론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 의무자 등에 의한 납부도 포함된다. 납부의 방법은 금전납부가 일반적인 방법이며, 그 외 인지납부³⁸⁾, 물납(物納)³⁹⁾이 존재한다. 물납제도의 경우 금전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상속세와 같이 개별세법³⁹⁾에서 물납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납부 방법이다.

38)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이를 소인하여 납부하는 방식임

39) 국세 중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 중 납부세액이 1천만이 초과하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7조)에 한하여 물납이 허용됨

② 충당

과세권자는 납세의무자의 동의하에 납부할 세액 및 가산금 등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처리하거나,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充當)하는 방식을 통해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3. 과세권자의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

① 부과취소 또는 무효

당초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부과처분의 취소란 과세권자나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흠결을 발견하여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의해 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로서, 확정 효력은 상실되고 조세는 소멸하게 된다. 부과처분의 무효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것으로, 조세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킬 납세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

부과권은 일반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의 구체적 내용을 과세관청이 확정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부과권이 기한의 제한 없이 행사될 경우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법은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부과권의 제척기간(除斥期間) 또는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⁴⁰⁾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며, 역외거래의 경우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 다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이며, 납세자의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는 10년(역외거래의 경우 15년)이다. 만약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고 만료될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권은 소멸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납세자의 부정행위 또는 신고서 미제출 등의 경우는 15년이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하는 특례가 신설⁴¹⁾되었다.

4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③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징수권은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과세관청의 징수권 역시 일정한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징수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라고 한다.

일반적인 조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또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무효가 된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이외의 국세는 5년이다.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오류 또는 후발적 사유 등으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결정·경정·재경정·부과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른 신고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때, 납세의무자가 정정하는 신고를 의미한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에 따라 과세관청은 행정력이 절감되고, 납세의무자는 가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할 수 있다.⁴²⁾

경정 등의 청구는 이미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하거나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이 정정하도록 납세의무자가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⁴³⁾

4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 신설(법률 제20611호, 2024.12.31. 일부개정)

42) 「국세기본법」 제45조

4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장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권리구제란 국가의 위법·부당한 조세부과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다투고 시정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기 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⁴⁴⁾ 이러한 납세자 권리구제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사전적 권리구제’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조세부과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권 등이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사후적 권리구제’로 구분된다.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⁴⁵⁾이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검증하여 시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사후적 권리구제보다는 선진·민주적 권리구제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⁴⁶⁾⁴⁷⁾

1.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또는 현지 확인조사 등에 따라 과세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국세 100만원, 지방세 30만원)의 세액을 납부고지 하는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과세예고통지라고

44) 행정은 그 본질이 법의 집행이며, 법의 지배하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하는 합목적적 행위이다. 따라서 행정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하기에 행정이 법에 위반되거나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이를 신속·적정하게 구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행정구제제도라고 한다. 조세행정도 그 본질이 행정이므로 조세행정에서 위법·부당하게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신속·적정하게 구제하여 납세자기본권을 보장하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최명근, 「세법학총론」, 2005, p.679).

45) 본 절에서 과세관청이란 국세의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함

46) 김완석 외, 「주석 국세기본법」, 2020, p.1299.

47)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한다.⁴⁸⁾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시행한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⁴⁹⁾

국세의 경우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등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⁵⁰⁾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 도세(광역시세)는 도지사(광역시장)에게, 시·군·구세(자치구세)는 시장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2,387건(전년이월 포함)의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었으며, 2019년 이후 청구건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 2023년 전년 대비(2,289건) 소폭 증가(4.3%)하였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1,555건의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었으며, 국세와 달리 2019년 이후 매년 청구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48) 지방세의 경우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외에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거나 추정하는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1항)

4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를 국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3항)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5. 불복청구의 인용결정 중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채택결정 과정 중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0)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등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이란 다음의 사유를 의미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1항)

- ①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 ②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 ③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 ④ ①~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 ⑤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현황: 2019~2023년

(단위: 건)

연도	국세			지방세		
	합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합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2019	2,676	356	2,320	650	27	623
2020	2,546	340	2,206	769	48	721
2021	2,545	371	2,174	791	85	706
2022	2,289	305	1,984	1,054	116	938
2023	2,387	254	2,133	1,555	111	1,444

자료: 국세는 「국세통계연보」, 지방세는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목별로 2023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현황(전년이월 포함)을 살펴보면, 국세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도소득세 493건, 부가가치세가 444건 순으로 청구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가 1,253건으로 전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현황: 2023년

(단위: 건)

구 분	국세			구 분	지방세		
	합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합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합 계	2,387	254	2,133	합 계	1,555	111	1,444
종합소득세	520	36	484	취득세	1,253	98	1,155
법인세	211	37	174	등록면허세	144	3	141
부가가치세	444	36	408	지방교육세	58	5	53
양도소득세	493	55	438	주민세	16	3	13
상속세	151	18	133	재산세	75	2	73
증여세	391	59	332	자동차세	9	0	9
기타	177	13	164	기타	0	0	0

자료: 국세는 「국세통계연보」, 지방세는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납세자는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과세관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⁵¹⁾⁵²⁾ 이 경

우 해당 통지를 한 과세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날째, 청구세액, 청구내용 및 이유 등을 기재하고 불복이유서 및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이유에 대해 먼저 청구요건을 심리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정 요구하고, 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사전열람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⁵³⁾에 사건조사서를 첨부하여 국세(지방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심의를 요구받은 동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세(지방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근거로 과세관청은 채택·불채택·심사제외⁵⁴⁾로 각각 결정한 후 심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세납세자가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0일 이내에 결정한다.⁵⁵⁾

한편,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부분에 대해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관청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更正決定)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제외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⁵⁶⁾

과세전적부심사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의 경우 2023년 2,132건을 처리하였는데, 1,483건이 불채택되었으며, 211건은 심사제외로 처리되었다. 납세자의 청구를 채택한 건수는 438건이며, 채택으로 인한 감세액은 9,390억원 수준이다. 지방세의 경우 2023년 1,346건을 처리하였는데, 1,071건이 불채택되었으며, 9건은 심사제외로 처리되었다. 납세자의 청구를 채택한 건수는 80건이며, 채택으로 인한 감세액은 281억원 수준이다.

과세전적부심사 처리 현황: 2023년

(단위: 건, 억원)

	처리건수					처리세액	감세액
	합계	채택	불채택	심사제외	일부채택		
국세	2,132	438	1,483	211	-	19,687	9,390
지방세	1,346	80	1,071	9	186	2,856	281

자료: 국세는 「국세통계연보」, 지방세는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지방세기본법」 제88조

52) 청구기간을 지연하여 접수된 청구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하게 됨

5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54) 심사제외는 청구기간 경과, 보정기간 내 미보정,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 등에 대해 국세(지방세)심사위원회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임

5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제1항

5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의15제4항

제2절 사후적 권리구제: 조세불복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는 조세의 확정과 징수가 위법하게 이루어졌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다투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된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⁵⁷⁾하고 있으나, 조세관련 행정쟁송의 경우⁵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⁵⁹⁾ 이는 조세처분이 일반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다.⁶⁰⁾

따라서 조세와 관련한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는 과세관청이나 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에 제기하는 불복청구(행정심판)와 사법부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1. 불복청구(행정심판)

가. 불복청구의 개요

조세법상의 위법·부당한 부과·징수 기타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청구하려는 납세자⁶¹⁾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기에, 원칙적으로는 1심급 구조로 되어 있

57)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58)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각종 세법상의 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 등이 있음

59) 「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60) 김완석 외, 「주석 국세기본법」, 2020, p.1053.

61)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국세와 동일한 구조로 행정심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국세를 기준으로 설명함

다. 그러나 불복청구하려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⁶²⁾을 할 수도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 2심급 구조이다.

불복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한다.⁶³⁾ 그 취지는 납세자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방편으로 불복청구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⁶⁴⁾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불복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7조제2항).

나. 불복청구의 대상

행정불복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법률이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개괄주의(概括主義)’와 ‘열거주의(列舉主義)’가 있다. 개괄주의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항이면 제한 없이 모든 사항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입법례이고, 열거주의는 청구 대상이 되는 사항을 법에 열거하고, 그 사항만을 불복청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⁶⁵⁾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괄주의’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다.⁶⁶⁾

다만, 「조세범 처벌법」 등에 의한 통고처분과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등

62) 지방세의 경우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63)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 그 불복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의 집행력은 정지되지 않음

64)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재결 권한을 가진 해당 행정청의 직근(直近) 상급기관 또는 해당 행정청 등을 의미함

65) 「국세기본법」은 처분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처분의 개념을 준용하는데, 「행정심판법」의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66) 최명근, 「세법학총론」, 2005, p.689.

은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2항).

먼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⁶⁷⁾ ‘통고처분’이란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행정기관이 일정한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고 범칙자가 이를 납부하면 사건을 종결하게 되나, 범칙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이행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⁶⁸⁾ 즉 납세자가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반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과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을 중복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데 취지가 있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허용된다.

다. 불복청구의 절차

국세의 경우 먼저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여야 한다.⁶⁹⁾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우선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과세관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결정기간 이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과 같이 우선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해당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한다. 심사청구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세자

67)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칙행위를 조사하고 통고처분을 하게 됨

68) 김완석 외, 「주석 국세기본법」, 2020, p.1019.

69)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우편에 의해서도 불복청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60조의2 및 제61조제3항)

의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⁷⁰⁾⁷¹⁾ 납세자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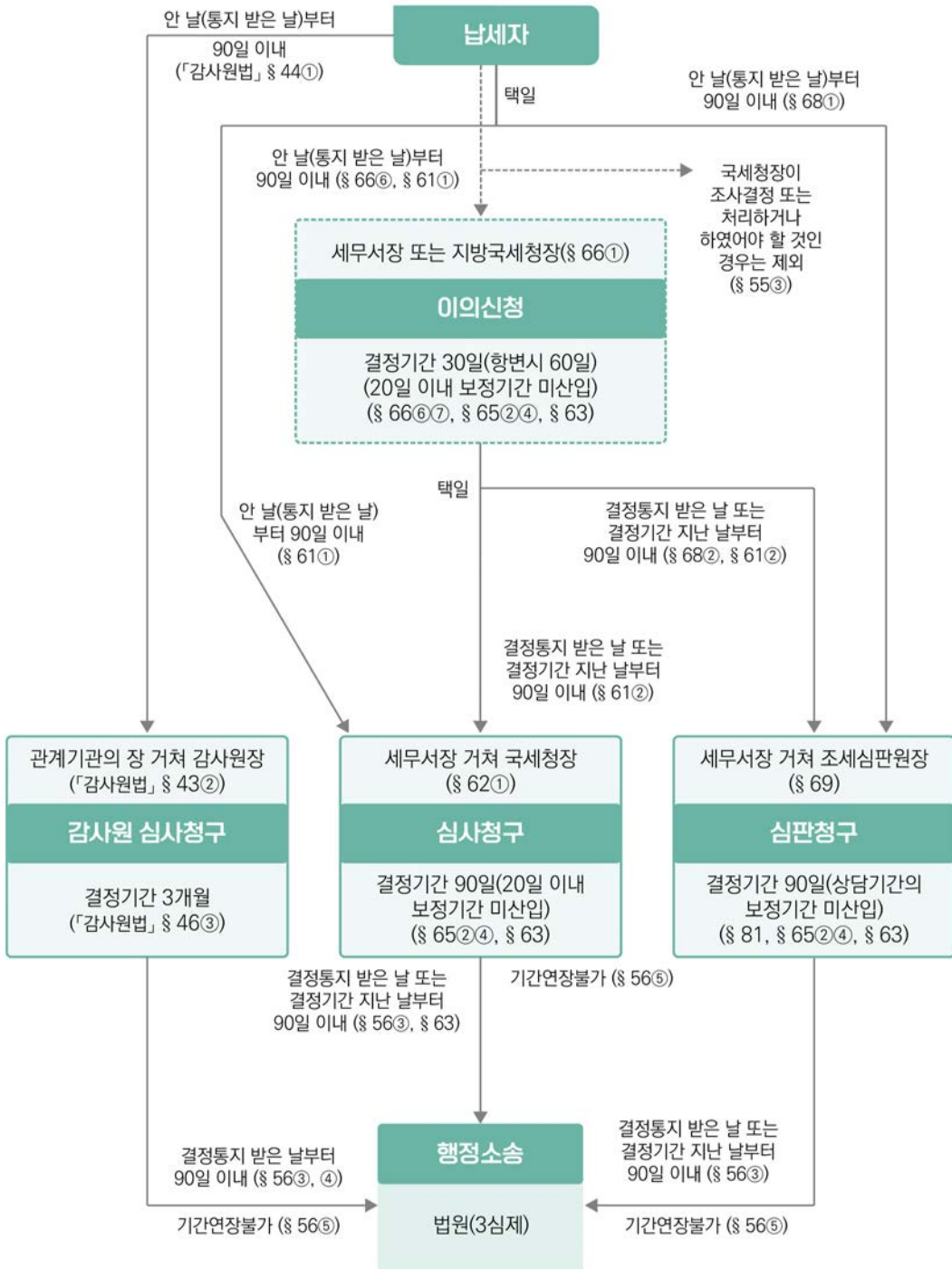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심판청구 역시 심사청구와 동일하게 과세판청을 경유해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를 받는 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같은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심판청구와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감사원장은 심사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0) 결정의 주체는 국세청장이지만 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행한 결정은 절차상의 하자에 의해 무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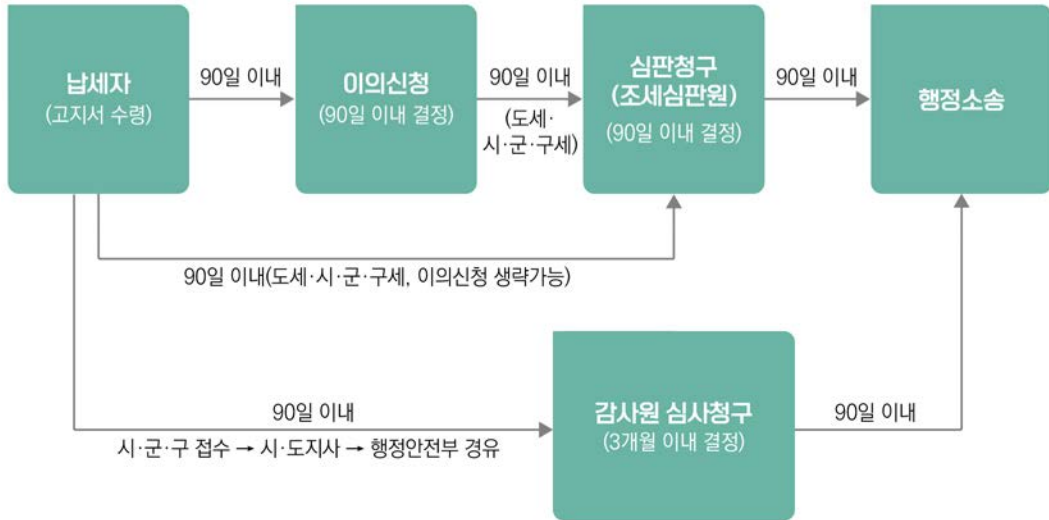
71)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감사원법」 제46조제3항)

국세 불복절차의 흐름도



주: 「감사원법」 외의 법률 조문은 「국세기본법」의 조문을 의미함
 자료: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별첨 국세불복청구 업무의 처리 흐름도)

■ 지방세 불복절차의 흐름도 ■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 지방세 교육교재-지방세기본법」, 2024.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의 비교 ■

구분	이의신청(임의절차)	심사청구 ¹⁾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청구기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²⁾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감사원장
청구기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기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³⁾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	조세심판관회의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감사원장
결정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변시 60일 이내) *지방세의 경우 90일 이내	청구일부터 90일 이내	청구일부터 90일 이내	3개월 이내

주 : 1)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심사청구는 국세만 해당되며, 지방세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만 적용됨

2) 지방세의 경우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며, 시·도세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청구함

3)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2024), 김완석 외 3인, 「주석 국세기본법」, 삼일인포마인(202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5년(2019~2023년)의 행정심판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이의신청은 3,278건, 국세청장 심사청구는 534건, 감사원 심사청구는 237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13,005건으로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건수가 심사청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이 1,155건, 감사원 심사청구 70건, 심판청구는 7,025건으로 심사청구보다 심판청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Ⅱ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현황: 2019~2023년 Ⅱ

(단위: 건)

연도	국세				지방세		
	임의절차	필수절차			임의절차	필수절차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2019	3,679	583	172	6,460	1,033	145	5,243
2020	4,316	555	335	10,975	2,559	550	4,870
2021	4,244	530	625	9,326	2,632	3,635	7,262
2022	4,593	618	340	11,303	1,382	1,201	3,511
2023	3,278	534	237	13,005	1,155	70	7,025

주: 1. 당해연도 접수건수와 전년 이월건수의 합계

2. 국세 심판청구의 경우 내국세와 관세의 합계

자료: 국세 이의신청·심사청구는 「국세통계연보」, 지방세 이의신청은 「지방세통계연감」,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연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불복청구의 결정

결정(決定)은 불복청구에 대하여 재결정이 행하는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정은 재판에서의 판결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재결정의 의사표시로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가지며,⁷²⁾ 결정의 유형은 각하, 기각, 인용으로 구분된다.

‘각하’란 요건심리의 결과 청구가 형식적으로 부적합한 경우⁷³⁾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72) 김완석 외, 「주석 국세기본법」, 2020, p.1116.

73) 각하 결정을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 ①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 ②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③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④ 불복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 ⑤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⑥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경우
- ⑦ 대리인이 아닌자가 불복을 청구한 경우

‘기각’이란 불복청구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본안 심리의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거부하는 결정이다.

‘인용(認容)’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이다.

이러한 불복청구의 결정은 재결(裁決)이라고 하는데, 행정처분의 일반적 효력을 모두 갖지만, 일반적인 행정처분에서 볼 수 없는 불가쟁력, 불가변력과 같은 법률 효과도 발생한다. 여기서 결정의 효력은 기각 결정과 취소·경정 결정(인용)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이다.⁷⁴⁾

불가쟁력(不可爭力)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청구기간 내에 다음 심급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거나 일정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정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는 청구기간을 규정하여 행정처분을 조속히 형식적으로 확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불가변력(不可變力)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자신이 직권으로 또는 상급행정청의 감독권에 의해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은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재심절차에 따라 행해진 판단행위이므로 해당 재결청 자신도 이에 구속되며 스스로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결정이 외부에 표현된 이상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그 결정을 한 재결청 자신을 구속하는 효력을 불가변력 또는 내용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가변력은 형식적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효력이 생긴다.

74) 이하의 내용은 최명근, 「세법학총론」, 2005, p.736~743. 참조

2. 조세소송

조세법률관계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분쟁이 생긴 경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통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사법절차에 해당하는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⁷⁵⁾ 조세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조세행정소송과 조세민사소송이 있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헌법소송이 있다.

조세행정소송

조세행정소송은 조세에 관한 과세관청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등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조세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판결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징수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할 수 없다.

조세행정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는 2023년 기준 총 1,494건의 조세행정소송이 처리되었는데, 국가승소가 873건이었으며, 국가 일부패소는 48건, 국가패소는 87건으로 나타났다.

■ 국세 세목별 행정소송 처리 현황: 2023년 ■

(단위: 건)

구 분	처리대상건수			처리건수					
	합계	전년이월	당년제기	합계	취하	각하	국가승소	국가 일부패소	국가패소
합계	4,602	2,914	1,688	1,494	444	42	873	48	87
종합소득세	608	359	249	205	57	9	120	4	15
법인세	702	510	192	201	67	3	103	10	18
부가가치세	690	462	228	211	45	2	139	10	15
양도소득세	822	461	361	311	72	9	209	5	16
상속세	171	106	65	54	16	-	29	6	3
증여세	447	299	148	150	36	4	87	10	13
기타	1,162	717	445	362	151	15	186	3	7

자료: 국세청, 「2024년 국세통계연보」, 2024.

75) 1994년 7월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의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조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함에 따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지방세의 경우에는 2001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으나,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전치주의제도를 다시 도입함

지방세의 경우 2023년 총 475건의 조세행정소송이 처리되었는데, 승소가 191건이었으며, 일부승소⁷⁶⁾는 12건, 패소는 87건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 세목별 행정소송 처리 현황: 2023년 ■

(단위: 건)

구 분	처리대상건수			처리건수				
	합계	전년이월	당년제기	합계	승소	패소	취하	일부승소
합계	4,180	2,374	1,806	475	191	87	185	12
취득세	584	325	259	200	108	52	36	4
지역자원시설세	30	25	5	4	4	-	-	-
주민세	17	16	1	6	4	-	1	1
지방소득세	1,987	1,771	216	201	43	19	134	5
재산세	154	78	76	42	29	4	8	1
담배소비세	1,369	148	1,221	15	1	9	4	1
기타	39	11	28	7	2	3	2	-

자료: 행정안전부, 「2024 지방세통계연감」, 2024.

조세민사소송

조세민사소송이란 납세자 및 과세관청 가운데 한 당사자의 조세와 관련한 법률행위로 상대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 생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에 대해 판례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이미 납부한 조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으로 보고 있다.⁷⁷⁾ 조세민사소송은 납세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국가배상 청구소송 등이 있다.

헌법소송

헌법소송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부합하는지, 국민이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를 심사하는 소송으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면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이다.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직접

76) 국세통계연보는 일부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방세통계연감은 일부승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77)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우선 조세쟁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장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현행 우리나라 조세의 종목은 총 25개로 국세 세목이 14개, 지방세 세목이 11개이다. 국세는 1세목 1세법주의에 따라 개별 세목을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내국세에 해당하는 13개 세목은 국세청 소관으로 부과·징수된다. 내국세 중 5개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5개는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주세), 3개는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구분할 수 있다.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품목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관세청 소관으로 부과·징수된다.

지방세는 다세목 1세법주의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11개 세목에 대한 과세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에 해당하며, 그 외 9개 세목은 재원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보통세에 해당한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과세권은 세목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각각의 관할 구역에 설치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세목별로 나누어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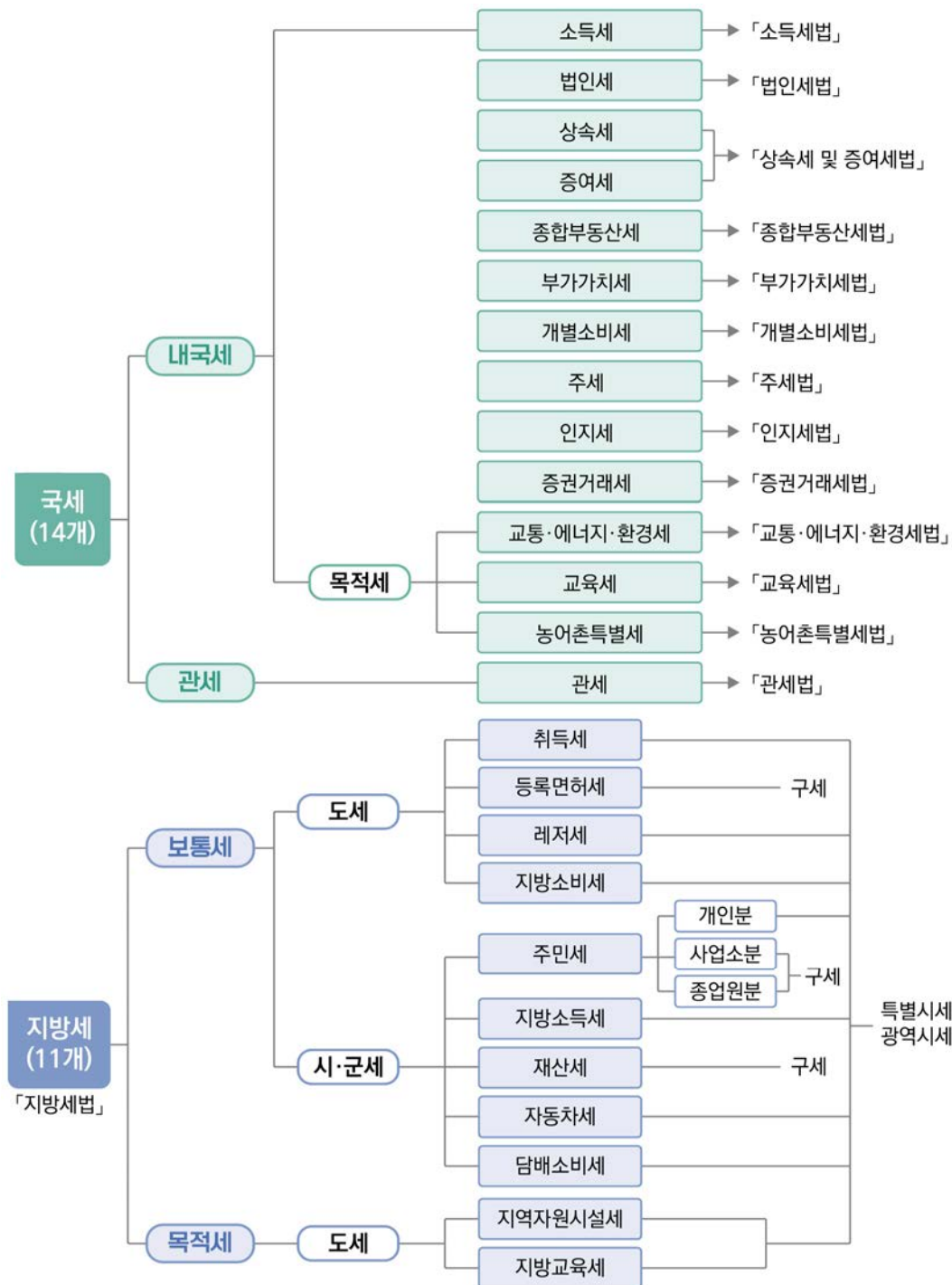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는 총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광역시의 경우 개인분에 한정),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설치된 자치구·군은 총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 다만, 광역시 내 자치구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까지 3개 세목)에 대하여 과세권을 갖는다. 도(道)⁷⁸⁾는 총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도의 관할 구역에 설치된 시·군은 총 5개 세목(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하여 과세권을 갖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 11개 모두에 대하여 과세권을 갖는다.⁷⁹⁾

78)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포함

79)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5항

■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



주: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만 광역시세에 해당(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자치구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주요 개정연혁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에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음⁸⁰⁾

1. 소득세제

■ 소득세제 주요 개정연혁 ■

연도	주요 내용
1949	「소득세법」 제정으로 불안정한 종합소득과세 체계하의 소득별 분류과세를 중심으로 출범
1950	한국전쟁 발발로 종합소득과세 폐지 및 분류소득세 전환
1974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완전한 종합소득과세 및 양도소득세 재도입
1988~1996	과세표준 구간 수 축소 및 세율 인하 (1988년 과세표준 구간 16개, 최고세율 70% → 1996년 과세표준 구간 4개, 최고세율 40%)
1996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2000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2002~2010	경기활성화 및 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하 (2002년 10%, 2005년 1%p, 2009~2010년 최고세율 제외 2%p 인하)
2008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2014	공제방식 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2015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2020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2022년 시행 예정)
2012~2021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2012년 과세표준 구간 4개, 최고세율 35% → 2021년 과세표준 구간 8개, 최고세율 45%)
2023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202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유예(2027년 시행 예정)

2. 법인세제

■ 법인세제 주요 개정연혁 ■

연도	주요 내용
1949	「법인세법」 제정으로 종전 소득세에서 독립된 세목으로 발전
1960~	투자·고용 등 산업지원 기능 강화 (1977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2018년 고용증대세제신설 등)
1991	최저한세 제도 도입
1981~1996	세율 인하(1981년 최고세율 40% → 1996년 최고세율 28%)
2010~2018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2010년 과세표준 구간 2개, 최고세율 22% → 2018년 과세표준 구간 4개, 최고세율 25%)

80) 1. 소득세제 ~ 4. 자산세제는 국회예산정책처, 「한국 조세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2018.10. 을 바탕으로, 5. 지방세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 60년사」, 2017.4. 및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세 개요」, 2024.9.를 바탕으로 각각 작성하였음

연도	주요 내용
2015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2023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p 인하
2024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소득산입보완규칙은 2025년~)

3. 소비세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 소비세제 주요 개정연혁 ■

연도	주요 내용
1949~	영업세, 물품세, 직물세, 주세 등 여러 종류의 소비세목 도입
1968~1971	(주세) 과세체계를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단계적 전환 (1968년 탁주, 약주, 주정 제외한 주종 전환, 1971년 탁주 및 약주 전환)
1976	(부가가치세) 소비세제 간소화를 위해 일반소비세로서 도입(기본세율 13%, 탄력세율 ±3%p) (특별소비세) 사치세적 성격의 특별소비세 도입
1988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인하(13 → 10%) 및 탄력세율 제도 폐지
1994	(교통세) 교통시설 자원 마련을 위해 교통세 신설
199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도입(기준금액 1.5억원) 및 가전제품 특별소비세 폐지
2000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하(1.5억원 → 4,800만원) (주세) 종가세 체계에서 주류별로 차등 적용되던 세율을 72%로 일원화
2007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세목 변경
2008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의 사치세적 기능 약화 및 외부불경제 축소 기능 강화에 따라 세목명 변경
2010~2023	(부가가치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 후 전환비율 단계적 상향 (2010년 5% → 2023년 25.3%)
2015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 추가
2020	(주세) 맥주·탁주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 및 물가연동 반영
2021~202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2021년 8,000만원, 2024년 1억 400만원) (주세) 2024년 맥주·탁주 물가연동 폐지

4. 자산세제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자산세제 주요 개정연혁 ■

연도	주요 내용
1950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정
1967	(상속세 및 증여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세액공제 도입
1975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확대 및 세율 인상(9단계, 최고세율 70% → 15단계, 최고세율 75%)
1980	(증여세) 과세 포괄주의에서 열거주의로 전환
1980~1995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15단계, 최고세율 75% → 5단계, 최고세율 50%)
1997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부개정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5단계, 최고세율 45%), 가업승계세제 도입
2000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5단계, 최고세율 50%)

연도	주요 내용
200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로 전환
2005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도입
2006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변경(인별 → 세대별 합산), 주택 기준금액 인하(9 → 6억원) 등 세부담 강화
2007~	(상속세) 가업승계세제 지속적 확대
2008~	(증여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도입 후 지속적 확대
2009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변경(세대별 → 인별 합산), 세율 인하 등 세부담 완화
2013~2015	(상속세 및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 및 상속재산 인적공제금액 인상 등
2017~2019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단계적 축소(2017년 10% → 2019년 3%)
2018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종과세 도입
2020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금액 상향(9 → 11억원) 및 세율 인상
2023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기본공제금액 상향(일반 6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 → 12억원),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2024	(증여세)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신설

5. 지방세제

가. 재산과세 :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과세 주요 개정연혁 ■

연도	주요 내용
1951	(취득세) 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명칭 변경
1952	(취득세) 차량, 금고, 소형 선박의 취득에 대한 차량세, 금고세, 주세를 취득세로 통합
1954	(면허세) 면허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오물처리시설, 소방시설 등) 부과 근거 마련
1962	(재산세) 재산세 도입
1972	(등록세) 등록세(국세) 종과세 도입(이후 등록면허세 전환 후에도 종과세 제도 유지) (대도시 내 법인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공장의 신설, 등 대상)
1973	(취득세) 사치성 재산 및 대도시 공장 신설에 대해 종과세 도입 (면허세) 면허세 과세대상 확대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 → 신고의 수리, 심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 (재산세) 부과대상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추가 및 종과세 별장 등 호화재산 및 대도시에 신설되는 공장용지에 대한 종과세 등 도입
1977	(등록세) 등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1987	(토지과다보유세) 토지과다보유세 신설 (개인의 유헴 토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1988	(면허세) 면허세 특별시·직할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전환
1990	(종합토지세)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종합토지세 도입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토지 제외)
1992	(지역개발세) 지역균형발전 및 환경개선비용 충당을 위해 지역개발세 도입

연도	주요 내용
1996	(취득세) 탄력세율 도입
2005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통합(종합부동산세 신설) 세부담상한제 도입
2006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 추가
2007	(재산세)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2009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2011	(취득세)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2단계 누진세율체계 도입 (등록면허세) 면허세와 취득 무관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면허분, 등록분)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특별광역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전환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통합 (지역자원시설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통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2014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 추가(현행 14개 과세대상 완성)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화력발전 추가
2023	(취득세)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 등 과세표준 체계 개편

나. 소득과세 : 지방소득세

■ 소득과세 주요 개정연혁 ■

연도	주요 내용
1977	(사업소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 충당 위해 사업소세 도입(재산할, 종업원할)
2010	(지방소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지방소득세 도입 (사업소세 종업원할, 주민세 소득할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소득분)
2014	(지방소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

다. 소비과세 :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 소비과세 주요 개정연혁 ■

연도	주요 내용
1961	(마권세) 국세인 마권세가 지방세로 전환
1962	(자동차세 ¹⁾) 국세인 자동차세를 지방세로 전환
1977	(자동차세) 도세에서 시·군세로 전환
1989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도입 (마권세)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
1994	(경주·마권세) 마권세 명칭 변경 및 과세대상에 경륜·경정 추가
1999	(자동차세) 한미자동차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세율 인하
2000	(주행세)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자원보전을 위해 주행세 도입
2002	(레저세) 경주·마권세 명칭 변경
2003	(레저세) 과세대상에 소싸움경기 추가

연도	주요 내용
2010	(지방소비세)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
2011	(주행세, 자동차세) 주행세 폐지 및 자동차세 통합(소유분, 주행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니코틴 용액 사용 전자담배 추가
2014	(지방소비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율 인상(5%→11%)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머금은 담배 추가
2017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연초, 고형물 사용 전자담배 추가
2018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필연형 전자담배 추가
2019~2023	(지방소비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율 단계적 인상 (11%→15% ¹⁹ →21% ²⁰ →23.7% ²² →25.3% ²³)
2021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연초의 잎 외 뿌리, 줄기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 추가

1) 주행세 통합 이전 자동차세 및 자동차세 소유분은 재산과세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편의상 소비과세로 분류

라. 기타과세 : 주민세, 지방교육세

■ 기타과세 주요 개정연혁 ■

연도	주요 내용
1973	(주민세) 주민세 도입(개인·법인 균등할부, 소득세할·법인세할·농지세할 등 소득할)
1977	(사업소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 충당 위해 사업소세 도입(재산할, 종업원할)
2001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7개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 *등록세, 경주·마관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2010	(사업소세) 사업소세 폐지(종업원할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재산할 →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사업소세 재산할 → 주민세 재산분, 균등할 → 균등분 명칭변경)
2014	(주민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편입(종업원분)
2015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세율 인하
2020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제2절 조세수입 현황

총 조세수입 규모

2024년 기준⁸¹⁾ 우리나라의 총 조세수입은 450.6조원이며, 전년(456.6조원) 대비 6.0조원(△1.3%) 감소하였다. 2024년 국세 수입은 336.5조원으로 총 조세수입의 74.7%를 차지하며, 전년(344.1조원) 대비 7.6조원(△2.2%) 감소하였다. 2024년 지방세 수입은 114.1조원으로 전년(112.5조원) 대비 1.6조원(1.4%) 증가하였다.

2024년도 총 조세수입 규모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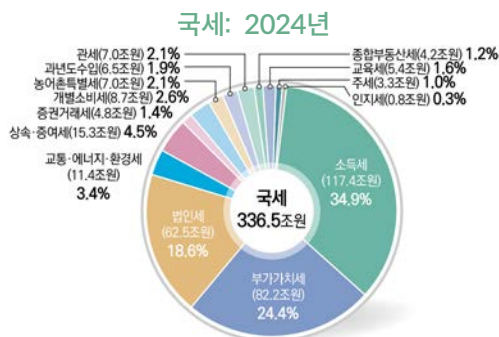
	2023년 (A)	2024년 (B)	증감	
			증감액(C=B-A)	증가율(C/A)
총 조세수입	456.6	450.6	△6.0	△1.3
- 국세	344.1	336.5	△7.6	△2.2
- 지방세	112.5	114.1	1.6	1.4

주: 2024년 지방세는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 2025, 행정안전부, 「2024 지방세통계연감」, 2024.

세목별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국세 수입은 336.5조원으로, 주요 세목인 소득세(34.9%), 법인세(18.6%), 부가가치세(24.4%)가 전체 수입의 77.9%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지방세 수입은 112.5조원으로 지방소비세(21.9%), 취득세(21.8%), 지방소득세(20.4%) 순으로 구성된다.

세목별 조세수입 현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1) 2024년 지방세 수입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로, 추후 달라질 수 있음.(확정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종료 후 10월 경 공개될 예정)

최근 조세수입 추이

최근 우리나라의 총 조세수입 추이를 보면 2015년 288.9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450.6조원으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 및 세정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경기회복 및 자산시장 호조의 영향에 따라 각각 344.1조원과 395.9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에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위축 등의 요인으로 각각 344.1조원과 336.5조원으로 감소하였다.

총 조세수입 중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약 8:2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2015년 24.6%에서 2024년 25.3%로 증가하였다. 2014년 이후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⁸²⁾ 등에 따라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2020년 26.3%까지 증가했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수출호조 등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위축 등의 요인으로 국세 수입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면서 이전연도와 달리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82)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5%였으나, 2014년부터 11%로 인상되었고, 2019년 15%, 2020년에는 21%, 2022년에는 23.7%, 2023년에는 25.3%로 인상되었음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추이



주 : 2024년 지방세는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OECD 주요국의 국세·지방세 비중

OECD 주요국의 총 조세수입 중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2022년 기준으로 미국과 독일 등 연방제 국가의 경우 약 7:3, 그 외 비연방제 국가의 경우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OECD 주요국의 국세·지방세 비중: 2022년

(단위 : %)

구 분	연방제 국가			비연방제 국가				
	미 국	독 일	평균	영 국	프랑스	일 본	한 국	평 균
국 세	58.4	45.7	68.6	93.9	68.5	62.5	77.0	86.1
지방세	41.6	54.3	31.4	6.1	31.5	37.5	23.0	13.9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24.

국세 세목별 수입 규모

2024년 기준 국세 세목별 수입 규모를 보면 주요 세목인 소득세(117.4조원), 법인세(62.5조원) 및 부가가치세(82.2조원)가 전체 국세 수입의 77.9%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세목별 수입 추이를 보면 소득세 수입이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2024년에는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 수입 금액이 증가한 동시에 법인세 등 다른 세목 수입이 감소하면서 비중은 34.9%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하였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해왔다. 2024년에는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전체 수입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법인세 등 다른 세목 수입이 감소하면서 비중은 전년 대비 3.0%p 증가한 24.4%를 기록하였다. 법인세 수입이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9.4%를 기록한 후 기업실적 회복과 함께 2022년 26.2%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과 2024년 대내외적 경제 상황으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각각 23.4%와 18.6%로 다시 감소하였다.

국세 세목별 수입 규모: 2020~2024년

(단위: 조원, %)

세 목	2020	2021	2022	2023	2024
• 국세	285.5 (100.0)	344.1 (100.0)	395.9 (100.0)	344.1 (100.0)	336.5 (100.0)
- 소득세	93.1 (32.6)	114.1 (33.2)	128.7 (32.5)	115.8 (33.7)	117.4 (34.9)
- 법인세	55.5 (19.4)	70.4 (20.5)	103.6 (26.2)	80.4 (23.4)	62.5 (18.6)
- 부가가치세	64.9 (22.7)	71.2 (20.7)	81.6 (20.6)	73.8 (21.4)	82.2 (24.4)
- 개별소비세	9.2 (3.2)	9.4 (2.7)	9.3 (2.3)	8.8 (2.6)	8.7 (2.6)
- 교통·에너지·환경세	13.9 (4.9)	16.6 (4.8)	11.1 (2.8)	10.8 (3.2)	11.4 (3.4)
- 상속·증여세	10.4 (3.6)	15.0 (4.4)	14.6 (3.7)	14.6 (4.3)	15.3 (4.5)
- 종합부동산세	3.6 (1.3)	6.1 (1.8)	6.8 (1.7)	4.6 (1.3)	4.2 (1.2)
- 관세	7.1 (2.5)	8.2 (2.4)	10.3 (2.6)	7.3 (2.1)	7.0 (2.1)
- 주세	3.0 (1.1)	2.7 (0.8)	3.8 (1.0)	3.6 (1.0)	3.3 (1.0)
- 기타	24.8 (8.7)	30.4 (8.8)	26.0 (6.6)	24.4 (7.1)	24.5 (7.3)

주: 1. ()안의 값은 각 연도 국세 수입에서 해당 세목의 비중

2. 구성 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방세 세목별 수입 규모

2024년 기준 지방세 세목별 수입 규모를 보면 취득세(26.0조원), 지방소비세(25.9조원), 지방소득세(20.0조원), 재산세(15.1조원)가 전체 지방세 수입의 76.1%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지방세 세목별 수입 추이를 보면 지방소비세의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전환비율 인상에 따라 동 세목의 수입이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6.3%에서 2024년 22.7%로 6.4%p 증가하였다. 반면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세목의 수입이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 대비 2024년 비중은 각각 1.4%p 및 0.4%p 감소하였다. 재산과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경우 2024년 기준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각 세목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8%, 1.9%로 2020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재산세의 경우 2020년 13.5%에서 2024년 13.2%로 소폭 감소하였다. 지방소득세 세수가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6%에서 2022년 20.5%까지 증가하였다가 2024년 17.5%로 다시 감소하였다.

■ 지방세 세목별 수입 규모: 2020~2024년 ■

(단위 : 조원, %)

세 목	2020	2021	2022	2023	2024
• 지방세	102.0 (100.0)	112.8 (100.0)	118.6 (100.0)	112.5 (100.0)	114.1 (100.0)
- 취득세	29.5 (28.9)	33.7 (29.9)	27.7 (23.4)	24.3 (21.6)	26.0 (22.8)
- 재산세	13.8 (13.5)	15.0 (13.3)	16.3 (13.7)	14.9 (13.2)	15.1 (13.2)
- 지방소득세	16.9 (16.6)	20.0 (17.7)	24.3 (20.5)	22.9 (20.4)	20.0 (17.5)
- 지방소비세	16.6 (16.3)	17.8 (15.8)	23.9 (20.2)	24.7 (21.9)	25.9 (22.7)
- 자동차세	8.1 (7.9)	8.4 (7.4)	7.3 (6.2)	7.3 (6.5)	7.5 (6.5)
- 담배소비세	3.6 (3.5)	3.6 (3.2)	3.6 (3.1)	3.6 (3.2)	3.5 (3.1)
- 등록면허세	2.1 (2.1)	2.2 (1.9)	1.9 (1.6)	2.0 (1.8)	2.2 (1.9)
- 주민세	2.1 (2.1)	2.3 (2.0)	2.5 (2.1)	2.7 (2.4)	2.8 (2.5)
- 지방교육세	7.1 (7.0)	7.6 (6.7)	7.5 (6.3)	7.0 (6.2)	7.2 (6.3)
- 기타	2.2 (2.2)	2.4 (2.1)	2.8 (2.3)	3.1 (2.8)	1.3 (1.1)

주 : 1. ()안의 값은 각 연도 지방세 수입에서 해당 세목의 비중

2. 구성 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총 조세수입 대비 세원별 비중

OECD는 세원⁸³⁾에 따라 조세를 소득과세(income and profit taxes), 재산과세(property taxes), 소비과세(consumption taxes)로 구분하고, 그 외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한다.⁸⁴⁾

OECD 주요 국가의 총 조세수입(Total tax revenue)⁸⁵⁾ 대비 세원별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과세 비율은 34.2%로 같은 해 OECD 평균(36.3%) 대비 2.1%p 낮고, 재산과세 비율은 11.5%로 OECD 평균(5.1%) 보다 6.4%p 높다. 소비과세 비율은 우리나라가 22.6%로 OECD 평균(31.2%) 대비 8.6%p 낮다.

총 조세수입 대비 세원별 비중: 2017~2023년

(단위: %)

구 분	한국							OECD 평균
	'17	'18	'19	'20	'21	'22	'23	'23
1000 소득과세	32.1	34.1	33.2	30.9	33.2	37.4	34.2	36.3
- 1100 개인소득세	17.9	18.4	17.5	18.8	20.4	20.5	19.8	23.7
- 1200 법인소득세	14.2	15.7	15.7	12.1	12.8	16.8	14.4	11.8
4000 재산과세	11.7	11.6	11.4	14.2	15.1	11.9	11.5	5.1
- 4100 부동산 관련 재산세	3.1	3.1	3.4	3.7	4.0	3.8	3.5	2.8
5000 소비과세	27.7	26.3	25.8	24.4	23.1	22.7	22.6	31.2
- 5111 부가가치세	16.0	15.3	15.7	15.1	14.4	15.3	15.3	20.5
6000 기타 ¹⁾	2.5	2.3	2.5	2.1	2.1	2.2	2.0	0.7

주: 1) 기타는 1000, 2000, 3000, 4000, 5000번 외 조세를 의미함

1. OECD 평균은 OECD Tax Statistics에 제시된 36개국(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제외) 기준이며, '23년 미제출 국가(호주, 일본, 그리스)는 '22년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을 가정하여 평균을 산출함

자료: OECD Tax Statistics(OECD, 「Revenue Statistics: Comparative table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3) 세원(tax sources)이란 조세가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원천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자분을 의미함

84) 동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세목을 분류하면 소득과세로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해당하고, 재산과세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하며, 소비과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가 포함됨. 그 외 과년도수입 등은 기타로 분류할 수 있음

85) OECD 분류 기준에 따른 총 조세수입(Total tax revenue)에는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도 포함됨

제3절 예산과정과 조세

국가의 재정지출은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을 위하여 국세수입의 예산과정은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구체적인 국세수입의 예산과정과 최근 10년간 국세수입의 예산 및 결산 추이를 살펴본다.

1. 국세수입 예산과정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⁸⁶⁾하며, 국세수입 예산안은 정부가 매 회계연도 120일 전(매년 9월 3일)까지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포함된다. 다만, 국세수입 예산안이라는 용어는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재정 관련 법률에 그 정의가 존재하는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세입예산안 중 국세의 수입⁸⁷⁾에 관련된 부분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21조는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세입예산은 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7조에 따라 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등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 소관 사무이므로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편성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목별 세수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수입 예산안을 작성·편성하고 있다.⁸⁸⁾

예산안 제출 시에는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수입과 관련된 첨부서류에는 ① 세입예산추계 분석보고서,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⁸⁹⁾가 있다. 이 중 세입예산추계 분석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2호의2에 따라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86) 「국가재정법」 제19조

87)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함(「국고금 관리법」 §2 2)

88)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는데 해당 지침은 세출예산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시 매뉴얼로 사용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도 각 부처에 통보하지만, 동 지침에도 세입에 관해서는 과목 구분만 제시하고 있음

89)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연평균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일몰기한 도래 항목에 대하여는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이는 조세지출예산서와 달리 별도 제출하는 서류이고 예산안 첨부서류는 아님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세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종합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다.

정부는 통상 매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작성된 세입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⁹⁰⁾ 세입예산안이 관계 법률의 제정·개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제7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심사 이전에 관계 법률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관계 법률의 제정·개정 전에 세입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세입예산안에 의하여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의하여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⁹¹⁾

또한 「국회법」 제85조의3은 헌법상 예산안 의결 기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예산안 등⁹²⁾과 세입예산의 변경을 초래하는 법률안(이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라 함) 중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산안 등과 국회의장이 지정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다음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본회의에 부의된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매년 12월 2일)까지 의결되어야 하며,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예산안 의결 이전에 의결하게 된다.

90) 정부는 매년 7월 정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에 정부 세법개정안을 제출함

91)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415.

92)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국회법」 제85조의3)

국세수입의 예산과정

구분기준	종류	근거 규정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등에 대한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국세 세목별 세수 추계 바탕으로 1차 세입예산 요구서 작성 및 제출	「국가재정법」 § 31, § 66⑤
정부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 기획재정부는 국세 세목별 세수 추계 및 예산 편성	「국가재정법」 § 32, § 66⑥
예산안 국회 제출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매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 제출 - 국세수입의 세목별 예산안과 함께 첨부서류 제출 ① 세입예산추계 분석보고서 -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 포함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조세지출)의 직전연도 실적과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	「국가재정법」 § 33, § 34, § 68①
예산안 본회의 보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국회법」 § 84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의장은 예산안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음	「국회법」 § 84①, ②, ⑦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본회의의 부의	「국회법」 § 84②, ③, ⑤, ⑦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 헌법상 예산안 의결 기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고 자동부의 상임위원회는 동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	헌법 § 54② 「국회법」 § 85조의3
본회의 심의·확정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안 의결 본회의의 부의,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토론, 표결·확정 - 이때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같이 의결됨	헌법 § 54② 「국회법」 § 84조의2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재정」의 '우리나라의 예산·결산 과정'을 바탕으로 작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제도

의의

2012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헌법상 예산안 의결 기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입예산안에 부수되는 법률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제도가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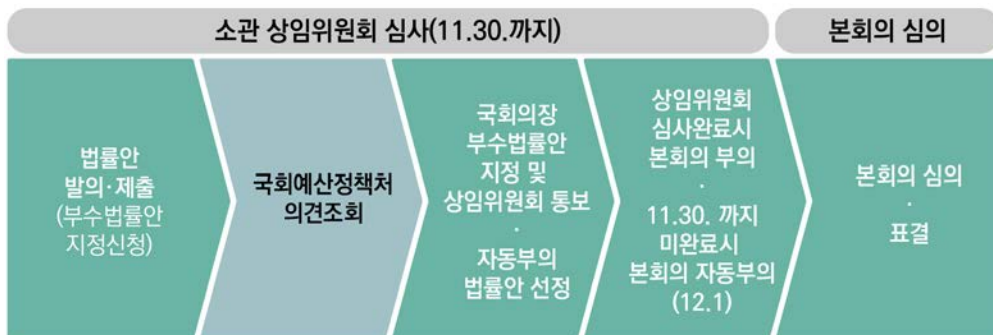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위해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발의·제출할 때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표시된 법률안을 국회예산정책처에 송부하여 의견을 요청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음연도 세입예산안과의 관련성 및 예상되는 세수효과 등을 검토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참고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여 각 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④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처리절차 ■



제도 시행경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제도는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신청한 법률안 485건(의원발의 325건, 정부제출 160건) 중 279건이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2024년에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신청한 법률안 50건(의원발의 37건, 정부제출 13건) 가운데 35건(의원발의 22건, 정부제출 13건)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었다. 이중 동일제명 법률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안으로 반영된 법률안을 제외한 21건이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20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등 현황: 2014~2024년 ■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지정신청 (의원발의/정부제출)	62 ¹⁾ (45/17)	16 (4/12)	74 (58/16)	47 (35/12)	54 (37/17)	49 (34/15)	43 (28/15)	29 (15/14)	26 (11/15)	35 (21/14)	50 (37/13)	485 (325/160)
국회예산정책처 검토의견 회신	62	16	74	47	54	49	43	29	26	35	50	485
부수 법률안 지정	31	15	31	25	28	32	18	17	25	22	35	279
본회의 통과	13	15	16	15	15	25	16	16	20	15	20	186

주: 1) 제도 시행 전 제출되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미표시된 법률안(의원발의) 2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국세수입의 예산과 결산 현황

국세수입의 예산과정에 따라 편성된 국세는 회계연도 중 징수되며, 최종 징수실적이 결산금액이 된다. 국세수입의 징수실적은 국세의 과세대상에 영향을 주는 각종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정부의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당초 편성된 예산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의 영업실적 등의 영향을 받고, 소득세는 임금상승률 증가, 취업자 수 변동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부동산, 주가지수 등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는 관련 세목에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국세수입의 예산 및 결산의 차이를 살펴보면, 2021회계연도 및 2022회계연도에는 본예산 대비 각각 61.3조원, 52.6조원으로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기업의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부동산 및 주가지수의 상승으로 자산 관련 세수의 호조가 지속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2023회계연도의 경우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법인영업실적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을 중심으로 본예산 대비 56.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다. 2024회계연도의 경우도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법인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본예산 대비 30.8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다.

■ 국세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 2015~2024년 ■

(단위: 조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본예산(A)	221.1	222.9	242.3	268.1	294.8	292.0	282.7	343.4	400.5	367.3
추경예산	215.7	232.7	251.1	-	-	279.7	314.3	396.6	- ²⁾	- ²⁾
결산(B)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336.5
차 이 ¹⁾ (B-A)	△3.3	19.7	23.1	25.5	△1.3	△6.5	61.3	52.6	△56.4	△30.8
(추경)	(2.2)	(9.8)	(14.3)	-	-	(5.8)	(29.8)	(△0.7)	- ²⁾	- ²⁾

주: 1) 결산 대비 본예산의 차이이며, ()안의 값은 결산 대비 추경예산의 차이

2) 2023년과 2024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3년과 2024년 세수를 재추계하여 각각 본예산 대비 △59.1조원인 341.4조원(2023.9.18.)과 본예산 대비 △29.6조원인 337.7조원(2024.9.25.)으로 발표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국세수입 경정 현황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매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매년 12월 2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을 본예산이라 한다. 그러나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국가재정법」⁹³⁾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예산도 함께 편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국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거나,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으며, 국세 수입 실적이 당초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세수입 증액경정을 통해 초과세 수액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표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수입 경정이 있었던 사례이다.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각각 9.8조원, 8.8조원을 증액경정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에도 대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각각 31.5조원, 53.3조원의 국세수입 경정이 있었다. 이에 반해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세수입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2차례 추가경정예산에서 각각 0.8조원 및 11.4조원을 감액경정하였다. 한편, 2023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세수를 본예산 대비 △59.1조원으로 재추계하여 발표하였다. 2024년의 경우도 2023년과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국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9월 세수를 본예산 대비 △29.6조원으로 재추계하여 발표하였다.

■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수입 경정 내역 ■

(단위 : 조원)

연도	제출일 의결일	추가경정예산 규모		추가경정예산 재원	
		정부안	국회확정	국세수입 경정	그 외
2016년 1회	7.26 9.2	11.0	10.9	증액경정 9.8	세계잉여금 1.2
2017년 1회	6.7 7.22	11.2	10.2	증액경정 8.8	세계잉여금 1.1 기금 여유자금 1.3
2020년 1회	3.4 3.17	8.5	10.9	감액경정 △0.8	한국은행 잉여금 0.7 기금 여유자금 등 0.7 국채 발행 10.3
2020년 3회	6.3 7.3	23.9	23.7	감액경정 △11.4	지출구조조정 10.1 기금 여유자금 등 1.4 국채 발행 23.8
2021년 2회	7.2 7.24	33.0	34.9	증액경정 31.5	세계잉여금 1.7 기금 여유자금 등 1.8
2022년 2회	5.13 5.29	59.4	62.0	증액경정 53.3	지출구조조정 7.0 세계잉여금 4.6 기금 여유자금 등 2.1 한국은행 잉여금 1.4

총수입 대비 국세수입의 비중 변화

정부는 조세 이외에도 부담금, 재산수입,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지만, 주된 수입원은 조세이다. 정부 수입원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중앙정부의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간 총수입에서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8.6%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8년 63.1%까지 상승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동 비중도 59.6%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2021년 및 2022년은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총수입 대비 국세수입의 비중은 60.3%, 64.1%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다시 60.0%로 감소하였다.

총수입 대비 국세수입의 비중

(단위 : 조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수입(A)	356.4	371.8	401.8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573.9
국세수입(B)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국세비중(B/A)	57.7%	58.6%	60.4%	61.6%	63.1%	62.0%	59.6%	60.3%	64.1%	60.0%

주 : 결산금액 기준

자료 : NABO 재정통계시스템(<https://www.nabostats.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국세수입의 배분

국세수입은 정부재정의 주된 수입원으로서 지출예산의 주요 재원이다. 국세 중 일부 세목은 지출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거나, 목적세와 같이 세목의 도입 취지에 맞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세입배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국세수입 중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는 특별회계로 배분되고, 그 외의 국세는 모두 일반회계로 배분된다.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하는 회계이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액 전입되고, 주세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

93)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액 전입된다.

반면에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로서 세목별 국세 수입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세목별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는 지출항목(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으며, 특정 목적의 목적세(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별도의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분된다.

우선 관련 법률에 세목별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는 지출항목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세원의 편재 및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배부대상 내국세(일반회계 중 관세 제외)의 19.24%가 배분되며, 이때 내국세는 목적세(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제외하고, 부동산교부세로 100% 배부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부되는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를 차감한 금액이 해당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제도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써, 내국세의 20.79%가 배분되며, 추가적으로 목적세인 교육세의 일부가 배분된다.

목적세인 교육세는 도입 당시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모두 배분되었지만 2017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⁹⁴⁾가 설치되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은 차감하게 되었다. 2023년부터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⁹⁵⁾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교육세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동 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교육세 중 두 개의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배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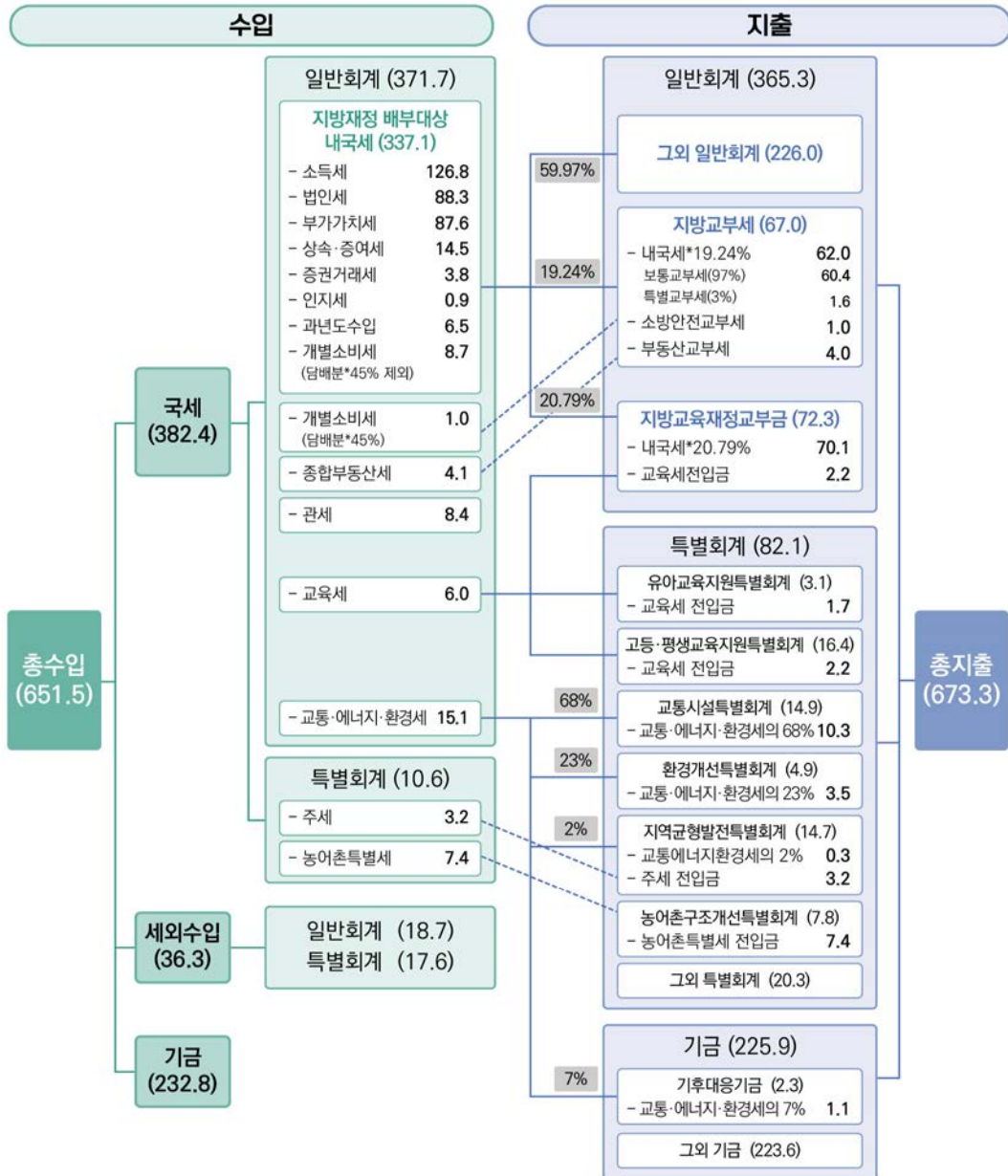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입 초기(2007년 교통세에서 명칭 변경)에는 교통시설특별회계(80%), 환경개선특별회계(1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3%)로 배분되었으나 이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한 배분비율을 높였고, 2022년에는 배분대상에 기후대응기금까지 포함되면서 현재는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 기후대응기금(7%)에 배분되고 있다.

9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2016.12.20. 제정)으로 2017~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2020~2023년, 2023~2025년으로 2회에 걸쳐 3년씩 추가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음

9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2023.1.1. 시행)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

국세수입의 배분: 2025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 주: 1. 예산분류상 프로그램(관) 기준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주세, 과년도수입이 해당함
2. 지출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정산분이 반영된 2025년 확정예산에 따른 금액으로 지방재정 배부대상 내국세에서 법정 배분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지출의 특별회계 예산액 82.1조원은 지출예산이지만, 국세의 배분과정을 도식화하기 위해 지출 특별회계의 금액은 해당 세목이 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금액을 기재함
4. 국세 배분 기준이 되는 근거 법률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0893호> 부칙 제4조의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2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등이 있음

제4절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1.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GDP로 나눈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경제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재정 규모를 세입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다만, 명목GDP에 대한 거시적인 지표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조세부담률은 각자의 소득수준, 소비행태, 재산보유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text{조세부담률} = \frac{\text{총조세(국세 + 지방세)}}{\text{명목GDP}} \times 100$$

2014년 16.3%이었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2년 기준 22.1%로 꾸준한 상승하였으나, 2023년 국세수입실적 감소에 따라 19.0%⁹⁶⁾⁹⁷⁾로 하락하였다. 2023년 OECD 회원국 38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5.4% 및 G7 평균 24.5%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p에서 2023년 6.4%p로 축소되었다.

■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 추이: 2014~2023년 ■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¹⁾	16.3	16.6	17.4	17.9	18.8	18.8	18.8	20.6	22.1	19.0
G7 평균 ²⁾	23.8	24.1	24.1	24.4	24.2	24.0	24.2	24.9	25.1	24.5
OECD 평균 ²⁾	24.6	24.7	25.3	25.0	25.0	24.9	24.8	25.5	25.6	25.4

주: 1)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4.6.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확정 GDP(신계열, 2020 기준년)를 반영하여 계산한 값임

2) 자료 미제출 국가(일본과 호주)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평균 계산한 값임

1. OECD 평균은 38개국 기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https://stats.oecd.org>)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96) 우리나라의 2024년 명목GDP(2549.1조원, 2020 기준년 잠정치)와 2024년 지방세 수입(114.1조원, 잠정치)에 따라 산출한 2024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8%임

97) 참고로, 2015년을 기준년(구계열)으로 한 명목GDP를 바탕으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구계열	17.1	17.4	18.3	18.8	19.9	19.9	20.0	22.0	23.8	20.4

2.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국세, 지방세)뿐만 아니라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⁹⁸⁾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명목GDP로 나눈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에 해당하지만, 국민이 납부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부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 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text{국민부담률} = \frac{\text{총조세} + \text{사회보장기여금}}{\text{명목GDP}} \times 100$$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4년 22.3%에서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의 영향이 반영됨에 따라 2023년 26.8%⁹⁹⁾로 상승하였다. OECD 회원국 38개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4년 32.8%에서 2023년 33.8%로 증가였고, G7 국가의 평균 국민부담률 또한 OECD 평균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추세적으로는 유사한 흐름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OECD 및 G7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10.5%p에서 2023년 7.0%p로 축소되는 추세이다.

■ 최근 10년간 국민부담률 추이: 2014~2023년 ■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¹⁾	22.3	22.6	23.5	24.1	25.2	25.7	26.2	27.9	29.7	26.8
G7 평균 ²⁾	34.9	35.2	35.3	35.6	35.5	35.4	35.9	36.5	36.8	36.0
OECD 평균 ²⁾	32.8	32.9	33.5	33.3	33.4	33.3	33.5	34.0	33.9	33.8

주 : 1)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24.6.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확정 GDP(신계열, 2020 기준년)를 반영하여 계산한 값임

2) 자료 미제출 국가(일본과 호주)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평균 계산한 값임

1. OECD 평균은 38개국 기준임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https://stats.oecd.org>)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98) 그 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99) 참고로, 2015년을 기준년(구계열)으로 한 명목GDP를 바탕으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구계열	23.4	23.7	24.7	25.4	26.7	27.2	27.7	29.8	32.0	28.8



Tax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제2부 국세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1장

소득세

제1절 개요

1. 개념 및 의의

소득세(income tax)는 개인의 소득(income)을 세원(tax base)으로 부과하는 조세이다. 본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 외에 모든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총칭하며,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와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만을 ‘소득세’로,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로 지칭한다. 소득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이므로 국세에 해당하며, 조세수입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보통세이다.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소득을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학에서는 소득을 정의할 때, 전통적인 헤이그-사이먼(Haig-Simons, H-S) 기준을 사용한다.¹⁾ 동 기준에 따르면, 소득은 주어진 기간 동안 실제 소비와 잠재 소비 증가(‘저축과 같은 부의 순증가분’을 의미함)의 화폐가치로 정의된다. H-S 기준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동 기준에 따를 경우, 세금 부과에 있어 현실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필요경비 대상의 범위 설정이 어렵다는 점, 실현(realized)된 자본이득 외에 미실현(unrealized)된 자본이득²⁾ 까지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세대상이 되는 개인의 소득을 세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같이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을 열거주의 방식이라 한다.³⁾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은 총 8가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⁴⁾으로 열거된다. 이 중 앞의

1) Harvey S. Rosen, Ted Gayer, 「Rosen의 재정학」 (10판), 2020. p.463.

2) 현실에서는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3) 우리나라 외에 영국, 독일 등도 열거주의 방식을 따르며, 반면에 이와 상반되는 개념은 포괄적인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서 미국, 일본 등이 동 방식을 따름

6가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구분되며, 뒤의 2가지 소득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 소득으로 구분된다.

현행 소득세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과 같이 장기형 성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분류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 소득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비교적 다년간의 소득이 한꺼번에 과세되는 결집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류과세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참고로 종합과세 대상 중 일부 소득에만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는데, 분리과세⁵⁾는 해당 소득을 귀속자별 혹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지급받을 때 별도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이다.

2. 기능 및 특징

가. 기능

소득세의 기능은 크게 국가 재정의 재원을 확보하는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소득은 재산, 소비와 함께 가장 기본이 되는 세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과세를 통해 국가재정 유지에 필요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세율을 납부하는 누진과세의 특성과 결부되어, 소득재분배 기능⁶⁾을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총 8단계로, 과세표준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6~45%)이 적용된다.

나. 특징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은 2023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나,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점차 상승하는 모습이다. 세율을 살펴보면, 2022년 우리나라 소득세의 최고명목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나,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로 인해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만, 지난 10년간 최고명

4) 2025.1.1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추가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2024.12.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안대로 개정이 이루어짐

5) 분리과세 소득에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지급시 14%의 세율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다만,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 신고 필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 있음

6) 다만, 현실에서 소득세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는 실증적인 부분일 수 있음. 우리나라 소득세는 세부담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함

목세율 및 실효세율은 모두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과세기반 측면에서 우리나라 소득세의 주요한 특징은 고소득구간에 집중된 세부담으로 인해 세원(tax base)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세부담 수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 수준은 2023년 기준 5.7%로 OECD 평균 8.2%에 비해서는 2.5%p 낮고, G7 국가 평균 10.1%에 비해서는 4.4%p 낮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은 2014년 3.8%에서 2023년 5.7%로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동 기간 중 한국의 GDP 대비 세부담 상승폭은 약 1.9%p로 OECD 평균 0.4%p, G7 평균 0.7%p에 비해 높은 편이다.

■ 명목GDP 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국제비교 ■

(단위: %, %p)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3.8	4.8	5.2	6.1	6.6	5.7	1.9
OECD 평균	7.8	8.0	8.3	8.3	8.2	8.2	0.4
G7 평균	9.3	9.7	10.0	10.2	10.3	10.1	0.7

주: 1. 한국의 GDP는 구계열 기준(2015년 기준년)으로, 2024년 공표된 신계열(2020년 기준) 수치와 차이 있음

2. OECD 평균의 2023년 수치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호주와 그리스 제외한 36개국 대상 평균임, 그 외는 38개국 평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23년 기준 19.8%로 GDP 대비 세부담과 유사하게 OECD 평균 및 G7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ECD 평균은 23.6%, G7 국가 평균은 30.2%로,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각각 3.8%p, 10.4%p 낮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 역시 2014년 16.3%에서 2023년 19.8%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3.6%p 상승해, OECD 평균 상승폭 0.8%p, G7 국가 2.8%p에 비해 높다.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 추이: 국제비교

(단위: %, %p)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16.3	17.5	18.8	20.4	20.5	19.8	3.6
OECD 평균	22.8	23.5	24.1	23.7	23.6	23.6	0.8
G7 평균	27.4	28.1	28.6	28.7	28.8	30.2	2.8

주: 1. OECD 평균의 2023년 수치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호주, 그리스, 일본 제외한 35개국 평균임, 그 외는 38개국 평균

2. G7 평균의 2023년 수치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일본 제외한 6개국 평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율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명목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2023년 기준 49.5%로 OECD 평균 42.7%에 비해서는 높고, G7 평균(49.7%)과는 유사한 편이다. 과세표준 구간의 개수는 한국은 8개로 OECD 평균(5.3개), G7 평균(5.1개)에 비해 많은 편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명목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2014년 41.8%에서 2022년 49.5%로 7.7%p 상승하였으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개수도 2014년 5개에서 2023년 8개로 증가하였다. 최고세율 구간의 지속적인 신설로 과세표준 구간 개수도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OECD 평균 소득세 최고명목세율의 상승폭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1.6%p(2014년 41.1% → 2023년 42.7%) 상승하였고, 과세표준 구간 개수도 0.7개(2014년 4.6개 → 2023년 5.3개) 증가하였다. 참고로 G7 국가의 최고명목세율 변화폭과 과세표준 구간 개수의 변화폭은 OECD 평균에 비해 작은 편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국제비교

(단위: %, %p, 개)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최고명목세율 (지방세 포함)	한국	41.8	46.2	46.2	49.5	49.5	49.5	7.7
	OECD 평균	41.1	41.9	42.3	42.5	42.5	42.7	1.6
	G7 평균	48.8	49.7	49.7	49.7	49.7	49.7	0.9
과세표준 구간 개수 (중앙정부 기준)	한국	5.0	7.0	7.0	8.0	8.0	8.0	3.0
	OECD 평균	4.6	5.1	5.1	5.2	5.2	5.3	0.7
	G7 평균	5.0	5.3	5.3	5.3	5.1	5.1	0.1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 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지난 10년 동안 모든 소득 구간에서 상승하였다. 평균 임금의 67%, 100%, 167% 수준에서 2014~2023년 동안 각각 2.07%p, 2.15%p, 3.43%p 상승하였다. OECD 평균과 G7 국가 평균은 소득이 낮은 평균임금 67% 수준에서는 지난 10년간 실효세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평균임금 167% 수준에서는 소폭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실효세율 상승 폭은 OECD 국가보다 비교적 큰 편이기는 하나, 2023년 기준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로 인해 OECD 평균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실효세율은 평균임금 100% 이하 구간에서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평균임금의 67% 수준에서는 OECD 평균의 31.69%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이 높은 평균임금 167% 수준에서는 이보다는 높아져,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57.84% 수준이다.

■ 총소득 대비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

(단위: %, %p)

구분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평균임금 67%	한국(A)	1.41	2.54	2.60	3.08	3.61	3.48	2.07
	G7 평균	10.88	10.52	10.38	10.37	10.45	10.63	-0.25
	OECD 평균(B)	11.11	10.93	10.85	10.86	10.83	10.98	-0.13
	A/B(%)	12.69	23.24	23.96	28.36	33.33	31.69	-
평균임금 100%	한국(A)	4.70	6.10	6.13	6.52	6.90	6.84	2.15
	G7 평균	16.34	16.34	16.03	15.83	16.03	16.25	-0.09
	OECD 평균(B)	15.12	15.17	15.09	15.04	15.17	15.38	0.26
	A/B(%)	31.08	40.21	40.62	43.35	45.48	44.47	-
평균임금 167%	한국(A)	8.63	11.11	11.13	11.71	12.28	12.06	3.43
	G7 평균	23.22	23.14	23.08	23.26	23.53	23.52	0.30
	OECD 평균(B)	20.57	20.63	20.58	20.60	20.79	20.85	0.28
	A/B(%)	41.95	53.85	54.08	56.84	59.07	57.84	-

주: 1. 무자녀 단독가구 기준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67%, 100%, 167% 수준의 총소득 대비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임

2. 전체 OECD 국가의 총소득 대비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 현황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자료: OECD Taxing wage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과세기반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을 아래 표와 같이 소득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소득구간에 집중된 세부담으로 인해 소득세의 과세기반이 협소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종합소득 신고인원의 약 11.6%를 차지하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상인 종합소득신고자가 전체 종합소득금액의 절반이 넘는 55.1%를 차지하고, 전체 결정세액의 86.6%를 부담한다. 보다 상위구간을 살펴보면, 전체 인원의 약 0.9%에 해당하는 종합소득금액 3억원 이상인 종합소득신고자가 전체 종합소득금액의 20.3%를 점유하고, 전체 결정세액의 47.9%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은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0% 미만인데, 이들은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의 92.4%에 해당한다. 이후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서 10%대에 도달한 실효세율은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0%대 수준에, 5억원 초과시 30%대 수준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 2023년 ■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인원수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실효 세율 B/A,%
	만명	%	누적%	조원 (A)	%	누적%	조원 (B)	%	누적%	
합계	1,148.1	100.0		385.7	100.0		51.5	100.0		13.4
0~2천만원 ¹⁾	672.6	58.6	100.0	58.4	15.1	100.0	1.1	2.1	100.0	1.9
2~4천만원	251.7	21.9	41.4	70.8	18.3	84.9	2.8	5.5	97.9	4.0
4~6천만원	90.7	7.9	19.5	44.2	11.4	66.5	3.0	5.8	92.4	6.8
6~8천만원	45.7	4.0	11.6	31.5	8.2	55.1	2.8	5.5	86.6	9.0
8천~1억원	25.7	2.2	7.6	22.9	5.9	46.9	2.6	5.0	81.1	11.3
1~2억원	41.7	3.6	5.4	56.4	14.6	41.0	9.3	18.0	76.1	16.5
2~3억원	9.6	0.8	1.7	23.1	6.0	26.3	5.2	10.1	58.0	22.6
3~5억원	5.9	0.5	0.9	22.5	5.8	20.3	5.9	11.4	47.9	26.2
5~10억원	3.1	0.3	0.4	21.3	5.5	14.5	6.4	12.4	36.5	30.1
10억원 초과	1.4	0.1	0.1	34.7	9.0	9.0	12.4	24.0	24.0	35.7

주: 1) 종합소득금액 0 이하도 포함

1. '누적%' 는 각 구간별 비중을 소득 최상위구간부터 누적하여 합산한 것임

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이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인원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근로소득세의 경우, 총급여 8천만원 이상인 자가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인원의 약 12.1%를 차지하며, 이들이 전체 급여총계의 35.4%를 점유하고, 전체 근로소득세부담의 약 76.4%를 부담하고 있다. 보다 상위 소득구간인 총급여 2억원 초과자는 전체 인원의 약 0.9%에 해당하며, 급여총계는 전체의 약 6.9%를 점유하고 있으며, 결정세액은 전체 세부담의 약 29.0%를 부담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총급여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10% 미만인데, 총급여 1억원 미만 근로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3.3%에 달한다. 이후 소득상승에 따라 실효세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총급여 2억원을 초과하면 20%대에, 총급여 5억원 초과시 30%대 수준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근로소득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 2023년 ■

총급여구간별	인원수			급여총계			결정세액			실효세율
	만명	%	누적%	조원(A)	%	누적%	조원(B)	%	누적%	B/A.%
합계	2,085.2	100.0	-	922.6	100.0	-	59.8	100.0	-	6.5
0~2천만원	543.3	26.1	100.0	54.0	5.9	100.0	0.1	0.1	100.0	0.1
2~4천만원	726.6	34.8	73.9	220.9	23.9	94.1	1.8	3.0	99.9	0.8
4~6천만원	368.2	17.7	39.1	184.2	20.0	70.2	5.3	8.9	96.9	2.9
6~8천만원	194.3	9.3	21.4	137.0	14.9	50.2	7.0	11.7	88.0	5.1
8천~1억원	113.6	5.4	12.1	102.9	11.2	35.4	7.7	12.8	76.4	7.4
1~2억원	121.5	5.8	6.7	160.0	17.3	24.2	20.6	34.5	63.5	12.9
2~3억원	11.3	0.5	0.9	26.9	2.9	6.9	5.9	9.9	29.0	22.1
3~5억원	4.5	0.2	0.3	16.7	1.8	4.0	4.5	7.6	19.1	27.0
5~10억원	1.6	0.1	0.1	10.5	1.1	2.2	3.3	5.5	11.6	31.5
10억원 초과	0.5	0.0	0.0	9.4	1.0	1.0	3.6	6.0	6.0	38.2

주: '누적%' 는 각 구간별 비중을 소득 최상위구간부터 누적하여 합산한 것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득금액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1인당 평균 소득 및 결정세액

다음은 소득금액 구간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인원수 비중, 각 구간별 1인당 평균 소득 금액, 1인당 과세표준, 1인당 평균 결정세액 및 실효세율을 정리한 표이다. 소득금액의 기준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종합소득금액 규모, 근로소득세 신고자는 급여총계 규모이다.

■ 종합소득세의 소득구간별 1인당 평균 세부담 현황: 2023년 기준 ■

(단위: 백만원, %)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인원수 비중 (%)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실효세율
합계	100.0	33.6	27.5	4.5	13.4
0~2천만원	58.6	8.7	5.3	0.2	1.9
2~4천만원	21.9	28.1	20.6	1.1	4.0
4~6천만원	7.9	48.7	38.4	3.3	6.8
6~8천만원	4.0	69.0	56.7	6.2	9.0
8천만원~1억원	2.2	89.1	76.0	10.1	11.3
1~2억원	3.6	135.3	120.9	22.3	16.5
2~3억원	0.8	241.5	226.0	54.6	22.6
3~5억원	0.5	378.5	361.1	99.2	26.2
5~10억원	0.3	677.3	654.8	204.0	30.1
10억원 초과	0.1	2,481.0	2,438.4	886.2	35.7

주: 1. 각 종합소득금액구간별로 총수입금액인원수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금액을 계산함
2. 실효세율은 종합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 비율

■ 근로소득세의 소득구간별 1인당 평균 세부담 현황: 2023년 기준 ■

(단위: 백만원, %)

총급여구간별	인원수 비중 (%)	1인당 평균			
		급여총계	과세표준	결정세액	실효세율
합계	100.0	44.2	25.1	2.9	6.5
0~2천만원	26.1	9.9	2.4	0.0	0.1
2~4천만원	34.8	30.4	13.4	0.2	0.8
4~6천만원	17.7	50.0	25.8	1.4	2.9
6~8천만원	9.3	70.5	41.2	3.6	5.1
8천만원~1억원	5.4	90.5	58.1	6.7	7.4
1~2억원	5.8	131.7	95.7	17.0	12.9
2~3억원	0.5	239.0	197.5	52.7	22.1
3~5억원	0.2	374.7	326.6	101.1	27.0
5~10억원	0.1	663.9	604.5	208.8	31.5
10억원 초과	0.0	1,965.3	1,873.8	750.7	38.2

주: 1. 각 총급여구간별로 급여총계인원수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금액을 계산함
2. 실효세율은 급여총계 대비 결정세액 비율

3. 최근 현황

2024년 소득세 규모

2024년 소득세 수입은 117.4조원으로, 2023년 115.8조원 대비 1.6조원(1.4%) 증가하였다. 소매판매 및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전년대비 1.9조원(-8.9%), 0.9조원(-5.0%) 감소하였으나,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하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이자소득세는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면서 전년 대비 2.0조원(38.0%) 증가를 기록하였다.

2024년 소득세 수입액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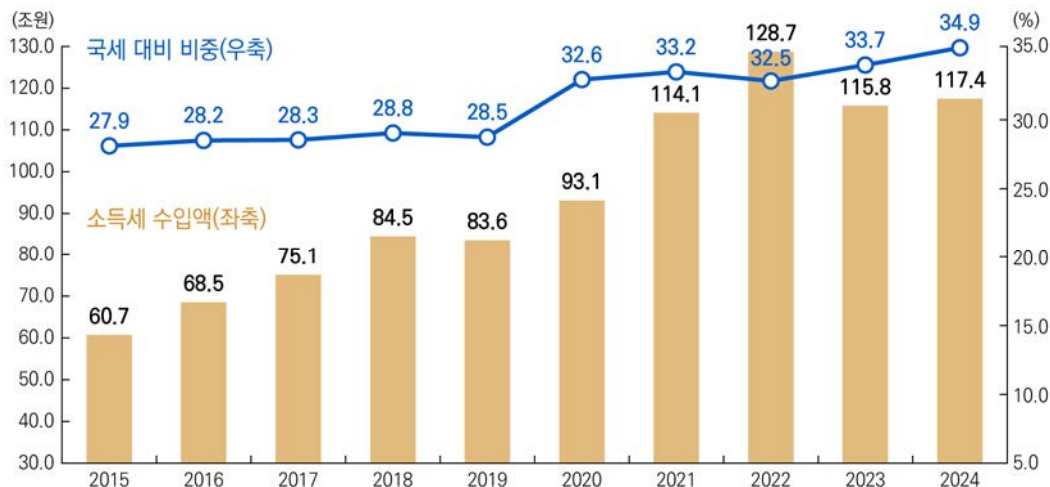
구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	
			증감액(C=B-A)	증가율(C/A)
소득세	1,158,330	1,174,179	15,849	1.4
- 종합소득세	214,368	195,264	△19,104	△8.9
- 양도소득세	175,560	166,852	△8,708	△5.0
- 근로소득세	591,442	610,491	19,049	3.2
- 그 외	176,960	201,572	24,612	13.9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소득세 추이

소득세 수입은 2015년 60.7조원에서 2022년 128.7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23년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14.7조원, △45.5%) 등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12.9조원 감소한 115.8조원을 기록하였고, 2024년은 2023년 대비 소폭(1.6조원, 1.4%) 증가한 117.4조원을 기록하였다. 전체 국세수입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7.9%에서 2024년 34.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최근 소득세 수입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득세의 대표 세목인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수입액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합소득세 수입은 2015년 12.8조원에서 2024년 19.5조원으로 2015년 이후 연평균 4.8% 증가하였다. 동기간 동안 종합소득세의 증가는 국세청의 징세행정 강화⁷⁾에 따른 확정신고인원 증가 및 신고소득(종합소득금액)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다만, 확정신고인원 및 종합소득금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9년은 근로장려세제 개편⁸⁾에 따른 지급금액 증가, 2020~2021년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납부유예 조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22년은 2021년에 납부유예된 중간예납분이 수납되고, 경기회복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3년은 다시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24년은 소매판매 감소의 영향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시행된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⁹⁾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 등이 반영됨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7) 국세청은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자발적 성실신고 독려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전안내 대상도 확대하였음.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는 2014년 6만명에서 2019년 18만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성실신고 사전안내대상자는 2014년 1.5만명에서 2019년 70만명으로 확대되었음

8)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수입은 각각의 수입액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임. 2018년 근로·자녀장려세제 개편(2019년 시행)으로 근로·종합소득세수에서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이 2018년 1.8조원에서 2019년 5.6조원(+3.8조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9년의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증가율도 전년도보다 다소 둔화되었음

9) 과세표준 1200/4600만원 → 1400/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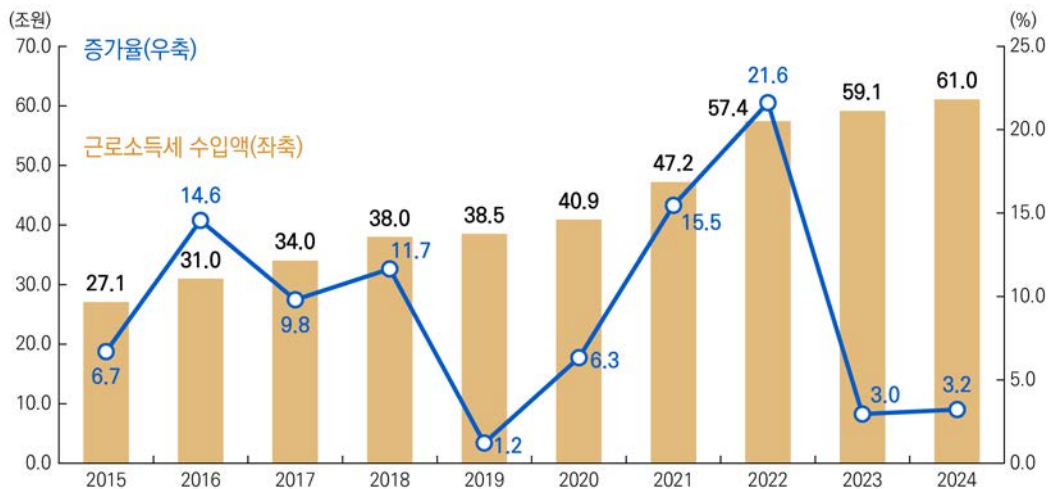
■ 종합소득세 수입액의 추이: 2015~2024년 ■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근로소득세는 2015년 27.1조원에서 2024년 61.0조원으로 2015년 이후 연평균 9.5% 증가하였다. 근로소득세는 2019년 근로·자녀장려세제 개편에 따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의 증가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이후 2022년까지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2023년은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감소에 따른 임금상승률 둔화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는 제도 개정의 영향 등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2024년은 2023년도에 전부 반영되지 못한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일부 반영된 가운데, 하반기 명목임금상승률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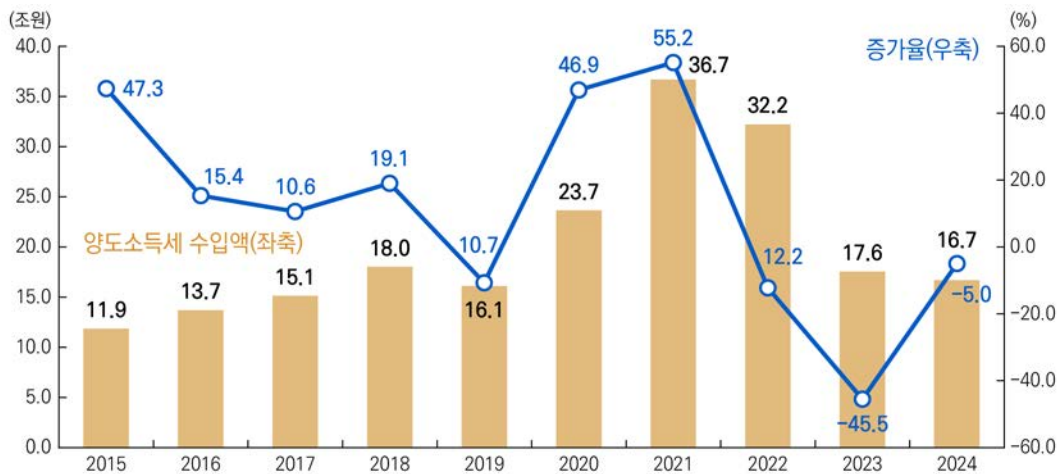
■ 근로소득세 수입액의 추이: 2015~2024년 ■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양도소득세 수입은 2014년 이후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시현하며 2015년 11.9조원에서 2022년 32.2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이 모두 하락하면서 양도소득세수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 역시 부동산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 양도소득세 수입액의 추이: 2015~2024년 ■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득세 세목별 비중

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근로소득세로, 2024년 전체 소득세 수입의 52.0%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종합소득세(16.6%)와 양도소득세(14.2%)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이후 양도소득세 수입의 증가추세가 지속되면서 2018년 처음으로 양도소득세 비중(21.3%)이 종합소득세 비중(20.7%)을 상회하였고, 2021년에는 양도소득세 비중이 32.2%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2024년 비중은 14.2%로 하락하였다.

■ 소득세 세목별 비중: 2015~2024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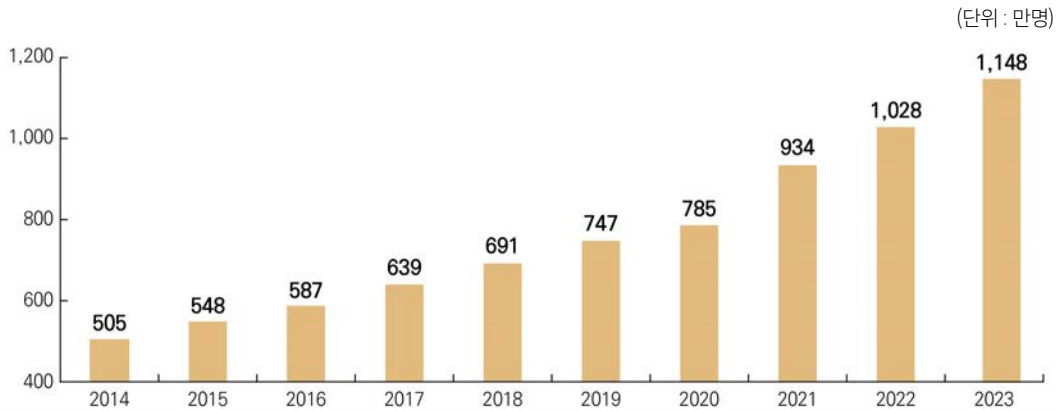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소득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고분	40.6	40.9	41.5	42.0	39.3	42.7	46.2	43.6	33.7	30.8
- 종합소득세	21.1	20.9	21.4	20.7	20.1	17.3	14.0	18.6	18.5	16.6
- 양도소득세	19.5	20.0	20.2	21.3	19.3	25.4	32.2	25.0	15.2	14.2
원천분	59.4	59.1	58.5	58.0	60.7	57.3	53.8	56.4	66.3	69.2
- 이자소득세	4.1	3.0	2.8	2.6	3.1	2.8	1.9	2.0	4.5	6.1
- 배당소득세	3.4	3.0	3.2	3.3	3.5	3.4	4.1	3.2	3.5	3.6
- 사업소득세	3.5	3.5	3.5	3.4	3.8	3.6	3.2	3.2	3.8	4.0
- 근로소득세	44.6	45.2	45.3	45.0	46.0	43.9	41.4	44.6	51.1	52.0
- 기타소득세	2.0	1.9	1.9	2.0	2.4	2.1	1.7	1.8	2.1	2.0
- 퇴직소득세	1.8	2.3	1.5	1.5	1.5	1.5	1.3	1.3	1.0	0.9
- 연금소득세	0.0	0.1	0.1	0.1	0.2	0.0	0.2	0.3	0.4	0.5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소득세 신고인원 추이

최근 10년간 소득세 신고인원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2014년(귀속연도 기준) 505만명에서 2023년 1,148만명으로 2014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귀속연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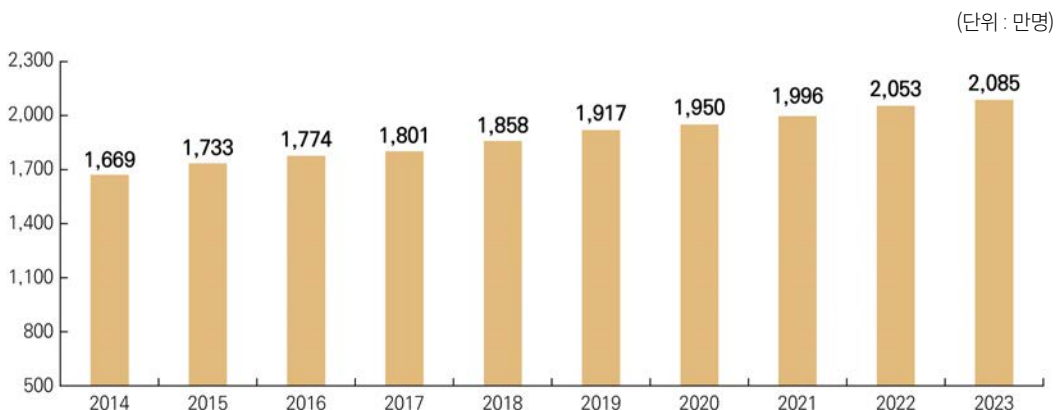


주: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이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인원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는 2023년 기준 2,085만명으로 2014년 1,669만명 대비 25.0% 증가하였다.¹⁰⁾

■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귀속연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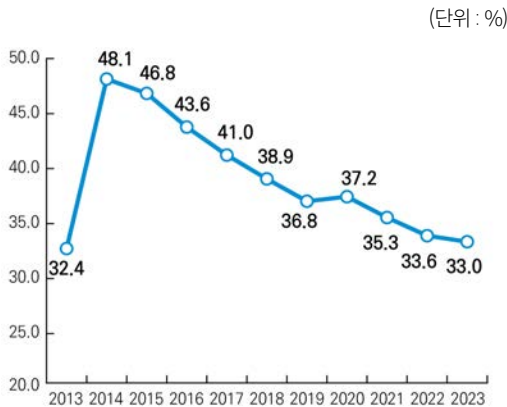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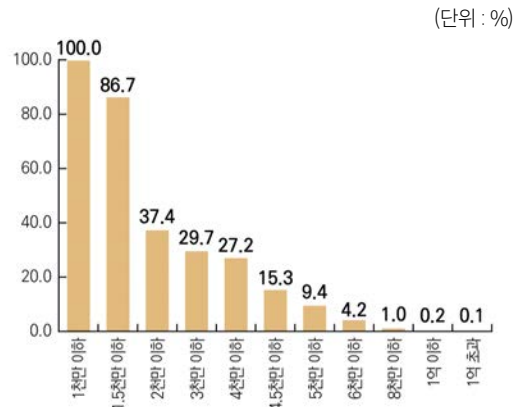
10)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가 포함된 수치이며, 그 인원은 2023년 기준 약 540만명임

한편,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소득자 2,085만명 중 면세자¹¹⁾는 689만명으로 면세자 비율은 33.0%이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급등했던 2014년(2013년 32.4% → 2014년 48.1%)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추이



■ 총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율: 2023년



주: 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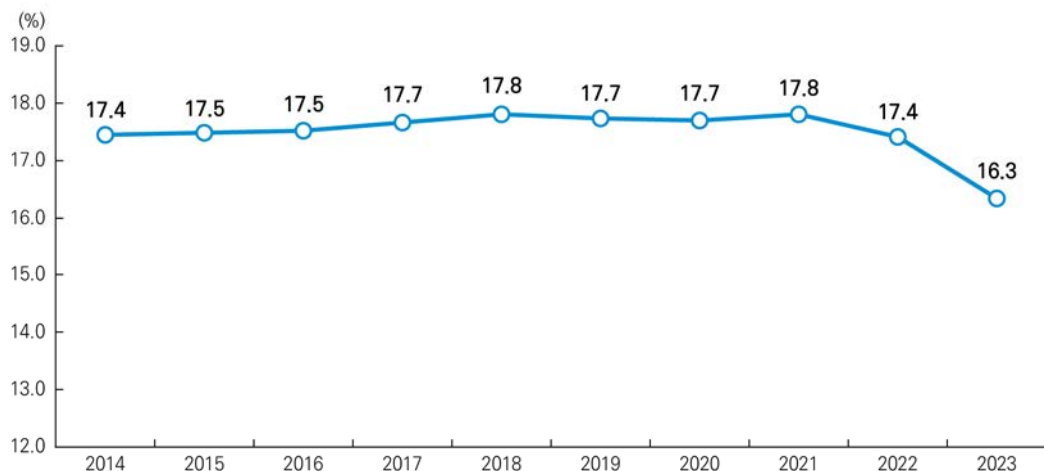
소득세 실효세율 추이

개인의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세 실효세율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종합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과세한 소득세 부담을 측정할 수 있으며, 각종 소득공제가 반영된 후의 소득금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측정한 소득세 실효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평균 실효세율(결정세액/과세표준)은 2014년 17.4%에서 2018년 17.8%까지 상승한 후 2022년 다시 17.4%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 가운데, 2023년은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의 영향 등으로 실효세율이 16.3%로 하락하였다.

11) 면세자는 결정세액이 없는 자를 의미함

■ 종합소득세 실효세율 추이: 2014~2023년 ■



주: 귀속연도 기준 실효세율(=결정세액/과세표준)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근로소득세 평균 실효세율(결정세액/과세표준)은 2014년 9.1%에서 2022년 11.9%로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23년은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의 영향 등으로 실효세율이 11.4%로 하락하였다.

■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추이: 2014~2023년 ■



주: 귀속연도 기준 실효세율(=결정세액/과세표준)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득세 부담구조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 구조를 살펴보면, 누진소득세율 체계에 따라 소득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세부담 비율이 높은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구간의 신고인원은 전체의 88.7%에 해당하지만 동 구간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4%이며, 과세표준 1.5억원 초과구간의 신고인원은 2.4%이지만 동 구간의 결정세액이 전체의 63.2%를 차지한다.

■ 종합소득세 부담구조: 2023년 ■

과세표준 규모별	인원		종합소득금액 ²⁾		결정세액		실효세율 %(B/A)
	만명	%	조원(A)	%	조원(B)	%	
~ 1,400만원 ¹⁾	674	58.7	60.2	15.6	0.9	1.8	1.5
1,400 ~ 5,000만원	345	30.0	116.0	30.1	6.0	11.6	5.2
5,000 ~ 8,800만원	69	6.0	53.0	13.7	5.5	10.7	10.4
8,800만원 ~ 1.5억원	33	2.9	41.6	10.8	6.5	12.7	15.7
1.5억원 ~ 3억원	18	1.6	39.1	10.1	8.5	16.6	21.8
3억원 ~ 5억원	5	0.5	21.3	5.5	5.7	11.0	26.6
5억원 초과	4	0.4	54.4	14.1	18.4	35.7	33.7
합계	1,148	100.0	385.7	100.0	51.5	100.0	13.4

주: 1) 과세표준이 0인자(약 64만명)를 포함한 기준

2)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이월결손금을 제외하고 배당소득가산액·결손소득을 더한 금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4.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구간의 신고인원은 전체의 87.6%를 차지하는 가운데, 결정세액은 22.7%를 차지한다. 반면, 과세표준 1.5억원 초과구간의 신고인원은 전체의 1.0%를 차지하지만 결정세액은 전체의 31.4%를 차지한다.

■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2023년 ■

과세표준 규모별	인원		총급여액		결정세액		실효세율 %(B/A)
	만명	%	조원(A)	%	조원(B)	%	
~ 1,400만원 ¹⁾	960	46.0	163.0	18.0	0.4	0.7	0.3
1,400 ~ 5,000만원	868	41.6	415.7	46.0	13.1	21.9	3.2
5,000 ~ 8,800만원	175	8.4	166.3	18.4	14.4	24.1	8.7
8,800만원 ~ 1.5억원	61	2.9	87.9	9.7	13.0	21.8	14.8
1.5억원 ~ 3억원	17	0.8	39.6	4.4	8.8	14.7	22.3
3억원 ~ 5억원	3	0.1	13.2	1.5	3.7	6.2	28.2
5억원 초과	2	0.1	17.8	2.0	6.3	10.5	35.3
합계	2,085	100.0	903.4	100.0	59.8	100.0	6.6

주: 1) 과세표준이 0인 자(약 200만명)를 포함한 기준

1 연말정산 신고자 2,085만명 중 결정세액이 0 이상인 과세자는 1,396만명, 면세자는 689만명 수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4.

제2절 주요 개정연혁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최근 소득세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율이 인상되었다. 2014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 6~38%의 5단계 세율구조는 2017년 들어 최고세율 구간(5억원 초과)이 신설되고 세율이 40%로 인상되면서 6~40%의 6단계 세율구조로 개정되었다. 2018년에는 5억원 이하 구간이 3억원과 5억원 이하 구간으로 재편되고,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및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2%p 인상되면서 6~42%의 7단계 세율구조가 되었다. 2021년에는 최고세율 구간(10억원 초과)이 추가적으로 신설되고 최고세율도 3%p 인상된 45%가 되면서 6~45%의 8단계 세율구조가 되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변화: 2014~2021년 ■

2014 ~ 2016년		2017년	
5단계		6단계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38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2018 ~ 2020년		2021 ~ 2022년	
7단계		8단계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2년에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이 실시(2023년 시행)되었다. 하위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은 2008년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1,200만원, 4,600만원 이하의 하위 2개 과세표준이 각각 1,4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내용 ■

(단위 : %)

2022년		2023년 이후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1.5억원 이하	35
1.5억원~3억원 이하	38	1.5억원~3억원 이하	38
3억원~5억원 이하	40	3억원~5억원 이하	40
5억원~10억원 이하	42	5억원~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조정

2010년대 이후 세 부담 강화의 조세정책 흐름은 소득공제에서도 나타났다. 2014년 소득공제방식에 따른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의 역진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자녀관련 소득공제(6세 이하, 출생·입양,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었으며, 특별공제항목 중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되었고, 그 외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2014년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결과, 일부 저소득자는 세 부담이 감소하면서 면세자가 늘어났지만¹²⁾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여 증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연말정산 보완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12)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확대되었음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로 근로소득자 대상 세액공제 중 가장 큰 규모¹³⁾를 차지한다. 2015년에는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하나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확대된 제도를 2014년 귀속 소득분에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대상세액을 산출하고,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최종 공제세액을 산출하는데, 제도 확대에 따라 산출세액 기준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공제한도가 확대되었다. 이후 2022년까지 동 제도가 유지되었으나,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하면서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 1.2억원 초과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하였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변화 ┃

연도	산출세액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2014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66만원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50만원 초과금액의 30%	총급여액 5.5천만원~7천만원: 63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50만원
2015 ¹⁾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총급여액 3.3천만원 이하: 74만원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총급여액 3.3천만원~7천만원 이하: 66만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2023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총급여액 3.3천만원 이하: 74만원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총급여액 3.3천만원~7천만원: 66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1.2억원: 50만원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20만원

주: 1)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행(2015년 2월) 후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4년 귀속 소득분에도 소급하여 적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3) 2023년 귀속 소득기준 근로소득세액공제 규모는 8.0조원으로 전체 세액공제규모의 50.9%를 차지함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2014년 도입 당시에는 자녀 1명당 15만원(셋째부터 20만원)의 공제가 전부였으나,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2015년에는 자녀 1명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외에, 6세 이하 추가공제(둘째부터 15만원) 및 출생·입양자 공제(1명당 30만원)¹⁴⁾가 신설되었으며, 확대된 제도를 2014년 귀속 소득분에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2017년부터 출산·입양자 공제는 출산·입양 순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에 따라 차등 적용하였으며, 2018년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2018년부터 자녀세액공제 중 6세 이하 추가공제가 폐지되었다.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공제는 2019년부터 만 7세 이상에게만 적용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만 8세 이상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한편, 2023년 말 세법개정으로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되면서 2024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 및 공제금액이 확대되었다. 공제대상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에서 손자녀까지로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으로 적용하던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만 20만원으로 인상(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30만원)하였다. 2025년부터는 자녀 1명당 공제금액이 각각 10만원씩 인상(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40만원)되어,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인 경우 55만원, 3명인 경우 95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4)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함

■ 자녀세액공제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변화 ■

구분	해당연도	공제요건	공제금액
자녀 기본공제	2014 (신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¹⁾	-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 3명 이상: 연 30만원 + 연 20만원 × (자녀수 - 2명)
	2015 ²⁾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¹⁾	-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 3명 이상: 연 30만원 + 연 30만원 × (자녀수 - 2명)
	2019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¹⁾ 로 만 7세 이상인 자	
	2023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¹⁾ 로 만 8세 이상인 자	
	2024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¹⁾ 로 만 8세 이상인 자	-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 3명 이상: 연 35만원 + 연 30만원 × (자녀수 - 2명)
	2025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로 만 8세 이상인 자	-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 3명 이상: 연 55만원 + 연 40만원 × (자녀수 - 2명)
출산·입양자 공제	2015 ²⁾ (신설)	당해연도 출산·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1명당 연 30만원
	2017		- 첫째 자녀 30만원 - 둘째 자녀 50만원 - 셋째 자녀 이상 70만원

주: 1)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2)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행(2015년 2월) 후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4년 귀속 소득분에도 소급하여 적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4년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동 제도는 과세표준 양성화 등을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된 이후 다양한 정책목표들이 추가되며 현재까지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항목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써, 도입 초기에는 결제수단별(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유도, 문화생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전통시장(‘12), 대중교통(‘13), 도서·공연비(‘18),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 신문구독료(‘20), 영화관람료(‘23), 체육시설 이용료(‘25)¹⁵⁾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신설되었다. 2020~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일정기간 상향하고,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하는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도 하였다.¹⁶⁾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으며, 이와 함께 급여수준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의 한도가 통합·단순화되었다. 기본공제한도는 2017년부터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되었는데, 2022년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에서 1.2억원까지는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하는 200만원이 적용되었으나, 이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기본공제 한도를 250만원으로 통합하고, 각각 100만원씩 구분되어 있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한도를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으로 통합하였다.

Ⅱ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연혁

시행연도	정책목표 추가	추가공제 신설 내역
1999 도입	과세표준 양성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10% 소득공제 추가
2012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추가
2013	대중교통 이용유도	대중교통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추가
2014	소비심리개선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10%p 추가
2018	문화생활 지원	도서·공연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2019	문화생활 지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30% 소득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2020	문화산업 지원	신문 구독료의 30% 소득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2021	소비활성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 추가공제('21년 한시 적용)
2022	소비활성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각각 20% 추가공제('22년 한시 적용)

15)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함

16) 2020년 3월 사용액에 대해 항목별 공제율(15~40%)을 두 배(30~80%)로 상향하고, 4~7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항목별 공제율을 모두 80%로 상향하였으며 연간 소득공제 한도(기본공제)도 30만원 상향된 230~330만원을 적용하였음. 2021년은 코로나 이전의 공제항목별 공제율(15~40%)을 적용하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100만원의 추가공제 부여)하였으며, 2022년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뿐 아니라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각각 20%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하였고,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2배(80%)로 상향하여 적용하였음

시행연도	정책목표 추가	추가공제 신설 내역
2023	문화생활 지원	영화관람료의 30% 소득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2024	소비활성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 추가공제('24년 한시 적용)
2025	체육생활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물가상승에 따른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7.1.~12.31.)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40% → 80%)한 데 이어, 2023년 3월 세법개정을 통해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다. 또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2023년 4~12월 동안 전통시장 및 도서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각각 한시적으로 10%p 상향조정하였으며,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추가 사용분에 대하여 추가 공제를 적용하였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요: 2025년 ■

제도	항목	공제제도
		기본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 사용분(문화체육사용분) ¹⁾	30%
	• 전통시장 사용분	40%
	• 대중교통 사용분	40%
	• 2023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5% 초과 사용분)	10%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문화체육',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300만원 추가*
일몰 기한	2025.12.31.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

주: 1)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및 과세요건 등 조정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목적 외에 부동산 가격안정 등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겪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라 양도가액 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¹⁷⁾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증과(重課)¹⁸⁾하는 등 과세가 강화되었으나, 이후 2009년부터 부동산 경기 하강 및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증과완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었고 2014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증과세율이 폐지되었다.

Ⅱ 최근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율의 주요 변화 Ⅱ

자산	구분		'14.1.1.~ '17.12.31.	'18.1.1.~ 3.31.	'18.4.1.~ '21.5.31.	'21.6.1.~'22.5.9.	'22.5.10.~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주택·조합원입주권: 40%)			50%(주택·조합원입주권: 70%)	
		2년 미만	40%(주택·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40%(주택·조합원입주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50%(조정대상지역 내 50%) ¹⁾		60%(70%) ²⁾	
	1세대 2주택 이상 ³⁾ 인 경우 주택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 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10%p)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20%p)	기본세율 ⁵⁾
	1세대 3주택 이상 ⁴⁾ 인 경우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20%p)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30%p)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 + 10%p ⁶⁾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주: 1) 조정대상지역 50%, 비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2) 보유기간 1년 미만일 때에는 70%, 그 외 60%(조정대상지역 여부 불문)

3) 1주택+1조합원 입주권, 1주택+1분양권 포함

4)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합이 3 이상 포함

5)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26.5.9.까지 양도할 시 기본세율 적용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으로 정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20%p 세율 적용

1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의미

2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할 때에는 산출세액이 큰 것으로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및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7) 1세대 3주택 이상은 2002년 10월, 투기지역은 2003년, 1가구 2주택의 비거주주택은 2006년, 모든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2007년 이후 양도분에 양도소득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함(「부동산 종합대책」, 2005.8.31.)

18) 2005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증과하였으(60%)(「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 2003.10.29.), 2007년에는 1세대 2주택 자에도 증과함(50%)(「부동산 종합대책」, 2005.8.31.)

그러나 2018년부터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외에 조정대상지역¹⁹⁾을 신설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했으며, 해당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에 2주택은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²⁰⁾ 2021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기존 대비 추가 10%p 상향(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하였다.²¹⁾ 세율 이외에도 2021년에는 다주택자의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을 포함하는 등 다주택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거주기간을 1주택만 보유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변경²²⁾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었다. 이에 더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이전에는 보유기간만으로 공제율을 산정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함께 고려하여 공제율을 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추세에 맞추어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해 9억원 초과분에 과세하던 것을 2021년 12월 8일 양도분부터는 12억원 초과분에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규제 완화의 정책기조에 따라 2022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을 시작으로 세 차례 유예되어 그 기한을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하였다.²³⁾²⁴⁾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시점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하는 조항을 삭제²⁵⁾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신규주택 처분기간을 완화²⁶⁾하였다.

이외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주택 범위를 소형 신축주택 및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확대하였다.²⁷⁾ 그리고 일반 주택과 농

19)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으며 2016년 처음 지정(‘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2016.11.3.)된 이래 지정과 해제를 반복함

20)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8.2)

21)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기본세율에 상향된 중과세율을 적용함(‘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7.10.)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함(‘19.2.12. 개정, ’21.1.1부터 시행)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1세대 3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양도소득세가 종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등

24) 2023년 1월 5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을 서울 4개 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대해서만 유지함에 따라 기타 지역은 모두 해제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지역이 크게 축소되었음

25)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함(‘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6) (신규주택 처분 기간 변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이내(‘19.12.17.~’22.5.9. 양도분) → 2년(‘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이내로 완화 및 세대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27)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 면적 및 취득가액 등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완료(‘24.2.29.)

어촌주택²⁸⁾을 각 1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기회발전특구²⁹⁾ 내 소재 주택으로 확대하였다.

2024년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법개정을 통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였다.³⁰⁾ 해당 특례는 대상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³¹⁾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4.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폐지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수익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으로 규정하고 분리과세하도록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과세 시행이 계속하여 유예되고 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도입 당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으로 두 차례 유예된 바 있으며,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한 차례 더 유예되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8) 대상 농어촌주택은 ①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 소재, ②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한옥 4억원 이하),

③ ‘03.8~’25.12. 동안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를 의미함

30)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98조의9

3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보유기간 2년 이상, 실거래가 12억 이하)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 12억, 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가상자산소득 과세체계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가 「소득세법」에 규정되었다.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되,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20% 세율로 분리과세로 과세한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구분	내 용
과세방법	기타소득으로 규정, 분리과세 적용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가상자산 양도·대여 대가)-필요경비(취득가액 등)
세율	20%(분리과세)
산출세액	거주자: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20% 비거주자: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
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신고·납부	거주자: 차년도 5월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원천징수하지 않음) 비거주자: 가상자산사업자가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 납부

한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유예되었다. 이후 2024년 말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5.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EITC)

2008년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도입 이후 지급범위와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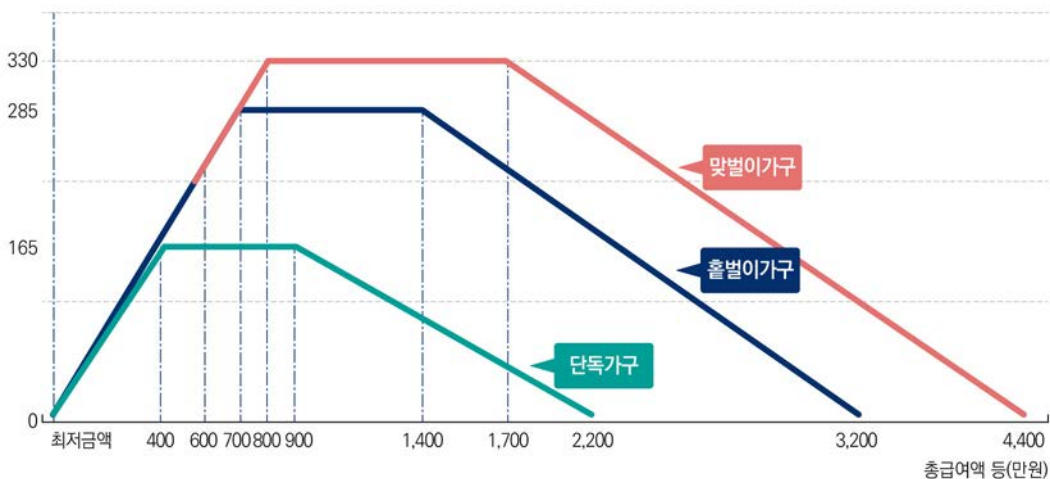
첫 지급연도인 2009년에는 근로소득자 가구를 대상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 무주택 또는 5천만원 이하 1주택 소유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부양 자녀 수가 아닌 가구유형(단독, 홀벌이, 맞벌이) 단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2015년부터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단독가구 수급 연령도 2015년 60세 이상에서

2016년 50세 이상, 2017년 40세 이상, 2018년 30세 이상으로 점차 완화되었다.

2018년(2019년 시행)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및 소득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단독가구의 연령조건이 폐지되었으며, 가구유형(단독/홀벌이/맞벌이)별 소득요건은 각각 1,300/2,100/2,500만원에서 2,000/3,000/3,6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재산요건도 가구원 재산합계액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며, 가구유형별 최대급여도 85/200/250만원에서 150/260/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소득지원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발생 다음연도에 1회 지급하던 방식을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하여 연간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큰 폭의 제도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규모가 기존의 2배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2017년(귀속연도 기준)에는 179만 가구에 약 1.3조원이 지급되었으나 2018년에는 410만 가구에 4.5조원이 지급되었다. 특히 단독가구는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 가구 수가 2017년의 3배 규모로 확대되었다. 2018년 개편 이후에도 최소지급액 인상(2019년), 소득기준 완화(2021년) 등 제도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22년 세법개정으로 재산요건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이 150/260/300만원에서 165/285/3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2025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적용된다.

Ⅱ 근로장려금 지급 구조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소개(<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lid=7781&mi=2450>, 최종 검색일 2025. 3. 26.)

■ 근로장려금 지급 추이: 2008~2023년 ■

귀속연도	가구 수 (만가구)	가구당 금액 (만원)	총 지급액 (억원)
2008	59	77	4,537
2009	57	77	4,369
2010	52	77	4,020
2011	75	82	6,140
2012	78	72	5,618
2013	85	92	7,745
2014	128	82	10,566
2015	144	73	10,574
2016	166	72	11,967
2017	179	75	13,381
2018	410	110	45,049
2019	432	103	44,683
2020	426	105	44,732
2021	442	102	44,871
2022	426	111	47,254
2023	410	111	45,636

주: 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가구유형별 지급액: 2019~2023년 ■

구분	가구유형	2019	2020	2021	2022	2023
가구수 (만가구)	단독	276	278	300	294	287
	홀벌이	129	123	118	111	105
	맞벌이	27	26	24	21	19
	합계	432	426	442	426	410
지급액 (억원)	단독	23,164	24,130	25,409	27,394	26,989
	홀벌이	17,861	16,994	16,150	16,697	15,802
	맞벌이	3,658	3,608	3,312	3,163	2,845
	합계	44,683	44,732	44,871	47,254	45,636

주: 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근로장려세제 관련 개정연혁 ■

시행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2년	2023년	2025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단, 고소득 전문직, 일정소득 금액 이상 사업자 제외)																																																																	
신청 제외자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포함																																																																	
신청 제외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연령 요건	40세 이상 단독가구 포함	30세 이상 단독가구 포함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제한 폐지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소득 · 최대 지급액	<table><tr><td>구성</td><td>소득 기준 (만원)</td><td>최대 지급액 (만원)</td></tr><tr><td>단독</td><td>1,300</td><td>77</td></tr><tr><td>혼합</td><td>2,100</td><td>185</td></tr><tr><td>맞벌이</td><td>2,500</td><td>230</td></tr></table>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1,300	77	혼합	2,100	185	맞벌이	2,500	230	<table><tr><td>구성</td><td>소득 기준 (만원)</td><td>최대 지급액 (만원)</td></tr><tr><td>단독</td><td>1,300</td><td>85</td></tr><tr><td>혼합</td><td>2,100</td><td>200</td></tr><tr><td>맞벌이</td><td>2,500</td><td>250</td></tr></table>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1,300	85	혼합	2,100	200	맞벌이	2,500	250	<table><tr><td>구성</td><td>소득 기준 (만원)</td><td>최대 지급액 (만원)</td></tr><tr><td>단독</td><td>2,000</td><td>150</td></tr><tr><td>혼합</td><td>3,000</td><td>260</td></tr><tr><td>맞벌이</td><td>3,600</td><td>300</td></tr></table>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2,000	150	혼합	3,000	260	맞벌이	3,600	300	<table><tr><td>구성</td><td>소득 기준 (만원)</td><td>최대 지급액 (만원)</td></tr><tr><td>단독</td><td>2,200</td><td>165</td></tr><tr><td>혼합</td><td>3,200</td><td>285</td></tr><tr><td>맞벌이</td><td>3,800</td><td>330</td></tr></table>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2,200	165	혼합	3,200	285	맞벌이	3,800	330	<table><tr><td>구성</td><td>소득 기준 (만원)</td><td>최대 지급액 (만원)</td></tr><tr><td>단독</td><td>2,200</td><td>165</td></tr><tr><td>혼합</td><td>3,200</td><td>285</td></tr><tr><td>맞벌이</td><td>4,400</td><td>330</td></tr></table>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2,200	165	혼합	3,200	285	맞벌이	4,400	330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1,300	77																																																																
혼합	2,100	185																																																																
맞벌이	2,500	230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1,300	85																																																																
혼합	2,100	200																																																																
맞벌이	2,500	250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2,000	150																																																																
혼합	3,000	260																																																																
맞벌이	3,600	300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2,200	165																																																																
혼합	3,200	285																																																																
맞벌이	3,800	330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2,200	165																																																																
혼합	3,200	285																																																																
맞벌이	4,400	330																																																																
재산 요건	1억 4천만원 미만 (1억원 초과 시 장려금의 50% 수급)	2억원 미만 (1.4억원 초과 시 장려금의 50% 수급)	2.4억원 미만 (1.7억원 초과 시 장려금의 50% 수급)																																																															
주택 요건	주택요건 없음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녀장려세제(CTC)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자녀 1명당 현금급여(자녀장려금)를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2015년 시행)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액 1.4억원 미만,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여 총 107.5만 가구에 6,579억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었다. 이후 수급 가구수가 점차 감소하여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수는 도입 초기 108만 가구에서 2022년(귀속연도 기준) 52만 가구로 축소되었으며, 두 차례(2018년, 2022년) 지급액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급규모는 6,579억원에서 5,035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제도 시행 기간 동안 소득기준금액이 일정하게 유지됨에 따라 소득 증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가구 등이 발생하면서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3년 말에는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확대를 위해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중 하나인 소득요건을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 지급분부터 개정된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2014~2023년 ■

(단위: 천가구, 억원, 만원, %)

귀속연도	가구수	지급액	가구당 지급액	증가율	
				가구수	지급액
2014	1,075	6,579	61.2	-	-
2015	944	5,700	60.4	△12.2	△13.4
2016	1,062	5,637	53.1	12.5	△1.1
2017	937	4,917	52.5	△11.8	△12.8
2018	879	7,543	85.8	△6.2	53.4
2019	743	6,457	86.9	△15.5	△14.4
2020	705	6,060	86.0	△5.1	△6.1
2021	578	4,966	85.9	△18.0	△18.1
2022	519	5,035	97.0	△10.2	1.4
2023	954	9,720	101.9	83.8	93.0

주: 1. 귀속연도 기준

2. 2016년, 2018년, 2022년은 각각 재산요건 완화, 지급액 인상,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이 적용되었던 시기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자녀장려세제 개정연혁 ■

시행연도	제도 변화
2015	2014년 제도 도입, 2015년 시행 대상: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 가구 및 사업소득 가구 총소득 기준: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4,000만원 미만 주택요건: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재산요건: 세대원 전원 재산 합계액 1.4억원 미만 * 직전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생계·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제외 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
2017	(재산요건 완화)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주택요건 폐지)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 폐지 (최저지급금액 상향) 1.5만원 → 3만원* * 자녀장려금 산정액 1.5~3만원 미만 시 3만원 지급
2018	(대상자 추가) 한부모 외국인(대한민국 국적 자녀)에게 자녀장려세제 적용 종교인소득('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에 대해서도 자녀장려세제 적용
2019	(대상자 추가)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허용 (지급액 상향)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 → 70만원 (감액규정 완화) 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기준: 재산 1억원 → 1.4억원 이상
2023	(재산요건 완화)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지급액 상향)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 → 80만원 (감액규정 완화) 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기준: 재산 1.4억원 → 1.7억원 이상
2024	(소득요건 완화) 총소득 합계액 4,0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지급액 상향)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100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3절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1. 과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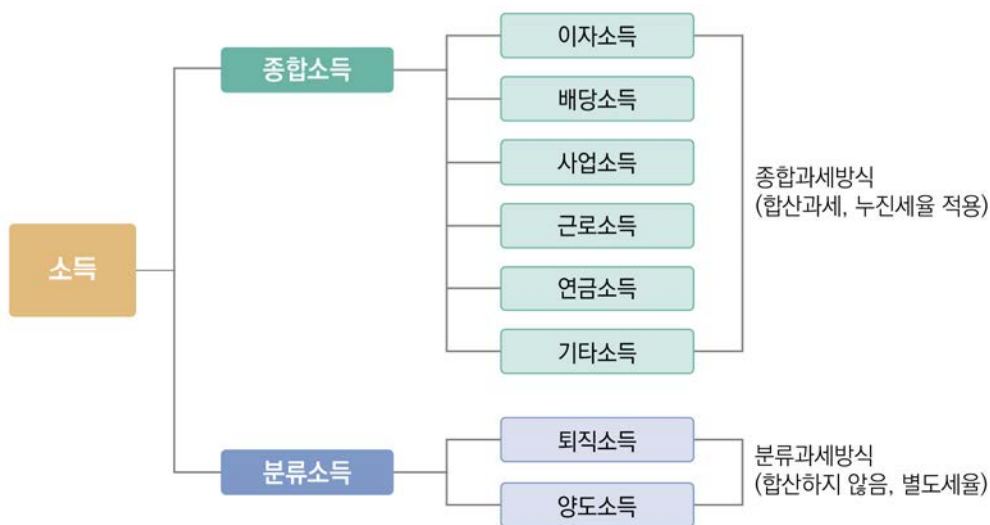
소득의 구분: 종합소득과 분류소득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크게 종합소득 과세와 분류소득 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소득 과세는 소득의 원천이나 소득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에 의해 종합적으로 과세한다. 분류소득 과세는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각 소득원천에 따라 별도세율로 과세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8가지 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으로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산출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동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데, 이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퇴직 등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급증하는 결집효과(結集效果)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식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공제분을 차감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한다. 다음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산출되며, 결정세액에서 가산세와 미리 납부한 세액 등을 가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이하에서는 종합소득과 분류소득(퇴직·양도소득)의 세액계산 방식의 차이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기술하며, 이후 제4절에서 분류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에 대하여 기술한다.

2. 납세의무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여기서 개인은 자연인, 그리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은 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개인을 다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다.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때 국내사업장의 소재 여부 등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해당 소득별로 분리과세 한다.

3. 과세대상 소득

다음에서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6개 과세대상 소득의 정의와 각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과정을 살펴본다.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회사채의 이자,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이자,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이지만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조건부 종합과세).

국내에서 지급되는 모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귀속법인세 제외)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국외에서 지급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지급 시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며(완납적 원천징수),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의 경우 잠정적으로 원천징수(예납적 원천징수) 한 후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정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인의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금융소득종합과세). 다만,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기점으로 급격한 세부담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³⁵⁾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013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된 이후 현재까지 기준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배당소득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뿐 아니라 의제배당, 인정배당³⁶⁾, 국내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국외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한편, 회사가 주주 등에게 이익배당의 형태로 금전 또는 주식을 지급 또는 교부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이익배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준 경우 이를 배당으로 의제한다.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총수입금액)을 의미한다.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배당소득금액이 된다. 다만 이중과세 조정³⁷⁾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귀속 법인세)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그 귀속 법인세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35) 국세청, 「2021년(2020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2021.4.

36)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7)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후 주주 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함

공제(배당세액공제)한다.³⁸⁾ 단,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고 한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도출한다. 비과세소득은 일정한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논·발임대소득, 농어가 부업소득, 전통주 제조 소득, 산림소득,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 어로어업소득과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 등이 해당한다.

사업소득이지만 과세를 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과 달리, 일부 사업은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분류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기도 한다.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고등 교육기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 장기요양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한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을 포함한다. 부가급여(fringe benefits)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만, 일부 부가급여는 평가상의 어려움과 근로조건 개선의 취지 등의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도출한다. 비과세소득은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각종 법률에 따라 받는

38)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

귀속법인세 = 조정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11%(* 법인 단계에서 10%의 세율로 과세되었다고 가정)

특정 급여, 기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이 해당한다. 근로소득 중 분리과세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가 해당한다.³⁹⁾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제도이며, 근로소득공제율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며 2천만원을 공제한도로 한다.

■ 근로소득공제 제도: 2025년 ■

총급여액	공제액	공제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2,000만원
500만원 ~ 1,500만원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원 ~ 4,500만원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원 ~ 1억원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소득이지만, 근로소득의 신고·납부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⁴⁰⁾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합산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사적연금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소득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이 받는 연금,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 등이 있다. 사적연금소득은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의 연금을 말한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도출하며, 이때 총연금액은 해

39) 일용근로자는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50,000원)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율(6%)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한 최종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근로소득세 과세를 종결함

40) 국내에서 지급되는 모든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며, 외국기관이나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및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그러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라 할지라도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

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비과세소득은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의 연금소득이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2조). 분리과세소득은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저율 분리과세(3~5%)를 신청한 금액이, 1,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5% 세율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액이 각각 해당한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금액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연금소득공제 제도: 2025년

총연금금액	공제액	공제한도
0 ~ 350만원	총연금금액의 100%	900만원
350만원 ~ 700만원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700만원 ~ 1,400만원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타소득으로는 상금·현상금·포상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등에 의한 당첨금품, 저작권 등의 양도 또는 사용료로 받는 금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⁴¹⁾,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등이 있다.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도출한다. 비과세소득은 국가유공자 등이 관련 법에 의해 받는 보훈급여금,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령하는 각종 상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이 해당한다. 분리과세소득은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은 환급금, 슬롯머신 등 이용으로 받은 당첨금품 등이 해당하며,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기타

41) 고용관계 없이 받은 강연료, 라디오 등을 통해 제공한 해설·심사 등에 대한 대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무조건 분리과세 및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⁴²⁾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법에서 정한 필요경비 비율이 있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4. 종합소득과세표준

앞서 설명한 바에 따라 계산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면 종합소득금액이 계산되는데, 이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주 : 1) 근로소득자만 이용 가능한 소득공제제도(단, 성실사업자의 경우 2008년부터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2)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세액공제로 이동(2014.1.1.분부터)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2)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함

종합소득공제는 크게 ① 가구원 수 및 인적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인적공제, ② 연금보험료 납입에 따른 공제, ③ 사회보험료 등 담세력의 감소를 초래하는 지출항목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로 구분된다. 각 공제항목의 개념과 포괄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되며, 가구원 수 및 인적 구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부양가족은 거주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등이 해당한다. 기본공제 적용 시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으나,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⁴³⁾

추가공제는 가구원이 특수조건을 만족할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경로우대자,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에 대해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하며,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1인당 50만원을 공제한다. 한부모공제는 한부모 가족(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공제(연 100만원)로서 2013년에 신설되었는데, 부녀자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로 구성된다. 보험료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43) 기본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인당 공제액은 2009년부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조건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확대함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자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써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의 한도⁴⁴⁾를 두고 있으며, 위의 두 소득공제액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공제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800만원('24년부터)의 한도⁴⁵⁾를 두고 있다. 다만, 상환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을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및 원리금 지급방식에 따라 공제한도를 연 600~2,000만원('24년부터)⁴⁶⁾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등이 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근로자(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납입한도 300만원⁴⁷⁾)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항목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된 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25년 기준 제도를 살펴보면, 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별(신용카드, 직불·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별(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해 합산하여 계산한다.⁴⁸⁾ 단,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44) 2022년 귀속 소득분부터 4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며, 이전까지 연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함

45) 2023년까지 연간 5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함

46) 2023년까지 연간 300~1,8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함

47)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며, 2023년까지 240만원의 한도를 적용함

48)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지급수단별·사용처별 사용금액에서 공제율이 낮은 순서(신용

관람·체육시설⁴⁹⁾ 사용분(이하 ‘문화체육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급여수준(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별로 연간 300/250만원이 적용되며, 공제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문화체육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이 있다면, 이들 사용분을 바탕으로 급여수준(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별로 300/2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를 부여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급여수준별 소득공제한도는 아래와 같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조정 내용 ■

총급여액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3년 이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30만원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 1억2천만원			250만원	280만원	250만원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200만원	230만원	200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내수활성화를 위해 2021년과 2022년에 도입되었던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재도입됨에 따라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3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10%의 추가공제 및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요: 2025년 ■

제도	항목	공제제도
		기본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 사용분(문화체육사용분) ¹⁾	30%
	• 전통시장 사용분	40%
	• 대중교통 사용분	40%
	• 2023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5% 초과 사용분)	10%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문화체육’,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300만원 추가*
일몰 기한	2025.12.31.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

주: 1)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카드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 → 전통시장, 대중교통)로 차감하여 결정함. 이때 지급수단별 사용액은 사용처별 사용금액이 제외된 금액임

49)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됨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는 벤처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2년 이내에 10% 공제율을 적용한다.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엔젤 투자’)의 경우 투자액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시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이며,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 출연금액에 대해 연 400만원 한도(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 1,500만원)로 공제한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전년 대비 임금 삭감액의 50%를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불입금액에 대해 2025년부터 연 600만원(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400만원(사업소득 1억원 이하), 200만원(사업소득 1억원 초과)으로 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공제한다.⁵⁰⁾⁵¹⁾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의 청년⁵²⁾이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2022년 신설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하여 적용되며,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한편, 소득공제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에서 제외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공제(개인이 벤처기업이나 벤처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 제외)를 비롯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고,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는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있다.

50) 가입자가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1.1부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함. 2016.1.1 이후 가입분에 대하여 해당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2025년 납입분부터 법인 대표자 소득공제 요건이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됨. 2019.1.1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제외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51) 2024년까지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는 연 500만원, 사업소득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연 300만원, 사업소득 1억원 초과는 연 200만원으로 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공제함

52) 다만,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을 판단하며,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5.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8개의 세율구간을 설정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6%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한편, 가장 높은 과세표준 구간은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초과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순차적으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며 일정한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 구간 세율이 적용된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변화 ■

2022년		2023년 이후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분리과세란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경우(「소득세법」 제14조제3항 등)에 한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기본세율이 아닌 별도 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분리과세대상 소득은 해당 소득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⁵³⁾의 근로소득을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하여 완납적 원천

징수로 과세절차를 종료할 수 있는데, 이때 원천징수세율은 6%가 적용된다.

다음으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한다. 이러한 완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에는 유형별로 각각 다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9% 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의 경우 4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90%의 원천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합계액 전부를 종합과세한다.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019년까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20년(2019년 소득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게 되면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의2). 분리과세 적용 시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에 맞추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원천징수세율은 20%가 적용된다.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⁵⁴⁾과 같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의 경우 20~3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연금소득 및 사적연금소득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시 연금소득자의 연령(70세 미만~80세 이상) 등에 따라 3~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2023년 세법개정으로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 세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53)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함

54) 연금식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2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

종류	원천징수세율
(1)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 (1일 급여 - 150,000원) × 6% × 45% (150,000원 : 근로소득공제, 45%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제외분)	6%
(2)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9% 또는 14%
-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	실지명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 90%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소득	14%
- 일반적 금융소득(이자·배당)으로서 연도별 금융소득이 2천만원(종합과세 기준금액)이하	14%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3,000만원 한도)의 이자·배당소득	14%
- 매입액 2억원 이하 개인투자용 국채(2027.12.31. 이전 매입분)를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14%
- 이자소득 중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4%
(3) 주택임대소득	
- 임대소득 규모, 주택 기준시가 및 수에 따른 전세, 월세별로 다른 세율 적용	종합과세 또는 비과세
(4) 기타소득	
- 복권당첨금 등에 해당하는 소득금액(3억원 이하/3억원 초과)	20%/30%
- 공적연금 외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초과 시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그 밖의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	20%
(5) 연금소득	
-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연금소득(이연퇴직소득)	일시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의 70%(연금 수령연차 10년 이하)/60%(수령연차 10년 초과)
- 공적연금 외의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 시	연령에 따라 3~5% (종신 수령 시 4% 더 낮은 세율 적용)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3~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주택임대소득 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월세소득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대상으로 임대소득 규모, 전월세 여부, 주택 보유수, 소형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달리 부과된다. 임대소득이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8년까지는 비과세였으나, 2019 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현행 월세 소득의 경우,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된다. 다만, 기 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 보유자의 경 우에도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전세의 경우, 부부합산 3주택 이상자부터 보증금으로 추정 한 간주임대료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된다. 다만, 2026년부터는 2주택자라 해도 기준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며 보증금 등 합계가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는 간주임대료 대상에 포함한다. 이때 소형주택(면적 40㎡ 이하) 및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한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4년 이상 임대 시 일정비율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주택 보유자는 4년 이상 임대 시 임대소득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¹⁾은 8·10년 이상 임대 시 75%)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4년 이상 임대 시 20%(장 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8년 이상 임대 시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²⁾

■ 주택임대소득 과세: 2025년 ■

구분		월세	전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1주택자	비과세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2주택자	선택적 분리과세	
	3주택 이상	선택적 분리과세	비소형주택 3채이상 보유 &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선택적 분리과세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1주택자	비과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및 국외주택 과세)	비과세
	2주택자	종합과세	보증금 합계 3억원 이상 : 종합과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시, 2026년부터)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 3억원 이하 : 비과세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종합과세

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 간임대주택을 의미

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 해당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하고 규모(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및 임대료 증가율(5% 미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2025년

1.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가액과 무관하게 월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함

2.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 합산은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형주택(전용면적 40㎡ &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2026.12.31까지 주택 수에 미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하면 종합소득결정세액이 된다. 만약 가산세가 있다면,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와 감면세액)
- 총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가.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해당 세액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는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 유도와 같은 공익목적의 실현, 동일 소득에 대한 국가 간 또는 세목 간의 이중과세 방지, 담세력을 상실한 자 또는 담세력이 미약한 자의 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세액공제제도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다. 주요 세액공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요 세액공제제도: 2025년 ■

구분		주요 내용(공제금액 및 한도 등)
소득세법	배당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 ¹⁾ 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있는 경우 배당세액(Gross-up 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 100만원 한도에서 산출세액의 20% 공제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발급건수 × 200원 공제(공제한도 100만원)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전체 종합소득 중 외국에서 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로 인해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소득세액 중 상실비율에 따라 공제

구분		주요 내용(공제금액 및 한도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 30% 공제, 20 ~ 74만원 한도(총급여 수준이 증가할수록 세액공제 한도 점감) - 총급여 1.2억원 초과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 20만원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손자녀(8세 이상·출산입양 자녀) 인원 및 유형에 따라 공제 (손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에 대해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를 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3% 공제(1인당 연 100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월세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제외)는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는 15%의 월세세액공제를 1,000만원 한도에서 적용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혼인신고자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2024.1.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생애 1회 적용)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신고 방법으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에서 2만원 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건당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건수×20원 공제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중대기업 및 고용창출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정규직 근로자 전환,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 - 특허권 취득, 기술혁신형 합병,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등

주: 1)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해 배당액에 10%를 가산(Gross-u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에 비해 과세포착률이 높고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소득세액이 조기에 납부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하였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산출: 2025년 ■

	근로소득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일반 근로자	130만원 이하	• 근로소득산출세액 ¹⁾ 의 55%
	130만원 초과	• 71.5만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한도액: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짐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3,300~7,000만원: $\text{Max}[74\text{만원} - (\text{총급여액} - 3,300\text{만원}) \times 0.8\%, 66\text{만원}]^{2)}$ -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text{Max}[66\text{만원} - (\text{총급여액} - 7,000\text{만원}) \times 50\%, 50\text{만원}]^{2)}$ - 1.2억원 초과: $\text{Max}[50\text{만원} - (\text{총급여액} - 1.2\text{억원}) \times 50\%, 20\text{만원}]^{2)}$
	일용근로자	• $[(\text{일 급여액} - \text{일 15만원}) \times 6\%] \times 55\%$

주: 1) 근로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 ()안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⁵⁵⁾인 사람에 대해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 + 연 40만원×(자녀수-2명)'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소득세법」 제159조의2제1항). 한편, 과세기간 동안 출산 또는 입양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2%

55)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종전의 7세에서 8세로 인상되었으며, 2023년부터 적용함

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합계로 계산하며,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연령 및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900만원(연금저축 + 퇴직연금)으로 상향되었다.⁵⁶⁾

■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및 세액공제 비율: 2025년 ■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납입액 한도	공제율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퇴직연금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15%
4,5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는 항목별 세액공제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⁵⁷⁾를 위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하는 것이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은 일반의료비⁵⁸⁾, 본인 등 의료비⁵⁹⁾,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⁶⁰⁾ 세액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적용하는 공제율은 의료비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액은 기준초과 의료비⁶¹⁾와 연 700만원 한도 중 작은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한다. 다음으로 본인 등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본인 등 의료비-기준미달 일반의료비)×15%’로 계산하며, 단계별로 미숙아 등 의료비

56) 종전에는 만 50세 이상으로서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도를 900만원(600만원)까지 한시 확대·적용함

57)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함

58)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로, 본인 등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제외한 의료비

59)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60) 임신을 위하여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로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체외수정 시술과 같은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

61) 기준초과 일반의료비는 ‘일반의료비-총급여액×3%’으로 일반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액은 ‘0’임

는 20%, 난임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한다.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에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한약 포함), 산후조리원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⁶²⁾ 금액, 보청기 구입비용, 장기요양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해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다.⁶³⁾ 일반의료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연 700만원이지만, 본인 등 의료비, 미숙아 등 의료비, 난임시술비 등에 대해서는 대상 의료비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공제율: 2025년 ■

지출 대상별 의료비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요건 미적용)	연 700만원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 부모·장애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한도 없음	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의약품 구입비용 포함)		30%

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미적용)를 위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및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이다. 본인에 대한 교육비의 경우 사용한 교육비(대학,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포함)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며,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고등학생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포함), 대학생은 1명당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한다. 한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62)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63)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의 예시)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간병인 지급 비용,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 교육비 지출 대상별 구분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2025년 ■

지출 대상별 의료비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연령요건 미적용) ※ 직계존속은 제외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②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③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익성 기부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⁶⁴⁾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는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일반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으며 각 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계산된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세액공제 대상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만원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1천만원)×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종전에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5%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기간 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64)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성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세액공제와 기부금 필요경비산입을 통해 세제혜택을 부여함. 기부금 필요경비산입방법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이며,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에 대해 필요경비산입법을 사용해야 함. 단,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같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산입방법과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함께 사용 가능함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대상 한도, 세율 등: 2025년

종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이월공제 여부
① 정치자금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근로소득금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
② 특례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근로소득금액-①)		○ (10년)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근로소득금액-①-②)×30%		×
④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근로소득금액-①-②-③)×10%+ [(근로소득금액-①-②-③)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10년)
⑤ 일반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근로소득금액-①-②-③)×30%		○ (10년)
⑥ 고향사랑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연 2,000만원 한도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30%)	×

기부금 규모별 세액공제율 연혁

기부금	2016~2018	2019~2020	2021~2022	2023	2024	2025~
5백만원 이하	15%	15%	20%	15%	15%	15%
5백만원 ~ 1천만원	15%	15%	20%	15%	15%	15%
1천만원 ~ 2천만원	15%	30%	35% ¹⁾	30%	30%	30%
2천만원 ~ 3천만원	30%	30%	35% ¹⁾	30%	30%	30%
3천만원 초과	30%	30%	35% ¹⁾	30%	40% ²⁾	30%

주: 1) 2021. 1. 1~2022. 12. 31. 기부분에 대하여 한시 적용함

2) 2024. 1. 1~2024. 12. 31. 기부분에 대하여 한시 적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⁶⁵⁾의 보험료를 지급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에 따라 일반적인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세액공제액은 보험료 납입금액(연 10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

65)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용보장정보보험료의 경우 세액공제액은 보험료 납입금액(연 100만원 한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근로소득자 중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를 표준세액공제라고 한다.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사업자)의 경우 연 7만원을 표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⁶⁶⁾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⁶⁷⁾로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세액공제로 연 1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특별세액공제의 주요 내용: 2025년 ■

구분	공제요건	적용대상		세액공제율	한도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신고자		
의료비 공제 ¹⁾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		지출금액의 1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연 700만원 (본인, 6세 이하와 고령자 및 장애인 미숙아, 난임시술비 등은 전액 공제)
교육비 공제 ¹⁾	• 본인: ① 학교교육비(대학수학능력 시험 응시료 및 대학원 포함) ② 평생교육과정비용 ③ 국외교육비 ④ 업무훈련비 ⑤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 기본공제대상자: 위의 ①~③ (대학원 제외) ④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지출금액의 15%	본인: 전액 특수교육비: 전액 대학생: 연 900만원 그 외: 연 300만원

66)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다음의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함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②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POS)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②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③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

67)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②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③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 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구분	공제요건	적용대상		세액공제율	한도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신고자		
기부금 공제	공익성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필요 경비산입(사업소득자에 해당)과 세액공제 방법 중 선택	○	○	지출금액의 15% (단, 1천만원 초과 지출시 30%)	특례(구, 법정): 100% 일반(구, 지정): 30% 종교: 10%
보장성 보험료 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일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각각 연 100만원
표준 공제	- 근로자: 항목별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 비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	지출금액의 12% (장애인보험 15%)	

주: 1)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허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가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이하인 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연간한도 1,000만원)에 대해 일정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인 경우 17%,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인 경우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⁶⁸⁾ 이때 공제대상 월세액은 국민주택규모⁶⁹⁾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을 지칭한다.

나. 세액감면

세액감면은 확정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일종의 세제 우대조치로 볼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에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대상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소득

68) 성실사업자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액(한도 1,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69) 「주택법」 제2조제6호,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세법」 제59조의5). 한편, 조세에 관한 법률 적용 시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해당할 때 적용순위는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순으로 한다(「소득세법」 제60조제1항).

■ 종합소득 관련 주요 세액감면 제도: 2025년 ■

구분	세액감면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 정부 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 •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 부터 얻은 소득(단, 그 거주자 등의 국적지국에서 동일한 면제가 있는 경우만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7)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18) •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8의3) • 중소기업 취업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29의6, § 30) • 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3·§ 63의2)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85의6)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96)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9의9)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최저한세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⁰⁾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적용받아 계산한 세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배제하여 납세자가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득세 최저한세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및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감면후세액)이 최저한세액⁷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감면배제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소득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70)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2항

71) 최저한세 적용대상 손금산입·소득공제 미적용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35%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은 45%)

금액, 세액공제금액, 세액감면·면제 등 순으로 조세감면을 배제한다. 이때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⁷²⁾

소득세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1991년 도입 이후 몇 차례 조정이 있었으며, 2013년에 3천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45% 최저한세율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소득세 최저한세율 변화(과세연도 기준) ■

구분	1991년~	1998년~	2005년~	2013년 이후
3천만원 이하	30%	40%	35%	35%
3천만원 초과				4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 결정세액

소득세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자와 근로소득자(연말정산 신고자)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 수준을 살펴보면, 현행 소득세의 누진세율과 공제·감면 제도에 따라 소득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소득 신고자의 경우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구간의 신고인원(1,019만명)은 전체 신고자의 88.7%를 차지하지만, 전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반영한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구간(전체 신고자의 2.4%)이 전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7%,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2%로 나타나고 있다.

7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 수준: 2023년 ■

과세표준 규모별	신고인원		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결정세액	
	만명	%	조원	%	조원	%	조원	%	조원	%
~ 1,400만원	674	(58.7)	2.1	(3.3)	1.3	(12.5)	0.1	(3.6)	0.9	(1.8)
1,400 ~ 5,000만원	345	(30.0)	9.1	(14.3)	2.7	(26.4)	0.5	(21.6)	6.0	(11.6)
5,000 ~ 8,800만원	69	(6.0)	6.7	(10.6)	1.0	(9.8)	0.3	(11.8)	5.5	(10.7)
8,800만원 ~ 1.5억원	33	(2.9)	7.7	(12.1)	0.9	(8.5)	0.3	(13.6)	6.5	(12.7)
1.5억원 ~ 3억원	18	(1.6)	10.1	(15.8)	1.1	(11.2)	0.4	(18.8)	8.5	(16.6)
3억원 ~ 5억원	5.4	(0.5)	6.6	(10.5)	0.7	(7.3)	0.3	(11.4)	5.7	(11.0)
5억원 초과	4.2	(0.4)	21.2	(33.4)	2.5	(24.4)	0.4	(19.2)	18.4	(35.7)
합계	1,148	(100.0)	63.6	(100.0)	10.1	(100.0)	2.2	(100.0)	51.5	(100.0)

주: 1. 과세표준이 없는 자를 포함한 수치임

2.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이월결손금을 제외하고 배당소득·가산액·결손소득을 더한 금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4.

이런 모습은 근로소득자(연말정산 신고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신고자의 87.6%를 차지하는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구간의 산출세액 비중은 전체의 34.4% 수준인 반면, 전체 세액공제액의 74.3% 세액감면액의 96.5%가 해당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구간의 결정세액 비중은 22.7%로 낮아졌다. 반면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산출세액의 비중(25.1%)보다 결정세액 비중(31.4%)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 수준: 2023년 ■

과세표준 규모별	신고인원		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결정세액	
	만명	%	조원	%	조원	%	조원	%	조원	%
~ 1,400만원	960	(46.0)	3.3	(4.4)	2.7	(17.3)	0.2	(15.3)	0.4	(0.7)
1,400 ~ 5,000만원	868	(41.6)	23.0	(30.0)	9.0	(57.0)	0.9	(81.2)	13.1	(21.9)
5,000 ~ 8,800만원	175	(8.4)	17.0	(22.2)	2.6	(16.4)	0.0	(2.6)	14.4	(24.1)
8,800만원 ~ 1.5억원	61	(2.9)	14.0	(18.3)	1.0	(6.3)	0.0	(0.5)	13.0	(21.8)
1.5억원 ~ 3억원	17	(0.8)	9.2	(11.9)	0.3	(2.1)	0.0	(0.2)	8.8	(14.7)
3억원 ~ 5억원	3.1	(0.1)	3.8	(4.9)	0.1	(0.5)	0.0	(0.1)	3.7	(6.2)
5억원 초과	1.7	(0.1)	6.3	(8.3)	0.1	(0.4)	0.0	(0.1)	6.3	(10.5)
합계	2,085	(100.0)	76.7	(100.0)	15.8	(100.0)	1.1	(100.0)	59.8	(100.0)

주: 1. 과세표준이 없는 자를 포함한 수치임

2. 연말정산 신고자 2,085만명 중 결정세액이 0 이상인 과세자는 1,396만명(67.0%), 면세자는 689만명(33.0%)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4.

제4절 분류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우리나라 소득세의 과세방식은 크게 종합소득 과세와 분류소득 과세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의 과세대상 소득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소득 과세의 대상에 해당한다. 분류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데, 이는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여러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특정 시점(퇴직, 양도 등)에 일시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결집효과(bunching effect)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분류소득 과세의 납세의무자가 대상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는 점은 종합소득과 동일하나, 구체적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의 산정, 세율 등 과세체계에 있어 차이점을 보인다. 다음에서는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의 과세대상

퇴직소득은 장기간의 근무에 걸쳐 조성·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색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의 생활자금인 되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과세한다. 퇴직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된다.

- ① 공적연금 관련법⁷³⁾에 따라 받는 일시금⁷⁴⁾
- ②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⁷⁵⁾
-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⑤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여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⁷⁶⁾
- ⑥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⁷⁷⁾

73)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74)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포함함

75) 이러한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퇴직소득으로 봄

76) 공제금-(실제소득공제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노란우산공제, 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함

77) 20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 임원의 퇴직소득은 2012.1.1. 이후 근무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퇴직소득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액은 다음의 두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 ① + ②

①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times 10\%$ $\times$ (2012.1.1.부터 2019.12.31.까지의 근무기간/12개월) $\times 3$

②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times 10\%$ $\times$ (2020.1.1. 이후의 근무기간/12개월) $\times 2$

퇴직소득산출세액의 계산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기본세율에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이다. 퇴직소득세 산출과정은 장기간 누적된 소득을 근속기간으로 나누어 1년 단위 금액으로 환산한 후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기간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연분연승(年分年乘) 방식을 따르고 있다.

퇴직소득세 산출을 위해서는 우선 퇴직소득을 연간퇴직소득 수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은 이를 환산급여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뒤 이를 근속연수⁷⁸⁾로 나누고 12⁷⁹⁾를 곱하여 산출한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되며, 동 과세표준은 연간퇴직소득 수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이므로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은 1년에 대한 세액이 된다. 이를 다시 전체기간에 대한 세액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근속연수를 곱한 후 12로 나누어 최종적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환산급여 =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times$ (12배/근속연수)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times$ 기본세율 $\times$ (근속연수/12배)

78)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봄

79) 대부분의 퇴직자가 퇴직연금을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연금방식으로 수급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높아지도록 2013년 환산급여에 5배를 곱하도록 개정하였고, 2016년에는 이를 12배로 상향하였음

환산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2025년 ■

근속연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2022년	2023년 이후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100만원×근속연수
6 ~ 10년	150만원 + 50만원×(근속연수 - 5년)	500만원 + 200만원×(근속연수 - 5년)
11~20년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 - 10년)	1,500만원 + 250만원×(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근속연수 - 20년)	4,000만원 + 300만원×(근속연수 - 20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2025년 ■

환산급여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 금액을 한도로 외국 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text{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text{퇴직소득산출세액} \times \text{국외원천소득} / \text{퇴직소득금액(전체)}$$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

양도소득세의 산출과정을 보면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이 금액에서 감면대상소득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구한 뒤, 동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 양도소득결정세액이 된다. 이하에서는 단계별 내용을 살펴본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얻게 되는 소득을 말하며,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부동산 등을 사업적으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양도(讓渡)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⁸⁰⁾ 양도소득은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속하며, 우리나라는 ‘실현된 자본이득(realized gains)’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파생상품이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자산에는 토지와 건물(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자산(영업권, 이촉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과점주주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이 있다. 주식 및 출자지분에는 국내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이 있으며, 국외주식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이 포함된다.

80)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그 자산이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로 보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음

주권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현행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 판단에는 지분율과 보유액을 함께 고려한다. 이 중 지분율 기준의 경우 2016년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반면 보유액(시가총액) 기준의 경우, 2020년 기준금액이 10억원까지 하향 조정되며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행태가 반복됨에 따라 정부는 2024년부터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대주주 금액 요건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⁸¹⁾

대주주 판단 시 고려하는 특수관계자 범위의 경우에도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정되었다. 종전에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2023년 양도분부터 최대주주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까지 합산하고,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주주를 제외한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다.⁸²⁾

Ⅱ 대주주 범위 Ⅱ

	대주주 기준 (‘24.1.1. 양도분부터)		대주주 판단기준 적용 특수관계인의 범위 (‘23.1.1. 양도분부터)	
	지분율	보유액	최대주주	그 외 대주주
코스피	1%	50억원	• 대주주 본인 • 4촌이내 혈족 • 3촌이내 인척 • 배우자	• 대주주 본인
코스닥	2%	50억원		
코넥스	4%	50억원		
비상장	4%	10억원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¹⁾	• 대주주 본인 • 직계존비속 • 배우자 •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¹⁾

주: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

파생상품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말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의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파생상품 중 하나인 차익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⁸³⁾가 과세대상에 추가되었다.

한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이 중 1세대 1주택

8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61호, 2023. 12. 28., 일부개정])

8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및 제167조의8([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207호, 2022. 12. 31., 일부개정])

83) 기초자산의 가격(국내외 주식·지수 등)과 연계하여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을 의미함

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은 1세대⁸⁴⁾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⁸⁵⁾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⁸⁶⁾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한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보유 및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하되,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⁸⁷⁾)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보유한 날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던 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다.⁸⁸⁾ 특히,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사 등 사유로 인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 주택 양도일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더하여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⁸⁹⁾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거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 1주택을 보유(분양권은 보유하지 않아야 함)한 경우 해당 1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또한, 주택에 딸린 토지의 일정배수(도시지역 안은 주택정착 면적 5배,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⁹⁰⁾ 한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초과분에만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자산별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⁹¹⁾으로 하며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

84)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뜻하며,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52조의3)이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봄

85)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이며, 2021.1.1.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86) 20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취득분에 한하여 적용함

87) 상속, 동거분양, 혼인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88) 한편, 1세대의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하여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입주자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최종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가능일)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함

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1세대 1주택 보유)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

90)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는 경우 매매사례가액⁹²⁾, 감정가액⁹³⁾, 환산취득가액⁹⁴⁾, 기준시가⁹⁵⁾ 등의 순서로 적용한다. 또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로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 않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에 의할 경우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본다. 기타 필요경비 계산의 특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의 결집효과⁹⁶⁾를 방지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부동산에 적용하며(미등기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 일부는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여부 및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건물·토지 및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대한 공제율은 연 2%를 적용하여 보유기간별 6~30%(최대 15년)이다.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20~80%의 공제가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을 부동산 관련 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파생상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득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91) 자산의 양수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서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당시의 가액에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함

9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93)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94)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

95)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서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이 되는 가액

96)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일시에 과세되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토지·건물·주택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 ~ 4년	6%	3 ~ 4년	12%	2 ~ 3년(3년 이상 보유 한정)	8%
				3 ~ 4년	12%
4 ~ 5년	8%	4 ~ 5년	16%	4 ~ 5년	16%
5 ~ 6년	10%	5 ~ 6년	20%	5 ~ 6년	20%
6 ~ 7년	12%	6 ~ 7년	24%	6 ~ 7년	24%
7 ~ 8년	14%	7 ~ 8년	28%	7 ~ 8년	28%
8 ~ 9년	16%	8 ~ 9년	32%	8 ~ 9년	32%
9 ~ 10년	18%	9 ~ 10년	36%	9 ~ 10년	36%
10 ~ 11년	20%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11 ~ 12년	22%				
12 ~ 13년	24%				
13 ~ 14년	26%				
14 ~ 15년	28%				
15년 이상	3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과 동일하다.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만약 대상 자산에 대해 아래 표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⁹⁷⁾ 내에 소재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⁹⁸⁾

┃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율 ┃

구분			양도소득세율	
			'21.6.1. ~ '22.5.9.	'22.5.10.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 미만	일반	50%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70%	
	보유기간 1 ~ 2년	일반	40%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60%	
	보유기간 2년 이상	일반	기본세율	
		분양권	60%	
	1세대 2주택자 (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 (기본세율 + 20%p)	기본세율 ¹⁾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		보유기간별 세율 (기본세율 + 30%p)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p ²⁾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일반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기본세율 + 10%p	

주: 1)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5.10부터 2026.5.9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으로 정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20%p 세율 적용

1.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의미

2.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할 때에는 산출세액이 큰 것으로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및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표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97) 2023년 1월 5일부터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 외 지역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대상이 아니게 됨

9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2조의2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일부개정]

주식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주식 등 그리고 파생상품 등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국내주식은 기업규모(중소기업), 보유기간, 과세표준 규모 및 대주주 여부에 따라 10~30%로 과세하며, 국외 주식은 10~20%의 세율을 적용하되 누진세율로 적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⁹⁹⁾ 파생상품 등은 기본세율은 20%이나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를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 양도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 세법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었다.

■ 주식, 파생상품 등 현행 양도소득세율: 2025년 ■

구분		보유기간·대상자산			세율
주식 등	국내 주식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누진공제 1,500만원)
			대주주가 아닌 자		10%
		중소기업 외 주식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누진공제 1,500만원)
			대주주가 아닌 자		20%
	국외 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외 주식			20%
		기타자산(특정 주식 등)			누진세율(6~45%) ¹⁾
파생상품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 장외 파생상품)				탄력세율 10% ²⁾	

주: 1)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

2) 2016년 도입 시 기본세율(20%) 대비 75% 인하된 탄력세율(5%)을 적용하였으나, 2018년 4월부터는 10%의 탄력세율을 적용 중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양도소득세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결정세액이 도출된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액공제는 전자신고세액공제¹⁰⁰⁾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양도소득에

99)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100)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자신고 분부터 예정신고 1건당 2만원씩 납부할 세액 범위에서 공제함. 단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확정신고만 하는 파생상품과 국외주식에 대한 전자신고는 세액공제가 없음

대한 세액이 있는 때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이다.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산 경우인 농지대토(代土)에 대한 감면이 있다. 또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대표적인 감면규정이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로서 자경농지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서는 감면 중 연간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5년간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용토지·대토보상·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해서는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¹⁰¹⁾

■ 양도소득세 주요 세액감면제도: 2025년 ■

구분	감면대상 소득금액	감면비율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조특법 § 69)	•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00%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조특법 § 70)	• 농지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한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따라 일정한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0%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특법 § 77)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5% (현금보상) 20~45% (채권보상)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 77의2)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특법 § 77의3)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을 토지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적용기한: 2025. 12. 31.)	40%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25% (매수청구일로부터 20년 이전 취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2025년 3월 14일 세법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은 종합한도가 분리되면서 연간 한도액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 5년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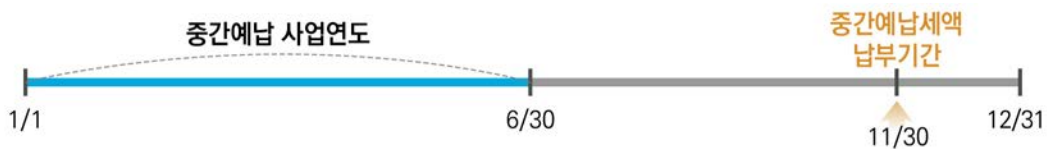
중간예납

본래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지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내도록 하는 중간예납이 운용되고 있다.¹⁰⁵⁾ 소득세 중간예납은 자진신고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징수하는 방식인데,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를 발급해야 하며 거주자는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¹⁰⁶⁾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¹⁰⁷⁾

한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05)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휴·폐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이 존재하는 경우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됨

106) (임의적용)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가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강제적용)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07)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장부기장의무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사업소득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무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장부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본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규모 미만¹⁰⁸⁾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간단한 장부(간편장부)만을 기장·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 경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 또는 결정한다.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2025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①-②-③-④)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①-②)
① 수입금액	① 수입금액
②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 자산의 임차료	② 수입금액×단순경비율
③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④ 수입금액×기준경비율	

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중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 6백만원,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 2천 4백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기장내용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세무사 등’이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장려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108)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할 때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에 더하여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 ■

구분	기준수입금액 (2018년 귀속 이후)
① 농업·임업·어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 ③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해당연도 15억원 이상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연도 7.5억원 이상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해당연도 5억원 이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한도 120만원)로 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 Min(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 60%, 공제한도 120만원)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frac{\text{사업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5\%$

결정 및 경정

만약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세액을 징수한다. 결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며, 경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에 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쳐서 확정하는 절차이다. 대표적인 경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및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위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으로 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더라도 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라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2. 분류소득 세액의 신고와 납부

퇴직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과세대상 기간에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한(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¹⁰⁹⁾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

109)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함

여 납부함에 따라 납세절차가 종결된다.

퇴직소득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소득 지급 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징수 시기를 이연하는 이연퇴직소득세(「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연금 납입액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이며, ①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② 퇴직소득이 60일 이내(지급 받은 날 기준)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연된다.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이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납부액은 퇴직시점 퇴직소득세율의 70%(60%)¹¹⁰⁾를 세율로 적용하여 산출한다.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납부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하되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는 예정신고가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이행한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할 때,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하여 분납할 수 있다.

110) 2020.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실제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를 적용함

제6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5.1.1.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금융과세 합리화를 목적으로 신설, 2023.1.1.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시기가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2024년 9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논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찬반 대립이 있었으나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참고로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가 예정되었던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연기 및 폐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인하되었다. 그 결과 증권거래세율은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까지 인하되었다.¹¹¹⁾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개정 전	현 행
<시행일> 2025.1.1. <과세방법> 분류과세 <과세대상>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포괄적 과세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 등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액 - 기본공제액(국내 상장주식 5천만원, 그 외 250만원) -이월결손금(5년) <세율> 20%(과표 3억원 초과시 25%) <손익통산>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 간 상계 허용 <신고·납부> 예정·확정신고, 반기별 원천징수	<폐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5.1.1.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년간 유예함에 따라 2027.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개정을 통해 2022.1.1.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1.1.로 한 차례 연기되었으며, 2022년에는 2025.1.1.로 시행일이 다시 연기되었다. 이후 2024년 9월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제도 성과점검 및 국제적 정보교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안을 제출하였고, 논의과정에서 찬반 대립이 있었으나 정부안대로 의결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확인이

111)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2장의2 삭제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50%내(대통령령)에서 필요경비 의제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범위를 보완하고, 의무 위반시 제재를 신설하는 등 가상자산소득 과세기반 정비를 위한 조문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¹¹²⁾

■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

개정 전	현 행
<시행일> 2025.1.1.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소득구분> 기타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거주자: 20%(분리과세) 비거주자: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중 작은 금액 <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신고·납부> 거주자: 차년도 5월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 비거주자: 가상자산사업자가 익우려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 납부	<시행일> 2027.1.1. (시행일 외 좌동)

결혼·출산·양육 세제지원 확대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 지원 방안으로 결혼세액공제 신설¹¹³⁾,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¹¹⁴⁾,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¹¹⁵⁾,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¹¹⁶⁾,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연장¹¹⁷⁾ 등이 이루어졌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혼인신고자 1인당 50만원, 생애 한 번)의 세액공제를 3년간(2024~2026년) 한시 적용하는 제도이다.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공제금액을 1인당 10만원씩 인상하는 방안이다. 추가로 근로자(종교인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폐지하여 전액 비과세 되도록 하였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세제지원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였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을 현행 5

112)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및 부칙

113)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11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115)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116)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

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특례 기한이 연장되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하고 있다.

■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확대 ■

항 목	주 요 내 용
결혼세액공제 신설	'24~'26년 혼인신고분에 대해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첫째/둘째/셋째) 15/20/30만원 → 25/30/40만원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 전액
주택청약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에 무주택 세대주 외 배우자 추가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연장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5년 → 10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은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행해져 왔으나, 최근에는 재산과세 등을 통한 조세지원도 추가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보육수당 및 출산수당 등 비과세,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져왔다.

■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 소득세 ■

구분	주요 내용
비과세	• 보육수당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출산수당 전액 비과세 •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기본공제	• 20세 이하 부양자녀(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연 50만원 소득공제 •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연 100만원 소득공제
교육비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 공제한도: 유치원 및 초·중·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의료비세액공제	• 부양자녀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30% 세액공제 • 공제한도: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외 연 7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한도는 연 200만원)
자녀세액공제	• (기본-다자녀공제)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8세 이상¹⁾인 자녀 및 손자녀(20세 이하):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 연 5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 •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 둘째/ 셋째 인 경우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구분	주요 내용
	• (6세 이하 자녀공제) 2018년부터 폐지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가구 부양자녀 1인당 50~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제외 • 소득기준(연간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 재산기준(가구원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결혼세액공제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간: 2024~2026년 혼인 신고분

재산과세는 혼인·출산시 증여재산 공제, 자동차 및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중심으로 조세 지원이 이루어졌고, 소비과세는 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면세 방식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졌다.

■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 재산과세 및 소비과세 ■

	구분	주요 내용
재 산 과 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1억원 공제 • 혼인 시, 자녀 출산 시, 혼인 및 자녀 출산 시 등 공제 선택 가능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출생일부터 2년 이내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경감
	주택 취득세 감면	• 자녀를 출산(2024.1.1.~2025.12.31.)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 비 과 세	부가가치세 면세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산후조리원 이용비 부가가치세 면세(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 용역)
	개별소비세 면세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법인세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운용 과정에서 경력단절여성과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 공제 방식 등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 법인세 ■

구분	주요 내용				
통합고용세액 공제	인당 공제(만원)	중소기업(3년간)		중견 (3년간)	대기업 (2년간)
		수도권		수도권밖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등		상시근로자	
		1,450	1,550	800	400
		850	950	450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 추가로,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대해서는 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공제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 산입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금 산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가입대상을 개인사업자 및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에서 개인사업자 및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아래 표¹¹⁸⁾와 같이 확대 하였다.¹¹⁹⁾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확대 ■

개정 전		현 행	
<소득금액 및 소득공제 한도>		<소득금액 및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4천만원 ~ 6천만원	500만원
		6천만원 ~ 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장기가입자 해약환급금 과세방식> - 기타소득 과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장기가입자 해약환급금 과세방식> - 퇴직소득 과세	

추가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장기가입자의 해지일시금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의 임의해지시 해지일시금에 대한 소득구분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함에 따라, 개정 전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장기가입자 임의해지시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단,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하였다.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사항

종전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 등으로 한정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을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확대하였다.¹²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특수관계인 간 증여를 통해 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토지·건물 등의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18) 공제한도 확대는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 연이어 개정됨. (2024년 12월 개정)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별로 4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각각에 대해 500/300/200만원에서 600/400/200만원으로 확대. (2025년 2월 개정) 4천만원~6천만원 구간의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119)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120)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

양도차익 계산 시 본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있었다. 2024년 세법개정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자산에 주식·출자지분(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포함)을 추가하면서 이월과세 적용기한 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1억원 한도) 시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였다.¹²¹⁾ 부동산 양도 당시 해당 수급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였다.¹²²⁾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의 경우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감면율을 종전 대비 5%p 상향조정하였다.¹²³⁾ 그 결과 공익사업 시행자 등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율은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3년 이상 만기채권은 35%, 5년 이상 만기채권 45%)로 인상되었다. 감면율 인상과 함께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의 종합한도도 분리되어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¹²⁴⁾

기타 주요 개정사항

이 외에도 벤처기업 지원 등을 위한 세제지원,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개정하였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을 위한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해주도록 하고,¹²⁵⁾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및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지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12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

122)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98조의9

123) 「소득세법」 제77조

124) 「소득세법」 제133조

125)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 및 물가연동제 도입 등 관련 국회 입법동향

202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안정되기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속된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 증가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소득세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소득세 인적공제액 상향 조정안, 소득세 과세표준 물가연동제 도입안 등이 그 사례이다.

소득세 인적공제액(기본공제)의 경우 2009년 대상자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 뒤 현재까지 15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년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 할 때 이를 상향조정 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2022년 하위 과표구간 상향 조정(1200/4600만원→ 1400/5000만원)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 약 17년간 과세표준 구간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이동(Bracket creep effect)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소득세 관련 개정시 최근 소득세 부담의 증가세가 빠른 편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편임 등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 및 물가연동제 도입 등 관련 제22대 국회 입법동향 ■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주요 내용	세수효과 연평균(조원)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등	서영교의원	2200295	• 1인당 150만원 → 200만원	-3.21
	정일영의원	2202961	• 1인당 150만원 → 300만원	-9.47
	송언석의원	2204213	• 1인당 150만원 → 매년 물가연동	-1.12
	신영대의원	2200180	• 1인당 150만원 → 직계비속 300만원, 자녀세액공제액 2배 확대	-2.98
	조인철의원	2207737	• 1인당 150만원 → 200만원 • 직계비속 연령 20세 → 24세 • 종합소득금액 200만원 (총급여액 700만원) 이하	-5.29
추가공제금액 상향 조정	정일영의원	2202920	• 70세 이상 100만원 → 200만원 • 장애인 연 200만원 → 400만원 • 부녀자 연 50만원 → 100만원 • 한부모 연 100만원 → 200만원	-2.05
소득세 과세표준 물가연동제 도입	박선원의원	2201637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및 물가연동제 도입, 매년 반영	-10.0
	박범계의원	2202952	• 소득세 과세표준액 계산 시 물가연동제 반영, 매년 반영	-16.5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은 2014년 3.8%에서 2023년 5.7%로 1.9%p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OECD 평균은 2014년 7.8%에서 2023년 8.2%로, G7 국가 평균은 2014년 9.3%에서 2023년 10.1%로 각각 0.4%p, 0.7%p 상승하였다. OECD 36개국 중 지난 10년 동안 GDP 대비 소득세 부담이 상승한 국가는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네덜란드, 미국 등 24개 국가이고, 감소한 국가는 아일랜드, 스웨덴, 벨기에, 튀르키예 등 12개국이다.

■ 한국 및 OECD 주요국의 명목GDP 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2014~2023년 ■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3.8	4.1	4.3	4.5	4.9	4.8	5.2	6.1	6.6	5.7	1.9
OECD 평균	7.8	7.8	7.8	7.9	7.9	8.0	8.3	8.3	8.2	8.2	0.4
G7 평균	9.3	9.6	9.5	9.5	9.7	9.7	10.0	10.2	10.3	10.1	0.7
- 캐나다	11.4	12.1	11.9	11.8	12.0	12.0	12.9	12.6	12.3	12.8	1.4
- 프랑스	8.7	8.7	8.6	8.6	9.5	9.4	9.5	9.3	9.7	9.4	0.7
- 독일	9.6	9.9	10.0	10.2	10.5	10.6	10.2	10.5	10.7	10.1	0.4
- 이탈리아	11.2	11.2	10.8	10.8	10.7	10.9	11.4	11.0	10.9	11.5	0.3
- 일본	5.7	5.7	5.6	5.8	6.0	5.9	6.2	6.4	6.5	6.0	0.3
- 영국	8.6	8.8	8.8	8.9	9.0	8.9	9.4	10.0	10.1	10.6	2.0
- 미국	10.1	10.5	10.4	10.4	10.0	10.2	10.5	11.6	12.1	10.0	0.0

주: 1. 전체 OECD 국가의 명목GDP 대비 소득세 부담 현황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2. 한국의 GDP는 구계열 기준(2015년 기준년)으로, 2024년 공표된 신계열(2020년 기준) 수치와 차이 있음

3. OECD 평균의 2023년 수치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호주와 그리스 제외한 36개국 대상 평균임, 그 외는 38개국 평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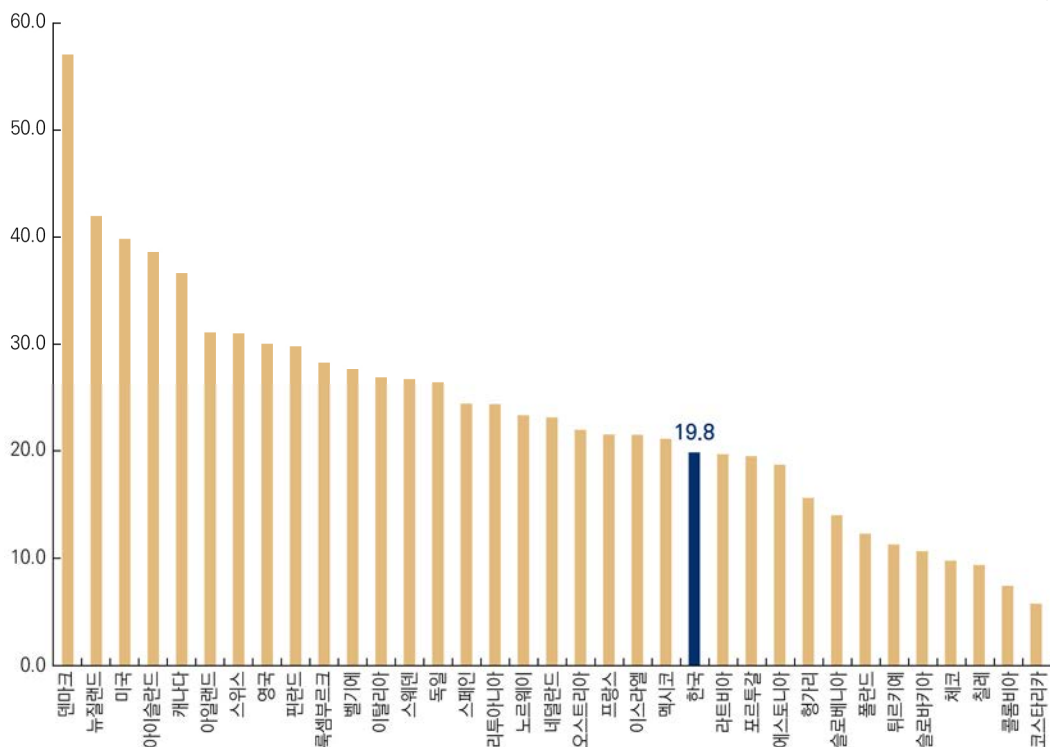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 추이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 역시 GDP 대비 세부담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지난 10년 동안 상승하는 추세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19.8%로 35개¹²⁷⁾ 국가 중 23위이며, OECD 국가의 분포는 5.7~57.1%로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23.6%, G7 평균 30.2%에 비해 각각 3.8%p, 10.4%p 낮은 수준이다.

127) 총 38개 국가 중 호주, 일본, 그리스는 2022년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이 아직 집계되지 않아, 35개국을 대상으로 함

한국 및 OECD 주요국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 2023년

(단위: %, %p)



주: 1. 전체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 현황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2.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호주, 그리스, 일본 제외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14년 16.3%에서 2023년 19.8%로 3.6%p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OECD 평균은 2014년 22.8%에서 2023년 23.6%로 0.8%p 상승하였고, G7 국가 평균은 2014년 27.4%에서 2023년 30.2%로 2.8%p 상승하였다. OECD 35개국 중 지난 10년 동안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이 상승한 국가는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23개 국가이고, 감소한 국가는 튀르키예,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웨덴 등 12개국이다.

한국 및 OECD 주요국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 추이: 2014~2023년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16.3	17.2	17.6	17.9	18.4	17.5	18.8	20.4	20.5	19.8	3.6
OECD 평균	22.8	23.1	22.5	22.9	23.0	23.5	24.1	23.7	23.6	23.6	0.8
G7 평균	27.4	27.8	27.5	27.4	27.9	28.1	28.6	28.7	28.8	30.2	2.8
- 캐나다	36.3	36.8	35.8	35.6	35.9	36.3	37.5	36.3	36.4	36.7	0.4
- 프랑스	19.1	19.1	19.0	18.7	20.7	20.8	20.9	20.7	21.2	21.5	2.4
- 독일	25.7	26.0	26.1	26.6	26.7	27.0	26.5	26.3	26.9	26.4	0.8
- 이탈리아	25.8	26.0	25.7	25.8	25.7	25.8	26.8	25.9	25.5	26.9	1.1
- 일본	18.9	18.9	18.6	18.8	19.1	18.8	18.7	18.9	18.8	n.a.	n.a.
- 영국	27.1	27.6	27.3	27.3	27.3	27.3	28.7	29.1	28.6	30.0	2.9
- 미국	39.1	40.4	40.3	39.3	40.2	40.7	41.2	43.3	44.0	39.9	0.8

주: 1. 전체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 현황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2. OECD 평균의 2023년 수치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호주, 그리스, 일본 제외한 35개국 평균임, 그 외는 38개국 평균

3. G7 평균의 2023년 수치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일본 제외한 6개국 평균임,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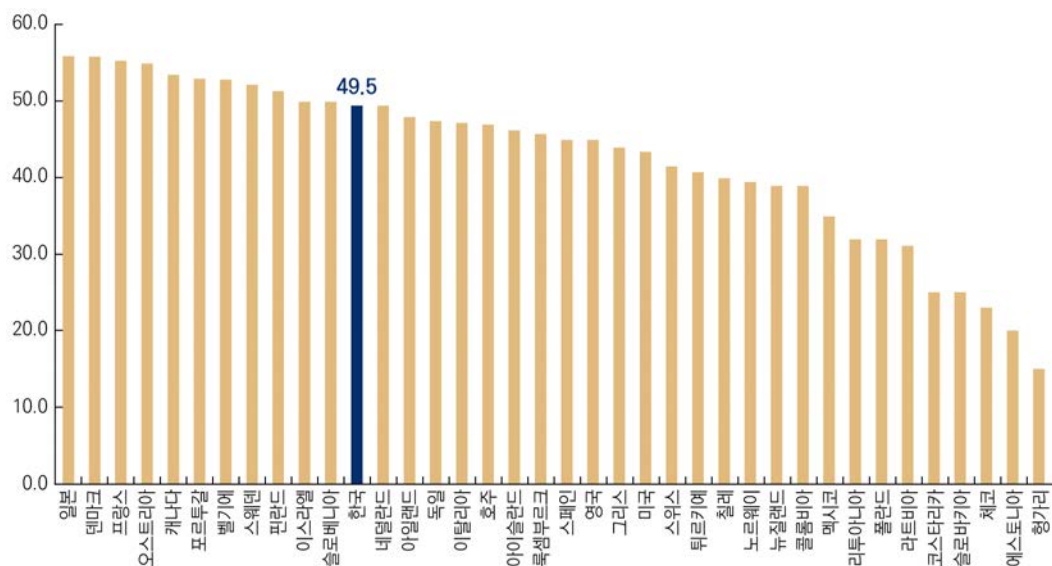
나. 소득세 명목세율 구조 및 추이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변화 추이

OECD 국가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최소 15.0%에서 최대 55.9%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는 49.5%로 OECD 국가 38개국 중 12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은 42.7%로 우리나라보다 6.8%p 낮고, G7 평균은 49.7%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모습이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 41.8%에서 2023년 49.5%로 7.7%p 상승하였다. OECD 국가 중 몇몇 국가에서는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대체로 상승함에 따라 OECD 평균은 2014년 41.1%에서 2023년 42.7%로 1.6%p 상승하였고, G7 국가 평균은 2014년 48.8%에서 2023년 49.7%로 0.9%p 상승하였다.

OECD 주요국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2023년



주: 전체 OECD 국가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현황(지방세 포함)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주요국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추이(지방세 포함): 2014~2023년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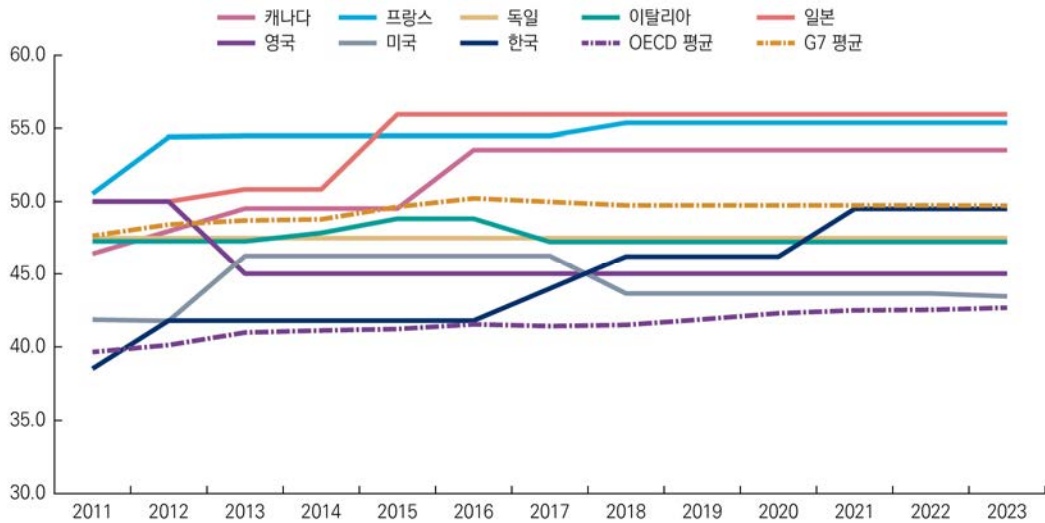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41.8	41.8	41.8	44.0	46.2	46.2	46.2	49.5	49.5	49.5	7.7
OECD 평균	41.1	41.2	41.5	41.4	41.5	41.9	42.3	42.5	42.5	42.7	1.6
G7 평균	48.8	49.6	50.2	50.0	49.7	49.7	49.7	49.7	49.7	49.7	0.9
- 캐나다	49.5	49.5	53.5	53.5	53.5	53.5	53.5	53.5	53.5	53.5	4.0
- 프랑스	54.5	54.5	54.5	54.5	55.4	55.4	55.4	55.4	55.4	55.4	0.9
- 독일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0.0
- 이탈리아	47.8	48.8	48.8	47.2	47.2	47.2	47.2	47.2	47.2	47.2	-0.6
- 일본	50.8	55.9	55.9	55.9	55.9	55.9	55.9	55.9	55.9	55.9	5.1
- 영국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0.0
- 미국	46.3	46.3	46.3	46.3	43.7	43.7	43.7	43.7	43.7	43.5	-2.8

주: 전체 OECD 국가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현황(지방세 포함)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주요국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추이(지방세 포함): 2014~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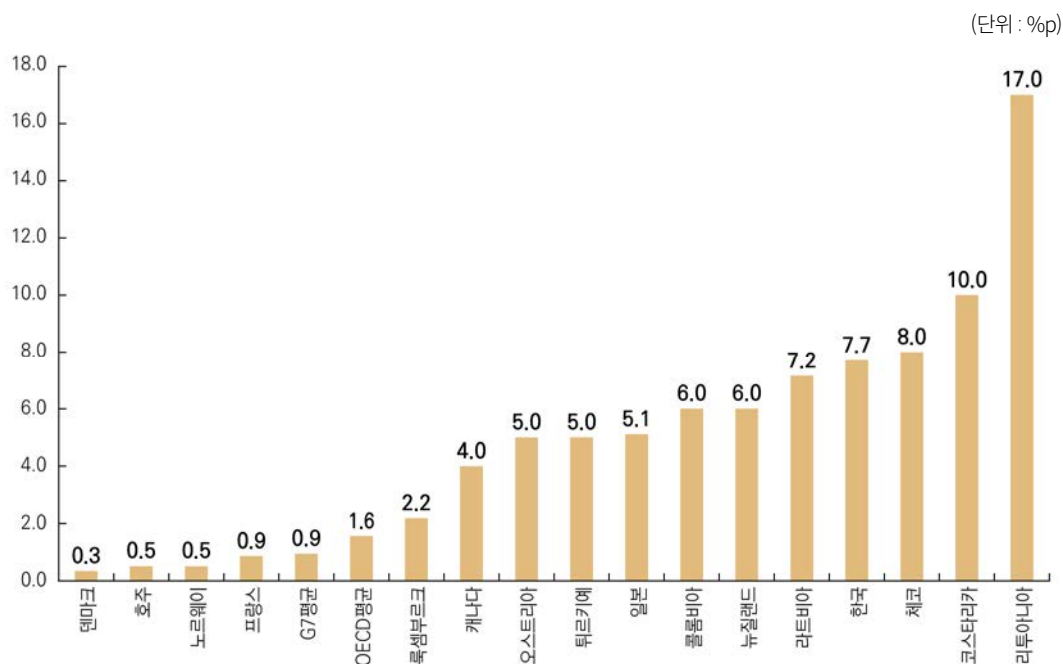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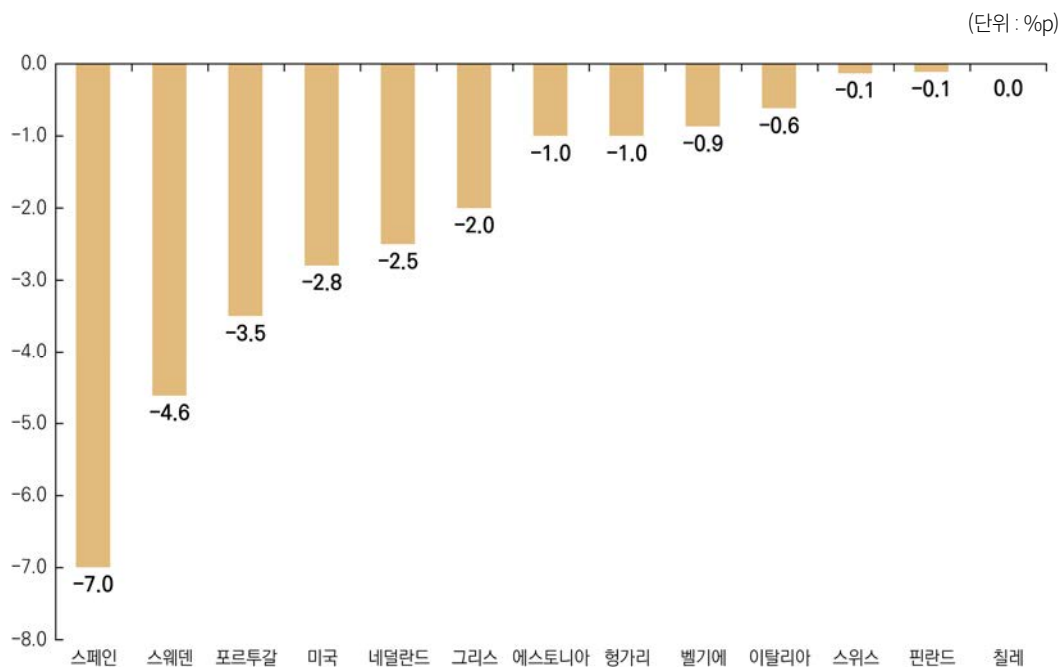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대비 2023년 세율 인상국은 리투아니아, 코스타리카, 한국, 라트비아 등 17개국이다. 반면, 2014년 대비 2023년 세율 인하국은 스페인, 스웨덴,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13개국이며, 세율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독일, 영국 등 8개국이다.

■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인상 국가: 2014~2023년 ■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인하 국가: 2014~2023년 ■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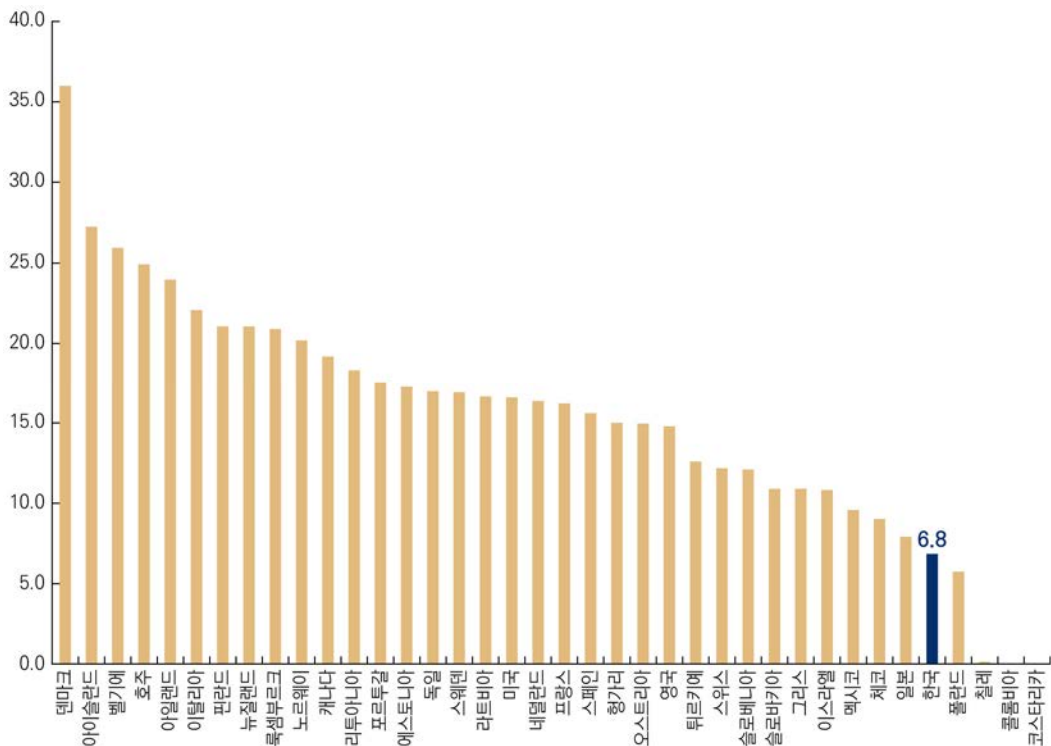
다. 소득세 실효세율 추이

소득세 실효세율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이 가능한데, 본 절에서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한 OECD taxing wages에서는 근로자의 총급여(평균적인 명목임금, 이하 ‘평균임금’)대비 세부담으로 측정한다. 초과누진세제인 소득세의 특성상 소득세 실효세율은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제비교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평균임금의 수준별로 측정된 실효세율을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평균임금 100%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6.8%로 35개 OECD 국가 중 23위이다. OECD 국가 평균 15.4%에 비해서는 8.5%p가 낮고, G7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9.4%p가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소득세 실효세율(무자녀 단독가구 기준): 2023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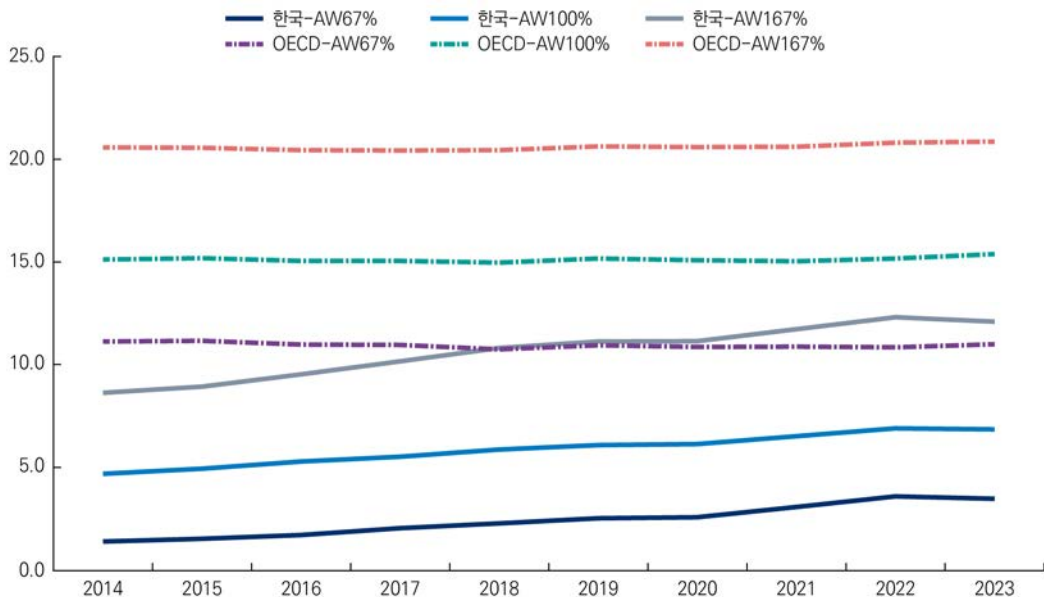
자료 :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먼저, 평균임금의 100% 수준에서 소득세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총소득의 4.70%에서 2023년 6.84%로 2.15%p 상승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 중 실효세율이 상승한 국가는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등 23개국이며, 하락한 국가는 체코, 라트비아, 벨기에, 독일 등 15개국이다. 38개국 OECD 국가 평균은 2014년 15.12%에서 2022년 15.38%로 약 0.26%p 상승하였다. G7 국가 평균은 2014년 16.34%에서 16.25%로 약 0.09%p 하락하였다. OECD 국가 및 G7 국가 평균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임금 67% 수준에서는 실효세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평균임금 167% 수준에서는 소폭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상승폭은 평균임금의 67%, 100%, 167% 구간 모두에서 OECD 평균 및 G7 평균에 비해 큰 편이나, 2023년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OECD 평균 및 G7 평균에 비해 낮다. 평균임금의 100% 수준에서 2023년 기준 실효세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6.84%로 OECD 평균 15.68%의 44.49%에 불과하며, 평균임금의 67% 수준에서는 OECD 평균의 31.72% 수준이며, 평균임금의 167% 수준에서는 OECD 평균의 57.84% 수준이다.

OECD 국가의 소득세 실효세율 추이(무자녀 단독가구 기준): 2014~2023년

(단위: %)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주요국의 소득세 실효세율(무자녀 단독가구 기준): 2014~2023년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AW ¹⁾ 67%	한국	1.41	1.54	1.73	2.06	2.29	2.54	2.60	3.08	3.61	3.48	2.07
	OECD 평균	11.11	11.14	10.96	10.94	10.73	10.93	10.85	10.86	10.83	10.98	-0.13
	G7 평균	10.88	10.57	10.44	10.46	10.50	10.52	10.38	10.37	10.45	10.63	-0.25
	- 캐나다	13.64	13.65	13.47	13.64	13.67	13.49	14.17	14.46	14.60	14.25	0.61
	- 프랑스	12.62	11.76	10.92	10.85	12.65	12.84	11.85	12.18	12.14	12.12	-0.50
	- 독일	14.15	14.23	14.11	14.02	14.12	14.21	13.62	12.91	13.49	12.23	-1.92
	- 이탈리아	13.78	12.33	12.37	12.42	12.58	12.82	12.74	12.06	11.46	14.26	0.48
	- 일본	6.13	6.15	6.16	6.16	6.18	6.19	6.13	6.13	6.16	6.17	0.04
	- 영국	11.50	11.21	11.15	11.09	11.07	10.90	10.67	11.16	11.63	12.21	0.71
	- 미국	15.22	15.23	15.33	15.47	13.72	13.74	13.88	14.02	14.08	13.76	-1.46
AW ¹⁾ 100%	한국	4.70	4.94	5.29	5.52	5.88	6.10	6.13	6.52	6.90	6.84	2.15
	OECD 평균	15.12	15.19	15.06	15.05	14.96	15.17	15.09	15.04	15.17	15.38	0.26
	G7 평균	16.34	16.38	16.28	16.32	16.30	16.34	16.03	15.83	16.03	16.25	-0.09
	- 캐나다	19.14	19.17	18.46	18.66	18.72	18.49	19.15	19.34	19.41	19.18	0.04
	- 프랑스	14.57	14.81	14.73	14.64	16.51	16.70	15.76	16.32	16.21	16.22	1.65
	- 독일	19.12	19.21	19.06	18.96	19.05	19.14	18.52	17.56	18.22	16.97	-2.15
	- 이탈리아	21.54	21.60	21.62	21.65	21.73	21.97	20.65	18.70	18.97	22.08	0.54
	- 일본	7.72	7.81	7.85	7.85	7.91	7.92	7.78	7.78	7.87	7.91	0.19
	- 영국	14.31	14.11	14.07	14.03	14.02	13.90	13.75	14.08	14.40	14.78	0.48
	- 미국	17.95	17.98	18.17	18.45	16.14	16.23	16.63	17.01	17.15	16.60	-1.35
AW ¹⁾ 167%	한국	8.63	8.93	9.51	10.14	10.80	11.11	11.13	11.71	12.28	12.06	3.43
	OECD 평균	20.57	20.56	20.43	20.42	20.44	20.63	20.58	20.60	20.79	20.85	0.28
	G7 평균	23.22	23.40	23.30	23.28	23.23	23.14	23.08	23.26	23.53	23.52	0.30
	- 캐나다	26.74	26.76	25.79	26.07	26.14	25.81	27.06	27.49	27.72	27.32	0.58
	- 프랑스	20.83	20.96	20.90	20.84	22.71	22.79	22.22	22.56	22.53	22.51	1.68
	- 독일	27.64	27.76	27.60	27.45	27.56	27.59	26.74	26.10	27.52	26.47	-1.17
	- 이탈리아	29.18	29.87	29.89	29.63	29.73	29.87	30.16	30.09	29.08	29.59	0.41
	- 일본	12.40	12.65	12.77	12.78	12.92	12.96	12.61	12.50	12.75	12.95	0.55
	- 영국	22.31	22.36	22.57	22.43	22.41	21.74	21.28	22.28	23.22	24.38	2.07
	- 미국	23.45	23.47	23.58	23.75	21.16	21.21	21.48	21.78	21.88	21.41	-2.04

주: 1) AW는 평균임금(Average wage)을 의미, AW 67%는 평균임금(Average wage) 67% 수준, AW 100%는 평균임금 100% 수준, AW 167%는 평균임금 167% 수준임

1. 전체 OECD 국가의 평균실효세율(평균임금 67% 평균임금 100% 평균임금 167% 무자녀 단독가구 기준) 현황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결혼·출산·양육 관련 소득세 세제지원 현황

가.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비교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를 통해 결혼·출산·양육 세제지원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OECD 대부분 국가¹²⁸⁾에서는 다양한 공제·감면 등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OECD, 2023). 2023년 기준으로 평균임금 100% 수준에서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이하 ‘무자녀 단독가구’)와 자녀가 2명인 홑벌이 부부가구(이하 ‘두자녀 홑벌이가구’)를 비교해보면, OECD 38개국 중 11개국¹²⁹⁾에서 무자녀 단독가구에 비해 두자녀 홑벌이가구의 실효세율이 절반 이하로 낮은 모습이다.¹³⁰⁾ 참고로 G7 국가 중에서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큰 독일의 경우, 무자녀 단독가구의 실효세율은 16.97%이나, 두자녀 홑벌이 가구는 -0.18%이며, 그 다음으로 격차가 큰 미국의 경우 무자녀 단독가구의 실효세율은 16.60%이나, 두자녀 홑벌이 가구는 5.52%이다.

OECD 국가의 가구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2023년

(단위 : 총급여 대비 %)



주: 평균임금 100%의 무자녀 단독가구 및 두자녀 홑벌이 가구 비교

자료: OECD, Taxing Wages 2024, 2024

128) OECD 38개국 중 26개국에서 무자녀 단독가구에 비해 두자녀 홀벌이가구의 실효세율이 낮음

129)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독일, 칠레, 미국,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130) 소득세 부담이 없는 2개 국가(콜롬비아, 코스타리카)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총 9개 국가(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튀르키예 등)에서는 가구유형별로 실효세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가 적은 편인데, 이는 소득세 실효세율의 절대적인 수준이 낮은 영향이 큰 편이다. 평균임금 100% 수준 무자녀 단독가구 기준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38개국 중 34위('23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평균임금 100% 무자녀 단독가구의 실효세율은 6.8%, 두자녀 홀별이 가구는 5.2%로 가구 유형에 따른 실효세율 감소폭은 1.7%p이다. 무자녀 단독가구 실효세율의 편차가 국가마다 크게 나타남에 따라 무자녀 단독가구 실효세율 대비 두자녀 홀별이 가구의 실효세율 감소율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유형별 실효세율 감소율은 24.3%(=1.7/6.8)이다. 평균임금 100% 수준 무자녀 단독가구의 OECD 평균 실효세율은 15.4%, 두자녀 홀별이 가구의 경우 10.4%이다. OECD 평균 가구 유형에 따른 실효세율 감소폭은 5.0%p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지만, 각국의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을 감안한 가구 유형별 실효세율 감소율은 32.7%(=5.0/15.4)로 차이가 축소되는 모습이다.

OECD 국가의 가구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단위: 총급여대비 %, %p)

구분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023-2014)
무자녀 단독가구 (가)	OECD 평균(A)	15.1	15.2	15.1	15.0	15.2	15.4	0.3
	한국(B)	4.7	6.1	6.1	6.5	6.9	6.8	2.1
	(A-B), %p	10.4	9.1	9.0	8.5	8.3	8.5	-1.9
	B/A, %	31.1	40.2	40.6	43.3	45.5	44.5	13.4
두자녀 홀별이가구 (나)	OECD 평균(A)	9.9	10.0	10.0	10.0	10.3	10.4	0.4
	한국(B)	1.9	4.1	4.2	4.7	5.2	5.2	3.3
	(A-B), %p	8.0	5.9	5.8	5.3	5.1	5.2	-2.8
	B/A, %	19.3	41.2	41.9	46.8	50.1	50.0	30.7
(가-나), %p	OECD 평균(A)	5.2	5.1	5.1	5.1	4.9	5.0	-0.2
	한국(B)	2.8	2.0	1.9	1.8	1.7	1.7	-1.1
(가-나)/(가), %	OECD 평균(A)	34.3	33.9	33.7	33.6	32.1	32.7	-1.6
	한국(B)	59.2	32.2	31.7	28.3	25.3	24.3	-34.9

주: 평균임금 100%의 무자녀 단독가구 및 두자녀 홀별이 가구 비교

자료: OECD Taxing wage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OECD 주요국의 가구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2014~2023년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평균임금 100%, 무자녀 단독가구 기준											
한국	4.70	4.94	5.29	5.52	5.88	6.10	6.13	6.52	6.90	6.84	2.15
OECD 평균	15.12	15.19	15.06	15.05	14.96	15.17	15.09	15.04	15.17	15.38	0.26
G7 평균	16.34	16.38	16.28	16.32	16.30	16.34	16.03	15.83	16.03	16.25	-0.09
- 캐나다	19.14	19.17	18.46	18.66	18.72	18.49	19.15	19.34	19.41	19.18	0.04
- 프랑스	14.57	14.81	14.73	14.64	16.51	16.70	15.76	16.32	16.21	16.22	1.65
- 독일	19.12	19.21	19.06	18.96	19.05	19.14	18.52	17.56	18.22	16.97	-2.15
- 이탈리아	21.54	21.60	21.62	21.65	21.73	21.97	20.65	18.70	18.97	22.08	0.54
- 일본	7.72	7.81	7.85	7.85	7.91	7.92	7.78	7.78	7.87	7.91	0.19
- 영국	14.31	14.11	14.07	14.03	14.02	13.90	13.75	14.08	14.40	14.78	0.48
- 미국	17.95	17.98	18.17	18.45	16.14	16.23	16.63	17.01	17.15	16.60	-1.35
평균임금 100%, 두자녀 홑벌이가구 기준											
한국	1.91	2.24	2.70	3.00	3.49	4.13	4.19	4.68	5.16	5.18	3.26
OECD 평균	9.93	10.06	9.77	9.77	10.02	10.03	10.01	9.99	10.30	10.35	0.42
G7 평균	8.93	9.03	9.28	9.36	9.32	9.36	9.02	8.46	9.94	10.23	1.30
- 캐나다	12.63	13.70	15.16	15.41	15.48	15.20	15.94	16.15	16.24	15.98	3.35
- 프랑스	7.86	7.86	7.86	7.86	9.53	9.53	9.53	9.53	9.53	9.53	1.67
- 독일	0.90	1.01	1.00	0.97	1.25	1.35	-0.79	-0.55	1.06	-0.18	-1.09
- 이탈리아	14.57	14.69	14.73	14.77	14.93	15.28	14.14	12.17	16.76	19.96	5.39
- 일본	6.28	6.40	6.46	6.46	6.53	6.55	6.37	6.37	6.48	6.55	0.27
- 영국	14.31	13.52	13.48	13.43	13.42	13.29	13.12	13.49	13.83	14.26	-0.05
- 미국	5.95	6.05	6.28	6.65	4.11	4.30	4.81	2.08	5.65	5.52	-0.43

주: 전체 OECD 국가의 소득세 실효세율(평균임금 100%, 무자녀 단독가구 기준) 현황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국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소득세 세제지원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은 소득세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도 소득세를 중심으로 자녀 및 혼인과 관련하여 과세단위 조정이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독일의 경우, 과세단위 조정 방식으로 부부인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별과세와 부부합산분할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2분2승제를 시행하고 있다.¹³¹⁾ 부부합산분할과세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 2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세액에 두 배를 곱하여 최종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누진 과세체계를 갖는 소득세제하에서는, 부부간 소득 격차가 클수록 소득 분할 효과가 높아짐에 따라 개별과세보다는 부부합산분할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진다.¹³²⁾ 독일은 납세자에게 발생한 통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지출(zunutzbare Belastung, 이하 합리적 부담 수준) 수준을 정의하여 이를 초과한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 기혼이며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증가한다.¹³³⁾ 또한 납세자가 부양가족의 교육·생계유지 등을 위해 비용을 지출시, 이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합리적 부담수준에 의한 공제와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 외에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부양자의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하기 위해 자녀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이 되지 않음에 따라 납세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¹³⁴⁾ 이 외에 자녀의 학교 교육(단, 대학은 불포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30%를 특별소득 공제하며, 자녀의 돌봄에 소요된 비용 역시 지출비용의 2/3까지 특별소득공제 한다.

미국은 납세자가 부부단위 합산 과세와 개인단위 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즉, 부부가 하나의 과세단위가 되거나 부부가 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인지 혹은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할 것인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각각 신고하는 경우 등 납세자의 신고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복수세율¹³⁵⁾표를 운용하는 중이다¹³⁶⁾. 이 외에 부양자녀

131) 1920년 연방 소득세 도입시 부부의 소득에 미성년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가족단위 과세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과세단위가 변화해 왔음. 남편과 관계가 없는 사업에서의 여성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이 1921년 시행되었다가 1934년에 폐지, 1941년에 재시행 되었으며, 가족단위 소득과세가 혼인을 방해한다는 위헌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1958년 2분2승제와 개인단위주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음

132) 오종현·서동연·허운영,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23.9. p.101

133) 홍우형,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2025.1. p.34

134)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2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3. p.417.

135) 1951년 가구 규모와 혼인 및 혼인 유지에 따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리신고하는 별도의 세율표를 도입하였으며, 1969년 복수세율표를 부부합산, 세대주, 독신자, 부부개별신고와 같이 4종류로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에 대한 소득공제¹³⁷⁾, 자녀와 부양가족 돌봄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미국시민기회세액공제, 평생교육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입양비용세액공제 등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계수 제도를 통해 과세단위를 조정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가족당 과세표준을 가족계수(N)로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하여 가족당 산출세액을 도출한 후, 이에 다시 가족계수를 곱하여 세대 단위당 소득세를 산정¹³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누진 과세체계를 갖는 소득세제하에서는 가족계수 제도 적용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계수는 가구 유형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 혼인 또는 동거 상태인 부부가구는 가족계수가 기본 2인이고, 독신·이혼·한부모가구는 기본 1인으로 시작해 자녀는 1 또는 0.5씩 가산(둘째까지는 0.5, 셋째부터는 1)한다. 이 외에 성인 자녀에 지급한 생활비 소득공제, 학업 중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6세 미만 유아 보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인단위 과세가 원칙이며, 가구의 세금부담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공제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 특별공제, 부양공제 등을 사용하고 있다. 16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동·특별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양육 특례 대상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주거지 보수공사를 수행하고 그 주거지에 거주하는 경우, 보수비용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2024년 신설·운용하고 있다¹³⁹⁾.

헝가리는 개인단위로 과세하고 있으며 누진과세체계가 아닌 15%의 단일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녀 수와 연령에 따라 저출생 대응 관련 조세지원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하고 있다¹⁴⁰⁾. 2020년부터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평생 4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키운 모든 여성은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인적공제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 30세 미만 산모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첫 배우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을 주로 소득세 중심으로 수행 중이며,

136) 오종현·서동연·허윤영, 「세법연구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9. p.82.

137)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 and Job Act 2017)으로 인한 과세체계 단순화를 위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중단

138) 1945년 세대단위합산분할과세제를 기본으로 세대의 가족구성원수에 따른 가족계수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는 가족계수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

139) 홍우형,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2025.1. pp.38~40.

140) 홍우형,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2025.1. pp.54~56.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과세 단위를 선택하고 있다. 이 외에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부양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결혼세액공제 등이 운용되고 있다. 참고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출산·입양공제로 구성되며, 기본공제는 공제대상 자녀수 별로 세액공제 금액이 차등 적용되고, 출산·입양공제는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 둘째 등인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녀장려세제는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4,0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이며,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다.

3. 양도소득세제 운영 현황 국제비교

가.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의 양도소득에 대해 주택 수와 자산 보유기간 및 소재지(조정대상지역 또는 지정지역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여 분류과세한다. 주요국 또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자산유형과 보유기간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며, 일반소득과 구분하여 별도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로 과세하는데,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보유자산(1년 미만)과 장기보유자산(1년 이상)으로 구분한다. 단기보유자산의 양도소득은 일반소득(ordinary income)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장기보유자산은 분류과세(15/20%, 3단계 초과누진세율)한다.¹⁴¹⁾ 만약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자본이득과 상계가 가능하며, 남은 결손금(Net Capital Losses)은 연간 3,000달러(부부 별도신고 시 1,500달러)를 한도로 이월공제 가능하다.¹⁴²⁾

영국은 보유기간에 따른 차이를 두지는 않으며, 양도차익에서 연간공제(annual exempt allowance)¹⁴³⁾ 및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과

141) 부부합산 94,050달러(독신 47,025달러)까지 0% 세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비과세함. 다만 수집품(collectibles)과 적격 중소기업 주식의 과세분(이익의 50% 면세) 양도소득은 최고 28% 세율 부과 가능. 한편 장기보유자산 양도소득 중 배당, 이자 등 소득이 법정기준 소득금액(부부합산 25만달러(개별 신고 12.5만달러), 미혼 단독 신고자 등 20만달러 이상)을 초과하면 3.8% 세율로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를 별도 과세

142) 손익통산과 관련하여 장기보유자산에 대해 먼저 상계하고, 그 다음 단기보유자산에 대해 상계

143) (2023년 4월) 12,300파운드 → 6,000파운드 (2024년 4월) 6,000파운드 → 3,000파운드

합산한 금액에 따라 18% 또는 24%로 과세한다.¹⁴⁴⁾ 영국 또한 자본손실은 타 자본이득과 상계할 수 있으며, 결손금에 대해 기한의 제한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독일은 부동산 및 그와 유사한 권리(지상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개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이 1,000유로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개인별 소득세율(0~45%, 4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한다.¹⁴⁵⁾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는 동일한 소득의 범주 내에서만 허용한다.

일본은 부동산(토지, 건물 및 구축물) 등 양도소득은 특별공제 형태로 50만엔까지 차감¹⁴⁶⁾한 후 신고분리과세 형태로 과세하며, 단기보유자산(5년 미만 보유)의 양도소득에는 30% 세율(주민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율¹⁴⁷⁾ 합산 시 39.63%) 그리고 장기보유자산(5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에는 15% 세율(주민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합산 시 20.315%)을 적용한다. 손익통산은 동일 자산 내에서 허용하며 이월공제는 3년까지 가능하다.

144) 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영국의 과세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음(2024~2025년)

구간	Personal Allowance	Basic rate	Higher rate	Additional rate
과세소득(파운드)	~12,570	12,571~50,270	50,271~125,140	125,141~
종합소득세율(%)	0	20	40	45
양도소득세율(%)		18		24

145) 독일은 원칙적으로 순수하게 개인적 용도로 보유한 자산의 양도소득(Einkünfte aus privaten Veräußerungsgeschäften)은 비과세하되, 보유기간이 일정한 기간(10년)에 이르지 못한 부동산과 부동산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를 투기거래(Spekulationsgeschäft)로 간주하여 기타소득의 하나로 보아 과세. 한편 개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영업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

146) 공제 순서와 관련하여 단기양도소득 차익에서 먼저 공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장기양도소득 차익에서 공제함

147)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동일본 대지진) 재건비용 마련 목적으로 2013~2037년까지 소득세율의 2.1% 추가 부과함

■ 주요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의 주요 내용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과세 체계	분류과세	(단기보유) 종합과세 (장기보유) 분류과세	분류과세	종합과세(단 다른 소득유형과 구분)	원칙상 종합과세하나 부동산은 분류과세
보유 기간 구분	보유 1년 미만/1~2년/2년 이상 구분	(보유 1년 미만) 단기 (보유 1년 이상) 장기	없음	개인자산의 경우 10년 기준으로 과세대상 구분	(보유 5년 미만) 단기 (보유 5년 이상) 장기
기본 공제	연간 250만원	장기자본이득에 47,025~94,050달러 공제	연간 3천파운드	없음	50만엔(특별공제)
손익 통산	소득별 구분하여 동일세율 자산에 먼저 통산한 후 다른 세율 자산과 통산	모든 자산에 대하여 적용, 연간 3천달러까지 순손실 이월공제(기한 없음)	모든 자본소득 간 통산가능, 순손실 이월 공제(기한 없음)	동일 자산 범주 내 통산, 순손실 이월 공제(기한 없음)	동일 자산 내에서 통산하며 이월공제 3년
세율	주택 수·보유기간 등에 따라 최대 70%	(단기보유) 10~37% (장기보유) 0/15/20%	종합소득·양도소득 합계액별 24%	0~45%	(단기보유) 39.63% ¹⁾ (장기보유) 20.315% ¹⁾
세제 혜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주거용 자택 처분시 50만 달러(부부 개별 25만 달러)까지 비과세	거주요건 등 충족하는 주거용 자산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10년 이상 보유한 개인용 자산은 과세대상 아님	장기보유·가액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최대 3,000만 엔 공제 및 경감세율(10%)

주 : 1) 부흥특별소득세 및 주민세(지방세)를 합산한 세율

자료 : 각국 국세청 등을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식 등 양도소득의 과세체계

우리나라는 주식 등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을 보유기업 유형(상장 또는 비상장주식)·보유 규모(지분율 또는 보유액) 등으로 구분함에 따라 상장주식 대주주, 비상장주식·해외주식 주주에 대하여 과세하고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율은 대주주 여부·중소기업 여부·보유기간 등에 따라 10~30%로 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주식 양도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류과세(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기본공제 및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허용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은 주식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과 동일하게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취급한다. 미국은 단기(1년 미만) 보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10~37%, 7단계 초과누진세율)하고 장기보유(1년 이상) 시 0/15/20%(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한다.¹⁴⁸⁾ 영국은 연간공제액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과 다른 소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18% 또는 24%로 분류과세한다. 두 국가 모두 다른 자산 사이의 손익통산을 허용되며 결손금은 기한의 제한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독일은 주식 양도소득에 일괄공제(연간 1인당 1,000유로, 부부 합산 2,000유로)만큼 차감한 후 25% 단일세율로 과세(연대세¹⁴⁹⁾ 또는 교회세¹⁵⁰⁾ 별도)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식 내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하되 타 자산과의 상계는 허용하지 않는다.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1년까지 소급공제¹⁵¹⁾를 허용하되 이월공제¹⁵²⁾는 기한 제한없이 허용한다.

일본은 상장주식과 그 외 주식으로 구분하여 단일세율(20.315%,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15.315% + 주민세 5%)로 과세한다.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은 타 상장주식 차익 또는 배당금에서 상계 가능하며, 손익통산은 상장주식 간 가능하며,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여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148) 부부합산 94,050달러(독신 47,025달러)까지 0% 세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비과세함

149) 정식 명칭은 연대할증(Solidaritätszuschlag)이며, 해당 세목은 독일 재통일 이후 1991년 한시 도입되었다가 1995년 무기한으로 재도입되었으며 개인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additional tax) 형태로 부과함 2021년부터 연간 세부담이 부부합산 39,900유로(독신자 19,950만유로) 이상인 고소득자에게만 부담함

150) 가톨릭 또는 개신교 신자가 거주지 관할 재무관청에 신자로 등록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

151) 부부합산 102.3만유로(독신 51.15만유로)까지 인정함

152) 한도는 부부합산 200만 유로(독신 100만 유로)를 적용하지만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손실은 50%까지만 이월됨

■ 주요국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의 주요 내용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과세 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모든 자본자산(주식 등) 양도소득	주식 등 그 외 자산	주식, 채권, 증권의 양도차익, 파생거래, 공매도 이익 등	상장·일반주식
기본 공제	연간 250만원 (국내외주식 합산)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47,025~94,050달러의 공제 부여	연간 3천파운드	저축자 일괄공제 (1인당 1,000유로, 부부합산 2,000유로)	없음
손익 통산	국내외 주식 간 가능, 이월공제 불가	모든 자산소득 간 통산 허용, 연간 3천달러까지 이월공제(기한 없음)	모든 자본소득 간 통산허용, 이월공제(기한없음)	주식 간 통산허용, 직전 1년 소급공제, 이월공제(기한없음)	상장·일반주식 각각 적용(배당소득 포함), 이월공제 (상장주식 3년)
세율	대주주 20~30%, 대주주 외 10~20%	(단기보유) 10~37% (종합과세) (장기보유) 0/15/20%	종합·양도소득 합계액별 24%	25% (연대세 1.375%, 교회세 2~2.25% 별도)	20.315% ¹⁾

주: 1) 부흥특별소득세 및 주민세(지방세)를 합산한 세율
 자료: 각국 국세청 등을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장

법인세

제1절 개요

1. 개념 및 의의

법인세는 일정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광의의 소득세에 포함되며,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와 구별하여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라고도 한다. 법인세를 조세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면 조세수입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보통세이며,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것을 예정한 직접세¹⁵³⁾이다.

법인에 대한 과세는 17~18세기 산업의 발달로 주식회사 등 현대적인 법인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담세력 포착이 용이한 법인의 거래행위나 자산을 중심으로 과세가 이루어졌으나, 점차 법인의 소득을 포착하고 과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행정력이 발전함에 따라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보편화되었다. 미국은 1913년 법인세 과세가 시행되었으며, 영국은 법인 및 개인의 소득 모두 소득세로서 과세하다가 1965년에 이르러 법인세가 별도의 세목으로 독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인 1916년 법인소득을 소득세의 한 종류(제1종 소득)로서 과세하였으나, 1949년 「법인세법」 제정과 함께 소득세(개인소득)와 법인세(법인소득)를 독립적으로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는 소득세와 달리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동안 순자산의 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법인세법」은 법인세 과세대상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금액을 의미하며,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즉, 순자산의 증가액에서 순자산의 감소액을 차감하여 순자산의 순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153) 명목상 법인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인세가 직접세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부담 주체(주주, 종업원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

다만, 법인의 유형에 따라 과세대상인 소득의 범위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영리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과세한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만 과세대상이다.¹⁵⁴⁾

2. 기능 및 특징

가. 기능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주요 세목으로, 조세의 기본적인 기능인 국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조달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개인소득세를 보완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¹⁵⁵⁾ 법인세가 없다면 개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법인의 경우 법인이 사내유보된 이익에 대해서는 향후 배당 등으로 주주에게 배분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유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의 귀속자인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자가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위장하거나 기업 이윤, 배당, 자본이득의 형태로 전환하여 조세를 회피할 유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법인의 소득이 최종적으로는 개인 주주에게 분배되는 도관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는 경기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법인의 투자·고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정책적 고려를 통해 기업의 투자나 고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부가 의도하는 사회·경제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나. 특징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OECD 회원국 또는 G7 국가에 비해 GDP나 총조세 대비

154) 자세한 내용은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2. 납세의무자” 참조

155)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조세설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번역), 시그마프레스, 2015.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특징은 세율구조와 과세기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OECD 회원국 또는 G7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 체계를 택하고 있는 것과 대비할 때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구조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26.4%) 또한 OECD 회원국 평균(23.9%)과 비교하여 다소 (2.5%p) 높은 편이다. 과세기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법인세는 소득 상위 약 0.01%(86개) 법인의 과세표준이 전체의 34.0%를 차지하는 등 상위 소득 구간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부담 수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3년 기준 3.6%로 OECD 회원국의 평균(3.4%) 및 G7 국가 평균(2.4%)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4년 2.8% 수준에서 2022년 4.8%까지 증가한 뒤,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3.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는 다른 G7 국가 및 OECD 회원국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된다. G7 국가의 평균적인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은 2014년 2.0%에서 2023년 2.4%로, OECD 회원국의 경우 2014년 2.5%에서 2023년 3.4%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 명목GDP 대비 법인세 부담 추이: 국제비교 ■

(단위: %, %p)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2.8	3.8	2.9	3.4	4.8	3.6	0.8
G7 평균	2.0	1.8	1.9	2.2	2.5	2.4	0.4
OECD 평균	2.5	2.7	2.5	3.0	3.6	3.4 ¹⁾	0.9

주: 1) OECD 평균은 38개국 기준이며, 2022년 미발표국(호주, 그리스)은 전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함

1. 전체 OECD 국가의 명목GDP 대비 법인세 부담 현황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2. 한국의 GDP는 구계열 기준(2015년 기준년)으로, 2024년 공표된 신계열(2020년 기준) 수치와 차이 있음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우리나라 법인세의 총조세 대비 비중은 2023년 기준 14.4%로 OECD 회원국 평균(11.8%) 및 G7 국가 평균(9.0%)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4년 12.8%에서 2022년 16.8%로 증가한 후 2023년에는 14.4%로 감소하였다. OECD 회원국의 경우 총조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9.2%에서 2023년 11.8%로 증가하였다. G7 국가의 경우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0년까지는 7%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8.2%, 2022년 9.0%로 증가하였다.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국제비교

(단위: %, %p)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12.8	15.7	12.1	12.8	16.8	14.4	1.6
G7 평균	7.7	7.1	7.2	8.2	9.0	9.0 ¹⁾	1.3
OECD 평균	9.2	9.6	9.1	10.3	12.0	11.8 ¹⁾	2.6

주: 1) OECD 평균은 38개국 기준이며, 2023년 미발표국(호주, 그리스, 일본)은 전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함

1. 전체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현황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율구조

우리나라 법인세의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022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존 27.5%에서 1.1%p 하락하여 2023년부터 26.4%로 인하되었다. 2024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3.9%로 우리나라보다 2.5%p 낮으며, G7 국가의 평균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2%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26.4% 대비 0.8%p 높은 수준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24.2%에서 2019년 27.5%로 상승하였고, 2022년까지 이 수준이 유지되었다가 2023년부터 26.4%로 1.1%p 감소하였다. G7 국가와 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적인 명목 최고세율은 2015년 각각 31.0%, 25.2%에서 2024년 27.2%, 23.9%로 감소하였다. 다만, 2023년 영국이 명목 최고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였고, 체코와 슬로베니아도 2024년 명목 최고세율을 각각 2%p, 3%p 인상함에 따라 OECD 및 G7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평균값은 2022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다.

■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추이(지방세 포함): 국제비교 ■

(단위: %, %p)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차이 (‘24-’15)
한국	24.2	27.5	27.5	27.5	26.4	26.4	2.2
G7 평균	31.0	27.2	26.7	26.3	27.2	27.2	△3.8
OECD 평균	25.2	23.7	23.6	23.6	23.7	23.9	△1.3

주: 전체 OECD 국가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현황(지방세 포함)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4개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다수의 국가가 1개(24개국) 또는 2개(10개국)의 과세표준 구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이상의 과세표준 구간을 채택한 국가는 우리나라(4개)를 비롯하여 룩셈부르크, 영국(3개)과 코스타리카(5개)가 존재한다.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구조는 2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운용되었으나, 2012년 이후 3단계, 2018년 이후 4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체제로 개편되어 조세누진성이 강화되었다.

■ OECD 국가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수 현황 ■

과세표준 구간 수	해당 국가	
1개	24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미국
2개	10개국	호주,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일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3개	2개국	룩셈부르크, 영국
4개	1개국	한국
5개	1개국	코스타리카

주: 1. 지방세나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금(surtax)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집계

2. 특정 기준 이하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례세율도 별도의 세율구간으로 구분한 기준

자료: 각국의 과세관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법인의 실질적인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이월결손금 등 법인세제가 적용되기 이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으로 나누어서 측정한다. 최근 10년간의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외국납부세액과 지방세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세부담 추이와 마찬가지로 2014년과 비교하여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 법인세 실효세율: 신고연도 기준 ■

(단위: %, %p)

구분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일반적인 경우 (외국납부세액·지방세 미포함)	소득금액기준	14.2	17.5	15.8	16.1	16.4	15.9	1.7
	과세표준기준	16.0	19.1	17.5	18.1	18.5	17.8	1.8
외국납부세액 포함	소득금액기준	15.3	18.1	16.9	16.7	17.4	16.9	1.6
	과세표준기준	17.2	19.7	18.8	18.8	19.7	18.9	1.7
외국납부세액·지방세 포함	소득금액기준	16.7	19.8	18.5	18.3	19.1	18.5	1.8
	과세표준기준	18.8	21.6	20.5	20.6	21.5	20.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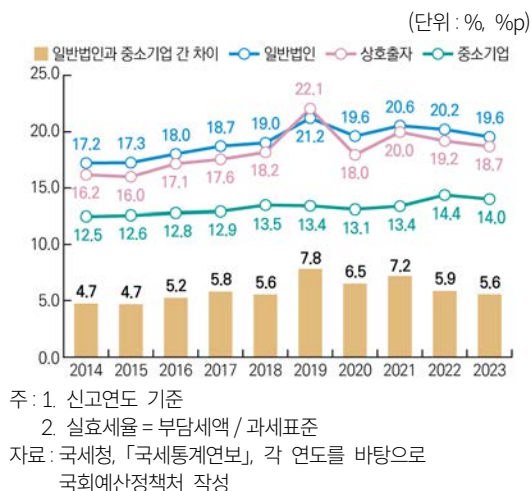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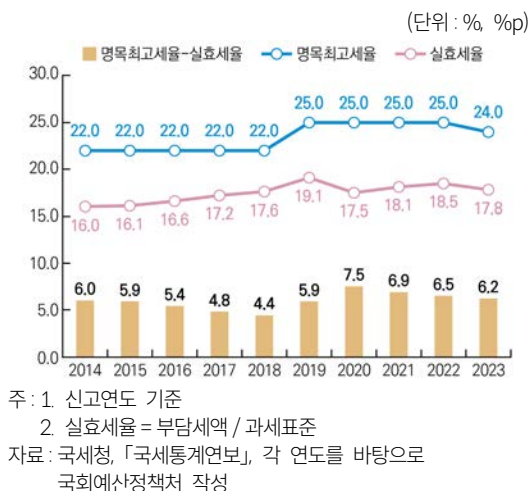
주: 신고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2018년까지 명목 최고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가 감소하였다가 2019년 이후로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년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미포함)은 24.0%¹⁵⁶⁾, 과세표준 기준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지방세 미포함)은 17.8%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는 6.2%p이다. 실효세율 격차는 2014년 6.0%p에서 2018년 4.4%p까지 감소하였으나, 2020년 7.5%p까지 확대된 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기업규모별로는 2023년 기준 일반법인 19.6%(상호출자제한기업 18.7%), 중소기업 법인 14.0%이며, 일반법인과 중소기업 법인 간 실효세율 격차는 5.6%p이다.

156) 2022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미포함)이 24.0%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납부분부터 반영될 예정임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추이: 2014~2023년 ■ 기업규모별 실효세율 추이: 2014~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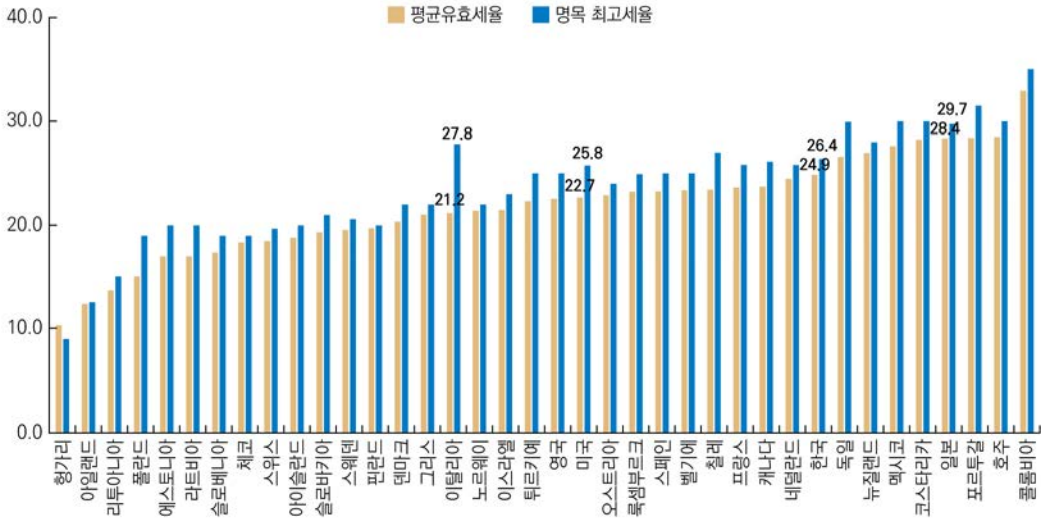
한편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분모를 구성하는 법인의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이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서로 다른 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일반적인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구별되는데, 국가마다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과세 기반인 소득금액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또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이월결손금이나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에 대한 제도 또한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하므로, 과세표준에 대한 일률적인 국제 비교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OECD에서는 평균유효세율(Effective average tax rate: EATR)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각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평균유효세율은 조세정책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수단으로, 실제 세부담 수준이 아니라 가상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전 및 세후 현금흐름과 인플레이션, 금리 변수, 자금조달방식에 대한 시나리오를 통해 과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평균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의 평균(21.9%)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각국의 평균유효세율과 명목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명목세율과 평균 유효세율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이탈리아는 2023년 기준 명목 최고세율은 27.8%로 평균(23.7%)보다 4%p 이상 높지만 평균유효세율은 OECD 국가 평균(21.9%)보다 낮은 21.2%로 나타났다.

■ 법인세 평균유효세율 및 명목 최고세율 비교: 2023년 ■

(단위 : %)



주: 제시된 평균유효세율은 국가별 이자율 및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통해 산출한 값
 자료: OECD, Corporate Tax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과세기반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세기반 측면에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상위 소득금액 구간에서의 세부담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수와 과세표준, 총부담세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신고한 법인은 100개로 전체 법인 수(103.1만개)의 0.01%에 불과하지만, 과세표준의 34.0%, 총부담세액의 38.0%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살펴보면, 법인 수는 4,525개로 전체 법인 수의 0.4%에 불과하지만, 과세표준의 70.6%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4%에 달한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소득금액 구간으로 갈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소득금액 5억원 이하 구간은 9.2%의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소득금액 5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소득 상위구간으로 갈수록 실효세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 구간은 실효세율이 다소 감소하여 19.8%로 나타났다.

■ 법인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 2023년 신고 기준 ■

소득금액구간별	법인수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실효 세율
	만개	%	누적%	조원 (A)	%	누적%	조원 (B)	%	누적%	B/A,%
합계	103.1	100.0	-	459.1	100.0	-	81.6	100.0	-	17.8
0 이하	42.3	41.0	100.0	0.0	0.0	100.0	0.1	0.1	100.0	-
0~1억원	37.5	36.4	59.0	8.8	1.9	100.0	0.8	1.0	99.9	9.1
1~5억원	16.5	16.0	22.6	31.7	6.9	98.1	2.9	3.6	98.9	9.2
5~10억원	3.1	3.0	6.6	19.0	4.1	91.2	2.3	2.8	95.3	12.0
10~50억원	2.8	2.8	3.6	51.1	11.1	87.0	7.5	9.2	92.5	14.6
50~100억원	0.4	0.4	0.8	24.4	5.3	75.9	4.1	5.0	83.3	16.6
100~500억원	0.4	0.4	0.4	63.8	13.9	70.6	11.7	14.3	78.4	18.4
500~1,000억원	0.05	0.05	0.1	31.1	6.8	56.7	6.3	7.7	64.0	20.1
1,000~5,000억원	0.04	0.04	0.05	73.1	15.9	49.9	15.0	18.4	56.3	20.5
5,000억원 초과	0.01	0.01	0.01	156.1	34.0	34.0	31.0	38.0	38.0	19.8

자료: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최근 현황

2024년 법인세 규모

2024년 법인세 징수액은 62.5조원으로, 2023년 80.4조원 대비 17.9조원(△22.3%) 감소하였다. 법인세를 신고분과 원천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신고분은 39.4조원으로 전년 대비 21.0조원(△34.7%)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금속 등 수출비중이 큰 주요 업종의 기업실적이 악화된 것에 기인한다. 한편, 법인세 원천분은 2024년 23.1조원으로 전년 대비 3.1조원(15.2%) 증가하였는데, 이는 법인의 금융성 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24년 법인세 징수액 ■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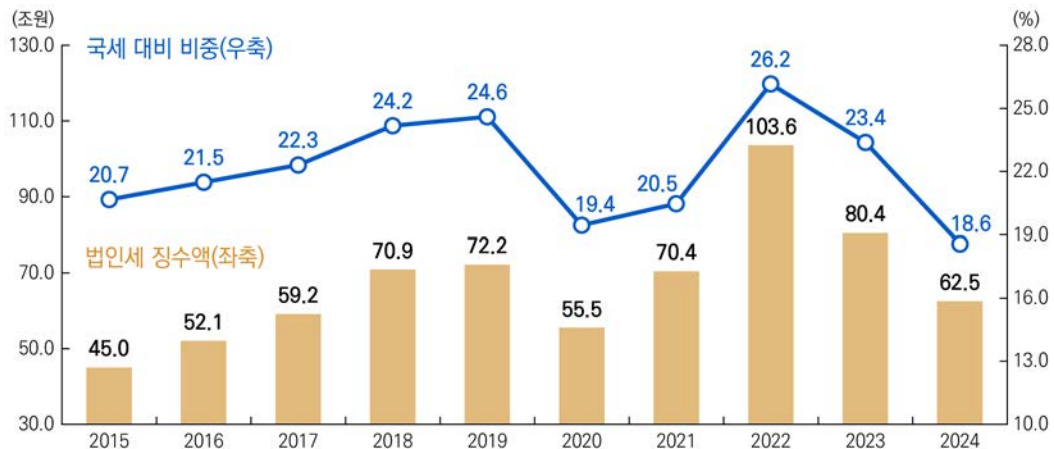
	2023년 (A)	2024년 (B)	증감	
			증감액(C=B-A)	증가율(C/A)
법인세	804,195	625,113	△179,082	△22.3
- 신고분	603,768	394,162	△209,606	△34.7
- 원천분	200,427	230,951	30,524	15.2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법인세 추이

연도별 법인세 징수액 규모는 2015년 45.0조원에서 2022년 103.6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23년은 80.4조원, 2024년 62.5조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다. 전체 국세수입 중 법인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4년 20.8%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8~2019년은 24%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가격 하락 및 코로나 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9.4%, 2021년 20.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글로벌 경기회복 등에 따른 법인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2년 26.2%까지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법인실적 부진으로 2023년 23.4%, 2024년 18.6%로 2년 연속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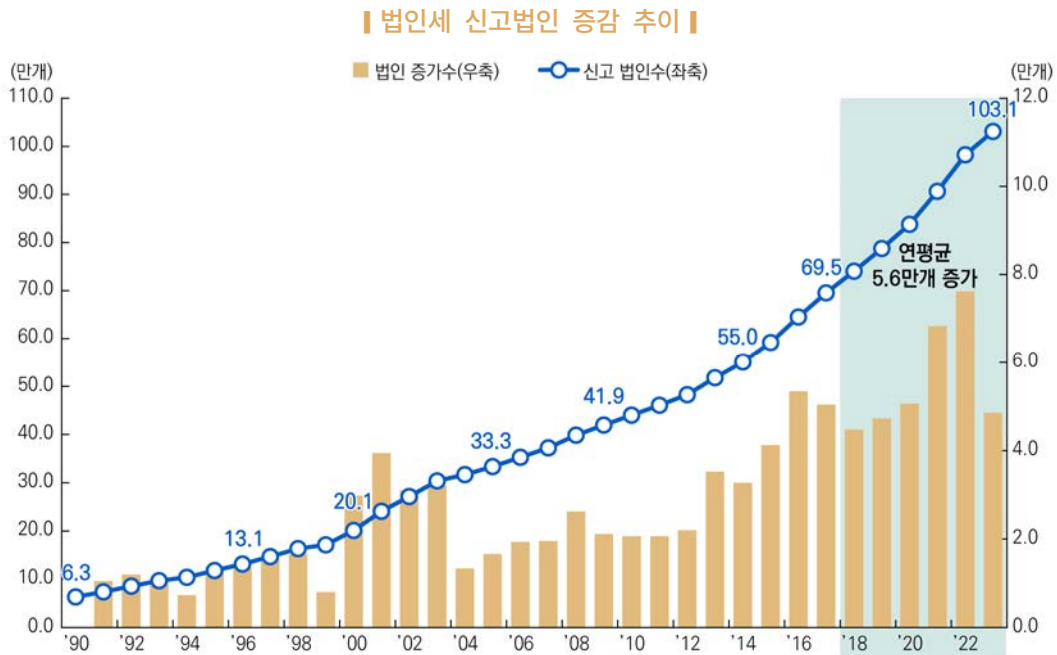
■ 최근 법인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법인세 신고법인 추이

2023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103.1만개로, 1990년 6.3만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5.6만개 수준으로 신고 법인수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23년의 경우 신고법인 수가 4.9만개 증가하여, 전년(7.6만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10년간 법인세 신고법인은 2014년 55.0만개에서 2023년 103.1만개로 증가하였다. 소득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간에서 신고법인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 신고법인 수 대비 비중은 소득금액이 0 이하인 구간을 위주로 증가하였다. 소득금액이 0 이하인 구간의 신고법인 수는 2014년 20.4만개에서 2023년 42.3만개로 21.9만개 증가하였으며, 전체 신고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37.0%에서 41.0%로 4.0%p 증가하였다. 반면 소득금액 0~1억원 구간의 경우 2014년 대비 2023년 신고법인 수는 15.5만개 증가하였으나, 전체 신고법인 대비 비중은 3.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세의 소득금액 구간별 신고법인 수 및 비중 ■

(단위: 만개, %, %p)

소득금액 구간별	법인수					비중				
	2014	2021	2022	2023	차이 (‘23-’14)	2014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합계	55.0	90.6	98.2	103.1	48.0	100.0	100.0	100.0	100.0	-
0 이하	20.4	38.2	41.0	42.3	21.9	37.0	42.2	41.7	41.0	4.0
0~1억원	22.0	33.0	35.3	37.5	15.5	40.0	36.4	35.9	36.4	△3.6
1~5억원	9.2	14.0	15.5	16.5	7.3	16.7	15.5	15.8	16.0	△0.7
5~10억원	1.6	2.5	2.9	3.1	1.5	2.9	2.8	3.0	3.0	0.1
10~50억원	1.4	2.2	2.7	2.8	1.4	2.5	2.5	2.7	2.8	0.2
50~100억원	0.2	0.3	0.4	0.4	0.2	0.3	0.3	0.4	0.4	0.1
100~500억원	0.2	0.3	0.4	0.4	0.2	0.3	0.3	0.4	0.4	0.03
500~1,000억원	0.02	0.04	0.05	0.05	0.03	0.04	0.04	0.05	0.05	0.01
1,000~5,000억원	0.02	0.03	0.04	0.04	0.02	0.04	0.03	0.04	0.04	0.004
5,000억원 초과	0.005	0.007	0.010	0.01	0.004	0.01	0.01	0.01	0.01	0.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주요 개정연혁

1. 과세표준 구간 확대 및 세율 조정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수는 2단계에서 4단계까지 증가하였다. 법인세율은 2012년 이전까지 2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였으나, 2012년 이후 중간 구간이 신설되면서 2~200억원 구간의 세율을 2%p 인하하고,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22%를 유지하여 3단계 구조가 되었다. 또한, 2017년 세법개정으로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25% 세율이 신설되면서 2018년부터 총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법인에 적용되는 명목 최고세율은 1998년 최고 과세표준 구간 기준 28%에서 2009년 22%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12년 과세표준 구간이 3단계로 확대되는 시점에도 최고세율은 22%를 유지하였다. 2017년 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이 25%로 인상되었으나, 2022년 세법개정으로 일반법인에 대한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되면서 현재 법인세율 구조는 9~24%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체계가 되었다.

■ 2002년 이후 법인세율 추이 ■

시행연도	과세표준 구간 수	세율
2002	2단계	1억원 이하 15% / 1억원 초과 27%
2005		1억원 이하 13% / 1억원 초과 25%
2008		2억원 이하 11% / 2억원 초과 25%
2009		2억원 이하 11% / 2억원 초과 22%
2010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2%
2012	3단계	2억원 이하 10% 2 ~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2018	4단계	2억원 이하 10% 2 ~ 200억원 이하 20% 200 ~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2023	4단계	2억원 이하 9% 2 ~ 200억원 이하 19% 200 ~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 비용이나 시설투자와 같은 투자에 대하여 조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주요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10년대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조세지원은 일반 기술의 R&D 지원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과 같이 중요도가 높은 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구분하여, 일반 기술에 대한 R&D의 지원은 축소하면서 중요도가 높은 기술에 대한 R&D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일반 기술에 대한 R&D는 증가분(직전 4년 연평균 초과액의 25~50%)과 당기분(0~25%) 중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일반 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당기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는데, 2010년에는 공제율이 3~6%였으나, 2018년 세법개정으로 0~2%로 감소하였다.

한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의 세제지원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해서는 도입 당시 당기 투자액의 20~30% 세액공제만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매출액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R&D 금액의 비중을 따라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2021년 세법개정으로 반도체·이차배터리·백신 등 중요도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종전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30~50%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으로 확대하였다. 2024년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의 R&D 비용에 대해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3~5년간 기존 중견기업보다 5%p의 공제율을 우대하는 공제율의 점감구조를 도입하였다. 또한, 2025년 2월 세법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미래형 운송수단, 인공지능 등으로 확대하였다.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개정사항 ■

개정연도	개정사항
2010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확대: 소비성서비스 업종 포함 - 연구개발비 범위 축소: 정부 출연금 제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도입: (공제율) 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
2013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비전담부서의 R&D 비용공제 적용 배제 - 당기분에 대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 공제율: (당기분) 중소기업 25%, 대기업: 3~6%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3~6%
2014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분에 대한 대기업 공제율 하향: 3~6% → 대기업 3~4%
2015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기업 당기분 방식 공제율: 3~4% → 2~3%
2016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정비: 사물인터넷 등 추가
2017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대기업 당기분 방식 기본공제율: 2% → 1% - 대기업 증가분 방식 공제율: 40% → 30%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통합(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155개 기술) - 중견·대기업에 대한 추가공제율* 적용 *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3 (10% 한도)
2018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대기업 당기분 방식 기본공제율: 1% → 0%(삭제) - 대기업 증가분 방식 공제율: 30% → 25%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공제율* 적용 *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 (10~15% 한도)
2021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 신설> 기업규모별로 30~50% 공제율 적용(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수준)
2023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추가
2024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시 일정기간 공제율을 우대하는 점감구조 도입
2025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연구·인력개발(R&D)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 절약시설 등 설비의 용도 등에 따라 개별적인 조세지원 제도로 운영되었다. 2010년대 이후 이러한 개별 설비투자 조세지원 제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하여 설정하였다. 중견기업 및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 법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부여하는 한편,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졌다.

■ 개별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 공제율 변화 추이(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이전) ■

(단위 : %)

설비자산	2014 이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R&D 설비	10	3/5/10	1/3/6/	1/3/6	1/3/6	1/3/6	1/3/7
생산성향상 시설	3/3/7	3/5/10	3/5/10	3/5/7	3/5/7	1/3/7	1/3/7 *(2/5/10) **20년 한시
안전 설비	10	3/5/7	3/5/7	3/5/7	3/5/7	1/3/7	1/5/10
에너지절약 시설	10	3/5/10	1/3/6	1/3/6	1/3/6	1/3/6	1/3/7
환경보전 시설	10	3/5/10	3/5/10	3/5/10	3/5/10	1/3/10	3/5/10
초연결(5G)네트워크 시설	-	-	-	-	-	-	2(최대 3)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5	3/5/7	3/5/7	3/5/7	3/5/7	1/3/6	1/3/6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	-	-	-	5/7/10	5/7/10	5/7/10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7	7	7	7	7/7/10	7/7/10	3/5/10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3	3 *신규상장 4%	3 *신규상장 4%	3 *신규상장 4%	3 *신규상장 4%	중견1(2)/3 *신규상장 4%	중견1(2)/3 *신규상장 4%

주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제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0년까지는 일부 자산·시설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세액공제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개별 자산·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재설계되어 운용되고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사업용 자산(설비)투자에 대한 기본공제(1/3/10%)¹⁵⁷⁾와 추가공제(직전 3년의 연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3%)로 구성된다. 2022

157)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3/5/12%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됨

년부터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을 신설하여, 종전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 대비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2023년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설비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 공제율을 각각 2%p, 1%p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설비투자의 기본 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종전 대비 7~9%p 상향하였다. 추가적으로 2023년에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2023년 투자분에 대하여 기본 공제율을 상향(일반 +2%p, 신성장·원천기술 +3~6%p)하고 추가공제율 10%를 적용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2025년 2월 세법개정으로 2024년 및 2025년 투자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운용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보다도 공제율 5%p 인상하여 적용¹⁵⁸⁾하기로 하였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율 변화 추이 ■

(단위 : %)

		2021	2022	2023 ¹⁾	2024 ¹⁾	2025 ¹⁾
기 본 공 제	일반 시설	1/3/10	1/3/10	3/7/12	1/7/12	1/7/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등	3/5/12	3/6/12	6/10/18	3/8/14	3/8/1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	-	6/8/16	15/15/25	15/15/25	15/15/25
	반도체기술 사업화시설 등	-				20/20/30
추가공제		3	3 (국가전략기술 4)	10	10	10

주: 1) 2023년 및 2024~2025년은 임시투자 세액공제까지 고려한 수치임

1.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제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도 확대하고 있다.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특징은 기존에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되던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단순화하면서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58) 단, 반도체 분야에 대한 공제율 인상은 2025년 투자분부터 적용됨

기업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액공제는 2017년 이전에는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2018년부터 ‘고용창출세액공제’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계승하면서,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등의 고용을 증가시킬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Ⅱ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주요 연혁 Ⅱ

시행연도	개정사항
20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도입> • ‘고용창출세액공제’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 - 공제액: 상시근로자 증가시 1인당 300~1,100만원 - 공제기간: 중소기업 2년, 대기업: 1년
2019년	• 공제액 및 공제기간 확대 - 공제액: 상시근로자 증가시 1인당 450~1,200만원 - 공제기간: 중소기업 3년, 대기업 2년 • 사후관리제도 도입: 공제 이후 2년내 상시근로자 감소시 공제액 추징 등
2021년	• 청년 등 우대공제 적용대상에 60세 이상 고령자 추가
2022년	• 청년 등에 대한 우대공제액의 한시적 확대(2022년 한정 적용) - 우대공제액: 1인당 400~1,200만원 → 500~1,300만원
2023년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처럼 2022년까지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외에도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중소기업 법인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지불하는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함께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종전의 개별적인 고용지원 세액공제를 통합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운용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는데, 기본공제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1인당 근로자 유형·기업규모·지역별로 850~1,550만원의 공제액 혜택을 부여하며, 추가공제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자 등의 인원에 대해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소기업 900만원의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로 적용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

2022년 시행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 1인당 공제액

(단위 : 만원)

1인당 공제액	중소(3년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0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 청년연령: 15~29세, ()안은 공제혜택 기간

(경력단절여성 등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등 인건비 × 공제율

(단위 : %)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 등	30	15

* 경력단절여성(2년간) 및 육아휴직 복귀자(1년간) 포함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인원 × 공제율

(단위 : 만원)

1인당 공제액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1,000	70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단위 : %)

공제율	중소기업
상시근로자(2년)	50*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2년)	100

* 전기통신업 및 인쇄물 출판업 등 75%

2023년 시행(현행)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 1인당 공제액

(단위 : 만원)

1인당 공제액	중소(3년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1,450	1,550	800	400

* 청년연령: 15~34세, ()안은 공제혜택 기간

** 2025년 2월 세법개정으로 경력단절여성에서 성별요건 삭제

(추가공제) 정규직전환 등 증가인원 × 1인당 공제액

(단위 : 만원)

1인당 공제액	중소	중견
정규직전환자(1년) 및 육아휴직 복귀자(1년)	1,300	9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1. 과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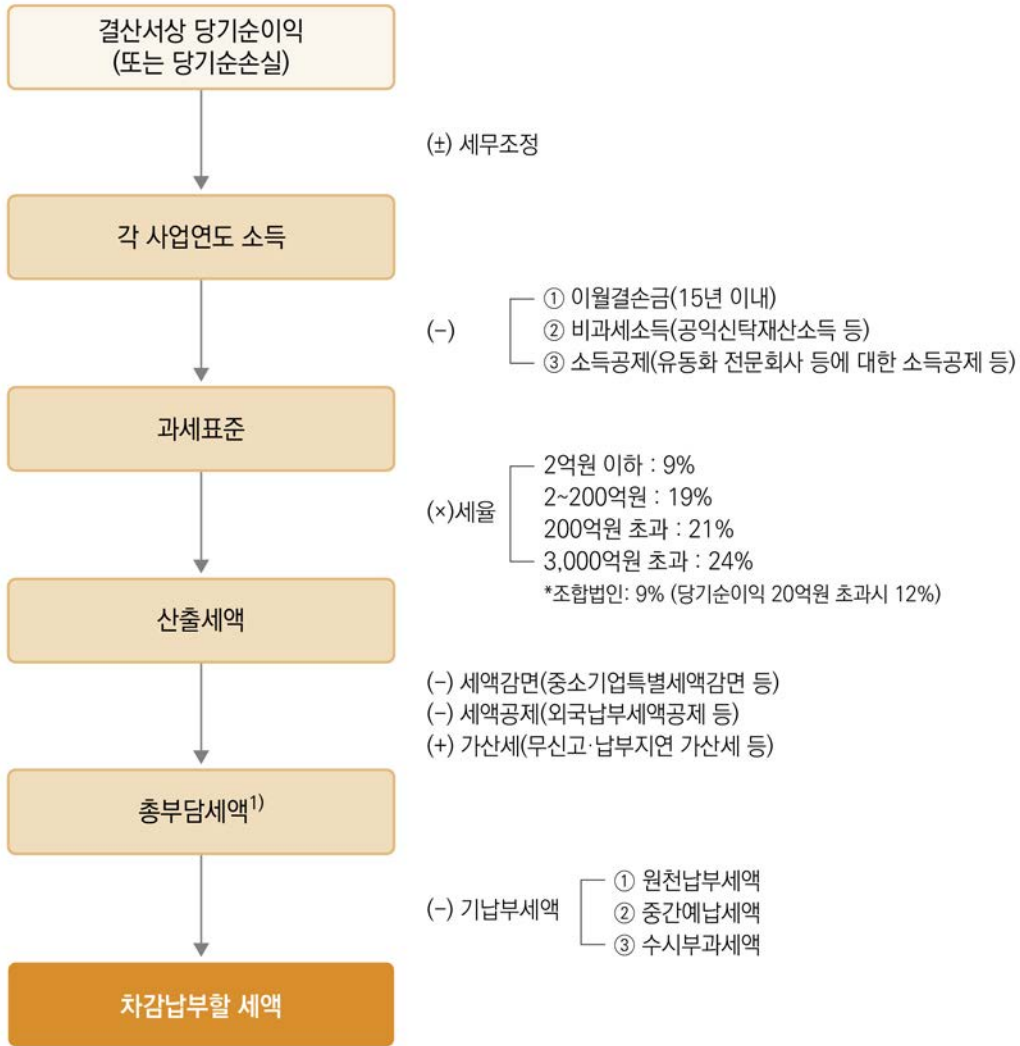
법인세 과세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세를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세의 과세소득인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비용 항목을 많은 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¹⁵⁹⁾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세법상 수익·비용 차이를 가감하게 되는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조정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한 것이 법인세 산출세액이다. 여기에 세액감면·세액공제, 가산세 등을 가감하면 법인의 총부담세액이 산출되고,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 등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159) 예를 들어,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닌 항목을 세법상 수익으로 보거나(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회계상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 세법은 일정 금액만 인정하는 경우(예: 감가상각비, 기업업무추진비) 등

■ 법인세 과세의 기본 구조: 2025년 ■



주: 1) 최저한세 적용 후 금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납세의무자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¹⁶⁰⁾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다만 내국법인 중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니지 않으나, 외국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닌다.¹⁶¹⁾

「법인세법」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¹⁶²⁾,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¹⁶³⁾으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먼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여부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은 우리나라 및 해외 원천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지만¹⁶⁴⁾, 우리나라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담한다.

■ 법인 종류별 소득의 과세범위 ■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	○	×	×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	○	×	×
국가·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		비과세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60)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등록한 단체 등

161) 「법인세법」 제3조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 12. 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162)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은 본점·주사무소(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함

163) '영리'의 판단 여부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164) 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기준은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 구분됨. '거주지국 과세원칙'은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로 차감하는 방식이며, '원천지국 과세원칙'은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2023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103.1만개로, 2017년 이후 연간 5~9% 내외에서 증가하고 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면 전체 신고법인의 95.9%(98.9만개)가 영리법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법인세 신고법인 현황: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단위: 개, %)

	2019	2020	2021	2022	2023
영리법인	751,474 (95.4)	800,925 (95.6)	867,367 (95.7)	942,144 (95.9)	988,772 (95.9)
비영리법인	35,964 (4.6)	37,083 (4.4)	38,958 (4.3)	40,312 (4.1)	42,188 (4.1)
합 계	787,438	838,008	906,325	982,456	1,030,960

주: ()안의 값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대비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법인은 기업규모에 따라 크게 중소기업 법인¹⁶⁵⁾과 일반법인(중견기업¹⁶⁶⁾과 상호출자제한기업¹⁶⁷⁾, 그 외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은 법인의 기업규모에 따라 세무조정, 결손금 처리, 공제·감면, 최저한세율 등에서 다양한 차등을 두고 있다.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가운데 중소기업 법인은 96.5만개로 전체 신고법인의 9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법인은 6.6만개로 나머지 6.4%를 차지하고 있다.

16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임

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② 업종별 매출액이 기준 이내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 존재
④ 부동산 임대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유흥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음

16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등에 따른 중견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임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주된 사업이 소비성서비스업이나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이 아님 ③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액이 3천억원 미만(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5천억원 미만)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 존재

167)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집단임(2024년 기준 88개 기업집단, 2,213개 소속회사)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업집단)
②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2024년 기준 10.4조원 이상)

■ 기업규모별 신고법인수 추이 ■

(단위: 개, %)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법인	83,496 (10.6)	75,694 (9.0)	73,197 (8.1)	72,787 (7.4)	66,224 (6.4)
- 상호출자제한기업	1,349	1,466	1,546	1,869	2,200
- 중견기업	4,205	4,519	4,975	5,469	6,139
- 그 외 기업	77,942	69,709	66,676	65,449	57,885
중소기업 법인	703,942 (89.4)	762,314 (91.0)	833,128 (91.9)	909,669 (92.6)	964,736 (93.6)
합 계	787,438	838,008	906,325	982,456	1,030,960

주: ()안의 값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대비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과세대상

가. 과세대상 소득의 유형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법인이 1사업연도(일반적으로 1년)에 발생한 순이익으로서,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상 수익 및 세법상 비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계산된 세법상 법인의 순이익을 의미한다.

둘째, ‘토지등 양도소득’이란 법인이 일정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일정한 토지’ 등이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별장과 사업용이 아닌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고 함)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여 법인세로 과세된다. 그러나 세법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100원의 소득을 얻었고, 보유한 별장을 처분하여 5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A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150원(100원+50원)이다. 법인세율이 10%라고 가정할 경우 A기업은 150원에 대한 법인세 15원(150원×10%)을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10원(50원×20%)도 부담하게 된다.

셋째, ‘미환류소득’¹⁶⁸⁾이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을 의미한다. 기업소득이 투자 및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었는데, 토지등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할 때(합병·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 발생한다. 해산하는 법인에 남아 있는 재산가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러한 청산소득은 주로 자산의 가치상승분 등으로 구성된다.¹⁶⁹⁾

■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 유형: 2025년 ■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과세표준	세법상 수익 - 세법상 비용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	양도금액 취득가액	미환류소득 - 차기환류적립금 - 이월된 환류액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청산소득금액	= 양도차익	= 미환류소득금액
세율	2억원 이하 : 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1% 3,000억원 초과 : 24%		10%, 20%(주택·별장) * 미등기 부동산 : 4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68)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됨(「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169)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산의 취득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지만, 잔여재산가액 계산 시 채권 및 자산의 추심·처분 시점의 금액(처분액 또는 분배일 기준 현재시가)을 적용함. 예를 들어 법인이 100원에 취득·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장부가액은 시가와 무관하게 100원으로 유지되지만,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가액은 시가에 따라 계산됨. 앞의 예에서 건물의 시가가 500원으로 오른 경우 해당 건물에서는 400원(500원-100원)의 청산소득이 발생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내국법인이 투자나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추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2015년 정부는 저성장 경제상황에 대응하고, 기업부문의 배당·투자 확대 및 고용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 2018년부터는 환류 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면서, 명칭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바꾸어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동 제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게 적용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 과세표준(A, B 중 선택) × 20%
 - A(투자포함형) : 소득 × 70% - [투자(1) + 임금증가(2 ~ 3) + 상생협력(3)]
 - B(투자제외형) : 소득 × 15% - [임금증가(2 ~ 3) + 상생협력(3)]
- * ()는 가중치로 신규상시근로자 2배, 청년정규직·정규직전환자 임금 증가는 3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인한 법인세 과세분은 2018년 7,191억원(939개)에서 2022년 1조 3,339억원(1,580개)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는 과세 대상 축소에 따라 5,818억원(877개)으로 감소하였다.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 현황: 2018~2023년 ■

(단위 : 개,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법인수	939	978	1,325	1,535	1,580	877
세액	7,191	8,544	10,658	11,857	13,339	5,818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의 주요 개정 연혁

2000년 이후 지속되었던 세율 인하 등 기업친화적인 법인세 개편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발하기보다는 사내유보금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계·기업 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외부로 환류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2014년 법인의 당기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 임금, 배당으로 환류하지 않는 경우 미환류 법인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2018년부터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재설계하여 적용하였으며, 2021년부터 환류대상 범위 확대 및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등 투자 및 임금증가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다. 또한, 2023년부터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으로 조정하였다.

■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최근 주요 개정사항 ■

시행연도	개정사항
2015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 과세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과세방식: 투자포함형, 투자제외형 중 선택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의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상생협력)] × 10%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의 30% - (임금증가+배당+상생협력)] × 10%
2017	- 배당액 인정비율 50%로 하향 - 청년 상시근로자 등 고용증가시 임금증가금액의 50% 가산 등
201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 과세방식 변경: 투자포함형, 투자제외형 중 선택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의 65%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의 15% - (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투자액에서 토지에 대한 투자 제외, 배당 삭제 - 고용증가시 임금증가금액 가중치 상향 - 상생협력 출연금에 대한 가중치 3배 적용
2021	- 과세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 투자포함형의 당기소득 비율 상향(65% → 70%) - 임금증가 대상범위액 인상(7천만원 → 8천만원)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연장(1년 → 2년)
2023	과세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으로 축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법인세법」상 익금 항목

「법인세법」상 수익은 ‘익금(益金)’이라고 하며,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라 할지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은 익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익금 항목

현행 「법인세법」은 과세소득의 범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의 유형은 세법상 수익의 내용 또는 범위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은 세법상 수익에 해당한다.

- ① 수입금액
- ② 자산의 양도금액
- ③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 ④ 자산의 임대료
- ⑤ 자산의 평가차익
- ⑥ 자산수증이익(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⑦ 채무면제이익(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등

특수한 익금 항목

「법인세법」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특수한 거래 등으로 인한 수익을 익금으로 의제(擬制)하는 항목이 있는데, 의제배당,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차액, 간주임대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은 형식상 배당이 아니지만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 배당으로 보아 주주에게 법인세(주주가 법인인 경우) 또는 소득세(주주가 개인인 경우)를 과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A법인에 투자를 한 B주주가 A법인의 자본금 감소·해산·합병·분할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 주주에게는 법인세를, 개인 주주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이익’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수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¹⁷⁰⁾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에 정기에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수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월세로 받는 법인과 의 형평성과 법인세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고 차입금 및 보증금 등에 의한 부동산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항목은 모든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¹⁷¹⁾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게만 적용된다.

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항목이지만 해당 소득의 성질, 유형 등에 비추어 과세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 실현 또는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해 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익금불산입 항목’이라고 한다.¹⁷²⁾

대표적으로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차익, 감자차익, 합병·분할 차익이 이에 해당한다. 이 항목들은 주주와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의 순자산 증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법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배당금 수령액 중 일정금액), 법인세 환급액 등은 수익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입배당금액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이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종전에는 지분율과 지주회사 여부를 고려하여 익금불산입률을 달리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지분율만을 고려하여 익금불산입률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

구분	주요 항목
(1) 자본거래 수익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차익 감자·합병·분할 차익 자산수증이익(국고보조금 등은 제외)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등
(2) 이중과세방지	이미 과세된 소득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액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3) 기타	자산의 평가이익(일정한 평가이익은 제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70) 유가증권이 아닌 유형자산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시점에는 익금으로 과세하지 않고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매각차익에 대해서 과세함

171)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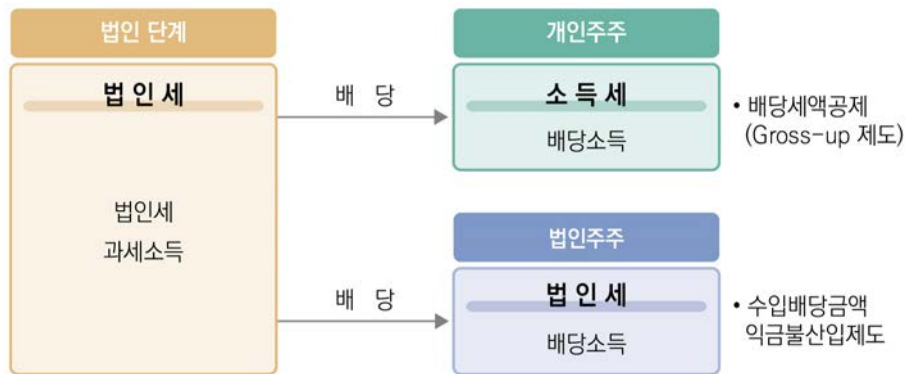
172) 「법인세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배당소득은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고,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을 배당하게 된다. 이후 주주단계에서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다시 과세되는데, 이는 동일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모두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킨다.

세법은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개인주주의 경우 소득세에서 배당세액공제 등을 통해 조정하고 있으며, 법인주주의 경우 지급받은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익금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지분율에 따라 수익에서 제외하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30~100%로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⁷³⁾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내국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73) 2022년 이전까지는 모회사의 지주회사·상장 여부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달리 적용하였음

<일반법인>

<지주회사>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100%	100%	40%~100%	100%	80%~100%	100%
30%~100% 미만	50%	50%~100% 미만	50%	30%~40% 미만	90%	50%~80% 미만	90%
30% 미만	30%	50% 미만	30%	30% 미만	80%	50% 미만	80%

라. 「법인세법」상 손금 항목

「법인세법」상 비용은 ‘손금(損金, exclusion)’이라고 하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의미한다. 손금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 항목(「법인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손실·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과 마찬가지로 예시적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②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
- ③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④ 인건비
- ⑤ 유형자산의 수선비
- ⑥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⑦ 자산의 임차료
- ⑧ 차입금이자
- ⑨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
- ⑩ 자산의 평가차손
- ⑪ 제세공과금 등

마.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

‘손금불산입’ 항목이란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은 아래의 표에서 규정하는 사업 관련성이 있거나 일정 기준 이하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사업관련성이 없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주요 항목

구분	주요 항목
대손금	①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②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
자본거래 항목	①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② 주식할인발행차금
세금과 공과금 항목	① 법인세 등 일정한 조세 ② 벌금·과료·과태료 및 체납처분비 ③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
자산의 평가손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다만 다음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 ① 재고자산, 유가증권 등,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손실 ② 특수한 경우에 인정되는 자산의 평가손실
세법상 한도 초과 항목	① 감가상각비, ② 기부금, ③ 기업업무추진비, ④ 과다경비, ⑤ 업무무관비용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음으로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인 ‘감가상각비’,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인건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 형태를 반영하여,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체계적 방법에 따라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⁷⁴⁾ 여기서 감가상각의 대상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유·무형의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회계기준에서는 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치의 추정 등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세법은 일정한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별 자산별로 상각방법은 각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무신고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¹⁷⁵⁾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174) 「법인세법」 제23조

175)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 자산종류별 감가상각 방법: 2025년 ■

구분		선택가능한 상각방법	무신고시
유형 자산	일반	정률법 또는 정액법	정률법
	건축물	정액법	정액법
	광업용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무형 자산	일반	정액법	정액법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개발비	20년 범위에서 정액법	5년간 정액법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정액법	정액법
	주파수이용권 등	정액법	정액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내용연수란 자산의 사용가능 기간을 말한다. 잔존가액과 마찬가지로 회계상으로는 내용연수를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추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은 내용연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산별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내용연수’라고 하며, 이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하여 내용연수의 상한과 하한을 법인이 결정할 수 있다.

■ 자산종류별 감가상각 내용연수: 2025년 ■

구분	대상자산	기준내용연수 (하한 ~ 상한)
시험연구용자산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5년
	광학·시험·측정기기, 공구,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년
무형자산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5년
	특허권	7년
	어업권,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0년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20년
	댐사용권	50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 공구, 기구 및 비품	5년 (4년 ~ 6년)
건축물등	선박 및 항공기	12년
	[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	(9년 ~ 1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20년 (15년 ~ 25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40년 (30년 ~ 50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부금

기부금이란 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¹⁷⁶⁾ 기부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 일반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특례기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의 50%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 특례기부금의 범위: 2025년 ■

구분	범위
특례 기부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사립학교 등(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10%(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20%)의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¹⁷⁷⁾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30%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의 법인주주 등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3년 법인세 신고법인 103.1만개가 신고한 기부금은 4.5조원, 1법인당 평균액은 435만원 수준이다. 기부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기부금이 3.3조원(72.7%), 특례기부금 등이 1.1조원(27.3%) 규모이다.

176) 「법인세법」 제24조

177) 인정되는 단체의 종류 및 단체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함

■ 법인의 소득금액 규모별 기부금 신고 현황: 2023년 신고 기준 ■

(단위: 만개, 억원)

	신고법인수 (A)	기부금 합계 (B)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법인당 기부액 (B/A)
소득금액 규모별	103.1	44,836	12,257	32,579	0.04
0 이하	42.3	4,483	1,564	2,920	0.01
0~1억원	37.5	1,258	264	994	0.00
1~5억원	16.5	2,660	514	2,146	0.02
5~10억원	3.1	1,359	259	1,100	0.04
10~50억원	2.8	3,850	956	2,894	0.14
50~100억원	0.4	2,121	790	1,330	0.52
100~500억원	0.4	4,562	1,403	3,159	1.26
500억원 초과	0.1	24,544	6,507	18,037	24.3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부금 관련 주요 개정 연혁

기부금은 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본래 손금이 될 수 없으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한도 범위에서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공익성 있는 기부금을 손금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인세에서 일정부분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기부금에는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¹⁷⁸⁾이 존재한다. 기부금은 2010년대 이후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고,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한도는 2000년대 이후 특례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및 특례·일반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 소득금액의 5%에서 2011년 이후 10% 한도로 확대되었다. 또한, 2020년 이전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100% 공제하였으나, 2021년 이후부터는 이월결손금의 60%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산정하도록 변경되었다.

기업업무추진비¹⁷⁹⁾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사교, 교제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¹⁸⁰⁾

178)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규정됨

179) 종전에 '접대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됨

180)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부금과 달리 사업 관련성이 높은 지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기업업무추진비의 과다 지출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수령하는 음식·숙박업소 등의 매출액 포착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업무추진비(건당 1만원 이하 또는 20만원 이하 경조금 제외)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한도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기본한도는 기업규모별로, 일반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 법인은 3,600만원이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기업의 수입금액 구간별로 0.03~0.3%의 손금산입 적용률을 규정하고 있다.¹⁸¹⁾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2025년 ■

	구분	금액
① 기본 한도 ¹⁾	일반법인	1,200만원
	중소기업 법인	3,600만원
	수입금액 구간	적용률 ²⁾
② 수입금액별 한도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500억원 초과	0.03%

주: 1) 12개월 사업연도 기준이며, 12개월 미만의 경우 월로 나누어 계산

2)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률의 10%만 허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문화비¹⁸²⁾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181)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기본한도와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의 50%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함

182) 국내 문화관련 비용으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 참고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개정 연혁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의 감소로 보아 손금이 인정되나, 과도한 지출에 따른 법인의 재무구조 악화를 예방하고자 한도액을 두어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업규모에 따른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한도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는데, 중소기업 법인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는 2019년 2,400만원, 2020년 3,6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기본한도 변화 추이 ■

(단위: 만원)

구분	2014년 이전	2015~2016년	2017~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중소기업 법인	1,800	2,400	1,800	2,400	3,600
일반법인	1,2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인건비

인건비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으로서,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임금·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 등을 의미한다.¹⁸³⁾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다.

■ 인건비의 세법상 비용 인정 여부: 2025년 ■

인건비의 구분		직원	임원
1. 일반급여		○	○
2. 상여금	① 일반적인 상여금	○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인정
	②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	×	×
3. 퇴직급여		○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
4. 복리후생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현실적인 퇴직’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퇴

183)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현실적인 퇴직의 구분: 2025년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① 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③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할 때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④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④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다시 채용한 경우
⑤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경우로서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때	⑤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법인세법」은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 관련 비용에 대하여 사업관련성 유무 등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 및 한도액을 달리 인정하고 있다.¹⁸⁴⁾

법인이 고가의 승용차를 취득·임차하여 법인의 업무용이 아닌 임직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였다.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 ①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②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자동차
- ③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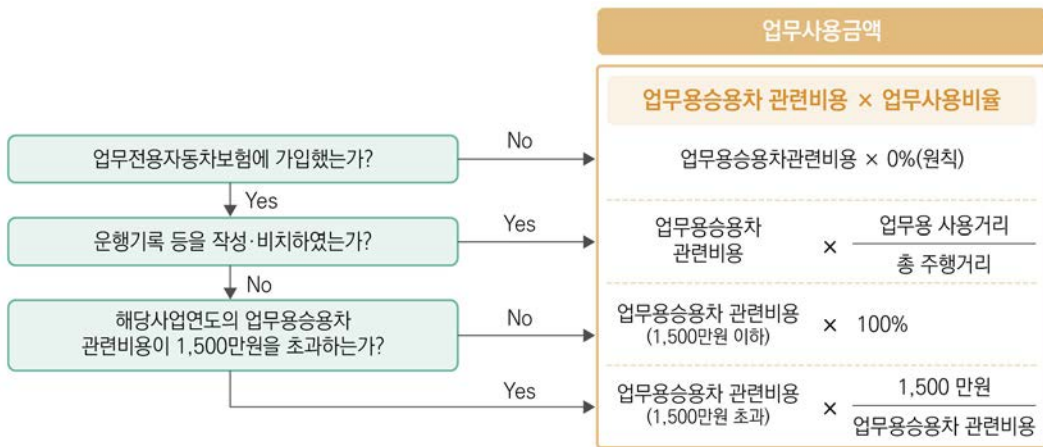
184)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¹⁸⁵⁾·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유지관련 비용(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들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만일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1,50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의무가 도입되었는데¹⁸⁶⁾, 대상차량이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0'으로 한다.¹⁸⁷⁾

■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 산정기준: 2025년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85)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차량에 대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규정함(「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3항)

186)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54호, 2023. 12. 28., 일부개정]

18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대통령령 제34266호, 2024. 2. 29., 일부개정]

4.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세법상 수익(익금)에 비용(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단, 조합법인이나 해운회사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특례를 적용한다.¹⁸⁸⁾

결손금

결손금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는 법인의 존속기간 전체에 걸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사업연도 단위로 기간을 구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별로 발생한 결손금은 과세표준이 0을 초과하는 다음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이월공제, carry-over)하거나, 전년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소급공제, carry-back)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은 결손금에 대하여 15년간¹⁸⁹⁾ 이월공제를 허용¹⁹⁰⁾하고 있으나, 이월된 결손금 전체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공제하게 된다. 단,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100% 공제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¹⁹¹⁾¹⁹²⁾

이러한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도나 결손금의 소급공제는 법인세의 기간과세로 인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며 세제상 우대조치는 아니다.¹⁹³⁾

188) 조합법인 및 해운회사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론 참조

189)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은 10년이며, 2020년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이월공제기간 15년을 적용함

190) 주요국의 이월공제 허용기간을 살펴보면,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독일 등은 무기한, 캐나다 20년, 일본 9년, 스위스 7년 등임

191) 주요국의 소급공제 기간을 살펴보면, 네덜란드, 캐나다 및 프랑스는 3년이며, 미국 및 독일은 2년, 일본은 1년임

192)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전 2개 과세연도에 부과된 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를 허용함

193)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20, p.665. 참조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관련 주요 개정 연혁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전체에 걸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기술적으로 각 사업연도로 구획하여 부과하는 ‘기간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사업연도의 구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음(-)의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 이전 또는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전하여 소득의 시간상 구획으로 인한 조세불공평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법인에 대해 발생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¹⁹⁴⁾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는 2015년 이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에서 2019년 60%까지 축소되었으나, 2022년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80%로 다시 상향되었다.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은 2019년까지는 10년이었으나, 2020년부터 15년까지 연장되었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및 공제기간 변화 추이 ■

(단위 : %)

구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2022년	2023년~
공제 한도	개별 납세	내국 법인	중소법인	100						
			일반법인	100	80	80	70	60	60	80
		외국법인		100	100	80	80	60	60	80
	연결 납세	중소법인		100						
		일반법인		100	80	80	80	60	60	80
	공제기간				10년 ¹⁾	10년				15년

주 : 1) 2008년 이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5년 적용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지만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에서 제외하는 소득으로 현행 세법은 두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¹⁹⁵⁾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법인세법」 제51조). 공익신탁은 기부를 원하는 위탁자가 금융기관 등(수탁기관)에 기부재산을 맡기면, 수탁기관이 재산을

194) 단,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음(「법인세법」 제72조)

195)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의미함

운용하여 발생시킨 수익으로 공익목적의 지출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등에게 출자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창업투자회사 등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해당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출자금을 회수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현행 세법은 모험자본(Venture Capital)회사의 건실한 육성을 위해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인세 소득공제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등이 있다.

유동화전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투자 및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도관(conduit)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들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액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¹⁹⁶⁾한다. 이를 통해 법인단계에서 과세를 하지 않고 주주 단계에서 과세¹⁹⁷⁾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196) 2023년 배당분부터는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보다 큰 초과배당액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됨

197) 배당을 받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를, 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가 과세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일부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달리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조합법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과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합법인의 재원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특례조치이다.

조합법인 과세특례에 따라 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인건비 등 손금불산입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2014년까지는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세율이 단일세율인 9%가 적용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당기순이익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12%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로 개편되었다.

$$\begin{aligned}
 & \text{당기순이익} \\
 & + \text{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인건비 등 손금불산입액} \\
 & = \text{과세표준} \\
 & \times \text{세율(9\%, 단, 당기순이익 20억 초과분 12\%)} \\
 & = \text{조합법인의 납부할 세액}
 \end{aligned}$$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감면액은 2023년 5,113억원, 2024년 3,289억원(잠정치) 수준이다. 한편,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액 추이: 2019~2025년 ■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e	2025 ^e
조세감면액	3,636	3,271	3,347	4,230	5,113	3,289	3,444

주: 2024년은 잠정치, 2025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제도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 해운국들과 대등한 세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톤세(Tonnage Tax) 제도는 그리스가 1950년대 도입하였는데, 1996년 네덜란드,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각국이 톤세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톤세 제도 하에서 해운회사는 선박의 크기 및 적재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선박의 순톤수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따라서 해운회사는 실제 수익과는 무관하게 운영하는 선박 규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달라지는데, 이는 유류비, 운임 등 변동성이 높은 외부요인에 따른 소득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통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 과세표준은 개별선박별표준이익이다. 개별선박표준이익은 선박별로 선박의 톤수에 1톤당 1운항일 이익과 운항일수, 사용률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

■ 선박표준이익(해운소득) ■

선박표준이익(해운소득) = Σ 개별선박표준이익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운항일수’란 해운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소유기간, 용선¹⁹⁸⁾한 선박인 경우에는 용선기간의 일수를 의미한다. 다만, 정비·개량·보수 등 사유로 30일 이상 선박을 운항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사용률’이란 해운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100%, 용선한 선박의 경우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을 말한다.

‘1톤당 1운항일 이익’은 선박톤수·해운기업의 운항소득·법인세 납부실적 및 외국의 운영사례 등을 감안하여 선박의 1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다.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선박(해운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과 기준선박 외의 선박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이익을 규정한다.

■ 1톤당 1운항일 이익: 2025년 ■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외
1,000톤 이하	14원	18.2원
1,000톤 ~ 10,000톤 이하	11원	14.3원
10,000톤 ~ 25,000톤 이하	7원	9.1원
25,000톤 초과	4원	5.2원

2018년 통세 제도를 적용받은 기업은 66개, 선박표준이익은 609억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96개 기업이 929억원의 선박표준이익을 신고하였다.

■ 연도별 선박표준이익 추이: 2018~2023년 ■

(단위: 억원, 개)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609	649	667	655	878	929
(기업수)	(66)	(68)	(70)	(68)	(83)	(9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통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어야 하며, 신청연도 이후 연속하여 5년간은 동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동 제도의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5. 세율

법인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현행 법인세는 4단계 세율체계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1%, 3천억원 초과는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¹⁹⁹⁾

■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2025년 ■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0.18억원 + 2억원 초과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8억원 + 200억원 초과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8억원 + 3천억원 초과분의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법인세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다.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을 계산한다.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해당 세액의 일부를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세액감면은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일종의 세제우대조치에 해당한다.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대표적 세액공제 제도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그 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관련 세액공제 등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투자행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 있다.

198)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199) 조합법인 등은 별도 방식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대해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앞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참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2025년

구분	조문	주요 내용
[세액공제]		
1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세액공제	조특법 § 8의3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10% 협력중소기업에 유형자산 무상임대시 장부가액 3%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 투자액 1%(중견 3%, 중소 7%)
2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 10①1 세액공제액 = 신성장·원천기술 R&D × 공제율 (① + ②) ① 20% (중소 30%,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25%) ②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 × 3 (한도: 10%)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 10①2 세액공제액 = 국가전략기술 R&D × 공제율 (① + ②) ① 30% (중소 40%,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35%) ②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비중 × 3 (한도: 10%)
4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 10①3 세액공제액 = 일반 R&D × 공제율 (① 또는 ②) ① (당기분) R&D지출액 × 0~2%(중소 25%,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20%, 3~5년 15%, 중견 8%) ② (증가분) 직전연도 초과액×25%(중소 50%, 중견 40%)
5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 13의2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 등을 활용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출자주식·지분 취득가액×5%
6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 24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차량·비품 등 제외) 투자액 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기본공제) 당해 투자금액×1%(중견 5%, 중소 10%) ※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기본공제율 1~2%p 우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 기본공제율 10~15%p 우대 반도체기술사업화시설 등: 기본공제율 15~20%p 우대 ② (추가공제) 직전3년 초과 투자금액×10% (한도: 기본공제의 2배)
7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특법 § 29의8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최소 400만원 ~ 최대 1,550만원) ※ 비수도권 우대공제대상(청년·장애인 등) 공제액 한시 상향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 6 창업 후 최소소득발생 과세연도 포함 5년간 세액감면 (‘25년 이전 창업: 50 ~ 100%, ‘26년 이후 창업: 25~100%)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 7 중소기업 법인세 5 ~ 30% 감면(소재지·업종·규모에 따라 차등)
3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 12 기술이전소득의 50% 세액감면, 기술대여소득의 25% 세액감면
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 12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에 대하여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구분	조문	주요 내용
5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법 § 63 조특법 § 63의2
6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 64
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법 § 68
8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 85의6
9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 99의9
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 104의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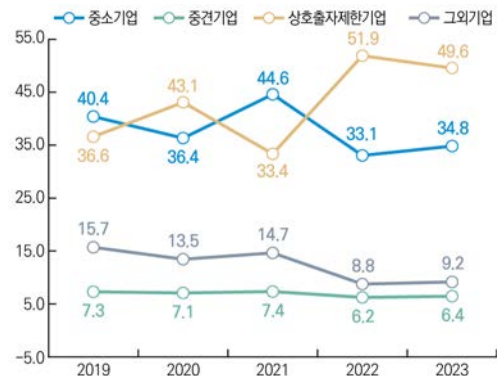
주: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 신고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은 12.4조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 대비 비중은 17.8%이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액 비중은 49.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감면액 비중은 34.8% 수준이다.

■ 법인세 감면액 추이: 2015~2025년 ■



■ 기업규모별 감면액 비중(%): 2019~2023년 ■



주: 1. 감면액 비중 = 총 국세 감면액 대비 법인세 감면액 비중
 2.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제외된 금액임
 3. 2024년과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최저한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등 세제상 우대조치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의무자 간에 조세부담의 형평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조세수입의 일실(逸失)과 과세형평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장치로 1991년부터 최저한세 제도(Alternative Minimum Tax : AMT)를 도입하였다.²⁰⁰⁾ ²⁰¹⁾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적용받아 계산한 세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분에 대해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상 우대조치를 모두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과 조세감면 등을 적용받기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만약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순서에 따라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최소한의 세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 최저한세 적용방법 ■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 : A와 B 중 큰 금액

(A) 조세감면 적용 후의 세액 :

(본래의 과세표준×세율) - 최저한세 대상의 세액감면 - 세액공제

(B) 조세감면 적용받기 전 과세표준×최저한세율 :

(본래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상각비·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소득·소득공제) × 최저한세율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세제상 감면 등은 최저한세 적용대상과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 대상²⁰²⁾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의 경우 최저한세를 적용한 이후에 추가로 감면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의 최종적인 부담세액은 최저한세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

200)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9, p.689.

201) 최저한세제도 도입 이전에는 특별비용한도, 소득공제한도, 세액공제한도를 두어 조세감면 항목별로 감면의 정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조세지원 종합한도제'가 운영되었음

193)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은 다음과 같음

가.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나. 세액감면 :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고도기술 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한편,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최저한세율은 도입 이후 조정되어 오다가, 2014년부터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법인의 경우 7%,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법인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10~17%의 세율이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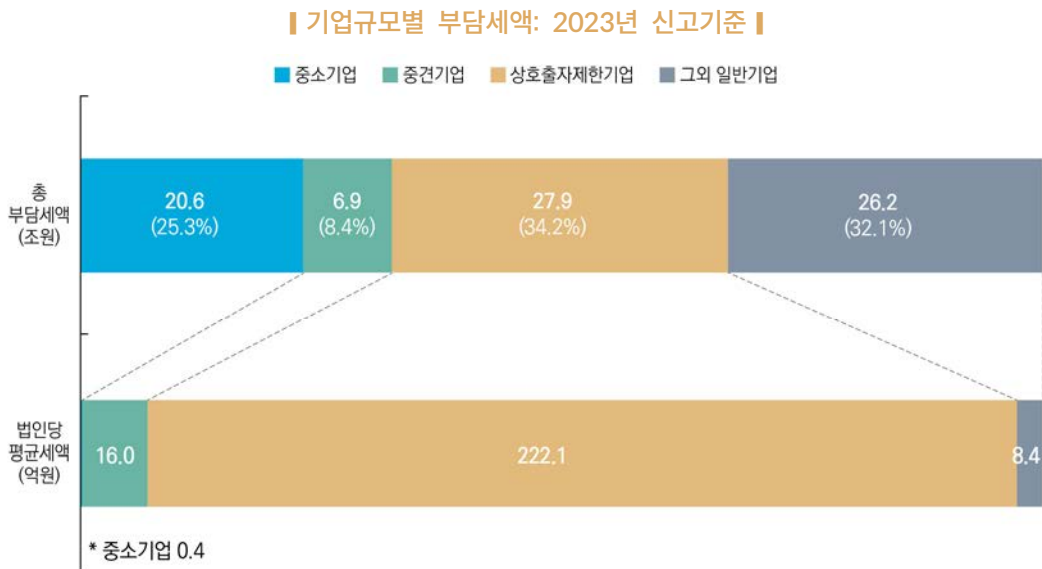
■ 최저한세율 제도 변천 추이(소득발생연도 기준) ■

일반법인		중소기업 법인
12%	1991	12%
12%	1997	10%
15%	1998	12%
15%	2004	10%
1,000억원 이하 13% 1,000억원 초과 15%	2005	10%
1,000억원 이하 13% 1,000억원 초과 15%	2008	8%
1,000억원 이하 11% 1,000억원 초과 14%	2009	8%
100억원 이하 10% 100~1,000억원 이하 11% 1,000억원 초과 14%	2010	7%
100억원 이하 10% 100~1,000억원 이하 11% 1,000억원 초과 14%	2011	7% * 중소기업 졸업 후 최저한세율 단계적인상 : 졸업 유예기간(4년) 후 1~3년간 8%, 이후 2년간 9% * 업종에 관계없이 사회적기업도 7%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에서 대기업 R&D비용 제외	2012	7%
100억원 이하 10% 100~1,000억원 이하 12% 1,000억원 초과 16%	2013	7%
100억원 이하 10% 100~1,000억원 이하 12% 1,000억원 초과 17%	2014	7%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4년) 후 1~3년간 8%, 이후 2년간 9%

8. 부담세액

법인세 부담세액은 과세표준에서 법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²⁰³⁾

2023년 신고기준으로 기업규모별 부담세액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54.1조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7.9조원)과 그 외 일반법인(26.2조원)의 합)으로 전체 법인세액의 66.3%를 부담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이 6.9조원(전체 법인세액의 8.4%), 중소기업은 20.6조원(전체 법인세액의 25.3%)을 부담하였다. 법인당 부담세액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222.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견기업(16.0억원), 그 외 일반법인(8.4억원), 중소기업(0.4억원) 순이다.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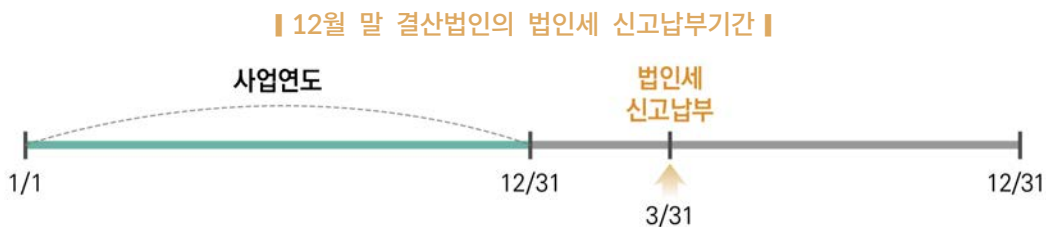
203) 단,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금액이 부담세액이 됨

제4절 신고와 납부

1. 신고와 납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 확인대상법인 및 연결 모법인은 4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2년 법인세 신고기준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은 92.5만개로 전체 신고 법인의 94.2%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법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법인들은 다음연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²⁰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전체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세액의 50%까지 분납이 허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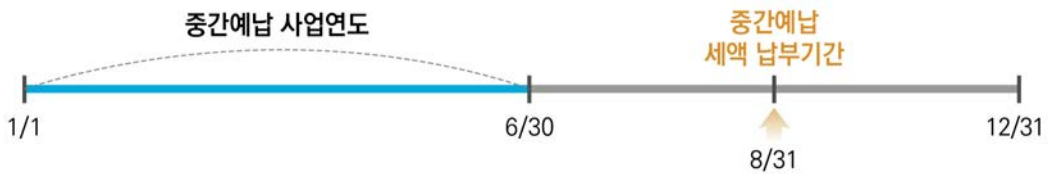
중간예납

본래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세채권의 일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수를 조기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4)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또는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말까지 신고·납부 가능함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중간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2월 말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며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법인이나 직전연도 결산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²⁰⁵⁾인 중소기업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기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세액²⁰⁶⁾을 기준으로 연간 세액의 절반 수준을 납부하는 방법과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가결산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²⁰⁷⁾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23년 신고기준으로 보면 40.7만개 법인이 22.9조원의 세액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였다. 중간예납 방법별로는 직전 사업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법인의 수는 33.1만개(중간예납 신고법인의 81.2%)이며, 납부세액은 17.5조원(전체 중간예납세액의 76.3%)이다. 반면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법인의 수는 7.6만개(중간예납 신고법인의 18.8%)이며 납부세액은 5.4조원(전체 중간예납세액의 23.7%) 수준이다.

205)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간예납 납부금액 기준이 종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됨

206)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금액 제외) - 세액공제·감면액 - 수시부과·원천징수액

207)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임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현황: 2018~2023년 ■

(단위: 개, 억원)

	중간예납		직전연도 결산 기준		가결산 기준	
	법인수 (A + C)	납부세액 (B + D)	법인수 (A)	납부세액 (B)	법인수 (C)	납부세액 (D)
2018년	630,596	240,743	329,146	185,061	301,450	55,682
2019년	445,402	214,817	322,259	141,657	123,143	73,160
2020년	399,693	193,184	311,522	149,810	88,171	43,374
2021년	392,230	242,279	319,648	200,749	72,582	41,530
2022년	413,617	312,778	338,614	241,919	75,003	70,859
2023년	407,348	229,319	330,829	174,963	76,139	54,35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납세지

법인세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에 관한 신고·신청 또는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 및 징수 등의 처분을 하는 관할 관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내국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登記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소재지(2곳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중 부동산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법인이 납세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변경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공제대상 확대, 공제율 인상,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우대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확대하였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및 반도체 기술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면서, 2024년 및 2025년 투자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현행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에 대하여 전환 후 일정기간 기존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점감구조를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였다.

국가전략기술 등 우대공제를 받는 기술분야의 확대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은 기존에는 반도체 등 7개 분야를 포함하였으나, 2025년 2월 세법개정으로 기존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가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로 확대되고 인공지능 분야가 신규 추가되어 8개 분야로 확대되었다.²⁰⁸⁾

2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별표 7의2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개정연혁

(단위: 개)

개정연혁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분야	기술
2017.2.	11	157	(신설)	
2020.2.	12(+첨단 소재부품 장비)	223		
2022.2.	13(+탄소중립)	260	3(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5
2023.2.	13	272	4(+디스플레이)	42
2023.6.	13	262	6(+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54
2023.8.	13	258	7(+바이오의약품)	62
2024.2.	14(+방위산업)	270	7	66
2025.2.	14	269	8(+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¹⁾)	68 ²⁾

주: 1) 종전 미래형 이동수단이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으로 확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인공지능 및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는 아직 세부기술이 규정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하여 기존에는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시설은 3%,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4%의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2024년 세법개정으로 기술의 구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하여 10%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반도체 기술 사업화시설 등에 대한 시설투자의 경우,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과 동일하게 기업규모에 따라 15~25%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 2월 세법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 대비 5%p 인상된 20~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편, 2025년 2월 세법개정으로 2024년 및 2025년 투자분에 대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제도로, 2023년 투자분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2024년 및 2025년 투자분에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존(2023년)에 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을 중심으로 재 설계되었다.²⁰⁹⁾

209)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24조제1항제3호

■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비교 ■

(단위: %)

개정 전										
통합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투자분)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설비투자	1	5	10	3	일반 설비투자	3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등	6	10	18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15	25	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	15	15	25		
현 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24년 및 '25년)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설비투자	1	5	10	10	일반 설비투자	1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등	3	6	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등	3	8	1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	15	15	25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	15	15	25		
반도체기술	20	20	30		반도체기술	20 ¹⁾	20 ¹⁾	30 ¹⁾		
* 중소기업 유예기간 5년, 이후 일정기간 우대 공제를 적용										

주: 1. 굵은 글씨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비 인상된 공제율

2. 추가공제에 대한 공제율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모두 기술에 관계없이 10% 적용

1) 반도체 기술 관련 시설투자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5년 투자분에 한하여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자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에 대한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기업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에 대해서 기존에는 중견기업으로 전환되고 3년간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으로 간주하여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고, 4년 이후부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2024년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5년간은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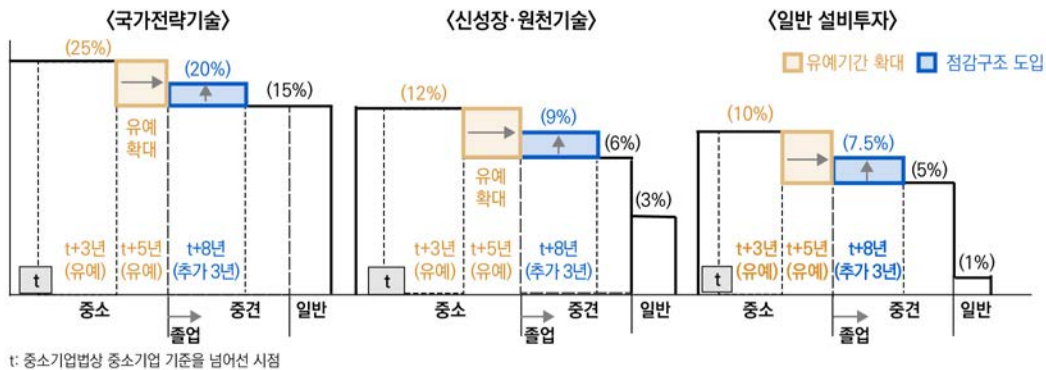
이후 3년(전환 후 6~8년)간²¹⁰⁾에도 기존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업규모 확대에 따른 공제 감소의 충격을 완화해 줄 공제율 점감구조를 도입하였다.²¹¹⁾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전환 시 R&D 세액공제 공제율의 점감구조 확대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전환 시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의 점감구조 도입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자료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24년 및 2025년 2월 세법개정으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²¹²⁾하였다. 한편, 국가

210) 일반기술의 R&D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 점감구조가 전환 후 10년까지 적용됨

2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8항

212) 2024년 12월 세법개정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나, 2025년 2월 세법개정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별도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²¹³⁾

■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

개정 전			현 행		
구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구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일반투자	-	-	일반투자	-	-
신성장·원천기술	2024.12.31.	-	신성장·원천기술	2029.12.31.	-
국가전략기술	2024.12.31.	2024.12.31.	국가전략기술	2029.12.31.	2029.12.31.
			반도체기술		2031.12.31.

나. 기타 사항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재설계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해운기업의 경우 해운소득에 대하여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해운기업의 선박 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톤당 1운항일 이익을 기준선박(해운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과 기준선박 외의 선박에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²¹⁴⁾

■ 1톤당 1운항일 이익: 2025년 ■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외
1,000톤 이하	14원	18.2원
1,000톤 ~ 10,000톤 이하	11원	14.3원
10,000톤 ~ 25,000톤 이하	7원	9.1원
25,000톤 초과	4원	5.2원

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2

2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정비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창업과 고용을 증진하고자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그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 비율을 적용하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세액감면 비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른 추가감면을 증가시키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다.²¹⁵⁾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개정 전				현 행				
유형		수도권 과밀억제	수도권 과밀억제 외	추가감면	수도권 과밀억제	수도권 과밀억제 외		추가감면
						수도권	수도권 외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상시근로자 증가율의 0.5배	-	5년, 25%	5년, 50%	상시근로자 증가율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100%		5년, 50%	5년, 75%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5년, 50%			

성실신고확인대상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법인세율 인상

다른 업종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²¹⁶⁾에 대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조정하고, 법인세율 19%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대상 법인의 법인세율을 인상하였다.²¹⁷⁾

21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16)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임대 등 수동소득 비중이 매출액의 50% 이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배주주 지분이 50%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217) 「법인세법」 제55조 및 제60조의2

■ 성실신고확인대상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율 ■

(단위: %)

개정 전		현 행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00억원 이하	1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4		

공시대상기업집단 중간예납 계산방식 변경

세수 변동성을 축소하고 세수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법인은 직전 연도 기준과 해당연도 가결산 기준 중 선택하는 종전 중간예납 산출방식에서 해당연도 가결산 기준의 중간예납 산출방식을 의무화하였다.²¹⁸⁾

218)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6절 국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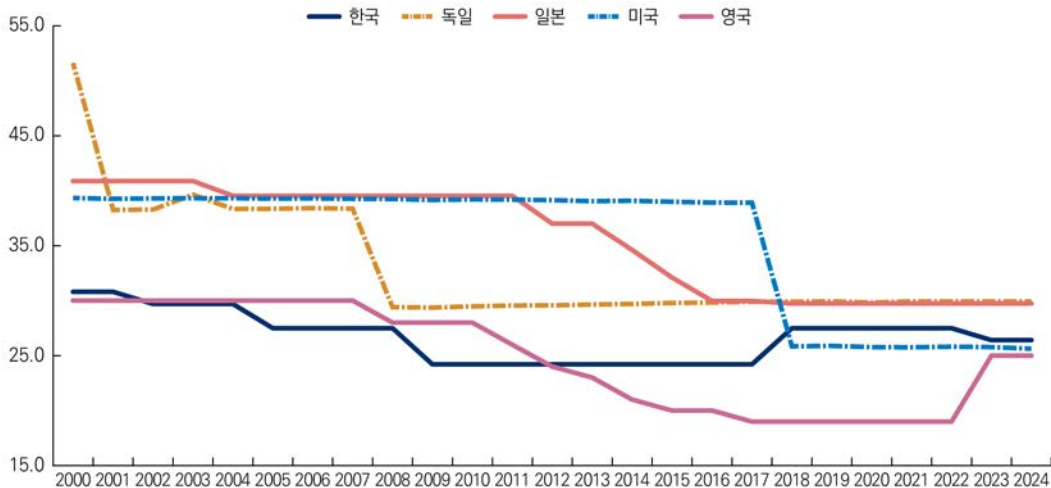
1. 법인세율 동향

법인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추이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는 법인세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다. 특히 2000년대부터 글로벌 경제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조세경쟁이 심화되어 주요국의 법인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G7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인하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독일은 2000년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이 50%를 상회하였으나, 2001년 38.3%, 2008년 29.4%까지 인하하였다. 다른 대부분의 G7 국가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 추세가 관찰된다. 특히 미국은 1993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을 39% 수준에서 유지하였으나,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율 체계를 대폭 개편한 결과²¹⁹⁾,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8년부터 25.8%로 낮아졌다.

■ 한국 및 주요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 ■

(단위 : %)



주 : 지방세를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 기준임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및 Tax foundatio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19) (~2017년) 8단계, 최고세율 35% → (2018년~) 단일세율, 21%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G7 국가 중 우리나라(26.4%)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나라는 독일(29.9%), 일본(29.7%), 이탈리아(27.8%) 등 3개국이며, 캐나다(26.1%), 프랑스(25.8%), 미국(25.6%), 영국(25.0%)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은 수준이다.

■ 법인세 최고세율 현황(지방세 포함): 국제비교 ■

(단위: %, %p)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차이 (‘24-’14)
한국	24.2	27.5	27.5	27.5	27.5	26.4	26.4	2.2
캐나다	26.2	26.6	26.3	26.2	26.1	26.1	26.1	△0.1
프랑스	38.0	34.4	32.0	28.4	25.8	25.8	25.8	△12.2
독일	29.7	29.9	29.8	29.9	29.9	29.9	29.9	0.2
이탈리아	31.3	27.8	27.8	27.8	27.8	27.8	27.8	△3.5
일본	34.6	29.7	29.7	29.7	29.7	29.7	29.7	△4.9
영국	21.0	19.0	19.0	19.0	19.0	25.0	25.0	2.0
미국	39.1	25.9	25.8	25.8	25.8	25.8	25.6	△13.4

주: 전체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현황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영국, 튀르키예 등 일부 OECD 회원국들은 세율을 인상하였다. 이 중 영국(6%p), 튀르키예(5%p), 체코(2%p), 에스토니아(2%p)의 경우 영구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슬로베니아(3%p)와 아이슬란드(1%p)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였다.

■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국가: 2024년 이후 ■

국가	시행연도	최고세율			비고
		기존(A,%)	현행(B,%)	차이(B-A,%p)	
영국	2024	19	25	6	
튀르키예	2025	25	30	5	
체코	2024	19	21	2	
에스토니아	2025	20	22	2	
슬로베니아	2024	19	22	3	한시적 인상(2024~2028년)
아이슬란드	2024	20	21	1	한시적 인상(2024년)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R&D 투자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최근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국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기술경쟁의 가속화로 인하여 주요국에서는 R&D 투자 및 기술혁신 등에 대한 세제지원 또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2023년 이후 해외 주요국의 R&D 투자 및 기술혁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및 확대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4년 전력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전기자동차, 철강, 화학,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최대 40%(반도체는 20%)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프랑스, 아일랜드, 체코, 스페인 등에서 세액공제 도입 및 기존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이 시행되었다.

■ 해외 주요국의 R&D 투자 및 기술혁신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현황 ■

국가	지원내용
미국	- 2023년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반도체 산업 R&D 및 첨단시설·장비투자에 대하여 투자의 25% 세액공제
일본	- 2024년 전력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전기자동차, 철강·화학 등의 저탄소 전환, 디지털 전환 등 기술 투자 및 반도체 투자에 대해 연도별 법인세액의 최대 40%(반도체는 20%)까지 생산량에 따른 세액공제
캐나다	- 2023~2034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기술투자액에 대하여 40%, 청정기술제조 활동에 대한 기술투자액에 대하여 30%까지 세액공제
프랑스	- 2024년 배터리, 풍력, 태양광 패널, 히트펌프 등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20~45%의 세액공제 신설
아일랜드	- 2024년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확대(25% → 30%), 초기 세액공제 한도 확대(2.5만유로 → 5만 유로 → '25년 7.5만 유로) - 에너지 효율 장비 취득시 즉시상각 적용기한 연장(2023년 → 2025년)
체코	- 2024~2028년간 구매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 도입(5년 → 2년)
스페인	- 2023~2025년간 전기자동차 및 충전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 기존 대비 200%의 가속 감가상각 도입

자료: OECD(2024), IBFD Database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중소기업 및 신생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영국의 경우 R&D 집중형 중소기업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이러한 중소기업이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R&D 지출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등의 세제지원을 도입하였다. 포르투갈과 슬로바키아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세율을 인하하였다. 호주의 경우, 2023년 중소기업이 구매한 자산에 대하여 연간 2만 호주달러까지 즉시 상각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현황 ■

국가	지원내용
영국	- 2024년 기준 R&D 집중형 중소기업의 인정요건을 완화(R&D 지출이 총지출의 40% → 30%)하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 R&D 비용의 현금환급 등 허용
포르투갈	- 2024년 중소기업 특례세율(17% → 6~12.5%, 일반법인 21%) 인하
슬로바키아	- 2024년 및 2025년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5만 유로 → 2024년 6만 유로, 2025년 10만 유로 이하), 적용세율 인하(21% → 15%, 일반법인 21~24%)
호주	- 중소기업에 대한 즉시상각 제도 한시적 운용(연간 2만 호주달러, 적용기간: 2023.7.~2025.6.)

자료 : OECD(2024), IBFD Database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대응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 220)

OECD와 G20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대응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총회에서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안을 합의하였다.

필라 1(Pillar 1)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벌어들인 글로벌 초과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일정 부분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이며, 필라 2(Pillar 2)는 국경과 관계없이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소한의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2021년 10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총회에서는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내용 및 구체적인 시행계획²²¹⁾이 공개되었다. 여기서는 국가별로 입법이 구체화되고 있는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를 중심으로 합의내용 및 각국의 동향을 살펴본다.²²²⁾

220)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제10장. 국제조세 참조

221) 당초에는 2022년 입법화 및 관련 조약에 대한 비준을 마치고 2023년부터 시행·발효할 계획이었음

222) 필라 1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 간 이견이 크고 다자간 조세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의회 비준이 필요하여 단기간 내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OECD/G20가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 내용에는 적격소재국 추가세액(QDMTT,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소득산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Under-taxed Payments Rule) 등이 존재한다. 적격소재국 추가세액은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타국에 납세할 추가세액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세액에 대한 과세권을 모회사 소재국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해외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우선 징수하는 규칙을 의미한다. 소득산입규칙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자회사 소득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이하로 과세될 경우 모회사 소재국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며, 소득산입보완규칙은 모회사 소재국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 이하로 과세하는 경우 해외자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다. 적격국 최저한세는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이다.²²³⁾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23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입법화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의 소재국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에 대해 모회사 또는 자회사 소재국에서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 대상은 직전 4개년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또한, 2023년에는 EU 등 해외 주요국과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를 맞추기 위해 해당 규칙의 시행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유예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해외의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EU는 2022년 12월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지침을 채택하고, 이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은 2023년 말까지 소득산입규칙, 2024년 말까지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²²⁴⁾ 영국은 2024년 2월 2023~2024년 재정법 제정을 통해 2024년 사업연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였으며, 스위스는 2023년 9월 국민투표를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였다. 일본도 2023년 8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였다.

반면, 미국은 아직 OECD 필라 2 모델규정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적용대상 다국적 기업의 40% 이상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²²⁵⁾, 글로벌 최저한세

223) 세 가지 규칙이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됨

224) 글로벌 최저한세의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입법동향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제10장, 국제조세 참조

225) 강금윤,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KITA 통상리포트 2024-2, 2024.1.

도입 등 OECD/G20 합의안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지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의회에서 협정 비준 및 입법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25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OECD 협정의 미국 내에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²²⁶⁾ 미국은 2025년부터 자체적으로 해외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GILTI, Global Intangible Low-Tax Income) 및 최저한세(CAMT,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²²⁷⁾ 도입을 통해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해외 주요국의 필라 2 입법 현황 ■

	국가명
2024년부터 관련 법률 발효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독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영국 (26개국)
2024년부터 관련 법률 발효	아이슬란드, 뉴질랜드(2개국)
EU 지침의 전면적 시행 연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3개국)
기타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이스라엘, 튀르키예, 미국(7개국)

자료: OECD(2024)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26) 2025년 1월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OECD 글로벌 조세협정이 미국 내에서 효력이 없음을 발표

227) 해당 제도는 2023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저한세율은 글로벌 최저한세와 동일한 15% 수준으로 설정됨

제3장

부가가치세

제1절 개요

1. 개념 및 의의

부가가치세(附加價值稅)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입·소비를 조세부담 능력의 지표로 보아 과세하는 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로서, 개별소비세와 같이 특정 재화 및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다른 소비세목과는 구분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나 수입 재화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재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별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납세자가 세액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담이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세부담을 지는 간접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invoice/credit method)을 채택하고 있다.²²⁸⁾ 이러한 과세체계 하에서 각 거래의 매입세액 징수를 증명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가 필수요건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개별적인 재화·용역에 대한 세부담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세목으로 평가된다.

228)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으로는 가산법, 전단계거래금액공제법,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있음

2. 기능 및 특징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재정 소요를 충당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목이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면세 등으로 규정된 항목 이외의 모든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단순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적 왜곡이 크지 않으면서도 국가 재원 조달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세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포함)²²⁹⁾ 비율은 2014년 4.0%에서 2023년 4.4%로 0.4%p 상승하였다. 동 기간 OECD 평균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2014년 6.7%에서 2023년 7.0%로 0.3%p 상승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은 OECD 평균 등 국제 수준에 비해 낮은 모습이다. 2023년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 4.4%는 G7(이하에서는 미국 제외) 국가 평균 6.3%에 비해 1.9%p 낮고, OECD 평균인 7.0%에 비해서도 2.6%p 낮은 수준이다.

■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 추이: 국제비교 ■

(단위: %, %p)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4.0	4.3	4.2	4.3	4.9	4.4	0.4
G7 평균 ¹⁾	5.7	6.0	5.9	6.3	6.5	6.3	0.6
OECD 평균 ¹⁾	6.7	6.9	6.8	7.1	7.2	7.0	0.3

주: 1) G7 평균은 6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캐나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미국 제외), OECD 평균은 37개국(미국 제외)을 기준으로 하고, 2023년의 경우 자료 미발표국(호주, 그리스)은 전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1. 전체 OECD 국가의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2. 한국의 GDP는 구계열 기준(2015년 기준년)으로, 2024년 공표된 신계열(2020년 기준) 수치와 차이 있음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2014년 17.2%에서 2023년 15.3%로 2.0%p 하락하였다. 동 기간 OECD 평균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2014년 20.9%에서 2023년 21.0%로 0.1%p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역시 국제 수준에 비해 낮은 모습이다. 2023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15.3%는 G7 국가 평균 16.6%에 비해 1.4%p 낮고, OECD 평균인 21.0%에 비해 5.8%p 낮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총

229) OECD 자료 중 부가가치세(5111 Value added taxes, 지방소비세 포함) 자료를 정리함

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이 2.0%p 하락한 반면, G7 국가의 평균은 0.9%p 상승하고 OECD 평균은 0.1%p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추이: 국제비교 ■

(단위: %, %p)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17.2	15.7	15.1	14.4	15.3	15.3	△2.0
G7 평균 ¹⁾	15.7	16.1	15.8	16.4	16.8	16.6	0.9
OECD 평균 ¹⁾	20.9	20.8	20.7	21.2	21.4	21.0	0.1

주: 1) G7 평균은 6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캐나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미국 제외), OECD 평균은 37개국(미국 제외)을 기준으로 하고, 2023년의 경우 자료 미발표국(호주, 그리스, 일본)은 전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1. 전체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세율뿐만 아니라 영세·면세 및 감면제도 등 과세기반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납세순응도 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선 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24년 OECD 평균 19.3%의 약 절반 수준으로,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부가가치세율 국제비교: 2024년 ■

(단위: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한국	OECD 평균
20.0	19.0	20.0	22.0	5.0	10.0	10.0	19.3

주: 1.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 일반세율을 기준으로 집계

2. OECD 평균은 37개국(미국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

3. 전체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현황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그 외 수출 등에 대한 영세율, 기초생활필품·국민후생·문화 등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특례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국가 간 과세기반 대

비 부가가치세 세수 수준은 부가가치세 세수율(VRR; VAT Revenue Ratio) 지표로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다. 세수율 지표는 잠재적 세원인 최종 민간소비를 기반으로 한 이론적 세수 대비 실제 세수의 비율을 측정한다. 이 때 세수율 수준은 이론적 세수와 실제 세수 간 차이로서 경감세율·영세·면세·특례제도 등의 제도적 요인과 납세순응도 등 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²³⁰⁾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수율은 0.73으로 OECD 평균 0.58을 상회한다. OECD 주요국 중 일본의 세수율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며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의 세수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 부가가치세 세수율(VRR) 국제비교: 2022년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한국	OECD 평균
0.49	0.57	0.53	0.45	0.50	0.72	0.73	0.58

주: 부가가치세 세수율(VRR)=부가가치세수/[(최종소비지출-부가가치세수)×부가가치세 표준세율]로 산출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24」, 2024.1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또 다른 특징은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제도를 도입하여 부가가치세 세원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정부의 재원 보전을 위해 전체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²³¹⁾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은 지방재정의 보전 및 확충을 위해 2010년 5%에서 2014년 11%²³²⁾, 2019년 15%, 2020년 21%, 2022년 23.7%, 2023년 25.3%²³³⁾로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부가가치세수의 증가 추세 및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비세로 이체된 금액은 2010년 2.7조원에서 2020년 18.1조원, 2022년 27.0조원, 2023년 26.3조원, 2024년 29.2조원으로 증가하였다.²³⁴⁾

230) OECD는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부가가치세 성과의 국제비교를 위해 부가가치세 세수율(VRR) 지표를 활용함. 세수율은 이론적 세수 대비 실제 세수실적의 비율로 산출하는데, 이때 이론적 세수는 최종소비(세전)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OECD,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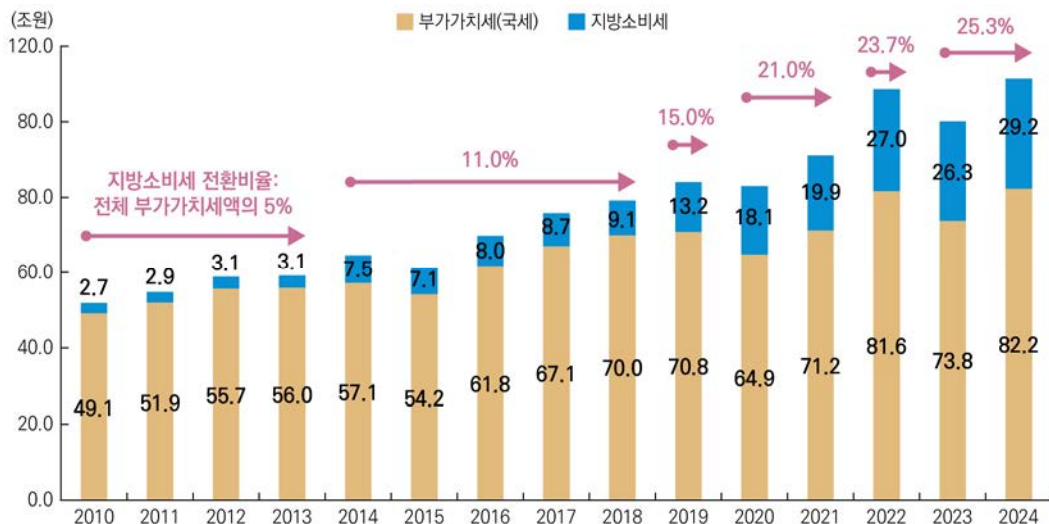
231) 구체적으로, 전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일정비율로 전환됨.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납세지 및 납부기간, 과세표준 및 세율, 납입 및 배분 등을 규정함. 이에 따르면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대상, 납세지 및 납부기간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32) 유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주거안정 및 주택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 8월 28일 이후의 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취득가액 6억원 미만 1%, 6억원 ~ 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보전의 목적임

233) 재정분권 추진의 일환으로 순차적 인상이 이루어짐. 1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소비세율이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되었으며,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2022년 23.7%로 인상되었으며, 2023년 이후부터는 25.3%가 적용됨

234) 지방소비세로의 세수 전환 확대는 동일한 규모의 국제 부가가치세수 감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대적인 재정규모의 변화가 발생할 뿐이며 국가 재정의 전체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으나,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은 감소함

■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및 부가가치세 추이: 2010~2024년 ■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및 국세청 요청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최근 현황

2024년 부가가치세 규모

2024년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82.2조원으로, 2023년 73.8조원 대비 8.5조원(11.5%) 증가하였다. 2024년의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민간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2024년 부가가치세 징수액 ■

(단위: 억원, %)

	2023년 (A)	2024년 (B)	증감	
			증감액(C=B-A)	증가율(C/A)
부가가치세	737,749	822,358	84,609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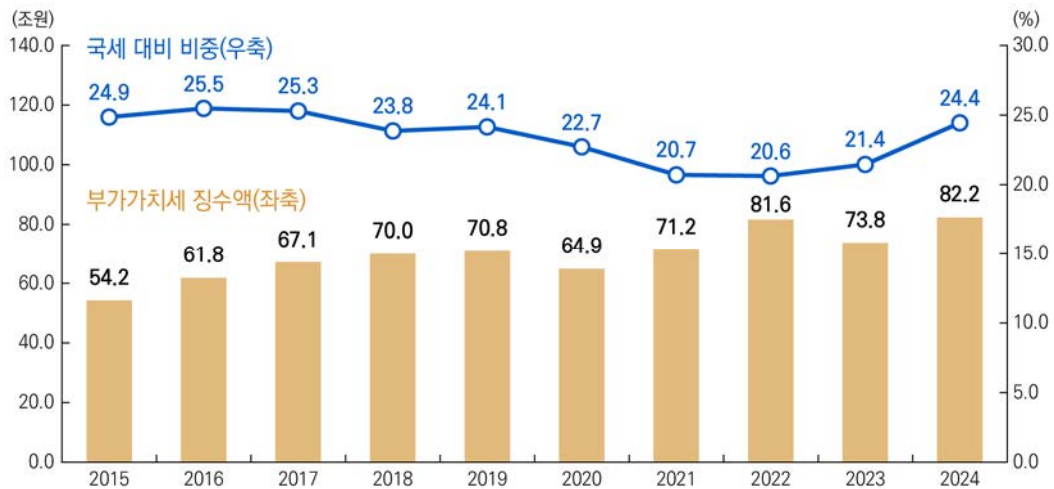
주: 지방소비세(25.3%)를 제외한 금액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부가가치세 추이

연도별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2015년 54.2조원에서 2024년 82.2조원으로 증가하였다.²³⁵⁾ 전체 국세 수입 중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비중은 2015년 24.9%에서 2024년 24.4%로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납부세액²³⁶⁾ 중 일정 비율만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있는데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이²³⁷⁾ 국세 대비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비중이 축소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 최근 부가가치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



주: 국세수입(지방소비세 제외)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과세대상 별로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징수액(국내분)과 수입된 재화에 대한 징수액(수입분)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국내분은 국내에서 징수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수출 영세율 등에 따른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세액이고, 수입분은 수입 시 세관장에게 납부하는 세액이다.

연도별 수출·수입 증감 등의 경기 요인은 부가가치세수 구성 변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235) 지방소비세 전환금액(과년도분 제외)을 포함할 경우 전체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2015년 60.9조원에서 2024년 110.1조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36)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임

237) 지방소비세율은 2010년 부가가치세액의 5%에서 2014년 11% 2019년 15% 2020년 21% 2022년 23.7% 2023년 25.3%로 인상됨

작용한다. 전체 부가가치세수 중 국내분의 비중은 2020년 28.6조원(44.0%)에서 2024년 30.1조원(36.6%)으로 감소하였다.²³⁸⁾ 반면 수입분의 비중은 2020년 36.3조원(56.0%)에서 2024년 52.1조원(63.4%)으로 증가하였다.

■ 부가가치세수 및 국내분과 수입분의 비중 추이: 2020 ~ 2024년 ■

(단위: 조원, %)

연도	부가가치세수			전체 부가가치세 중 비중	
	전체	국내분	수입분	국내분	수입분
2020	64.9	28.6	36.3	44.0	56.0
2021	71.2	25.4	45.8	35.6	64.4
2022	81.6	20.5	61.1	25.2	74.8
2023	73.8	21.2	52.6	28.7	71.3
2024	82.2	30.1	52.1	36.6	63.4

주: 징수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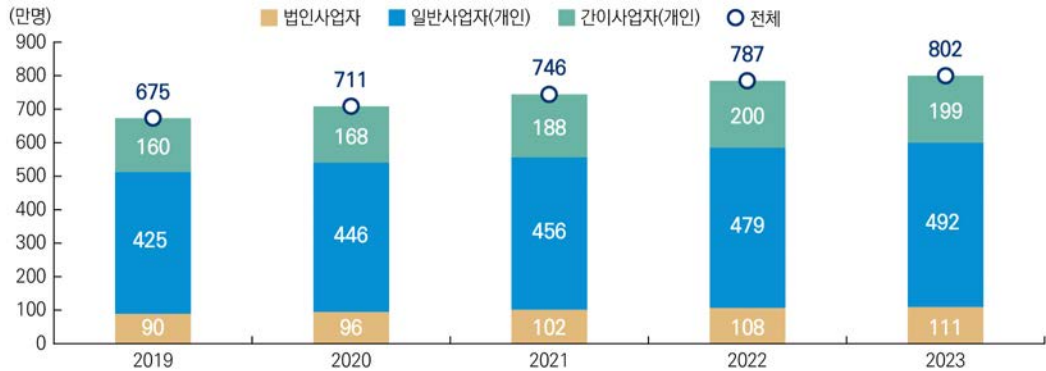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2019년 675만명에서 2023년 80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를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법인은 111만명으로 전체 신고인원 대비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은 691만명으로 86%의 비중을 차지한다. 개인을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경우 일반과세자는 492만명, 간이과세자는 199만명 수준이다. 간이과세자는 2020년 168만명에서 2021년 188만명, 2022년 20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2021년부터 적용된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4,800만원→8,000만원)으로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2024년에도 추가적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8,000만원 → 1억 400만원)이 적용되었다.

238) 국내분 세수는 국내 총 납부세액에서 수출 영세율 등에 따른 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 2019 ~ 2023년 ■

(단위: 만명)



주: 법인 및 일반(개인)의 신고 인원은 2기 과세기간의 인원을 집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간이과세자는 납부면제자와 납부면제자가 아닌 그 외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 신고자 중 상당수는 납부면제자로, 최근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이 2019년(2,400만원 → 3,000만원)과 2021년(3,000만원 → 4,800만원) 두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납부면제자 규모도 증가하였다. 2023년 기준 납부면제 신고자는 167만명으로 전체 개인 신고자 중 24.2%를 차지하며, 납부면제자가 아닌 그 외 간이과세 신고자는 32만명으로 개인 신고자 중 4.7%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 수 및 비중: 2019 ~ 2023년 ■

(단위: 만명, %)

구분	연도	법인	개인				
			전체 (a + b)	일반과세 (a)	간이과세 (b)	납부면제	그 외 간이과세
인원 수 (비중)	2019	90	585 (100)	425 (72.6)	160 (27.4)	127 (21.6)	34 (5.8)
	2020	96	615 (100)	446 (72.6)	168 (27.4)	153 (24.9)	15 (2.5)
	2021	102	644 (100)	456 (70.9)	188 (29.1)	169 (26.2)	19 (2.9)
	2022	108	679 (100)	479 (70.6)	200 (29.4)	170 (25.1)	30 (4.4)
	2023	111	691 (100)	492 (71.2)	199 (28.8)	167 (24.2)	32 (4.7)

주: 1. ()안의 값은 개인납세자의 비중
 2. 일반과세 신고 인원은 2기 과세기간의 인원수를 집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주요 개정연혁

1.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

지방재정의 보전 및 확충 방안 중 하나로 2010년부터 전체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는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였다. 2014년에는 유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인하²³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1%로 인상하였다. 이후 단계적 재정분권 추진방안²⁴⁰⁾이 수립되면서 지방소비세 전환비율도 순차적으로 인상되었다. 전환비율은 종전 11%에서 2019년 15%로 인상되었으며, 2020년 21%, 2022년 23.7%를 거쳐 2023년부터는 25.3%가 적용되고 있다.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변화 ■

(단위 : %)

2010~2013년	2014~2018년	2019년	2020~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5	11	15	21	23.7	25.3

2.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소규모 사업자의 세 부담 경감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연혁을 살펴보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6년²⁴¹⁾ 이후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4,800만원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경제규모 확대와 함께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1년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2024년에는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기준금액이 1억 4백만원으로 인상되었다.²⁴²⁾

간이과세자 중에서 납부면제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은 2018년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공

239)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 8월 28일 이후의 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취득가액 6억원 미만 1%, 6억원 ~ 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함

240) 2018년 10월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의 순차적 인상을 중심으로 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함

241)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 명칭이 적용된 것은 2000년이나, 당시 간이과세가 대체했던 과세특례 제도의 기준금액이 1996년 4,800만원으로 설정된 바 있어, 현 수준이 1996년부터 유지된 것으로 간주함

242)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범위(8천만원)의 130%인 1억 4백만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으로 인상됨

급대가 기준 2,400만원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2019년 3,000만원에 이어 2021년 4,8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의 변화 ■

연도	제도별 공급대가 기준			
1977년 ¹⁾	과세특례	~ 1,200만원	소액 부징수 (세액기준)	7,500원
1978년 ¹⁾				1만원
1979~1987년		~ 2,400만원		
1988년		~ 3,600만원		
1989년				2만원
1990~1993년				4만원
1994년				6만원
1995년				12만원
1996~1999년 ²⁾		~ 4,800만원		24만원
2000~2018년	간이과세	~ 4,800만원	납부면제	~ 2,400만원
2019~2020년 ³⁾				~ 3,000만원
2021년~2023년		~ 8,000만원		~ 4,800만원
2024년~		~1억 4백만원		

주 : 1) 대리·중개·도급업의 과세특례 기준금액은 일반 기준금액의 4배 수준(예 : '77년, 4,800만원)

2) 1996 ~ 1999년 4,800만원 ~ 1억 5천만원 구간에 대한 간이과세를 적용하다가 2000년 폐지

3) 2020년 1년간 8,000만원 미만 일반사업자의 세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감면, 3,000 ~ 4,800만원 간이사업자의 세액을 면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간이과세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실제 부가가치율과의 괴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대상은 2021년 종전 11개에서 18개 그룹으로 세분화되었으며, 부가가치율 수준도 종전 5~30%(4단계 구분)에서 15~40%(5단계 구분)로 인상되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의 징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납부특례 제도의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부가가치세 제도는 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부 공급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거나 도주하는

등 거래징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매입자납부특례는 2008년 금지금²⁴³⁾ 거래에 대해 도입된 이후 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 및 정상적인 납세를 위해 특례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09년 고금, 2014년 구리 스크랩²⁴⁴⁾, 2015년 금 스크랩, 2016년 철 스크랩 거래가 대상에 추가되었다. 2024년에는 구리, 철 외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을 포함한 비철금속류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한편, 2025년부터는 면세점 송객용역 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자(관광사업자) 대신 매입자(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대상의 변화 ■

시행일	대상
2008년 7월 1일	금지금
2009년 7월 1일	고금
2014년 1월 1일	구리 스크랩
2015년 7월 1일	금 스크랩
2016년 10월 1일	철 스크랩
2024년 7월 1일	비철금속류
2025년 7월 1일	면세점 송객용역

4.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는 소비자 부담 경감 및 역진성 보완 등을 목적으로 기초 생활 필수품, 국민 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 생산요소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열거한 대상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면제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신설되어왔다. 대표적으로 목재펠릿(2011년), 산후조리원 용역 및 전기버스(2012년),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2016년), 액상형 분유(2017년), 수소버스(2019년), 가사서비스 용역(2022년), 반려동물 진료

243)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에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가리킴

244) 스크랩은 금속제품을 만들 때 생기는 금속 부스러기나 제품의 폐물, 쇠 부스러기 등이 대표적이며, 강철의 제련과 재생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가리킴

용역(2023년), 전기·수소버스 중 농어촌버스(2024년)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되었다. 2025년부터는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²⁴⁵⁾

■ 부가가치세 주요 면제 대상 신설 추이 ■

시행연도	내용
2011	목재펠릿 등
2012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어린이집) 임대용역,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 및 질병예방 목적의 동물진료용역, 산후조리원 용역, 전기버스 등
2013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산후도우미,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등의 용역 등
2015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시외 우등 고속버스는 제외), 인터넷 신문 구독료, 연합기숙사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 이용용역 등
2016	온실가스 배출권 및 외부사업온실가스 감축량·상쇄배출권, 미술관·박물관·과학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장외매매거래(K-OTC 시장)에 관한 업무 등
2017	액상형 분유 등
2019	수소버스 등
2020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용역, 시내버스 사업자 조합의 위탁 공급 음식용역, 행복기숙사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 이용용역 등
2022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가사서비스 용역 등
2023	반려동물 진료용역, 실내 도서열람 용역 등
2024	전기·수소버스 중 농어촌버스,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의 교육용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등
2025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등

245)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항목으로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수외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무도학원 교육용역(이상 2011년),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2012년), 채권추심용역(2013년),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비수도권 읍·면 제외) 공동주택(2015년),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주문 판매대행용역(2017년), 천연가스(CNG) 버스(2024년) 등이 있음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1. 과세체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인 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공급받은 전 단계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

[일반과세]

매출세액	$\begin{aligned} & \text{과세표준(공급가액)} \times \text{세율} \\ & + \text{예정신고누락분} \\ & \pm \text{대손세액 가감} \\ & \hline = \text{매출세액} \end{aligned}$
매입세액	$\begin{aligned} & \text{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 \\ & + \text{예정신고누락분} \\ & + \text{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 - \text{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hline = \text{매입세액} \end{aligned}$
최종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	$\begin{aligned} & \text{매출세액} \\ & - \text{매입세액} \\ & \hline = \text{납부세액} \\ & - \text{경감·공제세액 등} \\ & + \text{가산세액} \\ & \hline = \text{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 \end{aligned}$

[간이과세]

매출세액	$\begin{aligned} & \text{매출금액(부가가치세 포함)} \times \text{업종별 부가가치율} \times \text{세율} \\ & + \text{재고납부세액} \\ & \hline = \text{매출세액} \end{aligned}$
최종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	$\begin{aligned} & \text{매출세액} \\ & - \text{공제세액 등} \\ & + \text{가산세액} \\ & \hline = \text{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 \end{aligned}$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개인·법인과 관계없이 1역년(曆年)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1과세기간으로 한다.²⁴⁶⁾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사업자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로, 소비자가 담세자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사업이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결정되나(일반과세자),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결정(간이과세자)된다.

해외에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는 자도 납세의무자이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²⁴⁷⁾

246)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함. 단 사업준비를 위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함.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함

247)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및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구분	사업자	납세의무	세부내용
재화·용역의 공급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 개인), 간이과세자(개인)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재화의 수입	수입자	○	재화 수입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다.²⁴⁸⁾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외에도, 자기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service)와 그 밖의 행위로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 외에 자기 사업을 위하여 대가 없이 공급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零稅率)은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수출 등 재화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면세(免稅)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기초생활필수품 등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248)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 경우는 과세대상에 포함됨(「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및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영세율

영세율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매출세액이 '0'이 되고,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면세의 특징을 가진다. 다만,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인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신고납부 및 기장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 하에서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 수출 재화의 가격 경쟁력 제고, 그 외 국가의 정책적 목적 제고 등을 위해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출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외국인관광객 및 외국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2025년 ■

근거	대상
「부가가치세법」 § 21 ~ § 24	- 수출하는 재화(내국물품의 반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기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
「조세특례제한법」 § 105, § 107	- 방위산업물자, 군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 도시철도건설용역,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용역, 장애인용보장구,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재화, 외국사업자가 공급받는 재화·용역의 사후환급,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사후영세율
기타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대표적인 영세율 적용 항목과 조세지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항목은 2조 3,047억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항목은 3,393억원,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항목은 1,657억원 등이다.

주요 영세율 항목과 조세지출액 추이: 2019 ~ 2023년

(단위: 억원)

항목명	근거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 105①5,6	18,770	17,763	18,481	21,886	23,047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 105①3	2,000	2,120	2,111	2,758	3,393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 105①4	1,212	1,361	1,401	1,503	1,657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면세

면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하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제도이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등록·거래징수·신고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면세 제도는 소비자의 부담 경감 및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보완 등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부가가치 생산요소 등의 부문에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도서지방 석유류, 공장·광산·건설사업장 및 학교 구내식당의 음식용역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면세 적용 대상: 2025년

구분	항목
「부가가치세법」 § 26	기초생활 필수품 • 미가공식료품 • 수돗물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대중여객운송용역(항공기·우등 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제외)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등
	국민후생 • 의료보건용역(치료 이외의 미용·성형 등의 의료용역, 일부 동물진료용역 제외)과 혈액 • 교육용역
	문화 • 도서·신문·잡지·방송 등(광고 제외) • 예술창작·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운동경기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동물원·식물원 입장 등
	생산요소 • 토지 • 금융·보험 용역(보호예수 등 일부 부수용역 제외) • 저술가·작곡가 등의 인적용역 등

구분		항목
	기타	• 우표, 인지, 복권 • 저가의 제조담배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
「조세특례제한법」 § 106		• 도서지방 석유류 • 공장·광산·건설사업장 및 학교 구내식당의 음식용역 • 농어업 대행용역 •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 •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용역 •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난방용역 • 온실가스 배출권 • 정부업무대행단체 공급 재화·용역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천연가스 버스 • 간이사업자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 희귀병치료제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대표적인 면세 항목과 조세지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은 1,304억원,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은 965억원, BTO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운영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은 57억원 수준이다.

■ 주요 면세 항목과 조세지출액 추이: 2019 ~ 2023년 ■

(단위 : 억원)

항목명	근거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 106①9-2	437	337	409	752	1,304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 106①5	1,001	1,338	1,267	876	965
BTO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 106①8, 8-2, 8-3	40	44	49	52	57

자료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③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영세율은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전단계에서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한 ‘완전면세’의 특징을 가진다. 반면 면세는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나 전단계에서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일부 제거한 ‘부분면세’의 특징을 가진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유형별 세액 흐름 차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모든 공급단계에서 '매출세액-매입세액'의 방식으로 세액이 납부되며, 잔존하는 세부담은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마지막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에 따라 특정 거래단계에 정상과세(세율 10%) 대신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가 적용될 경우, 최종 단계의 세액 및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에서는 사례를 통해 각 과세유형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공급단계에 걸쳐 정상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 유통단계의 판매가격(550원)은 전체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합계액(500원)과 납부세액 합계액(매출세액-매입세액, 50원)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 사례① 전체 공급단계에 정상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구분	원재료 생산(과세)	중간재 생산(과세)	최종재 유통(과세)
매입가격	-	110	495
부가가치	100	350	50
매출세액(세율 10%)	10	45	50
매입세액	-	-10	-45
(매출세액-매입세액)	10	35	5
판매가격	110	495	550

영세율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완전 면제 개념의 제도로, 해당 단계의 매출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최종재 공급단계에 영세율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최종 판매가격은 세부담이 제거된 규모(500원)로 결정된다.

■ 사례② 최종재 공급단계에 영세율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

구분	원재료 생산(과세)	중간재 생산(과세)	최종재 유통(영세율)
매입가격	-	110	495
부가가치	100	350	50
매출세액(세율 10%)	10	45	0
매입세액	-	-10	-45
(매출세액-매입세액)	10	35	-45
판매가격	110	495	500

면세 제도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부분 면제 개념의 제도이다. 아래와 같이 최종 공급단계에 면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단계의 매출세액은 0이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판매가격(545원)에는 이전 단계에서 전가된 세액(45원)이 잔존하게 된다.

■ 사례③ 최종재 공급단계에 면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

구분	원재료 생산(과세)	중간재 생산(과세)	최종재 유통(면세)
매입가격	-	110	495
부가가치	100	350	50
매출세액(세율 10%)	10	45	0
매입세액	-	-10	0
(매출세액-매입세액)	10	35	0
판매가격	110	495	545

영세율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 장부 작성·보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면세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협력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Ⅱ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Ⅱ

구분		영세율	면세
납세의무		있음	없음
적용목적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과 수출촉진, 그 외 국가 정책적 목적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등의 정책적 목적
사업자의 협력의무		납세의무자로 부가가치세법상의 협력의무 이행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협력의무가 없음
거래 징수	매출세액	면세	면세
	매입세액	전액 환급	공제받지 못함
특징		완전면세	부분면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출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합계(공급가액)이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물물교환 등과 같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예누리액, 환입된 재화, 상대방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된 재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연체이자, 할인액, 환급받는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 징수한다.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및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세율

부가가치세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금액 등에 관계없이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부가가치세율은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기본세율 13%를 기준으로 3%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 형태로 운영되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시행 초기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 등을 반영하여 실제적으로 10%로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탄력세율이 폐지된 1988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율의 변화 ■

	1977년 ~ 1988년	1989년 ~ 현재
세율	10% (기본세율 13% / 탄력세율 $\pm 3\%$)	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구조 및 현황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 단일세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헝가리(27.0%, 이하 표준세율), 이탈리아(22.0%), 영국 및 프랑스(20.0%), 독일(19.0%) 등 OECD의 여러 국가는 10%보다 높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10%)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며, 캐나다(5%)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율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세율 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덴마크 등이며, 그 외 국가들은 복수세율의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필품 등 세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면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복수세율 적용 국가들의 경우에는 통상 높은 표준세율 외에 낮은 수준의 경감세율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 OECD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구조: 2024년 ■

(단위: %)

국가	표준세율	경감세율	특정지역 세율
오스트리아	20.0	10.0 / 13.0	19.0
벨기에	21.0	0.0 / 6.0 / 12.0	-
캐나다	5.0	0.0	13.0 / 15.0
체코	21.0	0.0 / 12.0	-
핀란드	24.0	0.0 / 10.0 / 14.0	-
프랑스	20.0	2.1 / 5.5 / 10.0	0.9 / 2.1 / 10.0 / 13.0 & 10.5 / 17.5 / 2.1 / 8.5
독일	19.0	0.0 / 7.0	-
그리스	24.0	0.0 / 4.0 / 6.0 / 13.0	3.0 / 4.0 / 9.0 / 17.0
헝가리	27.0	0.0 / 5.0 / 18.0	-
아이슬란드	24.0	0.0 / 11.0	-
아일랜드	23.0	0.0 / 4.8 / 9.0 / 13.5	-
이탈리아	22.0	4.0 / 5.0 / 10.0	-
일본	10.0	8.0	-
라트비아	21.0	5.0 / 12.0	-
리투아니아	21.0	5.0 / 9.0	-
룩셈부르크	17.0	3.0 / 8.0 / 14.0	-
멕시코	16.0	-	8.0
네덜란드	21.0	0.0 / 9.0	-

국가	표준세율	경감세율	특정지역 세율
노르웨이	25.0	0.0 / 12.0 / 15.0	-
폴란드	23.0	5.0 / 8.0	-
포르투갈	23.0	6.0 / 13.0	4.0 / 9.0 / 16.0 & 5.0 / 12.0 / 22.0
슬로바키아	20.0	5.0 / 10.0	-
슬로베니아	22.0	5.0 / 9.5	-
스페인	21.0	0.0 / 4.0 / 10.0	0.0 / 0.5 / 1.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9.5 / 10.0 / 15.0 / 20.0
스웨덴	25.0	0.0 / 6.0 / 12.0	-
스위스	8.1	0.0 / 2.6 / 3.8	-
튀르키예	20.0	1.0 / 10.0	-
영국	20.0	0.0 / 5.0	-

자료 :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과세표준인 매출액×세율)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아래에서는 매입세액공제와 주요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살펴본다.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공제하며, 이를 매입세액공제(買入稅額控除)라 한다. 매입세액공제는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증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매입 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기업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업자가 구조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경우를 소개한다.

①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擬制買入稅額控除)란 면세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될 경우, 구입한 면세농산물 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2/102에서 9/109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2억원(1과세기간 기준)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래의 8/108의 공제율 대신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9/109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2 / 102
	개인사업자	8 / 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 / 109, ~ 2026.12.31.)
	그 외 사업자	6 / 106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6 / 106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 / 104
	그 외 사업자	2 / 102
	그 외 사업	2 / 102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다음과 같은 한도를 두고 있다. 2025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공제한도를 높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60~75%, 그 외 개인사업자는 55~65%, 법인사업자는 50%를 한도로 한다. 한도에 대한 특례가 종료된 2026년부터는 개인사업자 40~50%, 법인사업자 30%의 공제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

과세표준 구간	2025년 12월 31일 까지			2026년 1월 1일 이후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억원 이하	75%	65%	50%	50%	30%
2억원 이하	70%			40%	
2억원 초과	60%	5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판매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매입액을 의제하여 공제함으로써 폐자원 수집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 등에서 시작되었다.

재활용폐자원²⁴⁹⁾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3/103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이 때 공제한도는 매입가액(세금계산서 발급분 제외)의 80%까지 가능하다. 한편,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공급한 경우 10/1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각종 세액공제·감면

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²⁵⁰⁾ 등을 발급받거나 전자적 결제 수단²⁵¹⁾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매출액의 1%를 500만원의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나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현재 기본 공제율 및 공제한도와 별도로 한시적 우대공제율(1.3%) 및 공제한도(1,000만원)를 적용하고 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대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적용하되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기본 공제율(1%), 공제한도(500만원)로 복귀할 예정이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구분	2026년 12월 31일 까지	2027년 1월 1일 이후
공제율	1.3%	1%
공제한도	1,000만원	500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49)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등

250)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포함함

251) 전자화폐(e-money)를 포함함

②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건수 당 12원을 기준으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²⁵²⁾ 또한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대하여 건당 20원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③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공제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시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²⁵³⁾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을 공제한다.

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제도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중 99%를 경감하고, 운송사업자는 납부세액의 90%를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5%는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에, 4%는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주요 매입세액공제 및 공제·감면세액의 현황

2023년 주요 매입세액공제 특례 항목의 조세지출액은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3조 5,074억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1조 3,853억원 등이다.

주요 세액 공제·경감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액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이 3조 71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외에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

25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폐지됨(2017.12.19.)

253) 2022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이 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됨

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규모는 392억원,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446억원 규모는 수준이다. 경감 항목의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으로 인한 조세지출액은 2,067억원 발생하였다.

■ 주요 매입세액공제 및 공제·감면 항목별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이: 2019 ~ 2023년 ■

(단위: 억원)

감면항목		법조문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입 세액 공제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부가가치세법」 § 42	28,578	27,985	27,429	31,119	35,07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특례제한법」 § 108	9,453	9,891	11,760	14,409	13,853
세액 공제 · 감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 46	22,570	23,473	22,995	26,658	30,071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¹⁾	「조세특례제한법」 § 126의3	456	352	369	383	39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¹⁾	「조세특례제한법」 § 104의8	401	393	399	411	44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 106의7	2,012	2,022	1,786	1,835	2,067

주: 1) 부가가치세 실적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국세통계연보 상 납부세액(국내분)은²⁵⁴⁾ 2019년 35.2조원에서 2020년 43.0조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38.6조원으로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별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법인분 납부세액은 12.1조원을 기록하였다.²⁵⁵⁾ 개인분은 26.5조원이며 이는 일반과세자분과 간이과세자분으로 구분되는데, 일반과세자분은 25.9조원, 간이과세자분은 0.61조원 수준이다.

254) 납부세액은 국세통계연보 상 '차감납부할세액'에서 '차감환급할세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자료의 특성상 위의 수입분에 대한 세액은 미포함되었으며 지방소비세가 이양되기 전 신고기준 금액임

255) 법인의 국내분 납부세액 비중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은 이유는 수출기업의 영세율 적용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단,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실제 납세자가 아니라 징수자이므로 이는 최종 세수와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 최종 납부할 세액(국내분) 및 비중 추이: 2019 ~ 2023년 ■

(단위: 조원, %)

연도	최종 납부할 세액				비중		
	전체	법인	일반	간이	법인	일반	간이
2019	35.2	14.1	20.8	0.28	40.2	59.1	0.8
2020	43.0	22.3	20.4	0.30	51.9	47.4	0.7
2021	38.5	17.4	20.7	0.44	45.3	53.6	1.1
2022	21.7	△2.1 ¹⁾	23.2	0.59	△9.9	107.2	2.7
2023	38.6	12.1	25.9	0.61	31.4	67.0	1.6

주: 1) 매입세액 및 환급세액 등이 과세분매출보다 커 최종납부할 세액이 음수로 산출됨

1. 최종 납부할 세액은 국세통계연보 상 국내분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차감납부할세액'에서 '차감환급할세액'을 제외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4절 신고와 납부

1.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거래징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사업자(공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수요자)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각 과세 단계마다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된다.

수입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외국에 있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하여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²⁵⁶⁾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 및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계산서이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송장, 증빙서류 및 장부, 세금영수증, 과세자료의 기능을 한다.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256)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은 주로 국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공급되므로, 거래를 중개하는 국외 오픈마켓 등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사업자에게 발급한다. 특히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로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2022년 7월 1일 이후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면세 대상이 아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2.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납부기간을 두고 있다. 예정신고·납부는 안정적인 조세수입의 확보 및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는 예정신고 기간(1월 1일~3월 31일, 7월 1일~9월 30일) 종료 후 2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²⁵⁷⁾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하여 징수한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

257)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납부는 '제5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1. 간이과세'를 참조

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만, 금액이 50만원²⁵⁸⁾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확정신고·납부 역시 확정신고 기간(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 종료 후 2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재화의 수입 시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 수입 시 세관장에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하고, 이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급가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중견사업자(공급가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1년)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단위의 신고납부 특례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또는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징수 및 환급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한다. 한편,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한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음의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이를 환급세액이라 한다. 환급은 확정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다만, 수출·투자·사업정상화 지원을 위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조기환급할 수 있다.

258) 2022년부터 예정고지 제외대상 기준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그 외 재난·도난 등으로 재산의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도 제외대상에 포함됨

제5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1. 간이과세

개요

간이과세제도(簡易課稅制度)는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간이과세 제도를 통해 납부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도록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납부세액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일반과세 방식과 달리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개인사업자에 대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비교 ■

	일반과세	간이과세
대상	간이과세가 아닌 사업자	전년도 공급대가 1억 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1기) 1월 1일 ~ 6월 30일 (2기) 7월 1일 ~ 12월 31일	1월 1일 ~ 12월 31일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 있음	별도 규정 없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단, 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또는 소비자 상대업종은 영수증만 발급 가능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 10%
예정신고납부	예정고지·징수	예정부과·징수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공급받은 금액 ×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납부의무 면제	없음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적용대상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의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폐업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 배제대상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 간이과세 배제기준 ■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자

- 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②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광업
 - 제조업 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과자점업, 도정업과 제분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은 제외
 -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는 포함, 재료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및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및 시 지역,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의 사업¹⁾)
 - 부동산임대업(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¹⁾)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¹⁾에 해당하는 사업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건설업 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¹⁾)은 제외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제외
- ③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④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주: 1)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매년 국세청의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참조

납부세액의 계산

간이과세는 당해연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간이과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²⁵⁹⁾ 18개 업종에 대해 15~40% 수준으로 적용한다.²⁶⁰⁾

$$\text{간이과세 납부세액} = \text{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times \text{업종별 부가가치율} \times \text{세율 } 10\%$$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18개 / 5단계)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액공제

간이과세의 경우 일반과세와 달리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2021년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면서 종전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측면에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²⁶¹⁾ 제도 등을 축소하였다.

①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중 일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장려하기 위해 매입세금계산서

259)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5%에서 50% 범위에서 부가가치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260) 2021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인상되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대상 업종 구분을 종전 11개에서 18개로 세분화하고, 부가가치율도 종전 5~30%(4단계 구분)에서 15~40%(5단계 구분)로 인상됨

261) 2020년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업종 및 과세표준별로 면세농산물 가액의 2/102~9/109를 공제할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만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변경됨

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²⁶²⁾

②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발급금액의 1%(2026년 말까지 우대공제율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²⁶³⁾

■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구분	2026년 12월 31일 까지	2027년 1월 1일 이후
공제율	1.3%	1%
공제한도	1,000만원	500만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시 세액공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을 공제한다.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까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했으나,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²⁶⁴⁾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262) 2020년까지는 업종별로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의 일정비율(업종별 부가가치율, 5~3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업종별 차등 없이 동일한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함

263) 2020년까지는 음식점업·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의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2021년부터 업종별 차등 없이 동일한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함

264)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영수증 발급에 대한 규정이 적용 또는 미적용되는 기간은 1년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 또는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임(「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2021년부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신고·납부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의 1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확정신고·납부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25일(다음 연도 1월 1일~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안정적 조세수입의 확보와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²⁶⁵⁾ 이상인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예정부과·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 종료 후 25일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결정하고, 예정부과기간 종료 후 10일(7월 1일~1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 적용대상의 경우에도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간이과세 적용 시 세부담 측면에서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 등에는 납부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다.²⁶⁶⁾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다만, 2024년부터는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 포기 후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 재적용이 가능하도록 철회 근거가 마련되었다.²⁶⁷⁾

2.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특례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국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아²⁶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²⁶⁹⁾ 전자적 용역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되는 용역

265) 2022년부터 예정부과 제외대상 기준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그 외 재난·도난 등으로 재산의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도 제외대상에 포함됨

266) 간이과세 변경과 관련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로 변경되는 경우는 그 변경 이후 7월 1일~12월 31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그 변경 이전 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함. 다만,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은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함

267) 「부가가치세법」 제70조

268)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임

269) EU('03년), 일본('15년), 호주('17년) 등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을 가리킨다.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5년 게임·음성·동영상파일, 전자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및 이를 개선시키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019년 7월부터는 클라우드 컴퓨팅²⁷⁰⁾, 중개용역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공유숙박 플랫폼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확대되었다.²⁷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간편사업자의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은 제도가 시행된 2015년에는 233억원 수준이었으나 점차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2024년 7,11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2015~2024년 ■

(단위: 개,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자 수	57	66	86	92	134	168	209	238	277	317
납부세액	233	612	925	1,335	2,367	3,319	3,983	4,828	5,754	7,110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동 과세특례의 납세의무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며, 오픈마켓이나 중개자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오픈마켓 사업자 또는 중개자가 해당된다.

납세의무자는 간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간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외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업자정보, 사업장 정보,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한다. 또한 간편사업자는 전자용역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를 확정신고 후 5년간 보관할 의무를 가지며, 국세청장이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70)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대여,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 대여하는 서비스를 말함

271) 과세대상 등은 OECD 국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반영함

3.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

매입자납부특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공급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등 거래징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세금을 탈루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매입자납부특례는 2008년 금지금 거래에 대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금 관련 거래 및 구리·금·철 스크랩²⁷²⁾ 등의 거래로 확대되었다. 2024년에는 구리, 철 외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을 포함한 비철금속류, 2025년에는 면세점 송객용역도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포함하였다.

■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현황 ■

대상	금지금	고금	구리 스크랩	금 스크랩	철 스크랩	비철금속류	면세점 송객용역
시행일	2008.7.1.	2009.7.1.	2014.1.1.	2015.7.1.	2016.10.1.	2024.7.1.	2025.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금지금 등의 공급 시 매입자가 대금을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면 물품대금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는 국고계좌에 분리 이체되어 자동 납부된다. 매입세액 환급의 경우 전용계좌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범위에서 실시간으로 환급이 이루어진다.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유흥업소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2019년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 유흥 주점업 사업자²⁷³⁾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272) 스크랩은 금속제품을 만들 때 생기는 금속 부스러기나 제품의 폐물, 쇠 부스러기 등이 대표적이며, 강철의 제련과 재생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가리킴

273) 해당 유흥 주점업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제외함

제6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고의 폐업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면세점 송객용역 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자(관광사업자) 대신 매입자(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지정 금융회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전용계좌 미사용 시 10%, 지연입금 시에는 일당 0.02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²⁷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확대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였다. 과세유형별로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공급대가의 0.5%에서 1%로 각각 2배 인상하였다.²⁷⁵⁾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 국외사업자의 거래명세자료 제출 의무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를 부여하였다.²⁷⁶⁾

제7절 국제동향

1. 부가가치세 부담 추이

GDP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 추이

OECD 국가의 평균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은 1990년 5.7%에서 2023년 7.0%로 1.4%p의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이 1990년 3.5%에서 2023년 4.4%로 0.9%p 상승하였다.

27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27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76) 「부가가치세법」 제75조

OECD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완만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였으며, 세율 인상 등의 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율 수준이 높은 뉴질랜드의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은 10%, 덴마크·스웨덴은 9% 내외,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은 7%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5년 및 2020년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이 1990년 1.2%에서 2020년 4.9%, 2023년 5.0% 등으로 확대되었다.

OECD 주요국의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 추이

(단위 : %)

국가	1990	2000	2010	2020	2021	2022	2023
뉴질랜드	8.1	8.1	9.3	10.3	10.1	10.0	10.0
덴마크	8.4	9.1	9.3	9.8	9.5	9.2	9.1
스웨덴	7.3	8.2	9.1	9.2	9.1	9.4	8.9
영국	5.5	5.9	6.1	6.7	6.9	7.3	7.3
프랑스	7.7	7.3	6.8	7.0	7.4	7.5	7.2
독일	5.8	6.7	7.0	6.5	7.2	7.5	7.0
이탈리아	5.3	6.2	6.1	6.0	6.6	7.1	6.7
일본	1.2	2.3	2.5	4.9	5.1	5.2	5.0
캐나다	-	3.2	4.2	4.5	4.6	4.5	4.7
한국	3.5	3.6	3.9	4.2	4.3	4.9	4.4
OECD 평균 ¹⁾	5.7 ¹⁾	6.5	6.5	6.8	7.1	7.2	7.0 ¹⁾

주 : 1) OECD 평균은 37개국(미국 제외)을 기준으로 하되, 1990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26개국(헝가리 및 이스라엘은 자료 누락으로 제외)에 대하여 산출하고 2023년의 경우 자료 미발표국(호주, 그리스)은 전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1. 전체 OECD 국가의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2. 한국의 GDP는 구계열 기준(2015년 기준년)으로, 2024년 공표된 신계열(2020년 기준) 수치와 차이 있음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추이

OECD 국가의 평균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1990년 18.9%에서 2023년 21.0%로 2.1%p 상승하였다. 스웨덴·덴마크·영국·독일 등 유럽 여러 국가의 경우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뉴질랜드의 비중은 1990년 22.4%에서 2023년 29.6%로 7.1%p, 스웨덴의 비중은 1990년 14.9%에서 2023년 21.6%로 6.7%p 상승하였다. 덴마크·영국·독일·이탈리아의 비중도 1~4%p 수준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이 1990년 4.4%에서 2023년 15.1%로 10.6%p 확대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1990년 18.7%에서 2023년 15.3%로 3.4%p 축소되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1990년 18.4%에서 2023년 16.5%로 1.9%p 축소되었다.

OECD 주요국의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추이

(단위: %)

국가	1990	2000	2010	2020	2021	2022	2023
뉴질랜드	22.4	24.9	30.7	30.6	29.3	30.3	29.6
스웨덴	14.9	16.4	21.1	21.6	21.4	22.1	21.6
덴마크	18.9	19.5	20.8	20.7	20.1	22.0	20.9
영국	16.9	18.1	18.9	20.3	20.2	20.7	20.6
독일	16.6	18.4	19.6	16.9	18.1	18.9	18.3
프랑스	18.4	16.6	16.0	15.4	16.3	16.4	16.5
이탈리아	14.7	15.4	14.5	14.1	15.6	16.5	15.7
한국	18.7	17.0	17.5	15.1	14.4	15.3	15.3
일본	4.4	9.1	9.6	14.9	14.9	15.1	15.1
캐나다	0.0	9.2	13.7	13.1	13.2	13.4	13.6
OECD 평균 ¹⁾	18.9 ¹⁾	20.2	21.0	20.7	21.2	21.4	21.0

주: 1) OECD 평균은 37개국(미국 제외)을 기준으로 하되, 1990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26개국(헝가리 및 이스라엘은 자료 누락으로 제외)에 대하여 산출하고 2023년의 경우 자료 미발표국(호주, 그리스, 일본)은 전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1. 전체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부가가치세율 동향

2024년 기준 부가가치세를 운영하고 있는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세율(일반세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덴마크·스웨덴·이탈리아 등의 세율은 20%를 상회하며 프랑스 및 영국의 세율은 20%, 독일 19%, 뉴질랜드는 15% 등이다. 그 외 일본 및 호주가 우리와 같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8.1%, 캐나다는 5%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OECD 주요국들은 1990년대 이후 세입 기반 강화 등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였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영국·스페인·그리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율 인상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일부 국가만이 세율을 인상하였는데, 2020년 일본이 사회보장비 재원 충당을 위해 소비세율을 인상하였고²⁷⁷⁾ 2024년 에스토니아·스위스 등이 재정확보를 위해 세율을 인상하였다. 그 외 다수 국가

277) 소비세율은 2단계(2015년 5 → 8%, 2020년 8 → 10%)에 걸쳐 인상하였으며 식료품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경감세율(8%)을 도입함

의 세율 수준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큰 변동 없이 19.2~19.3%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추이

(단위 : %)

국가	도입연도	1990	2000	2010	2020	2021	2022	2023	2024
덴마크	1967	22.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스웨덴	1969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이탈리아	1973	19.0	20.0	20.0	22.0	22.0	22.0	22.0	22.0
프랑스	1968	18.6	19.6	19.6	20.0	20.0	20.0	20.0	20.0
영국	1973	15.0	17.5	17.5	20.0	20.0	20.0	20.0	20.0
독일	1968	14.0	16.0	19.0	19.0	19.0	19.0	19.0	19.0
뉴질랜드	1986	12.5	12.5	12.5	15.0	15.0	15.0	15.0	15.0
일본	1989	3.0	5.0	5.0	10.0	10.0	10.0	10.0	10.0
한국	197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캐나다	1991	-	7.0	5.0	5.0	5.0	5.0	5.0	5.0
OECD 평균 ¹⁾	-	16.8 ¹⁾	17.7	18.1	19.2	19.2	19.2	19.2	19.3

주 : 1) OECD 평균은 37개국(미국 제외)을 기준으로 하되, 1990년의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25개국에 대한 평균을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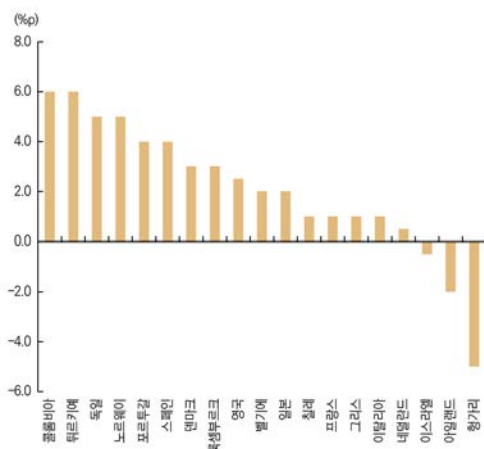
1.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 일반세율을 기준으로 집계

2. 전체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현황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자료 :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2008년 전후

<1990년 대비 2008년의 세율 변화 수준>¹⁾



미국의 판매세(Sales Tax)

미국은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이다. 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소비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은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에 대하여 지방세인 판매세(sales tax)를 과세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와 과세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EU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운영하는 부가가치세는 세전 판매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되, 매 공급단계에서 세액을 징수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소비 단계까지 세액을 전가하는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미국의 판매세는 별도의 매입세액공제 없이 최종 판매 단계에서만 세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²⁷⁸⁾

미국의 경우 주 정부²⁷⁹⁾가 판매세(state sales tax)를 과세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²⁸⁰⁾는 자체적으로 판매세(local sales tax)를 추가하여 운영한다. 각 주 또는 지방정부 별로 해당 지역의 재정 및 조세체계를 반영하여 판매세를 운영하기 때문에, 세율·과세 범위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다. 미국의 판매세는 2025년 기준 47개 주²⁸¹⁾에서 운영되고 있다. 주별 판매세율은 1.8%(알래스카)~10.1%(루이지애나) 범위이며, 델라웨어·몬태나·뉴햄프셔·오리건 주와 같이 판매세를 과세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그 외 판매세 경감세율 및 면세 등도 지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 미국의 판매세(Sales Tax) 세율: 2025년 ■

(단위: %)

주(State)	판매세율	주(State)	판매세율	주(State)	판매세율
루이지애나	10.1	사우스캐롤라이나	7.5	매사추세츠	6.3
테네시	9.6	조지아	7.4	사우스다코타	6.1
아칸소	9.5	유타	7.3	아이다호	6.0
워싱턴	9.4	오하이오	7.2	켄터키	6.0
앨라배마	9.4	미시시피	7.1	메릴랜드	6.0
오クラ호마	9.0	노스다코타	7.1	미시간	6.0
일리노이	8.9	인디애나	7.0	컬럼비아 특별구	6.0
캘리포니아	8.8	로드아일랜드	7.0	버지니아	5.8
캔자스	8.8	노스캐롤라이나	7.0	위스콘신	5.7
뉴욕	8.5	네브래스카	7.0	메인	5.5
애리조나	8.4	플로리다	6.9	와이오밍	5.4
미주리	8.4	아이오와	6.9	하와이	4.5
네바다	8.2	뉴저지	6.6	알래스카	1.8
텍사스	8.2	웨스트버지니아	6.6	델라웨어	0.0
미네소타	8.1	버몬트	6.4	몬태나	0.0
콜로라도	7.9	코네티컷	6.4	뉴햄프셔	0.0
뉴멕시코	7.6	펜실베이니아	6.3	오리건	0.0

주: 판매세율은 주 정부 세율 및 지방정부 세율(인구 수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을 합산하여 산출함
 자료: Jared Walczak, "State and Local Sales Tax Rates, 2025", TAX FOUNDATION, 2025.2.4.

278) 미국의 판매세 제도는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재판매 또는 면세 증명서(resale certificate, exemption certificate)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 대한 소매거래와 그 외 도매거래 등을 구분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

279) 50개 주(state)와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를 가리킴

280) 주(state) 내 군(county), 시(city) 등을 가리킴

281)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판매세를 합산한 기준이며, 알래스카주의 경우 주 정부 판매세는 없으나 지방정부의 판매세는 과세함

제4장

개별소비세

제1절 개요

1. 개념 및 의의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로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로, 과세대상의 특정성 측면에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구별된다.

개별소비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이므로 국세에 해당하며, 조세수입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보통세이다. 한편, 개별소비세액에 대해서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surtax)의 형태로 부과된다.²⁸²⁾

2. 기능 및 특징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77년 7월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보석, 귀금속, 전자제품, 청량음료, 휘발유 등 당초 과세대상 물품이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일반 국민 누구나 구입 가능한 물품으로 성격이 변화하면서 사치세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2007년 12월 자동차, 휘발유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에 대한 교정과세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개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현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보석, 귀금속, 모피 등 고급재화가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세수는 2021년 기준 24억원으로 크지 않고, 대부분 자동차, 담배, 유류, 발전용 유연탄으로부터 징수되고 있다.

282) 교육세는 프로판, 천연가스, 발전용 유연탄, 담배를 제외한 개별소비세의 모든 과세대상에 대해 부과되며, 등유, 중유, 부탄, 부생연료유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액의 15%가, 그 외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액의 30%가 부과됨.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중 오락용품, 고급모피, 고급가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부과되며,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액의 30%, 그 외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액의 10% 부과됨

2023년 개별소비세의 신고 및 부과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9.0조원 중 발전용 유연탄이 2.8조원(31%)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담배 2.1조원(23%), 유류 1.8조원(20%), 자동차 1.7조원(18%), 기타 과세물품 및 과세장소 0.5조원(7%) 순으로 구성된다.

■ 개별소비세 품목별 신고 및 부과 실적: 2019~2023년 ■

(단위 : 조원, %)

품목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9.9	9.2	9.6	9.5	9.0
자동차	1.2 (12)	1.1 (12)	1.4 (15)	1.4 (15)	1.7(18)
담배	2.0 (20)	2.1 (23)	2.1 (22)	2.2 (23)	2.1(23)
유류 등	2.4 (24)	2.2 (23)	2.2 (23)	2.0 (21)	1.8(20)
- 등유	0.2	0.2	0.2	0.2	0.1
- 중유	0.1	0.1	0.1	0.0	0.1
- LPG	0.9	0.9	0.8	0.6	0.6
- LNG	1.3	1.0	1.1	1.2	1.0
- 부생연료유	0.0	0.0	0.0	0.0	0.0
발전용 유연탄	3.8 (39)	3.4 (37)	3.4 (36)	3.3 (35)	2.8(31)
기타 과세물품	0.1 (1)	0.1 (2)	0.2 (2)	0.3 (3)	0.3(4)
과세장소	0.4 (4)	0.3 (3)	0.3 (3)	0.3 (4)	0.2(3)

주: 1. 품목별 신고 및 부과실적으로 징수실적과 차이가 있음

2. ()안의 값은 전체 개별소비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관세청 및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최근 현황

2024년 개별소비세 규모

2024년 개별소비세 징수액은 8조 6,566억원으로, 2023년 8조 8,209억원 대비 1,643억원(△1.9%) 감소하였다.

2024년 개별소비세 징수액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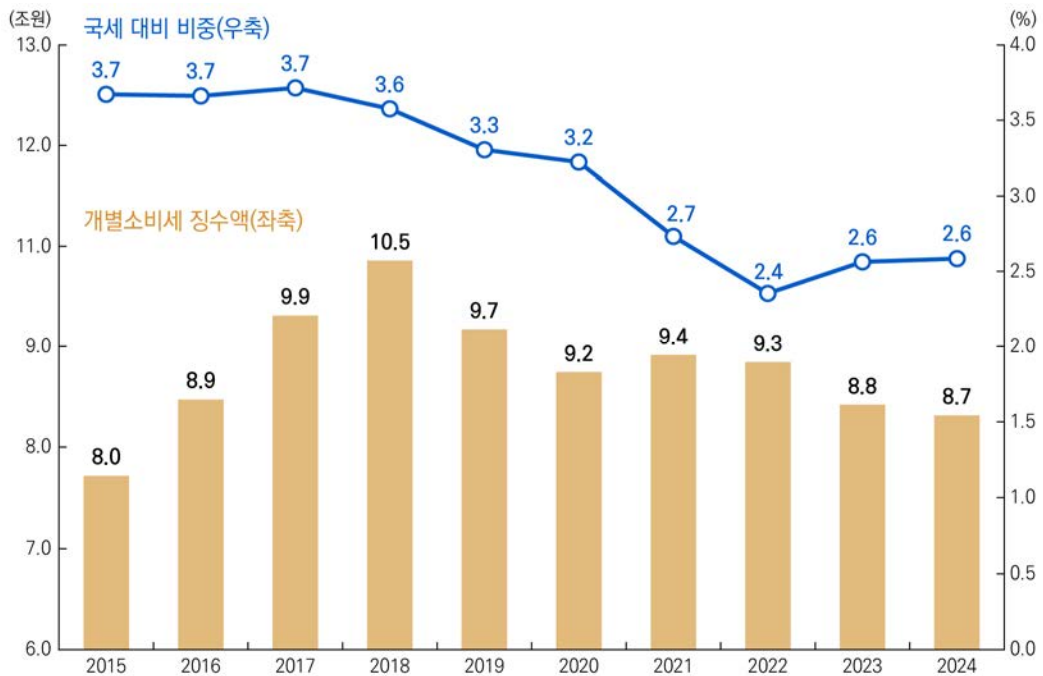
	2023년 (A)	2024년 (B)	증감	
			증감액(C=B-A)	증가율(C/A)
개별소비세	88,209	86,566	△1,643	△1.9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개별소비세 추이

연도별 개별소비세 징수액 규모는 2015년 과세대상에 담배가 추가됨에 따라 8조원대로 증가한 이후 2018년 10.5조원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및 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0년 9.2조원까지 감소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에는 8.8조원으로 감소하였다. 2024년은 8.7조원으로 202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2017년 3.7%에서 2024년 2.6%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근 개별소비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주요 개정연혁

1. 과세대상 및 세율 조정

개별소비세 도입 당시와 달리 국민소득 증가로 특정 과세물품이 사치성 물품으로 인식되지 않게 되고,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성격이 약화됨에 따라 2016년부터 녹용,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고급사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2015년부터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는 껌련형 및 고체형 전자담배를, 2021년부터는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 다른 부분으로 만든 담배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점차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해나갔다.

또한, 2016년부터 경마장·경륜장·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을 2배 인상했다. 그 밖에 발전연료의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2017년부터 유연탄의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²⁸³⁾ 2019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의 세율을 60원/kg에서 12원/kg으로 인하였다.

2. 유가 변동에 따른 유류 등 탄력세율 조정

등유, 부탄, 천연가스 등 유류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로서 각 물품별로 30%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아래 표와 같이 부탄에 대하여는 2010년 1월부터 기본세율(252원/kg)보다 높은 탄력세율(275원/kg)이 적용되었고, 등유,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연료유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기본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유연탄에 대해서는 발열량이 많은 경우 높은 탄력세율이, 적은 경우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었다.

한편, 2022년 8월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안정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 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50%로 상향하였으나, 실제로 기본 조정한도 30%를 초과하여 탄력세율을 조정한 사례는 없다.

283) 2017년 24원/kg → 30원/kg, 2018년 30원/kg → 36원/kg, 2019년 36원/kg → 46원/kg

■ 유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및 탄력세율 비교: 2025년 ■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등유(원/ℓ)	90	63
중유(원/ℓ)	17	-
프로판(원/kg)	20	수소제조용, 가정용·상업용 14
부탄(원/kg)	252	275 (2024.11.1.~2025.4.30. 212)
천연가스(원/kg)	발전용 12, 그 외 60	열병합 발전용, 수소제조용 8.4, 그 외 42 (2022.8.1.~2025.6.30. 일반 발전용 10.2)
부생연료유(원/ℓ)	90	63
유연탄(원/kg)	46	순발열량 5,500kcal 이상 49 (2022.8.1.~2025.6.30. 41.6) 2022.8.1.~2025.6.30. 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 39.1 5,000kcal 미만 43 (2022.8.1.~2025.6.30. 36.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자동차에 대한 세율 조정

종전에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였으나(2,000cc 이하 5%, 2,000cc 초과 1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²⁸⁴⁾의 이행을 위하여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세율 차등적용을 폐지하고, 1,000cc를 초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5%의 단일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이후에는 기본세율과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²⁸⁵⁾의 적용이 반복되어 왔으며, 2025년 4월 기준 현재는 탄력세율 3.5%를 적용하고 있다.(~2025.6.30.)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는 2009년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대상으로 신설된 이후, 2012년에는 전기자동차, 2017년에는 수소전기자동차가 감면대상에 포함되었다.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자동차 70만원, 전기자동차 3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40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025년부터 감면한도가 기존의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되었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2018년 감면

284) 한·미 FTA 제2.12조 (1항) 배기량 1,000cc 초과 차량에 5%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

285) 2015년 8월 ~ 2016년 6월, 2018년 8월 ~ 2019년 12월 3.5%, 2020년 3월 ~ 2020년 6월 1.5%, 2020년 7월 ~ 2023년 6월 3.5%, 2025년 1월 ~ 2025년 6월 3.5%

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된 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동 특례는 신설 이후 현재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으며, 현행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5.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국내 제조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이나,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 또는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가격이라도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가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3년 2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①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②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③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8①9)

$$\text{과세표준} = \text{판매가격} - (\text{판매가격} \times \text{기준판매비율})$$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하게 되며, 최대 3년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승용자동차, 고급가구, 고급모피 및 캠핑용자동차에 대하여,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캠핑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 물품별 기준판매비율 ■

승용자동차	고급가구	고급모피	캠핑용자동차
18.0%	38.9%	24.6%	9.2%

자료: 국세청 고시 제2024-6호

개별소비세율 변동내역

각 과세대상별 개별소비세율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개별소비세율 변동내역 ■

(단위: %)

구 분	02.1	03.7	04.10	06.1	14.1	15.1	16.1	17.1	18.1 ~
제1호 물품									
-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20				
- 수렵용 총포류					20				
- 골프용품	20		폐지			-			
- 모타보트·요트류	20		폐지			-			
- 수상스키용품	20		폐지			-			
- 공기조절기	20		폐지			-			
- 영사기·촬영기	20	16	폐지			-			
- 프로젝션·PDP TV	10	8	폐지			-			
제2호 물품									
- 녹용·로알제리			7			녹용폐지	폐지		-
- 방향용 화장품			7			폐지		-	
- 보석·귀금속(500만원 초과)					20				
- 고급사진기(200만원 초과)			20			폐지	-	-	
- 고급시계(200만원 초과)					20				
- 고급모피(500만원 초과)					20				
- 고급용단(200만원 초과)					20				
- 고급가방(200만원 초과)		-				20			
- 고급가구					20				
(가당 500조당 800만원 초과)									

주: 1. 2004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용단, 고급가구에 대하여 14%, 녹용·로알제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하여 4.9%의 탄력세율 적용

2. 프로젝션·PDP TV에 대하여 2002년 1월의 경우 1%, 2003년 7월의 경우 0.8%의 잠정세율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24.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단위: %)

구 분	02.1	03.7	04.3	06.1	08.12.29 ~ 09.6.30	12.1.1 ~ 12.3.14	12.3.15 ~ 12.12.31	13.1	14.1	15.1 ~
제3호 물품										
- 승용자동차										
• 1,500cc 이하 이륜자동차	7						2,000cc 이하로 통합			
• 2,000cc 이하 이륜자동차	10(7.5)	5	5(4)	5	5(3.5)		5			52
• 2,000cc 초과 캠핑용 자동차	14(10)	10	10(8)	10	10(7)	10	8	7	6	52
- 전기승용자동차			-				5			52

주: 1. 경차(1989.1.1. 이후 800cc 이하, 2008.1.1. 이후 1,000cc 이하) 과세 제외

2. 2015.8.27.~2016.6.30. 탄력세율 3.5%, 2018.8.7.~2019.12.31. 탄력세율 3.5%, 2020.3.1.~2020.6.30. 탄력세율 1.5%, 2020.7.1.~2023.6.30. 탄력세율 3.5%, 2025.1.1.~2025.6.30. 탄력세율 3.5%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24.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구 분	07.7	08.1	08.4	09.1	10.1	11.1	13.1	14.1	14.7	15.1	15.7	16.1	17.4	17.11	18.4	19.4

제4호 물품

- 등유(원/ℓ)	181 (134)	90 (63)	90				90(63)					
- 중유(원/ℓ)	17											
- 프로판(원/kg)	40	40 (28)	20				20(14)					
- 부탄(원/kg)	360 (275)	360(252)	290 (275)	252(275)								
- 천연가스(원/kg)	60	60 (42)	60				60(42)					6012 (4284)
- 부생연료유(원/ℓ)	147 (103)	66 (47)	66	72	90	90(63)						
- 유연탄(원/kg)	-					24 (19,17)	24 (22)	24 (22)	30 (27,33)	36 (339)	46 (439)	

제6호 물품

- 쉐련(원/20개비)	-	594														
- 파이프담배 및 각련(원/g)	-	21														
- 엽쉐련(원/g)	-	61														
- 액상형 전자담배(원/ml)	-	370														
- 쉐련형 전자담배 (원/20개비)	-	-														529
- 고체형 전자담배(원/g)	-	-														51
- 물담배(원/g)	-	422														
- 씹거나 머금은 담배 (원/g)	-	215														
- 냄새 맡는 담배(원/g)	-	15														

과세장소 입장행위 (단위 : 원)

- 경마장(장외)	500	1,000	1,000(2,000)
- 경륜장(장외)	200	400	400(800)
- 경정장(장외)	-	200	400(800)
- 투전기 시설장소	10,000		
- 골프장	12,000		
- 카지노(폐광지역)	50,000(3,500)	50,000(5,250)	50,000(6,300)

유흥음식행위

- 유흥주점 등	10%

과세영업장소 입장행위

- 카지노 영업행위	-	0%(~ 500억원), 2%(500억원 ~ 1,000억원), 4%(1,000억원 ~)

주 :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라, 부탄의 경우 2008.3.10~12.31.: 252원/kg, 2018.11.6~2019.5.6.: 234원/kg, 2019.5.7.~8.31.: 256원/kg, 2021.11.12~2022.4.30.: 220원/kg, 2022.5.1~6.30.: 193원/kg, 2022.7.1~2024.6.30.: 176.4원/kg, 2024.7.1~2024.10.31.: 193원/kg, 2024.11.1~2025.4.30.: 212원/kg
일반발전용 천연가스의 경우 2022.8.1~2025.6.30.: 10.2원/kg, 발전용 유연탄의 경우 2022.8.1~2025.6.30.: 순발열량 5,500kcal/kg 이상 41.6원/kg, 5,000kcal/kg~5,500kcal/kg 39.1원/kg, 5,000kcal/kg 미만 36.5원/kg의 탄력세율 적용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24.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1. 납세의무자

「개별소비세법」은 과세대상별로 납세의무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조장에서 만들어진 과세물품은 이를 ‘제조·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수입 과세물품은 ‘수입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경마장, 골프장 등의 과세장소 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 내 유흥음식행위 및 과세영업장소 내 영업행위는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세대상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물품, 과세장소 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 영업행위, 과세영업장소 영업행위로 구분된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는 오락용품, 고급재화, 자동차, 유류, 담배가 포함되며,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과세장소인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골프장, 카지노의 입장행위, 유흥주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내 유흥음식행위,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내 영업행위에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2025년 Ⅱ

종류	세부품목
물품	오락용품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고급재화 보석·귀금속제품·고급모피(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고급시계·고급용단·고급가방(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고급가구(개당 500만원/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자동차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이하 제외), 캠핑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
	유류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프로판(석유가스), 부탄(석유가스), 천연가스, 부생연료유, 유연탄
	담배 피우는 담배(제1종 권련, 제2종 파이프담배, 제3종 엽권련, 제4종 각련, 제5종 전자담배, 제6종 물담배), 씹거나 머금은 담배, 냄새 맡는 담배
과세장소 입장행위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골프장, 카지노
유흥음식행위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과세영업장소 영업행위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외국인이 입장하는 경우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과세표준

물품의 경우 과세대상에 따라 종가세 또는 종량세 형태로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오락용품, 고급재화, 자동차는 종가세 형태로 부과되기 때문에 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이며, 유류와 담배는 종량세 형태로 부과되므로 물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이다.²⁸⁶⁾

한편, 과세장소 입장행위는 입장할 때의 인원, 유흥음식행위는 유흥음식요금, 과세영업장소 영업행위는 연간 총매출액이 과세표준이다.

4. 세율

「개별소비세법」은 과세대상에 따라 세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 등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경우 또는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²⁸⁷⁾ 현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중 등유, 수소제조용, 가정용·상업용 프로판, 부탄, 천연가스, 부생연료유, 발전용 유연탄 등에 대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오락용품, 고급재화, 자동차

물품 중 오락용품, 고급재화, 자동차는 종가세 체계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오락용품은 물품가격의 20%, 고급재화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 가액의 20%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되며, 자동차에 대한 기본세율은 5%이다.

유류

물품 중 유류는 그 수량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종량세 체계가 적용된다. 등유와 프로판, 부생연료유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70%)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부탄(252원/kg)은 기본세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탄력세율(275원/kg)이 적용되었으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220원/kg,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93원/kg,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76.4원/kg, 2024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93원/kg, 2024년

286) 국내 제조물품의 경우 제조장 반출 가격 또는 수량을,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할 때의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을 의미함

287) 다만,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0%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2022.8.12. 개정)

11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212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은 연소 시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함에 따라 유류 중 비교적 높은 46원/kg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순발열량의 규모에 따라 43원/kg과 49원/kg²⁸⁸⁾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며,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순발열량의 규모에 따라 36.5원/kg, 39.1원/kg, 41.6원/kg²⁸⁹⁾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용도별로 다른 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천연가스의 용도는 크게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발전용은 열병합 발전용과 일반 발전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는 기본세율은 60원/kg이나 42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며, 발전용 천연가스의 기본세율은 12원/kg이나 열병합 발전용 및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8.4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일반 발전용 천연가스는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2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담배

물품 중 담배는 유류와 마찬가지로 종량세 체계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담배는 그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개별소비세법〕 별표) 대표적으로 궐련에는 20개비(1갑)당 594원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는 액상형, 궐련형, 일반고체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세율은 370원/㎖, 529원/20개비, 51원/g이다.

과세장소 입장행위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의 과세장소는 입장 횟수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장내 경마장은 회당 1,000원(장외는 회당 2,000원), 골프장에 대해서는 회당 1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골프장의 경우 기존에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으나, 2023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²⁹⁰⁾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288) 순발열량 5,000kcal/kg 미만의 경우 43원/kg, 5,500kcal/kg 이상의 경우 49원/kg

289) 순발열량 5,000kcal/kg 미만의 경우 36.5원/kg, 5,000kcal/kg 이상 5,500kcal/kg 미만의 경우 39.1원/kg, 5,500kcal/kg 이상의 경우 41.6원/kg

29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회원제 골프장 중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유흥음식행위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주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종가세 체제로 유흥음식요금의 10%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과세영업장소 영업행위

과세영업장소인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출액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연간매출액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2%의 세율을, 1,000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4%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개별소비세 세율체계: 2025년 ■

과세대상	품목	세율(탄력세율) ¹⁾
물품 (가격, 수량)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보석·귀금속제품·고급모피(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고급시계·고급용단 ²⁾ ·고급가방(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고급가구(개당 500만원/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20%
	승용(1,000cc 이하 경차 제외)·캠핑용·이륜·전기승용자동차	5% (3.5%)
	등유	90원/ℓ (63원/ℓ)
	중유	17원/ℓ
	프로판 (수소제조용, 가정 및 상업용)	20원/kg (14원/kg)
	부탄	252원/kg (275원/kg)
과세장소 (입장행위)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60원/kg (42원/kg)
	발전용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용, 수소제조용)	12원/kg (8.4원/kg)
	부생연료유	90원/ℓ (63원/ℓ)
	발전용 유연탄	46원/kg (43원/kg, 49원/kg)
	귤련	594원/20개비
	파이프담배 및 각련	21원/g
	엽귤련	61원/g
	전자담배 (액상형)	370원/ml
	전자담배 (귤련형)	529원/20개비
	전자담배 (일반고체형)	51원/g
과세유흥장소 (음식요금)	물담배	422원/g
	씹거나 머금은 담배	215원/g
	냄새 맡는 담배	15원/g
	경마장 (장외)	1,000원/회 (2,000원/회)
	투전기 시설장소	10,000원/회
과세유흥장소 (음식요금)	골프장 ³⁾	12,000원/회
	카지노 (폐광지역카지노)	50,000원/회 ⁴⁾ (6,300원/회) ⁵⁾
	경륜장 및 경정장 (장외)	400원/회 (800원/회)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주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10%

과세대상	품목	세율(탄력세율) ¹⁾
과세영업장소 (매출액)	카지노 영업행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곳)	0% (~ 500억원), 2% (500억원 ~ 1,000억원), 4% (1,000억원 ~)

주: 1)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부탄의 경우 2024.11.1.~2025.4.30. 동안 212원/kg, 일반 발전용 천연가스의 경우 2022.8.1.~2025.6.30. 동안 10.2원/kg, 발전용 유연탄의 경우 2022.8.1.~2025.6.30. 동안 발열량에 따라 5,500kcal/kg 이상 41.6원/kg, 5,000kcal/kg~5,500kcal/kg 39.1원/kg, 5,000kcal/kg 미만 36.5원/kg의 탄력세율을 적용함

- 2) 단, 고급용단에 대해서는 면적×10만원/㎡과 200만원 중 더 큰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함
- 3) 골프장 중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 제외
- 4)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전용 카지노로 외국인이 입장하는 경우 제외
- 5) 단,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0원 부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비과세 및 면세 등

비과세

「개별소비세법」 제2조는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자기(법인 제외) 또는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 ②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약사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 ④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 「주세법」에 따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면세

개별소비세의 면세는 「개별소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구분	종류	내용
「개별 소비세법」	수출 및 군납면세 (제15조)	수출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물품
	외교관면세 (제16조)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주한외교공관 등과 주한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제17조)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주한외교관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조건부면세 (제18조)	반출·수입 시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되,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고, 반입 후에 용도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무조건 면세 (제19조)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개별소비세 면제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의면세 (제19조의2, 제19조의3)	선수의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 이용 및 입장, 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 외국인 및 해외 거주 국민의 카지노 입장, 외국군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조세특례제한법」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도입되는 자본재,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 등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등 각종 감면 및 환급 특례를 적용기한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면세 및 감면 등 주요 현황

2023년 기준 개별소비세의 면세 및 감면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물품 면세가 5조 4,973억원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장애인 및 환자 수송차량에 대한 면세 6,900억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2,108억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1,984억원, 외국항행선박용 등 석유류에 대한 면세 1,522억원의 순이다.

■ 면세 및 감면 등 주요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법조문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물품	개소법 § 15①1	36,970	40,128	37,671	41,311	54,973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 자동차	개소법 § 18①3	2,181	2,735	2,949	3,714	6,900
하이브리드 자동차	조특법 § 109①	883	750	1,085	1,470	2,108
전기자동차	조특법 § 109④	572	490	700	1,613	1,984
외국항행선박용 등 석유류	개소법 § 18①9	1,020	1,317	1,300	1,473	1,522
폐광지역 카지노 입장	개소법 § 1③, § 19의2 3	1,252	259	367	903	1,045
경형자동차 연료 환급	조특법 § 111의2	527	501	488	549	599
택시연료	조특법 § 111의3①	519	449	412	401	380
농·임·어업용 석유류	조특법 § 106의2①1	289	289	376	276	239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조특법 § 121의13	213	168	179	212	208
수소전기자동차	조특법 § 109⑦	69	142	167	208	137
골프선수외의 골프장 이용	개소법 § 19의2 1, 2	25	23	18	19	17
군납	개소법 § 15①2, 조특법 § 111①1	9	9	11	11	1,21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조특법 § 106의2①2	9	7	9	10	9
외교관용 자동차 연료 환급	조특법 § 111의4	10	9	9	7	5
외교관용 승용차	조특법 § 110	1.4	0.9	0.6	0.7	0.9

주: 1. 수출, 외국항행선박용 등 석유류 및 군납은 감면 신고 기준이며, 나머지는 실적 기준임

2. 법조문 중 「개별소비세법」은 개소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조특법으로 표기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및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세액의 공제 및 환급

개별소비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를 ①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② 용기에 충전 또는 재포장하거나 과세물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로서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제조물품의 세액을 납부·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① 과세물품 또

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②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거나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③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하치장에 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징수할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

7. 납부세액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은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단, 탄력세율이 규정된 품목의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text{개별소비세액} = \text{과세물품의 과세표준} \times \text{세율(탄력세율이 있는 경우 탄력세율)}$$

제4절 신고와 납부

개별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규정은 과세대상인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에 따라 상이하다.

과세물품의 경우 매 분기별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유류와 담배의 경우 매 월별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경우에 개별소비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장소의 경우 매 분기별로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매 월별로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경우 매 연별로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5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였다.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감면 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축소하였다.²⁹¹⁾

수소제조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신설

수소제조용 LPG프로판과의 형평을 위하여 수소제조용 LPG부탄에 대하여 ‘(수소제조용 LPG부탄 판매수량)×(수소제조용 LPG부탄 세액-수소제조용 LPG프로판 세액)’만큼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거나 납부·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⁹²⁾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2024.12.31. 기준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2014.12.31.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25.6.30.까지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도록 하였다.²⁹³⁾

291)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292)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293)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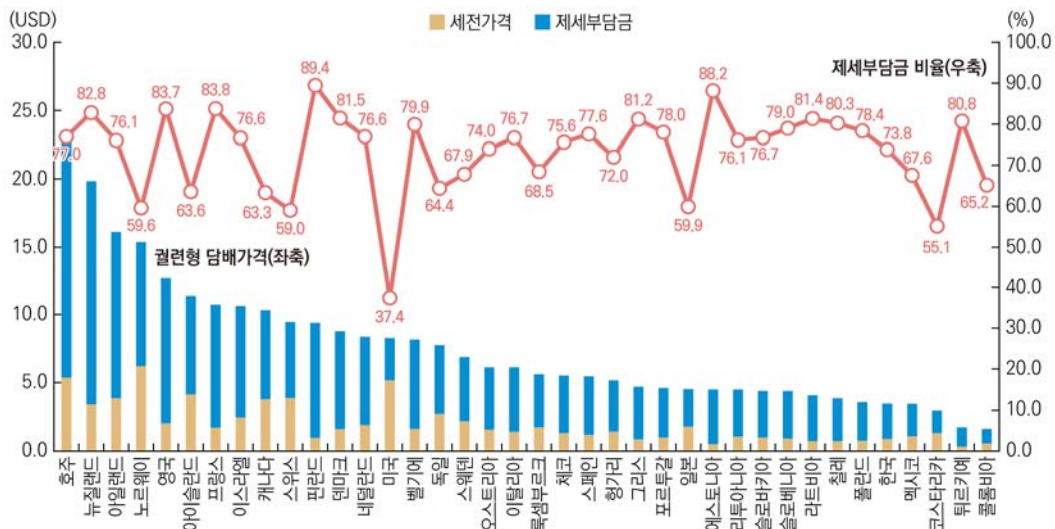
제6절 국제동향

상당수의 해외국가는 사치세의 성격보다는 환경보호, 국민보건위생 증진 등을 목적으로 담배 및 유류 등에 대해 별도의 소비세를 과세하며, 그 외의 과세대상 및 과세형태는 국가별로 다양하여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이에 이 절에서는 담배 및 유류 등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과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담배 가격 및 제세부담금 비교

우리나라는 담배에 대하여 국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및 부담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소비 감소를 위하여 소매가격 대비 제세부담금²⁹⁴⁾의 비율이 75%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²⁹⁵⁾ 우리나라 73.8%를 비롯하여 OECD 대부분 회원국에서는 동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부과하고 있다.

■ OECD 국가의 결련형 담배(20개비) 가격 및 제세부담금 비율: 2022년 ■



다만,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그 위해성과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에 따라 국가별로 과세수준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궤련형 전자담배 역시 궤련담배와 동일한 위해성을 가진다는 입장에서 궤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율을 환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궤련형 전자담배 세율은 궤련담배 세율보다 낮으며, 미국은 연방정부세의 경우 양자를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나, 주정부세는 주정부별로 상이하게 부과한다.²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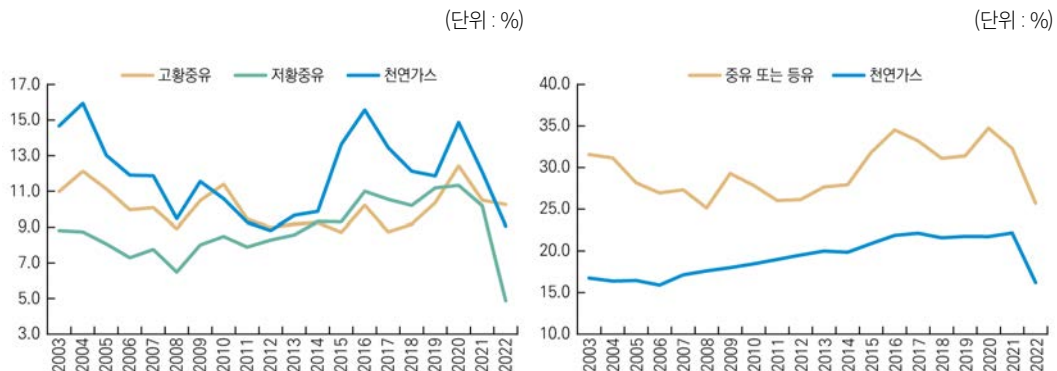
2. 유류 등의 세금 비율 및 과세방식 비교

산업용 및 가정용 유류 등의 가격 대비 세금 비율

산업용 에너지로서 고황 및 저황 중유, 천연가스에 대하여 OECD 국가들의 가격 대비 세금의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까지는 비율이 낮아지다가 그 이후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이를 보였으나, 2021년 및 2022년의 경우 급격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용 에너지로서 가정용 중유 또는 등유²⁹⁷⁾와 천연가스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정용 중유 또는 등유는 2008년까지 가격 대비 세금의 비율이 낮아지다가 그 이후 점진적으로 높아지며, 천연가스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세금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였으나, 2021년 및 2022년의 경우 급격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용 유류 등의 가격 대비 세금 비율 변화 (OECD 평균) ■ 가정용 유류 등의 가격 대비 세금 비율 변화 (OECD 평균) ■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96) 최성은,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 「월간 재정포럼」 제318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 20~23, 2022.

297) IEA, 「Energy Prices and Taxes」는 OECD 국가의 가정용 중유(LFO) 비교 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등유와 비교하고 있음

이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다가, 코로나19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확대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져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비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을 감면한 결과이다.

발전 부문 과세방식

발전 부문에 대한 과세는 ① 최종 소비자가 전기를 소비하는 단계에서 전기소비세를 과세하는 방법과 ② 발전 단계에서 화력 발전용 석탄 등 에너지원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

전기소비세의 경우 세율 조정을 통해 최종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쳐 전기수요를 조절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생산된 전기에 대해 일정한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발전 효율이 높아 동일한 열량으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이나 발전시설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발전 과정에서 에너지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어렵다. 반면에, 에너지원에 과세하는 경우 정부가 전기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수요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여러 에너지원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전 과정에서 에너지원 사용 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²⁹⁸⁾

우리나라는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해 과세하며, 전기 소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납부하는 체계이다. 반면에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전기소비세를 과세하고,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 해외 주요국의 발전 부문 과세방식 비교 ■

국가	과세방식	세부내용
프랑스	전기 소비 과세	중앙정부 전기소비세(TICFE) - 모든 전기소비에 대해 22.5€/MWh의 세율로 과세 지방정부 전기소비세(TDCFE, TCCFE) - 산업용 고압전력은 면제하며, 법적 상한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세율을 달리 정함
독일	전기 소비 과세	전기세(Stromsteuer) - 20.45€/MWh의 세율로 과세하나, 산업부문은 업종에 따라 경감 및 면제 재생에너지부담금(EEG-Umlage) - 에너지 집약(energy-intensive) 사업자를 제외하고 6.5€/MWh의 요율로 부과

298) 홍성훈·강성훈·허경선, 「에너지세제 및 공공요금체계 조정의 경제적 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12.

국가	과세방식	세부내용
영국	발전용 에너지원 및 전기 소비 과세	기후변화부담금(Climate Change Levy) - 기본요율: 상업, 산업, 농업 부문에 전기 공급 시 7.75GBP/MWh의 요율로 부과하나, 정부와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 사용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행할 경우 92%의 할인율로 경감 - 탄소가격지원요율: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하여 연료별로 다른 세율로 부과 (가스 3.31GBP/MWh, LPG 52.8GBP/톤, 고체 화석연료 1,547.9GBP/톤, 가스유 49.16GBP/kL, 연료유 등 57.11GBP/kL)
일본	발전용 에너지원 및 전기 소비 과세	석유 및 석탄세(石油石炭税) - 탄소배출 단위로 부과하는 탄소세 성격을 지니며, 화석연료인 원유, 석탄, 수입되는 석유제품, 탄화수소 계열의 가스 등에 289엔/이산화탄소상당량톤의 세율로 부과. 단, 오키나와 현에서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는 면제 전원개발촉진세(電源開発促進税) - 375엔/MWh의 세율로 과세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for OECD Countries」, 202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제세부담금 현황

■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제세부담금 현황 ■

구 분		수송용 등			산업용·가정용 등			발전용 등		
		휘발유	경유	LPG(부탄)	실내등유	중유(B-C)	LPG(프로판)	LNG	유연탄	전기
		(원/ℓ)	(원/ℓ)	(원/kg)	(원/ℓ)	(원/ℓ)	(원/kg)	(원/kg)	(원/kg)	(원/kwh)
관세	기본	3%							-	-
	할당	원유(납사/LPG제조용) 0%(상반기)	제품 원유 0%(~6월)	원유(납사/LPG제조용) 0%(상반기)	제품 원유 0%(~6월)	0%	(~6월)	-	-	-
개별소비세	기본	-	-	252	90	17	20	12/60	46	-
	탄력	-	-	275	63	17	20/14	8.4/42	49/43	-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	475	340	-	-	-	-	-	-	-
	탄력	529	375	-	-	-	-	-	-	-
교육세		79.35	56.25	41.25	9.45	2.55	-	-	-	-
자동차세 주행분		137.54	97.5	-	-	-	-	-	-	-
부가가치세 (최종가격의 1/11)		·	·	-	·	·	-	·	·	·
수입부과금		16	16	-	16	16	-	38/ 24.242	-	-
품질검사수수료		0.47	0.47	0.027	0.47	0.47	0.027	-	-	-
안전관리부담금		-	-	4.5	-	-	4.5	4.9	-	-
판매부과금		36(고급)	-	62.28	-	-	-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	-	-	-	-	-	전기요금 의 3.7%
A. 세금 합계 (본세 부가가치세 제외)		745.89	528.75	316.25	72.45	19.55	20/14	8.4/42	49/43	-
B. 준조세 합계 (부과금 등)		16.47	16.47	66.807	16.47	16.47	4.527	8.7/ 29.142	-	-
A + B		762.36	545.22	383.057	88.92	36.02	24.527/ 18.527	17.1/ 71.142	49/43	-

주: 1.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2023.1.1 ~ 2024.6.30. 동안 휘발유 396.7원, 경유 238원, LPG(부탄) 176.4원, 2022.8.1 ~ 2024.6.30. 동안 일반 발전용 천연가스 10.2원/kg을 적용하나, 본 표에서는 기본 탄력세율을 바탕으로 산출

2. LPG(프로판)의 경우 가정용·상업용은 14원, 그 외 용도는 20원의 개별소비세율을 적용

3. LNG의 경우 열병합 발전용은 8.4원의 개별소비세율과 38원의 수입부과금을, 그 외는 42원의 개별소비세율과 24.242원의 수입부과금 적용. 다만,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2022.8.1~2024.6.30. 동안 일반 발전용 LNG에 대하여 10.2원의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나, 본 표에서는 기본 탄력세율을 바탕으로 산출

4. 유연탄 탄력세율은 순발열량 기준으로 5,500kcal 이상, 5,000kcal 미만 구간 적용. 다만,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2022.8.1~2024.6.30. 동안 5,500kcal 이상 41.6원, 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 39.1원, 5,000kcal 미만 36.5원을 적용하나, 본 표에서는 기본 탄력세율을 바탕으로 산출

5. 교육세와 자동차세(주행분)는 부가세(surtax)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를(프로판 제외), 자동차세(주행분)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부과한 값(탄력세율 기준)으로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방식 비교

카지노, 골프장 등의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특정장소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해외국가들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카지노

카지노 입장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해외국가들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나, 내국인에 대하여는 일부 국가가 과세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대하여는 일일 150 SGD, 연간 3,000 SGD(2019년 일일 100 SGD, 연간 2,000 SGD에서 50% 인상)의 입장료가 부과된다. 이는 세금이 아닌 부담금의 형태로서 재무부 소속의 기관으로서 경마 및 사행성 게임을 관리·감독하는 Singapore Totalizator Board가 징수하여 관련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2018년 카지노를 합법화하면서 내국인 및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6,000¥(국세 3,000¥, 지방세 3,000¥)의 입장세를 부과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2017년 카지노를 합법화하면서 월 소득 1,000만 VND를 초과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카지노에 입장을 허용하고, 100만 VND의 입장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골프장

일본은 해당 골프장 소재지의 도도부현에서 골프장 이용에 대하여 골프장 이용세를 부과하고 있다. 골프장 이용세의 표준 과세액은 1인당 1일에 800¥이나, 각 도도부현은 골프장의 위치, 품질 등을 고려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18세 미만인 자, 70세 이상인 자,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학교교육활동 참가자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은 주별로 골프장 등 오락 및 스포츠시설에 대하여 입장 및 유흥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골프장을 포함한 오락시설 입장료에 대하여 5%의 세율로 과세한다. 그러나 이는 각종 오락 및 스포츠시설에 대하여 넓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 시설에 국한하여 과세하는 것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제5장

교통·에너지·환경세

제1절 개요

1. 개념 및 의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로서,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부터 운용 중이다. 최초에 「교통세법」 제정 당시에는 10년간(~2003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계획되었으나, 이후 연장이 계속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²⁹⁹⁾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현행법 기준으로 2027년 말까지 운용될 예정이다.

2. 기능 및 특징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및 경유라는 특정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재화 및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 성격의 부가가치세와 구별된다. 또한, 주로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기타 연료 및 석탄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구별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육상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 에너지·자원, 환경 보전·개선 등의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이다. 처음에는 세입 전액이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되었으나, 2001년부터는 지방양여금 재원으로도 세입이 배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방양여금 등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³⁰⁰⁾로 통합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007년부터는 환경개선특별회계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등에 세입이 배분되기 시작했다. 2022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에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의 7%가 배분되고 있다.

299) 2009년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휘발유·경유에 대한 과세가 2010년부터 개별소비세를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이 계속하여 연기되고 있음

300)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칭이 변경됨. ('05~'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18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9~'23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배분 현황 |

(단위 : %)

구분	1994~ 2000년	2001~ 2006년	2007~ 2013년	2014~ 2019년	2020~ 2021년	2022년~
교통시설특별회계	100	86	80	80	73	68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등	-	14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¹⁾	-	-	2	2	2	2
환경개선특별회계	-	-	15	15	25	2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	3	-	-	-
일반회계	-	-	-	3	-	-
기후대응기금	-	-	-	-	-	7

주 : 1) 2023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

자료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8조,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최근 현황

2024년 교통·에너지·환경세 규모

2024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1.4조원으로, 2023년 10.8조원 대비 0.5조원(5.0%) 증가하였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하여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던 탄력세율이 2024년 7월 이후 일부 환원되면서 4분기부터 수납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³⁰¹⁾

| 2024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 |

(단위 : 억원, %)

	2023년 (A)	2024년 (B)	증감	
			증감액(C=B-A)	증가율(C/A)
교통·에너지·환경세	108,436	113,891	5,455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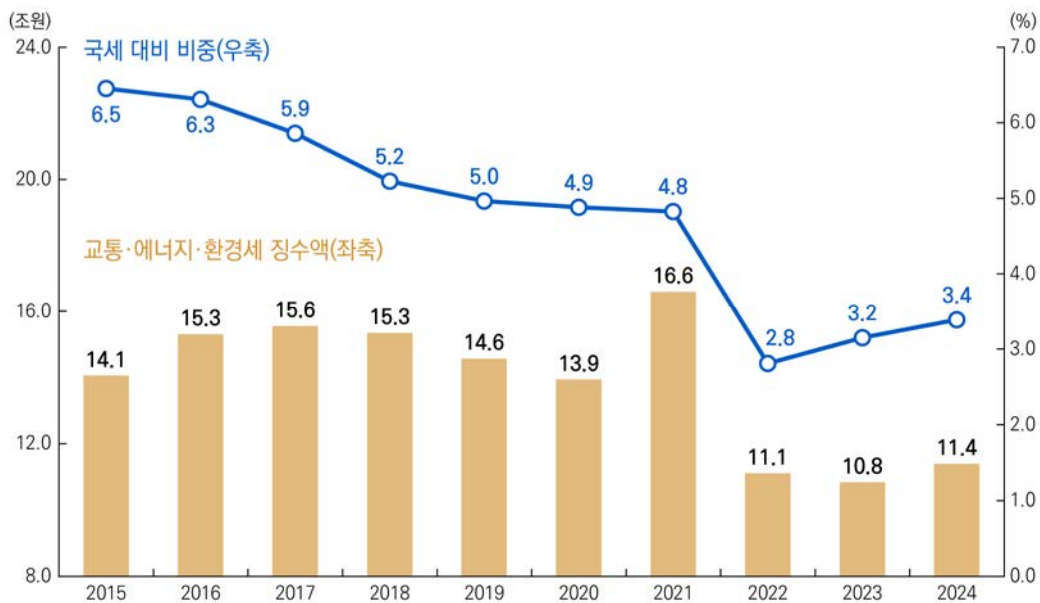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01)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하여 2023년 1월~2024년 6월 기간 동안 휘발유 396.7원/ℓ, 경유 238.0원/ℓ의 탄력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 7~10월에는 휘발유 423.0원/ℓ, 경유 263.0원/ℓ, 2024년 11월 이후부터는 휘발유 450원/ℓ, 경유 289원/ℓ으로 세율이 환원됨(「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연도별 교통·에너지·환경세 추이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유류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3.9조원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전년도 납부유예분 및 경기회복에 따른 유류 수요 증가 등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16.6조원이 징수되었으나, 2022년부터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하여 탄력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는 2022년 11.1조원, 2023년 10.8조원으로 감소하였다. 2024년 7월부터는 유류세 인하폭이 일부 환원됨에 따라 2024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4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이 총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5%에서 2021년 4.8%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유류세 인하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준 2022년 2.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2023년 3.2%, 2024년 3.4%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주요 개정연혁

1. 1994년 도입 후 8차례 일몰 연장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될 당시에는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계획이었으나,³⁰²⁾ 이후 교통시설 확충, 에너지·자원 및 환경 보전·개선사업,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기한이 2~4년 연장되어 왔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7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³⁰³⁾

2.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탄력세율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당시 교통세)는 도입 당시 종가세 방식이었으나 1996년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25년 3월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규정된 기본세율은 휘발유 475원/ℓ, 경유 340원/ℓ 이지만, 법률에서는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 보전,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과 해당 연료의 수급상 필요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말부터 국제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가격 변동폭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수준을 기본세율 대비 11% 인하(21.11.)에서 30% 인하(22.7.) 까지 확대되었다.³⁰⁴⁾ 2022년 8월 세법개정³⁰⁵⁾을 통해 탄력세율 조정의 범위를 기본세율±30%에서 한시적으로 2024년 말까지 기본세율±50%로 변경하였다. 다만, 2022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세로 전환되면서 유류세 인하 수준이 축소되고 있으며, 2024년 3월 기준 휘발유는 450원/ℓ, 경유는 289원/ℓ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302) 1993년 「교통세법」 제정 당시 법률의 유효기간을 10년 후인 2003년 12월 31일로 설정. 2007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됨

303) 2003년, 2006년, 2009년, 2013년, 2015년, 2018년, 2021년, 2024년 법률 부칙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이 연장됨

304) 탄력세율 수준: (2021년 10월) 휘발유 529원/ℓ 경유 375원/ℓ, (2022년 7월) 휘발유 332.5원/ℓ, 경유 238원/ℓ

30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3항 - [법률 제18974호 일부개정, 2022. 08. 12. 시행]

Ⅲ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 변동내역

(단위: 원/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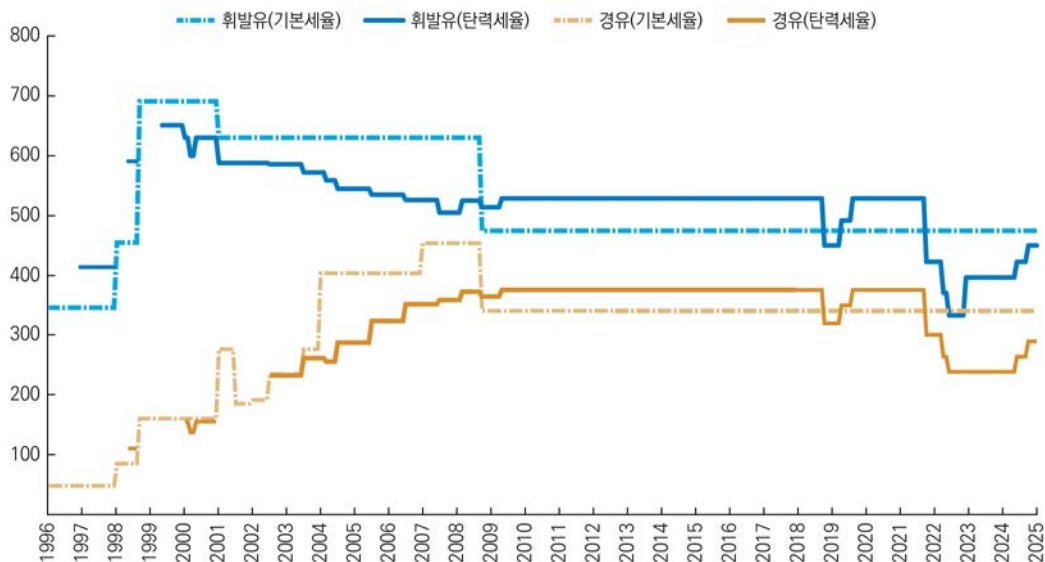
세율		'96.1	'96.12	'98.1	'98.5	'98.9	'99.5	'00.1	'00.3	'00.5	'01.1	'01.7
휘발유	기본	345	345	455	455	691	691	691	691	691	630	630
	탄력	-	414	-	591	-	651	630	600	630	588	588
경유	기본	48	48	85	85	160	160	160	160	160	276	185
	탄력	-	-	-	110	-	-	155	137	155	-	-
세율		'02.1	'02.7	'03.7	'04.1	'04.3	'04.7	'05.7	'06.7	'07.1	'07.7	'08.3
휘발유	기본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탄력	588	586	572	572	559	545	535	526	526	505	525
경유	기본	191	234	276	404	404	404	404	404	454	454	454
	탄력	-	232	261	261	255	287	323	351	351	358	372
세율		'08.10	'09.5	'18.11	'19.5	'19.9	'21.11	'22.5	'22.7	'23.1	'24.7	'24.11
휘발유	기본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탄력	514	529	450	492	529	423	370	332.5	396.7	423	450
경유	기본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탄력	364	375	319	349	375	300	263	238	238	263	289

주: 1. 종량세 도입(1996.1.1.) 이후 세율이 변경된 달을 기준으로 한 변동내역

2. 2004년 10월 ~ 2006년 6월 수도권 공급 초저황경유(황함량 30ppm 이하)에 대해 10원/ℓ 할인

Ⅲ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 변동추이

(단위: 원/ℓ)



자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휘발유 및 경유의 제세부담금과 소비자가격 구성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에는 다양한 제세부담금(세금 및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첫단계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시 관세(수입가의 3%(기본세율))가 부과되며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이 부과된다. 이후 정유사는 마진을 붙여 세전출고가를 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부가세(surtax)인 자동차세(주행분)와 교육세가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15% 과세된다. 이와 함께 휘발유와 경유에는 리터당 0.47원의 품질검사수수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마진 등을 포함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까지 합산하여 최종 소비자가격이 산출되는 구조이다.

2025년 1월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한 소비자가격 대비 제세부담금 비중은 휘발유 48.5%(1,709.3원 중 829.8원), 경유 37.9%(1,563.5원 중 592.6원) 수준이다. 현행 종량제 구조상 국제유가 수준이 낮을수록, 적용되는 탄력세율이 높을수록 유류에 대한 제세부담금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데, 2021년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유류세 인하로 탄력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제세부담금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2022년 하반기부터 원유가격이 비교적 안정화되고 유류세 인하조치가 일부 환원되면서 휘발유와 경유의 제세부담금 비중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 휘발유 및 경유의 제세부담금과 소비자가격 구성 ■

(단위: 원/ℓ)

	휘발유	경유
수입가 추정치 (A)	781.0	883.4
관세액 (B = A × 3%)	23.4	26.5
수입부과금 (C = 16.0원/ℓ)	16.0	16.0
정유사 마진 (D)	43.2	48.7
정유사 출고가격 (E = A+B+C+D)	863.6	974.6
교통·에너지·환경세 (F: 휘발유 450원/ℓ, 경유 289원/ℓ)	450.0	289.0
자동차세(주행분) (G = F × 26%)	117.0	75.1
교육세 (H = F × 15%)	67.5	43.4
품질검사수수료 (I = 0.47원/ℓ)	0.47	0.47
주유소 마진 (J)	55.3	38.8
부가가치세 (K = L × 1 / 11)	155.4	142.1
최종 소비자판매가 (L)	1,709.3	1,563.5

주: 1. 2025년 1월 가격 기준이며, 휘발유는 보통휘발유, 경유는 자동차용 경유 기준

2. 최종 소비자판매가는 한국석유공사 Opinet 상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

3. 정유사 마진은 정유사의 출고가격(세전)의 5%로 가정한 추정치

4. 수입가 추정치는 정유사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역산한 값

5. 소비자판매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판매가의 1/11으로 계산

6. 주유소 마진은 최종 소비자판매가와 정유사 출고가격 등을 고려한 추정치

자료: 한국석유공사 오픈넷(Opinet)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휘발유·경유의 소비자판매가 대비 제세부담금 비중 추이 ■



자료 : 한국석유공사 Opinet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1. 과세대상·세율·납세의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경유이며 해당 유종과 유사한 대체유류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제조장·보세구역 등에서 반출하는 수량 또는 수입업자의 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의 각 호는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기본세율을 475원/ℓ,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기본세율을 340원/ℓ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시행령에 따른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각각 450원/ℓ 및 289원/ℓ의 탄력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세율은 2025년 4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text{교통·에너지·환경세액} = \text{휘발유·경유의 반출량 또는 수입량} \times \text{세율}$$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휘발유, 경유)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비과세 및 면세

면세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면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면세는 크게 수출 및 군납면세(§13), 외교관면세(§14), 조건부면세(§15), 무조건면세(§16)로 구분되는데, 그 중 조건부면세는 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를 위해 자선·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재수출할 물건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등에 적용되지만 과세물품이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다시 과세가 이루어진다. 반면 무조건면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

증하는 것,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 물건이 재수입된 경우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조건없이 면세를 적용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는 농·임·어업 및 연안선박용 석유류 등에 대한 면세가 적용되고 있다.

Ⅱ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세 대상 Ⅱ

구분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수출 및 군납면세(§ 13)	수출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물품
	외교관면세(§ 14)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사용하는 물품
	조건부면세(§ 15)	조건부 면세는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상의 승인을 얻은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하되,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거나, 반입 후에 용도 변경 등이 이뤄진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
	무조건면세(§ 16)	무조건 면세는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도서지방발전용 석유류 (§ 106① 1)	도서지방 자가발전 사용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임·어업용 석유류 (§ 106의2①1)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한 간접세 면제
	연안여객선용 석유류 (§ 106의2①2)	연안운항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연안화물선용 경유 (§ 111의5)	유종전환(중유→경유) 선박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감면 신고 및 실적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실적을 살펴보면, 수출에 의한 감면이 14.0조원으로 가장 높으며, 이 외에 외국항행선박용 석유류 감면 5,487억원, 농·임·어업용 석유류 감면 4,692억원, 군납 관련 감면 1,561억원 순으로 감면실적이 나타나고 있다.

Ⅲ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현황

(단위: 억원)

감면항목	법조문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교통법 § 13①1	209,619	186,115	175,977	146,029	139,760
외국항행선박용 석유류	교통법 § 15①3	4,647	6,023	7,176	6,350	5,487
농·임·어업용 석유류	조특법 § 106의2①1	7,036	8,072	7,421	5,019	4,692
군납	조특법 § 111①1 교통법 § 13①2	3,081	2,098	1,952	1,493	1,561
연안여객선용 석유류	조특법 § 106의2①2	275	287	308	224	192
연안화물선용 경유	조특법 § 111의5	(신설)		17	26	28
도서지방발전용 석유류	조특법 § 106①1, § 111①2	13	13	13	8	9

주: 1) 수출, 외국항행 선박용 석유류, 군납은 신고 기준, 나머지는 실적 기준

2) 법조문 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조특법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교통법으로 약칭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및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신고현황

2023년 거래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11.1조원으로, 유종별로는 휘발유 5.6조원, 경유 5.5조원 수준이다. 유류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는 2021년 6.8조원에서 2022~2023년 5조원 대로 감소하였으며, 경유는 2021년 8.7조원에서 2022년 6.1조원, 2023년 5.5조원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Ⅲ 교통·에너지·환경세 품목별 신고실적

(단위: 조원)

연도	휘발유	경유	합계
2019	6.3	8.7	15.1
2020	6.7	8.9	15.6
2021	6.8	8.7	15.5
2022	5.1	6.1	11.2
2023	5.6	5.5	11.1

주: 해당 수치는 해당연도 중 거래분의 '납부할세액'을 기준으로 작성함에 따라 징수액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4절 신고와 납부

제조장으로부터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세액을 신고서 제출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및 수입하는 자 등은 관할 세관장에 대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존재한다.

한편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로 반출, 제조공정 및 검사 등을 위한 이동 등 단순한 보관장소의 이동 등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지 않는데, 이를 미납세 반출이라 한다.

제5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 연장

정부는 특별회계 사업 등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논의 결과 정부안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유효기간은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되었다.³⁰⁶⁾

탄력세율 인하 연장

정부는 유가 안정화 등을 목표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 정세의 영향 등으로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인하 조치는 2~6개월 단위로 2025년 4월까지 총 14차례 연장이 되었다. 다만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된 탄력세율은 종전(2021년 11월 인하 전) 대비 △37% 수준까지 인하되었으나, 이후 점차 인하폭을 환원하여 2025년 3월 기준, 종전의 휘발유 △15%, 경유 △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³⁰⁷⁾

306)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2조

30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대통령령 제35356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6절 국제동향

OECD 회원국의 도로교통 부문 휘발유·경유 소비세 부담 현황

2023년 기준 도로교통 부문의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소비세 부담 수준은 휘발유가 0.46€/ℓ, 경유는 0.36€/ℓ으로, 휘발유에 대한 부담이 경유와 비교하여 평균 1.28배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경유의 경우 산업·물류·운송과의 연계성이 높아 대부분의 국가가 경유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가별로 유종 간 세부담 차이를 살펴보면, 뉴질랜드가 16.96배로 가장 큰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1.55배로 OECD 평균 1.28배나 G7 평균 1.17배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한편 미국, 스위스, 멕시코는 도로교통 부문에서 휘발유에 대해 경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세를 부담시키고 있다.

OECD 회원국의 도로교통 부문 휘발유·경유 소비세 부담: 2023년

(단위: €/ℓ)

국가	소비세 부담		상대비 (A/B)	국가	소비세 부담		상대비 (A/B)
	휘발유(A)	경유(B)			휘발유(A)	경유(B)	
뉴질랜드	0.45	0.03	16.96	이탈리아	0.72	0.60	1.21
콜롬비아	0.12	0.04	3.10	프랑스	0.59	0.49	1.20
스웨덴	0.30	0.13	2.21	아일랜드	0.37	0.31	1.19
칠레	0.41	0.20	2.04	스페인	0.47	0.40	1.18
코스타리카	0.46	0.28	1.63	리투아니아	0.46	0.39	1.18
그리스	0.70	0.43	1.61	호주	0.29	0.25	1.16
한국	0.39	0.25	1.55	라트비아	0.50	0.44	1.16
노르웨이	0.41	0.27	1.52	오스트리아	0.48	0.42	1.15
일본	0.36	0.24	1.49	아이슬란드	0.57	0.51	1.10
핀란드	0.54	0.37	1.47	이스라엘	0.71	0.65	1.10
덴마크	0.59	0.40	1.47	슬로베니아	0.40	0.37	1.10
네덜란드	0.65	0.45	1.46	벨기에	0.60	0.56	1.06
체코	0.53	0.37	1.44	폴란드	0.39	0.37	1.04
에스토니아	0.56	0.39	1.43	헝가리	0.32	0.32	1.02
포르투갈	0.56	0.40	1.38	스위스	0.79	0.82	0.96
캐나다	0.13	0.10	1.34	영국	0.61	0.64	0.94
룩셈부르크	0.45	0.34	1.32	미국	0.11	0.14	0.81
슬로바키아	0.51	0.39	1.32	멕시코	0.28	0.36	0.78
독일	0.65	0.50	1.31	[OECD 평균]	0.46	0.36	1.28
튀르키예	0.15	0.12	1.22	[G7 평균]	0.45	0.39	1.17

주: 1. 2023년 불변가격 기준이며, 탄소배출과 직접적으로 연동해 과세하는 탄소세는 제외함

2. 제8차 에너지열량 환산기준(휘발유1ℓ = 32.4MJ, 경유 1ℓ=37.8MJ)을 활용해 부피단위로 환산한 수치

자료: OECD(「Pri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2024」)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유가 상승에 대응한 유류비 부담 감면조치 시행

우리나라 이외에도 주요국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다양한 세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연료세 인하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전략비축유(SPR)을 방출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2022년 주 정부에 따라 연료세를 면세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2022년 8월까지 유류세 인하(Tankrabatt)³⁰⁸⁾를 통해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였으나, 이후 직접적인 세금 인하조치를 종료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Energiepreispauschale), 교통요금 인하 등 특정 집단 및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였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2022년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remise carburant)³⁰⁹⁾를 통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료 보조금(indemnité carburant) 등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처럼 주요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통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이후 재정적 부담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별 선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다.

탄소가격제 관련 국제동향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기후변화의 위험이 가시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공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UN 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이 채택된 후 교토의정서(1997)를 거쳐, 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2°C 이하로 유지하되, 가급적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장기목표 하에 모든 당사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별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목표와 제도를 마련하는 가운데, 탄소 배출에 금전적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Instrument)”가 여러 국가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다.

탄소가격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에게 환경·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원리(수요-공급, 가격)를 통해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탄소가격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와 탄소세(Carbon Tax)가 존재한다. 탄소세는 정부가 탄소의 배출가격(세율)을 설정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2024년 4월 기준 전 세계 31개국에서 탄소세를 운용 중이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대상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치를 결정하면 거래당사자별 거래를 통해 탄소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 세계 43개국(유럽 33개국, 아시아 5개국 등)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 연합은 EU ETS를 2005년 설립하여 운용 중이며 2027년부터는 난방 및 운송 연료까지 확대한 ETS2를 시행 예정이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두 가지 제도를 혼용하여 운영하는 국가는 2024년 기준 22개국이다.

308) (2022. 6. 1 ~ 8. 31.) 휘발유 65.45 ¢/ℓ → 35.9 ¢/ℓ, 경유 47.04 ¢/ℓ → 33 ¢/ℓ

309) 할인금액, (2022. 4. 1 ~ 8. 30.) 18 ¢/ℓ → (9. 1 ~ 11. 15.) 30 ¢/ℓ → (11. 16 ~ 12. 31.) 10 ¢/ℓ

탄소가격제 실시 국가 현황

대륙	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유럽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미국 ¹⁾	멕시코 ²⁾ , 캐나다 ^{1), 2)}
아시아 오세아니아	싱가포르, 대만	호주, 중국 ¹⁾ ,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한국, 뉴질랜드	일본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	-

주: 1. 2024년 4월 기준

1)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은 지역별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더라도 1개국으로 집계함

2) 멕시코, 캐나다 등은 지역별 탄소세 실시 현황이 상이하나 1개국으로 집계함

자료: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문별로 탄소세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시멘트·철강·화학·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부문의 탄소 배출에 대해 24개국이 과세하고 있다. 이외에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한 발전/난방에 대하여 17개국이, 화석연료 채굴·추출에 대해서는 21개국이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도로·항공 부문 모두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5개국이며 일부 과세하는 국가는 15개 국가이다. 추가적으로 주거·상업·공공부문 건물의 냉난방 설비 등에는 20개국이, 폐기물 처리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5개국에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에너지 용도별 탄소세 부과 현황

국가	산업	발전	채굴·추출	도로·항공	건물	폐기물	국가	산업	발전	채굴·추출	도로·항공	건물	폐기물
핀란드	○	○	○	△	○	×	남아프리카	○	○	○	△	○	○
폴란드	×	×	×	△	○	×	칠레	○	○	○	×	×	×
노르웨이	×	×	○	○	○	○	콜롬비아	○	○	○	○	○	×
스웨덴	○	○	○	△	○	×	우크라이나	○	○	○	×	○	×
덴마크	○	○	○	△	○	×	리히텐슈타인	○	×	○	△	○	×
라트비아	○	×	○	×	×	×	싱가포르	○	○	×	×	×	○
슬로베니아	×	×	×	△	○	×	캐나다	○	×	○	○	○	×
에스토니아	○	○	×	×	×	×	네덜란드	○	○	○	×	×	○
스위스	×	×	×	×	○	×	아르헨티나	○	×	○	○	×	×
아이슬란드	○	○	○	△	○	×	스페인	×	×	×	×	×	×
아일랜드	○	○	○	△	○	×	룩셈부르크	○	×	○	△	○	×
일본	○	○	○	△	○	×	우루과이	○	×	○	△	×	×
영국	×	○	×	×	×	×	헝가리	×	○	×	△	×	×

국가	산업	발전	채굴 추출	도로 · 항공	건물	폐기물	국가	산업	발전	채굴 추출	도로 · 항공	건물	폐기물
프랑스	○	×	×	△	○	×	알바니아	○	×	×	×	×	×
멕시코	○	○	○	○	○	×	대만	○	×	○	×	○	○
포르투갈	○	○	○	△	○	×							

주 : 1. 2024년 4월 기준

자료 :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친환경자동차 관련 세제 현황

우리나라는 차량 구매 및 등록단계에서 차량가격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승용차 5%)³¹⁰⁾ 및 부가가치세(10%)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이후 세액감면 단계에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차 중 소정 환경기준에 부합되는 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전기·수소 시내·마을버스) 또는 개별소비세 면제(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가 적용된다. 보유 단계에서는 내연기관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 소유분이 과세되지만 전기·수소차의 경우 연간 10만원을 부담한다. 차량 운행 단계에서는 휘발유·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과세되고 있다.

■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제 현황 ■

단계	세목		과세표준	세율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구매	국세	개별소비세	공장도가	5% ¹⁾	좌동	좌동	좌동
			(감면)	해당 없음	최대 70만원	최대 300만원	최대 400만원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30%	좌동	좌동	좌동
등록	지방세	취득세	취득가액	2% ~ 7%	좌동	좌동	좌동
			(감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²⁾	최대 140만원	최대 140만원
보유	국세	자동차세 (소유분)	배기량 또는 차량대수	승용자동차 18원 ~ 200/cc	좌동	대당 10만원	대당 10만원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	30%(비영업용)	좌동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운행	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리터	450원/ℓ(휘발유), 289원/ℓ(경유) ³⁾	좌동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개별소비세	kg	212원/kg ³⁾ (LPG 부탄)	좌동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개별소비세액	15%	좌동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가치세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액 + 주행세액 + 교육세액	10%	좌동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지방세	자동차세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액	26%(비영업용)	좌동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 1) 2025. 1. 3. ~ 6. 30.까지 3.5% 적용

2) 종전에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적용됐으나 2024. 12. 31. 일몰됨

3) 2025. 3. 적용되고 있는 탄력세율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10)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5% 한시 인하(2025. 1. 3. ~ 6. 30.) 시행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절 개요

1. 개념 및 의의

상속세(相續稅)와 증여세(贈與稅)는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서, 무상이전된 자산에 대해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에 해당한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자녀 등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고,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제는 19세기 말 주요국³¹¹⁾을 시작으로 근대적 조세체계 형태로 도입되기 시작한 이후 각국의 사회·경제상황에 따라 변천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이 각각 제정·공포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상속세제가 처음³¹²⁾으로 도입되었으며, 1952년에는 「증여세법」을 폐지하고 「상속세법」으로 통합되어 1996년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후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고령화, 금융·부동산 실명제 시행 등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1996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상속세는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³¹³⁾ 한편, 증여세는 이러한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병행하여

311) 주요국의 근대적 조세체계 형태의 상속세제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음

국가명	도입연도
독일(프로이센)	1873년
영국	1894년
프랑스	1901년
일본	1905년
미국	1916년

주 : 1. 독일: 상속에 대한 과세는 프랑크왕국 시대부터 존재

2. 영국: 1694년 동산에 대한 상속세 최초로 도입

3. 프랑스: 루이 16세 시대인 1790년 사망을 원인으로 한 모든 동산 및 부동산 이전 과세

4. 미국: 1862년 남북전쟁 전비조달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후 창설과 폐지를 거친 후, 1916년 현재의 유산세 형태 도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 2017.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12)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상속세령의 제정·공포로 상속세제가 최초로 도입 시행되었으며, 이는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도 계속하여 시행되었음

과세되는 세목이다. 만약 상속세는 없고 증여세만 존재한다면 사망 이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부의 세습이 가능하게 되어 상속세제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능 및 특징

가. 기능

소득세의 보완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 이전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소득과세의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해 과세되지 못한 소득에 대해 보완적으로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즉 소득세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모든 소득이 과세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생전에 축적된 재산 중 일부는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³¹⁴⁾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생전에 과세되지 못한 소득이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부의 집중 억제(부의 재분배)

상속 및 증여세제는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단계별 누진과세를 함으로써 세 부담 없는 부의 세습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부의 세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빈부격차의 확대와 더불어 일부 계층의 부의 집중 현상이 이루어질 것이다.³¹⁵⁾ 즉 부(富)는 증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세대가 거듭될수록 자산은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그 결과 자산은 자유로운 거래의 수단이기보다는 개인적인 부의 축적수단으로만 이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한 부의 집중은 빈부격차에 따른 불공평을 초래하여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근로 제공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313)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8, p.688. 참조

314) 백덕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 기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pp. 28~30. 참조

315) 박훈·채현석·허원, 「상속·증여세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23, p.81.

상속인이 재산을 받은 만큼 상속세제를 과세함으로써 그 격차를 축소하고 부의 재분배 역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나. 특징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식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 방식은 상속 및 증여 시점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후 증가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또는 추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 그리고 상속 등을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방식은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부과하는 유산세(遺産稅) 방식과,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 방식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상속 및 증여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로 과세하며,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지만, 증여세는 증여재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증여세는 수증인별로 증여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상속세제의 과세방식: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비교

상속세제의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¹⁾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별로 실제로 상속 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유산세 방식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 및 미국 등의 국가에서 취한 방식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 개인의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 유산에 대한 과세를 통해 누적된 조세관계를 정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산세 방식의 개념도



유산취득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은 독일 및 프랑스 등의 국가가 취한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취득하는 상속인 등의 취득재산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는 상속세를 자산이득세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상속이라는 형태로 자산이 이전되어 상속인의 자산증가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소득세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의 개념도



주: 1) 일본의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에 유산세 방식을 가미한 과세유형인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상속세 과세방식별 비교]

구분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응능부담	• 낮음 - 상속인의 담세력과 무관	• 높음 - 상속인의 담세력에 상응
부의 집중억제	• 낮음 - 유산분할을 촉진할 유인이 없음	• 높음 - 상속인 수 비례에 따른 세부담 감소로 유산분할 촉진
세수와의 관계	• 상대적으로 세수증대증가효과 높음 - 유산분할과 무관한 총유산 전체 세액	• 상대적으로 세수증대효과 낮음 - 유산분할이 많을수록 세액 감소
세무행정 부담	• 상대적으로 낮음 - 피상속인 유산만 조사·결정	• 상대적으로 높음 - 모든 상속인과 그 취득자산을 조사·결정

* OECD 국가 가운데 상속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만 유산세 방식 채택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개편안

-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 발표

1. 논의 경과

- 2020년 세법개정 시 국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편 관련 보고’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후, 정부는 상속세제 전면 개편과 관련된 연구 및 논의 진행
 - 2021년 11월 정부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제출하고, 조세소위원회 안건 심사 전 보고
 - 2022년 10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TF)출범
-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개편안 발표

2.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과세체계 개편안 내용

■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과세체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 ■

항목	개편안 내용
배우자공제	• (현행) 5억원(최저)~30억원(법정상속분) → (개편안) 실제상속분 ~30억원(법정상속분) *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분에 대해 실제 상속분 인정
기타 인적공제	• 직계존비속 (개편안) 5억원 • 직계존비속 이외: (개편안) 2억원 * 미성년공제, 장애인공제, 연로자공제(직계비속은 연로자공제 제외)는 현행과 동일
인적공제 최저한	• (신설)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합계액 10억원까지 추가공제
조세회피 대응	• 위장분할 부과제척기간 연장: (현행) 10년 → (개편안) 15년 * 위장분할: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게 분할 •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우회상속으로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 * 우회상속: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

자료: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보도자료, 2025.3.12

OECD 38개 국가 가운데 24개 국가는 상속세와 증여세로 과세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은 유산세 방식을 그 이외의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상속세를 폐지한 7개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할 경우 자본이득세 또는 추가 소득세로 과세하며, 오스트리아·체코·이스라엘 등 7개국은 상속 및 증여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OECD 주요국의 상속 관련 과세 체계

구 분		국 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국가	유산취득세 방식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 20개국
	유산세 방식	•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자본이득세 부과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국
추가 소득세		•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3개국
비과세		•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멕시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7개국

자료: IBFD - Tax Research Platform 국가별 자료 참조

세부담 수준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률은 2014년 0.3%에서 2019년 0.4%, 2023년 0.7%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이는 2019년 이후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치 상승과 고액자산가의 상속 등에 기인한다.

2023년 기준 명목GDP 대비 세부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0.7%로 OECD 평균 0.1%에 비해 0.6%p 높고, G7 국가 평균 0.3%에 비해서도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G7 국가 중 프랑스가 0.8%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명목GDP 대비 높은 세부담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외 국가는 0.5% 이하이다.

명목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비교

(단위: %, %p)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0.3	0.4	0.5	0.7	0.7	0.7	0.4
OECD 평균	0.1	0.1	0.1	0.1	0.1	0.1	0.0
G7	G7 평균	0.2	0.2	0.3	0.3	0.3	0.1
	캐나다	0.0	0.0	0.0	0.0	0.0	0.0
	프랑스	0.5	0.6	0.7	0.8	0.7	0.3
	독일	0.2	0.2	0.3	0.3	0.2	0.0
	이탈리아	0.0	0.0	0.0	0.0	0.1	0.0
	일본	0.4	0.4	0.4	0.5	0.5	0.1
	영국	0.2	0.2	0.2	0.3	0.3	0.1
	미국	0.1	0.1	0.1	0.1	0.2	0.0

주: 2023년 OECD 평균은 호주와 그리스를 제외한 평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은 2014년 1.3%에서 2019년 1.6%, 2023년 2.3%로 상승하였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은 2.3%로 OECD 평균 0.4%에 비해서는 1.9%p 높고, G7 국가 평균 0.8%에 비해서도 1.5%p 높다. G7 국가 중 프랑스가 1.7%로 총조세 대비 세부담 수준이 가장 높으며, 그 이외 국가는 0.1 ~ 0.8% 수준이다.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비교

(단위: %, %p)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1.3	1.6	1.9	2.4	2.1	2.3	1.0
OECD 평균	0.3	0.4	0.4	0.4	0.4	0.4	0.1
G7	G7 평균	0.6	0.7	0.7	0.8	0.8	0.2
	캐나다	0.0	0.0	0.0	0.1	0.1	0.1
	프랑스	1.1	1.4	1.5	1.7	1.6	0.6
	독일	0.5	0.5	0.7	0.7	0.6	0.1
	이탈리아	0.1	0.1	0.1	0.1	0.1	0.0
	일본	1.2	1.3	1.3	1.5	1.5	-
	영국	0.7	0.7	0.8	0.8	0.8	0.1
	미국	0.5	0.4	0.5	0.5	0.6	0.1

주: 1. 2023년 OECD 평균은 호주, 그리스 및 일본을 제외한 평균이며, G7 평균은 일본을 제외한 평균임

2. 일본은 2022년과 2014년 차이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구조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구조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과세표준 1억원 이하~30억원 초과, 10~50%)이다. 이러한 초과누진세율구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12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과세표준 1만달러~100만달러, 18~40%)이며, 독일은 직계가족 기준(과세1그룹) 7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과세표준 7만5천유로~2,600만유로, 7~30%)³¹⁶⁾로 되어 있다. 프랑스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7단계 초과누진세율(과세표준 8,072유로~1,805,677유로, 5~45%)이며, 형제자매는 2단계 초과누진세율(과세표준 24,430유로 이하 35%, 초과 45%), 4촌 이내와 5촌 이상 그룹은 55%/6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동일한 8단계 초과누진세율(10~55%)을 적용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은 달리 규정되어 있다. 다만, 영국의 경우에는 40%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

국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한국	•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				
	과세표준		세율		
	~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		50%		
	※ 기초공제액 : 2억원				
독일	• 7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				
	과세표준	세율			
		제1그룹	제2그룹	제3그룹	
	~ 75,000유로 이하		7%	15%	30%
	75,000유로 초과 ~ 300,000유로 이하		11%	20%	
	300,000유로 초과 ~ 600,000유로 이하		15%	25%	
	600,000유로 초과 ~ 6,000,000유로 이하		19%	30%	
	6,000,000유로 초과 ~ 13,000,000유로 이하		23%	35%	50%
	13,000,000유로 초과 ~ 26,000,000유로 이하		27%	40%	
	26,000,000유로 초과 ~		30%	43%	
※ 기초공제액 없음					

316) 과세2그룹(형제·자매, 삼촌·이모, 조카, 양부모, 이혼한 배우자)과 과세3그룹(기타가족)은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세율은 과세2그룹 15~43%, 과세3그룹은 30~50%의 세율을 달리 적용함

국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프랑스	• 7단계(직계존비속 기준) 초과누진세율 구조			
	직계존비속		형제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 8,072유로 이하	5%	~ 24,430유로 이하	35%
	8,072유로 초과 ~ 12,109유로 이하	10%	24,431유로 초과 ~	45%
	12,110유로 초과 ~ 15,932유로 이하	15%	4촌간	
	15,933유로 초과 ~ 552,324유로 이하	20%	상속 및 증여 과세표준액	55%
	552,325유로 초과 ~ 902,838유로 이하	30%	기타	
	902,839유로 초과 ~ 1,805,677유로 이하	40%	상속 및 증여 과세표준액	60%
	1,805,677유로 초과	45%		
※ 기초공제액 없음				
미국	• 12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			
	과세표준		세율	
	~ 1만달러 이하		18%	
	1만달러 초과 ~ 2만달러 이하		20%	
	2만달러 초과 ~ 4만달러 이하		22%	
	4만달러 초과 ~ 6만달러 이하		24%	
	6만달러 초과 ~ 8만달러 이하		26%	
	8만달러 초과 ~ 10만달러 이하		28%	
	10만달러 초과 ~ 15만달러 이하		30%	
	15만달러 초과 ~ 25만달러 이하		32%	
	25만달러 초과 ~ 50만달러 이하		34%	
	50만달러 초과 ~ 75만달러 이하		37%	
	75만달러 초과 ~ 100만달러 이하		39%	
	100만달러 초과 ~		40%	
※ 기초공제액 1,399만달러				
일본	• 8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엔 이하	10%	200만엔 이하	10%
	1천만엔 초과 ~ 3천만엔 이하	15%	200만엔 초과 ~ 300만엔 이하	15%
	3천만엔 초과 ~ 5천만엔 이하	20%	300만엔 초과 ~ 400만엔 이하	20%
	5천만엔 초과 ~ 1억엔 이하	30%	400만엔 초과 ~ 600만엔 이하	30%
	1억엔 초과 ~ 2억엔 이하	40%	600만엔 초과 ~ 1,000만엔 이하	40%
	2억엔 초과 ~ 3억엔 이하	45%	1,000만엔 초과 ~ 1,500만엔 이하	45%
	3억엔 초과 ~ 6억엔 이하	50%	1,500만엔 초과 ~ 3,000만엔 이하	50%
6억엔 초과 ~	55%	3,000만엔 초과 ~	55%	
※ 기초공제액 3,000만엔+(600만엔×법정상속인 수)				
영국	• 40% 단일세율 ※ 기초공제액 325,000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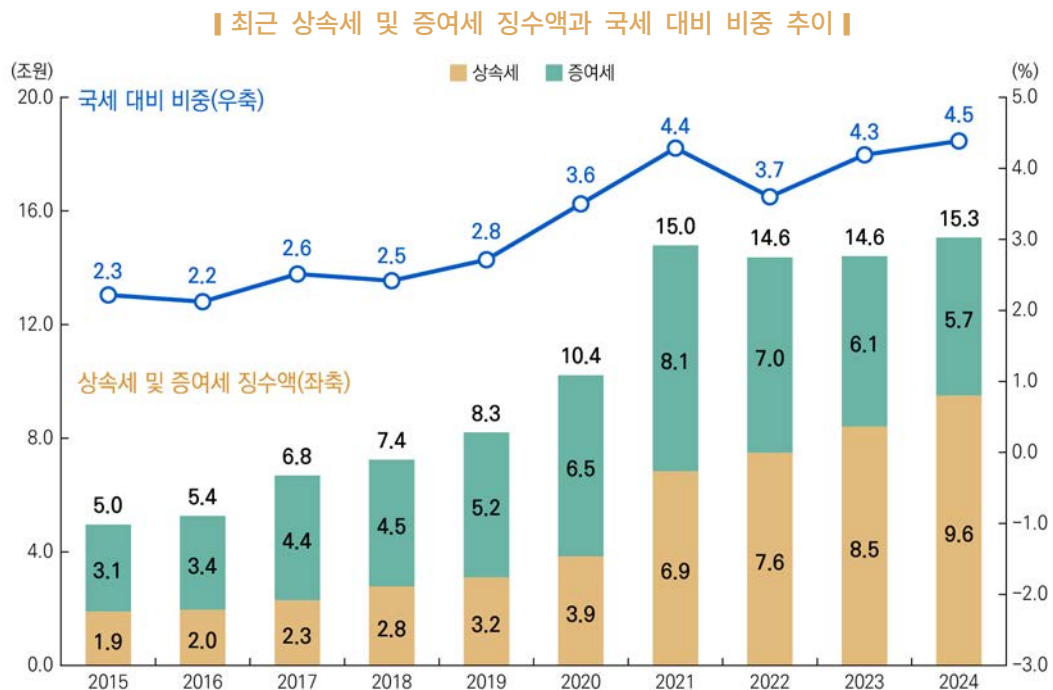
자료: IBFD - Tax Research Platform 국가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최근 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실적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5.3조원으로 전년(14.6조원)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2023년 국세수입(336.5조원) 대비로는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5.0조원에서 2021년 15.0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연간 15조원 내외의 실적을 보이며, 2024년 15.3조원이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징수실적은 2015년 1.9조원에서 2024년 9.6조원으로, 증여세 징수실적은 같은 기간 3.1조원에서 5.7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상속세 징수실적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상속세 과세유형별 결정 현황 및 자산종류별 상속재산 구성비중

최근 5년간 과세유형별 피상속인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과세미달 상속자로 전체 약 9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피상속인 비율은 약 4.0%에 그치고 있다. 2023년은 전체 292,545명 가운데 과세미달 피상속인이 272,601명으로 93.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과세대상 피상속인은 19,944명으로 평균 과세비율 보다 2.8%p 상승한 6.8%를 차지하고 있다.

과세유형별 피상속인 수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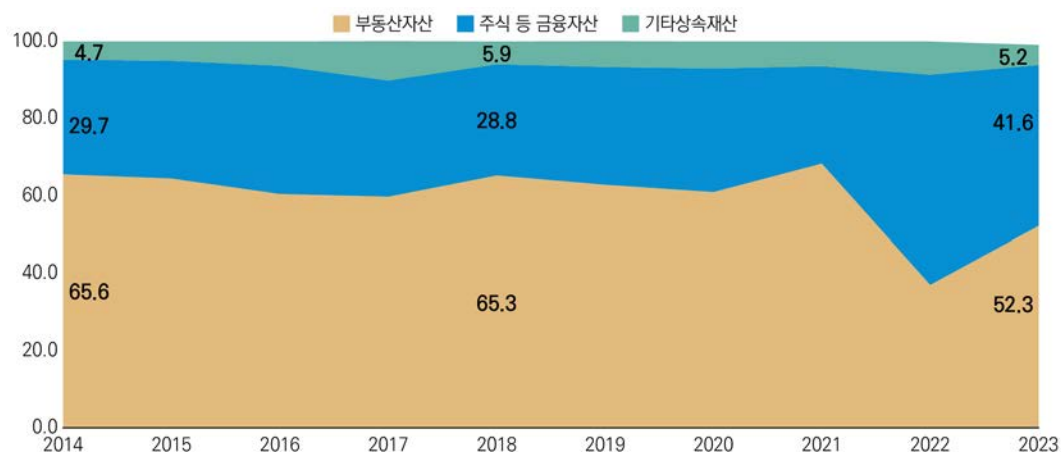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345,290 (100.0)	351,648 (100.0)	344,184 (100.0)	348,159 (100.0)	292,545 (100.0)
과세	8,357 (2.4)	10,181 (2.9)	12,749 (3.7)	15,760 (4.5)	19,944 (6.8)
과세미달	336,933 (97.6)	341,467 (97.1)	331,435 (96.3)	332,399 (95.5)	272,601 (93.2)

주: 과세유형별 피상속인수 현황은 결정기준이며, ()안의 값은 전체 피상속인 대비 비중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유가증권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2023년 기준 재산 종류별 상속재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부동산이 5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 등 금융자산 41.6%, 기타 5.2% 순이다.

■ 자산종류별 상속재산 구성비중 ■

(단위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증여세 과세유형별 결정 현황 및 자산종류별 증여재산 구성비중

최근 5년간 증여세 과세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과세와 과세미달 건수는 대략 4:6의 비율을 보인다. 2023년 전체 증여세 결정건수 530,004건 가운데 과세건수는 208,508건으로 39.3%를 차지하며, 과세미달 건수는 276,066건으로 59.5%를 차지하고 있다.

■ 과세유형별 증여세 결정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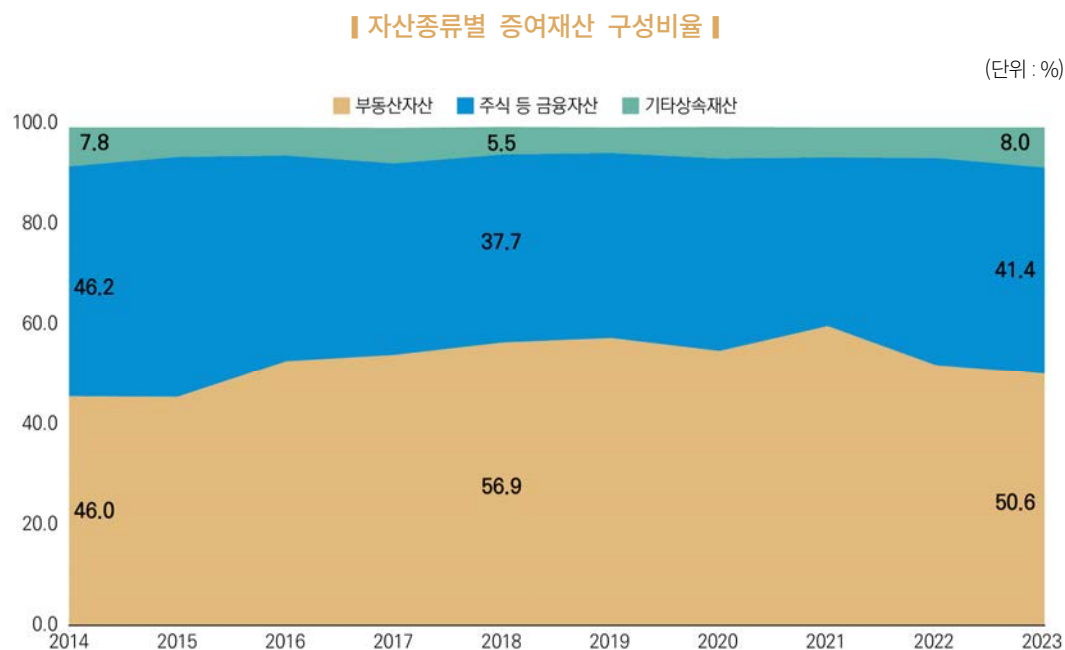
(단위: 건, %)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400,299 (100.0)	461,800 (100.0)	800,109 (100.0)	711,875 (100.0)	530,004 (100.0)
과세	169,911 (42.4)	183,499 (39.7)	275,592 (34.4)	252,412 (35.5)	208,508 (39.3)
과세미달	230,388 (57.6)	278,301 (60.3)	524,517 (65.6)	459,463 (64.5)	276,066 (59.5)

주: ()안의 값은 전체 증여세 결정 대비 비중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 기준 증여재산 종류별 증여재산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부동산이 5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이 41.4%, 기타 8.0%의 순으로 나타난다. 자산종류별 증여재산의 구성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꾸준히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주식 등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주요 개정연혁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면 개편 이후 현재까지 큰 체계적 변화는 없으며 부분으로 개정되었다.

1. 상속세

2000년 이후 상속세는 가업상속공제 중심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이외에 2015년 인적 공제 인상, 2017년 신고세액공제율 인하·공익법인제도 합리화 등의 부분 적으로 개정이 되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는 2007년 이후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공제 확대 관련 개정이 거의 매년 이루어졌다. 주요 항목별로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7년에는 기존 1억원에 불과하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30억원(15년 이상 경영 중소기업)으로 대폭 인상하고, 그 다음 해인 2008년에는 가업영위기간별로 공제한도를 60~100억원으로 인상하였다. 이후 2011년에는 100~300억원, 2013년에는 200~500억원으로 인상한 후 2022년에는 300~600억원으로 인상하였다.

적용대상의 경우 2010년 기존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고, 2012년에는 매출액 2천억원 이하, 2013년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21년에는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2022년에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요건의 경우 그 관리기간은 2007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고, 2011년에는 고용유지요건을 신설하였다. 그 이후 2019년에는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2022년에는 5년으로 단축하였다.

가업상속공제 주요 개정 현황

개정연도	내용
2007	- 공제한도 인상: 1억원→30억원 - 사후관리기간 강화: 5년→10년
2008	- 공제비율 확대: 20% → 40% - 공제한도 인상: 30억원 →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60억원~100억원 -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완화: 15년 → 10년
2009	중소기업 적용 요건 완화: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 기간 가업영위기간의 80% 이상 → 60% 이상,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2010	공제대상 확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추가
2011	- 공제비율 확대: 공제율 40% → 70% - 공제한도 상향조정: 60억원~100억원 → 100억원~300억원 - 사후관리 강화: 고용유지요건 신설
2012	공제대상 확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
2013	- 공제대상 확대: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공제비율 확대: 70% → 100% - 공제한도 인상: 100억원~300억원 → 200억원~500억원
2019	사후관리 요건: 10년 → 7년
2021	공제대상 확대: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2022	- 공제대상 확대: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공제한도액 인상: 200억원~500억원 → 300억원~600억원 - 사후관리 기간: 7년 → 5년

인적공제 등

가업상속공제 이외에 상속세는 2000년 이후 별다른 개정 없이 이어져 오다 2015년 이후 인적공제, 공익법인 개선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되었다.

우선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2015년 자녀 및 연로자 공제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였다. 2016년에 신고세액 공제율을 10%에서 7%로 인하한 후,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5%와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2019년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액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2021년에는 동거주택 대상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였다. 2022년에는 상속세 자녀 및 미성년자 공제대상에 태아를 포함하였다.

공익법인제도와 관련하여 2016년 공익법인 적용 회계기준을 신설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정도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의무화하였다. 2019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의무지출관리를 모든 공익법인까지 확대하고 회계감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대상을 확대(재무제표 주식사항 포함)하였다. 2020년에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에 따라 5년 주기 확인에서 사후관리 이행여부 신고제도로 변경하면서 매년 신고하도록 하였다. 2023년에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의 경우 1%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사용액의 20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2019년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지분율과 관계없이 20%로 적용하기로 하고, 2020년에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을 상속세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2022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과세로 전환(납부유예)하였다.

■ 인적공제 등 주요 개정 현황 ■

개정연도	내용
20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목적 및 정의 규정 신설 • 인적공제 인상: 자녀 및 연로자 공제 3천만원 → 5천만원, 미성년자와 장애인 공제 연간 500만원 → 연간 1천만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인상: 40% → 80%
2016	•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10% → 7%(단계적 인하: 2018년 5%, 2019년 3%) •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신설 및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 의무 신설
2019	• 최대주주 할증평가 완화: 지분율 관계없이 20%(중소기업 0%)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인상: 80% → 100%, 공제한도 상향: 5억원 → 6억원 • 공익법인 제도 합리화: -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의무지출관리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 -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 확대(수입금액 기준 추가),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회계감리제도 도입 -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대상 확대(재무제표 주식사항 포함)
2020	• 신탁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 •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일원화 • 공익법인 사후관리: 5년 주기 확인 → 사후관리 이행여부 매년 신고
2021	• 상속세 물납 대상 확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 물납허용 • 동거주택 대상 확대: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
2022	•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 과세로 전환, 징수유예 신설 •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2023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1%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미달 사용액에 200% 가산세 신설

2. 증여세

2000년 이후 증여세 개정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개정은 2003년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2011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로 볼 수 있으며, 그 이외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기타 증여재산공제 등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2007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신설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이 2010년에는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1천5백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2년에는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2021년에는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2022년에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다.

특례대상 증여가액 및 한도액과 관련하여 2013년 특례대상 증여가액에서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하였다. 2014년에는 특례대상 증여가액 한도액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22년에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한도액을 최대 600억원으로 인상하였다.

과세특례 적용 저율과세 구간 확대와 관련하여 2015년에는 종전 과세특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10%를 과세표준 30억원 이하에만 저율(10%)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은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 이하로, 2023년에는 1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였다.

사후관리기간은 2014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 후, 2022년에는 다시 5년으로 축소하였으며, 연부연납 기간은 2023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였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주요 개정 현황 ■

개정연도	내용
2010	• 적용대상 확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2012	• 적용대상 확대: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
2013	• 적용대상 확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 특례대상 증여자산 축소: 업무무관자산 제외
2014	• 특례대상 증여가액 한도액 인상: 30억원 → 100억원 • 사후관리기간 축소: 10년 → 7년
2015	• 과세특례 저율(10%)과세 제한: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2021	• 적용대상 확대: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2022	• 적용대상 확대: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 특례대상 증여가액 한도액 인상: 10억원 →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600억원 • 과세특례 저율(10%)과세 확대: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 60억원 이하 • 사후관리기간 축소: 7년 → 5년
2023	• 과세특례 저율(10%)과세 확대: 과세표준 6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 연부연납 기간 확대: 5년 → 15년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재산공제는 2013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성년 수증자에게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 1.5천만원 → 2천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15년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그 공제액을 인상하였다. 2023년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원 한도)를 도입하였다.

2019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창업업종 97개를 추가하고 창업기한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2022년에서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를 허용하였다.

증여세의 주요 개정 현황

개정연도	내용
2013	• 증여재산공제 인상: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성년 수증자 3천만원 → 5천만원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미성년 수증자 1.5천만원 → 2천만원
2015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 증여재산공제 인상: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 → 5천만원 -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만원 → 1천만원
2017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에 특수관계법인과 교차·삼각 거래 등의 매출액을 포함,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5조원)소속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2019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완화 - 창업업종 추가: 회사 본부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 97개 업종 추가 - 창업기한 완화: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 - 창업자금 사용기한 완화: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
2022	•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2023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1억원 한도) 도입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1.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서 과세제외재산과 장례비용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며, 이후 각종 공제액(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여기에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다.

■ 상속세 과세체계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24.

납세의무자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자연인³¹⁷⁾이어야 한다. 만일,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의익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상속을 포기한 자 포함)과 유증³¹⁸⁾·사인증여³¹⁹⁾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수유자 및 특별연고자³²⁰⁾ 등으로 구분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특별연고자는 「민법」상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상속재산이 남아 있고 특별연고자에게 상속결격자에 준하는 사유가 없는 한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청구로 상속재산 중 일부가 이전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한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과세대상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재산이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³²¹⁾을 말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³²²⁾ 상속세의 과세대

317) 「민법」상 상속인의 자격이 자연인인 이유는 동법상 '상속의 순위'를 혈연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318)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을 수유자(유언으로 유산을 물려받기로 지정된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함

319)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뜻함

320) 특별연고자란 상속인이 없는 망인(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망인을 요양·간호한 사람, 기타 망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뜻함.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와 특정한 관계가 있는 이들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함

321)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가운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정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이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이 미치고,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과세권이 미치기 때문임. 또한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322)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사단법인의 사원지위, 위임계약의 당사자 지위,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 사용자의 지위,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벌금이나 과태료, 추징금 등이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으로서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모든 재산의 범위에는 「민법」상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및 추정 상속재산이 포함된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권(物權), 채권(債權), 무체재산권(無體財產權) 등을 말하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재산과 수익자가 유증을 받는 재산을 포함하고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간주 상속재산은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의 결과로서 상속 등에 의한 재산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한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으로 보험금³²³⁾, 신탁재산³²⁴⁾, 퇴직금³²⁵⁾ 등이 있다.

추정 상속재산은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망 전 재산처분 등을 통해 현금으로 전환하여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입증 없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처분으로 받은 현금 등³²⁶⁾, 현금인출³²⁷⁾, 채무부담³²⁸⁾ 등이 있으며, 과세관청의 상속재산 추정시 그 반대되는 처분용도나 인출용도에 대한 사실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한편, 상속재산 가운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 주주의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하되 중소기업은 제외한다.³²⁹⁾

323) 보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보험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령인이 직접 원시취득한 것이 되어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 등이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함

324)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킴

325)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봄

326)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327)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328)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329) 이를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라 하며, 증여재산도 동일함

과세표준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배우자공제·인적공제·가업상속공제 등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³³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정한다.

■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구조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과금 등 공제금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①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를 지닌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보험금,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등도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330)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에 한정) 해당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 2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용평가전문기관 평가수수료
- 3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전문가 감정수수료

②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회정책 또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전쟁 등의 공무수행 중 전사한 경우 상속의 원인이 사회정책 또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상속재산 중에서도 피상속인이 국가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도 비과세하고 있다.

■ 상속세의 비과세 항목 ■

구분	내용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국가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물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 등을 한 재산
	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③ 과세가액불산입 및 공과금 등의 공제금액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과세가액불산입액과 공과금 등은 차감한다. 과세가액불산입이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속하지만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과 공익신탁재산이 있다. 공익신탁재산은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공익신탁재산은 그 목적 및 사회적 기능이 공익법인 등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

그리고 공과금 등의 공제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Ⅱ 공과금 등의 공제금 내용 Ⅱ

구분	내용	공제금액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및 기타의 공과금	그 공과금 등의 가액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500만원 ~ 1,000만원 (보안시설·자연장지를 이용한 경우 그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추가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	그 채무가액

④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일정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이유는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분할하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의 누진세 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³³¹⁾

Ⅱ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Ⅱ

구분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세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⑤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³³²⁾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상속공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와 같이 상속인들의 인적 구성에 따른 인적공제와 가업·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같은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른 물적공제로 나뉜다.

331) 헌법재판소 2006.7.27. 선고 헌재 2005헌가4

3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4조

■ 상속공제의 내용 ■

구분	공제금액
기초공제	• 2억원
배우자공제	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액(30억원) 범위에서 공제 ② 위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태아포함) :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공제(태아포함) : 1,000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 공제 : 5,000만원(65세 이상) • 장애인공제 : 1,000만원×(통계청 고시 기대여명연수)
일괄공제	•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중 큰 금액 선택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의 100% - 10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30억원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한도 : 2억원) • 순금융재산가액 2,000만원 초과 시 순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2,000만원 이하 시 해당 금액을 공제
재해손실 공제	• 상속개시 이후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및 훼손된 경우에 그 손실가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범위내에서 공제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 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공제대상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600억원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비상장기업 50%(상장기업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공동상속 허용

사후관리

- 상속 후 5년간 가업 영위
-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고용인원의 90%, 총급여액의 평균이 기준 총급여액 90% 유지(§ 18의2⑤4 참고)

※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주식 등을 증여한 경우 가업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 20%) 세율 적용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을 1억원 이하 단계의 10%부터 30억원 초과 단계의 50%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 누진세율구조이다. 1996년 이전에는 최저 5천만원 이하에서 최고 5억5천만원 초과까지 4개 세율구간에 대하여 각각 10%/20%/30%/40%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구조였으나,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구간이 추가되었다. 이후 2000년에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세율을 50%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상속세율 ■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상속세율 개정연혁

1996년 이전		1997 ~ 1999년		2000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5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0.5억원 ~ 2.5억원	20%	1억원 ~ 5억원	20%	1억원 ~ 5억원	20%
2.5억원 ~ 5.5억원	30%	5억원 ~ 10억원	30%	5억원 ~ 10억원	30%
5.5억원 초과	40%	10억원 ~ 50억원	40%	10억원 ~ 30억원	40%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상속세 세액의 계산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산정한다.

■ 상속세 결정세액 계산구조 ■

$$\begin{array}{rcl}
 & \text{상속세 과세표준} & \\
 \times & \text{세율} & \\
 \hline
 & = \text{상속세 산출세액} & \\
 & (+) \text{세대생략가산액} & \\
 & (-) \text{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 (-) \text{세액공제} & \\
 \hline
 & = \text{상속세 결정세액} &
 \end{array}$$

세대생략가산액(세대생략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한다. 이는 조부(祖父) 단계에서 손(孫)의 세대로 직접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자(子)의 단계에서 손(孫)의 세대로 상속될 때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세대생략가산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미성년자 상속재산가액 20억 초과 40%)를 곱한 금액이다.

$$\begin{array}{rcl}
 \text{할증과세} & & \\
 \text{금액} & = & \text{상속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text{총상속재산가액}} \times 30\% \\
 & & \text{(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
 \end{array}$$

세액공제

상속세의 세액공제 항목은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다.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³³³⁾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부과받은 상속세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속개시 후 단기간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前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 세액공제 ■

구분	공제금액 산정 등			
증여세액공제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	증여세액 공제금액=Min[①, ②] 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할증세액·가산세 제외) ② 공제 한도액(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공제세액=Min[①, ②] ① 상속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외국법령에 의해 상속세 부과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text{상속세 과세표준}}$ ②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재상속분의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	6년 이내	50%
	2년 이내	90%	7년 이내	40%
	3년 이내	80%	8년 이내	30%
	4년 이내	70%	9년 이내	20%
	5년 이내	60%	10년 이내	10%

333)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액이 있는 때에는 그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이는 동일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중과세하지 않고 누진세율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시키기 위함임

2. 증여세

증여세의 과세체계는 수증자가 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채무부담액 등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이후 10년 내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상속세와 동일한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증여세 과세체계 ■

증여 재산 가액	증여재산			• 본래의 증여재산 • 증여의제 재산 등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비과세 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과세가액			
	(+)	10년 내 재차증여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등		• 인적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산출 세액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결정 세액 계산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증여 할증세액
	(-)	조특법상 면제세액 등		•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증여)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총 결정세액 계산	결정세액			
	(+)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초과 가산세		•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인법인의 무기장 등 가산세
	총결정세액		-	연부연납, 물납 자진납부(분납)세액
			=	고지세액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24.

납세의무자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 자를 말한다.³³⁴⁾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는 자연인이며, 상속세와 같이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만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에 소재하는 증여재산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세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수증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채권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그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³³⁵⁾ 이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증여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과세대상

①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에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³³⁶⁾

- 첫째,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다.
- 둘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이다.
- 셋째,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을 채택하고 있어 「민법」에 따른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니더라도 변칙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이 무상이전된 경우에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3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3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

3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7호

■ 증여세 과세대상 ■

구분	제목 및 내용
일반적 증여재산 유형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제4조제1항제1호)
	현재저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재저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제4조제1항제2호)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제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로 인한 당초상속분 초과 취득분(제4조제3항)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제4조제4항)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탁이익의 증여(제33조)
	보험금의 증여(제34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5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제36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7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8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0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2)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3)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제41조의5)
증여추정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제4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45조)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45조의2)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4)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5)

주: 법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24.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1. 일감몰아주기 개념
 - 일감몰아주기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끼리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를 얻은 기업의 가치를 단기간 내 급등시키고 그 결과로 일부 주주에게 세금부담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특정인의 부를 변칙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2. 증여의제이익 계산
 - 대기업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times$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중 - 5%) $\times$ (지배주주등의 지분비율)
 - 중견기업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times$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중 - 20%) $\times$ (지배주주등의 지분비율 - 5%)
 - 중소기업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times$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중 - 50%) $\times$ (지배주주등의 지분비율 - 10%)
 - 과세범위에 있어서는 사업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3. 증여의제 시기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4. 과세제외 매출액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은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24.

②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다. 다만, 일부 증여재산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그 취득시기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재산 종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건물이나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주식 및 출자지분	주식 등의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하는 경우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할 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이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과세표준의 산정

증여세 과세표준은 총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을 차감하고 증여재산 가산액을 더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후 증여재산 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구조 ■

총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 과세가액불산입액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① 비과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공공의 이익,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정책목적상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³³⁷⁾

■ 비과세 증여재산 ■

비과세 증여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내국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정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정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법정 보험의 보험금
•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3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② 과세가액불산입액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증여재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공익신탁 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이 있다. 여기서 공익신탁재산은 증여자가 「신탁법」 제 65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③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시 채무인수액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³³⁸⁾,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³³⁹⁾ 여기서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며, 부담부증여 계약은 증여계약이 주(主)이고 부담계약은 종(從)이므로 증여가 무효이면 부담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고 동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³⁴⁰⁾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

3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339) 「소득세법」 제88조

340)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하면 다음과 같음

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위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 금융거래 증빙,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관련 서류

④ 증여재산 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³⁴¹⁾ 이는 수차례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증여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다음의 증여재산은 합산에서 배제하고 있다.

- 첫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둘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셋째,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넷째,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
- 다섯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로서 증여자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친족인 경우 다음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³⁴²⁾

Ⅱ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Ⅱ

구분	공제금액
인적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출산 증여 : 1억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5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 1천만원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폭발·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3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3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동일하다.³⁴³⁾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초과 단계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10~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증여세율 ■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증여세 세액의 계산

증여세는 정부부과(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증여세 결정세액 계산구조 ■

$$\begin{array}{rcl}
 & \text{증여세 과세표준} & \\
 \times & \text{세율} & \\
 \hline
 = & \text{증여세 산출세액} & \\
 (+) & \text{세대생략가산액} & \\
 (-) & \text{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
 (-) & \text{세액공제} & \\
 (+) & \text{가산세} & \\
 \hline
 = & \text{증여세 결정세액} &
 \end{array}$$

세대생략 가산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의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³⁴⁴⁾

343) 과거 상속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높은 관계로 증여세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려는 정책방향에 따라 1995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이 동일하게 조정됨

조부(祖父)에서 부(父)로, 다시 부(父)에서 자(子)로 2번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액과 조부(祖父)에서 손자(孫子)로 직접 증여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액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으로서 할증과세를 이미 적용받은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既)할증 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한다.

$$\text{할증과세액} = \text{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text{총 증여재산가액}} \times \frac{30}{100} - \text{기할증 산출세액}$$

세액공제

증여세의 세액공제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다.³⁴⁵⁾ 납부세액공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과세하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그 역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

구분	공제금액 산정 등
납부세액공제	납부세액 공제금액=Min[①, ②] ①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② 증여세산출세액 $\times \frac{\text{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text{당해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공제세액=Min[①, ②] ① 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외국법령에 의해 증여세 부과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text{과세표준}}$ ②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액

3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3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및 제59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저율과세로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과세특례	- 적용한도 금액 - 적용한도: 증여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 600억원 - 적용세율: 120억원 이하 10%, 120억원 초과 20%
증여자 요건	- 중소기업 등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수증자 요건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인 자녀 -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관리	- 승계 후 5년간 가업 영위 -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 금지(지분감소 포함)

제4절 신고와 납부

1. 상속세

신고

상속세는 정부부과방식이지만 납세자의 신고를 유도하고 이후 납세자의 신고를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종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를 3% 공제한다. 그리고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기간은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하며,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납부

상속재산 등은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 많은 관계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납부제도가 존재한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현금을 보유하지 않거나 조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일반적으로 10년) 제도를 두고 있다.

■ 상속세 납부방법 ■

구분		내용
현금 납부	자진납부	• 원칙적인 납부방법: 1회 완납의 원칙
	분납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천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일반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 가업상속재산: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물납		•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물납충당순위: ①국채 및 공채 ②상장 유가증권(①제외) ③국내 소재 부동산 ④비상장유가증권(①제외) ⑤상속인 거주주택과 부수토지 * 2023년 1월 1일부터 문화재·미술품 물납 대상
징수유예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³⁴⁶⁾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신이 산출한 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와 달리 물납은 인정하지 않는다.

3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제5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증여재산공제 친족 범위의 조정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기타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현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기타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 조정하였다.³⁴⁷⁾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였다. 특정법인과의 거래에서 자본거래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불균등 감자(減資) 등의 자본거래를 증여의제 범위에 추가하였다.³⁴⁸⁾

Ⅱ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Ⅱ

항목	개정 내용
증여재산 공제 친족 범위의 조정	기타 친족의 범위 조정: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증여의제 범위 확대: 불균등 감자 등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적용대상 어업권 정비	- 어업권의 범위에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의 양식업권 추가 * 종전 어업권의 범위: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

3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4호

3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 신설

제6절 국제동향

최근 상속세제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상속세 폐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포르투갈, 스웨덴 및 오스트리아는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그 외 상속세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세율 및 공제액 등에 대한 부분적 개정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상속세 폐지 논의

1970년대 캐나다(1972년) 및 호주(1979년)가 상속세를 폐지한 이후 상속세 폐지에 대한 큰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상속과세가 부를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상속세제로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2000년대 초반 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였다.³⁴⁹⁾

2000년대 이후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다만, 이탈리아는 2001년 상속세를 폐지하였으나 2007년 세수 확대 차원에서 재도입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2001년 「경제성장과 조세감면법」 제정으로 2010년까지 유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폐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동 법률은 2010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형태의 법률로서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0년 후속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2011년부터 유산세가 부활³⁵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상속세제 폐지 주요 국가 ■

상속세 폐지 연도	국가
2008	오스트리아
2005	스웨덴
2004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1999	뉴질랜드
1979	호주
1972	캐나다

주: 이탈리아는 2001년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하였으나, 세수확대 차원에서 2007년 재도입함
 자료: OECD Statistics, "Tax wedge decomposition" 및 IBFD - Tax Research Platform 자료 참조

349)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상속세-」, 2017. p.103. 참조

350) 오바마 정부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 사태로 인한 경제 및 재정적 어려움 속에 유산세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과 유산세는 부유층에 과세되는 조세로 경제적(부의) 격차를 시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유산세를 부활하였음

상속세제 유지 국가의 개정 동향

① 세율조정

최근 10년간 주요 국가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세부담을 강화하였지만, 독일의 경우 제2그룹의 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을 낮추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유산세 부활 이후 2010년 세율을 45%에서 35%로 인하하였다가, 2012년 「미국 납세자의 세금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제정에 따라 유산세의 과세표준 1백만 달러 초과 구간에 40%를 적용하는 최고세율 구간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일본은 2013년에 상속세제를 개편하여 우선 종전 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에서 8단계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55%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2010년 제2그룹(형제자매, 양부모, 사위 및 며느리 등) 세율을 30~50%에서 15~43%로 인하하였다.

② 공제액 조정

상속공제 등과 관련하여 미국·영국은 기초공제액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본은 기초공제와 더불어 인적공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한 2017년 법 개정으로 기초공제액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하였으며, 2018년 기초공제액이 1,118만달러에서 2024년 현재 1,361만달러로 인상된 상태이다. 영국은 2015년 상속세 기초공제액 32만5천파운드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면세구간을 연도별(2017년~2021년, 10만파운드~17만5천파운드)로 재설정하였다. 일본은 2013년 기초공제액의 기준가액을 5천만엔에서 3천만엔으로 인하하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 공제 기준가액을 6만엔에서 10만엔으로 인상하였다.

③ 가업승계세제 조정

가업승계세제의 경우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독일은 2010년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사후관리기간 7년→5년 등)하였으며, 2015년에는 2014년 연방헌법재판소의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범위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대한 사업 계속성 및 관련성 요건 등을 강화하였다. 일본은 2018년에는 사업승계와 관련하여 법인의 일반 사업승계세제 이외에 한시적(2027년)으로 상속세 납부유예 비율을 일반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복수의 후계자도 인정하는

특례조치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대상인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승계세제(2028년까지 한시 적용)를 신설하였다.

■ 주요국의 상속세제 개정현황 ■

국가	연도	개정내용																																														
세율 조정	미국	• 2010년: 유산세 최고세율 인하 - 45% → 35%																																														
		• 2012년: 유산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 50만달러 초과시 35% → 100만달러 초과시 40%																																														
	독일	• 2010년: 제2그룹(형제자매, 양부모, 사위 및 며느리) 세율 인하 (단위 : 유로, %)																																														
		<table><tr><th rowspan="3">과세표준 구간</th><th colspan="4">세율</th></tr><tr><th rowspan="2">제1그룹</th><th colspan="2">제2그룹</th><th rowspan="2">제3그룹</th></tr><tr><th>개정 전</th><th>개정 후</th></tr><tr><td>75,000</td><td>7</td><td>30</td><td>15</td><td>30</td></tr><tr><td>300,000</td><td>11</td><td>30</td><td>20</td><td>30</td></tr><tr><td>600,000</td><td>15</td><td>30</td><td>25</td><td>30</td></tr><tr><td>6,000,000</td><td>19</td><td>30</td><td>30</td><td>30</td></tr><tr><td>13,000,000</td><td>23</td><td>50</td><td>35</td><td>50</td></tr><tr><td>26,000,000</td><td>27</td><td>50</td><td>40</td><td>50</td></tr><tr><td>26,000,000 이상</td><td>30</td><td>50</td><td>43</td><td>50</td></tr></table>	과세표준 구간	세율				제1그룹	제2그룹		제3그룹	개정 전	개정 후	75,000	7	30	15	30	300,000	11	30	20	30	600,000	15	30	25	30	6,000,000	19	30	30	30	13,000,000	23	50	35	50	26,000,000	27	50	40	50	26,000,000 이상	30	50	43	50
		과세표준 구간		세율																																												
				제1그룹	제2그룹		제3그룹																																									
			개정 전		개정 후																																											
		75,000	7	30	15	30																																										
		300,000	11	30	20	30																																										
		600,000	15	30	25	30																																										
6,000,000		19	30	30	30																																											
13,000,000		23	50	35	50																																											
26,000,000	27	50	40	50																																												
26,000,000 이상	30	50	43	50																																												
주 : 제1그룹은 직계존비속, 제3그룹은 기타 친족 등																																																
일본	• 2013년: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조정 최고세율 인상																																															
	<table><tr><th>과세표준</th><th>개정 전</th><th>개정 후</th></tr><tr><td>~1,000만엔</td><td>10%</td><td>10%</td></tr><tr><td>1,000~3,000만엔</td><td>15%</td><td>15%</td></tr><tr><td>3,000~5,000만엔</td><td>20%</td><td>20%</td></tr><tr><td>5,000만엔~1억엔</td><td>30%</td><td>30%</td></tr><tr><td>1억엔~2억엔</td><td rowspan="2">40%</td><td>40%</td></tr><tr><td>2억엔~3억엔</td><td>45%</td></tr><tr><td>3억엔~6억엔</td><td rowspan="2">50%</td><td>50%</td></tr><tr><td>6억엔~</td><td>55%</td></tr></table>	과세표준	개정 전	개정 후	~1,000만엔	10%	10%	1,000~3,000만엔	15%	15%	3,000~5,000만엔	20%	20%	5,000만엔~1억엔	30%	30%	1억엔~2억엔	40%	40%	2억엔~3억엔	45%	3억엔~6억엔	50%	50%	6억엔~	55%																						
	과세표준	개정 전	개정 후																																													
	~1,000만엔	10%	10%																																													
	1,000~3,000만엔	15%	15%																																													
	3,000~5,000만엔	20%	20%																																													
	5,000만엔~1억엔	30%	30%																																													
	1억엔~2억엔	40%	40%																																													
	2억엔~3억엔		45%																																													
	3억엔~6억엔	50%	50%																																													
6억엔~	55%																																															

국가	연도	개정내용																				
공제액 조정	미국	• 2017년: 기초공제액 순차적으로 인상 - 매년 개정에 따라 기초공제액은 2018년 1,118만달러에서 2025년 1,399만달러로 인상 (단위: 만달러) <table><tr><th>연도</th><th>기초공제액</th><th>연도</th><th>기초공제액</th></tr><tr><td>2018</td><td>1,118</td><td>2022</td><td>1,206</td></tr><tr><td>2019</td><td>1,140</td><td>2023</td><td>1,291</td></tr><tr><td>2020</td><td>1,158</td><td>2024</td><td>1,361</td></tr><tr><td>2021</td><td>1,170</td><td>2025</td><td>1,399</td></tr></table>	연도	기초공제액	연도	기초공제액	2018	1,118	2022	1,206	2019	1,140	2023	1,291	2020	1,158	2024	1,361	2021	1,170	2025	1,399
		연도	기초공제액	연도	기초공제액																	
		2018	1,118	2022	1,206																	
		2019	1,140	2023	1,291																	
		2020	1,158	2024	1,361																	
		2021	1,170	2025	1,399																	
	영국	• 2015년 기초공제액 32만 5천파운드 유지 및 추가공제액 인상 - 2017/2018 과세연도 10만파운드 - 2018/2019 과세연도 12만5천파운드 - 2019/2020 과세연도 15만파운드 - 2021~ 과세연도 17만5천파운드																				
		일본	• 2013년: 상속세 공제액 조정 - 기초공제액: 5천만엔+(1천만엔×법정상속인 수) → 3천만엔+(600만엔×법정상속인 수) - 미성년자공제: 6만엔×20세까지 남은 연수 → 10만엔×20세까지(2022년부터 18세) 남은 연수 - 장애자공제: 6만엔×85세까지 남은 연수 → 10만엔×85세까지 남은 연수상속세 과세대상 재산범위 확대																			
			가업승계세제 조정	독일	• 2010년: 가업상속공제 완화 - 사후관리 요건 완화: 사업용 자산 85% 7년 → 5년 사업용 자산 100% 10년 → 7년																	
	• 2015년 사업용 자산 상속공제 요건 강화 - 사업의 계속성 및 사업관련성(비사업용 자산 50% 이하 → 10%) - 26백만유로 초과 자산에 대한 공제 제한 - 비사업용 자산(예술작품, 귀금속, 요트 등) 범위 확대																					
일본	• 2018년: 법인사업승계 특례조치 신설 - 2027년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비율을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복수의 후계자 인정																					
	• 2019년: 개인 사업승계세제 신설 - 2028년까지 사업승계 목적으로 사업용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상속하는 경우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100%)																					

자료: IBFD - Tax Research Platform 국가별 자료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7장

종합부동산세

제1절 개요

1. 개념 및 의의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는 일정 기준금액(이하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의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며,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별로 보유한 부동산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³⁵¹⁾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었다.³⁵²⁾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의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였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소득재분배 목적과 함께 부동산 과다 보유의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2. 기능 및 특징

종합부동산세액은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서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부동산 보유세 규모(5%) 등의 기준에 따라 전액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세종, 제주 포함)에 교부된다.³⁵³⁾³⁵⁴⁾ 2024년 본예산 기준 부동산교부세액은 4.1조원이다. 다만, 최종 부동산교부세액은 추가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예산과 전년도 예·결산 차액에 따른 전년도 정산분으로 구성되므로 결산 실적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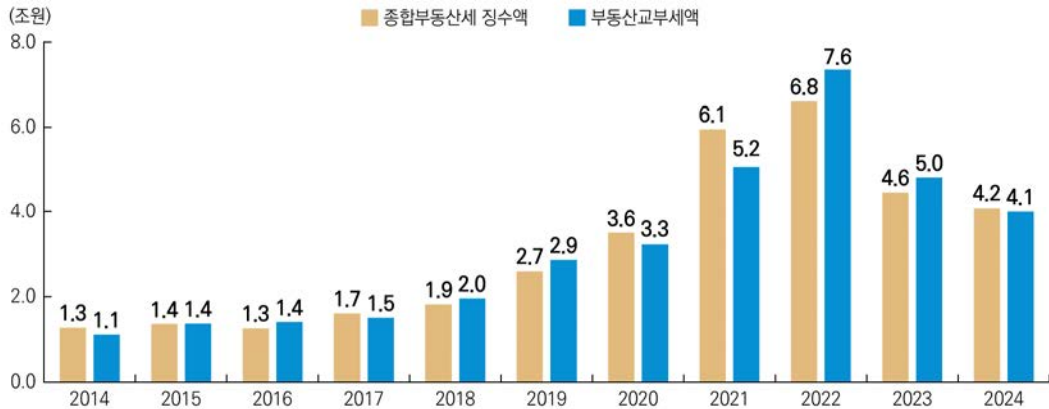
351)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surtax)로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부과됨

352) 2005년 이전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는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로 부과되었음

353)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354)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정률(1.8%)이 부동산교부세로 배분됨

■ 최근 종합부동산세 징수액과 부동산교부세액 추이 ■



주 : 2014~2023년 부동산교부세액은 최종 교부액이며, 2024년 부동산교부세액은 본예산 기준임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현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동산의 보유에 대해서 하나의 보유세 세목(property tax)을 적용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유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주로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지방세의 형태로 재산세만을 부과하며, 이때 재산세율은 지방정부의 예산 등에 따라 매년 책정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평가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³⁵⁵⁾ 해외 주요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매년 평가하는 국가도 있으나³⁵⁶⁾,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신규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만 재평가하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4년마다 재산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등 매년 재산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不動産交付税)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 국가가 그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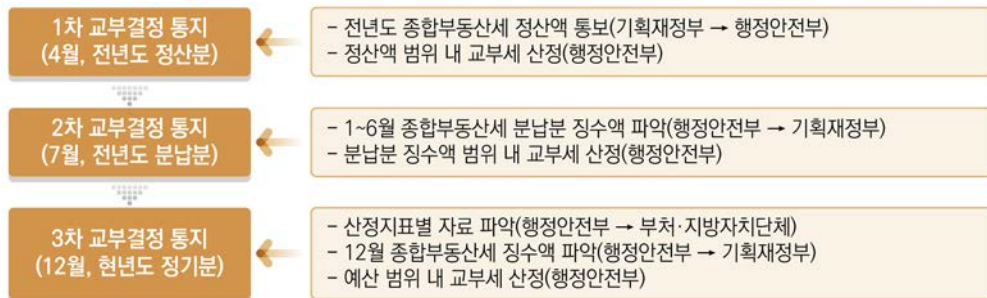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으로, 당해연도 종합부동산세 예산액 범위에서 12월 징수액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다만, 직전년도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이로 인한 교부세 차액을 정산하여 4월에 부동산교부세

35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매년 평가되는 공시가격을 의미함

356)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일본 등

를 교부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이후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므로, 7월에 직전년도 종합부동산 분납분에 대한 교부세액을 산정하여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한다.

부동산교부세 교부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2023.3)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동산교부세는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부동산 보유세 규모(5%) 등 교부기준에 따라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세종, 제주 포함)에 배분된다. 교부기준의 산정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재정여건으로는 재정력 역지수(1-재정자주도)를 산정지표로서 활용한다. 사회복지기준 산정지표로는 사회복지비지수, 노령인구지수, 노인보호지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 장애인지수 등을 활용하며, 지역교육기준 산정지표로는 지역교육현안수요지수,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운영지수, 초등 방과후 보육·교육지원지수 등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보유세 규모는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지수를 바탕으로 한다.

2023년 기준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과 부동산교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는 서울(2.3조원, 총 징수액 대비 49.5%), 경기(0.9조원, 18.9%), 부산(0.2조원, 5.3%) 순으로 징수되고 있다. 한편, 부동산교부세액의 경우 경북(0.53조원, 전체 교부세액 대비 10.6%), 경기(0.52조원, 10.6%), 전남(0.51조원, 10.2%) 순으로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과 부동산교부세액: 2023년

(단위: 억원, %)

구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부동산교부세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45,965	100	49,609	100
서울	22,741	49.5	4,750	9.6
부산	2,432	5.3	3,599	7.3
대구	896	1.9	1,861	3.8
인천	1,513	3.3	2,305	4.6
광주	659	1.4	1,178	2.4
대전	1,819	4.0	1,275	2.6

구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부동산교부세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울산	382	0.8	1,026	2.1
경기	8,700	18.9	5,239	10.6
강원	756	1.6	4,055	8.2
충북	438	1.0	2,379	4.8
충남·세종 ¹⁾	804	1.7	3,194	6.4
전북	540	1.2	3,395	6.8
전남	979	2.1	5,078	10.2
경북	1,257	2.7	5,280	10.6
경남	1,302	2.8	3,991	8.0
제주	747	1.6	893	1.8

주: 1) 국세통계연보의 지역별·세목별 세수 현황의 구분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보고」(2024.3.)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최근 현황

2024년 종합부동산세 규모

2024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4.2조원으로, 2023년 4.6조원 대비 0.4조원(△9.0%) 감소하였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³⁵⁷⁾에 따른 다주택자 초과배제 주택 추가³⁵⁷⁾, 합산배제 대상확대³⁵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확대³⁵⁹⁾ 등 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공시가격이 상승(전국 평균 주택 1.3%, 토지 1.2%)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	
			증감액(C=B-A)	증가율(C/A)
종합부동산세	4.6	4.2	△0.4	△9.0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57)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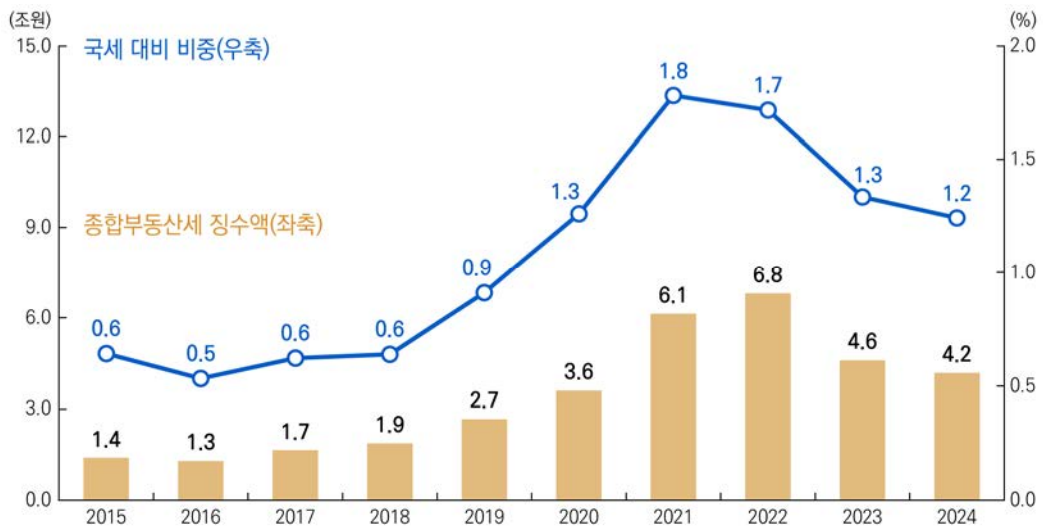
358)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24.3.28.부터 '25.12.31.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359) 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한을 혼인한 날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연도별 추이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규모는 2015년 1.4조원에서 2022년 6.8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24년 4.2조원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10년간 종합부동산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1.3~1.4조원 수준의 실적을 보였으며 이후 2017년 1.7조원에서 2022년 6.8조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4.6조원으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전체 국세수입 중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5년 0.6%에서 2022년 1.7%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1.2%로 감소하였다.

■ 최근 종합부동산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납부인원

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인원은 49.5만명에서, 2022년 128.3만명에서 61.4%감소하였다.³⁶⁰⁾ 납부인원은 2016년 이후 연간 약 17~19%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9~2022년은 예년 대비 높은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5%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2022년의 경우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95% → 60%) 및 1세대 1주택자 범위 확대³⁶¹⁾, 종합부동산

360) 2024년 종합부동산세는 55만명(주택 및 토지 중복인원 제외)에게 납부고지되었음(주택 46만명, 토지분 11만명)

361)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및 주택 상속에 따른 다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구입에 따른 2주택자 등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함

세 납부유예 도입 등 세부담 완화 정책의 도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후 2023년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세율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등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이 전년대비 61.4% 감소하였다.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경우, 2023년 기준 개인 납부인원은 41.7만명(전체 납부인원 대비 84.2%), 법인 납부인원은 7.8만명(15.8%)으로 전년대비 개인 납부인원이 대폭 감소하였다.

■ 납세자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 2014~2023년 ■

(단위: 만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5.2 (24)	28.3 (12.3)	33.6 (18.6)	39.7 (18.3)	46.4 (16.7)	59.2 (27.7)	74.4 (25.6)	101.7 (36.7)	128.3 (26.2)	49.5 (△61.4)
- 개 인	23.7	26.6	31.7	37.6	43.6	55.8	70.7	94.0	120.6	41.7
- 법 인	1.5	1.7	1.9	2.1	2.7	3.4	3.6	7.6	7.7	7.8

주: 1. ()안의 값은 전년 대비 증가율

2. 납세자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을 바탕으로 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 부동산 유형별 납부인원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은 40.8만명, 종합합산토지분은 9.6만명, 별도합산토지분은 1.4만명으로, 대부분이 주택분 납부인원이다.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주택분 납부인원 40.8만명 중 개인이 35.1만명으로 개인의 비중이 86.0%이다. 반면,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산토지분 납부인원은 각각 9.6만명 중 7.5만명(78.3%), 1.4만명 중 0.6만명(42.0%)으로 주택분 납부인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 부동산·납세자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 현황: 2023년 ■

(단위: 명)

구분	합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합 계	495,193	408,276	95,759	13,698
- 개 인	417,156	350,953	74,944	5,752
- 법 인	78,037	57,323	20,815	7,946

주: 주택 및 토지의 중복과세인원으로 인해 유형별 납세인원의 합과 전체 납세인원이 일치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주요 개정연혁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개정되어 왔다. 2018년까지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의 상향 및 세율 인하, 세부담 상한비율 하향 조정 등이 주요 개정사항인 반면, 2019~2022년에는 세부담 강화를 위해 세율이 인상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重課稅率)이 적용되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주택분 과세기준액은 2008년까지는 모든 납세자에게 6억원이 적용되었으나, 개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액은 2009년 9억원, 2021년 11억원, 2023년 이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 외 개인 납세자에 대한 과세기준액은 2022년까지 6억원으로 유지되었고, 2023년 이후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법인의 경우 2021년 이후 과세기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기준액 주요 개정연혁 ■

구분		2006~2008년	2009~2020년	2021~2022년	2023년 이후
과세 기준액	개인	6억원			9억원
	1세대 1주택자	6억원	9억원	11억원	12억원
	법인	6억원			미적용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80%에서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되다가('19년 85%, '20년 90%, '21년 95%), 2022년 이후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상향 조정되고,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하향 조정되었다.

Ⅱ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주요 개정연혁 Ⅱ

구분		2009~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	80%	85%	90%	95%	60%
	토지					1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세율의 경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9년부터 과세표준 구간(기존 5단계→6단계)에 따라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0.5~2.7%,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6~3.2%의 세율이 적용되었다.³⁶²⁾ 2021~2022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개인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0.6~3.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1.2~6.0%로 인상되었다. 법인의 경우 보유주택 수에 따른 최고세율인 3.0% 또는 6.0%가 단일비례세율로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³⁶³⁾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0.5~2.7%,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5~5.0%, 법인의 경우 2.7% 또는 5.0%로 인하되었다.

362) 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함

363) 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함

Ⅱ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세율 주요 개정연혁 Ⅱ

2005년		2006~2008년		2009~2018년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5.5억원 이하	1.0	3억원 이하	1.0	6억원 이하	0.5
45.5억원 이하	2.0	14억원 이하	1.5	12억원 이하	0.75
45.5억원 초과	3.0	94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1.0
		94억원 초과	3.0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0
2019~2020년		2021~2022년		2023년 이후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2주택 이하>		<개인, 2주택 이하>		<개인,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하	0.6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억원 이하	0.8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이하	1.2	12억원 이하	1.0
50억원 이하	1.4	50억원 이하	1.6	25억원 이하	1.3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이하	2.2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7	94억원 초과	3.0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3주택 이상 ¹⁾ >		<개인, 3주택 이상 ¹⁾ >		<개인, 3주택 이상 ²⁾ >	
3억원 이하	0.6	3억원 이하	1.2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9	6억원 이하	1.6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3	12억원 이하	2.2	12억원 이하	1.0
50억원 이하	1.8	50억원 이하	3.6	25억원 이하	2.0
94억원 이하	2.5	94억원 이하	5.0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초과	3.2	94억원 초과	6.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5.0
-	-	<법인, 2주택 이하>	3.0	<법인, 2주택 이하>	2.7
		<법인, 3주택 이상 ¹⁾ >	6.0	<법인, 3주택 이상 ²⁾ >	5.0

주: 1)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포함

2)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주택 이하'에 대한 세율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

당해연도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공제하는 세부담 상한제의 주요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납세자 유형별 구분 없이 150%가 적용되었으나, 2019~2020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200%,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300%로 상향 조정되었다. 2021~2022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이 300%로 추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법인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2023년 이후에는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개인의 경우 150%의 세부담 상한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주요 개정연혁 ■

구분		2006~2008년	2009~2018년	2019~2020년		2021~2022년		2023년 이후
세 부 담 상 한 비 율	개인	300%	150%	2주택 이하	150%	2주택 이하	150%	150%
	법인			2주택 (조정대상지역)	200%	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및 3주택 이상	300%	
				3주택 이상	300%	미적용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1. 과세체계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는 우선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먼저, 과세표준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과세기준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산정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후, 기납부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산출세액을 구한다. 이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및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

주택분 공시가격 합산액	종합합산토지분 공시가격 합산액	별도합산토지분 공시가격 합산액
× (1-감면율 ¹⁾)	× (1-감면율 ¹⁾)	× (1-감면율 ¹⁾)
- 과세기준액 ²⁾	- 과세기준액 ²⁾	- 과세기준액 ²⁾
× 공정시장가액비율 ³⁾	× 공정시장가액비율 ³⁾	× 공정시장가액비율 ³⁾
= 주택분 과세표준	=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누진세율 ⁴⁾	× 누진세율 ⁴⁾	× 누진세율 ⁴⁾
- 기납부 재산세액 공제	- 기납부 재산세액 공제	- 기납부 재산세액 공제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토지분 산출세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액	- 세부담 상한 초과액
- 세부담 상한 초과액		
= 주택분 결정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결정세액	= 별도합산토지분 결정세액

주: 1)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의미

2) (주택) 개인 일반 9억원, 개인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미적용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3) ('20년) 90% → ('21년) 95% → ('22년 이후) 주택 60%, 토지 100%

4) (주택) 2주택 이하 개인 0.5~2.7%, 법인 2.7%, 3주택 이상 개인 0.5~5.0%, 법인 5.0%
(종합합산토지) 1.0~3.0%, (별도합산토지) 0.5~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³⁶⁴⁾ 현재 주택분과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보유 부동산의 유형별·인별 공시가격의 합산금액이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이다. 주택의 경우 개인은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과세기준액 9억원(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법인은 과세기준액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한 모든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 토지의 경우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이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과세기준액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과세기준액 8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3.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세인 재산세와 유사하지만, 재산세에 비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주거용 건축물)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주택뿐만 아니라 사무소, 창고, 시설물 등 비주거용 건축물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일반토지인 종합합산토지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포함된 별도합산토지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산세는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만 아니라 농지, 임야 등이 포함된 분리과세대상 토지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은 유형별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된다.

364)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함

부동산 보유세 과세대상 분류: 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과세항목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주택	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주거용)		과세	과세
	합산배제 주택(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문화재 등)		-	과세
토지	종합 합산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	과세
	별도 합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보세창고용·물류단지시설용 토지, 철거·멸실 건축물 및 주택의 부속토지	과세	과세
	분리 과세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임야(보전산지),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읍·면·산업단지 소재 공장용지, 공급목적 보유 토지 등	-	과세
비주거용 건축물(사무소, 창고, 시설물 등)			-	과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합산배제 주택)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는 주거전용면적, 공시가격, 소유주의 보유주택수, 소재지, 임대기간 등이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유형	주거전용면적	공시가격 ¹⁾	보유주택수	임대기간	임대료 증가율
건설임대	149㎡ 이하	9억원 이하	전국 2호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²⁾	5% 이하
매입임대	-	6억원(수도권) / 3억원(비수도권) 이하	-	5년 이상 (10년 이상) ²⁾	5% 이하
기존임대 (’05년 이전 임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3억원 이하 (’05년 과세기준일)	전국 2호 이상	5년 이상	-
미임대건설임대	149㎡ 이하	9억원 이하	-	미임대 2년 이내	-
리츠 등 임대 (’08년 취득·임대)	149㎡ 이하	6억원 이하 (’08년 과세기준일)	수도권 외 5호 이상	10년 이상	-
미분양매입임대	149㎡ 이하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5호 이상	5년 이상	-

주: 1)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기준 공시가격을 의미

2) ()안의 값은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적용사항

1. 임대유기기간 종료 후 미분양된 기간이 2년 이내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보유 부동산의 유형별·인별 공시가격 합산액 중 유형별 과세기준액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주택의 경우 개인에는 과세기준액 9억원(단,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적용하는 반면 법인에는 과세기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경우, 납세자 유형과 관계없이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의 과세기준액을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법」상 60~100%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주택분은 60%, 토지분은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유형별 과세표준 ■

유형		과세기준액(A)	공정시장 가액비율(B)	과세표준
부동산	납세자			
주택	개인	9억원 / 12억원 ¹⁾	60%	[[인별·유형별 공시가격 합계액 ×(1 - 감면율 ²⁾]] - A) × B
	법인	미적용		
종합합산토지	개인, 법인	5억원	100%	
별도합산토지	개인, 법인	80억원		

주: 1) 1세대 1주택자 한정 12억원,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8억원

2)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전국의 주택(공동주택·단독주택) 및 토지³⁶⁵⁾에 대해 평가하여 발표하는 공적인 부동산 가격이다. 공시가격의 기준일(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공시시기, 조사 및 평가기준, 공시절차 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시에 있어서 토지와 단독주택은 표준-개별방식, 공동주택은 전수조사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준-개별방식이란 중앙정부(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전체 토지 및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단독주택)에 대해 가격을 공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근거로 4~5월에 개별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을 공시하는 방식이다. 반면, 전수조사방식은 표준부동산과 개별부동산의 구분 없이 개별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방식이다.

■ 연간 공시가격 발표 및 부동산 보유세 부과 일정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재건축 등 각종 부담금 산정, 이외에도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급대상 선정, 기타 행정목적의 부동산 평가 등 63개 항목에 활용되고 있다.

5. 서울

종합부동산세 서울은 주택을 보유한 개인에게는 7개의 과세표준 구간,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 보유자에게는 3개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초과누진세율구조로 적용된다. 주택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0.5~2.7%,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5~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 보유자에게는 과세표준에 따라 각각 1.0~3.0%, 0.5~0.7%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6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음

반면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게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2.7% 또는 5.0%가 적용되는 차등 비례세율구조이다. 보유 주택수별 개인의 최고세율이 법인의 비례세율로 적용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공공주택사업자 등인 경우 개인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0.5~2.7%)이 적용되며, 공익법인등³⁶⁶⁾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개인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0.5~2.7%), 그 외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

Ⅱ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유형별 세율 Ⅱ

(주택)

과세표준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2.7%	0.5	5.0%
3 ~ 6억원	15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7%		15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7%	
6 ~ 12억원	360만원 + 6억원 초과분의 1.0%		360만원 + 6억원 초과분의 1.0%	
12 ~ 25억원	960만원 + 12억원 초과분의 1.3%		960만원 + 12억원 초과분의 2.0%	
25 ~ 50억원	2,650만원 + 25억원 초과분의 1.5%		3,560만원 + 25억원 초과분의 3.0%	
50 ~ 94억원	6,40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2.0%		1억1,06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4.0%	
94억원 초과	1억5,200만원 + 94억원 초과분의 2.7%		2억8,660만원 + 94억원 초과분의 5.0%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0
15 ~ 45억원	1,500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2.0%
45억원 초과	7,500만원 + 45억원 초과분의 3.0%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0.5
200 ~ 400억원	1억원 + 200억원 초과분의 0.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 초과분의 0.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66)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기납부 재산세액 공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유주택 및 토지에 대해 과세하나, 재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모두 과세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에게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중 당해연도에 기납부한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공제하는 기납부 재산세액의 산출식³⁶⁷⁾은 다음과 같다.

(주택분)

$$\text{해당연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1)} \times \frac{\text{종부세 과세표준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2)}}{\text{주택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3)}}$$

주: 1)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만을 의미하며, 도시지역분은 포함하지 않음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부 지방세 중 재산세” 참조)

2) 종부세 과세표준×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주택분 재산세 최고세율(0.4%, 누진공제 제외)

3) 공시가격 합산액×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0.1~0.4%)

(토지분)

$$\frac{\text{해당연도 토지분(종합합산, 별도합산 구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1)}}{\text{토지(종합합산, 별도합산 구분)를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3)}} \times \text{종부세 과세표준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2)}$$

주: 1) 토지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만을 의미하며, 도시지역분은 포함하지 않음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부 지방세 중 재산세” 참조)

2) 종부세 과세표준×토지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토지분 재산세 최고세율(종합합산 0.5% 별도합산 0.4% 누진공제 제외)

3) 공시가격 합산액×토지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36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 제5조의3(토지)

1세대³⁶⁸⁾369) 1주택자 세액공제

세대원 중 1명만이 보유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보유자의 나이(고령자 공제) 또는 주택 보유기간(장기보유 공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두 가지 공제는 최대 80% 한도 내에서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고령자 공제는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만 60~65세 20%, 만 65~70세 30%, 만 70세 이상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주택 장기보유 공제는 주택 보유기간³⁷⁰⁾371)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현행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

(단위 : %)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만 60 ~ 65세	20	5 ~ 10년	20
만 65 ~ 70세	30	10 ~ 15년	40
만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주: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는 최대 80%까지 중복 적용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부부 중 소유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 간 합의에 의해 해당 1주택의 납세의무자로 신청³⁷²⁾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액 및 세액공제를 산정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368) 세대는 일반적으로 주택의 소유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가족"이란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요양, 근무, 사업상의 이유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369) ① 30세 이상, ②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③소득이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이도 1세대로 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370) 보유기간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는 주택 취득 원인별로 다음과 같음. 배우자 이외의 상속(상속개시일), 배우자 상속(피상속인 취득일), 증여(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지분 최초 취득일) 등임

371)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건물 또는 부속토지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372)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함(「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제2항)

비과세 및 감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준용한다.³⁷³⁾³⁷⁴⁾ 각 시·군의 감면조례 또한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지만, 전국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의 확보를 위해서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규정만 적용한다.³⁷⁵⁾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시 재산세 감면조항은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즉, 감면대상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별·인별 합산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한 후, 과세기준액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주요 과세특례에는 개별단체가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간주하는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등이 있다.

세부담 상한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부동산 보유세제인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세부담 상한제³⁷⁶⁾를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비율은 주택·토지 모두 150%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제의 기준금액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총세액상당액’)이다. 단,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재산세액과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부동산 유형별 해당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이 직전연도 부동산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373)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1항

374) 재산세 감면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3부 지방세 중 재산세-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참조

375)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76)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산출세액의 세부담 상한비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한다.³⁷⁷⁾

7. 결정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의 부동산 유형별·인별 공시가격 합산액에 과세 기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대응하는 세율을 적용한 후, 공제액 및 세부담 상한 초과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023년 기준 부동산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살펴보면, 주택분은 9,487억원, 종합합산토지분은 1조 8,884억원, 별도합산토지분은 1조 3,580억원 등으로 토지분 세수가 주택분 세수에 비해 높다. 납세자 유형별로는 법인의 결정세액이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 부동산·납세자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 2023년 ■

(단위: 억원)

구분	합계	주택	토지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합계	41,951	9,487	18,884	13,580
- 개인	9,885	4,564	4,137	1,184
- 법인	32,066	4,923	14,747	12,396

주: 세액은 결정세액 기준으로 징수액과 차이가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7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7조

제4절 신고와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매년 12월 1일~12월 15일에 부과 및 징수하며, 동시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분납이 가능하다.³⁷⁸⁾ 납부세액이 250~500만원인 경우, 납세자는 납부기한(당해연도 12.1.~12.15.) 내에 250만원을 납부하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에 세액의 50%를 납부한 후, 나머지 50%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다.³⁷⁹⁾

분납은 납부기한 마감일인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신청하여야 하며,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이후 6개월인 이듬해 6월 15일까지이다.



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부과지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할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하거나,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등에는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78)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37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2025년 2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신청 대상으로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를 포함하여 기존 조문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명확화하였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³⁸⁰⁾

380)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

제8장

기타 국세

제1절 증권거래세

1. 개요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는 주권 또는 지분이 국내에서 유상으로 양도될 때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이다.³⁸¹⁾ 증권거래세는 국내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 등의 주권 양도 시 과세되며, 국내 상장주식 등의 주권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³⁸²⁾와는 구분하여 과세되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국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 그 외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 시장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는 1979년 증권시장의 확대와 함께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수 확보 및 단기성 투기 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³⁸³⁾ 현재 국내 유가증권 시장 등 장내거래와 그 외 장외시장의 거래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해외에서는 프랑스, 중국, 홍콩,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주식 등에 대한 거래세를 과세한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하여 운영하며, 중국·홍콩 등은 거래세만 채택하고 있다. 한편, 일본·독일 등은 거래세를 운영하지 않으며, 영국과 같이 주식 매수자에게 인지세를 과세하거나 미국과 같이 연방정부가 아닌 뉴욕주에 한정하여 주식 등에 대한 거래세를 과세하는 사례도 있다.

381) 증권거래세의 부가세(surtax)로 농어촌특별세가 유가증권 거래액의 0.15%로 부과됨

382) 우리나라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법인 대주주(보유액 50억원 또는 지분율 1/2/4% 미만)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대상자산의 유형 등에 따라 10~3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383) 이전에는 1963~1971년 기간 증권거래세가 시행되었으나 증권시장 침체 및 자본시장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가 1979년부터 재도입됨

2024년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4.8조원으로, 2023년 6.1조원 대비 1.3조원(21.7%) 감소하였다. 2024년의 경우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전년대비 0.02%p 하락한 가운데, 대내외 금리 인상 및 경기 둔화 등으로 코스닥 시장 등의 증권거래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년 대비 세수 규모 감소로 이어졌다.

■ 2024년 증권거래세 징수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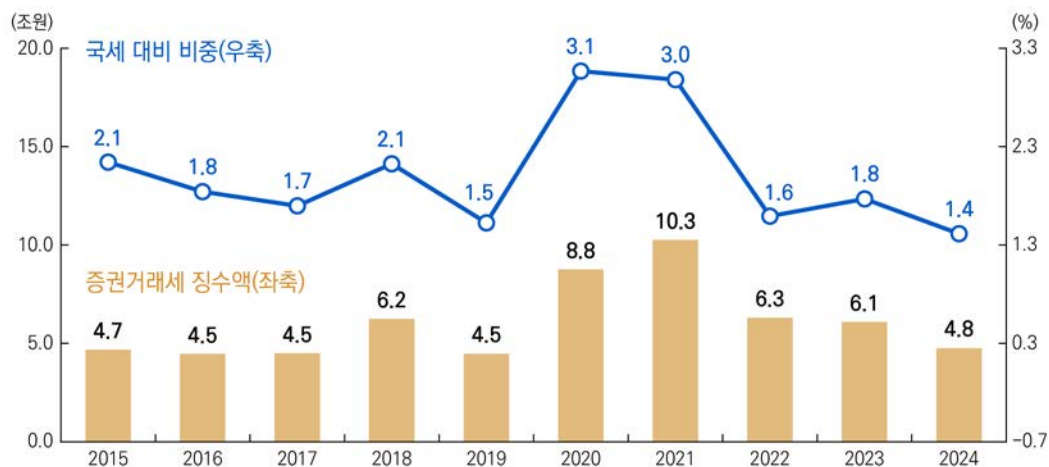
(단위: 억원, %)

	2023년 (A)	2024년 (B)	증감	
			증감액(C=B-A)	증가율(C/A)
증권거래세	60,803	47,602	△13,201	△21.7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세율 변화 및 증권시장 시황 등에 따라 변동이 큰 편으로 2015년 4.7조원에서 2018년 6.2조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 4.5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였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내외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증권거래세 징수액이 2020년 8.8조원, 2021년 10.3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유동성 증가세 둔화 및 경기 둔화 등으로 증권거래 규모가 감소함과 동시에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면서 2024년 4.8조원으로 감소하였다.

■ 최근 증권거래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증권거래세는 증권시장별로 거래대금의 일정율로 과세된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경제규모 및 기업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대내외적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유가증권의 거래대금은 2015년 1,327조원에서 2021년 3,825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코스닥 거래대금은 2015년 874조원에서 2021년 2,942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유동성 증가세 둔화 및 경기 둔화의 추세 속에서, 유가증권 거래대금은 2024년 2,621조원, 코스닥 거래대금은 2,048조원으로 2021년 대비 축소된 상황이다.

■ 증권거래대금 추이 ■

(단위 : 조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유가증권	1,327	1,113	1,294	1,598	1,227	3,026	3,825	2,216	2,353	2,621
코스닥	874	835	896	1,202	1,060	2,682	2,942	1,698	2,456	2,04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세율 변화 및 거래대금 규모 변동 추세에 따라 증권거래세 납부세액도 증감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증권거래세 납부세액은 유가증권의 경우 2015년 2.0조원에서 2021년 2.7조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는 1.0조원으로 감소하였다. 코스닥 시장의 납부세액은 2015년 2.6조원에서 2021년 6.7조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4.8조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등 기타 증권의 납부세액은 2015년 0.3조원에서 2023년 0.2조원으로 감소하였다.

■ 증권거래세 납부세액 신고 현황 ■

(단위 : 조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유가증권	2.0	1.7	1.8	2.2	1.3	2.7	2.7	1.6	1.0
코스닥	2.6	2.5	2.7	3.6	2.8	6.6	6.7	3.9	4.8
기타	0.3	0.3	0.3	0.3	0.3	0.3	0.4	0.4	0.2

주 : 기타는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주요 개정연혁

증권거래세율 변화

증권거래세율은 「증권거래세법」의 세율 외에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근거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의 세율 조정을 살펴보면, 2019년 투자자의 세부담 완화 및 모험자본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대한 탄력세율을 0.05%p(이하, 전년대비) 인하하고 코넥스 시장에 대한 탄력세율은 0.2%p 인하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시점의 소액 투자자 지원 및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을 2020년 0.05%p, 2021년 0.02%p, 2023년 0.08%p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등의 세율이 0.50%에서 2023년 0.3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된 상황이다.

2021년 이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세율도 인하되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계획과 함께 증권거래세율이 점진적으로 2021년 0.02%p, 2023년 0.03%p, 2024년 0.02%p 인하되었으며, 이후 2025년에도 0.03%p 인하가 이루어졌다³⁸⁴⁾.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영(0)의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에 대해서는 0.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³⁸⁵⁾

Ⅱ 증권거래세율 변화 Ⅱ

(단위 : %)

구분		2017. 4.1.~	2019. 6.3.~	2020. 4.1.~	2021. 1.1.~	2023. 1.1.~	2024. 1.1.~	2025. 1.1.~
탄력세율 (시행령)	유가증권	0.15	0.10	0.10	0.08	0.05	0.03	0.00
	코스닥	0.30	0.25	0.25	0.23	0.20	0.18	0.15
	코넥스	0.30	0.10	0.10	0.10	0.10	0.10	0.10
기본세율	그 외	0.50	0.50	0.45	0.43	0.35	0.35	0.35

주: 1.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 과세됨

2.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은 기본세율이 적용됨

384) 2020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세법개정으로 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2년 유예된 후 2024년 세법개정으로 도입이 폐지됨

385)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율은 0이 되나, 농어촌특별세가 0.15% 부과되므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세부담은 0.15%로 동일함

3.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가.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방식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양도자 또는 양수자로 구분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과³⁸⁶⁾ 증권시장 밖에서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장외 매매거래(K-OTC) 방식으로 양도되는 비상장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된다.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외 주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자(양수자³⁸⁷⁾)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내용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과 증권시장 밖에서 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방식으로 양도되는 비상장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 시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 시
양도자 및 양수자	사인 등을 통해 주권 등을 양도 시

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의 유가증권 시장 등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 유가증권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한국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장내거래(K-OTC 포함) 등 한국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인 주권에 대해서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그 외의 장외거래 주권 등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한다.³⁸⁸⁾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시가 또는 정상가격³⁸⁹⁾보다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된다. 주권 등

386) 2025년 3월 주식거래 시간 연장, 호가 유형 다양화 등을 위하여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가 출범함 2025년 3월 현재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에 따라 한국거래소 주식시장의 상장주식과 동일한 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납세의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임

387)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388)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양도가액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 관련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³⁹⁰⁾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시장 밖에서 장외거래하는 경우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된 주권 등을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이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책정 ■

납세의무자	양도가액 책정 기준			과세표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증권시장 밖에서 협회를 통해 장외매매거래 방식으로 양도되는 비상장주권			주권의 양도가액
그 외 납세의무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주권 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		시가
		주권 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		정상가격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매매거래 기준가액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 시	거래소 공표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금투협회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 한 주권 등을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 시	금융투자협회 공표 양도일 매매거래 기준가액
		이 외 방식으로 주권 등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 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다. 세율

「증권거래세법」³⁹¹⁾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0.35%이다. 다만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행령³⁹²⁾에 따라 탄력세율을 운용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유가증권 시장은 영(0)의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시장 및 K-OTC 시장은 0.15%, 코넥스 시장은 0.1%의 세율을 적용한다.

389)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함

390)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391)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39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 현행 증권거래세율: 2025년 ■

기본세율	탄력세율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K-OTC	코넥스 시장
0.35%	0	0.15%	0.10%

주: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과세됨

라. 비과세 및 감면

증권거래세의 비과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³⁹³⁾,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금융위원회 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주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³⁹⁴⁾의 경우에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감면제도 중 대표적인 항목은 금융시장의 효율화 및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로, 주가지수 파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주식 및 선물·옵션 시장조성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함에 따라 2023년 1,198억원의 감면이 이루어졌다. 그 외 2023년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액은 451억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액은 130억원이었다.

■ 증권거래세 감면항목 및 실적 현황 ■

(단위: 억원)

감면항목	법조문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융시장 효율화 및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 117① 2-5, 3, 5	891	1,696	1,615	1,043	1,198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 117① 7, 7-2, 7-3, 8, 9, 14, 16, 19, 19-2, 19-3, 21~24	481	102	811	1,690	45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 117①1, 2, 2-2, 2-3, 2-4, 4	110	119	166	137	130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93) 다만, 「국가재정법」(별표 2)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394)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 대여자가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 등 차입자에게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로, 대차증권의 소유권이 차입자에게 이전되며 대차증권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수익권은 대여자에게 귀속되는데 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증권을 상환하는 형태임

마. 신고 및 납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 양도자³⁹⁵⁾ 등의 납세의무자는 매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95)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수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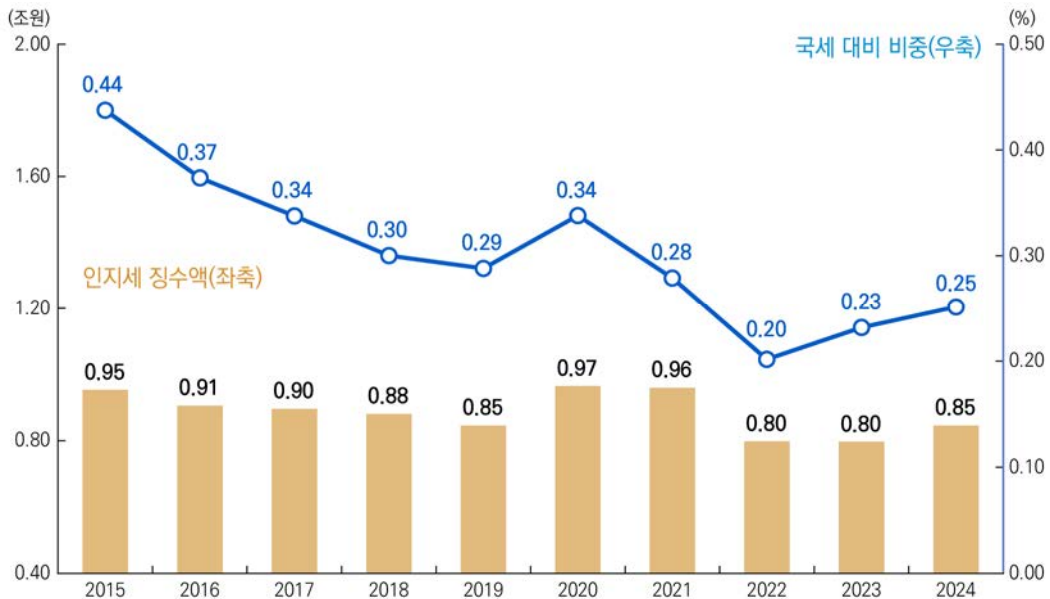
제2절 인지세

1. 개요

인지세(印紙稅)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대상으로 해당 문서의 작성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인지세는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를 붙임으로써 조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조세로서 국가의 재정확보 수단으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담세력(소득이나 재산)을 포착하여 과세하지 못하므로 현대적인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2024년 인지세 징수액은 0.85조원으로 2023년 대비 491억원(6.2%) 증가하여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최근 10년간 인지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5년 0.95조원 이후 2024년까지 1조원 안에서 소폭 변동하는 모습이다. 전체 국세 중 인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0.44%에서 2022년 0.2%까지 하락하였으나 2024년 0.25%로 소폭 상승하였다.

■ 최근 인지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가. 납세의무자

「인지세법」 제1조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그 문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과세대상 및 세액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의 과세대상 문서는 총 12개로 재산 또는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변동·등록·발행 증서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의 종류 및 기재금액에 따라 정해진 세액이 과세되는 종량세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경우 건당 3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대출금액)에 따라 2~35만원의 인지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및 세율 ■

과세문서	세율(건당)	
	기재금액	세율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도급·위임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4.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저작권·상호권의 양도증서 5.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 증서(회원제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등)	1천만원 ~ 3천만원	2만원
	3천만원 ~ 5천만원	4만원
	5천만원 ~ 1억원	7만원
	1억원 ~ 10억원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6.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 증서	3천원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300원	
8. 상품권 및 선불카드, 모바일상품권(5만원 초과분)	권면금액	세율
	1만원	50원
	1만원 ~ 5만원	200원
	5만원 ~ 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9.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400원	
10.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11. 시설대여 계약서	1만원	

과세문서	세율(건당)
12.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사채보증 증서	1만원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보증 증서	1,000원
-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채무보증 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자금 용자에 대한 신용보증 증서	200원

다. 비과세 및 면세

「인지세법」 제6조는 총 12개의 문서에 대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국고금 취급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사업 기부 및 자선·구호 및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민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예·적금, 용자에 대한 면제,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에 대한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용자받기 위해 작성하는 각종 서류 등에 대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³⁹⁾하고 있다.

■ 인지세 비과세 문서 ■

「인지세법」 제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작성하는 증서·통장	증권의 복본 또는 등본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서
공공사업 관련 기부를 위하여 국가 등에 제출하는 증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자선·구호단체의 사업 관련 증서	수용된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수반되는 증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소유권이전 관련 증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발행 관련 증서

■ 인지세 감면실적 현황 ■

(단위: 억원)

감면항목	법조문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어민 지원을 위한 면제	조특법 § 116①5,6,7,9,11	81	92	116	94	88
창업중소기업 용자서류 면제	조특법 § 116①19	4	6	6	7	7

주: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9)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라. 납부세액

2023년 인지세 납부세액을 살펴보면 크게 한국은행분 4,605억원과 현금납부분 3,355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은행분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은행 등이 발행·관리·판매하고 있는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이며, 현금납부분은 현금으로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표시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2023년 현금납부분을 살펴보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가 2,615억원(77.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상품권·선불카드 385억원(11.5%), 예금통장·보험증권 174억원(5.2%) 등이다.

과세문서별 인지세 납부세액

(단위: 억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현금 납 부 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2,230	3,211	2,545	2,121	2,615
	상품권, 선불카드	345	340	402	369	385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230	165	160	165	174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505	201	108	73	72
	모바일 상품권	0	23	24	34	49
	시설대여 계약서	19	25	24	24	21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	52	15	17	18	16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8	6	7	13	7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3	15	15	8	13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4	4	4	3	3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8	2	2	2	1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0.03	0.02	0.01	0.02	0.01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양도에 관한 증서	0.05	0.10	0.01	0.01	0.01
	소계	3,414	4,007	3,307	2,829	3,355
한국은행분 ¹⁾		5,039	5,784	6,202	5,052	4,605

주: 1)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전자수입인지 판매금액으로 과세문서에 첨부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신고 및 납부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³⁹⁷⁾한다.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97) 「인지세법」 제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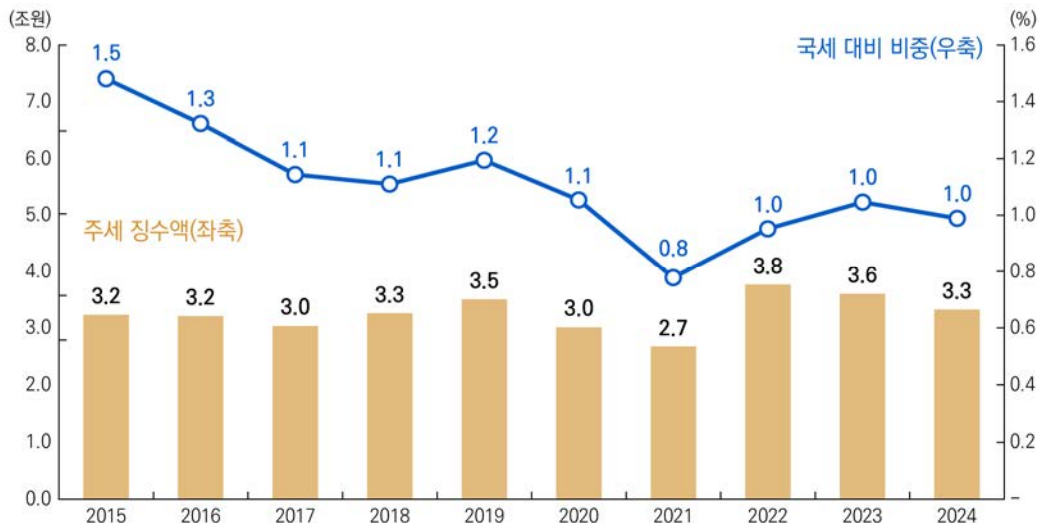
제3절 주세

1. 개요

주세(酒稅)는 국내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을 기준으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비세이다.³⁹⁸⁾ 주종별 과세체계는 주정, 탁주, 맥주 등과 같이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소주, 위스키 등과 같이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로 구분된다. 주세의 징수액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입된다.³⁹⁹⁾

2024년 주세 징수액은 3.3조원으로 국세수입 대비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 징수액을 살펴보면, 2015년 3.2조원(국세수입 대비 1.5%)에서 2019년 3.5조원(국세수입 대비 1.2%)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2021년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 위스키 수입 증가⁴⁰⁰⁾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2022년 3.8조원까지 증가한 이후, 최근 들어 다시 감소 추세에 있다.

■ 최근 주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98) 주세에는 부가세로 교육세 부과(세율은 주세율 70% 이상 증류주 및 맥주에는 주세액의 30%, 그 외 주류에는 주세액의 10%)

39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광역간 협력연계 목적의 중앙부처 편성사업(지역자원 계정)에 60%,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지역자원계정)에 40% 배분함

400) 위스키 수입금액은 2021~2022년간 51.9% 증가(2021년 1.8억불, 2022년 2.7억불)(자료 : 한국주류수입협회)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가. 납세의무자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는 자이다.

나. 과세대상

주세의 과세대상은 주류이다. 주류란 주정⁴⁰¹⁾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된다. 과세대상은 크게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로 나뉜다. 발효주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로 구분되며, 증류주류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등을 포함한다.

■ 주세의 과세대상 및 품목 ■

과세대상	품목
발효주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	소주, 위스키, 일반증류주, 브랜디, 리큐르
기타주류	분말주,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 이외의 발효주, 발효주 + 증류주 등

다. 과세표준 및 세율

주세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주정, 탁주, 맥주에 대해서는 반출량(또는 수입신고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종가세가 적용되는 나머지 약주, 과실주, 청주, 증류주에 대해서는 반출가격(또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규모로 제조되는 약주 및 청주의 과세표준(가격)은 60~80%, 탁주의 과세표준(수량)은 60~80%, 맥주의 과세표준(수량)은 30~80% 경감된다.

세율은 주정의 경우 킬로리터당 57,000원을 적용하되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 1도마다 600원씩 세액을 가산한다. 맥주에 대한 세율은 885,700원/kl, 탁주에 대한 세율은 44,400원/kl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2019년까지는 출고가 기준으로 맥주의 경우 72%, 탁주는 5%를 적용하는 종가세 체계가 적용되었으나, 2020년부터 종량세 체계로 전환되었다.⁴⁰²⁾ 2022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량세 기본세율을

401) 녹말, 당분,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402) 수입주류가 과거에 비해 대중화되면서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조정하였다가, 일반 물가수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2023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물가반영 범위를 축소(가격변동지수, 70% 반영)한 바 있다. 2024년에는 물가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시행령을 통해 기본세율의 $\pm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5년 맥주의 기본세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 외 주류는 종가세 방식으로 출고가에 대해 30%(약주, 과실주, 청주 등) 또는 72%(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 세율로 과세된다. 2024년부터는 종가세 국산 주류에 대해서는 주류 종류 등에 따른 평균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만큼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⁴⁰³⁾

다만, 우리 전통주 가운데 직전 연도 출고량이 일정수준(발효주 1,000킬로리터, 증류주 500킬로리터) 이하로 소규모 생산되거나 해당 연도 신규 면허자가 주조한 주류에 대해서는 연간 일정량(발효주 400킬로리터, 증류주 200킬로리터)까지 기본세율 대비 최대 50% 범위에서 경감세율이 적용된다.⁴⁰⁴⁾

■ 주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과세대상	주종	세율
반출량 (종량세)	주정	주정	57,000원/kl(85 ~ 95도) * 알콜분 95도 초과 1도당 600원씩 가산
	발효주	탁주 맥주	44,400원/kl 885,700원/kl(생맥주 80%)
반출 가격 (종가세)	증류주	약주, 과실주, 청주	30%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72%
	기타	발효에 의한 제성주류로 발효주가 아닌 것 발효에 의한 제성주류로 탁주, 양주, 청주, 맥주, 과실주 이외의 것	30%

■ 국산 주류 과세표준 결정 시 기준판매비용 ■

(단위 : %)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약주	청주	과실주	기타주류
22.0	23.9	8.0	19.7	20.9	20.4	23.2	21.3	18.1

주 :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약주·청주·과실주·기타주류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

403)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

404) 「주세법」 제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

라. 면세

「주세법」은 비과세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면세는 주류 반출과 주류 수입에 대한 면세로 구분할 수 있다. 반출에 대한 면세는 수출면세, 군납면세, 주한외국공관 면세 등 10개 항목에 적용된다. 수입에 대한 면세는 외국공관면세, 의약품 원료 면세 등 6개의 항목에 적용된다.

2023년 주세의 감면 신고 및 실적은 수출 주류에 대한 면세 2,090억원(신고 기준),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 913억원, 군납 주류에 대한 면세 111억원 등이었다.

■ 주세 감면 추이: 2019 ~ 2023년 ■

(단위: 억원)

감면항목	법조문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주세법 § 20	2,726	2,417	2,280	2,355	2,090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조특법 § 121의13	355	412	882	1,054	913
국군납품	조특법 § 114	248	219	202	197	111
한국주둔 외국군대	조특법 § 115	2	3	4	5	3

주: 수출 항목은 신고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및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납부세액

2023년 주세의 국내분 주류별 신고세액을 살펴보면 희석식 소주 1조 3,496억원, 맥주 1조 2,622억원, 증류식 소주 426억원, 기타 주류 629억원, 청주 230억원 순이다. 최근 5년간 주류별 신고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과실주, 리큐르, 기타 주류 등의 세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맥주의 세액은 2021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주류별 주세 신고세액 추이(국내분): 2019 ~ 2023년

(단위: 억원)

연도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주정
2019	190	122	222	12,466	175	123	12,635	17	-0.1	39	61	480	23
2020	188	105	217	11,109	186	144	12,519	14	-0.2	32	50	569	33
2021	182	125	233	10,932	244	210	11,982	20	0.02	32	89	555	27
2022	174	132	258	12,347	240	462	13,468	65	0.1	43	107	617	26
2023	176	101	230	12,622	258	426	13,496	26	6	47	190	629	25

주: 신고세액은 '납부할세액'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 주세 신고세액을 국내분과 수입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내분 주류의 신고세액은 2조 8,233억원, 수입분 주류의 신고세액은 7,762억원 수준이다. 전체 신고세액 중 국내분 주류 신고 비중은 2019년 83%에서 2023년 78%로 감소 추세인 반면, 위스키 및 포도주 수입 증가 등에 따라⁴⁰⁵⁾ 수입분 주류 신고 비중은 2019년 17%에서 2023년 22%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내분 및 수입분 주세 신고세액 현황: 2019 ~ 2023년

(단위: 억원, %)

연도	국내분		수입분		전체
	신고세액	비중	신고세액	비중	
2019	26,553	83	5,501	17	32,054
2020	25,164	83	5,220	17	30,384
2021	24,629	79	6,374	21	31,003
2022	27,938	78	7,792	22	35,730
2023	28,233	78	7,762	22	35,995

주: 신고세액은 '납부할세액'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바. 신고 및 납부

주류의 신고 및 납부는 주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달리 적용된다. 주류 제조 및 출고업자는 매 분기 주류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한다.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및 납부한다.

405) 수입금액 연평균증가율: 위스키 41.8%('20~'22년), 포도주 31.1%('19~'22년)(자료: 한국주류수입협회)

3.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전통주 산업 지원 목적에서 2025년 시행 「주세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범위가 확대되었다.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적용 세율범위가 기존 기본세율의 50%에서 개정세법에서는 기본세율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⁴⁰⁶⁾

이에 근거하여 경감세율 및 적용한도가 관련 시행령을 통해 개정되었는데, 발효주의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반출수량 200kl 이하에 대해서만 경감세율 50%가 적용되던 것에서, 개정 제도에서는 반출수량 200kl 이하는 기존과 같이 경감세율 50%가 여전히 적용되면서 반출수량 200kl 초과에서 400kl 이하에 대해서도 경감세율 30%가 새로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었다.⁴⁰⁷⁾ 또한, 증류주의 경우는 기존 제도에서는 반출수량 100kl 이하에 대해서만 경감세율 50%가 적용되었으나, 개정 제도에서는 반출수량 100kl 이하는 기존과 같이 경감세율 50%가 여전히 적용되면서 반출수량 100kl 초과에서 200kl 이하에 대해서도 경감세율 30%가 새로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었다.⁴⁰⁸⁾

한편, 주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전통주 제조자의 대상범위도 관련 시행령을 통해 확대되었는데, 전년도 출고량기준으로 종전에는 발효주 500kl이하, 증류주는 250kl이하인 전통주 제조자가 주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제도에서는 발효주 1,000kl이하, 증류주는 500kl이하인 전통주 제조자로 확대되었다.⁴⁰⁹⁾

4. 국제동향

주요국의 주세 과세체계

OECD 주요 회원국은 주류에 대해 대체적으로 종량세 과세방식을 채택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호주 등 일부 국가는 종가세를 일부 적용하거나 주류별로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종량세 체계는 OECD 38개국 중 EU 회원국⁴¹⁰⁾ 등 32개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데, 맥주·증류주 등에 대해 제품 내 알코올 부피를

406) 「주세법」 제8조제3항 개정(2024.12.31.)

407) 「주세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1호 신설(2025.2.28.)

408) 「주세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2호 신설(2025.2.28.)

409) 「주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개정(2025.2.28.)

기준으로 과세하며, 와인에 대해서는 제품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중 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뉴질랜드·호주·영국 등 12개국에서는 종량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는 세율 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의 경우 세율을 연간 2회 조정한다.

OECD 38개국 중 6개국이 최소 1개 이상 주종에 대하여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맥주·탁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 호주의 경우 와인, 칠레·콜롬비아·멕시코 등은 전체 주류에 대해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오스트리아·스페인 등과 같이 자국의 주력 산업 보호 목적에서 폭넓은 비과세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도 있다.

■ 주요국의 주세 과세체계 비교: 2024년 ■

과세방식	맥주(beer)	와인(still wine)	증류주(undenatured ethyl alcohol)
종량세 (알코올 부피 기준)	호주 ^P , 오스트리아, 벨기에, 코스타리카 ^P ,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P ,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P , 이탈리아 ^P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P ,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P	코스타리카 ^P , 아이슬란드, 스웨덴, 튀르키예, 영국 ^P	호주 ^P , 오스트리아, 캐나다 ^P , 코스타리카 ^P ,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P ,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P , 라트비아,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P , 스페인 ^P , 스웨덴, 스위스, 영국 ^P
종량세 (제품 부피 기준)	캐나다 ^P ,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P , 스페인 ^P , 스위스, 미국	벨기에, 캐나다 ^P ,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P , 아일랜드,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P , 노르웨이, 폴란드, 미국	벨기에,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P ,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P , 포르투갈 ^P , 미국
종가세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튀르키예	호주, 칠레, 콜롬비아, 한국,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한국, 멕시코,

주: 1. 와인은 스틸와인(still wine), 증류주(undenatured ethyl alcohol)는 관세코드(2007, 2008)에 따라 구분된 주류에 해당함

2. P는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경우를 가리킴

3. 캐나다와 미국은 주세에 대해 연방세와 지방세를 적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연방세 기준으로 조사

자료: OECD(2024), 「Consumption Tax Trends 2024」; WHO 홈페이지, “Level of taxation adjusted for inflation”; EC홈페이지, Taxes in Europe Database v3(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tedb/taxSearch.html)

410) EU는 회원국 간 유해한 조세경쟁 및 회피와 국경 간 무역활동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부터 알코올 함유 음료에 대한 소비세 규율을 적용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주세체계 확립을 위해 주류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소비세 구조, 과세대상, 제조장 및 소규모 제조장, 특정 제품 및 지역에 대한 할인을 등을 규정하는 지침(Directive 92/83/EEC)이 통과되었으며, 주세 최저한세 수준을 제시한 지침(Directive 92/84/EEC)도 통과됨. 다만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주세 과세체계의 완전한 일치(full harmonization)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각 주종별 최저세율(minimum excise duty rate)의 형태로만 채택된 상황임(홍범교 외, 「주요국의 주세율 과세제도 비교연구 - 맥주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6.를 참고하여 작성)

제4절 교육세

1. 개요

교육세(教育稅)는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금융 및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개별소비세 세액 일부(담배·프로판·천연가스·유연탄 제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부가세(附加稅, surtax) 방식의 목적세이다. 1958년 8월 최초 신설 후 1961년 12월 폐지되었으나, 1982년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5년 한시의 목적세로 재도입된 후 한 차례 기한연장을 거쳐 1992년부터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교육세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특별지원회계의 재원⁴¹¹⁾으로 배분되고 있다.

2024년 교육세 징수액은 5.4조원으로 국세수입 대비 1.6%의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10년간 교육세 징수액은 2015년 4.9조원에서 2019년 5.1조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및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 변동 등에 따라 증감세가 반복되고 있다. 국세 대비 교육세의 비중은 2015년 2.2%에서 2022년 1.2%로 감소하다가 2024년에는 1.6%까지 증가하였다.

■ 최근 교육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8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가. 납세의무자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금융 및 보험업자,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주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금융 및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개별소비세의 세액 일부,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및 주세액이며, 각각 0.5%, 30%, 15%,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다만, 개별소비세의 과세품목 중 프로판, 천연가스, 유연탄 및 담배분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등유, 중유, 부탄 및 부생유분에 대해서는 세율 15%가 부과된다. 또한, 주세의 과세품목 중에서도 맥주, 증류주 등에는 세율 30%가 부과된다.

■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금융 및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0.5%
개별소비세액	30% (단, 프로판·천연가스·유연탄·담배 제외, 등유·중유·부탄·부생유 15%)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5%
주세액	10% (단, 맥주·증류주 등 30%)

다. 비과세 및 면세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자가 운영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 교육세는 비과세되고 있다. 그 외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경우 교육세도 함께 면제된다. 2023년 기준 교육세 감면실적을 살펴보면,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다자녀가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른 교육세 면제액이 2,070억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크다. 다음으로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 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교육

세 감면액,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교육세 감면액이 각각 739억원, 632억원, 59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세 감면실적 현황: 2019 ~ 2023년 ■

(단위: 억원)

감면항목	법조문	2019	2020	2021	2022	2023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다자녀가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관련	개소법 § 18①3	654	820	885	1,118	2,070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법 § 106의2①	1,175	1,243	1,169	794	739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조특법 § 109①	265	225	325	441	632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조특법 § 109④	172	147	210	484	595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관련	개소법 § 19의2	375	78	110	271	3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특례	조특법 § 121의13	107	124	265	316	274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관련	조특법 § 111의6	(신설)		85	90	(종료)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관련	조특법 § 111의3	78	67	62	60	57
군인 등에 대한 판매품의 개별소비세 및 주세 면제 관련	조특법 § 114	73	64	60	58	42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조특법 § 109⑦	21	42	50	62	41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법 § 106의2①	54	47	48	35	30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관련	개소법 § 19의2	7	7	6	6	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관련	조특법 § 111의5	(신설)		3	4	4
도서지방발전용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법 § 106①	2	2	2	1	1
주한외국군인 등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관련	조특법 § 115	1	0	0	0	0
주한 미군 등에 대한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관련	개소법 § 19의3	0	0	0	0	0
외교관용 등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관련	조특법 § 110	0	0	0	0	0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조특법 § 121의15	-	20	32	(종료)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조특법 § 112	(신설)	11	15	(종료)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인하 관련	조특법 § 109의4	(신설)	1,404	(종료)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조특법 § 109의2	113	158	(종료)		

주: 법조문 중 「조세특례제한법」은 조특법, 「개별소비세법」은 개소법으로 약칭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납부세액

2023년 기준 교육세 징수액의 세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자 수익분이 1.7조원으로 교육세 전체 징수액 대비 가장 큰 비중(34%)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분 1.6조원(교육세 징수액 비중 32%), 주세분 8천억원(16%), 수입분 5천억원(10%), 개별소비세분 4.5천억원(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세의 세원별 징수액 현황: 2019 ~ 2023년 ■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분	금융 및 보험업자 수익금액	12,768	11,382	11,752	12,527	17,504
	개별소비세	4,548	4,403	4,349	4,044	4,501
	주세	8,437	7,333	6,083	8,649	8,218
	교통·에너지·환경세	21,898	20,401	24,964	16,692	16,272
수입분		3,448	3,409	3,882	4,523	5,01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신고 및 납부

금융 및 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분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때에 교육세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제5절 농어촌특별세

1. 개요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감면액 및 개별소비세액, 상장주식 증권양도가액, 취득세액, 레저세액, 종합부동산세액 등 본세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부가세(surtax)이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을 계기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징수액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입된다. 1994년 도입 당시 적용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이후 10년씩 세 차례 연장되며 현재 적용기한은 2034년 6월 30일까지이다.

농어촌특별세는 2024년 7조원 징수되어 2023년 6.6조원 대비 0.46조원(7.0%) 감소하였다. 최근 10년간 농어촌특별세 징수액은 2019년까지는 3~4조원대를 유지하였으나 2020~2021년 주식거래 활성화에 따라 증권거래액 증가와 함께 약 9조원 수준까지 증가하였다가, 증권거래 둔화의 영향으로 2022년 7조원으로 하락한 후 2023년 6.6조원, 2024년 7조원이다.⁴¹²⁾ 전체 국세에서 농어촌특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6%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 1.8%로 하락한 후 2023년 1.9%, 2024년 2.1%이다.

■ 최근 농어촌특별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12) 2016~2023년 농어촌특별세의 세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증권거래분이 전체의 40~60%를 담당하고 있음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고급가구, 모피, 오락기 등 사치성 물품의 소비 및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취득세·레저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감면받은 세액 또는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및 레저세액·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과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은 10%, 상장주식의 증권양도가액에 대해서는 0.15%의 세율이 적용된다.

■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30%
• 소득세(이자·배당·금융투자 소득 제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 레저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	20%
•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 • 고급가구, 모피, 오락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 취득세액(표준세율은 2%로 적용)	10%
• 상장주식의 증권양도가액	0.15%

나. 비과세 및 면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대표적으로 국가(외국정부 포함)·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각종 비과세종합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감면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등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Ⅱ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Ⅱ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 6· § 7 등)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 40)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 16)
저축·배당에 대한 특례(「조세특례제한법」 § 86의3· § 86의4· § 87· § 87의2· § 87의5· § 88의2· § 88의4· § 88조5· § 91의14· § 91의16~ § 91의2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조세특례제한법」 § 21)
국제협약·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증권거래세 비과세(「증권거래세법」 § 6) 및 영세율(「증권거래세법」 § 8 ②)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등록, 임시건축물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지방세특례제한법」 § 6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지방세법」 § 12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5)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8④)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과세특례,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보조금 과세특례,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 20· § 100· § 140· § 14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 30의4)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 121의24)
기술·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납부세액

2023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을 세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농어촌특별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원은 증권거래분(3.1조원, 47.2%)이며, 다음으로 지방세(1.1조원, 16.6%), 법인세감면액(1조원 14.5%), 종합부동산세(0.9조원, 13.8%), 소득세감면액(0.4조원, 6.7%) 순이다.

■ 농어촌특별세의 세원별 납부세액 현황 ■

(단위 : 억원, %)

본세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득세 (감면액)	1,386 (3.5)	2,248 (3.6)	3,261 (3.7)	3,471 (5.0)	4,361 (6.7)
법인세 (감면액)	4,230 (10.9)	4,712 (7.5)	6,248 (7.0)	8,692 (12.4)	9,502 (14.5)
개별소비세	578 (1.5)	567 (0.9)	585 (0.7)	643 (0.9)	635 (1)
증권거래세	16,350 (41.7)	36,157 (57.8)	53,401 (60.0)	30,682 (43.7)	30,957 (47.2)
종합부동산세	5,054 (12.9)	6,798 (10.9)	11,717 (13.2)	12,995 (18.5)	9,080 (13.8)
지방세	11,381 (29.0)	11,995 (19.2)	13,647 (15.3)	13,472 (19.2)	10,881 (16.6)
관세 (감면액)	232 (0.6)	125 (0.2)	141 (0.2)	175 (0.2)	160 (0.2)
합계	39,211	62,602	89,000	70,131	65,576

주: ()안의 값은 전체 농어촌특별세 대비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및 관세청, 「관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신고 및 납부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장

관세

제1절 개요

1. 개념 및 의의

관세(關稅)는 소비과세 중 하나로서, 수출입에 따른 관세선(關稅線) 또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고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이다.

1878년 8월 10일 부산의 두모진(豆毛鎭)에 세관이 최초로 설치되어 조선인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징수되기 시작하였고,⁴¹³⁾ 1882년 5월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조선의 관세 자주권이 최초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국권피탈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자 일본의 관세제도가 그대로 통용되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까지도 잠정적으로 답습되다가 1949년 11월 「관세법」의 제정으로 관세 부과·징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관세정책은 1950년대에는 재정 조달 기능을, 1960~1970년대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시장개방 압력과 민간주도형 경제체제 확립에 따라 현재와 같은 시장중심적인 관세정책 기초가 유지되고 있다.⁴¹⁴⁾⁴¹⁵⁾

관세는 부과 대상물품의 성격에 따라 수출물품에 부과하는 수출관세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 수입관세만 부과하고 있다.⁴¹⁶⁾

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무역 정책에 해당한다. 특정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동종 물품의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세의 수입 억제 기능은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기능을

413) 그러나 1878년 개항장인 부산 동래부 두모진에서 조약에 없는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일본인상인들이 항의하며 조선정부와 충돌한 두모진관세사건이 발생하였고 결국 세관이 폐쇄되었음

414) 1949년 「관세법」 시행 당시에는 관세율이 10~100%까지 11단계로 나뉘어 생활 필수품 여부, 국내생산 여부, 가공도 및 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나 이후 수차례에 걸쳐 관세율 인하, 관세율 단계의 축소 등 관세율 체계를 개편하여 현재와 같은 관세 부과·징수 체계가 확립되었음

4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제사 제2편 주세별 역사와 평가: 제2권 소비과세·관세」, 2012.12. pp.271~321

416)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관세만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의 특정상품의 가격인정 및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특정상품의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인 수출관세(export duties)를 1차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례도 있음.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경우 대두(콩), 해바라기씨 등 농산물과 리튬, 구리 등 원자재에 대해서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세는 사치품에 대한 소비 억제, 재정수입 확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관세의 재정수입 확보 기능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의 체결⁴¹⁷⁾ 및 물가안정 수단으로서 할당관세 제도의 적극적인 운용 등으로 약화되는 추세이다.

2. 최근 현황

2024년 관세 징수액은 7.0조원으로, 2023년 7.3조원 대비 0.3조원(△4.3%) 감소하였다. 최근 관세 징수액은 FTA 확대 및 할당관세 운용에 따른 실효세율의 하락과 통관수입액의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2024년 관세 징수액 ■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	
			증감액(C=B-A)	증가율(C/A)
관세	7.3	7.0	△0.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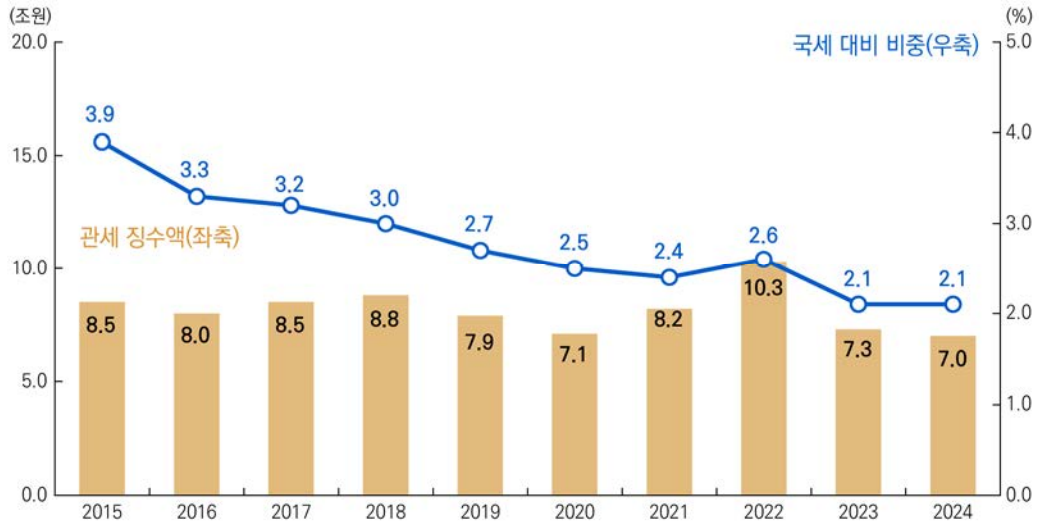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10년 관세 징수액 규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9조원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2022년 들어 10.3조원으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3년 7.3조원, 2024년에는 7.0조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2023년 경기침체로 통관기준 수입액이 감소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액이 증가⁴¹⁸⁾한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전체 국세수입 대비 관세 징수액의 비중은 2015년 3.9%에서 2024년 2.1%로 하락 추세를 보인다. 이는 한-EU FTA(2011년 7월 1일 발효), 한국-미국 FTA(2012년 3월 15일 발효), 한국-중국 FTA(2015년 12월 20일 발효) 등 주요 무역국과 체결된 FTA의 영향이 반영된 점, 최근 할당관세의 적극적인 운용 등에 따라 관세 징수액이 감소한 점 등에 기인한다.

417)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첫 FTA 발효 이후 2024년 현재 59개국과 21건의 FTA를 맺고 있음

41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2023년 관세 환급액은 약 4조 424억원으로, 2022년 대비 7,787억원 증가하였음. 이에 대해 관세청은 2022년 고유가·고환율 시기에 수입된 원유를 정제한 정유사 등이 수입이 이루어진 다음 연도인 2023년에 관세 환급을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2023년 관세 환급액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 최근 관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주요 개정연혁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완화

FTA는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맺고 있다.⁴¹⁹⁾

419) 2025년 2월 기준 WTO에 통보되어 발효 중인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총 615건이며, 그 중 FTA는 343건(전체 지역무역협정 대비 5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 외 서비스무역협정(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이 211건(34.3%),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30건(4.9%), 개발도상국간 특혜협정(PSA, Partial Scope Agreement)이 29건(4.7%)임

■ 우리나라 FTA 발효 현황: 2025년 2월 기준 ■

대상국가	발효일	대상국가	발효일
칠레	2004.4.1.	캐나다	2015.1.1.
싱가포르	2006.3.2.	중국	2015.12.20.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¹⁾	2006.9.1.	뉴질랜드	
ASEAN ²⁾	2007.6.1.(상품) 2009.5.1.(서비스) 2009.9.1.(투자)	베트남	
인도	2010.1.1.	콜롬비아	2016.7.15.
EU	2011.7.1.(잠정) 2015.12.13.(전체)	중미 5개국 ³⁾	2021.3.1.
페루	2011.8.1.	영국	2021.1.1.
미국	2012.3.15. 2019.1.1.(개정)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⁴⁾	2022.2.1.
튀르키예	2013.5.1.(기본·상품) 2018.8.1.(서비스·투자)	이스라엘	2022.12.1
		캄보디아	2022.12.1.
호주	2014.12.12.	인도네시아	2023.1.1.
		필리핀	2024.12.31

주 : 1)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2)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10개국

3)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4) ASEAN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제외 14개국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발효된 최초 FTA인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06년 9월 1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최초로 지역블록을 대상으로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2010년 1월 1일 인도와는 FTA와 동일한 성격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이후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 미국, 중국과도 FTA를 체결하였으며, 2021년 3월 1일에는 중앙아메리카 5개 국가⁴²⁰⁾와의 FTA가 모두 발효되었다. 2022년 2월 1일부터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었는데, 이로 인해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2022년 12월 1일부터는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와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에는 인도네시아와의 FTA가, 2024년 12월 31일에는 필리핀과의 FTA가 발효되었다.

420)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세기준 환율 조정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였다.⁴²¹⁾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팔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일반적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외국환매도율에 비해 약 1% 정도 낮게 형성된다. 과세환율을 종전의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축소되어 2023년부터 관세 인하 효과가 있었다.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1. 과세체계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적용하는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정한 환율이다.

2. 납세의무자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신고한 화주이다. 그러나 화주가 불분명할 경우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된 물품수신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3. 과세대상

관세의 과세대상은 수입물품이다. 「관세법」에서는 별표의 관세율표에서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에서는 과세품목을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부터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까지 21개부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421) '기준환율'은 자국 통화와 여러 외국 통화 간의 환율 결정에서 다른 외국 통화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달러(\$화)의 매매기준율을 의미함. '재정환율'은 미국달러(\$화) 외 모든 통화에 적용되는 환율로, 기준환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산된 원화와 다른 통화 사이의 환율을 의미함

Ⅲ 관세율표에 따른 과세물품 Ⅲ

분류	내용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3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7부	플라스틱 제품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의 제품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제16부	기계류·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20부	잡품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4.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다. 그러나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체계를 적용하며, 일부 영화필름과 비디오테이프 등에 대해서만 수입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체계를 적용한다.

관세의 종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과세가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WTO 관세평가협정’을 따르는데, 이러한 결정 절차를 관세평가

(customs valuation)라고 한다.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의 저가신고를 방지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하고, 부정무역 및 불공정무역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부당한 외화도피, 조세회피, 합법적인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자금 세탁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평하고 적절한 과세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관세평가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은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를 통해 결정된다. 관세평가에는 우선적으로 일반원칙(제1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이를 통한 과세가격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제2평가방법 ~ 제6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단,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평가방법과 제5평가방법의 적용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 관세평가 방법 ■

순위	조항	내용
제1평가방법	「관세법」 제30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지급하는 가격에서 가산 및 공제를 통해 조정한 물품의 거래가격
제2평가방법	「관세법」 제31조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제3평가방법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제4평가방법	「관세법」 제33조	수입 후의 국내판매가격
제5평가방법	「관세법」 제34조	생산비용을 산정한 가격
제6평가방법	「관세법」 제35조	기타,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 가격

자료 : 「관세법」 제30조~제35조

과세환율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적용되는 조세로서 수입품을 국내가격으로 환산하는 환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때 적용되는 환율을 의미하는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이다.⁴²²⁾

422) 「관세법」 제18조

5. 세율

관세율을 법령상의 근거에 따라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해진 국정관세율과 타국과의 조약으로 정해진 협정관세율로 구분할 수 있다.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할당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 등은 별도의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세율과 과세품목을 규정한다. 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협정관세율은 해당 협정 외에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FTA별 협정관세율과 과세품목을 규정한다.

국정관세율

국정관세율은 크게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 일반특혜관세율로 구분되며, 탄력관세율, 일반특혜관세율, 잠정관세율, 기본관세율 순서로 적용된다.⁴²³⁾

관세율의 적용순위

기본관세율과 잠정관세율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관세율(2022년 현재 적용 품목 없음)을 기본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율은 잠정관세율·기본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관세율의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 관세율의 적용순위 ■

구분	적용세율
1순위	덤핑방지관세(「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관세법」 제57조), 보복관세(「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관세법」 제65조), 특정국물품 긴급관세(「관세법」 제67조의2),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관세법」 제68조), 조정관세(「관세법」 제69조)
2순위 ¹⁾	국제협력관세(「관세법」 제73조), 편익관세(「관세법」 제74조)
3순위	조정관세(「관세법」 제69조),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 ²⁾ , 계절관세(「관세법」 제72조)
4순위	일반특혜관세(「관세법」 제76조)
5순위	잠정관세율(「관세법」 제49조제1호)
6순위	기본관세율(「관세법」 제49조제2호)

주: 1) 2순위에 해당하는 관세율의 경우 3~6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하나,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의 경우 세율이 높은 경우에도 5~6순위보다 우선하여 적용

2) 할당관세는 4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

자료: 「관세법」 제50조

423) 「관세법」 제50조

① 기본관세율

기본관세율은 「관세법」 별표에 있는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로 정해진 관세율이다. 우리나라 기본관세율의 2024년 현재 단순평균세율(6,968개 세목)⁴²⁴⁾은 8.7%이다. 세부적으로는 공산품은 평균 6.8%, 농산물은 평균 16.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2022년 실행세율⁴²⁵⁾ 반영 및 세율체계 간소화를 위해 IT 협정품목 중 일부 품목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이전 기간에 비하여 단순 평균세율이 다소 낮아졌다.⁴²⁶⁾

■ 기본관세율의 단순평균세율 ■

(단위 : %)

	'88	'89	'90 ~ '91	'92	'93	'94 ~ '98	'99 ~ '06	'07 ~ '11	'12 ~ '16	'17 ~ '21	'22 ~ '24
전체	18.1	12.7	11.4	10.1	8.9	7.9	8.6	8.5	8.7	8.8	8.7
공산품	16.9	11.2	9.7	8.4	7.1	6.2	6.3	6.9	6.8	6.9	6.8
농산물	25.2	20.6	19.9	18.5	17.8	16.9	18.6	16.9	16.9	17.0	16.8

자료 : 기획재정부, 「2024년 조세개요」, 2024.1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잠정관세율

잠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로, 2025년 2월 현재 기준으로 잠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없다.

③ 탄력관세율

탄력관세율은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부가 법률에서 규정한 일정 범위에서 관세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이다. 탄력관세율 하에서 관세율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할당관세 등 10개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된다.

424) 전체 품목 6,980개 세목 중 종량세 및 선택세 12개 품목을 제외한 세목 수

425) 통관당국이 실제로 국경에서 부과하는 관세율로, 기본적으로 관세율 적용순위에 의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함

426) 전체 세율 구성에서 4,085개 세목(58.6%)에 해당하는 세목에 대해 6~10%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962개 세목(13.8%)에 대해서는 11% 이상의 기본 관세율이, 584개 세목(8.4%)에 대해서는 무세가 적용되고 있음

Ⅱ 탄력관세율의 종류 Ⅱ

세부관세	내용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51조)	외국이 수출품을 정상가격 이하로 부당하게 판매하는 덤핑으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관세법」 제57조)	외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자국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관세
보복관세 (「관세법」 제63조)	자국의 수출품에 불리한 대우를 하는 국가의 상품에 부과하는 차별관세
긴급관세 (「관세법」 제65조)	자국의 주요 산업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부과하는 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관세법」 제67조의2)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 또는 무역 전환이 발생되거나 받을 우려가 있고 국내산업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 부과하는 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관세법」 제68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관세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자국시장이 교란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조정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	원활한 상품의 수급을 위해 특정 상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계절관세 (「관세법」 제72조)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관세
편익관세 (「관세법」 제74조)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에 부과하는 관세

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원활한 물자수급·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할당관세라고 한다.

최근 5년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는 2019년 79개에서 2023년 117개로 48.1% 증가하였다. 세수지원액(한국조세재정연구원 추정)은 2019년 4,709억원에서 2023년 1조 753억원으로 128.3% 증가함에 따라 관세 수입액 대비 세수지원액의 비중도 2019년 6.0%에서 2023년 14.8%로 8.8%p 증가하였다.

■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 및 세수지원(추정)액: 2019~2023년 ■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관세 수입액(결산, A)		78,821	70,585	82,270	103,241	72,883
할당 관세	품목 수	79개	79개	92개	119개	117
	세수지원액(B)	4,709	3,742	6,758	19,694	10,753
관세 수입액 대비 세수지원액 비중(B/A)		6.0	5.3	8.2	19.1	14.8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정부는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5년에도 할당관세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수산 화리툼 등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소재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먹거리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수수, 설탕 등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하고,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해 온 카카오두, 무, 당근 등 7개 품목은 정기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④ 일반특혜관세율

일반특혜관세율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수입 시 기본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세율이다. 일반특혜관세율 대상 국가에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에티오피아, 아이티 등 최빈개발도상국⁴²⁷⁾이 주로 포함되며, 이들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광산물, 농수산물, 동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해당 국가에서 배타적으로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하여 일반특혜관세율이 적용된다.

간이세율

「관세법」에서는 승무원이나 해외여행자들에 의해 소액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신속한 통관 처리를 위해 관세와 기타 세금 등을 통합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이를 간이세율이라고 한다. 간이세율은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우편물(수입신고가 필요한 것은 제외), 탁송품 또는 별송품에 적용할 수 있다.

품목별 간이세율

(단위: %)

품목	세율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55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92만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고급시계, 고급가방	37만4백원 + 185만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기본관세율 10% 이상이며 개별소비세 과세되지 않는 것)	30
가족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기본관세율 10% 이상이며 개별소비세 과세되지 않는 것)	25
녹용(기본관세율 10% 이상이며 개별소비세 과세되지 않는 것)	32
위에 열거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용단, 고급가구, 승용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 제외)	20
위에 열거된 물품이나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용단, 고급가구, 승용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 제외)	

자료: 「관세법 시행령」 별표2

427)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1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가 12개국, 아프리카 지역 국가 33개국, 아메리카 지역 국가 1개 등으로 총 46개국이 포함됨

협정관세율

협정관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 증진을 위해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관세율을 뜻한다.⁴²⁸⁾ 무역 상대방에 양허된 세율이라는 뜻으로 양허세율로 불리기도 한다. 협정 주체별로는 ‘양국 간 협정에 의한 세율’과 ‘다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로 구분된다. 협정 종류별로는 ‘WTO 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WTO 협정 개도국 간의 양허관세율’, ‘방곡협정 양허관세율’, ‘개발도상국 간 무역특혜제도(GSTP) 양허관세율’과 ‘특정국가와의 관세 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 등이 있다.

실효관세율

관세징수액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값을 실효관세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실효관세율은 2012년 1.7%이었으나,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0.8% 수준의 실효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국이 늘어나고 정책적 목표에 따라 탄력관세가 적극 운용되어 통관수입액 대비 실질적인 관세징수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 우리나라 실효관세율 추이: 2012~2024년 ■

(단위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NABOSTATS-조세통계-국세-기타 세목-관세 예·결산 실적

428) 「관세법」 제73조

6. 비과세 및 면세

관세의 비과세 및 면세는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협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관세율표에서 무세가 적용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물품들도 존재한다. 2023년 관세의 총 감면실적은 1조 3,811억원이다.

「관세법」에 근거한 감면으로는 주로 외교관물품 면세, 세율불균형물품(항공기,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 면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면세 등이 있다. 「관세법」에 따른 2023년 감면실적은 1조 2,249억원이며 이는 총 관세감면액의 88.7%를 차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감면은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등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023년 감면실적은 92억원으로, 총 관세감면액의 0.7%이다.

협정에 의한 감면에는 주한미군에 관한 협정(SOFA)에 의한 면세,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에 의한 면세 등이 있다. 이에 따른 2023년 감면실적은 1,471억원으로 총 관세감면액의 10.7%이며, 「관세법」에 따른 감면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 근거법령별 관세의 비과세 및 면세: 2023년 ■

(단위: 억원, %)

근거법령	항목	감면실적
「관세법」	외교관용 물품, 관세율불균형(역관세) 물품, 학술연구용품 등	12,249(88.7)
「조세특례제한법」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 수입 등	92(0.7)
국제협정	주한미군에 관한 협정(SOFA) 등	1,471(10.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관세의 감면실적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용품에 대한 감면이 2023년 기준 278억원의 감면액을 기록하여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과 외국인 투자기업 자본재도입에 대한 감면도 각각 76억원, 57억원의 감면액을 기록하였다.

■ 항목별 관세 감면실적 현황: 2019 ~ 2023년 ■

(단위: 억원)

감면항목	법조문	2019	2020	2021	2022	2023
장애인용품	관세법 § 91 4, 5	235	265	257	238	278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법 § 90①4	114	94	86	103	76
해저광물자원개발	조특법 § 140	2.3	64	175	61	57
금현물시장 금지금	조특법 § 126의7	16	56	122	2	17
외국인 투자기업 자본재도입	조특법 § 121의3	102	47	30	103	23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법 § 95①3	36	30	60	63	43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조특법 § 118①3	2	2	3	4	1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조특법 § 118의2	1	0.3	7	0.2	3

주: 실적이 없거나 집계되지 않은 조항은 제외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결정세액

관세의 결정세액은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종가세가 적용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의 외국통화표시 가격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과세가격을 산출한 뒤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액을 계산한다.⁴²⁹⁾

관세액 = 과세가격(외국통화표시 가격 × 과세환율*) × 관세율

*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429)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 산출은 수입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 수입물품에 따라서 세관장은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음

제4절 신고와 납부

관세의 세액확정방식은 크게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로 나뉜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과고지제도는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여행자 또는 승무원 등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세액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제도이다. 부과고지제도 역시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⁴³⁰⁾을 충족하는 성실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는 월별납부가 가능하다. 이러한 월별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세관장에게 월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다.

수출지원 관세환급

수출지원 관세환급(drawback)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수출지원 관세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조립 등을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 동 원재료를 수입할 때 부담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함으로써 수출가격을 인하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조립되지 않고 수입된 원상태대로 재수출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계무역을 지원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대상 조세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징수한 관세 등으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⁴³¹⁾,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에 한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별도의 환급제도에 따라 돌려받게 된다.

430)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431)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부과하는 부가세로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요 교역국의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과

환급방법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뉜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를 확인하여 그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계산하여 이를 환급하는 방법이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입세액 증명 없이 관세청장이 물품별 환급액을 미리 산출하여 고시한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하는 제도이다.

제5절 보세 및 통관제도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수입 시 통관절차를 거쳐야 최종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뒤 「관세법」에 따라 세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1. 보세제도

보세(保稅)는 세금이 보류되었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에 들어온 수입품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관세유보 및 관세미납의 상태를 의미하며, 수출입 통관의 적정화 및 세관업무의 효율화와 무역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품이 보세구역에 있는 한 관세를 부과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분류·재포장 등이 가능하고, 해외물품이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이동할 때에는 수입세가 부과되거나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한 통과물품 또는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가 생략되기도 한다. 보세제도는 보세구역제도와 보세운송제도로 나뉜다.

보세구역제도 및 보세운송제도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정한 장소로 수출입 물품의 검사, 수출입통관 및 반송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藏置)⁴³²⁾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기타 유사작업을 하거나, 외국물품의 전시·판매 등을 하는 곳을 뜻한다.

보세구역은 설치형식에 따라 지정보세구역, 특별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나뉜

432) 통관하려고 하는 수출입 물품을 보세구역 안에서 임시로 보관하는 일을 의미함

다. 지정보세구역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를 하기 위한 장소이다. 특별보세구역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건물, 시설 등에 대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 및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장치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으로 구분된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의 직권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지정요청자 등의 요청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이다.

보세운송이란 수입물품을 관할 보세구역에서 통관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뜻한다.

2. 통관제도

통관제도는 수출 및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뜻한다.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국내로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수입물품 중 과세대상물품은 수입신고의 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제6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전자상거래 물품의 거래정보를 확보하도록 하여 개인의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는 간소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⁴³³⁾ 전자상거래물품 반입건수가 2021년 8,838만건에서 2023년 1억 3,144만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해외직구 물품이 급증함에도, 기존에는 모든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x-ray 검사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관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통관절차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해외직구로 도입되는 물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고위험 물품에 대해서만 집중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통관 및 위험물품에 대한 관리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빈 개발도상국 졸업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

최빈 개발도상국의 경제 자립 지원을 위한 WTO 권고사항⁴³⁴⁾을 반영하여 최빈 개발도상국 졸업국가에 대해서도 무관세 특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⁴³⁵⁾ 이에 따라 최빈 개발도상국 제외가 예정되어 있는 캄보디아 및 세네갈에 대해서 한시적⁴³⁶⁾으로 특혜관세가 적용될 계획이다.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가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였다.⁴³⁷⁾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처분의 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33) 「관세법」 제254조

434) 2023년 10월 WTO 일반이사회는 UN의 최빈개도국을 위한 도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한 국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기존에 받던 무역 혜택(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유연하고 지속가능(sustainable)한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을 제공할 것을 권고

435) 「관세법」 제76조

436)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별표 1](2025.4.1. 시행 예정)에 따르면 캄보디아 및 세네갈에 대한 특혜관세는 2032년 12월 1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

437) 「관세법」 제264조의2

제7절 국제동향

1. 총조세 대비 관세 비중

한국과 G7 국가를 기준으로 최근 관세 세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코로나 19 감염병이 발발·확산됨에 따라 경기침체, 교역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교역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관세 세수가 이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각 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세계 교역량도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한국 및 G7 국가 모두 2021년·2022년 관세 세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교역의 위축으로 프랑스, 일본을 제외하고는 2023년 관세 세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10년간 총조세 대비 관세 세수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경우 유사한 수준에서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인다. 한국은 2014년 1.1%에서 2023년 0.6%로, 일본의 경우 2014년 1.1%에서 2022년 0.8%로 총조세 대비 관세 세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국은 2014년 1.1%에서 2023년 1.6%로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한국 및 G7 국가의 관세 세수 및 총조세 대비 비중 추이: 2014~2023년 ■

(단위 : 십억달러(\$), %)

국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8.7 (1.1)	7.9 (1.0)	7.3 (1.0)	7.9 (1.1)	8.4 (1.1)	7.1 (1.0)	6.3 (0.9)	7.5 (0.9)	8.4 (1.0)	6.0 (0.6)
캐나다	4.1 (0.9)	4.1 (0.9)	4.1 (1.0)	4.3 (0.9)	5.1 (1.0)	4.1 (0.8)	3.0 (0.6)	4.1 (0.7)	4.7 (0.7)	4.4 (0.7)
프랑스	3.3 (0.4)	2.8 (0.4)	2.7 (0.4)	2.9 (0.4)	3.2 (0.4)	3.0 (0.4)	2.9 (0.4)	3.1 (0.3)	3.1 (0.4)	3.6 (0.4)
독일	6.1 (0.7)	5.7 (0.7)	5.7 (0.7)	5.6 (0.6)	6.0 (0.6)	5.7 (0.6)	5.4 (0.6)	6.3 (0.6)	7.1 (0.7)	6.1 (0.6)
이탈리아	2.7 (0.4)	2.5 (0.5)	2.5 (0.4)	2.6 (0.5)	2.7 (0.5)	2.6 (0.4)	2.3 (0.4)	2.9 (0.5)	3.9 (0.6)	3.3 (0.5)
일본	9.8 (1.1)	8.9 (1.1)	8.6 (1.0)	9.2 (1.0)	9.7 (1.0)	8.7 (0.9)	7.6 (0.8)	7.8 (0.8)	7.5 (0.8)	8.0 -
영국	5.1 (0.6)	4.9 (0.6)	4.7 (0.7)	4.6 (0.6)	4.6 (0.6)	4.5 (0.6)	3.9 (0.6)	6.4 (0.7)	6.9 (0.8)	6.4 (0.7)

국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미국	37.4 (1.1)	38.1 (1.0)	37.5 (1.0)	38.5 (1.0)	53.3 (1.4)	77.8 (1.9)	68.6 (1.7)	89.1 (1.8)	102.3 (1.8)	82.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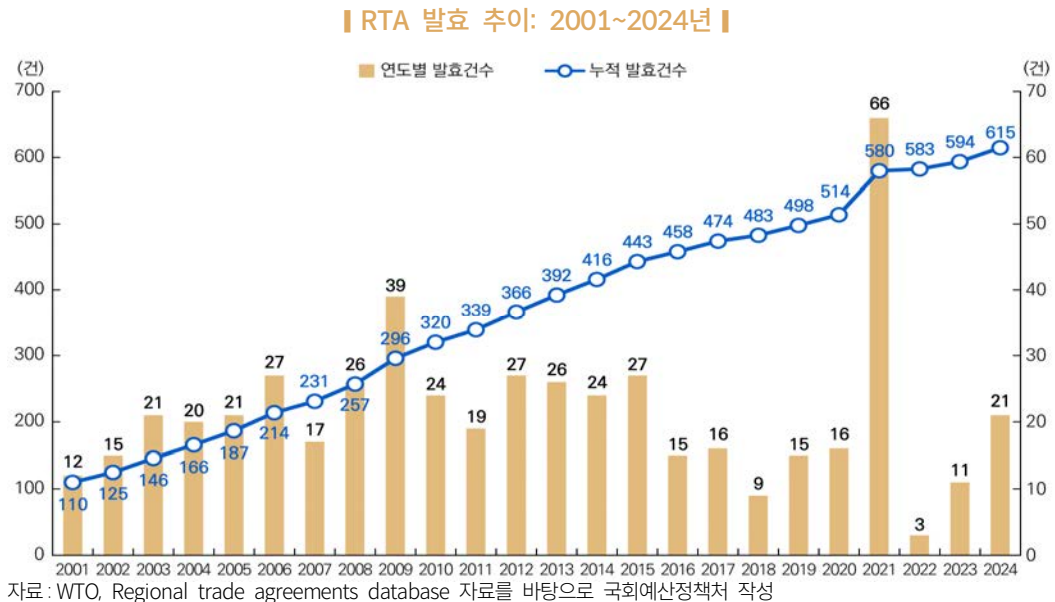
주: 1. 각국의 관세는 OECD 코드 5123(Customs and import duties)을 기준으로 산출

2. ()안의 값은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제외한 총조세 대비 관세 비중

자료: OECD, Data Explore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현황

국제적으로 FTA 등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의 누적 발효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⁴³⁸⁾ 2025년 2월 기준 WTO에 통보되어 발효 중인 전 세계 RTA는 총 615건이며, 그 중 FTA는 343건(전체 지역무역협정 대비 5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30건(4.9%), 서비스무역협정(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이 211건(34.3%), 개발도상국간 특혜협정(PSA, Partial Scope Agreement)이 29건(4.7%) 발효 중이다.



438) RTA는 경제통합협정의 단계에 따라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으로 구분되는데, FTA는 회원국 간 무역 자유화에 대한 배타적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장 느슨한 단계의 RTA이며, 단일시장은 EU와 같이 단일통화 등을 바탕으로 한 공동경제정책을 수행하도록 체결된 협정을 의미함

3.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입 환경 변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급망 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전통적인 제조업과 첨단사업의 미국 내 산업기반을 확충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웠다. WTO 체제에서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이른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를 기반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협정 체제를 이탈하여 상호 관세를 이용한 양자 협상의 방식으로 상호 대칭적인 무역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구조를 개편하고 자국 제조업의 부흥을 도모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를 철회하고 비전략상품의 수입에 35% 이상의 관세, 전략상품의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중국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⁴³⁹⁾이 연방 의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2025년 2월 4일부터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다가 3월 4일부터는 10%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총 20%의 관세가 중국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또한 2025년 2월 1일에는 2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2월 3일에는 이를 한달간 유예하여 2025년 3월 4일부터 인상된 관세율이 부과⁴⁴⁰⁾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4월 2일부터 각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 등을 고려하여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호 관세 부과가 보편화 될 경우 미국과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원론적으로는 대(對)미국 수출에 변화가 없어 총수출 감소 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품목 위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⁴⁴¹⁾ 대(對)미국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다. 또한 미국의 대(對)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정책 시행에 따라 중국의 대(對)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국이

439) 2024년 11월에 하원에 발의되었던 가칭 공정무역회복법(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이 상원에 재발의 됨 (“H.R.10127 - 118th Congress (2023-2024): Restoring Trade Fairness Act” Congress.gov | Library of Congress, <www.congress.gov/bills/118th-congress/house-bill/10127> 접속: 2025.2.12> Kelly, Laura. “The Hill.” The Hill, Jan. 23 2025, <thehill.com/policy/international/5102605-us-legislation-revoke-china-trade-status> 접속: 2025.2.11>

440) 이와 더불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3.12부터 25% 관세가 부과됨

441) 2025.2.18.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 최소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구체적인 관세 부과 계획은 4.2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⁴⁴²⁾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교역이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관련 주요 내용 ■

일시	내용	비 고
2025. 1. 20. (취임식)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대통령 메모(Memorandum)	무역 관련 부처에 불공정 무역 상황 타개를 위한 조사 지시(보고서 기한: 2025.4.1.) 대외 수입청 신설을 위한 기초조사, 2026년 예정인 USMCA 검토의 준비 작업 진행, 외국정부의 차별적 조세 관행 조사, 중국 정부와 체결한 합의의 이행 여부 검토 등
2025. 2. 1.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발표	2025.2.24. 시행, 캐나다 에너지 수입에 대해서는 10% 관세 부과
2025. 2. 3.	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 계획 유예	2025.3.4. 시행
2025. 2. 10.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계획 발표	2025.3.12. 시행
2025. 2. 13.	“상호 무역과 관세” 대통령 메모(Memorandum)	상호적이지 않은 관세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불공정 세제, 비관세 장벽, 보조금 정책 등 불공정 산업정책, 환율 조작, 과도한 규제 부담 등을 상호 관세 부과의 요건으로 나열
2025. 2. 18.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 발표	최소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하며 구체적인 계획은 2025.4.2. 발표 예정
2025. 3. 3.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발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 추가 관세 부과 (2025.3.4. 시행)
	상호 관세 부과 계획 발표	2025.4.2부터 각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 등을 고려한 상호 관세 부과 예고

442) 예를 들어, 2025.2.4. 미국의 대(對)중 수입 관세 인상이 발표되자 중국 정부는 원유·농기계·픽업트럭 등의 대(對)미 수입에 10%p 추가 관세, 석탄·LNG 수입에 15%p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즉각적으로 보복조치를 발표함

제10장

국제조세

제1절 개요

1. 개념 및 의의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ation)는 국제거래에 관한 각국의 과세권 행사 및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조세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국제거래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당사국들이 과세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과세권의 행사는 속인주의(屬人主義) 관점의 ‘거주지국 과세원칙’⁴⁴³⁾과 속지주의(屬地主義) 관점의 ‘원천지국 과세원칙’⁴⁴⁴⁾에 따른다.

그러나 국제거래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 해당 국가들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 국가 간 과세권 경합으로 인한 이중과세나 조세회피⁴⁴⁵⁾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합리적인 과세권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세권의 조정은 당사국 간의 협정인 조세조약과 다국간 조세협정에 의한 조정, 국내법상 거주자의 국제적 이중과세방지, 과세제도에 의한 조정 등으로 구분된다.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국 간의 협정(조약)에 의해 과세관할권을 조정하며, 국내법상 거주자의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은 외국세액공제방법 등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과세제도에 의하여 과세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에 대한 과세제도, 조세회피처 과세제도, 조세조약 남용방지, 글로벌 최저한세 등이 있다.

443) ‘거주지관할권’은 인(人)의 관점에서 과세대상인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활동을 국적(國籍)이나 거주 사실을 근거로 납세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게 됨.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거주자를 개인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이며, 법인의 경우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을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함(「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호)

444) ‘원천지국관할권’은 영토(領土) 관점에서 과세대상인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활동이 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져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며, 이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영토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됨. 원천지국 발생소득은 원천기준(source rule)에 의해 구분되며, 동 기준은 특히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과세권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됨

445) 국제거래를 행하는 경제주체들이 각국의 세제(稅制) 차이, 조세조약의 차이 및 위법한 거래행위 등을 이용하여 과세를 회피 또는 면탈하는 조세회피 등의 문제를 초래함

2. 기능 및 특징

국제조세는 국가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세관계이므로 국내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세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⁴⁴⁶⁾

첫째, 국제조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이 실정법상 실제 존재하는 단일 세목이 아니고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각국이 고유의 과세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제조세 관련 법제도의 특성상 단일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조세조약, 각종 세법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둘째, 국제조세는 2개국 이상의 과세권이 서로 경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조세이다.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권이 2개국 이상에게 주어지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 각국은 자국의 세법체계 하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 경우 하나의 거래에 대해 중복과세(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조세조약은 국제조세의 규범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각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법 체계의 차이에 따른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양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은 각국의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조세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각국의 국내법이 적용된다.

넷째, 조세회피, 이중과세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 국가의 과세당국 간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국제조세 문제는 국가 간에 발생하는 특성상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어 국가 간 징수협력·정보교환 등 상호협력체제가 필요한 분야이다.

3. 국제조세 관련 법률체계

국제거래의 당사국은 자국의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과세권한을 폭넓게 규정하면서 조세조약에서는 조약상대국과의 과세권 조정 및 이중과세 경감 방법을 규정·시행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 국제조세는 국내법상 단일법 체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 간의 과세권 조정의 법적 효력을 가진 조세조약과 국제거래와 관련된 개별세법들에 분산되어 있다.

국제조세 관련 법률의 적용순위는 국제법 이론에 따라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과의 관계

446)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 국제조세-」, 2017. pp.8~9.

가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상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일부 사항을 통합 규정하기 위해 1995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 국제조세 관련 법률체계 ■

관련 주요법률	적용대상	비고
조세조약	•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권 조정 • 외국과 거래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권 조정	•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의 이전 과세 조정 •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과소자본에 대한 과세제도 • 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조세회피처 법인에 대한 과세조정 등	• 다른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과세방법, 절차 등	• 외국법인·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한 규정
「조세특례 제한법」	• 외국법인·비거주자에 대한 감면 •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감면	• 「외국환거래법」상 도입되는 외자에 대한 감면
	• 외국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 기술 도입대가 등에 대한 감면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도입되는 외자에 대한 감면
	• 공공차관 이자에 대한 감면 • 공공차관 도입 관련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한 감면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는 외자에 대한 감면

자료: 이경근, 「국제조세 이해와 실무」, 조세통람, 2023. 및 이용섭·이동신, 「국제조세」, 세경사, 2012 등 참조

제2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구조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얻은 과세대상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⁴⁴⁷⁾가 부과된다. 여기서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상대적 개념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기준은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며, 국가별로 국적·본적·주소지⁴⁴⁸⁾·거주지·체재지 등을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다.⁴⁴⁹⁾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⁴⁵⁰⁾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고 있다.

비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는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한다.⁴⁵¹⁾ 국내원천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제외) 종합과세는 비거주자 중 국내에 사업장⁴⁵²⁾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이며, 비거주자 중 국내사업장이 없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하거나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게 된다. 자세한 소득 종류별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447)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규정방식은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 역시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소득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는 소득은 해당 소득 발생의 원천이 국내에 있더라도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음

448)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민법」 제18조), 거소란 주소지 이외의 장소 가운데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함

449) 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20. pp.140 ~ 141.

450) 국내란 대륙봉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하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므로 휴전선 북방지역도 국내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이 지역은(미수복지구)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실효적으로 행사되지 못함(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20. p.139.)

451)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452) 국내사업장이란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함(「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2항)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6. 광산 채석장 또는 해저 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

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Ⅱ

과세대상소득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신고납부에 의한 종합과세	원천징수에 의한 완납적 분리과세
근로소득, 연금소득	신고납부 종합과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
퇴직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납부 분류과세	

2.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 이외⁴⁵³⁾의 과세대상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 종합과세 대상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및 기타소득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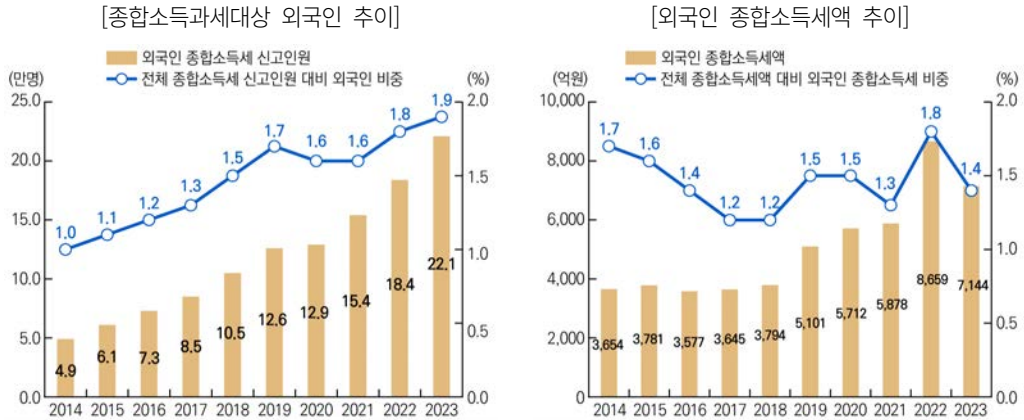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과세소득 범위의 결정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에 한정하여 과세하는 귀속주의 과세원칙에 따르거나, 고정사업장의 귀속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 원천을 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총괄주의 과세원칙을 따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정하여 과세하는 귀속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⁴⁵⁴⁾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비거주자(외국인)는 총 22.1만명으로 전체 1,161.3만명 대비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전체 종합소득세액 51.9조원(확정신고 결정세액) 대비 1.4%인 7,144억원이다.

453) 퇴직소득과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의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납부함

454) 「소득세법」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별(퇴직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 제외)로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분리과세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계약국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등이다.⁴⁵⁵⁾

455)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과 같음(「소득세법」 제156조)

1.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이자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및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의 그 비거주자
4. 비거주자가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증권회사
5. 비거주자에게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
6. 국외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세율	지방세 포함 (소득세의 10%)
이자 및 신탁의 이익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20% (14%)	22% (15.4%)
배당소득, 인적용역 제공소득,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사용료 소득), 기타소득	20%	22%
유가증권, 부동산 등 양도소득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10% (또는 20%)	11% (또는 22%)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소득	2%	2.2%

제3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구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은 국내사업장 등의 설치 유무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하게 된다. 여기서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⁴⁵⁶⁾ 외국법인은 다시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을 말한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⁴⁵⁷⁾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또한 이와 같은 원칙을 수용하여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도록 약정하고 있다.

2.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10종류의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10종류의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등 양도소득, 기타소득이다.

456) 현행 「법인세법」은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을 구별함(「법인세법」 제2조)

457)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20. p.87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각 국내원천소득별로 원천징수한다.

세율의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계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이 제한되고 있다.⁴⁵⁸⁾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와 동일하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에서 이월결손금(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비과세소득 및 선박 등의 외국항행소득을 차례로 공제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그 과세표준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⁴⁵⁹⁾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⁴⁶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국내사업장과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은 각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납세의무자)를 진다.⁴⁶¹⁾

458)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은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계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뜻하므로 우리나라 법령의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령의 세율에 따라 과세됨

459) 현행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음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460) 내국법인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 등은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준용됨. 내국법인 세액공제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기타 세액감면 등이 있음(「법인세법」 제97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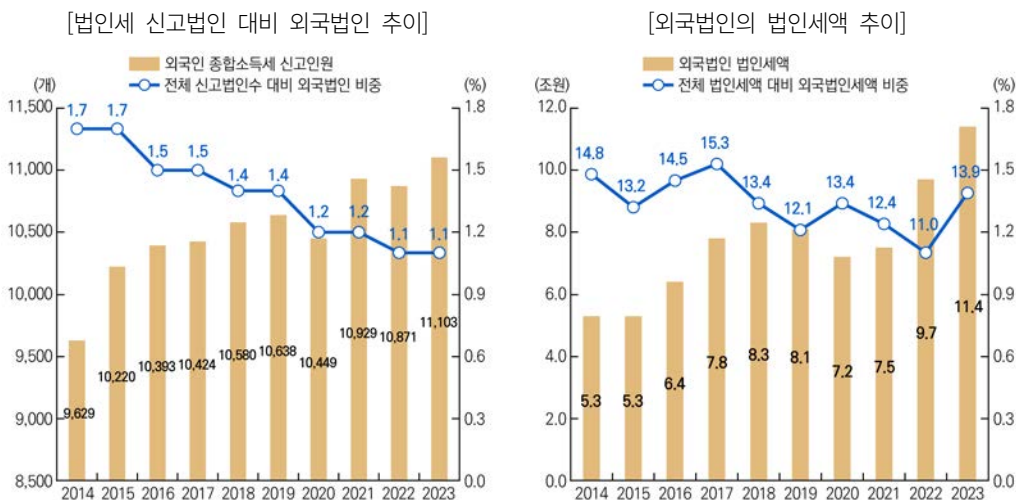
461)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3조)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제1호)	20%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 14%)
배당소득(제2호)	20%
선박·항공기·자동차 등 임대소득(제4호)	2%
사업소득(제5호)	2%
인적용역소득(제6호)	20%
부동산 등 양도소득(제7호)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예납적 원천징수)
사용료소득(제8호)	20%
유가증권 양도소득(제9호)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완납적 원천징수)
기타소득(제10호)	20%

2023년 현재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 포함) 수는 약 1.1만개로 전체 신고법인 약 103.1만개 대비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세 부담세액은 총 11.4조원으로 전체 법인세액(확정신고 총부담세액) 81.6조원의 1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과세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에 송금하거나 송금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배당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지점세’라고 하며, 이는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방식에 관한 법형식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지점세의 과세대상소득은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가운데 국내사업장이 납부할 법인세(지방세 포함)와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지점세 세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세율을 따른다.

제4절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1. 개요

다국적 기업은 여러 국가에 영업활동 내지 제조 거점을 가지고 국가적·정치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적인 범위와 규모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⁴⁶²⁾

다국적 기업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급하는 상품·용역·무형자산 등이 세계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특성상 관계기업 간의 가격조작이 용이하고, 각국의 조세제도의 혜택 또는 허점(loopholes)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유형은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이용한 조세회피, 과소자본(thin-capitalization)을 이용한 조세회피, 조세회피처(tax haven)를 이용한 조세회피 및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treaty shopping)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과 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2. 이전가격과세제도

다국적 기업은 세계 각국에 보유한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거래가격(이전가격)을 시장가격과 달리 과대 또는 과소하게 책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전가격의 조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 소득을 늘리고 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 소득을 줄임으로써 전체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전가격과세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조세회피 의도 여부를 불문하고 이전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한 국제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정상가격은 다음의 표에서 나열한 방법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⁴⁶³⁾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산출한다.

462) 이용섭·이동진, 「국제조세」, 세경사, 2012, p.803. 참조

463) 여기서 합리적인 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이 높을 것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정상가격 산출방법	내용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참고하여 정상거래가격을 정하는 방법
재판매가가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재판매가가격에서 통상이윤을 차감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text{정상가격} = \text{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재판매가가격} - \text{통상이윤}(\text{재판매가가격} \times \text{매출총이익률})$
원가가산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이윤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text{정상가격} = \text{자산 및 용역의 제조·구입 등의 원가} + \text{통상이윤}(\text{원가} \times \text{매출총이익률})$
이익분할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거래당사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그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거래순이익률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출방법 이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마찰의 소지를 제거하고 과세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납세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⁴⁶⁴⁾ 국세청장과 사전가격승인을 받은 납세자는 그 승인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한 사유⁴⁶⁵⁾가 발생하면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이 높을 것

46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465)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사유란 다음과 같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1. 법령상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거주자가 사전승인 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승인 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4. 관련 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과소자본과세제도

기업은 필요자금을 조달할 때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기업의 수익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법인세 측면에서 차입금을 조달하는 것이 법인세액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는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해외 모회사 등으로부터 출자는 적게 받고 대신 차입을 늘려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의 세부담을 의도적으로 줄여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과소자본과세제도’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자국의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불산입(배당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과소자본세제는 차입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외국자본이 자기자본을 중심으로 운영 되도록 유도하여 외국자본 도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⁴⁶⁶⁾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 대 출자금 비율이 2:1(금융업의 경우 6:1)을 초과하게 되면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있다.⁴⁶⁷⁾ 국외지배주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의 주주·출자자 또는 본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⁴⁶⁸⁾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⁴⁶⁹⁾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상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과 과소자본세제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한다.

- ①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손금불산입
- 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
- ③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 ④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⑤ 업무무관자산 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한 지급이자

466) 이용섭·이동신, 「국제조세」, 세경사, 2012 p.892.

46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46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469)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조세회피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해외에서 투자나 사업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유보시켜 본국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도 한다.

이 경우 조세회피처 등(‘경과세국’)⁴⁷⁰⁾에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총발행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

내국인에게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주식보유비율은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내국인보유주식수 ÷ 특정외국법인의 총발행주식수’를 의미한다.

배당가능 유보소득 = 조정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상여·퇴직급여 및 기타사외유출
- 의무적립금 - 기과세 간주 배당 잔여액 ± 주식 및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손익 조정액
- 최소금액(2억원)

5.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는 2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거주지나 소득의 형태를 바꾸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조세조약의 남용)을 의미한다.

오늘날 다수의 조약은 부당한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Limitation on Benefit, LOB)’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특정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단순히 조세조약에 의한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동 혜택을 부인하는 ‘주요 목적기준(Principal Purpose Test, PPT)’을 적용하기도 한다. OECD 모델 조세조약의 경우 LOB 규정을 두고 있으며, OECD의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 Action 6⁴⁷¹⁾은 다자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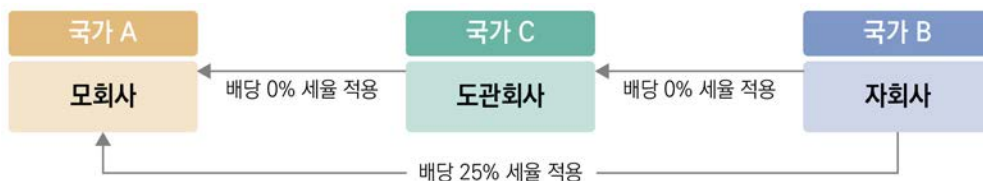
470)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의 70%(2022년 기준 17.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으로서 제3국 거주자에 의한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해 LOB와 PPT 중 1가지를 선택하거나 모두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⁴⁷²⁾

LOB 또는 PPT가 입법론적 차원에서 조세조약 남용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조약의 해석론적 차원에서는 ‘실질적 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이 존재한다.⁴⁷³⁾ 동 개념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취 조세조약 체결국과 실질적·경제적 연관이 있는 자에 해당할 경우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조약 남용사례

- A국과 B국은 조세조약 미체결 상태
- B국 세법상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배당의 원천징수 세율은 25%
- C국은 B국과 조세조약 체결, B국에서 C국에 지급되는 배당의 원천징수 세율은 0%
C국의 세법상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배당의 원천징수 세율 0%
- A국은 B국 - C국간 체결된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C국에 도관회사 설립



6. 글로벌 최저한세

2021년 10월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협의체는(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디지털 경제하에서 종래의 물리적 실체에 기반한 국가 간 과세원칙과 다른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우리나라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모델규정을 기초로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안이 마련되어 2022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주요국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

471) OECD BEPS Action 6은 BEPS 프로젝트 중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지정됨에 따라 BEPS 참여국은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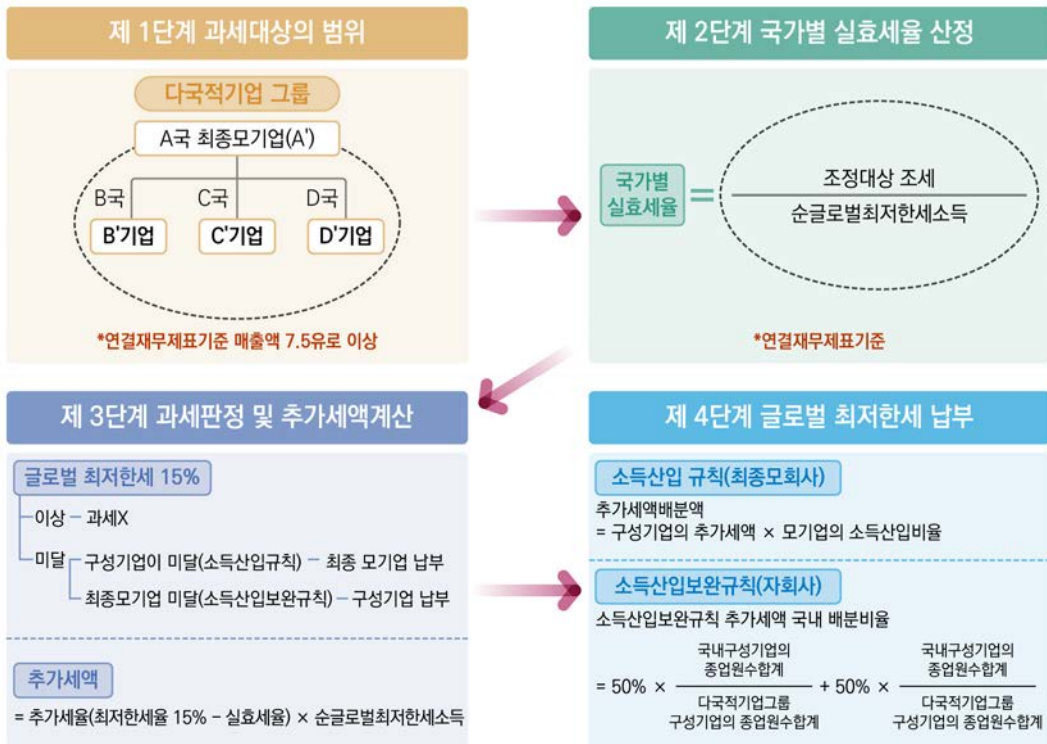
472) 이창희, 「국제조세법(제2판)」, 박영사, 2020, p.230.

473) 이창희, 앞의 책, p.173.

산입보완규칙 시행을 1년 유예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그 구성기업의 소재지 국가에서 최저한 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할 경우 본점 소재지 국가 등에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과세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산입규칙은 저율과세 구성기업(해외법인: 자회사)의 추가세액을 모기업이 해당 관할국에 납부하는 방식이며,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최종모기업의 저율과세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른 구성기업들이 해당 관할국에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단계 ■



적용대상 및 납세의무자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납세의무자는 다국적 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의 계산

글로벌 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이 이루어진다. 우선 국가별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 조세 합계를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의 합계(글로벌 최저한세 소득)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계산한다.

둘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저율과세 국가)하는 경우, 최저한세율에서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추가세액비율을 계산한다.

셋째, 추가세율비율에 대상국가의 초과이익(순글로벌 최저한세 소득 - 실질기반 제외 소득)을 곱하여 추계세액을 계산한다.

넷째, 계산된 추가세액이 당기 추가세액 가산액을 더하고, 적격소재국 추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추가세액을 결정한다.

$$\text{최종 추가세액} = \text{추가세액비율} \times \text{초과이익} + \text{당기추가세액 가산액} - \text{적격소재지추가세액}$$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의 과세

글로벌 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은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 외 구성기업의 저율과세에 대하여 최종모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과 최종모기업의 저율과세에 대하여 그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소득산입규칙은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최종모기업에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차상위 중간모기업이 납부한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지국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 소재지국이 자회사에게 해당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과세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신고 및 납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국내 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 15개월 이내 “글로벌 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속하는 달까지 추가세액배분액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기한까지 추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하다.

제5절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우리나라는 전세계소득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제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어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1.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외국법인세액은 직접외국법인세액과 간주외국법인세액으로 구분된다.⁴⁷⁴⁾

직접외국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의하여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 ①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
- 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③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간주외국법인세액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에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⁴⁷⁵⁾,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한 세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간주외국법인세액은 국내 모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외국 자회사)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에 대한 외국과세당국의 원천징수세액과 관계없이 현지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⁴⁷⁶⁾하는 제도이다.

474) 「법인세법」 제57조

475) 해당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감면효과를 주기 위한 것임

476) 회사가 받는 배당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거주지국에서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배당에 대하여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지점 형태의 진출보다는 자회사 형태의 진출이 불리하게 되며, 이중과세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text{간주외국 법인세액} = \frac{\text{외국자회사가 부담} \\ \text{=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text{수입배당금액}} \times \left(\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right. \\ \left. \text{의 소득금액} \right) - \left(\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 \right. \\ \left. \text{도의 법인세액} \right)$$

여기서 공제대상 외국 자회사는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⁴⁷⁷⁾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외국자 회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 등을 허용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세조약상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외국법인세액 가운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산출세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text{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 중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text{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2. 개인의 이중과세 조정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477)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임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외국소득세액은 직접외국소득세액과 간주외국소득세액으로 구분된다. 직접외국소득세액은 외국정부가 과세한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및 그 부가세액과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을 말한다.⁴⁷⁸⁾

간주외국소득세액으로는 면세외국소득과 외국 혼성사업체⁴⁷⁹⁾의 소득이 있다. 우선 면세외국소득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으로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이다. 또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 혼성사업체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text{간주외국 소득세액} = \text{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times \frac{\text{수입배당금액}}{\left(\text{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times \text{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손익배분비율} \right) - \left(\text{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right)}$$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외국에서 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그리고 공제한도액 계산시 국가별 한도 방식만 허용하고 있으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⁴⁸⁰⁾

478)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

479) 외국 혼성(hybrid) 사업체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서 조세목적상 다르게 취급되는 사업체를 말함

480) 단,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서 면제 또는 세액감면액의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산정함

$$\text{공제한도액} = \text{종합(퇴직)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금액}}{\text{종합(퇴직)소득금액}}$$

제6절 국가 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국가 간 조세협력

세계 각국이 자국으로의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국가 간의 소모적인 조세경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세회피처의 증가, 다국적 기업의 과세문제, 범죄단체 등의 불법자금세탁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조세징수협조

우리나라는 재화와 용역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조세회피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 간 협약인 OECD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2012년 발효되었다. 동 협약에는 대상조세, 정보교환, 징수협조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1월 기준 14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⁴⁸¹⁾

OECD 조세행정공조협약 주요 내용

항목		협약 내용
대상조세		직접세, 간접세, 사회보험금 모두 해당
정보교환	정보교환 종류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동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
	해외조사	동시 세무조사, 해외 파견조사 등 가능
징수협조		가입국 간 조세채권 회수를 위해 보전조치 등의 징수협조 가능

자료: 이경근, 「국제조세 이해와 실무」, 조세통람, 2021. 및 이용섭·이동신, 「국제조세」, 세경사, 2012 등 참조

481) 기획재정부, 「조세조약 및 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2024.1.

정보교환제도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규정에 따라 체약국 과세당국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및 제216조의2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및 제162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지급명세서를 통보하고(국제조세 사무처리 규정 제88조), 국세청장(국제조사과장)으로 하여금 자발적 통보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세정보교환 협정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 불복 등을 위해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관행으로 일반화된 조세정보를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체약상대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조세 법률상 제출 의무가 있거나, 상속·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하거나, 체약상대국에서 조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25년 2월 기준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2개국 이 있다.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국가	발효일자	국가	발효일자	국가	발효일자
쿡제도	2012. 03. 05	마셜제도	2012. 03. 09	바하마	2013. 07. 15
버뮤다	2015. 02. 13	저 지	2016. 11. 21	영국령버진아일랜드	2016. 11. 21
사모아	2016. 11. 22	건 지	2016. 12. 21	안도라	2016. 12. 21
모리셔스	2017. 04. 13	바누아투	2017. 06. 08	코스타리카	2018. 11. 13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조약 및 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2025.2.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금융회사⁴⁸²⁾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해당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⁴⁸³⁾,

482) 해외금융회사란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 등이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호), 해외금융계좌는 「은행법」 제27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이외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

48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기간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주식(예탁증서 포함), 해외 파생상품 등의 평가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보유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금융회사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신고인원은 2019년 2,685건에서 2023년 4,957건으로 84.6% 증가하였으며, 신고금액은 2019년 59.9조원에서 2023년 64.9조원으로 8.3% 증가하였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신고기준 ■

(단위: 건, 조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2,685	59.9	3,130	59.0	3,924	64.0	5,419	186.4	4,957	64.9
개인	1,889	8.0	2,385	9.4	3,117	22.4	4,565	24.3	4,152	16.4
법인	796	51.9	745	49.6	747	41.6	854	162.1	805	48.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7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조세조약에 따라 계약상대국 거주지로 인정된 거주자와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를 추가하였다.⁴⁸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보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시기에 맞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OECD 모델규정과 그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다. OECD 모델규정과 행정지침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그룹 및 구성기업·고정사업장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⁴⁸⁵⁾

48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48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제84조

■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

항목	개정 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 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 근거 마련	•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체계에 암호화 자산정보 추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보완	• OECD 모델규정 및 행정지침 등 반영 - 다국적그룹 및 구성기업,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 등

제8절 국제동향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각국의 조세체계 및 조세조약의 사각지대와 허점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처나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과세권 문제·조세형평성 침해 및 세수확보를 저해하는 세원잠식(tax base erosion)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세계 각국에 납부할 법인세의 4%~10%의 세수손실이 발생하였으며⁴⁸⁶⁾, 이는 기존의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국제조세 기준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2012년부터 OECD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조세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BEPS⁴⁸⁷⁾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BEPS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2021년에는 국제조세의 새로운 과세체계인 디지털세제를 도입하기로 전세계적으로 합의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디지털세제 중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단계에 있다.

1. OECD의 BEPS 프로젝트

도입 배경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 및 국민은 적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행위를 통한 국제적 조세회피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⁴⁸⁸⁾ 결국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2012년 OECD와 G20 국가를 중심으로 BEPS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추진 경과 및 현황

2012년 6월 G20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OECD 재정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BEPS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한 이후 2013년 4월 OECD는 종합적 행동계획 1차 초안을

486) OECD, *Implementing the BEPS package Building an inclusive framework*, 2016. p.1.

487)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기업의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으로, 다국적기업이 국가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BEPS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ipf.re.kr/beps/> 참조))

488) 이경근,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BEPS 프로젝트의 현안과 대응방안”, 『월간 조세』 Vol. 338, 2016.7. p.30.

제시하였다.⁴⁸⁹⁾ 이후 같은 해 7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종합적 행동계획을 완성·발표하고, 9월에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되었다.

2013년 9월부터 OECD는 디지털 경제·기업 과세 일관성 확보·국제기준 남용방지·투명성 확보·신속한 이행 등 구체적인 BEPS 실행계획(총 15개)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여 2015년 10월에 최종 보고서가 발표·확정되었다.

■ BEPS의 단계별 실행계획(Action Plan) 구성 ■

구분	주요 목표 및 내용
디지털 경제	[AP1] 디지털경제의 사업특성 파악 및 조세문제 해결방안 모색
기업 과세 일관성 확보	[AP2] 혼성불일치 효과(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중화 : 국가간 과세 취급이 다른 상품, 실체,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중 공제 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 * (예) 전환사채를 A국은 사채, B국은 자본으로 취급 시, A(발행)국에서 이자비용을 공제받고, B(인수)국에서 해외배당소득으로 비과세 가능
	[AP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소득의 이전·유보로 과세 회피 시,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
	[AP4] 금융비용 공제 제한: 과도한 금융비용공제 대응
	[AP5]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practices) 대응: 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특혜 조세제도에 대한 총체적 검토
국제기준 남용 방지	[AP6] 조세조약 남용(treaty abuse) 방지: 부적정한 상황에서 조세조약 혜택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
	[AP7] 고정사업장 구성의 인위적 회피 방지: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라 외국법인 등의 원천소득 과세권 결정, 위탁판매 계약 등을 통한회피 방지를 위해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 변경
	[AP8]~[AP10]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outcomes) 강화: 무형자산(intangibles)의 이전, 위험·자본(risks and capital)의 이전, 기타 고위험 거래 관련
투명성 확보	[AP11] BEPS 자료 수집·분석방안 개발
	[AP12] 조세회피 거래 등에 대한 보고제도 개발
	[AP13] 이전가격 자료제출요건 재검토: 다국적기업의 국제소득 정보 제공 방안
	[AP14] 조세조약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및 상호합의절차 개선
신속한 이행	[AP15] 액션플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489) OECD는 2013년 2월 “Addressing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보고서를 통해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분석한 후 최근 변화하는 글로벌 사업모델의 특징을 소개하였음. 또한 국제조세에 대한 국제적 과세기준이 이러한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원잠식의 관점에서 이들 과세기준들을 재평가하였음. 이러한 국제조세의 과세기준 재평가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이경근,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BEPS 프로젝트의 현안과 대응방안”, 『월간 조세』 Vol 338, 2016.7. p.30)

2016년 2월 23일 OECD는 이러한 BEPS 단계별 실행계획에 따라 다자 협약의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를 구축하고, BEPS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는 모든 국가를 BEPS 준회원국자격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6년 11월 24일 OECD는 BEPS 방지를 위한 다자간협약 최종안을 공개하고, 2016년 12월 31일부터 협약 체결을 원하는 국가는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14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광범위하게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각국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자국의 세법개정 등을 이행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BEPS 프로젝트 참여국은 2016년부터 자국의 세법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국제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제출을 의무화하고, 조약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조약 혜택의 제한규정(Limit of Benefit)을 조세조약 개정시 반영하고, 다국적기업의 가치 창출과 이전가격 결과를 합치(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s with value creation)시키기 위한 이전가격지침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다.

■ BEPS 프로젝트 논의 경과 ■

일 자	주요 내용
2012. 6.	• G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BEPS 프로젝트 논의 시작
2013. 7.	• BEPS 프로젝트 15개 실행계획 로드맵 공개
2015. 10.	• BEPS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발표·확정
2016. 6.	•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포용체계(IF: Inclusive Framework) 출범
2016. 11.	• BEPS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약 최종안 공개
2016. 12.~	• 다자 협약 체결을 원하는 국가는 회원국으로 가입(2019년 6월 기준 129개국) • 자국의 세법개정 및 당사국간의 조세조약 개정 진행 중

2. 디지털세제의 도입

도입경과

2016년 6월 BEPS 방지 실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다자 협약의 OECD/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 이하 'OECD/G20 IF'라고 함)가 구축되면서 디지털

경제⁴⁹⁰⁾에 대한 새로운 과세방안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OECD/G20 IF는 2018년 12월 디지털 경제 과세의 개념(필라1, 필라2)⁴⁹¹⁾을 확정한 이후 다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2021년 10월 디지털세제 도입을 최종 합의하였다.⁴⁹²⁾ 최종합의된 필라1은 초과이익 배분비율(25%), 필라2는 최저한세율(15%) 등 국가간 이견이 큰 정치적 쟁점 사항을 모두 합의하면서 글로벌세제의 골격을 완성하였다.

■ 디지털세제 필라1, 2 구조 ■



주: 1. 필라1 - ① Amount A: 매출에 대한 과세권배분, ② Amount B-이전가격 단순화·표준화, ③ 조세확실성 절차-새로운 유형의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절차

2. 필라2 - ① 소득산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 다국적 구성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이하에 따른 모든 추가세액을 최종모기업이 납부, ② 소득산업보완규칙(UTPR: Undertaxed Payment Rule)-최종모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이하인 경우 다른 구성기업이 납부, ③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타국에 납부할 추가세액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소재지국에서 부과, ④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Subject to Tax Rule): 원천지국에서 거주지국으로 지급한 이자, 사용료 등이 거주지국에서 9%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부여(개발도상국 한정)

자료: 강금윤,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통상리포트」, 2024 Vol 2, 2024. 2

2021년 12월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이 서면합의절차를 거쳐 대외 공개되었으며, 이후 2022년 12월에 필라1 ‘Amount B’ 보고서의 초안이 공개되었다. 2023년 7월 OECD/G20 IF는 제16차 총회에서 143개국 중 138개국⁴⁹³⁾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필라1,2)의 주요 내용 및 이행조치를 담은 성명문이 발표되었다. 이에 맞추어 필라1 ‘Amount A’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에 2025년 발효를 위한 다자조약안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월 서명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회원국간 이견으로 인해 다자조약안 서명 시점이 약 6개월 연기가 된 상황이다. 필라2의 경우에는 조약형태가 아닌 국내세법 개정으로 도입이 가능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 일본, 영국, 캐나다 및 EU 일부 국가가 도입을 확정하였다.⁴⁹⁴⁾

490)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국제거래 과세원칙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가 확대되면서 국제조세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된 데에 따른 논의임(강금윤,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통상리포트」 2024 Vol 2, 2024.2 p.7)

491) 필라(Pillar)는 BEPS 방지 주요 쟁점을 정리한 핵심의제이며, 2018년 2월 디지털경제 과세의 핵심의제는 과세권(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필라2)로 개념화하였음

492) IF에 참여하는 140개국 가운데 136개국의 지지를 받았으며, 4개국(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은 미참여하였음

493)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 등 5개국은 미참여하였음

Ⅱ 디지털세제 도입 경과 Ⅱ

일 자	주요 내용
2020. 10. 14.	• 디지털경제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라1, 2 청사진 공개
2021. 6. 5.	• G7은 ① 시장소재국 과세권 부여 및 ② 글로벌 최저한세(15%) 설정에 합의
2021. 10. 8.	• 「IF 제13차 총회」에서 136개 회원국의 지지를 얻은 필라1, 2 최종합의문 공개
2021. 12. 20.	•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GloBE 규칙) 공개
2022. 3. 14.	•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주석서(Commentary) 공개
2022. 12. 8.	• 필라1 'Amount B' 보고서 초안 공개
2022. 12. 20.	• ① 필라1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및 ②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패키지' 초안 공개
2023. 2. 2.	• 필라2 이행을 위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 공개
2023. 7. 12.	• 138개 국가의 승인을 얻은 디지털세(필라1, 2) 성명문 발표
2023. 7. 17.	• 지난 2월 발표된 지침에서 수정·보완된 필라2 행정지침 및 정보신고서 발표 • 필라1 'Amount B' 보고서 수정 초안 공개
2023. 10. 11.	• 필라1 다자조약문과 해석지침 현재안 공개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을 위한 핸드북 공개
2023. 12. 18.	• 필라1 'Amount A' 다자조약 최종안 공개
2024. 2. 19.	• 필라1 Amount B에 대한 보고서 발표
2024. 6. 17.	• 필라1 Amount B 문서 및 필라2 행정지침·GloBE 규칙 Q&A 발간

자료: 강금윤,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통상리포트」 2024 Vol 2, 2024. 2.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4. 1~12.

국가별 입법현황

디지털세제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필라1의 경우 다자조약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으로 6개월 연기가 되어 있지만⁴⁹⁵⁾, 다국적기업 본사가 40% 소재⁴⁹⁶⁾하는 미국이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필라2의 경우 우리나라가 2022년말 글로벌 최저한세를 입법화하여 2024년부터 시행(소득산입보완규칙은 2025년부터)하고 있다. EU는 2023년말까지 소득산입규칙, 2024년말까지 소득산입보완규칙을 국내세법에 도입할 의무가 있으며 각국의 선택에 따라 해당 일정보다 이른 시점에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⁴⁹⁷⁾ 다음의 표에 나

494) 강금윤,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통상리포트」 2024 Vol 2, 2024.2. pp.3~5. 이하 참조

495) 필라1의 다자조약이 발표되기 위해서는 최소 30개 이상의 국가가 협정에 비준해야 하고, 이들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전체 적용대상 모회사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함

496) 현재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40% 이상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뒤이어 중국(홍콩 제외 9.4%), 홍콩(8.8%), 프랑스(5.6%)의 순임(강금윤,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통상리포트」 2024 Vol 2, 2024.2. p.15.)

497) EU, “Council Directive (EU) 2022/2523 of 14 December 2022 on ensuring a global minimum level of taxation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s and large-scale domestic groups in the Union” 2022.12.14.

타낸 바와 같이 현재까지 20여개 이상의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을 위한 국내법 초안을 발표한 상태이다.

■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국가별 입법동향 ■

국가	내 용	예상 시행 시기		
		소득납입규칙	소득납입 보완규칙	적격소재국 추가세액
유럽				
네덜란드	2023. 12. 19. 최저한세 법률 의회 통과	2024년	2025년	2024년
노르웨이	2024. 1. 12. 최저한세 법률 공포	2024년	미정	2024년
덴마크	2023. 12. 7. EU 지침 이행을 위한 법률 의회 통과	2024년	2025년	2024년
독일	2023. 12. 15. EU 지침 이행을 위한 법률 의회 통과	2024년	2025년	2024년
벨기에	2023. 12. 14. EU 지침 이행을 위한 법률 의회 통과	2024년	2025년	2024년
불가리아	2023. 9. 26. EU 지침 이행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	2024년	2025년	2024년
스웨덴	2024. 12. 13. EU 지침 이행을 위한 법률 의회 통과	2024년	2025년	2024년
스위스	2023. 9. 4.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2024년	미정	2024년
아일랜드	2023. 11. 22. EU 지침 이행을 위한 법률 하원 통과	2024년	2025년	2024년
오스트리아	2023. 12. 20. 최저한세 법안 의회 통과	2024년	2025년	2024년
이탈리아	2023. 12. 28. 최저한세 법률 공포	2024년	2025년	2024년
체코	2023. 12. 20. 최저한세 법률 공포	2024년	2025년	2024년
프랑스	2023. 12. 30. EU 지침 이행을 위한 2024 재정법 제정	2024년	2025년	2024년
핀란드	2023. 12. 28. EU 지침 이행을 위한 법률 공포	2024년	2025년	2024년
헝가리	2023. 10. 17. EU 지침 이행을 위한 법안 초안 발표	2024년	2025년	2024년
영국	2024. 2. 2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2023~24년 법률 제정	2024년	2024년	미정
아시아				
대한민국	2022. 12. 23. 최저한세 도입을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2024년	2025년	2024년
말레이시아	2023. 11. 7. 최저한세 법안 재무부 검토	2025년	미정	2025년
베트남	2023. 11. 29. 최저한세 법안 의회 승인	2024년	미정	2024년
일본	2023. 8. 10.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2024년	미정	미정
오세아니아				
호주	2024. 3. 21. 최저한세 법률 초안 발표	2024년	2025년	2024년
뉴질랜드	2024. 3. 11. 최저한세 세부지침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24년	2025년	미정
북미				
캐나다	2023. 8. 4. 최저한세 발표 및 협의 개시	2024년	2025년	2024년

주: 최저한세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의미

자료: 강금윤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통상리포트」 2024 Vol 2, 2024.2.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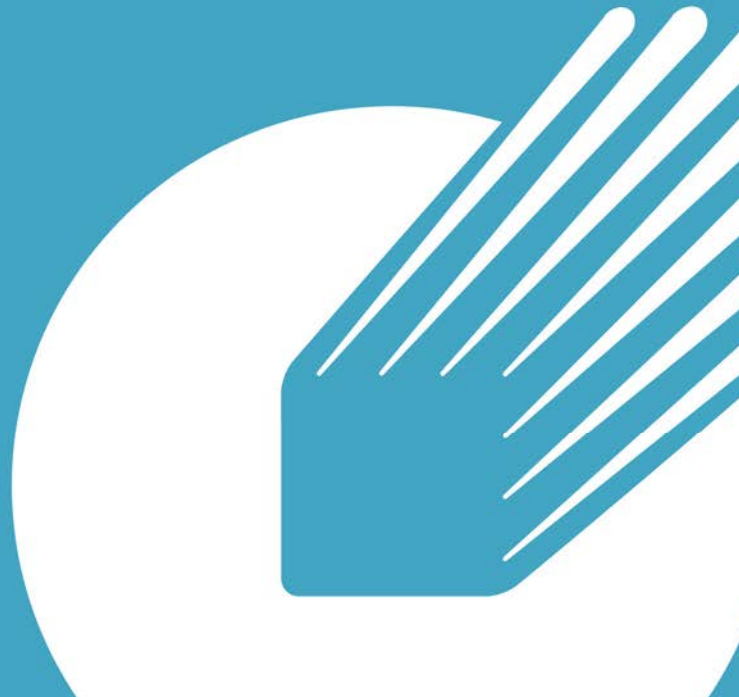


Tax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제3부 지방세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1장

취득세

제1절 개요

1. 개념 및 의의

취득세(取得稅)는 일정한 자산을 매매·교환·상속 및 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 매립, 간척지 조성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취득세는 일반재원으로 충당되는 보통세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가 부과주체인 도세(道稅)이다.¹⁾

취득세는 구한말인 1909년 「지방비법」의 제정으로 토지가옥소유취득세, 저당권취득세로 도입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부동산 취득을 중심으로 과세되었으나, 해방 이후 사회의 발전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의 범위가 선박, 차량, 각종 권리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1년 이전에는 취득과 취득에 수반되는 등기·등록을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하여 부과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산유형별·취득원인별로 차등적인 비례세율²⁾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표준세율 외에도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과 사치성 재산,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율로, 형식적인 취득과 간주취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로 운용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을 중심으로 해외의 취득세 운용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취득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한다. 세율구조는 국가별로 부동산 유형·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데, 가령 주택의 경우 일본은 비례세율, 미국(뉴욕주)은 단순누진세율, 영국 잉글랜드 지역은 초과누진세율 등의 세율구조를 운용 중이다. 또한,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시 부동산의 위치와 취득자의 국적 등을 기준으로 중과세율 제도를 운용하기도 한다.

1) 부가세(surtax)로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 [(취득세율-2%p)의 20%]가 부과됨

2) 단,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함

2. 최근 현황

2024년 취득세 규모 및 연도별 추이

2024년³⁾ 취득세 징수액은 26.0조원으로, 2023년 24.3조원 대비 1.6조원(6.7%) 증가하였다.

■ 2024년 취득세 징수액 ■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	
			증감액(C=B-A)	증가율(C/A)
취득세	24.3	26.0	1.6	6.7

주: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4년 취득세 징수액은 전체 지방세 수입 대비 2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취득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20.8조원(지방세 수입 대비 29.5%)에서 2021년 33.7조원(지방세 수입 대비 30.0%)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격 및 거래량 감소에 따라 징수실적과 지방세 수입 대비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가, 2024년 들어 징수실적과 지방세 수입 대비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다.

■ 최근 취득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



주: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2024년 지방세 수입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로, 추후 달라질 수 있음.(이하 제3부에서 같음)

취득세 과세물건별·지역별 규모

2023년⁴⁾ 취득세 납부세액을 과세물건별로 살펴보면, 토지 6.0조원(전체 취득세수 대비 24.5%), 주택 7.7조원(31.5%), 건축물 4.5조원(18.5%) 등 부동산이 18.1조원(7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외의 과세물건별 취득세수는 6.2조원(25.5%)으로 이 중 대부분은 차량(5.8조원, 24.0%)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외 기계장비 0.1조원(0.6%), 과점주주의 취득분 0.1조원(0.5%) 순이다.

■ 취득세 과세물건별 납부세액 현황 ■

(단위: 조원, %)

지역		2022년 세수	비중	2023년 세수	비중
합계		27.7	100.0	24.3	100.0
부동산	소계	21.8	78.6	18.1	74.5
	토지	9.2	33.3	6.0	24.5
	주택	7.6	27.3	7.7	31.5
	건축물	5.0	18.0	4.5	18.5
부동산 외	소계	5.9	21.4	6.2	25.5
	차량	5.5	19.9	5.8	24.0
	기계장비	0.2	0.6	0.1	0.6
	과점주주의 취득분	0.2	0.5	0.1	0.5
	기타 ¹⁾	0.1	0.4	0.1	0.4

주: 1) 항공기, 선박, 광·어업권, 각종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체육시설, 승마, 요트), 입목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7.8조원(전국 대비 31.9%), 서울 5.1조원(21.2%), 인천 1.9조원(7.8%) 등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세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산 1.4조원(5.9%), 경남 1.1조원(4.4%) 순이었다.

4)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 지방세 수입에 대한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세목별 세부 내역(지역별, 과세대상별 징수액 등)은 2023년 기준으로 제시(이하 제3부에서 같음)

■ 취득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

(단위 : 조원, %)

지역		2022년 세수	비중	2023년 세수	비중
전국		27.7	100.0	24.3	100.0
수도권	서울	5.9	21.2	5.1	21.2
	경기	8.8	31.6	7.8	31.9
	인천	2.1	7.7	1.9	7.8
비수도권	부산	1.6	5.9	1.4	5.9
	대구	1.0	3.8	1.0	3.9
	광주	0.6	2.1	0.4	1.7
	대전	0.6	2.1	0.5	1.9
	울산	0.4	1.5	0.4	1.6
	세종	0.2	0.8	0.2	0.7
	강원	0.7	2.6	0.6	2.3
	충북	0.7	2.5	0.6	2.5
	충남	1.1	3.8	1.0	4.2
	전북	0.5	2.0	0.5	2.0
	전남	0.8	2.9	0.6	2.6
	경북	0.9	3.1	0.8	3.3
	경남	1.2	4.5	1.1	4.4
	제주	0.5	2.0	0.5	1.9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주요 개정연혁

2011년 취득세가 舊 취득세와 舊 등록세를 통합하여 현재의 체계로 개편된 이후 취득세는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중심으로 개정이 진행되었다. 이하 본문에서는 주택 유상거래에 적용된 취득세 표준세율의 개편과 최근 개정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도입을 중심으로 개정연혁을 살펴본다.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 변동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은 주택 시장가격과 거래의 변동에 따라 2010년대 초반에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거래가액 구간별로 급격한 한계세율의 변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2010년 「지방세법」 개편 당시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가액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시 4%가 적용되었다. 이후 주택거래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2013년말에는 세법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표준세율을 인하하였다.

한편, 취득가액 6억원과 9억원 지점에서 적용되는 취득세의 한계세율이 1%p씩 높아짐으로써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취득가액을 임의로 낮게 신고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말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2%의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취득가액 6~9억원 구간은 150만원 단위로 취득세율을 0.01%p씩 점증적으로 높이는 세율체계를 도입하였다.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개정연혁: 표준세율 ■

(단위: %)

시행일자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2011.1.1.	2		4
2013.8.28. ¹⁾	1	2	3
2020.1.1. ~ 현재	1	1~3 ²⁾	3

주: 1) 2013년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 부칙에 따라 2013.8.28.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

2) 매 150만원 단위로 취득세율을 0.01%p씩 높이는 사선형 점증구조 세율체계 도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도입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보유수 등에 따라 취득세율을 중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9년말 세법개정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4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유상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여도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율(1~3%)보다 높은 4%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하여 납세자 유형별·지역별·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8~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

■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개정연혁: 유상거래 기준 ■

(단위: %)

시행일자 및 지역		개인 및 주택수 ¹⁾				법인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 2019. 12. 31.		취득가액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표준세율: 1~3				
2020. 1. 1~ 8. 11. ¹⁾		1~3			4	개인과 동일
2020. 8. 12.	조정대상지역내 ²⁾	1~3	8	12		
~ 현재	조정대상지역외	1~3		8	12	

주: 1) 주택수는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함

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 하는 경우 등은 중과에서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세 감면

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 지원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주택 취득세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출생일 전 1년 취득 포함)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1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1.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한 자이다. 취득한 물건이 부동산 등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나 양수인이 인정되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단, 취득한 물건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의 경우, 유·무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납세의무자로 인정된다.

과세대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건은 부동산, 차량 및 기계장비, 광업권 등 각종 권리, 골프·승마 등 각종 회원권 등이다. 구체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⁵⁾

■ 취득세 주요 과세대상 ■

과세대상	설명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 -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밖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등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정하여 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등
선박	기선, 범선, 부선(解船: 자체 추진장치가 없는 배) 등 모든 배
임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
광업권	「광업법」에 따른 탐사권 및 채굴권
어업권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업권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골프장 및 승마장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 요트회원권	회원제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회원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지방세법」 제6조제2항 ~ 제18항

이러한 취득세 과세대상의 취득행위는 크게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시취득이란 공유수면 매립 및 간척지 조성, 건축물의 신·증축, 선박 및 자동차의 건조 및 제조 등과 같이 특정권리가 타인을 거치지 않고 새롭게 발생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승계취득은 특정권리가 타인을 거쳐서 취득 당사자에게 넘어오는 것을 의미하며, 매매 및 교환 등을 통한 유상승계나 상속 및 증여 등을 통한 무상승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간주취득⁶⁾은 토지의 지목(地目)변경⁷⁾, 과점주주⁸⁾의 주식취득⁹⁾,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改修)¹⁰⁾와 같이 실제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취득으로 간주되는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행위나, 기부채납 조건부 부동산, 신탁재산의 취득 등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¹¹⁾

■ 취득세 비과세 대상 ■

조항(「지방세법」 제9조)	대상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제2항	기부채납 조건부 부동산 취득 등
제3항	신탁재산의 취득(신탁등기 병행)
제4항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제5항	존속기간 1년 이하 임시건축물 취득
제6항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제7항	상속개시 이전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지방세법」 제7조제4항 및 제5항

7)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의미하며, 지목변경을 통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함

8)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주주(소유지분은 특수관계인 포함)를 의미함

9)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함

10) “개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함(「지방세법」 제6조)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의 수선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승강기, 발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

11) 「지방세법」 제9조제1항 ~ 제7항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¹²⁾은 취득당시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취득 원인에 따라서 유상매매로 인한 취득이나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 등(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을,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시점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이하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단, 원시취득 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특수관계인 간의 유상매매 거래 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한다. 또한, 2년 이상에 걸쳐서 대금을 나눠 취득하는 연부취득 시에는 연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증가한 자산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취득행위와 마찬가지로, 간주취득의 경우에도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단,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해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총 취득가액을 과점주주의 지분비율만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즉, 공시가격을 의미한다. 단, 개별토지나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건축물(비주거용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거래·수입·제조가격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일반적으로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내의 취득이나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의 경우 중과세율이, 형식적인 취득이나 간주취득 등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2)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은 유상·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 등 사실상 취득가격을, 무상취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사용함(2023년 시행)

①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원인과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표준세율은 취득대상이 주택인 경우 1~3%,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경우 2.3~4%, 부동산 외의 경우 2~7% 수준이다. 단,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¹³⁾

■ 취득세 표준세율 ■

(단위 : %)

구분			세율	
부동산	주택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0~3.0 ¹⁾	
		9억원 초과	3.0	
	주택외 유상매매(토지, 건축물)		4.0	
	원시, 상속(농지외)		2.8	
	무상취득(증여)	영리사업자	3.5	
		비영리사업자	2.8	
	농지	매매	3.0	
		상속	2.3	
공유물 분할		2.3		
부동산 외	선박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상속	2.5
			상속외 무상취득	3.0
			원시, 수입·주문건조	2.02
			그 밖의 원인	3.0
		소형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 포함)		2.02
		기타		2.0
	차량	비영업용 경자동차		7.0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		4.0
		기타	비영업용	5.0
			영업용	4.0
		이륜자동차 포함 기타 차량		2.0
	기계장비	일반		3.0
		미등록 대상		2.0
	항공기	미등록 대상		2.0
		등록대상	기타	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기타(입목, 광·어업권, 각종 회원권 등)		2.0	

주: 1) 2019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가액 6~9억원 구간에서 유상거래 취득시 매 150만원 단위로 취득세율 0.01%p씩 증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3) 「지방세법」 제17조제1항

② 중과세율

취득세의 중과세율은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등에 대한 중과와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로 구분된다.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등에 대한 중과는 대도시 등 과밀억제권역¹⁴⁾ 내 법인이나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적용되며, 현행 중과기준세율¹⁵⁾은 2%이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을 위한 취득이나 공장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4%p 중과된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내에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율은 6.8%(표준세율 2.8% + 4%p)가 적용된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 전입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3배에 4%p 차감된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유상취득하였다면,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8%(표준세율 4% × 3 - 4%p)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8%p 중과된 세율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중과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3배 또는 표준세율의 3배에 4%p를 추가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과밀억제권역내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 및 세율 ■

대상	적용세율	비고
①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부동산 취득 및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표준세율 + 4%p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 제외
②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이나 지점, 분소, 공장 설치 혹은 이를 위한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 3) - 4%p	공업지역, 유치지역 제외
③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표준세율 + 8%p	
①, ② 동시 적용시	표준세율 × 3	
②, ③ 동시 적용시	(표준세율 × 3) + 4%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4) 과밀억제권역: 인구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 인천, 고양, 수원 등 수도권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15) 「지방세법」 제6조제19호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증과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위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증과대상은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으로서 조정대상지역¹⁶⁾ 내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3주택 이상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8~12%의 증과세율이 적용된다.

■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증과세율 적용대상 및 세율 ■

	주택수 ¹⁾	적용세율	
		조정대상지역 외	조정대상지역 내
개인 (1세대)	1주택	표준세율(1 ~ 3%)	표준세율(1 ~ 3%)
	2주택		8%
	3주택	8%	12%
	4주택 이상	12%	
법인의 주택 취득 및 증여 ²⁾ 로 인한 취득		12%	

주: 1) 주택수는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함

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 하는 경우 등은 증과에서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③ 특례세율

취득세의 특례세율은 형식적인 취득이나 간주취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형식적인 취득이 발생한 경우는 환매등기¹⁷⁾를 병행한 부동산 매매 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표준세율에 2%p 차감된 세율이 적용된다.

간주취득 등이 발생한 경우는 건축물의 개·보수, 토지의 지목변경 등으로 간주취득이 발생한 경우와 외국인 소유의 선박·차량·기계장비·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등으로 2%의 세율이 적용된다.

16)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17) 환매등기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도로 찾는 약정으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형식적으로 취득이 발생하였으나, 매매계약 이전과 비교하여 소유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됨

■ 취득세 특례세율 ■

대상	적용세율
형식적인 취득이 발생한 경우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 상속으로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해 지분이전을 하는 경우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 기타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의 경우	표준세율 - 2%p
간주취득 등이 발생한 경우 - 건축물의 개·보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취득 등 간주취득이 발생한 경우 - 외국인 소유의 선박·차량·기계장비·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고 연부로 취득한 경우 -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을 취득한 경우 -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한 경우 -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을 조성·설치한 경우 - 기타 레저시설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의 경우	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세액계산

세액계산구조

취득세 납부세액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을 취득한 납세의무자는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단, 취득세 중과세율 또는 특례세율 적용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는 재산세와 함께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을 두어 85%의 감면율만 적용한다.

■ 취득세 과세체계 ■

과세표준	신고가액 기준 * 단, 1.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2. 무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금액 3. 연부취득: 연부금액
× 세율	부동산: 1.0~4.0%, 부동산 외: 2.0~7.0%(표준세율) * 단, 1. 과밀억제권역내 취득, 다주택자 등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2. 형식적인 취득, 간주취득 등: 특례세율
- 세액감면	주요 감면: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취득 -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 부동산 취득 등
= 결정세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액감면

한편, 취득세는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세액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3년 실적 기준 주요 취득세 감면 항목은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취득(1조 2,507억원)과 도시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4,741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4,091억원) 등이 있다.

■ 취득세 주요 감면 제도 ■

감면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율 ¹⁾	일몰기한	취득세 감면액 ('23년 실적, 억원)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제68조	100% (85%)	2027.12.31.	12,507
도시개발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	제74조	50~100%	2025.12.31.	4,741
생애최초 주택구입	제36조의3	100% ²⁾	2025.12.31	4,091
교환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66조	100% ³⁾	2026.12.31.	3,892
임대사업자 임대목적 부동산	제31조	25~100% (85%)	2027.12.31.	3,625

주: 1) ()안의 값은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이 적용되는 경우

2) 최대 300만원(또는 200만원) 한도 내 공제

3) 단,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따라 40~140만원의 일정금액을 공제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4절 신고와 납부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¹⁸⁾ 취득일의 기준은 과세대상의 종류나 취득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먼저 원시취득(原始取得)의 취득일은 토지의 매립·간척 등의 경우 토지의 공사준공인가일,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의 경우 사용승인일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제조 및 건조의 경우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승계취득의 경우, 유상승계취득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 또는 상속 또는 유증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간주취득의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건축물 개수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의 종류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이나 초과환급세액의 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분이나 초과환급분의 최대 75% 한도에서 매일 0.025%씩 증가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지는 과세대상물건이 부동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기타 차량이나 기계장비는 각각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상의 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한다.

18) 취득세를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취득세의 특성상 분납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제5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 감면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단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 또는 증여 시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¹⁹⁾

■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개정 전	현행
<신 설>	<감면대상> - 인구감소지역의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감면요건>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 - 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 3년간 보유할 것 -
	<감면율> - 25%(지방조례로 +25%p까지 허용할 수 있음)
	<적용기한> - 2026.12.31.까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주택 취득세 감면액 확대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면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야하며 취득세 2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때 취득한 주택이 전용면적 60㎡이하, 취득가액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다가구, 다세대·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²⁰⁾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5조의5제3항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액 확대 ■

개정 전	현행
<감면대상>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감면요건> -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감면율> - 100%, 200만원 한도	<감면대상>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감면요건 및 공제액 추가> - 다가구, 다세대·연립, 도시형생활주택 - 2025.1.1~12.31. 기간 중 취득 - 전용면적 60㎡ 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감면율> - 100%, 300만원 한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7년 말까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²¹⁾대상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3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 100%(최대 140만원) 감면이었으나 2025~2027년까지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자동차 취득세 50%(최대 70만원)를 감면한다.²²⁾

■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

개정 전	현행
<감면대상> - 3자녀 이상 가구의 취득 자동차 <감면요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 시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이하),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 취득 시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 <감면율> - 100%(140만원 한도) <적용기한> - 2024.12.31.까지	<감면대상> - 2자녀 이상 가구의 취득 자동차 <감면요건>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이하),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 취득 시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 <감면율> - 3자녀 이상: 100%(140만원 한도) - 2자녀: 70%(70만원 한도) <적용기한> - 2027.12.31.까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1)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최대 140만원 감면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전기·수소전기차·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친환경차량 및 에너지효율차량의 보급확대를 위해 2024년 말로 예정되었던 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6년 말로 2년 연장하고 수소전기차 및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7년 말로 3년 연장하였다. 전기자동차 등 취득 시 취득세를 100%(최대 140만원) 면제를 유지하는 반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로 일몰 종료하였다.²³⁾

■ 전기·수소전기차·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

개정 전	현행
<감면대상> - 전기·수소전기차·하이브리드차·경형승용자동차	<감면대상> - 전기·수소전기차·경형승용자동차
<감면율> - 100%(최대 140만원)	<감면율> - 100%(최대 140만원)
<적용기한> - 2024.12.31.까지	<적용기한> - 전기자동차: 2026.12.31.까지 - 수소전기차 및 경형자동차: 2027.12.31.까지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6절 국제동향

OECD 국가의 부동산 거래 등으로 인한 취득세²⁴⁾의 최근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GDP 대비 비중이나 총조세 대비 비중이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2023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비중은 평균 1.4%로 전년 1.7% 대비 0.3%p 감소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은 0.3%로 전년 0.4% 대비 0.1%p 감소하였다.

G7 국가의 부동산 취득세 추이 역시 2023년 총조세 대비 비중이 1.5%로 전년 1.9% 대비 0.4%p 감소하였고 GDP 대비 비중도 0.4%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각국의 부양정책에 따른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하여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67조

24) OECD 기준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자산거래세(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코드 4400)에 포함되며, 우리나라의 자산거래세 항목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되는데, 본 장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하여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자산거래세에서 증권거래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함

2021~2022년의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세수의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세는 2023년 기준 총조세 대비 6.1%, GDP 대비 1.2%로 OECD 회원국 및 G7 국가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나, 2020년 총조세 대비 8.7%, GDP 대비 1.6%에 비해 감소하였다.

■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세 국제비교: 총조세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중 ■

(단위: %)

	총조세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중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7.3	7.2	8.7	8.4	6.1	6.1	1.2	1.3	1.6	1.7	1.4	1.2
OECD 평균	1.6	1.7	1.7	1.9	1.7	1.4	0.4	0.4	0.4	0.5	0.4	0.3
G7 평균	1.6	1.8	1.8	2.1	1.9	1.5	0.4	0.4	0.4	0.5	0.5	0.4
- 캐나다	0.7	1.0	1.2	1.5	1.3	1.0	0.2	0.3	0.4	0.5	0.4	0.3
- 프랑스	2.4	3.6	3.7	4.3	4.1	3.3	0.5	0.8	0.8	0.9	0.9	0.6
- 독일	1.4	1.9	2.2	2.0	1.8	1.3	0.3	0.4	0.5	0.5	0.4	0.3
- 이탈리아	1.9	2.2	2.0	2.2	2.1	2.0	0.6	0.6	0.6	0.6	0.6	0.6
- 일본	1.1	1.0	0.9	0.8	0.8	0.8	0.2	0.2	0.2	0.2	0.2	0.2
- 영국	2.9	2.8	2.4	3.0	3.0	2.1	0.8	0.7	0.6	0.8	0.9	0.6
- 미국	0.4	0.4	0.4	0.5	0.4	0.4	0.1	0.1	0.1	0.1	0.1	0.1

주: 1. 부동산 취득세는 OECD Tax Database 자산거래세(Code: 4400) 항목 중 증권 관련 거래세를 제외하여 계산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 자산거래세 등 값이 결측치인 호주, 그리스, 일본 3개국의 값은 제외하고 평균 산정

2. 총조세는 중앙 및 지방정부 수입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하고 집계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일부 주요 국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활동을 제한하고 세수확충을 위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였다. 아일랜드는 2021년 5월부터 1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추가적인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거래가액의 1~2%에 해당하는 인지세에 추가적으로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네덜란드도 2023년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취득세율을 기존 8%에서 10.4%로 인상하였으며, 2024년에는 회사 주식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간접적 부동산 거래에 4%의 취득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2023년부터 기존 비거주 부동산 취득세의 세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면서,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세 부담 가중 범위를 토론토 등 일부 지역에서 주 전체로 확장하였다.

반면,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영국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가액의 비과세 기준을 기존 30만 파운드에서 42.5만 파운드로 상향하였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법인 간의 부동산 거래 또는 개인과 법인(투자기금 포함) 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취득가액의 5%)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4년에는 친족간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 부동산 취득세 관련 국제 동향 ■

구분	국가명	내용
세부담 강화	싱가포르	세율인상: 주거용 부동산(1~4% → 1~6%), 비주거용 부동산(1~3% → 1~5%)
	네덜란드	간접적 부동산 거래에 대해 취득세 도입(세율 4%)
세부담 완화	사우디아라비아	친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면제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4: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2024.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장

재산세

제1절 개요

1. 개념 및 의의

재산세(財産稅)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에 대해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재산세는 일반재원으로 충당되는 보통세이며,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도가 단일주체로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2011년에 종전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 현재는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운영되고 있다.²⁵⁾

2. 기능 및 특징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시가표준액은 매년 특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토지 및 주택의 경우 매년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평가(산정)하는 공시가격을 활용하는데, 공시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 평가기관이 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가치 등을 바탕으로 용도지역, 주요 시설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조사·평가(산정)한다. 그 외 건축물 및 선박, 항공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구조·용도·위치지수,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을 활용한다. 한편, 재산세액 산출 시 적용하는 세율은 2010년 「지방세법」 전부개정 이후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주로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에 재산세율은 각 지방정부의 예산 등에 따라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매년 책정된다. 과세표준으로는 재산의 평가가치 자체를 적용하거나 평가가치를 바탕으로 산정한 값을 적용한다. 재산평가가치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년

25) 부가세(surtax)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됨

재산평가를 수행하는 국가도 있으나²⁶⁾,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신규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만 재평가하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4년마다 재산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등 매년 재산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있다.

3. 최근 현황

2024년 재산세 규모 및 연도별 추이

2024년 재산세 징수액은 15.1조원으로, 2023년 14.9조원 대비 0.3조원(1.7%) 증가하였다.

■ 2024년 재산세 징수액 ■

(단위 :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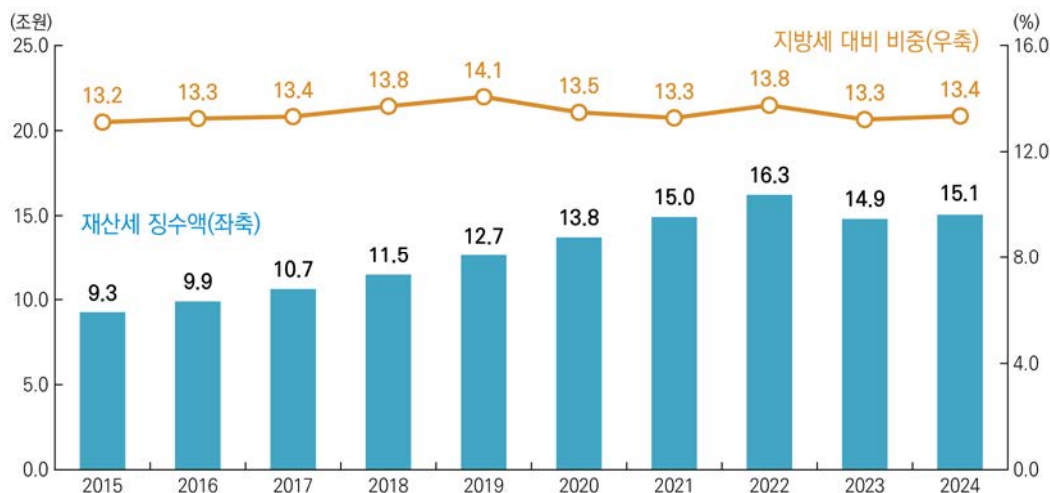
구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	
			증감액(C=B-A)	증가율(C/A)
재산세	14.9	15.1	0.3	1.7

주 :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4년 재산세 징수액은 전체 지방세 수입 대비 13.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재산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9.3조원에서 2022년 16.3조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공시가격 하락으로 징수실적과 지방세 수입 대비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2024년은 2023년과 달리 징수실적과 지방세 수입 대비 비중이 모두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26)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일본 등

■ 최근 재산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



주: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산세 과세대상별·지역별 규모

2023년 재산세 징수액을 과세대상별로 살펴보면, 토지 7.2조원(전체 부과액 대비 48.1%), 주택 5.7조원(38.4%), 건축물 2.0조원(13.3%) 등 부동산이 14.8조원으로 전체 부과액 대비 99.8%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부과액은 0.04조원으로 0.2%의 비중을 차지한다.

■ 재산세 과세대상별 징수액 현황 ■

(단위: 조원, %)

지역		2022년 세액		2023년 세액	
			비중		비중
합계		16.3	100	14.9	100
부동산	소계	16.2	99.8	14.8	99.8
	토지	7.6	46.7	7.2	48.1
	주택	6.6	40.6	5.7	38.4
	건축물	2.0	12.5	2.0	13.3
선박 및 항공기		0.03	0.2	0.04	0.2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1조원(전국 대비 34.6%), 경기 3.9조원(26.5%), 부산 0.9조원(5.8%), 인천 0.8조원(5.3%) 순으로 나타났다.

■ 재산세 지역별 징수액 현황 ■

(단위 : 조원, %)

지역		2022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2023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합계		16.3	100	16.3	100
수도권	서울	5.8	35.7	5.1	34.6
	경기	4.3	26.3	3.9	26.5
	인천	0.8	5.2	0.8	5.3
비수도권	부산	0.9	5.6	0.9	5.8
	대구	0.6	3.5	0.5	3.5
	광주	0.3	1.6	0.2	1.6
	대전	0.3	1.8	0.3	1.8
	울산	0.3	1.8	0.3	1.8
	세종	0.1	0.8	0.1	0.7
	강원	0.3	1.7	0.3	1.8
	충북	0.3	1.7	0.3	1.8
	충남	0.4	2.8	0.4	2.9
	전북	0.2	1.5	0.2	1.6
	전남	0.3	1.8	0.3	1.9
	경북	0.5	2.9	0.4	3.0
	경남	0.7	4.0	0.6	4.2
	제주	0.2	1.3	0.2	1.3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주요 개정연혁

2011년 재산세가 舊 재산세와 舊 도시계획세를 통합하여 현재의 체계로 개편된 이후 재산세는 2020년까지 큰 개정사항 없이 유지되어 왔다. 다만, 2021년 이후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과세표준 산정을 중심으로 개정이 진행되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 특례 도입

2021년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특례세율을 도입하였고, 2021년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²⁷⁾ 특례세율은 기본세율(0.1~0.4%)보다 0.05%p 낮은 0.05~0.35% 수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과세표준 5.4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동 특례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40~8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22~2023년에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의 경우 기존 대비 15%p 낮은 45%로 하향 조정하였고, 2023년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범위를 최소·최대치 모두 10%p씩 하향 조정하여 30~70%로 규정하였다.

27) 2020년 「지방세법」 개정 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2021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당초 특례 적용 대상 주택에서 상당수가 배제되자 2021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조정하여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함(「지방세법」 제111조의2)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2023년 2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였던 세부담 상한제를 폐지하고, 급격한 과세표준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 상한제²⁸⁾를 도입하였다. 과세표준 상한액은 당해 과세표준 산정 시 직전년도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과세표준 상한율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때 과세표준 상한율은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변동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105%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다만, 2022년까지 재산세가 과세되었던 주택의 경우 2028년까지 세부담 상한제와 과세표준 상한제가 동시에 적용되며 2029년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만 적용된다.²⁹⁾

과세대상 기준 조정

2021년 「지방세법」 개정(2021.12.28.)으로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기준을 조정하였다. 기존에는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를 겸하는 과세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2022년 과세분부터는 과세대상 건축물이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전체 건축물 면적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비중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을 조정³⁰⁾하였다.

다만, 동 개정으로 조정된 기준은 주거 및 비주거 겸용 건축물로서 새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며, 개정세법 시행 이전 주택으로 간주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28) 「지방세법」 제110조, 같은법 시행령 109조의2

29) 세부담 상한제 폐지에 따른 재산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부칙 제15조, <법률 제19230호, 2023.3.14.>)

30)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1. 과세체계

재산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먼저, 과세표준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과세표준 상한제를 적용하여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과표가 오르지 않도록 관리한다. 산정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부동산 유형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다. 이후 도시지역³¹⁾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의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을 합산하고, 세액감면액과 세부담 상한 초과액을 차감하여 최종 재산세액을 결정한다.

■ 재산세 과세체계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 선박 및 항공기: 미적용
× 세율	주택: 0.1~0.4%* ※ 1세대 1주택자 0.05~0.35%('21~'26년 한시 적용) 토지: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분리과세 0.07%, 0.2%, 4.0% 건축물: 0.25%, 0.5%, 4.0% 기타물건: 선박 0.3%, 5%, 항공기 0.3%
= 산출세액	
+ 재산세 도시지역분 ¹⁾	과세표준의 0.14%
- 세액감면	주요 감면 항목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부동산 - 종교단체 및 학교 등의 부동산 -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 부동산 등
- 세부담 상한 초과액	주택²⁾: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 토지 및 건축물: 150%
= 결정세액	

주: 1)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토지·건축물에 한해 추가로 부과됨

2) 주택분 세부담 상한의 경우 2022년 이전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 한정하여 2028년까지 유지 후 폐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1) 우리나라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실태·특성·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도시지역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곳을 고시함

2.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한 자이다. 다만, 공유재산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해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자를 구분한다.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분권자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뒤 각 부분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매매 등의 사유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또한 수탁자 명의로登記·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 외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3.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과 항공기 및 선박이다(「지방세법」 제 105조).³²⁾ 재산세를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한다. 토지는 과세방식을 기준으로 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 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시·군·구 내 토지를 토지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보세창고용·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주택 및 철거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국가 정책상 목적(보호·지원·증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32) 과세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1장 취득세 제3절의 표 '취득세 주요 과세대상' 참고

토지를 의미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저울/일반/고울 분리과세 토지로 구분된다. 저울 분리과세 토지에는 농지나 보전산지와 같은 특정 임야 등이 포함되며, 일반 분리과세 토지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업용 토지 등 공익적 성격의 토지가 포함된다. 고울 분리과세 토지에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포함된다.

Ⅱ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Ⅱ

구분		과세대상
합산 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별도합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주택 및 철거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보세창고용·물류단지시설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토지,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
분리과세 (합산배제)		(저울)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일반)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전 취득이 완료된 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등 (고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건축물은 「건축법」³³⁾상의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다.

부동산 외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선박과 항공기가 있다. 선박은 기선, 범선, 부선(자체 추진장치가 없는 배) 등 모든 배를,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조정하여 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의미한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共用) 또는 공공용(公共用)으로 사용하는 재산, 도로·하천·제방 및 묘지 등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데,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33)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함(「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재산세 비과세 대상 ■

해당 조항 (「지방세법」 제109조)	대상
제1항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제2항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단, 유료사용시 재산세 부과)
제3항제1호	도로·하천·제방·구거(溝渠: 인공수로 등)·유지(溜地: 저수지 등) 및 묘지
제3항제2호	산림보호구역,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제3항제3호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후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사용 건축물
제3항제4호	비상재해구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제3항제5호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적절한 건축물 등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과세표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³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산정된다. 먼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같은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시·군·구 내 토지를 토지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그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달리 개별 토지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40~80%(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0~70%),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50~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년 3월 현재 주택에는 시가표준액의 60%(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3~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주택은 45%를 적용), 토지 및 건축물에는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2023년 시행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경우 2024년부터 과세표준 산정 시 과세표준 상한의 적용을 받는다. 과세표준 상한액은 직전년도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변동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과세표준 상한율(100~105%)을 적용³⁵⁾하여 산정한다.

34) 시가표준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1장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설명 참고

35) 2024년 시행 이후 2025년 현재 105% 적용

5. 세율

재산세 세율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과세표준 5.4억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6년('21~'26년)간 과세표준 구간별로 기본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된다.³⁶⁾

■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	기본세율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0.6억원 이하	0.1%	0.05%
0.6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6만원 + 0.6억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 + 0.6억원 초과금액의 0.1%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 5.4억원 이하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5.4억원 초과		-

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토지분 재산세의 세율은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2~0.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2~0.4%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토지의 경우, 농지 및 임야는 0.07%, 공장용지 등 공급목적 토지는 0.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은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 현행 토지분 재산세 세율 ■

구분	재산의 종류	세율	
종합합산	•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농지·임야 등 • 분리과세대상 중 기준초과 토지 •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기준초과 토지 •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0.5억원 이하	0.2%
		0.5억원 초과~1억원 이하	10만원 + 0.5억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	• 건물 부속토지 •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	• 농지·임야 등(생산적 업무용) • 공장용지, 공급목적 토지(산업적 업무용)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사행성 업무용)		0.07%
			0.2%
			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6) 「지방세법」 제111조의2 및 부칙 제2조<법률 제17769호, 2020.12.29.>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0.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³⁷⁾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로부터 5년간 중과세율 1.25%가 적용된다.³⁸⁾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4%, 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등에서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0.5% 세율이 적용된다.

■ 현행 건축물분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특정지역 ¹⁾ 의 공장용 건축물 ²⁾	0.5%
기타 건축물	0.25%

주: 1) 광역시의 군지역 및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부동산 외 재산세 과세대상인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0.3%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단,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선박의 경우에는 5%의 세율이 부과된다.

■ 현행 기타물건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		세율
선박	고급선박	5%
	고급선박 외	0.3%
항공기		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7)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함(「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다만, 여기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함

38)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 및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1조를 준용함

6.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지역³⁹⁾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를 도시지역분으로 부과한다.⁴⁰⁾ 단,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의 경우 고급주택만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도시지역 외에 도시개발구역의 환지(換地) 처분이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분이 부과된다.

7.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감면

재산세는 학교 및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의 부동산에 대해 세액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재산세 주요 감면 제도에는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부동산(3,959억원)과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부동산(2,756억원),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 부동산(1,771억원)에 대한 감면 등이 있다.

■ 재산세 주요 감면 제도 ■

감면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율 ¹⁾	일몰기한	감면액 (23년 실적 억원)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부동산	제41조	100% ²⁾	2027.12.31.	3,959
종교단체 및 향교의 부동산	제50조	100%	-	2,756
임대사업자 임대목적 부동산	제31조	25~100%(85%)	2027.12.31.	1,771
장기일반 임대주택	제31조의3	50~100%(85%)	2025.12.31.	1,03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제76조	100%	2027.12.31.	789

주: 1) () 안의 값은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면제규정도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이 적용되는 경우

2) 제41조제7항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은 50~60%이며, 제41조제8항 지방대학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은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5년간 50%

자료: 행정안전부, 「2024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9) 우리나라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실태·특성·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도시지역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곳을 고시함

40) 2011년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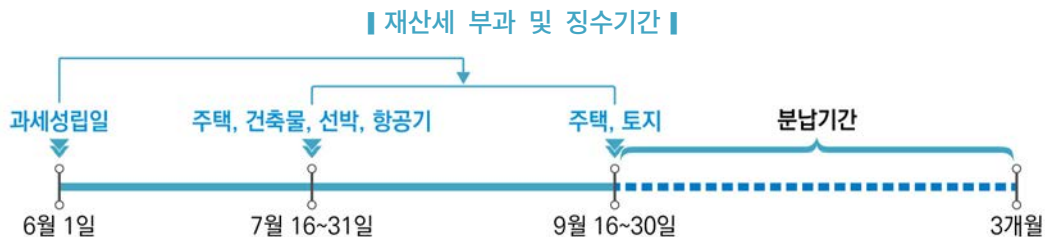
세부담 상한제

재산세는 전년 대비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세부담 상한제는 전년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써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운영하고 있다.⁴¹⁾ 세부담 상한제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150%의 세부담 상한비율이 적용된다.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는 2022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다만, 2022년까지 재산세가 과세되었던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제 폐지에 따른 재산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2028년까지 세부담 상한제가 유지된다.⁴²⁾

제4절 부과와 징수

재산세는 과세대상 유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르게 설정된다. 건축물 및 선박,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31일, 토지는 매년 9월 16~30일에 납부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는 7월 16~31일에, 나머지 50%는 9월 16~30일에 납부한다.⁴³⁾ 납세지는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의 경우 과세대상의 소재지,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각각 선적항 또는 정계장(定繫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1) 「지방세법」 제122조

42)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의 세부담 상한비율이 적용됨

43) 단 해당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31일까지로 하여 일괄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음(「지방세법」 제115조)

재산세 납부세액⁴⁴⁾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이하 ‘분납’)가 가능하다.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해당 기초자치단체(시·군·구)장에게 신청하며,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이후 3개월 이내이다. 당해 연도 세액이 250~5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으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물납(物納)이 가능하다.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당 기초자치단체(시·군·구)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 구역 내의 부동산으로 물납한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의 주택분 재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납부유예⁴⁵⁾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하거나,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4) 재산세에 병기되어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함

45) 「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5절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⁴⁶⁾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25% 경감하기로 신설하였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 시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한 주택 재산세를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25% 감면한다.⁴⁷⁾

제6절 국제동향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⁴⁸⁾의 최근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GDP 대비 비중이나 총조세 대비 비중 모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4년 4.4%에서 2023년 3.8%로 0.6%p 감소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 역시 2014년 1.1%에서 2023년 0.9%로 0.2%p 감소하였다.

G7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총조세대비 2014년 9.4%에서 8.0%로 1.4%p 감소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은 2.2%에서 1.9%로 0.3%p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2023년 기준 총조세 대비 4.9%, GDP 대비 0.9%로 OECD 국가의 평균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G7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인해 총조세대비 5.4%, GDP 대비 1.1%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보유세 완화정책(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⁴⁹⁾,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⁵⁰⁾)으로 인해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46)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수분양자가 집값의 일부(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와 20~30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8항)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8항

48) OECD 통계상 우리나라의 보유세에는 재산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주민세(사업소분) 등 세수가 포함되어 있음

49)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인하여 아파트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적용 (기존 2023년 현실화율: 아파트 72.7%, 단독주택 60.4%, 토지 74.7%)

50)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95%에서 2022년 이후 주택은 60%, 토지는 100% 적용
재산세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나 1주택자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43~45% 적용

■ 최근 5년간 부동산 보유세 국제비교: 총조세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중 ■

(단위 : %)

	총조세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중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4.4	4.6	5.2	5.4	5.2	4.9	0.7	0.9	1.0	1.1	1.1	0.9
OECD 평균	4.4	4.2	4.3	4.0	3.7	3.8	1.1	1.0	1.1	1.0	0.9	0.9
G7 평균	9.4	9.2	9.2	8.2	7.8	8.0	2.2	2.1	2.1	2.0	1.9	1.9
- 캐나다	10.6	10.3	10.3	9.3	8.7	8.7	3.0	3.1	3.2	2.9	2.6	2.7
- 프랑스	12.2	11.4	11.5	10.2	9.4	9.9	2.6	2.4	2.4	2.1	2.0	1.9
- 독일	1.6	1.5	1.7	1.5	1.4	1.5	0.4	0.4	0.4	0.4	0.3	0.3
- 이탈리아	5.1	4.2	4.4	4.2	3.9	3.6	1.5	1.2	1.3	1.2	1.1	1.1
- 일본	10.6	10.3	10.1	9.3	9.2	9.5	1.9	1.9	2.0	1.9	2.0	1.9
- 영국	11.8	11.9	11.3	10.3	10.1	9.9	3.0	3.1	2.9	2.8	2.8	2.8
- 미국	13.7	14.5	14.7	12.8	11.9	13.1	2.7	2.7	2.8	2.6	2.5	2.5

주: 1. 부동산 보유세는 OECD 코드 4100(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을 기준으로 산출

2. 우리나라의 보유세에는 재산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주민세(사업소분) 등 세수가 포함되어 있음

3.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3년 미발표국(호주, 그리스)은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 비교

현재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부동산 실효세율 관련 통계는 집계되지 않지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의 공식적인 국제비교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실효세율 산정을 위한 국가별 부동산 가치는 OECD 국민대차대조표 자료를 사용하나, 국가별 통계생산방법의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우리나라는 행정 자료에 기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치를 추정하지만, 다른 나라는 주택 등 건축물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토지가치를 산출하는 등 부동산 가치의 기준이 되는 국민대차대조표의 토지가치 추정방식에 차이가 있다. 토지자산에 포함되는 범위(예: 정부소유토지의 포함유무 등)도 국가별로 상이하다(한국은행, 「한국의 국민대차대조표 해설」, 2020).

또한,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의 부동산 가치를 발표하는 OECD 회원국은 전체 38개국 중 15개국⁵¹⁾에 불과하므로 15개국 평균을 OECD 전체 평균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국제동향을 세수 확대 및 축소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덴마크, 아일랜드 등 국가에서는 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확대

51)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등을 통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영국 등 국가에서는 보유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한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주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 시행 국가를 살펴보면 캐나다의 경우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외국인이 소유자의 투기 및 공실세 세율을 2026년 2%에서 3%로 인상⁵²⁾할 예정이다. 호주는 세컨드홈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공실료를 6배 인상하였고, 아일랜드는 빈집세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인상하였다.

반면, 영국, 캐나다(뉴브런즈윅 주) 등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전 50%에서 75%로 상향된 감면율 적용을 회계연도 2024-2025년까지 연장하였으며, 캐나다의 경우 뉴브런즈윅 주에서 2022년 4월 시행한 재산세를 인하 정책을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소유자가 고령인 주택에 대해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였다. 중국 마카오는 임대투자 유치를 위해 임대부동산에 세율을 10%에서 8%로 축소하였다.

■ 부동산 보유세 관련 국제 동향 ■

구분	국가명	내용
부동산 보유세 강화	호주	• 세컨드홈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인상 -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공실료 6배 인상
	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투기 및 공실세 확대
	아일랜드	• 빈집세 인상(3배→5배)
부동산 보유세 완화	영국	• 상업용 부동산(소매, 숙박, 레저)에 대한 감면 연장 - (감면율) 75%(종전 50%에서 상향 조정), (감면한도) 11만 파운드 - 국가회계연도 2024-2025까지 연장
	캐나다	• (뉴브런즈윅) 고령의 주택소유자에 재산세 세율 인하
	중국	• (마카오) 임대부동산 세율인하(10%→8%)

자료 : OECD, "Tax Policy Reforms 2024: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2024.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2)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투기세 및 공실세 세율은 2018년 0.5%, 2019~2025년 외국인 2%, 내국인 0.5%, 2026년 이후 각각 3%와 1%로 인상할 예정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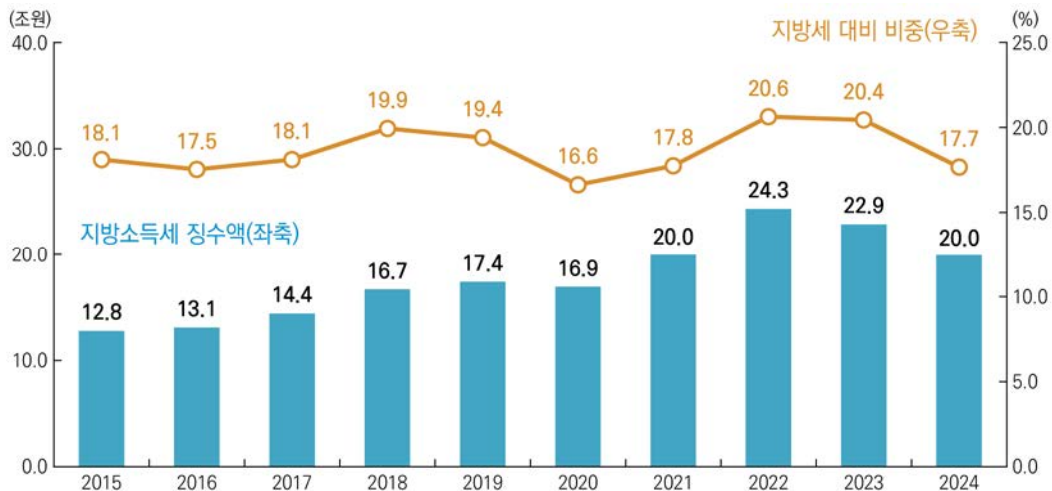
지방소득세

제1절 개요

지방소득세(地方所得稅)는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에 대해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지방소득세는 과세대상이 유사한 기존의 주민세 소득세할·법인세할,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폐합하여 개편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10년 신설되었다. 지방소득세는 2013년까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로 과세하는 부가세(附加稅, sur-tax)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법」의 별도 규정을 따르는 독립세의 형태로 전환되었다.⁵³⁾

2024년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20.0조원으로 지방세 전체 징수액 대비 1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지방소득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12.8조원(지방세 전체 비중 18.1%)에서 2022년 24.3조원(20.6%)까지 대체적으로 증가하다가 2023년 이후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 최근 지방소득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



주: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3) 2014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이전되어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이원체계를 갖추게 됨

제2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1.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이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다(「지방세법」 제86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등).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에서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산액),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의 지방소득 범위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세 과세대상과 동일하다. 과세대상인 법인의 지방소득 범위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와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⁵⁴⁾, 법인이 일정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⁵⁵⁾의 4가지이다. 한편, 내국인 및 내국법인은 국내외 원천소득 모두에 과세하지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과세표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한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한다.

세율

지방소득세는 2014년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10%를 적용하는 부가세(附加稅, surtax)에서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면서 별도의 지방소득세율 체계를 구축하였다. 다만, 전환 이후에도 지방소득세율은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은 소득세율과 동일한 8개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의 10%인 0.6~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은

54) 법인의 잔여재산 가액이 해산 시(합병·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부분

55)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이며, 내국법인이 투자·임금 상승·상생협력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50% 범위에서 가감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⁵⁶⁾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양도소득 중에서 주식에 대한 별도 세율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같이 자산 종류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법인지방소득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율과 동일한 4개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의 10%인 0.9~2.4%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역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 시는 양도소득의 2%(미등기의 경우 4%),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 1%(미등기 시 4%)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납부세액의 10%이다.

■ 소득구분별 지방소득세 세율 ■

구분		과세표준	세율	
개인	종합소득	1,400만원 이하	0.6%	소득세율의 10%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1.5억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2억원 이하	0.9%	법인세율의 10%
		2억원 ~ 200억원	1.9%	
		200억원 ~ 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별	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함께 특별징수하고 있다. 이 때 특별징수액은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10%로 한다. 개인지방소득의 경우 근로·사업·연금·퇴직·이자·배당소득의 일부가 원천징수되며, 법인지방소득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된다.

56) 탄력세율의 적용은 2019년까지 유예되었다가 2020년부터 적용 중임

2. 세액계산

세액계산구조

지방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각각의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와 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구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총결정세액을 산출한다.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⁵⁷⁾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감면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공제·감면액의 10%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⁵⁸⁾

법인지방소득세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단, 「지방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세액공제나 감면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2025년까지 한시적용되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⁵⁹⁾ 제도 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 ~ 제176조의2

58) 해당 세액공제나 감면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2023년에서 2026년으로 3년 연장하여 운영 중임

59)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법인세율(9 ~ 12%)의 10%인 0.9~1.2%의 세율을 적용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

납부세액

2023년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은 22.9조원으로 전년(24.3조원) 대비 1.4조원가량 감소하였다. 과세대상별로 살펴보면 법인지방소득세액 9.4조원(2023년 지방소득세 납부액 중 41.2%), 특별징수 세액 9.2조원(40.0%), 개인지방소득세액 4.3조원(18.8%)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할 때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모든 과세대상의 세수가 감소하였는데, 개인분은 1.4조원, 법인분은 0.7조원 가량 감소하였다.

■ 지방소득세 과세대상별 납부세액 현황 ■

(단위: 조원, %)

과세대상 및 유형	2022년 세수		2023년 세수	
		비중		비중
전체	24.3	100.0	22.9	100.0
개인지방소득(신고분)	5.7	23.4	4.3	18.8
법인지방소득(신고분)	10.1	41.6	9.4	41.2
특별징수(개인·법인 원천징수분)	8.5	35.1	9.2	4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8조원(전국 대비 34.9%), 경기 6조원(26%), 부산 1.1조원(4.7%) 순으로 납부세액이 크고, 충남·인천·경북·경남은 0.8~1조원(3.4~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지방소득세 전국 대비 비중은 2022년 66.4%에서 2023년 64.7% 수준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지방소득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단위 : 조원, %)

지역		2022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2023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전국		24.3	100.0	22.9	100.0
수도권	서울	8.8	36.3	8.0	34.9
	경기	6.4	26.4	6.0	26.0
	인천	0.9	3.7	0.9	3.9
비수도권	부산	1.1	4.3	1.1	4.7
	대구	0.6	2.5	0.6	2.6
	광주	0.5	1.9	0.4	1.9
	대전	0.5	2.0	0.4	2.0
	울산	0.6	2.5	0.7	3.0
	세종	0.1	0.5	0.1	0.4
	강원	0.3	1.4	0.3	1.4
	충북	0.7	2.8	0.7	2.8
	충남	0.9	3.7	1.0	4.3
	전북	0.4	1.6	0.4	1.7
	전남	0.6	2.6	0.6	2.5
	경북	0.9	3.7	0.8	3.5
	경남	0.8	3.2	0.8	3.4
	제주	0.2	0.8	0.2	0.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3절 신고와 납부

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며, 신고·납부 기간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양도소득분의 납기는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로 한다.⁶⁰⁾ 지방자치단체장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의 경우 거주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다.⁶¹⁾

납세지와 관련하여, 개인은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나 특별징수 납세지는 별도로 규정한다. 가령 근로·퇴직소득은 근무지, 이자·배당소득은 소득 지급지, 연금소득은 주소지,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은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이다. 법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인 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이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총 종업원 수 대비 각 지방자치단체 종업원수의 비율과 총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대비 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한다.

■ 지방소득세의 납세자 및 유형별 납세지 구분 ■

구분	원칙	특별징수 납세지				
		근로·퇴직 소득	이자·배당 소득	연금소득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그 밖의 소득 (본점에서 원천징수 일괄처리)
개인	주소지	근무지	소득 지급지	주소지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소득 지급지 ¹⁾
구분	원칙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소재 시				
법인	납세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 $\left[\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right] \div 2$				

주: 1) 단, 본점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복권 당첨금 등에 대하여는 복권 투표권 판매지를 납세지로 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신고와 납부

특별징수 중 소득세(근로·사업·연금·퇴직·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의무자(금융기관 등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해당 소득에서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60)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제103조의7제1항

61) 「지방세법」 제95조, 제103조의5제4항 및 제103조의7제9항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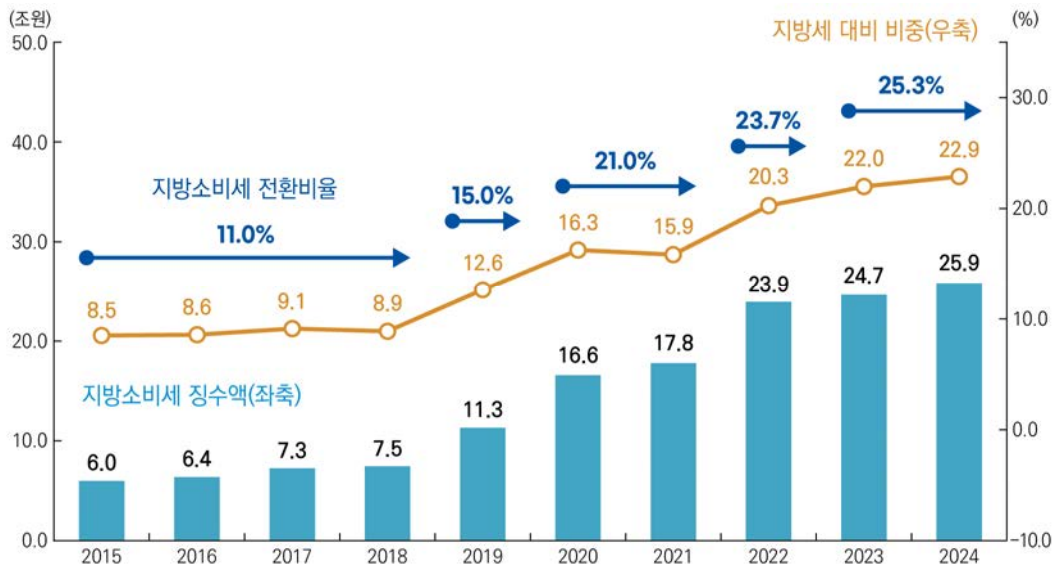
지방소비세

제1절 개요

지방소비세(地方消費稅)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시·도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 확충 및 지방재정 보완을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신설되었으며, 다른 지방세와 달리 국세인 부가가치세로 징수된 세액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특징이 있다.

2024년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25.9조원으로, 2023년 24.7억원 대비 1.2조원(4.8%) 증가하였으며, 전체 지방세 수입 대비 2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지방소비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6.0조원에서 2024년 25.9조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규모가 증가하고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꾸준히 인상된 것에 기인한다.

■ 최근 지방소비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



주: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다.

과세표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제·감면세액을 제외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율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액의 25.3%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비율이므로, 지방소비세율(이하에서는 '전환비율'이라고 함)을 인상할 경우 지방소비세수 증가분만큼 국세인 부가가치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당시 전환비율은 5%였으나, 2014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11%로 6%p 인상하였다⁶²⁾. 이후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강화 조치를 통해 전환비율을 2019년 15%로 4%p, 2020년 21%로 6%p, 2022년 23.7%로 2.7%p, 2023년은 25.3%로 1.6%p 인상하였다.

■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변화 ■

(단위 : %)

2010 ~ 2013년	2014 ~ 2018년	2019년	2020 ~ 2021년	2022년	2023년 ~
5	11	15	21	23.7	25.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2)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에 따른 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0.00%('08), 20.27%('10), 20.46%('19), 20.79%('20)로 점차 인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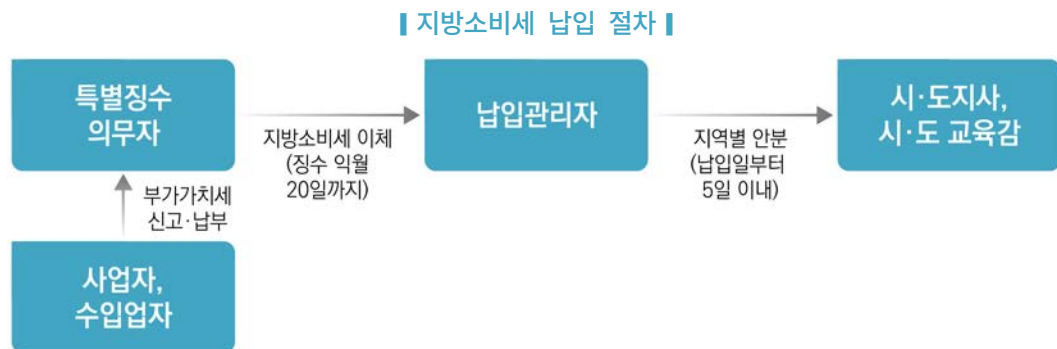
제3절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후 최종 부가가치세액의 일정비율이 이양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통해 지방소비세 납부 의무를 완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다른 지방세와 같이 신고·납부된 금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체 지방소비세수를 각 지역으로 배분한다.

1. 납입 절차

특별징수의무자(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관리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1인으로 정하며, 연간 이자수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변경·지정한다.⁶³⁾ 납입관리자는 지방소비세가 납입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역별로 안분한 금액을 각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3) '10~'14년 서울특별시장, '15년 경상남도지사, '16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7년 강원도지사, '18년 충청남도지사, '19년 울산광역시장, '20년 경상북도지사, '21년 전라북도지사, '22년 전라남도지사, '23년 충청북도지사, '24년 세종특별자치시장, '25년 부산광역시장(「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2.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납입관리자는 지방소비세액을 ① 지역별 소비지출, ②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역별 취득세 감소, ③ 한시적 지방 전환사업 비용 보전, ④ 그 외 기타 안분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 배분한다.

2023년 지방소비세액은 24.7조원으로 전년(23.9조원) 대비 0.7조원(3.1%) 증가하였다. 배분기준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별 소비지출 반영 배분액(5%p분)이 5.4조원(전체 징수액 대비 21.7%), 취득세 감소 반영 배분액(6%p분)이 4.3조원(17.3%)⁶⁴⁾, 전환사업 등을 반영한 배분액(12.7%p)은 15조원(61%)이다.

■ 지방소비세 배분기준별 세액 현황 ■

(단위 : 조원, %)

과세대상 및 유형	2022년 세수	비중	2023년 세수	비중
합계	23.9	100.0	24.7	100.0
소비지출 반영(5%p분)	5.6	23.2	5.4	21.7
취득세 감소 반영(6%p분)	4.5	18.9	4.3	17.3
전환사업 등('21년 10%p, '22년 12.7%p분)	13.9	57.9	15.0	61.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 기준 지역별 내역을 살펴보면,⁶⁵⁾ 경기 3.9조원(16.0%), 서울 2.9조원(11.9%), 경남 2.4조원(9.6%), 경북 2조원(7.9%)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다.⁶⁶⁾

64) 「지방세통계연감」은 취득세 감소분 중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분을 세수로 집계하지 않으므로 동 보고서의 통계에 포함하지 않음

65)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감소를 수반하므로,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의 재정변화를 야기하나, 동 보고서에서는 지방소비세수의 현황만을 살펴봄

66) 지역별 세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지방소비세수의 재배분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임

지방소비세 지역별 배분 현황

(단위: 조원, %)

지역		2022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2023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합계		23.9	100.0	24.7	100.0
수도권	서울	3.0	12.5	2.9	11.9
	경기	3.8	16.0	3.9	16.0
	인천	0.8	3.3	0.9	3.5
비수도권	부산	1.6	6.6	1.6	6.5
	대구	1.1	4.7	1.1	4.6
	광주	0.7	2.9	0.7	2.9
	대전	0.7	2.9	0.7	2.8
	울산	0.5	2.2	0.5	2.2
	세종	0.2	1.0	0.2	1.0
	강원	1.2	4.9	1.2	5.0
	충북	1.1	4.5	1.1	4.6
	충남	1.5	6.4	1.6	6.5
	전북	1.4	5.7	1.4	5.8
	전남	1.6	6.7	1.7	6.9
	경북	1.9	7.9	2.0	7.9
	경남	2.3	9.6	2.4	9.6
	제주	0.5	2.2	0.6	2.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5장

기타 지방세

제1절 자동차세

1. 개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와 주행에 대해 특별·광역시 및 시·군, 특별자치시·도가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소유분'과 주행에 대해 과세하는 '주행분'으로 구분된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2000년에 주행세로 도입되어 운영하다가 2011년부터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편입되었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surtag)이다.

2024년 자동차세 규모 및 연도별 추이

2024년 자동차세 징수액은 7.5조원으로 2023년 7.3조원 대비 0.2조원(2.6%) 증가하였다.

■ 2024년 자동차세 징수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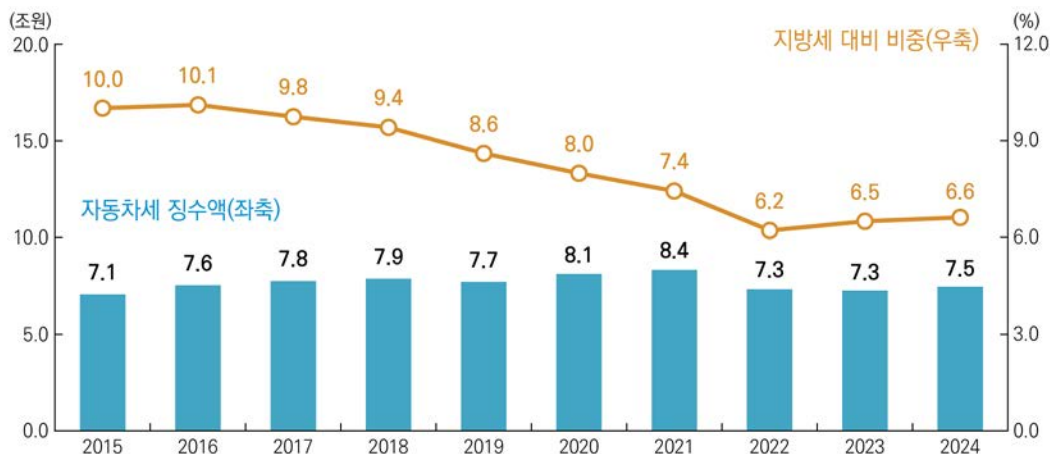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	
			증감액(C=B-A)	증가율(C/A)
자동차세	7.3	7.5	0.2	2.6

주: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4년 자동차세 징수액은 전체 지방세 수입 대비 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7.1조원에서 2021년 8.4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2023년과 2024년은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 최근 자동차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



주: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동차세 과세대상별·지역별 규모

2023년 자동차세 납부세액을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유분은 총 4.5조원으로 2022년 4.4조원 대비 0.1조원(1.5%) 증가하였고, 자동차세 주행분은 2.8조원으로 2022년 4.1조원 대비 1.1조원(△26.8%) 감소하였다.⁶⁷⁾ 자동차세 주행분의 감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확대조치에 따라 본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자동차세 소유분 납부세액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수납액이 4.3조원(소유분 자동차세 세수 대비 96.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승합·화물·특수·3륜이하 소형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 외에 대한 수납액은 0.1조원(3.1%)이다.

■ 자동차세 과세대상별 납부세액 현황 ■

(단위: 조원, %)

지역		2022년 세수	비중	2023년 세수	비중
총계		7.3	100.0	7.3	100.0
소유분	소계	4.4	59.5	4.5	61.4
	승용자동차	4.2	57.6	4.3	59.4
	승용자동차 외 ¹⁾	0.1	1.9	0.1	1.9
주행분		3.0	40.5	2.8	38.6

주: 1) 승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가 포함되며, 승용자동차 외에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가 포함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7) 각 금액은 반올림에 따른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8조원으로 전국 대비 25.2%를 차지하여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서울 1.0조원(13.7%), 경남 0.5조원(7.2%), 부산 0.5조원(6.9%) 순이다.

■ 자동차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

(단위 : 조원, %)

지역		2022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2023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합계		7.3	100.0	7.3	100.0
수도권	서울	1.9	13.6	1.0	13.7
	경기	1.8	25.0	1.8	25.2
	인천	0.5	6.5	0.5	6.5
비수도권	부산	0.5	6.8	0.5	6.9
	대구	0.4	4.9	0.4	5.0
	광주	0.2	3.1	0.2	3.1
	대전	0.2	2.7	0.2	2.8
	울산	0.2	2.5	0.2	2.5
	세종	0.1	0.7	0.1	0.7
	강원	0.2	2.9	0.2	2.9
	충북	0.3	3.5	0.3	3.5
	충남	0.3	4.5	0.3	4.5
	전북	0.3	3.8	0.3	3.8
	전남	0.3	4.4	0.3	4.4
	경북	0.4	5.6	0.4	5.7
	경남	0.5	7.1	0.5	7.2
	제주	0.1	1.6	0.1	1.6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과세체계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소유분과 주행에 대해 과세하는 주행분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세 소유분의 경우 자동차 1대당 배기량, 적재정량 등에 일정 금액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감면조례에 따른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자동차세 주행분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26%(2025년 기준)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 자동차세 과세체계 ■

과세표준	소유분: 승용/승합/화물/기타, 영업/비영업으로 구분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세율	소유분: (승용) 배기량(cc) 기준 부과 (승합) 대당 부과 (화물) 적재정량(kg) 기준 부과 (기타) 대당 부과 ¹⁾ 주행분: 26%(2024년 기준) [※] ※ 기본세율 36%, 단, 30%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 적용 가능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주요 감면 항목 - 장애인용 자동차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 결정세액	

주: 1) 기타에는 전기승용차, 특수차, 3륜 이하 자동차가 포함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동차세 소유분

자동차세 소유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 실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상 등재된 자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공매되어 매수대금까지 납부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동차세 소유분의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해당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 및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를 위해 제공하는 자동차와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은 소유분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소유분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자동차의 종류·용도·배기량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종류는 승용·승합·화물·특수·3륜 이하 소형자동차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다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된다.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은 배기량이며, 화물차는 적재정량, 승합차 및 기타 자동차는 1대당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승용차 중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의 정액을 부과하고 있다.

■ 자동차 1대당 연세액 ■

(단위: 원)

승용차				승합차		
영업용		비영업용		종류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 1,000cc	18	~ 1,000cc	80	고속버스	100,000	-
~ 1,600cc		~ 1,600cc	140	대형전세버스	70,000	-
~ 2,000cc	19	1,600cc ~	200	소형전세버스	50,000	-
~ 2,500cc		-	-	대형일반버스	42,000	115,000
2,500cc ~	24	-	-	소형일반버스	25,000	65,000

화물차			기타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종류	영업용	비영업용
~ 1,000kg	6,600	28,500	그 밖의 승용차 (전기승용차)	20,000	100,000
~ 2,000kg	9,600	34,500			
~ 3,000kg	13,500	48,000	특수차	대형	36,000
~ 4,000kg	18,000	63,000			157,500
~ 5,000kg	22,500	79,500	소형	13,500	58,500
~ 8,000kg	36,000	130,500			
~ 10,000kg	45,000	157,500	3륜 이하 소형차	3,300	18,000

주: 1.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경감하며, 최대 50%(12년 이후)까지 경감
 2.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 1만kg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
 3. 지방자치단체장은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하는 세율을 정할 수 있음

자동차세 주행분

자동차세 주행분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정유업자와 유류수입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표준은 휘발유나 경유 등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며, 기본세율은 36%이다. 다만 30%의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2025년 현재 26%가 적용되고 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자동차세는 장애인용 자동차,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2023년 기준 자동차세에 대한 주요 감면 제도로는 장애인용 자동차(847억원)와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556억원),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멸실·파손된 자동차(327억원), 국가유공자의 보철·생업활동용 자동차(220억원)에 대한 감면 등이 있다.

■ 자동차세 주요 감면 제도 ■

감면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율	일몰기한	감면액 (23년 실적, 억원)
장애인용 자동차 ¹⁾	제17조	100%	2027.12.31.	847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제68조	100%	2027.12.31.	556
천재지변 등에 따른 소멸·멸실·파손 자동차	제92조	100%	-	327
국가유공자의 보철·생업활동용 자동차 ²⁾	제29조	100%	2027.12.31.	220

주 :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이 7~10인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차 등에 대해서만 적용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자료 : 행정안전부, 「2024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신고와 납부

자동차세 소유분의 납기는 한 해에 두 번이며,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기준으로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각 납기에 징수할 세액은 연세액의 절반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자동차세 소유분의 신고납부 ■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 ~ 6월	6월 16일 ~ 6월 30일
제2기분	7 ~ 12월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소유분은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공제율은 2021~2022년 10%가 적용되었으나, 2023년 7%로 축소되었고, 2024년 이후 공제율은 5%로 적용된다.⁶⁸⁾

Ⅱ 현행 자동차세 소유분 연납에 따른 세액공제 Ⅱ

신고납부시기	공제대상기간	공제액 ¹⁾	한도
1.16 ~ 1.31	2 ~ 12월	연세액×334 / 365×이자율	연세액×334 / 365×5%
3.16 ~ 3.31	4 ~ 12월	연세액×275 / 365×이자율	연세액×275 / 365×5%
6.16 ~ 6.30	7 ~ 12월	연세액×184 / 365×이자율	연세액×184 / 365×5%
9.16 ~ 9.30	10 ~ 12월	연세액× 92 / 365×이자율	연세액× 92 / 365×5%

주: 1) 공제액 계산 시의 이자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에 따른 비율을 의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에 따른 비율: ('21~'22년) 10%, ('23년) 7%, ('24년 이후) 5%

자동차세 주행분의 납세의무자인 정유업자는 반출 다음달 말일, 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한다. 자동차세 주행분의 납세지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소유분 자동차세 납세지와 같다.

자동차세 주행분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해당 징수세액을 울산광역시(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한다. 이후 울산광역시장은 징수한 총세액을 시·군에 배분하며, 시·군별 안분액은 정액보전금과 유류세 보조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액보전금이란 한미FTA 협상, 경차 취득세 감면 등 국가정책에 따라 감소된 지방세에 대한 보전액으로, 일정 금액(9,830억원/12)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분(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징수액 비중에 따라 배분한다. 유류세 보조금은 해당 월의 자동차세 징수총액에서 일정 금액(9,830억원/12)을 뺀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월분에 따라 시·군별로 배분한다.⁶⁹⁾

68) 2024년 이후 2%p씩 축소(2025년 이후 3%)할 예정이었으나 5%를 적용(지방세법 시행령 제35177호 일부개정, 2024.12.31.)

69) 유류세 보조금은 주유·충전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지급단가는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에 따라 경유, LPG, 천연가스 등 연료별로 다르게 산정함

4. 국제동향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OECD 국가에서는 자동차의 보유·사용 등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가별로 자동차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자동차 보유와 관련하여 차량 유형, 가격, 중량, 배기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 과세기준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2024년 기준 OECD 38개국 중 16개 국가에서 CO₂배출량을 과세기준으로 하고 있다.

■ 비영업용 자동차 보유·사용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기준 ■

기준	국 가
중량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라트비아, 스위스, 미국
차량가격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멕시코, 미국
배기량/엔진성능	헝가리,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오염물질(CO ₂ 등) 배출량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유형/연료	프랑스, 아이슬란드 ¹⁾ ,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주: 1) 아이슬란드는 2024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자동차에 대해 주행거리 기준으로 과세

1. 국가별로 주요한 기준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국가에 따라 복수기준이 존재 가능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24」, 2024.11.

최근 들어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동차 CO₂ 배출량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EU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37.5%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관련하여 오스트리아의 경우 2020년부터 자동차세 과세기준에 CO₂ 배출량을 고려하여 변경하였으며, 이전부터 CO₂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던 국가들도 배출량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많은 국가에서 친환경자동차 등 구매 시 다양한 보조금 및 감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보유 등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등 국가는 전기자동차와 같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전기자동차에 대해 승용자동차 주행분 보전을 위한 추가등록비를 과세하는 주가 증가하는 추세⁷⁰⁾이다. 또한 네덜란드, 이탈리아⁷¹⁾ 등 일부 EU국가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해 향후 과세를 할 예정이다.

70)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추가등록세(Registration fee)는 콜로라도 \$50에서 뉴저지 \$290(2028년부터 부과 예정) 등 현재 최소 39개 주에서 상이하게 운영(NCSL, Special Registration Fees for Electric and Hybrid Vehicles(2025.1.25.))

71) 네덜란드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도로세를 100% 면제하였으나 2025년부터 75% 이후 점차 감면율을 인하여 2030년에는 전액납부 예정이며, 이탈리아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최초 등록 이후 5년간 자동차세가 면제되지만 이후 75% 감면

제2절 담배소비세

1. 개요

담배소비세는 국내 제조담배 또는 국외 수입담배 등에 대해 특별·광역시(특별·광역시세) 및 시·군(시·군세)이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간접세이자 소비세에 해당한다.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상위 관청인 광역자치단체가, 도 지역에서는 하위 관청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과관청이 된다. 담배소비세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재원조달 기능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교정과세⁷²⁾의 기능도 수행한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보통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일반회계)이 되는 한편, 부가세(附加稅, sur-tax)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액의 43.99%)와 함께 초·중등교육의 재원(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을 구성한다.⁷³⁾

2024년도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5조원으로, 2023년 3.6조원 대비 0.1조원(△2.5%) 감소하였다.

■ 2024년 담배소비세 징수액 ■

(단위: 조원, %)

	2023년 (A)	2024년 (B)	증감	
			증감액(C=B-A)	증가율(C/A)
담배소비세 징수액	3.6	3.5	△0.1	△2.5

주: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4년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전체 지방세 수입 대비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담배소비세의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3.0조원에서 2016년 3.7조원으로 증가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은 대폭적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⁷⁴⁾ 소비 감소로 그 효과가 상쇄되어 전년대비 세수 증가는 미미하였으나, 2016년에는 소비 반등으로 세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23.4%) 증가하였다. 전체 지방세 수입 대비 담배소비세 징수액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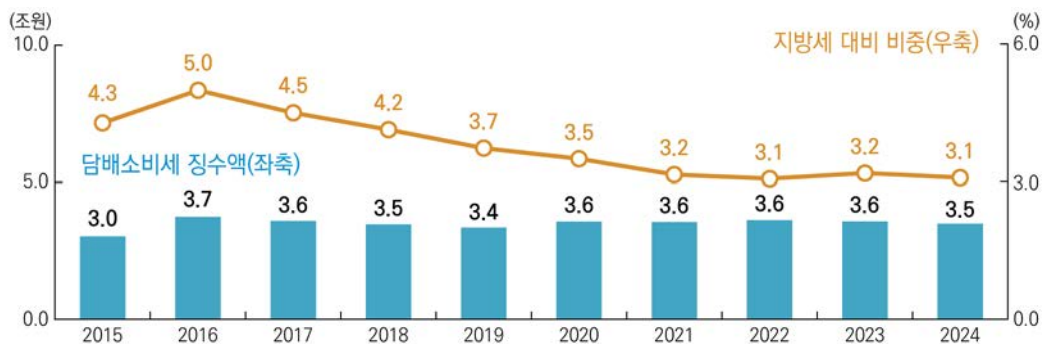
72) 우리나라가 2005년 가입한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은 당사국에게 담배소비 감소라는 보건적 목적에서 조세정책을 시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제6조)

73) 시·도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지방교육세, 특별·광역시 담배소비세의 45% 등으로 충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74) 궤련형 담배 기준으로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57.1% 증가

비중은 2014년 4.8%에서 2024년 3.1% 등으로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 최근 담배소비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



주: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담배소비세 도입 및 개정연혁

담배에 대한 과세는 1909년 연초세로 시작되었으며, 1921년 담배전매제도가 실시되면서 연초세를 폐지하고 담배전매사업에 따른 전매익금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1985년 농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전매익금의 일부를 시(전매익금의 2%)와 군(전매익금의 22%)에 배분하기 위하여 담배판매세가 도입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담배시장의 개방을 요구하였는데, 한국과 미국은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을 통해 1988년 수입담배의 비차별적 진출을 허용하며 현행 담배소비세의 근간이 되는 한미담배양해록에 합의하였다. 한미담배양해록은 국산 및 수입담배에 대해 비차별적인 과세방식으로 종량제세를 도입하고, 세율은 천개비당 18,000원(1갑당 360원)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1989년 담배소비세가 시행되었다(1988년 법 개정). 담배소비세는 종량세율 체계의 도입 이외에도 당시 국산담배에 부과되던 담배판매세, 교육세, 전매납부금과 수입담배에 부과되던 관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로 일원화하였으며, 담배소비세수 전액은 지방재정으로 이양하도록 하였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도입 이후 지방재정 보완 등을 목적으로 점진적인 인상이 진행되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WHO와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서 담배소비 억제제를 위한 담배가격정책을 글로벌 의제로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담배가격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담배관련 제세부담금 전체 기준, 쉐련 담배 가격은 2,500원→4,500원이 됨)하는 「금연종합대책」이 2014년 발표되었다. 그 결과 2015년 담배소비세율은 쉐련(20개비)기준으로 전년도의 641원 대비 57.1% 상승한 1,007원이 되었고, 동 세율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담배소비세의 부과대상은 1989년 시행 당시 6개 종류였으나,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출현함에 따라 2010년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2017년 연초고형물 전자담배, 2018년 연초 궤련형 전자담배로 확대되었다.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2007년 말부터 판매되었으며 연초 앞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였고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 담배 여부의 판단이 문제가 되었다. 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하게 되었고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10년부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었다. 아울러 2013년부터 수입·유통된 연초고형물 전자담배 또한 담배소비세 부과 규정이 불명확하였으나,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2017년부터 과세가 시작되었다. 또한, 2021년부터 연초의 뿌리나 줄기 등 잎 이외 부분으로 만든 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과세범위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다.

■ 담배소비세율 개편 추이 ■

(단위: 원)

과세대상			과세 단위	세율							
				1989	1994	2001	2005	2010	2014	2015	2017
피 우 는 담 배	제1종 궤련	200원 초과	20개비	360	460	510	641		1,007		
		100 ~ 200원		40							
		100원 이하									
	제2종 파이프담배		1g	14	18.2	23		36			
	제3종 엽궤련		1g	40	52	65.4		103			
	제4종 각련	100원 초과	1g	14	18.2	23		36			
		100원 이하									
	제5종 전자 담배	니코틴용액	1ml				400		628		
		연초고형물	1g							88	88
		연초	20개비							897	
제6종 물담배		1g					455	715			
씹는 담배			1g	16	208	26.2		364			
머금은 담배			1g								232
냄새맡는 담배			1g	10	13	16.4		26			

주: 1. 1989년 담배소비세 제정 이후의 변동내역이며 세율이 변경된 연도 기준

2. 제5종 전자담배 중, 연초고형물 및 연초를 사용하는 경우는 2018년부터 궤련형은 20개비당 897원 및 기타유형은 1그램당 88원으로 분리과세하고, 니코틴용액을 사용하는 경우는 2019년 정부의 사용중단 강력권고 이후 국내분 과세실적은 없음

자료: 이재원, 「지방세 기능 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제의 개편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및 「지방세법」 등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가. 과세요건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한 자이다.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크게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은 담배, 냄새 맡는 담배로 분류된다. 피우는 담배는 다시 쥘련, 파이프 담배, 엽쥘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로 구분된다.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쥘련과 쥘련형 전자담배는 담배 개비 수를 기준으로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반면, 파이프 담배, 엽쥘련, 각련, 기타형 전자담배, 물담배, 씹거나 머금은 담배, 냄새 맡는 담배는 담배의 중량을 기준으로 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의 양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Ⅰ 현행 담배소비세율 체계 Ⅰ

(단위 : 원)

과세대상		과세단위	세율	
피우는 담배	제1종 쥘련		20개비	1,007
	제2종 파이프 담배		1g	36
	제3종 엽쥘련		1g	103
	제4종 각련		1g	36
	제5종 전자담배	액상형	니코틴 용액 1ml	628
		쥘련형	20개비	897
		기타	1g	88
제6종 물담배		1g	715	
씹거나 머금은 담배		1g	364	
냄새 맡는 담배		1g	26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현황

담배 제세부담금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국세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초부담금 등 조세 4개목과 부담금 3개목으로 구성된다. 담배 소매가격에 대한 제세부담금 비중은 약 74% 수준인데(궐련 1갑 소매가격 4,500원, 제조원가 및 유통마진 1,177원 가정), 세목별로는 담배소비세 22.4%(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8.7%(841원), 개별소비세 13.2%(594원), 지방교육세 9.8%(443원), 부가가치세 9.1%(409원), 폐기물부담금 0.5%(24원), 연초경작지원사업출연금 0.1%(5원) 등 순이다.

■ 담배 제세부담금 현황(부가가치세 제외) ■

담배 종류		부과 단위	국세	지방세		부담금			
			개별 소비세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사업출연금	
피우는 담배	궐련	원/갑	594	1,007	443	841	24.4	5	
	파이프담배	원/g	21	36	15.8	30.2	(미부과)	(미부과)	
	엽궐련	원/g	61	103	45.3	85.8			
	각련	원/g	21	36	15.8	30.2			
	전자 담배	액상형	원/ml	370	628	276.3	525		24.4
		궐련형	원/갑	529	897	394.6	750		
		기타	원/g	51	88	38.7	73		
	물담배	원/g	422	715	314.5	1,050.1	(미부과)		
씹는 담배		원/g	215	364	160.1	34.4			
머금은 담배		원/g	215	364	160.1	534.5			
냄새맡는 담배		원/g	15	26	11.4	21.4			

주: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43.99%,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제조원가, 유통 마진 및 여타 제세부담금 합계)의 10%인데 담배종류별 판매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3년간 담배 제세부담금 징수 실적은 2021년 11.7조원, 2022년 11.8조원, 2023년 11.7조원 등 수준이며, 주요 세목별로는 2023년의 경우 개별소비세 담배분 2.1조원, 담배소비세 3.6조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0조원 등 수준이다.

■ 담배 제세부담금 합계 및 주요 세목별 징수 실적: 2021~2023년 ■

(단위: 조원)

구분	2021	2022	2023	연평균
담배 제세부담금 합계	11.7	11.8	11.7	11.7
개별소비세	2.1	2.2	2.1	2.1
담배소비세	3.6	3.6	3.6	3.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0	2.8	3.0	2.9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세액계산

담배소비세액은 과세대상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대상별로 담배의 개비, 중량, 용량 등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담배소비세 과세체계 ■	
과세표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 세율	피우는 담배: (궐련 등) 897~1,007원/20개비 (액상형 전자담배) 628원/ml (파이프담배 등) 36~715원/g 씹거나 머금은 담배: 364원/g 냄새 맡는 담배: 26원/g
= 결정세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 담배소비세 납부세액은 3.6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452억원, 1.2%)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0.9조원(전국 대비 26%)으로 가장 크고, 서울 0.6조원(16.1%), 경남 0.2조원(6.6%) 순으로 나타났다.

■ 담배소비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

(단위 : 억원, %)

지역		2022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2023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합계		36,304	100.0	35,852	100.0
수도권	서울	5,886	16.2	5,766	16.1
	경기	9,347	25.7	9,312	26.0
	인천	2,095	5.8	2,103	5.9
비수도권	부산	2,116	5.8	2,075	5.8
	대구	1,556	4.3	1,522	4.2
	광주	1,006	2.8	991	2.8
	대전	973	2.7	951	2.7
	울산	820	2.3	807	2.3
	세종	176	0.5	175	0.5
	강원	1,358	3.7	1,329	3.7
	충북	1,301	3.6	1,314	3.7
	충남	1,846	5.1	1,835	5.1
	전북	1,249	3.4	1,226	3.4
	전남	1,425	3.9	1,396	3.9
	경북	2,112	5.8	2,083	5.8
	경남	2,415	6.7	2,351	6.6
	제주	624	1.7	615	1.7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면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 중 껴련, 엽껴련, 전자담배와 수출용으로 제공되는 담배, 주한 외국군에 판매하는 담배 등에 대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⁷⁵⁾되고 있다. 2023년 기준 담배 소비세 감면액은 1조 8,406억원이다.⁷⁶⁾

3. 신고와 납부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전월 중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해당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의 영업장 또는 반입 세관 소재지 관할 특별·광역시 또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난해 판매 비중⁷⁷⁾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75) 「지방세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서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대상을 규정함

76)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에는 감면 항목별 담배소비세 감면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Ⅱ 담배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 계산방식 Ⅱ

담배제조자				
해당 시·군의 세액	=	전월 중 제조장 반출 세액	×	$\frac{\text{지난해 해당 시·군에서 팔린 담배의 산출세액}}{\text{지난해 전 시·군에서 소매인에게 팔린 산출세액}}$
담배수입판매업자				
각 시·군의 세액	=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 담배 산출세액	×	$\frac{\text{지난해 해당 시·군에서 소매인에게 팔린 외국산 담배의 산출세액}}{\text{지난해 전 시·군에서 소매인에게 팔린 외국산 담배의 산출세액}}$

한편,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한 입국자는 세관장에게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4.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담배 폐기시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폐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제조장 반입 후 폐기장소로 이동하여 폐기되는 경우에만 담배소비세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하였던 것에서, 개정법에서는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의 반입 없이도 관련 절차에 따라 폐기장소에서 폐기 시 공제·환급이 가능하도록 간소화되어 납세편의가 제고되었다.⁷⁷⁾ 이에 따라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련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유 발생지역 및 폐기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⁷⁸⁾

77)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

78)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2제2항

합성니코틴 등 신종원료 기반 담배에 대한 규제 및 과세 논의

우리나라는 담배에 대한 규제 및 과세 여부가 제품원료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화학적으로 인공 제조한 합성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담배로 분류될 경우 제품 표면의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광고 제한, 전자거래 금지, 청소년 판매 금지 등의 규제 대상이 되나, 합성니코틴 원료 담배는 동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관련 제세부담금 또한 부과되지 않고 있다.

■ 담배제품 원료·유형에 따른 규제·과세 현황 ■

제품원료		제품유형	규제	과세
천연니코틴	연초 잎	궤련담배	○	○
		궤련형 전자담배	○	○
		액상형 전자담배	○	○
	연초 줄기·뿌리 등	액상형 전자담배	×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	×

- 주: 1. 담배 규제 관련법 중 담배정의 조항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담배 과세 관련법 중 담배정의 조항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동조동항 제6호 [가목]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나목]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지방세법」 제47조제1호: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목]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목]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담배 정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이 2024년 하반기에 발의되어 2025년 3월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개정안들은 담배의 법적 정의와 관련된 원료를 현행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체’, ‘연초 및 합성니코틴’, 또는 ‘연초 및 니코틴’ 등으로 개정하여 담배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어 담배의 제도적 범위가 확대되어 합성니코틴 담배까지 포함될 경우, 기존 담배 제품과 신종 담배제품과의 보완·대체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담배 규제 및 과세상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3절 등록면허세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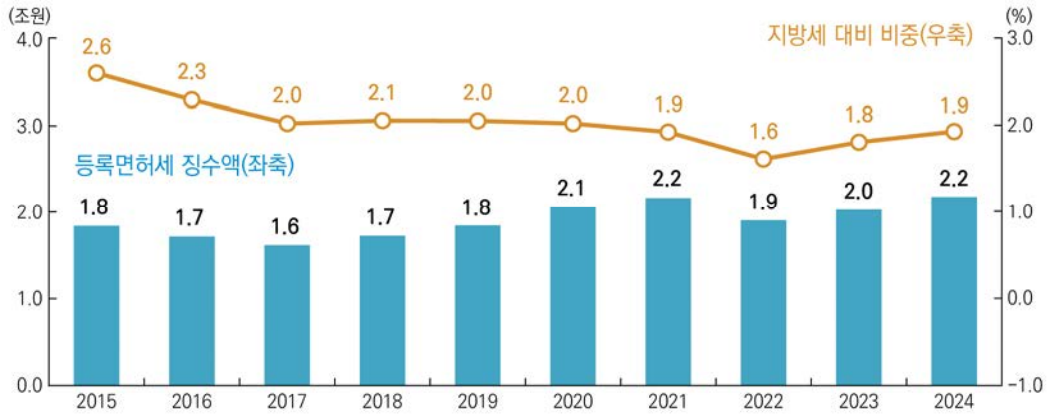
등록면허세(登録免許税)는 각종 등기·등록과 면허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는 도(道)지역의 경우 도세⁷⁹⁾로 특별시와 광역시는 자치구세이다. 등록면허세는 2010년까지 과세되었던 “면허세”와 등록세 가운데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기타등록세”를 합하여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등록면허세 면허분”으로 구분된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의 특정의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등의 각종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024년 등록면허세 규모 및 연도별 추이

2024년 등록면허세 징수액은 2.3조원으로, 2023년 2.0조원 대비 0.2조원(7.4%) 증가하였으며, 전체 지방세 수입 대비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등록면허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1.8조원에서 2024년 2.2조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지방세 수입 대비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17년 이후 2.0%로 감소하여 최근까지 유사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79) 등록면허세는 도 지역의 경우 도세이나 그 재원은 도로 전부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이를 징수한 군과 시 지역에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가 귀속되는 일종의 공동세임

■ 최근 등록면허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



주: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등록면허세 과세물건별·지역별 규모

2023년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을 과세물건별로 살펴보면, 부동산등기 1조 3,130억원 (전체 등록면허세 대비 62.9%), 자동차등록 1,299억원(6.2%) 등 등록분이 1조 8,559억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면허분의 납부세액은 2,304억원(11.0%)으로 이 중 대부분은 제3종 면허 1,058억원(5.1%) 및 제4종 면허 824억원(4.0%)에서 발생하고 있다.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별 납부세액 현황 ■

(단위: 억원, %)

지역		2022년 세수	비중	2023년 세수	비중
합계		18,960	100	20,179	100
등록분	소계	16,781	88.2	18,559	89.0
	부동산등기	11,839	62.2	13,130	62.9
	자동차등록	1,391	7.3	1,299	6.2
	기타 ¹⁾	3,551	18.7	4,130	19.8
면허분	소계	2,247	11.8	2,304	11.0
	3종	1,010	5.3	1,058	5.1
	4종	822	4.3	824	4.0
	1종, 2종, 5종	415	2.2	422	2.0

주: 1) 건설기계등록, 선박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담보권 등 포함

1 등록면허세 징수액 기준이 아닌 부과세액 기준 현황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869억원(전국 대비 29.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 4,902억원(24.3%), 인천 1,160억원(5.7%) 등의 순이다.

■ 등록면허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

(단위: 억원, %)

지역		2022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2023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합 계		18,960	100	20,179	100
수도권	서울	4,756	25.1	4,902	24.3
	경기	5,327	28.1	5,869	29.1
	인천	1,080	5.7	1,160	5.7
비수도권	부산	1,077	5.7	1,151	5.7
	대구	616	3.2	733	3.6
	광주	410	2.2	462	2.3
	대전	397	2.1	427	2.1
	울산	312	1.6	359	1.8
	세종	140	0.7	146	0.7
	강원	415	2.2	436	2.2
	충북	515	2.7	493	2.4
	충남	753	4.0	778	3.9
	전북	436	2.3	484	2.4
	전남	618	3.3	585	2.9
	경북	770	4.1	794	3.9
	경남	1,022	5.4	1,084	5.4
	제주	316	1.7	317	1.6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가. 과세요건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과세하며, 등록행위를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등기·등록을 하게 된 원인의 실질적인 정당성,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외형상 등기·등록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등록분의 과세대상은 6개의 범주(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법인 등기, 건설기계 등록, 선박 등기, 그 외의 등기·등록)로 구분

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 등록면허세 등록분 비과세 항목 ■

구분	내용
등록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등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등록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의 등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법인 등기, 건설기계 등록, 선박 등기, 그 외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⁸⁰⁾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는 채권금액으로 한다. 다만, 등록분 중에서 법인 등기(사무소 이전), 광업권·어업권·특허권의 등록 등의 경우는 금액이 아닌 등기·등록 건당 세액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세율은 다음 표와 같이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법인 등기, 건설기계 등록, 선박 등기, 그 외 등기·등록 등으로 구분하여 정액 및 정률세율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를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전입하거나 5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의 세율 및 법인등기 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세율이 부과된다.

■ 등록면허세 등록분 세율 ■

구분	세율
부동산 등기	소유권의 보존 등기 0.8%
	소유권의 이전 등기 유상 2%(주택: 취득세율의 5%) 무상 1.5%(상속 0.8%)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0.2%
	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
차량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5%(경차 2%)

80)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함

구분		세율
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이외 3% 영업용 2%
	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등록	0.2%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건당 15,000원
	그 밖의 등록	건당 15,000원
법인 등기	법인등기	0.4%(비영리 법인 0.2%)
	자산재평가	0.1%
	본점·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이전	건당 40,200원
	그 밖의 등기	건당 40,200원
기계장비 등록	소유권 등록	1%
	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등록	0.2%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건당 10,000원
	그 밖의 등록	건당 10,000원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0.02%
	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등기 또는 등록	0.2%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15,000원
공장·광업재단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0.1%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000원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0.1%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000원
상호 등의 등기	상호설정 또는 취득	건당 78,700원
	지배인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000원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000원
광업권 등록	광업권 설정	건당 135,000원
	광업권 변경	증구·증감구 건당 66,500원 감구 건당 15,000원
	광업권 이전	상속 26,200원 그 이외 90,000원
	그 밖의 등록	건당 12,000원
조광권 등록	조광권 설정	건당 135,000원
	조광권 이전	상속 건당 26,200원 그 이외 건당 90,000원
	그 밖의 등록	건당 12,000원
어업권 등록	양식업권 이전	상속 건당 6,000원 그 이외 건당 40,200원
	양식업권 지분이전	상속 건당 3,000원 그 이외 건당 21,000원
	어업권, 양식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000원
저작권 등 등록	저작권 등의 등록	상속 건당 6,000원

구분		세율
		그 이외 건당 40,200원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이외	건당 20,000원
	그 밖의 등록	건당 3,000원
특허권 등 등록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등록	상속 건당 12,000원 그 이외 건당 18,000원
상표·서비스 등록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600원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	상속 건당 12,000원 그 이외 건당 18,000원
항공기 등록	등록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0.01% 그 외 0.02%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나머지 등기 또는 등록		건당 12,000원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과 같은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또는 신고의 수리 등의 행위에 과세하며,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된 면허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 단순한 표시변경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 등록면허세 면허분 비과세 항목 ■

구분	내용
면허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면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면허 건당 정액의 세액이 부과되는데, 다음의 표와 같이 면허의 종류 및 지역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면허의 종류를 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면허에 대해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등 지역별로 구분하여 4,500원~67,500원까지 차등적으로 세액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서울

(단위 : 원)

과세대상	인구 50만 이상 시	기타 시	군
제1종	67,500	45,000	27,000
제2종	54,000	34,000	18,000
제3종	40,500	22,500	12,000
제4종	27,000	15,000	9,000
제5종	18,000	7,500	4,500

주: 면허의 종류 구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세액계산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등록행위를 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에 따라 과세표준에 건당 정률로 규정된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납부세액 또는 면허나 등록 건당 정액으로 산출된 세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하게 된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금액에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등록면허세 과세체계 ■

과세표준	등록분(정률 부과): 등기·등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액 등록분(정액 부과), 면허분: 과세표준 없음
× 세율	등록분(정률 부과): 과세물건별로 0.01~5% 등록분(정액 부과): 과세물건별로 3,000~135,000원 면허분: 지역 및 면허 종류별로 4,500~67,500원
- 세액감면	주요 감면 항목 - 농어업인 융자제공 담보물 등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담보등기
= 결정세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등록면허세는 농어업인 용자제공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의 담보물 등기에 대해 세액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주요 감면 제도에는 농어업인 용자제공 담보물 등기(130억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담보등기(109억원),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36억원)에 대한 감면 등이 있다.

■ 등록면허세 주요 감면 제도 ■

감면대상	법률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율	일몰기한	감면액 (23년 실적, 억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 제공시 담보등기	제10조제1항	50%	2025.12.31.	13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담보등기	제35조제1항	50%	2027.12.31.	109
도시철도공사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제63조제5항	100%	2025.12.31.	36

자료 : 행정안전부, 「2024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신고와 납부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이후 등기·등록할 때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다만, 매년 1월 1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제4절 레저세

1. 개요

레저세(leisure tax)는 사행산업 중 경마·경륜·경정·소싸움 등을 대상으로 승자(승마) 투표권을 발매하여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간접세이자 소비세의 일종이다. 레저세는 1942년 국세인 마권세로 시행되었다가 1962년 지방세로 이양되었고, 2002년 레저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3년부터 경마·경륜·경정뿐만 아니라 소싸움까지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21년에는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경정·경정의 온라인 발매가 개시됨에 따라 온라인(정보통신망)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현재 레저세의 과세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다.

2024년 레저세 규모 및 연도별 추이

2024년 레저세 징수액은 0.8조원으로, 2023년 0.9조원 대비 0.02조원(2.4%) 증가하였다.

■ 2024년 레저세 징수액 ■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	
			증감액(C=B-A)	증가율(C/A)
레저세	0.8	0.9	0.02	2.4

주: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레저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5~2019년까지는 1조원 수준이 유지되다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2020년 0.2조원, 2021년 0.1조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이 감소하면서 2022년 이후 징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 최근 레저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



주: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레저세 세원별·지역별 규모

2023년 레저세 납부세액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경마 6,192억원(73.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륜 1,623억원(19.1%), 경정 637억원(7.5%), 소싸움 25억원(0.3%) 순이다.

■ 레저세 세원별 납부세액 현황 ■

(단위: 억원, %)

지역	2022년 세수	비중	2023년 세수	비중
합계	8,405	100.0	8,477	100.0
경마	6,082	72.4	6,192	73.0
경륜	1,656	19.7	1,623	19.1
경정	638	7.6	637	7.5
소싸움	30	0.4	25	0.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천 경마장이 위치한 경기도가 4,454억원(52.5%)으로 가장 크고, 서울 1,051억원(12.4%), 부산 823억원(9.7%) 순이다.

2021년까지는 경륜장 등이 소재한 경기, 부산, 경남, 제주의 세수 비중이 높았으나, 2021년 8월부터 경륜·경정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시행되고, 이에 2022년부터 온라인

발매에 따른 세수 중 50%가 19세 이상 인구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⁸¹⁾ 인구수가 많은 서울, 경기의 비중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경남, 제주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2023년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또한 2022년과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 레저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

(단위 : 억원, %)

지역		2022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2023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합계		8,405	100.0	8,477	100.0
수도권	서울	1,051	12.5	1,051	12.4
	경기	4,376	52.1	4,454	52.5
	인천	203	2.4	201	2.4
비수도권	부산	827	9.8	823	9.7
	대구	85	1.0	93	1.1
	광주	153	1.8	160	1.9
	대전	8	0.1	9	0.1
	울산	6	0.1	7	0.1
	세종	2	0.0	2	0.0
	강원	8	0.1	10	0.1
	충북	9	0.1	10	0.1
	충남	211	2.5	218	2.6
	전북	10	0.1	11	0.1
	전남	10	0.1	12	0.1
	경북	44	0.5	42	0.5
	경남	756	9.0	732	8.6
	제주	647	7.7	643	7.6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과세요건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경마의 경우 한국마사회, 경륜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시설공단, 스포원 및 창원레포츠파크, 경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싸움은 청도공영사업공사가 납세의무자이다.

81)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식은 3. 신고와 납부(p.557) 참조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경마(「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경륜·경정법」), 소싸움(「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고,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이며, 세율은 10%이다.

세액계산

레저세액은 과세표준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에 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한다.

3. 신고와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경륜장 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별 등으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륜장 등에서 직접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액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해당 경륜장 등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50%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온라인으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의 50%는 해당 경륜장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나머지 50%는 전국 19세 이상 인구 대비 각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인구 비율로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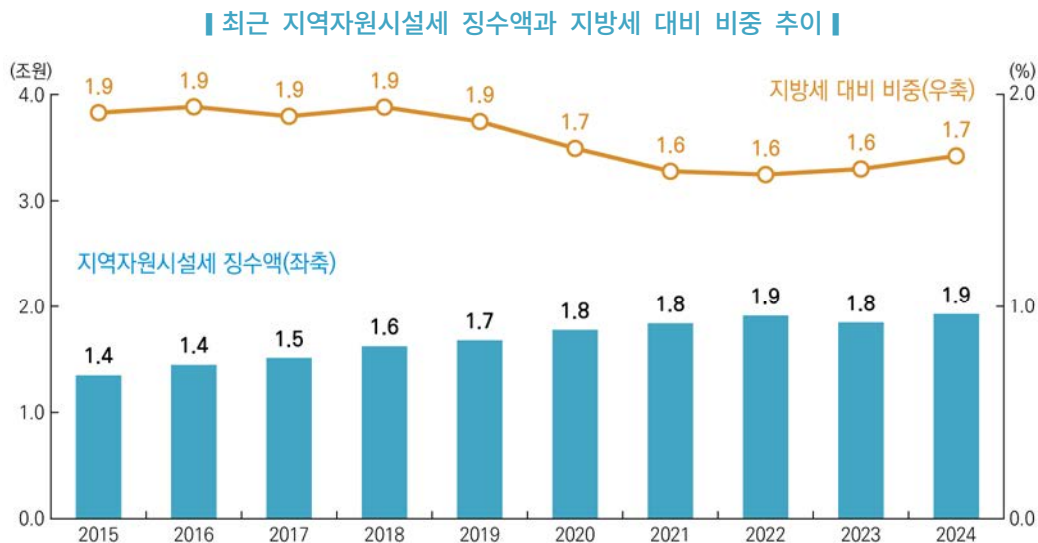
제5절 지역자원시설세

1. 개요

지역자원시설세(地域資源施設稅)는 지역 부존자원의 보호·보전, 지역환경의 보호·개선, 지역의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 및 시설에 대해 특별·광역시 및 도 등의 광역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2011년 종전의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24년 지역자원시설세 규모 및 연도별 추이

2024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1.9조원으로, 2023년 1.8조원 대비 0.1조원(4.3%) 증가하였으며, 전체 지방세 수입 대비 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1.4조원에서 2024년 1.9조원으로 증가한 반면, 지방세 수입 대비 비중은 2015년 1.9%에서 2023년 1.7%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주: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전체 지방세 수입 대비 비중 레이블값은 소수점 한자리수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물건별·지역별 규모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세액을 과세물건별로 살펴보면, 건축물 및 주택 등 소방

분이 1조 5,344억원(83.49%)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 원자력·화력 등 특정자원 및 시설의 과세물건별 지역자원시설세는 3,134억원(16.6%)이다.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별 납부세액 현황 ■

(단위: 억원, %)

지역	2022년 세수	비중	2023년 세수	비중
합계	19,147	100.0	18,478	100.0
소방분	16,207	84.9	15,344	83.4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 ¹⁾	2,939	15.1	3,134	16.6

주: 1)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716억원(전국 대비 25.6%)으로 가장 많고, 서울 2,951억원(15.8%), 경북 1,580억원(8.5%), 부산 1,319억원(7.1%) 순으로 나타난다.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

(단위: 억원, %)

지역		2022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2023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합계		19,147	100.0	18,478	100.0
수도권	서울	3,254	16.8	2,951	15.8
	경기	4,819	25.2	4,716	25.6
	인천	1,147	6.0	1,118	6.1
비수도권	부산	1,427	7.4	1,319	7.1
	대구	615	3.2	571	3.1
	광주	359	1.9	331	1.8
	대전	378	2.0	345	1.9
	울산	674	3.5	666	3.6
	제주	215	1.1	199	1.1
	세종	144	0.8	136	0.8
	경북	1,486	7.8	1,580	8.5
	경남	1,122	5.9	1,073	5.9
	전북	424	2.3	402	2.2
	전남	931	4.8	985	5.3
	충북	515	2.7	496	2.7
	충남	1,095	5.7	1,060	5.7
	강원	542	2.8	532	2.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가. 과세요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특정자원·시설과 소방시설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이다. 즉 수력·원자력·화력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입항 및 출항시키는 자, 소방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의 과세대상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이다. 특정시설분의 과세대상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이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발전용수의 경우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이 부과되고, 지하수는 물 1㎥당 음용수는 200원, 온천수는 100원, 기타는 20원이 부과된다. 지하자원은 광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광물가액의 0.5%를 부과한다. 특정시설분은 컨테이너는 1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시설은 발전량 kWh당 1원, 화력발전시설은 발전량 kWh당 0.6원을 부과한다.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발전용수(10㎥)	2원
지하수(㎥)	음용수 200원, 온천수 100원, 기타 20원
지하자원(채취가액)	0.5%
컨테이너(TEU)	15,000원
원자력발전 발전량(kWh)	1원
화력발전 발전량(kWh)	0.6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분의 과세대상은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도 특정시설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의 과세표준은 건축물과 선박의 가액 혹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세율은 6단계 초과누진세율(0.04~0.12%)을 적용한다. 또한, 화재위험성이 높은 건

축물인 저유장, 주유소 등과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에서 결정된 산출금액의 200~300%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소방분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건축물/ 선박	가액/시가표준액	600만원 이하	0.04%
		~1,300만원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2,600만원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3,900만원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6,400만원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화재위험 건축물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위 산출금액의 200%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위 산출금액의 3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세액계산

지역자원시설세 산출세액은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의 과세대상에 따라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과세대상별로 규정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소방분의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표준세율의 2~3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

과세표준	특정자원분: 발전용수(10m³), 지하수(m³), 지하자원(채취가액) 특정시설분: 컨테이너(TEU), 원자력발전(kWh), 화력발전(kWh) 소방분: 건축물/선박
× 세율	특정자원분: 단위당 2~200원 *단, 지하자원은 채취가액의 0.5% 특정시설분: 단위당 0.6~15,000원 소방분: 가액별로 0.04~0.12% *단, 화재위험 건축물은 중과(표준세율의 200~300%) 적용
- 세액감면	주요 감면 항목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의 부동산 - 종교단체 또는 향교 등의 부동산
= 결정세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지역자원시설세는 사회복지법인, 학교 및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의 부동산에 대해 세액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의 주요 감면 제도에는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의 부동산(183억원), 종교단체 또는 향교 등의 부동산(157억원), 사회복지법인 등의 부동산(16억원)에 대한 감면 등이 있다.

■ 지역자원시설세 주요 감면 제도 ■

감면대상	법률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율 ¹⁾	일몰기한	감면액 (23년 실적 억원)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의 부동산	제41조제2항	100%	2027.12.31	183
종교단체 또는 향교 등의 부동산	제50조제2항	100%	-	157
사회복지법인 등의 부동산	제22조제3항	100%(85%)	2025.12.31	16

주: 1) ()안의 값은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이 적용되는 경우
자료: 행정안전부, 「2024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신고와 납부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 및 시설분의 납세지는 발전소의 소재지, 채수공의 소재지,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이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재산세 고시서와 함께 병기하여 부과·고지한다. 납부기간은 재산세와 동일하며, 건축물과 선박은 매년 7월 16일~31일, 토지는 매년 9월 16일~30일이다.

제6절 지방교육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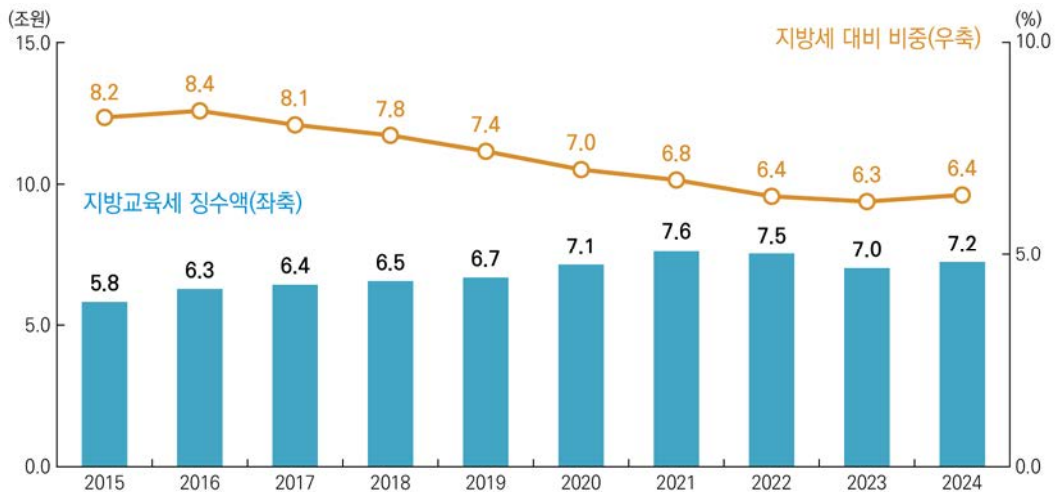
1. 개요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확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7개 지방세목에 부가세(surtax)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조세수입이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가 부과주체인 도세(道稅)이다.

2024년 지방교육세 규모 및 연도별 추이

2024년 지방교육세 징수액은 7.2조원으로, 2023년 7.0조원 대비 0.2조원(3.1%) 증가하였으며, 전체 지방세 수입 대비 6.4%의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지방교육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5.8조원에서 2024년 7.2조원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지방세 수입 대비 비중은 2015년 8.2%에서 2024년 6.4%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최근 지방교육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



주: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방교육세 세원별·지역별 규모

2023년 지방교육세 납부세액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분이 1.9조원(전체 지방교육세수 대비 2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담배소비세분 1.6조원(22.5%), 취득세분 1.5조원(21.4%), 자동차세분 1.3조원(18.3%) 등의 순이다.

지방교육세 세원별 납부세액 현황

(단위: 조원, %)

지역	2022년 세수	비중	2023년 세수	비중
합계	7.5	100.0	7.0	100.0
재산세분	2.1	27.9	1.9	27.3
담배소비세분	1.6	21.2	1.6	22.5
취득세분	1.9	24.8	1.5	21.4
자동차세분	1.3	16.6	1.3	18.3
레저세분	0.3	4.5	0.3	4.8
등록면허세분	0.3	4.1	0.3	4.8
주민세분	0.1	0.8	0.1	0.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1조원(전국 대비 29.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1.6조원(23.0%), 인천 0.4조원(5.9%) 순으로 수도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지방교육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단위: 조원, %)

지역		2022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2023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합계		7.5	100.0	7.0	100.0
수도권	서울	1.8	23.8	1.6	23.0
	경기	2.2	29.2	2.1	29.5
	인천	0.4	5.8	0.4	5.9
비수도권	부산	0.4	5.8	0.4	5.9
	대구	0.3	3.7	0.3	3.8
	광주	0.2	2.2	0.1	2.1
	대전	0.2	2.1	0.1	2.0
	울산	0.1	1.8	0.1	1.8
	세종	0.1	0.7	0.1	0.6
	강원	0.2	2.5	0.2	2.5
	충북	0.2	2.5	0.2	2.6

지역		2022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2023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비수도권	충남	0.3	3.9	0.3	4.0
	전북	0.2	2.3	0.2	2.4
	전남	0.2	2.7	0.2	2.7
	경북	0.3	3.9	0.3	4.0
	경남	0.4	5.3	0.4	5.4
	제주	0.1	1.8	0.1	1.8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가. 과세요건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본세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득세분, 재산세분, 등록면허세분은 본세의 20%, 레저세분은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분은 담배소비세액의 43.99%가 적용된다.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기본세액에 한함)⁸²⁾은 주민세액의 10%가 적용되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분은 자동차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 항목의 세율 중 레저세를 제외한 세목의 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82)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으로 구성됨(자세한 내용은 이하 '제7절 주민세' 참조)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및 세율	세율조정 범위
취득세분	취득세액 ¹⁾ 의 20%	50% 가감 (레저세분 제외)
등록면허세분(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분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분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²⁾)	주민세액의 10%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25%)	
재산세분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분	자동차세액의 30%	

주: 1) 표준세율에서 2%p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주택유상거래의 경우, 표준세율(1~3%)에 50%를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
 2)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에 따른 세액에 한함

나. 세액계산

지방교육세의 납부세액은 취득세 등 지방교육세의 본세에 해당하는 7개 지방세목의 세액에 각 세목별로 규정된 지방교육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3. 신고와 납부

지방교육세의 신고와 납부는 본세가 신고납부세목인 경우와 본세가 부과지세목인 경우로 구분된다.

본세가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본세가 부과지세목인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제7절 주민세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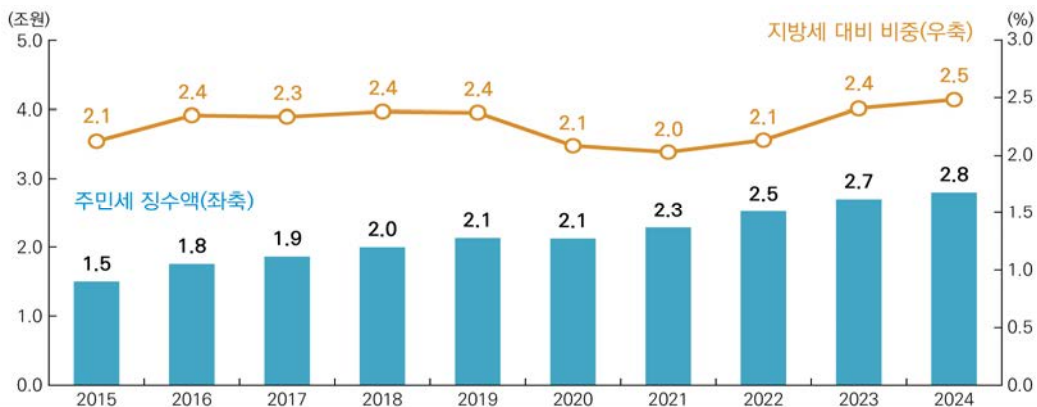
주민세(住民稅)는 특별시·광역시, 시·군·광역시의 자치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주민세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으로 구분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개편되었다. 개인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며, 사업소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해 부과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개인과 사업주가 지역주민으로서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담한다는 주민개세주의(住民皆稅主義)에 따른 세목이다. 개인분은 개인의 조세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과세한다는 인두세적 성격을,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급여총액이나 자본규모 등에 따른 차등과세 성격이 있다.

2024년 주민세 규모 및 연도별 추이

2024년 주민세 징수액은 2.8조원으로, 2023년 2.7조원 대비 0.1조원(3.7%) 증가하였으며, 전체 집아세 수입 대비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주민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종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편입되면서 2015년 1.5조원에서 2024년 2.8조원까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지방세 수입 대비 비중 또한 2015년 2.1%, 2024년 2.5%로 2%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주민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



주: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민세 세원별·지역별 규모

2023년 주민세 납부세액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종업원분이 2.1조원(79.2%), 사업소분은 0.4조원(14.7%), 개인분은 0.2조원(6.1%)으로 나타났다.

■ 주민세 세원별 납부현황 ■

(단위 : 조원, %)

	2022년 세수	비중	2023년 세수	비중
합계	2.5	100.0	2.7	100.0
개인분	0.2	6.2	0.2	6.1
사업소분	0.4	15.2	0.4	14.7
종업원분	1.9	78.7	2.1	79.2

주 : 주민세 세원구분은 종전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에서 2021년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개편
 자료 : 행정안전부, 「2024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징수액이 0.8조원(전국 대비 28.6%)으로 가장 크고, 그 외 경기 0.7조원(25.4%), 경남 0.14조원(5.3%), 충남 0.14조원(5.0%)의 순이다.

■ 주민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

(단위 : 조원, %)

지역		2022년		2023년	
		세수	전국대비 비중	세수	전국대비 비중
합계		2.5	100.0	2.7	100.0
수도권	서울	0.7	28.9	0.8	28.6
	경기	0.6	25.5	0.7	25.4
	인천	0.1	4.6	0.1	4.6
비수도권	부산	0.1	4.6	0.1	4.5
	대구	0.1	2.0	0.07	2.7
	광주	0.05	2.0	0.05	1.9
	대전	0.1	2.6	0.07	2.5
	울산	0.1	3.4	0.1	3.5
	세종	0.01	0.5	0.01	0.5
	강원	0.04	1.7	0.05	1.7
	충북	0.1	3.4	0.09	3.3
	충남	0.1	5.0	0.1	5.0
	전북	0.1	2.2	0.06	2.1
	전남	0.1	2.9	0.08	2.9
	경북	0.1	4.4	0.1	4.6
	경남	0.1	5.2	0.1	5.3
	제주	0.01	0.5	0.02	0.6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가. 과세요건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따라 각기 다르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이다.⁸³⁾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의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은 개인이며,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이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주한외국원조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 및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지방세법」은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의 세율을 각각 달리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0% 범위 내(개인분은 1인당 1만원 이하)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사업소분의 세율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율이 모두 동일하게 5만원인 반면,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 10만원, 20만원의 금액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50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급여 총액의 0.5%로 부과되, 종업원분 세율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따라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

83)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함

주민세 과세체계 및 세율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세율조정범위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제한세율 (1만5천원 이하)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개인 : 5만원 법인 : 자본규모 ⁸⁴⁾ 에 따라 5~20만원 차등과세	50% 가감조정
		연면적 기준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330㎡ 이하 면세)	50% 가감조정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급여총액의 0.5%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금액 1.8억원 이하 면세)		50% 가감조정

나. 세액계산

주민세 산출세액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과세대상에 따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인분의 경우 1인당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사업소분 경우 기본세율과 연면적 기준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에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업원분의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에 세율(0.5%)을 곱하여 계산한다. 단, 해당 사업소의 연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한다.⁸⁵⁾

3. 신고와 납부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개인분의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현재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지급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⁸⁶⁾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로 신고·납부한다.

84) 「지방세법」 제81조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은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은 10만원,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만원,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으로 정함

85) 「지방세법」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60만원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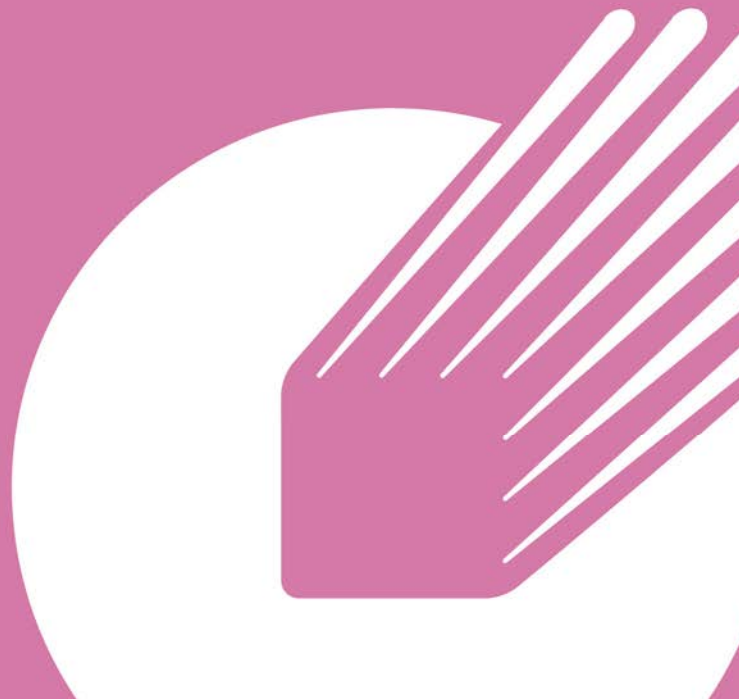
86) 폐업 시 폐업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Tax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제4부 조세지출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1장

조세지출의 이해

제1절 개념 및 의의

조세지출(租稅支出, tax expenditure)이란 경제·사회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우대 또는 조세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감면해 주는 것을 뜻한다. 조세지출은 예산상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 국가 세입의 감소를 야기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한편,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간접적인 보조금의 성격도 있으므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¹⁾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지출의 개념을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²⁾ OECD(1996)³⁾의 경우 조세지출을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⁴⁾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세지출의 범위는 각 국가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조세지출은 국가의 주요 재원인 조세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예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재정지출과 대비되는 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재정지출은 국가가 수혜대상을 선정하여 재정수입에서 직접적인 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반면, 조세지출은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법상 조세특례 요건을 충족할 때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혜대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혜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세지출은 세출 프로그램과 비교해 효율적인 정책 수단일 수 있지만, 명시적인 정부지출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적용받는 세출 프로그램과 달리 비교적 자유

1) 독일의 경우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세금우대조치(Steuervergünstigungen)를 보조금으로 분류함. 독일 재무부의 “보조금보고서(subventionsbericht)”는 세금우대조치를 연방정부 보조금과 함께 수록하고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3) OECD, 「Tax Expenditure: Recent Experiences」, 1996.

4) 기준조세체계에는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국제조세규약 등이 포함됨

롭게 운영될 개연성이 있다. 또한 조세지출의 수혜대상인 특정 산업 및 계층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하기 때문에 통상 조세지출을 통한 조세지원제도는 항구화(恒久化)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사회복지 및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조세지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조세지출은 세제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정 계층에 대한 조세감면은 조세지원을 받지 않은 다른 부문의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구간의 납세의 무자일수록 세부담의 경감효과가 더 클 수 있고, 세부담이 낮거나 없는 저소득 구간의 납세의무자일 경우 조세지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2절 조세지출의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의 부담을 영구적으로 경감시키는 직접감면과 일정기간 동안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감면

직접감면은 조세부담을 직접경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조치로 비과세, 저율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그 외 기타감면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과세란 열거된 특정 소득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을 들 수 있다. 비과세는 일정한 과세대상 소득 등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함에 따라 비과세 대상 또는 비과세 판정에 부합할 경우 세금의 신고·납부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저율과세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저율과세 제도와 같이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뜻한다.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대상 소득이 감소하므로 그만큼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세액공제는 세법이 규정한 사유에 따른 금액의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또는 설비투자 등 다양한 투자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소득공제의 경우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에서 세부담 경감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공제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법에 규정된 일정 비율을 감면하여 세부담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및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이 있다.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것으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외 일반적인 직접감면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영구적인 세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하는 기타 감면유형이 존재한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장애인용 보장구 및 농·축·임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⁵⁾ 적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간접감면

간접감면은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후로 과세를 연기하는 조세지출로서 준비금, 과세이연, 이월과세 등이 있다.

준비금이란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준비금을 사내 적립하는 경우 적립된 준비금을 일정기한 손비로 인정하여 적립된 준비금을 사용하는 시기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이연은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월과세는 개인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는 감면유형으로,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가 있다.

5)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零)으로 하는 것을 뜻함. 영세율 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0이 되고, 본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조세지출의 유형

구분	내용
직접 감면	비과세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
	저율과세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소득공제 과세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
	세액공제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세액감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
	기타감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등 다른 감면유형에 속하지 않는 직접감면
간접 감면	준비금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 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 적립금을 일정 기한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
	과세이연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연기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출자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연기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9. p.3.

제2장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제1절 국세 감면현황

1. 국세 감면액 규모

2025년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⁶⁾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 규정에 따른 국세 감면액이 ① 직전연도의 실적액, ② 해당연도 전망액 및 ③ 다음연도의 전망액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다.

2023년 국세 감면액 실적은 69.8조원이며,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이 36.9조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52.8%를 차지한다. 2024년 국세 감면액은 71.4조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세감면율은 전년 대비 0.5%p 상승한 16.3%로 전망된다. 2025년 국세 감면액은 2024년 대비 6.6조원(9.2%) 증가한 78.0조원으로 전망되고, 국세감면율은 15.9%로 전년 대비 0.4%p 하락할 전망이다.

Ⅱ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 감면액 현황 Ⅱ

(단위 : 억원, %)

	2023		2024		2025	
	실적	비중	잠정	비중	전망	비중
국세 감면액(A)	697,664	100.0	714,305	100.0	780,178	100.0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368,668	52.8	371,213	52.0	416,598	53.4
•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325,311	46.6	340,560	47.7	360,989	46.3
•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3,685	0.5	2,533	0.4	2,591	0.3
국세수입 총액 ¹⁾ (B)	3,703,803		3,643,847		4,122,410 ²⁾	
국세감면율(A/(A+B))	15.8		16.3		15.9	

주: 1) 국세수입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2025년 정부예산안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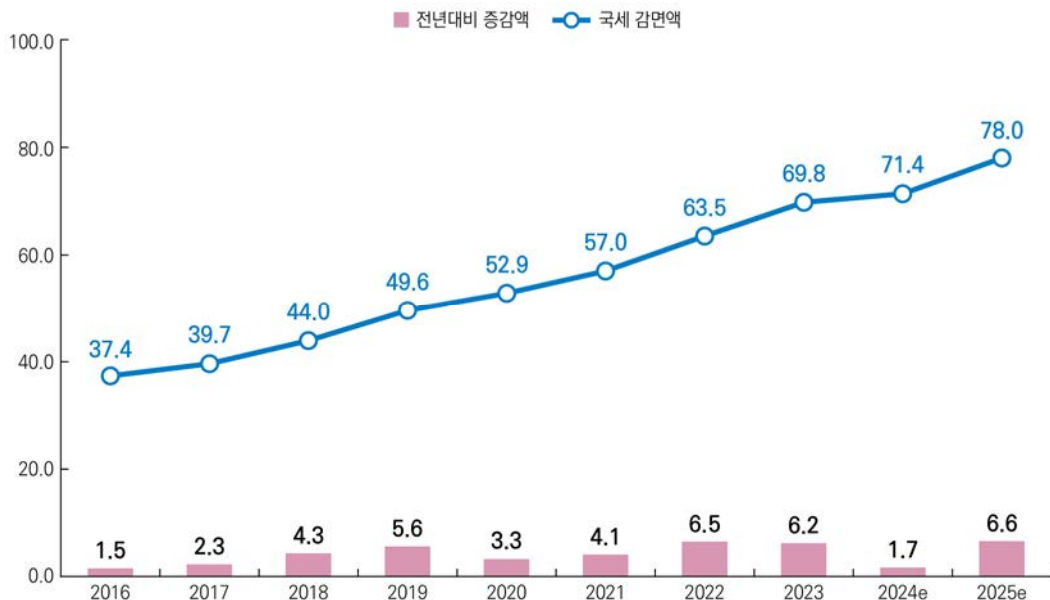
6)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됨.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에서 해당 연도 예산안 조회(2025년은 2025년도 예산안(정부, 의안번호 22035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 최근 10년 국세 감면 추이

최근 10년(2016~2025년) 동안 국세 감면 규모는 2016년 37.4조원에서 2025년 78.0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 감면액 규모의 증가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의 일환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재설계에 주로 기인한다. 국세감면액은 2017년까지 30조원대를 유지하였으나 2019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고용지원세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49.6조원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국세 감면액은 2020년 52.9조원에서 2022년 63.5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투자세액공제 등 R&D 투자 관련 조세지원이 확대되고 공제대상 근로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해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액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감면액은 2023년 69.8조원에서 2025년 78.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세 감면액 추이: 2016~2025년 ■

(단위: 조원, %)



주: 2024년·2025년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제시된 잠정·전망치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유형별 국세 감면현황

예산분류체계별 현황

조세지출예산서는 예산기준별 분류에 따라 국세 감면액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외교·통일 등 16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산분류체계별 국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전망치 기준으로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 농림수산물 등 4대 분야의 국세 감면액이 전체 국세 감면액의 81.3%를 차지한다.

이들 주요 4대 분야의 국세 감면 규모는 2021년 48.3조원에서 2025년 63.4조원으로 15.1조원 증가하였으나,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4.7%에서 2025년 81.3%로 3.4%p 감소할 전망이다.

■ 예산분류체계별 국세 감면액 추이: 2021 ~ 2025년 ■

(단위: 조원, %, %p)

예산분류별		2021 (A)	2022	2023	2024 (잠정)	2025 (전망, B)	'25 - '21 (B-A)
사회복지		20.0 (35.1)	21.1 (33.2)	23.4 (33.6)	25.3 (35.4)	27.0 (34.6)	7.0 (△0.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4.0 (24.5)	17.1 (26.9)	16.0 (22.9)	14.2 (19.9)	17.4 (22.3)	3.4 (△2.2)
보건		7.9 (13.8)	9.1 (14.4)	10.6 (15.1)	11.9 (16.6)	12.5 (16.1)	4.6 (2.3)
농림수산물		6.4 (11.2)	6.2 (9.7)	6.2 (8.8)	6.1 (8.5)	6.6 (8.4)	0.2 (△2.8)
합 계	4대 분야	48.3 (84.7)	53.5 (84.2)	56.1 (80.5)	57.4 (80.4)	63.4 (81.3)	15.1 (△3.4)
	전체	57.0 (100.0)	63.5 (100.0)	69.8 (100.0)	71.4 (100.0)	78.0 (100.0)	21.0

주: ()안의 값은 조세지출 총액 대비 비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이다. 동 분야의 감면액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및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연금보험료 공제액 확대 등으로 2021년 20.0조원에서 2025년 27.0조원으로 7.0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 국세감면액 규모 증가폭보다 최근 전체 국세감면액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1%에서 34.6%로 소폭(△0.5%p)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에 따라 2021년 14.0조원에서 2025년 전망치는 17.4조원으로 3.4조원 증가하는 반면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4.5%에서 2025년에는 22.3%로 2.2%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 분야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 증가에 따라 2021년 7.9조원에서 2025년 12.5조원으로 4.6조원 증가할 전망이며,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5년 16.1%로 2.3%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 분야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영향으로 2021년 6.4조원에서 2025년 6.6조원으로 0.2조원 증가할 전망이나, 전체 국세 감면액 중 비중은 동 기간 11.2%에서 8.4%로 2.8%p 감소할 전망이다.

12대 분야별 조세지출 분류

정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출분류체계를 기존 16대 분야 분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능별 12대 분류로 일원화한 정보를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제 공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조세지출 분류체계를 기존 16대 분야에서 12대 분야로 재분류하 였고, '8. 보건·복지·고용', '10. SOC', '12. R&D' 3개 분야가 신설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대 분야별 분류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를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SOC' 분야로 통합·변경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에 너지' 분야 중 R&D 관련 항목과 '과학기술' 분야를 합하여 'R&D' 분야를 신설하였다.

■ 조세지출 16대 → 12대 분야 재분류 내역(2024년 잠정치 기준) ■

(단위: 억원)

16대 분야 분류	금액		12대 분야 분류	금액
1 일반·지방행정	93,533	→	1 일반·지방행정	93,533
2 공공질서 및 안전	0	→	2 공공질서·안전	0
3 통일·외교	7	→	3 외교·통일	7
4 국방	346	→	4 국방	346
5 교육	10,460	→	5 교육	10,460
6 문화 및 관광	2,887	→	6 문화·체육·관광	2,887
7 환경	21,824	→	7 환경	21,824
8 사회복지	252,584	↘	8 보건·복지·고용	371,146
9 보건	118,562	↗		
10 농림수산	60,989	→	9 농림·수산·식품	60,989
11 교통 및 물류	8,208	↘	10 SOC	11,203
12 국토 및 지역개발	2,995	↗		
1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1,834	↔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1,834
14 과학기술	75	→	12 R&D ¹⁾	29,839
15 통신	0			
16 예비비	0		합 계	744,068
합 계	714,305			

주: 1) 과학기술 분야 외에, 여타 분야 중 R&D 관련 조세지출항목을 중복계상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13.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2025년 정부지출(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합) 규모는 정부 예산안 기준 755.4조원으로, 조세지출은 전체 정부지출의 10.3%인 78.0조원이다. 2025년 12대 분야별 조세지출 전망액 기준 상위 4대 분야의 정부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38.0%), 농림·수산·식품(20.2%), 보건·복지·고용(13.7%), R&D(9.5%) 순이다.

■ 예산분류별 정부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 2025년 예산안 기준 ■

(단위: 조원, %)

분야	조세지출 (A)	재정지출 (B)	정부지출 (C=A+B)	조세지출 비중 (A/C)
1 일반·지방행정	9.6	111.3	120.9	7.9
2 공공질서 및 안전	-	25.1	25.1	-
3 외교·통일	0.0	7.8	7.8	0.0
4 국방	0.0	61.6	61.6	0.1
5 교육	1.1	98.5	99.6	1.1
6 문화·체육·관광	0.3	8.8	9.1	3.3
7 환경	2.3	13	15.3	15.0
8 보건·복지·고용	39.5	249	288.5	13.7
9 농림·수산·식품	6.6	25.9	32.5	20.2
10 SOC	1.3	25.5	26.8	4.7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7.4	28.3	45.7	38.0
12 R&D	3.1	29.7	32.8	9.5
총계	78.0	677.4	755.4	10.3

주: 1. 12대 분야별 분류 중 2. 공공질서 및 안전은 해당 국제감면 항목이 없음

2. 조세지출 비중은 억원 단위로 계산하여 반올림한 것임

3. R&D 분야의 중복계상 문제 등으로 인해 각 분야별 총계와 전체 조세지출, 재정지출 규모가 일치하지 않아 분야별 총계가 아닌 정부가 발표한 전체 조세지출, 재정지출 규모를 토대로 분야별 비중을 산출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목별 현황

국세 감면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국세 감면액이 2025년 전망치 기준 74.0조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 78.0조원의 대부분인 94.8%를 차지한다.

■ 주요 세목별 국세 감면액 추이: 2021 ~ 2025년 ■

(단위: 조원, %, %p)

세목별		2021 (A)	2022	2023	2024 (잠정)	2025 (전망, B)	'25 - '21 (B-A)
소득세		34.6 (60.6)	37.0 (58.3)	40.9 (58.6)	45.1 (63.2)	48.1 (61.7)	13.5 (1.1)
법인세		8.9 (15.6)	11.3 (17.7)	12.4 (17.8)	9.8 (13.7)	12.7 (16.3)	3.8 (0.7)
부가가치세		10.2 (17.8)	11.0 (17.3)	12.0 (17.2)	12.7 (17.8)	13.2 (16.9)	3.0 (△0.9)
기타 세목		3.4 (6.0)	4.2 (6.7)	4.5 (6.4)	3.8 (5.3)	4.0 (5.2)	0.6 (△0.8)
합 계	3대 세목	53.6 (94.0)	59.3 (93.3)	65.3 (93.6)	67.6 (94.7)	74.0 (94.8)	20.4 (0.8)
	전체	57.0	63.5	69.8	71.4	78.0	21.0

주: 1. "기타 세목"에는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 포함

2. ()안의 값은 조세지출 총액 대비 비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3대 세목의 국세 감면액 규모는 2021년 53.6조원에서 2025년에는 74.0조원까지 증가하고, 전체 국세 감면액 중 주요 3대 세목의 비중은 2021년 94.0%에서 2025년에는 94.8%로 0.8%p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 감면액은 2021년 34.6조원에서 2025년에는 48.1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체 국세감면액 중 소득세 감면액 비중은 2021년 60.6%에서 2025년 61.7%로 1.1%p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소득세 조세지출 항목 중 감면액이 큰 근로·자녀장려세제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등의 점진적 확대와 명목소득 증가 등에 따른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의 공제액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법인세 감면액은 2021년 8.9조원에서 2025년 12.7조원으로 증가하고 전체 국세 감면액 중 법인세 감면액 비중은 2021년 15.6%에서 2025년 16.3%로 소폭(0.7%p) 증가

할 전망이다. 이러한 증가 경향은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되고 공제대상 기술 등이 확대되는 등 법인의 투자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2021년 10.2조원에서 2025년 13.2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4.9%로,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 등의 감면액이 꾸준히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부가가치세 조세지출의 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대한 큰 폭의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국세 감면액 중 부가가치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7.8%에서 2025년 16.9%로 소폭(0.9%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분야별 국세 감면 현황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분야별 국세 감면액을 보면 국민생활안정(주택안정,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 등) 분야의 감면액이 2025년 전망치 기준 25.1조원으로 같은 해 전체 국세 감면액 78.0조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32.2%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등 간접국세(14.6조원, 18.7%), 근로·자녀장려(5.8조원, 7.5%), 고용지원(5.3조원, 6.8%), 투자촉진(4.4조원, 5.6%), 중소기업(3.8조원, 4.9%), 연구개발(3.7조원, 4.8%) 등 순으로 큰 비중을 보인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국민생활안정 등 감면액 비중이 높은 주요 7개 지원분야의 감면액은 2021년 44.7조원에서 2025년 62.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7개 지원분야의 감면액이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8.4%에서 2025년 80.4%로 2.0%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국민생활안정 분야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등과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감면액이 확대되어 감면액 규모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 분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와 고용촉진에 대한 감면제도가 확대되며 감면액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다. 반면 간접국세, 근로·자녀장려 및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감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동 분야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분야별 국세 감면액 추이: 2021 ~ 2025년

(단위: 조원, %, %p)

지원분야	2021 (A)	2022	2023	2024 (잠정)	2025 (전망, B)	'25 - '21 (B-A)
국민생활안정	17.8 (31.3)	19.5 (30.7)	21.8 (31.3)	23.1 (32.3)	25.1 (32.2)	7.3 (0.9)
간접국세	11.5 (20.3)	12.3 (19.4)	13.3 (19.0)	14.1 (19.7)	14.6 (18.7)	3.1 (△1.6)
근로·자녀장려	5.2 (9.1)	5.0 (7.9)	5.2 (7.5)	5.8 (8.1)	5.8 (7.5)	0.6 (△1.6)
고용지원	3.1 (5.4)	4.0 (6.2)	4.6 (6.6)	5.0 (7.0)	5.3 (6.8)	2.2 (1.4)
투자촉진	1.4 (2.5)	2.3 (3.6)	2.2 (3.1)	1.8 (2.5)	4.4 (5.6)	3.0 (3.1)
중소기업	2.7 (4.7)	3.4 (5.3)	3.8 (5.4)	3.6 (5.0)	3.8 (4.9)	1.1 (0.2)
연구개발	3.0 (5.3)	4.1 (6.5)	5.1 (7.3)	3.6 (5.0)	3.7 (4.8)	0.7 (△0.5)
합 계	7대 분야	44.7 (78.4)	50.6 (79.7)	56.0 (80.2)	62.7 (80.4)	18.0 (2.0)
	전체	57.0	63.5	69.8	78.0	21.0

주: ()안의 값은 각 연도 전체 조세지출금액에 대한 각 분야별 지출액의 비중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세 감면액 상위 20개 항목 현황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 감면액 규모 상위 20개 항목을 집계하면 다음 표와 같다. 상위 20개 항목의 감면액 규모는 2023~2025년 동안 53.4조원에서 60.0조원으로 약 6.6조 원 증가할 전망이고, 이들 항목의 감면액이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76.5%에서 2025년 76.9%로 0.4%p 증가할 전망이다.

■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현황: 2023 ~ 2025년 ■

(단위: 억원, %)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2023		2024(잠정)		2025(전망)	
	감면액	순위	감면액	순위	감면액	순위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63,083	1	69,673	1	75,095	1
근로장려금	47,281	2	47,120	2	48,520	2
연금보험료공제	41,128	4	44,348	3	47,771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9,458	5	41,183	4	43,693	4
통합투자세액공제	20,798	12	17,402	13	42,883	5
통합고용세액공제	35,903	6 ¹⁾	38,112	5	40,208	6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35,074	7	35,932	6	37,819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28,866	9	33,658	7	33,622	8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30,071	8	33,328	8	32,179	9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6,302	3	29,575	9	30,990	1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5,336	10	23,639	10	25,000	11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23,047	11	22,408	11	23,586	12
연금계좌세액공제	15,428	-	17,966	12	19,341	13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3,634	16	15,107	15	16,405	1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13,853	15	15,306	14	16,110	15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5,515	13	13,736	16	15,441	16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7,094	-	12,356	17	13,716	17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9,481	20	12,341	18	13,314	1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9,609	18	11,377	19	12,275	19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5,461	-	10,914	20	11,929	20
전체 조세지출액(A)	697,664		714,305		780,178	
상위 20개 항목의 국세 감면액(B)	534,020 ²⁾		545,480		599,898	
상위 20개 항목의 비중(B/A)	76.5		76.4		76.9	

주: 1) 통합고용세액공제 시행 이전으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임

2) 2023년 실적 기준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 및 전체 조세지출액 대비 비중을 집계한 것임

1. 음영의 조세지출 항목은 법률 규정이 없는 항목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단일 국세 감면 항목 중 2025년 전망치 기준으로 상위 3개 조세특례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7.5조원)와 근로장려금(4.9조원), 연금보험료공제(4.8조원) 항목이다. 다음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실적 회복 등의 영향으로 2023년 2.1조원에서 2025년 4.3조원으로 감면액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순위도 2023년 12위에서 2025년 5위로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2025년 전망치 기준 상위 20개 국세 감면 항목 중 12개 항목이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에 해당한다. 일몰 규정이 없는 12개 항목의 감면액 규모는 41.3조원(2025년 전망치 기준)으로 같은 해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60.0조원)의 68.9%에 해당한다.

관리유형 기준

정부는 조세지출 정비 및 항목별 분류에 대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조세지출 항목의 특성을 기준으로 관리유형을 구분하였다. 조세지출의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 3가지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항목은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구분한다. 반면 특정성이나 대체가능성 중 한 가지가 없으면서 폐지가능성이 없는 항목은 '잠재적 관리대상'에 해당한다. 그 외 이러한 특성이 모두 없어 사실상 정비가 불가능한 항목은 '구조적 지출'에 해당한다.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적극적 관리대상(A) 조세지출은 190개 항목으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전체 항목 239개⁷⁾의 79.5%에 해당한다. 적극적 관리대상 감면액은 2023년 33.0조원에서 2025년에는 37.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47.4%에서 45.7%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47.4%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적 관리대상(B) 조세지출은 41개 항목이며, 감면액 규모는 2023년 21.1조원에서 2025년 22.9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으로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⁸⁾, 「소득세법」상 연금세액공제 및 의료비·교육비·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⁹⁾,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자녀장려금¹⁰⁾ 지급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¹¹⁾ 등이 있다. 이들이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30.2%에서 29.3%로 0.9%p 감소할 전망이다.

그 외 구조적 지출 항목으로는 「소득세법」상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¹²⁾,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¹³⁾, 연금보험료공제¹⁴⁾ 등 8개 항목이 있

7) 경과규정 제외

8) 「부가가치세법」 제42조

9)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59조의4제2항, 제59조의4제3항 및 제59조의4제4항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3, 제100조의27~31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

12)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및 제59조의4제1항

13)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무

다. 동 항목의 감면액 규모는 2023년 21.9조원에서 2025년 22.9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21.9%에서 22.9%로 1.0%p 증가할 전망이다.

■ 조세지출 관리유형별 항목수 및 조세지출액 현황 ■

(단위 : 개, 억원, %)

	항목수 ¹⁾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	비중	잠정	비중	전망	비중
적극적 관리대상(A)	190	330,442	47.4	326,690	45.7	369,999	47.4
잠재적 관리대상(B)	41	210,961	30.2	216,894	30.4	228,543	29.3
소계(C=A+B)	231	541,403	77.6	543,584	76.1	598,542	76.7
구조적 지출	8	152,630	21.9	168,204	23.5	179,044	22.9
경과규정	41	3,631	0.5	2,517	0.4	2,591	0.3
전체 국세 감면액 합계	280	697,664	100.0	714,305	100.0	780,178	100.0

주: 1) 항목수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4)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2절 지방세 감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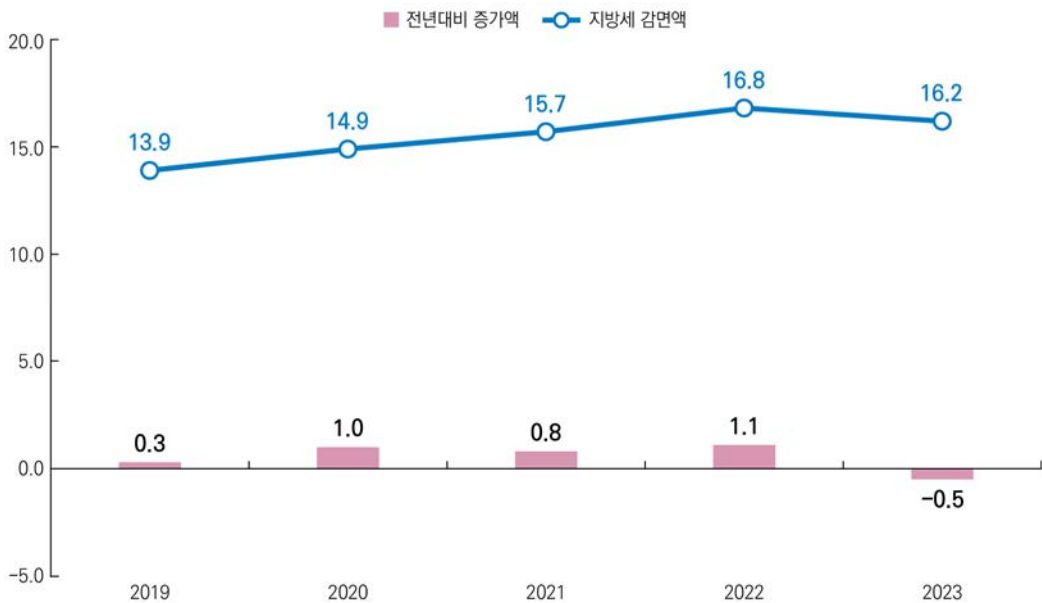
1. 지방세 감면액 규모 및 추이

「2024 지방세통계연감」 기준 2023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하 ‘지방세 감면액’)은 16.2조원으로 전년 대비 0.5조원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지방세 감면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9~2022년 지방세 감면액 규모는 각각 13.9조원, 14.9조원, 15.7조원, 16.8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가량씩 증가하였다가 2023년 16.2조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비과세·감면 항목이 신설되는 등 적극적인 세제 지원 정책¹⁵⁾의 영향으로 지방세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 관련 정책이 종료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지방세 감면액 추이: 2019 ~ 2023년 ■

(단위: 조원)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5)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코로나19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비과세·감면 정책이 시행되었음

2. 유형별 지방세 감면현황

주요 세목별 감면현황

지방세의 2023년 주요 세목별 감면실적을 보면 재산세 감면액과 취득세 감면액이 각각 7.3조원(45.1%)과 6.3조원(38.8%)으로 전체 지방세 감면실적 16.2조원의 83.9%를 차지한다. 그 외 감면 규모가 큰 지방세 세목은 담배소비세로 동 세목의 감면실적은 2023년 기준 1.8조원이며 전체 지방세 감면실적의 11.4%의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세 감면액 규모는 2019년 13.9조원에서 2023년 16.2조원으로 2.3조원 증가하였다. 이 중 재산세와 취득세의 감면액이 2019년 11.3조원에서 2023년 13.6조원으로 2.3조원 증가함에 따라 동 기간 전체 지방세 감면액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 세목별 지방세 조세지출 추이: 2019 ~ 2023년 ■

(단위: 조원, %, %p)

세목	2019(A)	2020	2021	2022	2023(B)	'23-'19 (B-A)
재산세	6.2 (44.2)	6.5 (43.4)	7.1 (45.3)	7.7 (46.0)	7.3 (45.1)	1.2 (0.9)
취득세	5.1 (36.9)	5.5 (36.8)	5.9 (37.2)	6.4 (38.3)	6.3 (38.8)	1.2 (1.9)
담배소비세	1.7 (12.5)	2.1 (13.9)	1.9 (11.8)	1.8 (10.5)	1.8 (11.4)	0.1 (△1.1)
자동차세	0.5 (3.6)	0.5 (3.2)	0.5 (3.2)	0.4 (2.6)	0.4 (2.4)	△0.1 (△1.2)
기타 세목	0.4 (2.8)	0.4 (2.7)	0.4 (2.5)	0.4 (2.6)	0.4 (2.3)	△0.1 (△0.5)
합 계	13.9 (100.0)	14.9 (100.0)	15.7 (100.0)	16.8 (100.0)	16.2 (100.0)	2.3

주: 1. "기타 세목"에는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2. ()안의 값은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근거법령별 감면현황

지방세 감면의 근거법령별 지방세 감면실적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감면이 2023년 기준 9.1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감면실적의 56.1%를 차지한다. 그 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실적은 6.4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감면실적의 39.4%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에 근거한 감면이 2019년 8.0조원에서 2023

년 9.1조원으로 1.1조원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전체 지방세 감면액 증가분(2.3조원)의 47.8%를 차지하였다.

■ 근거법령에 따른 지방세 조세지출 추이: 2019 ~ 2023년 ■

(단위: 조원, %, %p)

법령	2019(A)	2020	2021	2022	2023(B)	'23-'19 (B-A)
「지방세법」	8.0 (57.3)	8.6 (57.9)	9.0 (57.4)	9.4 (56.0)	9.1 (56.1)	1.1 (△1.2)
「지방세특례제한법」	5.4 (38.8)	5.7 (38.2)	5.9 (37.8)	6.7 (40.3)	6.4 (39.4)	1.0 (0.6)
「조세특례제한법」	0.3 (1.8)	0.2 (1.5)	0.3 (1.6)	0.2 (1.1)	0.2 (1.1)	△0.1 (△0.7)
감면조례	0.3 (2.0)	0.3 (2.3)	0.5 (3.1)	0.4 (2.6)	0.5 (3.3)	0.2 (1.3)
기타	0.01 (0.1)	0.01 (0.1)	0.01 (0.1)	0.01 (0.1)	0.003 (0.02)	△0.007 (△0.08)
합계	13.9 (100.0)	14.9 (100.0)	15.7 (100.0)	16.8 (100.0)	16.2 (100.0)	2.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원분야별 감면현황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원분야별 감면현황¹⁶⁾을 보면 2023년 실적 기준으로 상위 5개 분야(수송 및 교통,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중소기업, 교육 및 과학기술)의 지방세 감면액 규모는 5.54조원이며, 이는 전체 지방세 감면액의 86.8%에 해당한다.

상위 5개 분야 중 감면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분야이다. 동 분야의 지방세 감면액은 2023년 실적 기준 1.94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감면액의 30.4%에 해당한다. 그 외 사회복지(1.53조원, 24.0%), 국토 및 지역개발(1.0조원, 15.6%), 교육 및 과학기술(0.60조원, 9.3%), 중소기업(0.47조원, 7.4%) 순이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상위 5개 분야의 감면실적은 2019년 4.58조원에서 2023년 5.54조원으로 0.96조원 증가하였고, 전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 기간 84.8%에서 86.8%로 2.0%p 증가하였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분야의 감면실적이 2019년 1.37조원에서 2023년 1.94조원으로 0.57조원(4.9%p) 증가하여 가장 증가세가 큰 분야에 해당한다. 사회복지 분야는 2019년 1.29조

16) 현재 지원분야별 지방세 감면실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을 대상으로만 집계되고 있음

원에서 2023년 1.53조원으로 0.24조원(0.1%p) 증가한 분야로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이어 증가세가 큰 분야에 해당한다.

한편, 문화 및 관광,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지방세 감면실적은 증가한 반면 그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19년 0.38조원에서 2023년 0.40조원으로 0.02조원 증가하였음에도, 전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7.0%에서 6.2%로 0.8%p 감소하였다. 공공행정 분야 역시 2019년 0.17조원에서 2023년 0.19조원으로 0.02조원 증가하였음에도 전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3.2%에서 3.0%로 0.2%p 감소하였다.

■ 지원분야별 지방세 감면액 추이: 2019 ~ 2023년 ■

(단위: 조원, %, %p)

지원분야		2019 (A)	2020	2021	2022	2023 (B)	'23-'19 (B-A)
천재지변 등(총칙)		0.0013 (0.0)	0.0028 (0.0)	0.0005 (0.0)	0.0013 (0.0)	0.004 (0.1)	0.0027 (0.1)
문화 및 관광		0.38 (7.0)	0.39 (6.8)	0.41 (7.0)	0.42 (6.2)	0.40 (6.2)	0.02 (△0.8)
농어업		0.27 (5.1)	0.28 (4.9)	0.31 (5.1)	0.27 (4.0)	0.25 (4.0)	△0.02 (△0.9)
공공행정		0.17 (3.2)	0.18 (3.2)	0.22 (3.7)	0.20 (2.9)	0.19 (3.0)	0.02 (△0.2)
중소기업		0.49 (9.1)	0.46 (8.1)	0.47 (7.9)	0.69 (10.3)	0.47 (7.4)	△0.02 (△1.7)
사회복지		1.29 (23.9)	1.45 (25.4)	1.51 (25.4)	1.41 (20.8)	1.53 (24.0)	0.24 (0.1)
교육 및 과학기술		0.61 (11.3)	0.59 (10.4)	0.63 (10.6)	0.63 (9.3)	0.60 (9.3)	△0.01 (△2.0)
수송 및 교통		1.37 (25.5)	1.45 (25.3)	1.60 (26.8)	1.89 (27.9)	1.94 (30.4)	0.57 (4.9)
국토 및 지역개발		0.81 (15.0)	0.90 (15.8)	0.80 (13.4)	1.24 (18.4)	1.00 (15.6)	0.19 (0.6)
합 계	주요 5대 분야	4.58 (84.8)	4.85 (85.1)	5.02 (84.2)	5.86 (86.8)	5.54 (86.8)	0.96 (2.0)
	전체	5.40 (100.0)	5.71 (100.0)	5.96 (100.0)	6.75 (100.0)	6.39 (100.0)	0.99

주: '23-'19 증감액 및 비중은 반올림 등에 따른 단수차이가 존재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3절 2025년 일몰도래 조세특례 현황

1. 2025년 국세 조세지출 일몰도래 항목

2025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항목은 65건이며, 해당 항목의 2025년 조세지출액 전망치는 총 16.9조원이다. 이 중 61건은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2025년도 조세지출액 전망치의 총합은 15.1조원이며, 나머지 4건은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2025년도 조세지출액 전망치의 총합은 1.8조원이다.

Ⅰ 2025년 일몰도래 조세특례 항목 Ⅰ

(단위: 억원)

	감면대상	근거규정	감면액 (25년 전망치)
적극적 관리대상(61개 항목, 15.1조원)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 7	25,000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 7의4	42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조특법 § 8의3	310
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 12의2	78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 13	67
6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 13의2	584
7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 13의3	0
8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 13의4	0
9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 14	127
10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법 § 15	추정곤란
1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 16	2,027
12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 18의3	27
1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 25의6	269
14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 27	추정곤란
15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 29의4	149
16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특법 § 29의8	40,208
17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 60	1

	감면대상	근거규정	감면액 (25년 전망치)
18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 61	3
19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법 § 63	847
20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법 § 63의2	401
2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 64	104
2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 69의2	124
2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 69의3	22
24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법 § 71	449
25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 72	3,444
2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 74①	423
27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 77의3	261
28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 85의6	154
2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 85의8	2
30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 87②	433
3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조특법 § 87③	3
3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 87의2	73
33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 88의2	11,929
34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 88의5, § 89의3	13,716
35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조특법 § 91의22	추정곤란
3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 96	244
37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 99의4	추정곤란
38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 99의9	497
3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 104의25	11
4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하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 104의30	7
4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 104의31	423
4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법 § 106①, § 111①	18
43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 106①	추정곤란
44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 106①	785
45	BTO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 106①	62
46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 106①	2,204

	감면대상	근거규정	감면액 (25년 전망치)
47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 106①	추정곤란
48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법 § 106의2①	393
49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조특법 § 107의2	17
50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조특법 § 107의3	920
5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조특법 § 111의5	41
5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 117①	105
5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 121의8	0.6
54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 121의9	0.02
5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조특법 § 121의20	0.6
56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조특법 § 121의21	0
57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 121의22	11
5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 126의2	43,693
59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 126의3	468
60	기업업무추진비 중 문화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 136③	7
61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법 § 140	0
잠재적 관리대상(4개 항목, 1.8조원)			
62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 105①	2,295
63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 106①	4
64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 106②	31
65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조특법 § 108	16,110

주: 1. 전망치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근거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2025년 지방세 조세지출 일몰도래 항목

2025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지출 항목 수는 108개이며, 「2025년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에 따른 이들 항목의 2023년 감면실적은 약 1.3조원이다.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은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특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원분야별로 나누어 관리¹⁷⁾하고 있다.

지원분야를 기준으로 감면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4,784억원)이며, 다음으로 국토·지역개발에 대한 지원(4,171억원),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1,286억원) 순이다. 세부항목 중에서는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4,091억원으로 가장 크다.

Ⅰ 2025년 일몰도래 지방세특례 항목 Ⅰ

(단위: 억원)

	감면대상	근거규정	감면액 ('23년 실적)
Ⅰ. 농어업을 위한 지원(16개 항목, 918억원)			
1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농지확대 개발사업 취득 개간농지	지특법 § 8①	1
2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내 교환·분합 농지(경지정리사업)	지특법 § 8②	0
3	임업진흥법 등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교환·분합하는 임야, 취득하는 보전산지	지특법 § 8③	11
4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지특법 § 9②	31
5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지특법 § 9③	0
6	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 담보물 등기	지특법 § 10①	130
7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매매사업·농지 재개발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지특법 § 13②1	96
8	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토지 및 시설물	지특법 § 13②1의2	25
9	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여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된 토지	지특법 § 13②1의3	3
10	농어촌공사가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취득(임대 후 환매 취득 포함) 하는 농지	지특법 § 13②2	75
11	농어촌공사가 농지 구입·임차 등 FTA 피해 농어업인 경영규모 확대 지원 목적 취득 농지	지특법 § 13②3	3

17) 관리대상 유형별(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구조적 지출)로 조세지출 항목을 구분하는 국제 조세지출과는 달리 지방세 조세지출은 이러한 구분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감면대상	근거규정	감면액 ('23년 실적)
12	농어촌공사가 제3자공급 목적으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지특법 § 13②4	0
13	농어촌공사가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 취득하는 부동산	지특법 § 13②4의2	0
14	농어촌공사가 농지시장 안정을 위해 매입(간척 포함) 및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농지	지특법 § 13②5	54
15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고유업무 부동산	지특법 § 15①	9
16	지방농수산물공사 고유업무 부동산	지특법 § 15②13	478
II.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14개 항목, 4,784억원)			
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지특법 § 18	0
18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고유업무 사용 부동산(의료기관 외)	지특법 § 22①③④	284
19	사회복지법인 등(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포함)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사업·종업) 면제	지특법 § 22⑤	407.4
20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지특법 § 22⑦	1.1
21	법률구조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지특법 § 23①	0
22	한국소비자원 고유업무 부동산	지특법 § 23②	0
23	근로복지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지특법 § 27①	0
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지특법 § 28②	0
25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지특법 § 28③	0
2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지특법 § 30①	0
27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 감면	지특법 § 33의2	0
28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감면	지특법 § 33의3	0
29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 36의3	4,091
30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지특법 § 36의5	0
III.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8개 항목, 174억원)			
3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특법 § 46①	21
32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대기업, 과밀억제권역외)	지특법 § 46②	62
3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중견기업)	지특법 § 46③	8
34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중소기업)	지특법 § 46④	81
35	한국환경공단(환경복합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지특법 § 47·1	1
36	한국환경공단(재활용시설, 환경영향평가, 석면안전관리)	지특법 § 47·2	0
37	국립공원공단 공원관리사업 부동산	지특법 § 48	0
38	해양환경관리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 선박	지특법 § 49	0
IV.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1개 항목, 2억원)			
39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취득 부동산	지특법 § 54①	2

	감면대상	근거규정	감면액 ('23년 실적)
V.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10개 항목, 1,286억원)			
40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업무 부동산	지특법 § 56③	1
4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이상 출·투자한 집합투자기구 취득 부실 PFV의 부동산	지특법 § 57의5	0
42	벤처기업 고유업무 부동산(벤처기업육성특진지구내)	지특법 § 58④	48
43	지식산업센터용 분양·임대 부동산(사업시행자)	지특법 § 58의2①	606
44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입주기업, 중소기업한정)	지특법 § 58의2②	628
4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시설용 부동산	지특법 § 59①	0
46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지특법 § 59②	0
47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	지특법 § 59③	1
48	중소기업협동조합 고유업무 부동산 *전통시장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지특법 § 60①	0
49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고유업무 부동산	지특법 § 60④	2
VI.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18개 항목, 428억원)			
50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용 부동산	지특법 § 63①	0
51	한국철도시설공단 취득 철도차량	지특법 § 63②1	0
52	한국철도시설공단 취득 국가귀속 부동산	지특법 § 63②2	58
53	한국철도공사(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지특법 § 63③1	145
54	한국철도공사(철도차량 및 고속철도차량)	지특법 § 63③2	
55	도시철도공사 고유업무 부동산 및 철도차량	지특법 § 63⑤1	15
56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지특법 § 63⑤2	36
57	도시철도공사 고유업무 부동산	지특법 § 63⑤3	159
58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고속철도차량	지특법 § 63⑥	0
59	교환자동차등에 대한 감면(수소 화물자동차)	지특법 § 66⑤	1
60	교통안전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지특법 § 69	0
61	물류단지개발사업용 부동산(시행자)	지특법 § 71①	9
62	물류단지내 물류사업용 부동산(물류업자)	지특법 § 71②	2
6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공사계획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지특법 § 71③	0
64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용 토지 및 물류시설	지특법 § 71의2①	0
65	도시첨단물류단지 물류시설용 부동산	지특법 § 71의2②	0
66	별정우체국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지특법 § 72①	0
67	별정우체국 공용 또는 공공용 부동산	지특법 § 72②	3
VII.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30개 항목, 4,171억원)			
68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사업시행자)	지특법 § 74③	1,159
69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사업시행자사업용)	지특법 § 74④	14
70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사업시행자대지조성용)	지특법 § 74⑤1	105

	감면대상	근거규정	감면액 (’23년 실적)
71	도정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사업시행자관리처분계획에따른취득)	지특법 § 74⑤2	2
72	도정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정비구역지정고시일현재부동산소유자)	지특법 § 74⑤3	0
73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취득 부동산 (입주기업창업및사업장신설)	지특법 § 75의2①1	8
74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취득 부동산 (사업시행자사업용)	지특법 § 75의2①2	0
75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취득 부동산 (입주기업창업및사업장신설)	지특법 § 75의2①3	1
76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취득 부동산 (사업시행자사업용)	지특법 § 75의2①4	15
77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에 창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특법 § 75의4	0
78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 75의5	47
79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시행자 단지 조성용)	지특법 § 78①	266
80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시행자 분양·임대용산업용건축물)	지특법 § 78②1	13
81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시행자 조성공사 끝난 토지 분양전 보유 단계)	지특법 § 78②2	12
82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시행자 직접사용 목적 산업용 건축물)	지특법 § 78③1	76
83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시행자 직접사용 목적토지)	지특법 § 78③2	10
84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입주기업 직접사용 목적 산업용건축물 신축·증축)	지특법 § 78④2가	2,338
85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입주기업 직접사용 목적 산업용건축물 대수선)	지특법 § 78④2나	
86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입주기업 직접사용 목적 산업용건축물 신축·증축)	지특법 § 78④2다	
87	산업기술단지 입주자 종과배제	지특법 § 78⑨	0
88	한국산업단지공단 고유사업 부동산	지특법 § 78의2	12
89	외국인투자기업 등 직접 사용 부동산	지특법 § 78의3①	70
90	외국인투자기업 등 직접 사용 부동산(사업개시일 전)	지특법 § 78의3②	9
91	외국인 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의 외국인 투자	지특법 § 78의3③1	0
92	외국인 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의 외국인 투자	지특법 § 78의3③2	0
93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이전목적 취득 부동산	지특법 § 81①	6
94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	지특법 § 81②	0
95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거주목적 취득 주택(1가구 1주택)	지특법 § 81③1가	7
96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 취득 주택(1가구 1주택)	지특법 § 81③1나	
9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취득 주택 (1가구 1주택)	지특법 § 81③1다	
VIII.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10개 항목, 1,274억원)			
9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의 직접사용 부동산	지특법 § 85①	1
99	지방공사 고유업무 부동산(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제외)	지특법 § 85의2① 1,3	1,097
100	지방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지특법 § 85의2②	5
101	자치단체 출자출연 주식회사 고유업무 부동산	지특법 § 85의2③	38
102	새마을운동조직 고유업무 부동산	지특법 § 88①	7

	감면대상	근거규정	감면액 (’23년 실적)
103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	지특법 § 88②	1
104	정당 고유업무 부동산	지특법 § 89①②③	2
105	마을회 등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	지특법 § 90①	21
106	마을회 등 소유 부동산, 임야	지특법 § 90②	102
107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 과세특례	지특법 § 91	0
XI.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1개 항목, 0억원)			
10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지특법 § 167	0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 2025.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3장

조세지출 관리

제1절 의의

조세지출은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조세지출 관리제도는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사후 성과관리제도, 조세지출 총량 관리를 위한 국세·지방세 감면을 한도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조세지출 관련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직전 연도 및 당해 연도의 국세감면실적 및 추정액을 담은 ‘조세지출보고서’를 1999년부터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이 제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 현재도 지방세지출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국세의 경우 2010년부터 국세 조세지출에 대한 명세서인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부속서류로서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¹⁸⁾의 규정에 따라 예산항목별·기능별, 세목별 및 감면 방법별로 조세지출의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로서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국회에 제출¹⁹⁾하여야 한다.

둘째,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제도가 존재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규 조세지출 항목을 도입할 경우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일몰 도래 또는 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효과 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출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와 유사하게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감면액 규모 100억원(조례의 경우 감면액 규모 10억원) 이상의 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의2

19) 「국가재정법」 제34조

끝으로 조세지출과 지방세 감면액 규모의 총량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세감면율·지방세감면율을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국세·지방세감면율 한도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제2절 조세지출 관리제도의 연혁

조세지출의 확대는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다.

첫 번째 조치는 「조세감면규제법」(1965년)의 제정으로, 조세감면의 과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개별세법에 의해 운용되던 조세감면 제도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일괄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이 확대·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6년 「조세감면규제법」을 한시법 체제로 전환하였다. 일정한 시한이 지나면 법 자체가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여 지원의 항구화를 막고자 한 것이다. 그 시한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5년으로 정하였으나, 1976년 법 제정 이래 1981년, 1986년, 1991년 세 차례에 걸쳐 매 5년 단위로 연장되었다.

일몰제도

1997년 말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1998년 재정적자가 GDP의 4.2%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감면의 통제장치는 보다 강화되었다.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여 개별세법의 조세감면 규정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한편, 개별 항목별로 일몰기한을 설정하였다. 일몰조항(Sunset Clause)이란 특정 감면조항에 적용시한을 명기한 후 동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편, 조세감면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는 조세감면의 종류와 규모를 기록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조세감면 통제장치에 대한 법제화 : 「국가재정법」 제정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과 함께 조세지출에 대한 통제장치가 법제화되었다. 이는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적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서, 국세수입 대비 국세감면 비율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고, 새로운 감면 요구시에 기존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하였다.

「국가재정법」 중 조세지출 관련 주요 내용

- ① 국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88①)
 - 도입목적 : 국세감면에 대한 총량적 관리 강화
 - 제도내용 : 국세감면 총액을 국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관리
 - 국세 감면비율 한도 :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 시행시기 :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 ② 국세감면의 사전 제한(§ 88②)
 - 도입목적 : 재원조달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감면 신설 제한
 - 제한방법 :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감면 요청시 기존감면의 축소·폐지방안 등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시행시기 :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 ③ 예산안 제출시 조세지출예산서 첨부(§ 34)
 - 도입목적 :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작성방법 : 3년간(직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추정액) 조세감면규모를 기능별·세목별로 작성
 - 제출시기 :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매년 9월 3일)와 동일
 - 시행시기 : 2011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

제3절 현행 조세지출 관리제도

1.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가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조세지출 관련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에 대한 주기적인 공표를 통해 조세지출의 관리·통제를 지원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가. 국세 - 조세지출예산서

국세 조세지출예산제도는 1999년 조세지출보고서의 도입이 그 시초이다. 당시 조세지출보고서는 직전 및 당해연도 조세지출 실적치만 집계되고 다음연도 규모는 포함되지 않았기에 사전적 관리라는 목적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조세지출의 분류방식과 세출예산이 상호 일치되지 못함에 따라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예산을 연계한 총량적 개념의 재정지출 규모의 파악에도 제한이 있었다. 조세지출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조세지출예산서가 도입되었다.

Ⅱ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의 차이점 Ⅱ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예산서
대상기간	(2년) 직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전망액	(3년) 직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추정금액
국회제출 법적의무	임의제출	의무제출
제출시기	통상적으로 10월말에서 11월초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09.03.)와 동일
용도	국회 예산심의 시 참고자료	예산안 첨부서류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10년부터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3개 연도(직전 연도, 해당 연도, 다음 연도)의 실적 및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 및 감면 방법별로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²⁰⁾, 이를 국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고 있다.²¹⁾

2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의3

21) 「국가재정법」 제34조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조세지출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조세지출, 개별 세법상의 조세지출(예: 「소득세법」상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규정 폐지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을 포함한다.

나. 지방세 - 지방세지출보고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으나, 2010년말 「지방세법」 분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비과세·감면 항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는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반영하여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운영방식을 보면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초기 형태가 조세지출보고서였던 것과 유사하게 지방세지출보고서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²²⁾에서는 당해연도 추정금액만을 수록한 지방세지출 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연도 재정운용의 전망치를 살펴보는 예산서로서의 기능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²³⁾에서는 지방세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결산값만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결산서의 첨부서류²⁴⁾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르면 지방세지출보고서는 크게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와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 내용으로 구분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는 당해 연도의 전체 총괄표와 기능별·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을 수록하고,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 대비 증감 사유 분석으로 구성된다.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은 세출 분야와 유사한 15개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 지출 근거법령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기재한다.

22) 행정안전부 훈령 제358호

23) 행정안전부 훈령 제332호

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32호, 2024.1.22. 시행), p.23.

사.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수지상황 총괄 등 22종류)

⑮ 지방세 지출보고서(실적 기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자원 지원의 실적을 작성(직전 회계연도의 실적을 작성)

조세지출예산서와 지방세지출보고서의 비교

	국세-조세지출예산서	지방세-지방세지출보고서
근거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작성주체	기획재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세지출 유형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비과세 및 감면
대상기간	3개 연도의 조세지출 실적 및 추정금액 (직전연도 실적,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의 추정금액)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 - 단, 행정안전부 훈령은 예산안(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추정금액 포함)·결산서(직전회계연도 실적만 포함)의 첨부서류로 구분하여 규정함

자료: 관련 법률 조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가. 국세

국세 조세지출의 사전·사후 관리의 일환으로 신규 조세지출의 도입 및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제도가 존재한다. 새로운 국세 조세지출 항목 도입에 대한 사전적 관리제도로서 조세지출건의서와 예비타당성 평가가 있다. 기존 조세지출 항목 중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사후적 관리제도는 조세지출평가서와 조세특례 심층평가가 있다.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요약: 국세

	예비타당성평가	자체평가		심층평가	
		감면건의서	평가의견서	의무심층평가	임의심층평가
대 상	연평균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신설·변경 특례제도	연평균 300억원 이하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신규 도입 건의 제도	일몰기한 도래 조세특례 사항 및 일몰없는 제도 중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제도	연평균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이 발생한 일몰기한 도래 특례제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선정한 특례제도
평가유형	사전	사전	사후	사후	사후
평가주체	전문연구기관	소관부처 수행/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확인·점검	소관부처 수행/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확인·점검	전문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평가빈도	건의에 따라 평가, 재요구 제한 있음	건의에 따라 평가, 재요구 제한 없음	일몰도래시, 일몰없는 경우 3년에 1회 평가	일몰도래시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과활용	평가된 경우 높음 (예비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신규 도입된 사례 다수)	낮음 (감면건의서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신규 도입된 사례 다수)	낮음	높음	보통

자료: 김학수,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2017.

① 조세지출건의서

조세지출건의서는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을 위해 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의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이다. 「국가재정법」 제88조제2항은 조세지출의 신설을 요청할 때에는 감면액 보충을 위해 기존 조세감면의 축소 및 폐지방안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조세감면 사전제한제라고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평균 감면액 300억원 미만의 조세감면 신설이나 확대가 필요한 경우, 조세감면의 목적 및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관련 통계 및 세수보완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지출건의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²⁵⁾

②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조세지출 신설 이전의 사전적 평가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특례의 도입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정책적 타당성과 고용·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2항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2조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는 국세 조세지출을 신규로 도입할 때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연평균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안에 대하여 동 제도의 도입 타당성 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²⁶⁾²⁷⁾

단,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²⁸⁾에는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2020~2024년)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건수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에는 면제 비율이 75% 이상으로, 신규 조세특례 항목 중 상당 비중이 예비타당성평가를 거치지 않고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정부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현황: 2020~2024년 ▮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시	3(60.0%)	1(25.0%)	1(12.5%)	1(14.3%)	2(25.0%)
면제	2(40.0%)	3(75.0%)	7(87.5%)	6(85.7%)	6(75.0%)
합계	5(100.0%)	4(100.0%)	8(100.0%)	7(100.0%)	8(100.0%)

주: ()안의 값은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조세특례 항목 대비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③ 조세지출평가서

조세지출평가서는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을 위해 각 부처가 소관 조세지출의 운영성과에 대한 자율적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조세지출평가서는 기존 조세지출 항목 중 일몰이 도래한 항목과 일몰이 없는 항목 중 해당 연도 조세특례 기본계획에서 선정된 항목이 대상이 된다. 또한, 조세지출 항목은 규모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자체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의 효과분석 및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조세지출평가서를 작성하고, 조세지출건의서와

26)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

27) 기획재정부의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항목은 2건(육아친화기업 통합고용 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임

28) ①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③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이 있음

마찬가지로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²⁹⁾

조세지출평가서는 소관부처의 자체평가라는 점,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확인·점검을 받는다는 점 등은 조세지출건의서와 동일하다.

이와 함께, 다음 연도 평가서 작성 예정 항목 중 조세지출 제도의 변경 등으로 성과지표의 재설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과지표 및 목표, 관련자료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는 조세지출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조세특례 심층평가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도래 시 실시하는 사후적 평가인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평가대상 항목의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의 폐지 및 일몰기한 연장 등의 정책 결정을 위하여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연평균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일몰기한 도래 항목에 대하여 이들 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³⁰⁾하고, 평가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20 ~ 2024년) 심층평가 결과의 정부안 환류 현황을 살펴보면 항목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일몰기한 연장으로 제언된 경우는 대부분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나, 제도의 축소·재설계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결과일수록 그 환류 정도가 낮다. 다만, 2024년의 경우 축소·폐지 및 제도 재설계에 대한 환류 비중이 각각 75.0%, 50.0%로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난다.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

3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의 정부안 환류 현황: 2020~2024년

(단위: 건)

심층평가 결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순·확대 연장	6/7(85.7%)	5/6(83.3%)	5/5(100.0%)	3/3(100.0%)	1/1(100.0%)
축소연장 및 장기적 축소·폐지	3/4(75.0%)	2/8(25.0%)	1/8(12.5%)	0/5(0.0%)	3/4(75.0%)
제도 재설계	-	1/4(25.0%)	1/3(33.3%)	0/2(0.0%)	1/2(50.0%)

주: 1. B/A : A = 해당 유형의 심층평가 결과 총 건수, B = 해당 심층평가 결과 중 정부 세법개정안에 환류된 건수

2. ()안의 값은 심층평가 결과 유형별 정부 세법개정안 환류 비중

3. 의무심층평가 결과만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지방세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조세지출의 사전·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각기 조세지출의 도입과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지방세 조세지출 항목 도입에 대한 사전적 관리제도는 지방세감면건의서와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가 있다. 그리고 운영 중인 지방세 조세지출 항목 중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사후적 관리제도로는 지방세감면평가서와 지방세특례 심층평가가 있다.

①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재정법」 제28조의2제2항에서는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감면건의서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 및 조세부담능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매년 3월 31일까지(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³¹⁾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2항

②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는 신규로 도입하려는 지방세특례를 대상으로 그 필요성, 경제적 및 사회적 기대효과, 지역경제 및 지방세수 영향, 조세의 형평성, 정책수단의 적절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 신규 도입의 정책 결정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세특례 신규 도입안에 대하여 동 제도의 도입 타당성 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다.³²⁾

③ 지방세감면평가서

지방세감면평가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존 지방세특례 중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특례,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지방세특례, 범위를 확대하려는 지방세특례 등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다.³³⁾ 지방세감면평가서는 소관부처의 자체평가라는 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월 31일까지(지방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와 동일하다.

④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지방세특례 항목의 일몰기한 도래시 실시하는 사후적 평가인 지방세특례 심층평가는 평가대상 항목의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³⁴⁾

20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세특례의 폐지 및 일몰기한 연장 등의 정책 결정을 위한 주요 지방세특례 평가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연평균 감면액 100억원 이상인 지방세특례 중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가 수행되었다.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3항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6항

다만 국세의 조세특례 심층평가와 달리 지방세특례 심층평가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국회에 결과를 제출하는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국세감면율 및 지방세감면율 한도제

국세감면율 한도제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국세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조세지출에도 재정준칙(fiscal rule)³⁵⁾을 적용함으로써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적인 관리의 강화를 도모한 것이다.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국세에 대한 모든 비과세·감면액을 총량으로 합산하여 국세의 일정비율로 국세 조세지출의 한도를 정하고, 국세 감면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국세 감면액을 감면 이전의 국세수입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³⁶⁾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88조에서는 국세감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이하 ‘법정한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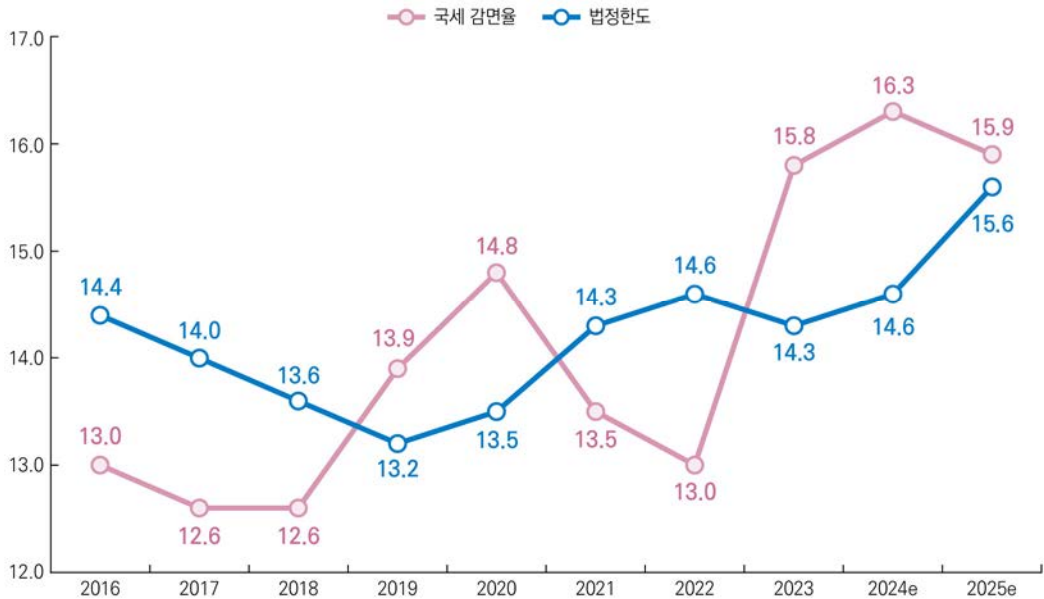
최근 10년간(2016~2025년)의 국세감면율 추이를 살펴보면 5개년(2019, 2020, 2023, 2024, 2025년)의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하회하였고, 2019년과 2020년에는 국세수입보다 국세감면액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각각 0.6%p, 1.2%p 초과하였다. 이후 국세수입 호조의 영향으로 국세감면율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2021~2022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하회하였다. 그러나 2023년 국세감면액이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은 감소하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1.5%p 초과하였으며, 이러한 추이가 지속되어 2024년과 2025년에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각각 1.7%p, 0.3%p씩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35) 재정준칙의 예로써 미국 예산통제법(Budget Enforcement Act, BEA)을 들 수 있음. BEA에서는 총지출을 일단 재량지출과 의무지출로 구분함.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의 지출상한선을 정하고, 예산이 이를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모든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증대 또는 세입감소를 초래하는 법안이 성립하는 경우 이를 상쇄하는 법안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함. 이를 PAYGO(pay-as-you-go) 원칙이라고 칭함

36)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 + 국세감면액)} × 100

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 추이: 2016 ~ 2025년

(단위 : %)



- 주 : 1. 국세감면율의 2023년 실적치 및 2025년 전망치는「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근거
 2. 2024년 국세감면율 잠정치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024년 국세감면액 잠정치와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징수실적을 토대로 산출
 3. 2019년 수치부터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자료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처럼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가 계속하여 발생함에도 정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이나 ‘조세지출예산서’ 등을 통해 법정한도 초과 사유를 분석하거나 국세감면율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가재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조세지출 예산서의 작성 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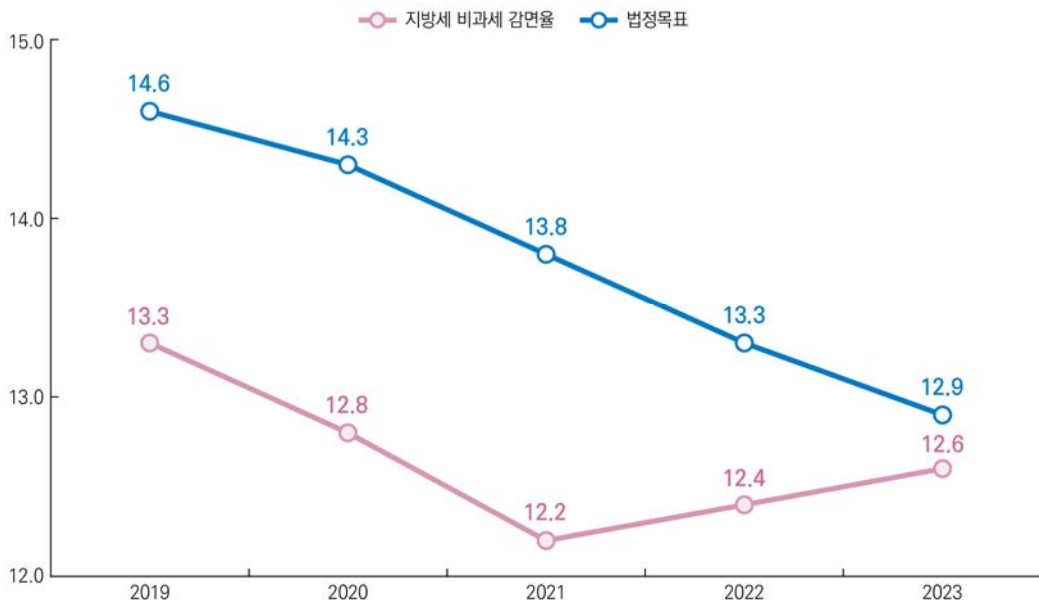
지방세감면을 한도제

지방세 조세지출에서도 국세 조세지출과 동일하게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28조의2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³⁷⁾을 대통령령³⁸⁾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지방세 감면율 법정목표’) 이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율 법정목표는 2017년까지는 15.0%라는 고정률로 규정되었으나, 2018년에는 2017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 2019년에는 2017년과 2018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로 규정되었다. 2020년 이후 지방세 감면율 법정목표는 국세 감면율과 동일하게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이 된다.

최근 5년(2019 ~ 2023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2019년 13.3%에서 2023년 12.6%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감소함에 따라 직전 2 ~ 3개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지방세 감면율 법정목표도 2019년 14.6%에서 2023년에는 12.9%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및 법정목표 추이: 2019 ~ 2023년 ■

(단위: %)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 2025.2.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7)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지방세징수액 +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100(%)

3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7

4. 국회의 조세지출 관리

의원 발의 조세지출 법률안의 증가

조세지출이 세출 프로그램 대비 특정 산업 및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의원 발의 조세지출 법률안도 증가하고 있다. 제21대 국회(2020.5.30.~2024.5.29.) 기준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837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64건으로 집계된다. 이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세 및 지방세 조세지출 법률안을 약 2.5배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며, 제20대 국회 대비 국세 분야의 조세특례는 237건(39.2%), 지방세 분야의 조세특례는 171건(86.8%)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되어 제22대 국회(2024.5.30.~2025.3.31.) 기준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4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34건으로 집계된다. 이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세 조세지출 법률안의 96.6%, 지방세 조세지출 법률안의 118.6%에 달하는 것으로, 제22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조세지출 법률안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원 발의 조세지출 법률안 현황

(단위: 개,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합 계
제19대 국회 (‘12.5.30.~’16.5.29.)	354 (75.8)	113 (24.2)	467 (100.0)
제20대 국회 (‘16.5.30.~’20.5.29.)	604 (75.4)	197 (24.6)	801 (100.0)
제21대 국회 (‘20.5.30.~’24.5.29.기준)	837 (69.7)	364 (30.3)	1,201 (100.0)
제22대 국회 (‘24.5.30.~’25.3.31.기준)	342 (71.8)	134 (28.2)	476 (100.0)

주: 제19대, 제20대, 제21대 국회는 전체기간 동안의 법률안 현황임

의원 발의 조세지출 법률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지출의 기간,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원 발의 조세지출 법률안이 증가함에 따라 국회 법률 심사 과정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내용이 법률 개정예 반영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세지출 관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세특례사전평가제도

의원 발의 조세지출 법률안의 양적인 관리에 대응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 조세특례사전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국회법」 제79조의3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의원 발의 조세특례 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2014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려 할 때에 전문기관의 조세특례 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한 것에 대응하는 것이다.³⁹⁾

단, 「국회법」 제79조의3에서는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조세특례금액의 범위,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⁴⁰⁾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국회법」 제79조의3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 ① 의원이나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하거나 제안하는 경우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39) 당시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연간 조세감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감면을 도입하는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사전 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였는 바,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동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함(2013.12.31.)

40) 2014.12.4. 의장 의견제시로 「조세특례평가에 관한 규칙안」이 운영위에 제출되었으나 평가 기준금액 300억원의 적정성 등에 대해 추후 검토하기로 한 후, 2016년 제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됨

국내 주요 조세통계

조세 일반

■ 국세, 지방세 징수 현황: 2015~2024년 ■

(단위: 조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조세	288.9	318.1	345.8	377.9	383.9	387.6	456.9	514.5	456.6	450.6
국세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336.5
소득세	60.7	68.5	75.1	84.5	83.6	93.1	114.1	128.7	115.8	117.4
법인세	45.0	52.1	59.2	70.9	72.2	55.5	70.4	103.6	80.4	62.5
부가가치세	54.2	61.8	67.1	70.0	70.8	64.9	71.2	81.6	73.8	82.2
개별소비세	8.0	8.9	9.9	10.5	9.7	9.2	9.4	9.3	8.8	8.7
교통·에너지·환경세	14.1	15.3	15.6	15.3	14.6	13.9	16.6	11.1	10.8	11.4
상속·증여세	5.0	5.4	6.8	7.4	8.3	10.4	15.0	14.6	14.6	15.3
종합부동산세	1.4	1.3	1.7	1.9	2.7	3.6	6.1	6.8	4.6	4.2
관세	8.5	8.0	8.5	8.8	7.9	7.1	8.2	10.3	7.3	7.0
증권거래세	4.7	4.5	4.5	6.2	4.5	8.8	10.3	6.3	6.1	4.8
인지세	1.0	0.9	0.9	0.9	0.8	1.0	1.0	0.8	0.8	0.8
주세	3.2	3.2	3.0	3.3	3.5	3.0	2.7	3.8	3.6	3.3
교육세	4.9	4.9	5.0	5.1	5.1	4.7	5.1	4.6	5.2	5.4
농어촌특별세	3.8	3.6	3.8	4.4	3.9	6.3	8.9	7.0	6.6	7.0
기타	3.4	4.1	4.4	4.4	5.9	4.2	5.1	7.3	5.7	6.5
지방세¹⁾	71.0	75.5	80.4	84.3	90.5	102.0	112.8	118.6	112.5	114.1
취득세	20.8	21.7	23.5	23.8	23.9	29.5	33.7	27.7	24.3	26.0
재산세	9.3	9.9	10.7	11.5	12.7	13.8	15.0	16.3	14.9	15.1
지방소득세	12.8	13.1	14.4	16.7	17.4	16.9	20.0	24.3	22.9	20.0
지방소비세	6.0	6.4	7.3	7.5	11.3	16.6	17.8	23.9	24.7	25.9
자동차세	7.1	7.6	7.8	7.9	7.7	8.1	8.4	7.3	7.3	7.5
담배소비세	3.0	3.7	3.6	3.5	3.4	3.6	3.6	3.6	3.6	3.5
등록면허세	1.8	1.7	1.6	1.7	1.8	2.1	2.2	1.9	2.0	2.2
레저세	1.1	1.1	1.1	1.0	1.0	0.2	0.1	0.8	0.8	0.9
지역자원시설세	1.4	1.4	1.5	1.6	1.7	1.8	1.8	1.9	1.8	1.9
지방교육세	5.8	6.3	6.4	6.5	6.7	7.1	7.6	7.5	7.0	7.2
주민세	1.5	1.8	1.9	2.0	2.1	2.1	2.3	2.5	2.7	2.8
기타	0.4	0.9	0.7	0.5	0.7	0.3	0.4	0.7	0.4	1.3

주: 1) 2024년 지방세 수입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로, 추후 달라질 수 있음
 자료: 열린재정, 연도별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총 조세 대비 국세·지방세 비율: 2015~2024년 ■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조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세	75.4	76.3	76.7	77.7	76.4	73.7	75.3	77.0	75.4	74.7
지방세	24.6	23.7	23.3	22.3	23.6	26.3	24.7	23.0	24.6	25.3

주: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세 수입 잠정치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추후 달라질 수 있음

■ 세목별 국세 대비 비중: 2015~2024년 ■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소득세	27.9	28.2	28.3	28.8	28.5	32.6	33.2	32.5	33.7	34.9
법인세	20.7	21.5	22.3	24.2	24.6	19.4	20.5	26.2	23.4	18.6
부가가치세	24.9	25.5	25.3	23.8	24.1	22.7	20.7	20.6	21.4	24.4
개별소비세	3.7	3.7	3.7	3.6	3.3	3.2	2.7	2.4	2.6	2.6
교통·에너지·환경세	6.5	6.3	5.9	5.2	5.0	4.9	4.8	2.8	3.2	3.4
상속·증여세	2.3	2.2	2.6	2.5	2.8	3.6	4.4	3.7	4.3	4.5
종합부동산세	0.6	0.5	0.6	0.6	0.9	1.3	1.8	1.7	1.3	1.2
관세	3.9	3.3	3.2	3.0	2.7	2.5	2.4	2.6	2.1	2.1
증권거래세	2.1	1.8	1.7	2.1	1.5	3.1	3.0	1.6	1.8	1.4
인지세	0.4	0.4	0.3	0.3	0.3	0.3	0.3	0.2	0.2	0.3
주세	1.5	1.3	1.1	1.1	1.2	1.1	0.8	1.0	1.0	1.0
교육세	2.2	2.0	1.9	1.7	1.7	1.6	1.5	1.2	1.5	1.6
농어촌특별세	1.8	1.5	1.4	1.5	1.3	2.2	2.6	1.8	1.9	2.1
과년도수입	1.6	1.7	1.7	1.5	2.0	1.5	1.5	1.8	1.7	1.9

■ 세목별 지방세 대비 비중: 2015~2024년 ■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방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취득세	29.3	28.7	29.2	28.2	26.4	28.9	29.9	23.4	21.6	22.8
재산세	13.1	13.1	13.3	13.7	14.0	13.5	13.3	13.7	13.2	13.2
지방소득세	18.0	17.3	18.0	19.8	19.3	16.6	17.7	20.5	20.4	17.5
지방소비세	8.5	8.5	9.0	8.9	12.5	16.2	15.8	20.2	21.9	22.7
자동차세	10.0	10.0	9.7	9.4	8.5	8.0	7.4	6.2	6.5	6.5
담배소비세	4.3	5.0	4.5	4.1	3.7	3.5	3.2	3.1	3.2	3.1
등록면허세	2.6	2.3	2.0	2.0	2.0	2.0	1.9	1.6	1.8	1.9
레저세	1.5	1.4	1.3	1.2	1.1	0.2	0.1	0.7	0.8	0.8
지역자원시설세	1.9	1.9	1.9	1.9	1.9	1.7	1.6	1.6	1.6	1.7
지방교육세	8.2	8.3	8.0	7.8	7.4	7.0	6.7	6.3	6.2	6.3
주민세	2.1	2.3	2.3	2.4	2.4	2.1	2.0	2.1	2.4	2.5
과년도수입	0.6	1.1	0.9	0.6	0.8	0.3	0.4	0.6	0.4	1.1

주: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세 수입 잠정치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추후 달라질 수 있음

소득세

■ 소득세 세목별 징수액 추이 ■

(단위: 조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소득세	60.7	68.5	75.1	84.5	83.6	93.1	114.1	128.7	115.8	117.4
신고분	24.6	28.0	31.2	35.5	32.9	39.7	52.7	56.2	39.0	36.2
- 종합소득세	12.8	14.3	16.0	17.5	16.8	16.1	16.0	23.9	21.4	19.5
- 양도소득세	11.9	13.7	15.1	18.0	16.1	23.7	36.7	32.2	17.6	16.7
원천분	36.1	40.5	43.9	49.0	50.7	53.4	61.4	72.6	76.8	81.2
- 이자소득세	2.5	2.1	2.1	2.2	2.6	2.6	2.2	2.6	5.2	7.2
- 배당소득세	2.0	2.0	2.4	2.8	3.0	3.2	4.6	4.2	4.1	4.3
- 사업소득세	2.1	2.4	2.6	2.9	3.2	3.3	3.7	4.1	4.4	4.7
- 근로소득세	27.1	31.0	34.0	38.0	38.5	40.9	47.2	57.4	59.1	61.0
- 기타소득세	1.2	1.3	1.5	1.7	2.0	1.8	1.9	2.3	2.4	2.4
- 퇴직소득세	1.1	1.6	1.2	1.3	1.3	1.4	1.4	1.6	1.2	1.1
- 연금소득세	0.0	0.1	0.1	0.1	0.2	0.2	0.3	0.4	0.5	0.6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소득세 실효세율 추이: 귀속연도 기준 ■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종합소득세	17.4	17.5	17.5	17.7	17.8	17.7	17.7	17.8	17.4	16.3
근로소득세	9.1	9.4	9.6	10.0	10.2	10.3	10.8	11.6	11.9	11.4

주: 실효세율(=결정세액/과세표준)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소득세 신고인원 추이: 귀속연도 기준 ■

(단위: 천명,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5,053	5,483	5,875	6,394	6,911	7,470	7,851	9,339	10,275	11,481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인원(A)	16,687	17,333	17,740	18,006	18,578	19,167	19,495	19,959	20,535	20,852
근로소득세 면세 인원(B)	8,024	8,104	7,742	7,391	7,219	7,055	7,255	7,040	6,902	6,888
면세인원 비중(B/A)	48.1	46.8	43.6	41.0	38.9	36.8	37.2	35.3	33.6	33.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법인세

■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신고연도 기준 ■

(단위 : %)

	일반적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지방세 미포함)		외국납부세액 포함		외국납부세액·지방세 포함	
	소득금액기준	과세표준기준	소득금액기준	과세표준기준	소득금액기준	과세표준기준
2014	14.2	16.0	15.3	17.2	16.7	18.8
2015	14.5	16.1	15.6	17.3	17.4	19.3
2016	14.4	16.6	15.4	17.8	16.8	19.5
2017	15.6	17.2	16.3	18.1	17.9	19.9
2018	16.0	17.6	16.7	18.4	18.3	20.1
2019	17.5	19.1	18.1	19.7	19.8	21.6
2020	15.8	17.5	16.9	18.8	18.5	20.5
2021	16.1	18.1	16.7	18.8	18.3	20.6
2022	16.4	18.5	17.4	19.7	19.1	21.5
2023	15.9	17.9	16.9	18.9	18.5	20.7

주: 신고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법인세 신고법인 수 추이: 신고연도 기준 ■

(단위 : 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법인	101,021	112,369	127,433	134,225	101,934	83,496	75,694	73,197	72,787	66,224
- 중견기업	2,011	3,014	2,911	3,194	3,775	4,205	4,519	4,975	5,469	6,139
- 상호출자제한기업	1,764	1,689	1,686	1,158	1,325	1,349	1,466	1,546	1,869	2,200
- 그 외 기업	97,246	107,666	122,836	129,873	96,834	77,942	69,709	66,676	65,449	57,885
중소기업 법인	449,451	479,325	517,628	561,220	638,281	703,942	762,314	833,128	909,669	964,736
합 계	550,472	591,694	645,061	695,445	740,215	787,438	838,008	906,325	982,456	1,030,96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수 및 국내분과 수입분의 비중 추이: 2015~ 2024년 ■

(단위 : 조원, %)

연도	부가가치세수			전체 부가가치세 중 비중	
	전체	국내분	수입분	국내분	수입분
2015	54.2	17.0	37.2	31.4	68.6
2016	61.8	27.1	34.7	43.8	56.2
2017	67.1	26.4	40.6	39.4	60.6
2018	70.0	25.3	44.7	36.1	63.9
2019	70.8	28.3	42.5	39.9	60.1
2020	64.9	28.6	36.3	44.0	56.0
2021	71.2	25.4	45.8	35.6	64.4
2022	81.6	20.5	61.1	25.2	74.8
2023	73.8	21.2	52.6	28.7	71.3
2024	82.2	30.1	52.1	36.6	63.4

주: 징수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 수 및 비중: 2014~ 2023년 ■

(단위 : 만명, %)

연도	법인	개인				
		전체 (a + b)	일반과세 (a)	간이과세 (b)	납부면제	그 외 간이과세
2014	65	497 (100)	330 (66.4)	167 (33.6)	126 (25.4)	41 (8.3)
2015	71	513 (100)	347 (67.7)	166 (32.3)	116 (22.7)	50 (9.7)
2016	75	533 (100)	368 (69.0)	165 (31.0)	121 (22.7)	44 (8.3)
2017	80	555 (100)	390 (70.3)	165 (29.7)	120 (21.6)	45 (8.1)
2018	85	563 (100)	407 (72.2)	156 (27.8)	124 (22.0)	32 (5.8)
2019	90	585 (100)	425 (72.6)	160 (27.4)	127 (21.6)	34 (5.8)
2020	96	615 (100)	446 (72.6)	168 (27.4)	153 (24.9)	15 (2.5)
2021	102	644 (100)	456 (70.9)	188 (29.1)	169 (26.2)	19 (2.9)
2022	108	679 (100)	479 (70.6)	200 (29.4)	170 (25.1)	30 (4.4)
2023	111	691 (100)	492 (71.2)	199 (28.8)	167 (24.2)	32 (4.7)

주: 1. ()안의 값은 개인납세자의 비중

2. 일반과세 신고 인원은 2기 과세기간의 인원수를 집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주요 조세통계

소득세

OECD 국가의 명목GDP 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2014~2023년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호주	11.3	11.6	11.3	11.5	11.8	11.6	11.3	11.4	11.9	-	-
오스트리아	10.0	10.4	9.0	9.1	9.4	9.6	9.3	9.7	9.6	9.4	-0.7
벨기에	12.9	12.4	12.0	11.9	11.8	11.3	11.7	11.3	11.9	11.8	-1.1
캐나다	11.4	12.1	11.9	11.8	12.0	12.0	12.9	12.6	12.3	12.8	1.4
칠레	1.4	2.0	1.8	2.0	1.4	1.5	2.0	2.4	2.5	1.9	0.5
콜롬비아	1.1	1.1	1.1	1.1	1.2	1.3	1.4	1.3	1.4	1.6	0.5
코스타리카	1.2	1.3	1.3	1.3	1.3	1.4	1.5	1.5	1.5	1.4	0.2
체코	3.5	3.5	3.8	3.9	4.2	4.3	4.6	3.2	3.0	3.3	-0.2
덴마크	26.3	25.3	24.1	24.1	24.2	24.6	25.5	24.9	23.4	24.8	-1.5
에스토니아	5.6	5.6	5.7	5.5	5.3	5.4	5.9	6.8	6.3	6.3	0.7
핀란드	13.3	13.2	12.9	12.5	12.2	12.3	12.5	12.9	12.9	12.7	-0.6
프랑스	8.7	8.7	8.6	8.6	9.5	9.4	9.5	9.3	9.7	9.4	0.7
독일	9.6	9.9	10.0	10.2	10.5	10.6	10.2	10.5	10.7	10.1	0.4
그리스	6.0	5.8	6.0	6.3	6.4	6.0	6.3	6.0	5.6	-	-
헝가리	5.2	5.2	5.2	5.3	5.4	5.2	5.3	4.1	5.3	5.3	0.1
아이슬란드	13.0	12.9	13.4	14.2	14.5	14.4	15.6	14.4	14.0	13.9	0.9
아일랜드	9.2	7.2	7.4	6.9	6.8	6.8	6.4	6.5	6.3	6.8	-2.3
이스라엘	5.6	6.0	6.1	6.6	6.3	6.2	6.4	7.1	7.2	6.4	0.8
이탈리아	11.2	11.2	10.8	10.8	10.7	10.9	11.4	11.0	10.9	11.5	0.3
일본	5.7	5.7	5.6	5.8	6.0	5.9	6.2	6.4	6.5	6.0	0.3
한국	3.8	4.1	4.3	4.5	4.9	4.8	5.2	6.1	6.6	5.7	1.9
라트비아	5.9	5.9	6.3	6.6	6.0	6.5	6.0	6.0	5.9	6.3	0.4
리투아니아	3.6	3.9	4.0	4.0	4.2	7.2	7.3	7.5	7.6	7.9	4.3
룩셈부르크	8.4	8.7	8.9	8.7	9.3	9.5	9.7	10.1	10.4	11.6	3.2
멕시코	2.8	3.2	3.3	3.3	3.3	3.3	3.6	3.5	3.6	3.7	0.9
네덜란드	6.9	7.5	7.0	8.2	7.8	8.3	9.0	8.3	7.7	8.9	2.0
뉴질랜드	11.7	11.7	11.6	11.8	12.1	12.5	13.0	14.1	13.8	14.3	2.6
노르웨이	9.9	10.7	10.8	10.3	10.0	10.4	11.3	10.6	8.1	9.7	-0.2
폴란드	4.6	4.7	4.9	5.0	5.3	5.3	5.3	5.3	4.5	4.3	-0.3
포르투갈	7.7	7.3	6.8	6.4	6.5	6.3	7.0	6.9	7.0	7.0	-0.7
슬로바키아	3.0	3.1	3.3	3.4	3.6	3.7	3.7	3.8	3.8	3.8	0.8
슬로베니아	5.1	5.1	5.2	5.1	5.4	5.2	5.2	5.4	5.2	5.1	0.1
스페인	7.7	7.3	7.2	7.4	7.7	7.9	8.7	8.6	9.1	9.1	1.4
스웨덴	12.3	12.6	13.3	13.4	13.0	12.3	12.3	12.4	11.9	11.1	-1.2
스위스	8.1	8.4	8.3	8.4	8.3	8.5	9.0	8.5	8.3	8.4	0.3
튀르키예	3.6	3.6	3.7	3.6	3.7	3.8	3.1	3.0	2.4	2.6	-1.0
영국	8.6	8.8	8.8	8.9	9.0	8.9	9.4	10.0	10.1	10.6	2.0
미국	10.1	10.5	10.4	10.4	10.0	10.2	10.5	11.6	12.1	10.0	0.0
G7 평균	9.3	9.6	9.5	9.5	9.7	9.7	10.0	10.2	10.3	10.1	0.7
OECD 평균	7.8	7.8	7.8	7.9	7.9	8.0	8.3	8.3	8.2	8.2	0.4

주: 1. 한국의 GDP는 구계열 기준(2015년 기준년)으로, 2024년 공표된 신계열(2020년 기준) 수치와 차이 있음

2. 2023년 OECD 평균은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호주와 그리스 제외한 36개국 대상 평균임, 그 외는 38개국 평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 추이: 2014~2023년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호주	41.5	41.6	41.0	40.4	41.2	42.0	40.1	39.0	40.4	-	-
오스트리아	23.5	24.1	21.6	21.7	22.2	22.6	22.2	22.4	22.3	21.9	-1.6
벨기에	28.8	28.2	27.6	27.2	27.0	26.6	27.8	26.8	28.2	27.7	-1.1
캐나다	36.3	36.8	35.8	35.6	35.9	36.3	37.5	36.3	36.4	36.7	0.4
칠레	7.3	9.8	8.8	9.7	6.7	7.2	10.2	10.8	10.5	9.3	2.1
콜롬비아	5.6	5.8	6.0	6.0	6.4	6.8	7.7	6.9	7.0	7.4	1.8
코스타리카	5.5	5.6	5.5	5.7	5.8	6.1	6.8	6.2	6.1	5.7	0.2
체코	10.8	10.7	11.2	11.5	12.2	12.7	13.5	9.4	9.2	9.7	-1.0
덴마크	53.9	54.4	52.7	53.1	54.4	52.2	54.1	52.7	55.8	57.1	3.2
에스토니아	17.6	17.2	17.3	17.3	16.5	16.5	18.1	20.4	19.2	18.7	1.1
핀란드	30.6	30.2	29.6	29.2	28.9	29.0	30.0	29.8	29.9	29.8	-0.8
프랑스	19.1	19.1	19.0	18.7	20.7	20.8	20.9	20.7	21.2	21.5	2.4
독일	25.7	26.0	26.1	26.6	26.7	27.0	26.5	26.3	26.9	26.4	0.8
그리스	16.3	15.6	15.2	16.0	15.9	15.2	16.0	14.9	13.6	-	-
헝가리	13.6	13.5	13.2	14.1	14.7	14.2	14.6	12.1	15.2	15.6	2.0
아이슬란드	34.9	36.7	26.7	38.2	39.8	41.0	43.1	41.4	39.9	38.6	3.7
아일랜드	32.8	32.4	32.3	31.9	31.4	31.6	32.9	32.7	31.3	31.1	-1.7
이스라엘	18.3	19.4	19.7	20.4	20.4	20.6	21.7	22.0	22.0	21.5	3.2
이탈리아	25.8	26.0	25.7	25.8	25.7	25.8	26.8	25.9	25.5	26.9	1.1
일본	18.9	18.9	18.6	18.8	19.1	18.8	18.7	18.9	18.8	-	-
한국	16.3	17.2	17.6	17.9	18.4	17.5	18.8	20.4	20.5	19.8	3.6
라트비아	19.9	19.7	20.4	21.2	19.2	20.9	19.2	19.6	19.2	19.7	-0.2
리투아니아	13.2	13.3	13.4	13.6	14.0	23.9	23.3	23.4	24.0	24.3	11.1
룩셈부르크	23.2	25.0	25.0	23.7	23.7	24.0	25.5	26.5	27.1	28.3	5.1
멕시코	21.5	20.6	20.4	21.4	21.2	20.8	21.0	21.1	21.6	21.1	-0.4
네덜란드	18.7	20.5	18.5	21.6	20.5	21.6	22.9	21.8	20.3	23.1	4.4
뉴질랜드	37.5	37.2	36.8	37.8	37.6	39.7	38.5	40.9	41.6	42.0	4.5
노르웨이	25.6	28.0	27.7	26.7	25.5	26.1	29.3	25.7	18.7	23.3	-2.3
폴란드	14.3	14.4	14.5	14.6	15.1	15.1	14.8	14.6	13.1	12.3	-2.1
포르투갈	22.5	21.3	19.9	18.9	18.7	18.4	19.8	19.7	19.4	19.5	-3.0
슬로바키아	9.4	9.5	10.0	9.9	10.5	10.8	10.8	10.6	10.7	10.6	1.3
슬로베니아	13.6	13.6	14.0	13.7	14.4	14.0	13.9	14.1	13.8	14.0	0.3
스페인	22.7	21.6	21.5	21.8	22.1	22.7	23.7	22.8	24.1	24.4	1.6
스웨덴	28.9	29.4	30.1	30.2	29.5	28.7	29.0	28.9	28.0	26.7	-2.2
스위스	30.9	31.0	31.0	30.2	30.7	30.7	32.1	30.3	31.0	31.0	0.1
튀르키예	14.7	14.6	14.6	14.5	15.4	16.3	13.2	13.2	11.3	11.3	-3.4
영국	27.1	27.6	27.3	27.3	27.3	27.3	28.7	29.1	28.6	30.0	2.9
미국	39.1	40.4	40.3	39.3	40.2	40.7	41.2	43.3	44.0	39.9	0.8
G7 평균	27.4	27.8	27.5	27.4	27.9	28.1	28.6	28.7	28.8	30.2	2.8
OECD 평균	22.8	23.1	22.5	22.9	23.0	23.5	24.1	23.7	23.6	23.6	0.8

주: 1. OECD 평균의 2023년 수치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호주, 그리스, 일본 제외한 35개국 평균임, 그 외는 38개국 평균

2. G7 평균의 2023년 수치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일본 제외한 6개국 평균임,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개수(중앙정부 기준): 2023년

(단위: %, 개)

	중앙정부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중앙정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수
호주	45.0	5
오스트리아	55.0	7
벨기에	50.0	4
캐나다	33.0	5
칠레	40.0	8
콜롬비아	39.0	7
코스타리카	25.0	5
체코	23.0	2
덴마크	27.1	2
에스토니아	20.0	1
핀란드	44.0	5
프랑스	45.0	5
독일	45.0	5
그리스	44.0	5
헝가리	15.0	1
아이슬란드	31.6	3
아일랜드	40.0	2
이스라엘	50.0	7
이탈리아	43.0	4
일본	45.0	7
한국	45.0	8
라트비아	31.0	3
리투아니아	32.0	2
룩셈부르크	42.0	23
멕시코	35.0	11
네덜란드	49.5	3
뉴질랜드	39.0	5
노르웨이	17.5	6
폴란드	32.0	2
포르투갈	48.0	9
슬로바키아	25.0	2
슬로베니아	50.0	5
스페인	24.5	6
스웨덴	20.0	2
스위스	11.5	11
튀르키예	40.0	5
영국	45.0	3
미국	37.0	7
G7 평균	41.9	5.1
OECD 평균	36.4	5.3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추이(중앙정부 기준): 2014~2023년

(단위 : %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호주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0.0
오스트리아	50.0	50.0	55.0	55.0	55.0	55.0	55.0	55.0	55.0	55.0	5.0
벨기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0.0
캐나다	29.0	29.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4.0
칠레	40.0	40.0	40.0	35.5	35.5	35.0	35.0	40.0	40.0	40.0	0.0
콜롬비아	33.0	33.0	33.0	33.0	33.0	39.0	39.0	39.0	39.0	39.0	6.0
코스타리카	15.0	15.0	15.0	15.0	15.0	25.0	25.0	25.0	25.0	25.0	10.0
체코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3.0	23.0	23.0	8.0
덴마크	21.8	23.1	24.1	25.1	26.1	27.2	27.1	27.1	27.1	27.1	5.2
에스토니아	21.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0
핀란드	31.8	31.8	31.8	31.5	31.3	31.3	31.3	31.3	31.3	44.0	12.3
프랑스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0.0
독일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0.0
그리스	42.0	42.0	45.0	45.0	45.0	45.0	44.0	44.0	44.0	44.0	2.0
헝가리	16.0	16.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0
아이슬란드	31.8	31.8	31.8	31.8	31.8	31.8	31.8	31.8	31.8	31.6	-0.2
아일랜드	41.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1.0
이스라엘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0.0
이탈리아	43.0	43.0	43.0	43.0	43.0	43.0	43.0	43.0	43.0	43.0	0.0
일본	40.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5.0
한국	38.0	38.0	38.0	40.0	42.0	42.0	42.0	45.0	45.0	45.0	7.0
라트비아	24.0	23.0	23.0	23.0	23.0	31.4	31.4	32.0	31.0	31.0	7.0
리투아니아	15.0	15.0	15.0	15.0	15.0	27.0	32.0	31.0	32.0	32.0	17.0
룩셈부르크	40.0	40.0	40.0	42.0	42.0	42.0	42.0	38.0	38.0	42.0	2.0
멕시코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0.0
네덜란드	52.0	52.0	52.0	52.0	52.0	51.8	49.5	49.5	49.5	49.5	-2.5
뉴질랜드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9.0	39.0	39.0	6.0
노르웨이	25.0	25.2	24.3	24.1	24.0	24.1	24.7	23.4	26.1	17.5	-7.5
폴란드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0.0
포르투갈	48.0	48.0	48.0	48.0	48.0	48.0	48.0	48.0	48.0	48.0	0.0
슬로바키아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0.0
슬로베니아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45.0	50.0	0.0
스페인	30.5	22.5	22.5	22.5	22.5	22.5	22.5	24.5	24.5	24.5	-6.0
스웨덴	25.0	25.0	25.0	25.0	25.0	25.0	20.0	20.0	20.0	20.0	-5.0
스위스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0.0
튀르키예	35.0	35.0	35.0	35.0	35.0	35.0	40.0	40.0	40.0	40.0	5.0
영국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0.0
미국	39.6	39.6	39.6	39.6	37.0	37.0	37.0	37.0	37.0	37.0	-2.6
G7 평균	40.9	41.7	42.2	42.2	41.9	41.9	41.9	41.9	41.9	41.9	0.9
OECD 평균	34.4	34.3	34.6	34.6	34.6	35.6	35.7	36.1	36.1	35.0	0.5

자료 :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추이(지방세 포함): 2014~2023년

(단위 : %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호주	46.5	49.0	49.0	49.0	47.0	47.0	47.0	47.0	47.0	47.0	0.5
오스트리아	50.0	50.0	55.0	55.0	55.0	55.0	55.0	55.0	55.0	55.0	5.0
벨기에	53.8	53.8	53.3	52.9	52.9	52.9	52.9	52.9	52.9	52.9	-0.9
캐나다	49.5	49.5	53.5	53.5	53.5	53.5	53.5	53.5	53.5	53.5	4.0
칠레	40.0	40.0	40.0	35.0	35.0	35.0	35.0	40.0	40.0	40.0	-0.0
콜롬비아	33.0	33.0	33.0	33.0	33.0	33.0	39.0	33.0	39.0	39.0	6.0
코스타리카	15.0	15.0	15.0	15.0	15.0	17.5	25.0	25.0	25.0	25.0	10.0
체코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3.0	23.0	23.0	8.0
덴마크	55.6	55.8	55.8	55.8	55.9	55.9	55.9	55.9	55.9	55.9	0.3
에스토니아	21.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0
핀란드	51.5	51.6	51.6	51.4	51.1	51.1	51.2	51.3	51.3	51.4	-0.1
프랑스	54.5	54.5	54.5	54.5	55.4	55.4	55.4	55.4	55.4	55.4	0.9
독일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0.0
그리스	46.0	50.0	55.0	55.0	55.0	55.0	54.0	44.0	44.0	44.0	-2.0
헝가리	16.0	16.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0
아이슬란드	46.2	46.2	46.2	46.2	46.2	46.2	46.2	46.3	46.3	46.3	0.0
아일랜드	48.0	48.0	48.0	48.0	48.0	48.0	48.0	48.0	48.0	48.0	0.0
이스라엘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0.0
이탈리아	47.8	48.8	48.8	47.2	47.2	47.2	47.2	47.2	47.2	47.2	-0.6
일본	50.8	55.9	55.9	55.9	55.9	55.9	55.9	55.9	55.9	55.9	5.1
한국	41.8	41.8	41.8	44.0	46.2	46.2	46.2	49.5	49.5	49.5	7.7
라트비아	24.0	23.0	23.0	23.0	31.4	31.4	31.4	31.0	31.2	31.2	7.2
리투아니아	15.0	15.0	15.0	15.0	15.0	27.0	32.0	32.0	32.0	32.0	17.0
룩셈부르크	43.6	43.6	43.6	45.8	45.8	45.8	45.8	45.8	45.8	45.8	2.2
멕시코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0.0
네덜란드	52.0	52.0	52.0	52.0	52.0	51.8	49.5	49.5	49.5	49.5	-2.5
뉴질랜드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9.0	39.0	39.0	6.0
노르웨이	39.0	39.0	38.7	38.5	38.4	38.2	38.2	38.2	39.4	39.5	0.5
폴란드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0.0
포르투갈	56.5	56.5	56.5	56.2	53.0	53.0	53.0	53.0	53.0	53.0	-3.5
슬로바키아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0.0
슬로베니아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45.0	50.0	0.0
스페인	52.0	45.0	45.0	43.5	43.5	43.5	43.5	45.5	45.0	45.0	-7.0
스웨덴	56.9	57.0	57.1	57.1	57.1	57.2	52.3	52.3	52.2	52.2	-4.6
스위스	41.7	41.7	41.7	41.7	41.7	41.7	41.7	41.7	41.5	41.5	-0.1
튀르키예	35.8	35.8	35.8	35.8	35.8	35.8	40.8	40.8	40.8	40.8	5.0
영국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0.0
미국	46.3	46.3	46.3	46.3	43.7	43.7	43.7	43.7	43.7	43.5	-2.8
G7 평균	48.8	49.6	50.2	50.0	49.7	49.7	49.7	49.7	49.7	49.7	0.9
OECD 평균	41.1	41.2	41.5	41.4	41.5	41.9	42.3	42.5	42.5	42.7	1.6

자료 :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의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평균임금 67%, 무자녀 단독가구 기준): 2014~2023년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호주	17.73	18.52	18.80	19.07	19.55	18.09	18.70	17.34	17.24	20.21	2.48
오스트리아	10.73	11.12	8.54	8.88	9.25	9.69	8.84	9.35	9.67	9.35	-1.38
벨기에	21.99	21.46	19.50	19.40	18.29	17.49	17.40	17.69	18.74	18.35	-3.64
캐나다	13.64	13.65	13.47	13.64	13.67	13.49	14.17	14.46	14.60	14.25	0.61
칠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콜롬비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코스타리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체코	8.20	8.55	9.02	9.69	10.42	11.04	11.32	5.69	5.40	6.07	-2.13
덴마크	33.60	33.76	33.74	33.65	33.24	33.32	33.28	33.37	33.36	33.42	-0.19
에스토니아	16.19	15.45	15.34	15.38	8.30	9.03	9.28	9.99	10.82	8.90	-7.29
핀란드	15.83	15.84	14.98	13.54	13.15	13.01	13.33	13.25	13.23	13.21	-2.62
프랑스	12.62	11.76	10.92	10.85	12.65	12.84	11.85	12.18	12.14	12.12	-0.50
독일	14.15	14.23	14.11	14.02	14.12	14.21	13.62	12.91	13.49	12.23	-1.92
그리스	3.50	3.02	4.09	3.96	4.25	4.50	2.13	3.62	5.05	5.98	2.48
헝가리	16.00	16.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00
아이슬란드	24.15	24.82	25.02	24.59	24.68	24.58	24.34	23.36	23.35	22.74	-1.41
아일랜드	13.30	12.82	12.12	11.85	12.07	13.33	13.93	15.06	14.70	13.84	0.54
이스라엘	4.67	5.01	5.33	5.13	5.14	5.47	5.71	6.29	6.24	6.30	1.63
이탈리아	13.78	12.33	12.37	12.42	12.58	12.82	12.74	12.06	11.46	14.26	0.48
일본	6.13	6.15	6.16	6.16	6.18	6.19	6.13	6.13	6.16	6.17	0.04
한국	1.41	1.54	1.73	2.06	2.29	2.54	2.60	3.08	3.61	3.48	2.07
라트비아	17.85	17.36	16.83	16.90	14.19	14.05	12.88	12.77	11.66	12.23	-5.62
리투아니아	10.94	11.38	10.95	9.35	8.54	14.11	12.84	13.65	13.48	13.44	2.49
룩셈부르크	9.72	10.00	10.19	8.08	8.52	8.90	10.01	10.14	10.05	12.07	2.35
멕시코	1.76	2.10	2.42	3.41	3.32	4.29	7.35	7.36	7.71	7.22	5.46
네덜란드	5.18	7.21	6.27	6.69	6.78	5.62	5.43	5.49	6.43	6.27	1.09
뉴질랜드	13.43	13.53	13.65	13.74	13.85	13.96	14.06	14.16	15.43	16.29	2.86
노르웨이	17.04	16.85	16.27	15.86	15.71	15.58	15.86	16.00	15.96	15.69	-1.35
폴란드	6.17	6.27	6.35	6.52	6.68	6.44	5.67	5.68	2.59	3.46	-2.72
포르투갈	8.34	10.17	10.26	10.55	10.64	11.21	11.37	11.93	12.53	12.69	4.35
슬로바키아	6.40	6.63	6.92	7.27	7.73	7.97	7.12	7.59	7.97	8.16	1.76
슬로베니아	6.58	6.63	6.71	8.28	8.06	8.57	8.49	8.71	7.92	8.08	1.49
스페인	12.17	10.32	10.30	10.25	10.41	10.37	8.84	10.49	10.69	10.10	-2.07
스웨덴	14.83	14.99	15.26	15.37	15.42	14.75	14.81	13.84	13.49	13.77	-1.05
스위스	7.87	7.84	8.08	8.10	8.19	8.29	8.40	8.64	8.88	8.91	1.04
튀르키예	9.54	9.71	9.32	9.65	9.94	10.03	10.09	10.18	6.74	7.12	-2.42
영국	11.50	11.21	11.15	11.09	11.07	10.90	10.67	11.16	11.63	12.21	0.71
미국	15.22	15.23	15.33	15.47	13.72	13.74	13.88	14.02	14.08	13.76	-1.46
G7 평균	10.88	10.57	10.44	10.46	10.50	10.52	10.38	10.37	10.45	10.63	-0.25
OECD 평균	11.11	11.14	10.96	10.94	10.73	10.93	10.85	10.86	10.83	10.98	-0.13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의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평균임금 100%, 무자녀 단독가구 기준): 2014~2023년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호주	23.36	24.07	24.31	24.36	24.65	23.64	24.08	23.17	23.16	24.93	1.57
오스트리아	16.62	16.98	14.13	14.45	14.81	15.23	14.73	15.20	15.34	14.96	-1.67
벨기에	28.36	28.02	26.76	26.61	25.92	25.39	25.33	25.50	26.25	25.95	-2.41
캐나다	19.14	19.17	18.46	18.66	18.72	18.49	19.15	19.34	19.41	19.18	0.04
칠레	0.00	0.00	0.00	0.00	0.01	0.04	0.03	0.00	0.00	0.15	0.15
콜롬비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코스타리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체코	12.12	12.36	12.68	13.12	13.61	14.02	14.21	8.76	8.57	9.01	-3.11
덴마크	35.96	36.13	36.11	36.03	35.92	35.99	35.95	36.02	35.97	35.99	0.03
에스토니아	17.64	16.85	16.77	16.80	13.00	14.14	14.53	15.65	16.95	17.25	-0.38
핀란드	22.56	22.59	22.00	20.92	20.57	20.53	20.81	20.78	20.84	21.06	-1.50
프랑스	14.57	14.81	14.73	14.64	16.51	16.70	15.76	16.32	16.21	16.22	1.65
독일	19.12	19.21	19.06	18.96	19.05	19.14	18.52	17.56	18.22	16.97	-2.15
그리스	8.63	8.25	9.30	9.18	9.47	9.67	8.43	9.20	10.20	10.90	2.27
헝가리	16.00	16.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00
아이슬란드	28.77	29.22	28.91	28.18	28.24	28.17	28.09	27.67	27.67	27.26	-1.51
아일랜드	22.94	22.04	21.42	21.33	21.62	23.61	24.02	24.78	24.53	23.96	1.02
이스라엘	9.13	9.57	9.98	9.72	9.73	10.10	10.39	10.81	10.78	10.82	1.69
이탈리아	21.54	21.60	21.62	21.65	21.73	21.97	20.65	18.70	18.97	22.08	0.54
일본	7.72	7.81	7.85	7.85	7.91	7.92	7.78	7.78	7.87	7.91	0.19
한국	4.70	4.94	5.29	5.52	5.88	6.10	6.13	6.52	6.90	6.84	2.15
라트비아	19.05	18.43	18.37	18.71	17.74	17.58	17.33	15.99	15.88	16.64	-2.41
리투아니아	13.57	13.86	13.97	13.69	13.15	17.04	16.46	16.93	17.76	18.31	4.75
룩셈부르크	17.70	18.04	18.22	16.71	17.27	17.66	18.81	19.11	19.32	20.90	3.20
멕시코	8.78	9.08	9.39	9.76	8.99	9.57	9.87	9.87	10.84	9.58	0.80
네덜란드	15.25	17.06	16.57	17.21	17.53	16.25	16.00	15.94	16.52	16.36	1.11
뉴질랜드	17.31	17.63	18.00	18.29	18.61	18.95	19.26	19.42	20.14	21.05	3.74
노르웨이	20.50	20.25	19.71	19.34	19.20	19.09	19.27	19.41	19.89	20.20	-0.31
폴란드	7.06	7.12	7.18	7.28	7.39	7.16	6.43	6.44	5.15	5.73	-1.32
포르투갈	16.15	17.37	16.61	16.47	15.86	16.44	16.60	17.18	17.38	17.55	1.41
슬로바키아	9.72	9.87	10.06	10.30	10.61	10.77	10.20	10.52	10.77	10.90	1.18
슬로베니아	11.15	11.23	11.36	11.62	11.97	12.28	11.89	12.35	11.60	12.10	0.95
스페인	16.64	14.92	14.90	14.75	14.91	14.94	14.38	15.06	15.20	15.61	-1.03
스웨덴	17.38	17.58	17.90	18.00	18.08	17.56	17.63	17.41	17.24	16.90	-0.47
스위스	10.74	10.70	10.99	11.02	11.15	11.30	11.43	11.76	12.14	12.17	1.44
튀르키예	12.25	12.37	12.43	13.20	13.62	14.00	13.87	14.36	12.34	12.60	0.34
영국	14.31	14.11	14.07	14.03	14.02	13.90	13.75	14.08	14.40	14.78	0.48
미국	17.95	17.98	18.17	18.45	16.14	16.23	16.63	17.01	17.15	16.60	-1.35
G7 평균	16.34	16.38	16.28	16.32	16.30	16.34	16.03	15.83	16.03	16.25	-0.09
OECD 평균	15.12	15.19	15.06	15.05	14.96	15.17	15.09	15.04	15.17	15.38	0.26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의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평균임금 167%, 무자녀 단독가구 기준): 2014~2023년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호주	29.41	30.06	30.20	30.11	30.37	30.47	30.76	29.37	29.66	30.02	0.61
오스트리아	23.17	23.38	21.21	21.38	21.56	21.87	21.48	21.79	22.24	22.20	-0.97
벨기에	35.18	35.10	34.49	34.27	33.94	33.53	33.49	33.61	34.17	33.96	-1.22
캐나다	26.74	26.76	25.79	26.07	26.14	25.81	27.06	27.49	27.72	27.32	0.58
칠레	1.11	1.19	1.25	1.30	1.31	1.33	1.32	1.30	1.25	1.39	0.28
콜롬비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코스타리카	1.40	1.27	1.76	1.95	1.94	2.06	1.90	2.27	2.21	1.82	0.42
체코	15.32	15.47	15.65	15.92	16.22	16.45	16.56	11.27	11.15	11.42	-3.91
덴마크	41.95	42.07	41.95	41.78	41.54	41.57	41.37	41.43	41.66	41.77	-0.17
에스토니아	18.82	17.98	17.94	17.95	19.68	19.68	19.68	19.68	19.68	19.68	0.86
핀란드	29.70	29.73	29.39	28.45	28.08	28.09	28.41	28.37	28.44	28.79	-0.91
프랑스	20.83	20.96	20.90	20.84	22.71	22.79	22.22	22.56	22.53	22.51	1.68
독일	27.64	27.76	27.60	27.45	27.56	27.59	26.74	26.10	27.52	26.47	-1.17
그리스	18.38	16.15	16.24	16.10	16.40	16.66	15.77	15.39	16.71	17.68	-0.70
헝가리	16.00	16.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00
아이슬란드	33.67	33.95	33.94	33.46	33.21	33.18	33.37	33.22	33.22	32.71	-0.96
아일랜드	32.99	32.10	31.24	31.06	31.26	32.72	33.02	33.57	33.49	33.25	0.26
이스라엘	16.43	16.96	17.49	17.32	17.31	17.98	18.48	19.22	19.16	19.23	2.81
이탈리아	29.18	29.87	29.89	29.63	29.73	29.87	30.16	30.09	29.08	29.59	0.41
일본	12.40	12.65	12.77	12.78	12.92	12.96	12.61	12.50	12.75	12.95	0.55
한국	8.63	8.93	9.51	10.14	10.80	11.11	11.13	11.71	12.28	12.06	3.43
라트비아	20.03	19.29	19.36	19.68	17.80	17.99	18.17	18.55	18.72	18.96	-1.06
리투아니아	15.00	15.00	15.00	15.00	15.00	19.43	19.40	19.61	20.00	20.00	5.00
룩셈부르크	25.50	25.70	25.80	25.23	25.54	25.75	26.38	26.56	27.04	27.72	2.22
멕시코	13.31	13.62	13.89	14.22	13.54	14.05	14.31	14.31	15.03	14.09	0.78
네덜란드	28.45	28.91	27.56	28.03	28.27	27.18	26.62	26.72	27.24	27.11	-1.34
뉴질랜드	23.12	23.37	23.65	23.87	24.13	24.39	24.63	24.76	25.30	25.85	2.73
노르웨이	26.86	26.70	26.20	25.82	25.71	25.68	25.72	25.96	26.59	27.05	0.19
폴란드	7.77	7.81	7.85	7.91	7.97	7.75	8.17	8.25	7.24	7.66	-0.11
포르투갈	23.92	24.68	23.41	23.07	22.49	23.15	23.33	23.99	24.56	24.60	0.68
슬로바키아	12.42	12.51	12.63	12.77	12.96	13.05	12.71	13.08	13.40	13.57	1.14
슬로베니아	15.62	15.75	15.31	15.57	15.98	16.34	15.25	15.61	15.16	15.99	0.37
스페인	22.48	21.11	20.88	20.48	20.67	20.78	20.13	20.91	21.07	21.47	-1.01
스웨덴	30.43	30.44	31.53	31.69	31.65	30.43	29.86	29.81	29.76	28.47	-1.96
스위스	15.68	15.63	15.95	15.97	16.10	16.25	16.37	16.72	17.20	17.22	1.54
튀르키예	16.29	16.58	16.96	17.42	17.66	17.90	17.82	18.11	16.90	17.05	0.76
영국	22.31	22.36	22.57	22.43	22.41	21.74	21.28	22.28	23.22	24.38	2.07
미국	23.45	23.47	23.58	23.75	21.16	21.21	21.48	21.78	21.88	21.41	-2.04
G7 평균	23.22	23.40	23.30	23.28	23.23	23.14	23.08	23.26	23.53	23.52	0.30
OECD 평균	20.57	20.56	20.43	20.42	20.44	20.63	20.58	20.60	20.79	20.85	0.28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의 소득세 실효세율(평균임금 100%, 두자녀 홀벌이가구 기준): 2014~2023년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호주	23.36	24.07	24.31	24.36	24.65	23.64	24.08	23.17	23.16	24.93	1.57
오스트리아	14.62	15.03	11.89	12.20	12.61	7.65	7.25	7.92	6.55	6.72	-7.90
벨기에	17.06	16.66	15.11	15.04	14.55	13.42	13.32	13.66	14.90	14.44	-2.62
캐나다	12.63	13.70	15.16	15.41	15.48	15.20	15.94	16.15	16.24	15.98	3.35
칠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콜롬비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코스타리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체코	-4.46	-4.48	-6.79	-6.15	-5.10	-3.71	-3.28	-8.41	-7.81	-6.45	-1.99
덴마크	32.01	32.15	32.10	31.99	29.15	29.36	29.39	29.61	32.29	32.34	0.34
에스토니아	11.76	11.18	11.23	11.45	7.90	9.37	9.88	11.31	12.98	13.54	1.79
핀란드	22.56	22.51	21.93	20.86	20.57	20.53	20.81	20.78	20.84	21.06	-1.50
프랑스	7.86	7.86	7.86	7.86	9.53	9.53	9.53	9.53	9.53	9.53	1.67
독일	0.90	1.01	1.00	0.97	1.25	1.35	-0.79	-0.55	1.06	-0.18	-1.09
그리스	10.43	9.21	9.83	9.71	10.00	10.20	9.09	9.69	10.88	11.78	1.35
헝가리	8.14	8.44	6.03	5.35	4.80	4.55	5.48	6.16	7.35	8.29	0.15
아이슬란드	20.33	21.25	21.40	20.70	20.82	20.69	21.20	21.49	21.48	20.79	0.47
아일랜드	12.91	12.30	11.47	11.33	11.78	14.25	14.66	15.77	15.66	15.15	2.24
이스라엘	9.13	9.57	9.98	9.72	9.73	10.10	10.36	10.81	7.65	7.71	-1.43
이탈리아	14.57	14.69	14.73	14.77	14.93	15.28	14.14	12.17	16.76	19.96	5.39
일본	6.28	6.40	6.46	6.46	6.53	6.55	6.37	6.37	6.48	6.55	0.27
한국	1.91	2.24	2.70	3.00	3.49	4.13	4.19	4.68	5.16	5.18	3.26
라트비아	8.36	8.93	8.85	9.91	9.66	8.96	8.55	8.13	8.61	10.17	1.81
리투아니아	11.00	11.36	9.36	6.64	13.15	17.04	16.46	16.93	17.76	18.31	7.31
룩셈부르크	6.18	6.40	6.52	5.59	5.92	6.16	6.95	7.15	7.18	8.60	2.42
멕시코	8.78	9.08	9.39	9.76	8.99	9.57	9.87	9.87	10.84	9.58	0.80
네덜란드	14.88	16.52	16.09	16.78	17.17	15.95	15.74	15.77	16.44	16.36	1.48
뉴질랜드	17.31	17.63	18.00	18.29	18.61	18.95	19.26	19.42	20.14	21.05	3.74
노르웨이	19.34	19.09	18.62	18.29	19.20	19.09	19.27	19.41	19.89	20.20	0.86
폴란드	0.81	1.09	1.35	1.83	6.38	2.43	2.31	2.34	-2.51	-1.06	-1.87
포르투갈	6.12	7.33	4.29	4.52	5.07	5.89	6.12	6.94	7.81	8.21	2.08
슬로바키아	-1.80	-1.38	-0.87	-0.23	0.61	1.03	0.42	-0.12	-3.34	-14.14	-12.34
슬로베니아	2.81	2.89	3.02	3.27	3.61	3.92	4.09	4.55	4.17	4.47	1.65
스페인	9.08	7.59	7.57	7.56	7.78	7.96	7.20	8.14	8.73	9.45	0.36
스웨덴	17.38	17.58	17.90	18.00	18.08	17.56	17.63	17.41	17.24	16.90	-0.47
스위스	4.29	4.26	4.47	4.49	4.58	4.71	4.84	5.15	5.54	5.60	1.31
튀르키예	10.50	10.64	10.45	11.27	11.75	12.14	12.05	12.51	12.34	12.60	2.10
영국	14.31	13.52	13.48	13.43	13.42	13.29	13.12	13.49	13.83	14.26	-0.05
미국	5.95	6.05	6.28	6.65	4.11	4.30	4.81	2.08	5.65	5.52	-0.43
G7 평균	8.93	9.03	9.28	9.36	9.32	9.36	9.02	8.46	9.94	10.23	1.30
OECD 평균	9.93	10.06	9.77	9.77	10.02	10.03	10.01	9.99	10.30	10.35	0.42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법인세

OECD 국가의 명목GDP 대비 법인세 부담 추이: 2014~2023년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호주	4.4	4.2	4.5	5.2	5.4	4.7	5.3	6.6	6.4	-	-
오스트리아	2.1	2.2	2.3	2.4	2.7	2.7	2.1	2.7	3.4	3.2	1.2
벨기에	3.1	3.3	3.4	4.1	4.3	3.7	3.3	3.7	3.9	4	0.9
캐나다	2.1	2.1	2.3	2.4	2.5	2.3	2.6	3.1	3	2.9	0.8
칠레	4.2	4.3	4.2	4.3	4.7	4.9	4.7	3.8	5.6	5.2	1
콜롬비아	5.3	5.1	4.9	4.9	4.9	4.7	4.3	4.6	5	7.2	1.9
코스타리카	2.1	2.2	2.3	2.5	2.5	2.8	1.9	2.4	2.7	2.6	0.6
체코	3.5	3.5	3.7	3.6	3.6	3.4	3.2	3.8	4.3	4.7	1.2
덴마크	2.9	3.0	3.0	3.3	2.8	3.2	2.9	4	3.3	3.8	0.9
에스토니아	1.7	2.0	1.7	1.5	2.0	1.8	1.6	1.5	1.6	1.9	0.2
핀란드	1.2	1.4	1.5	1.9	1.7	1.7	1.2	1.5	2	2.2	0.9
프랑스	2.0	1.9	1.8	2.2	1.9	2.1	2.2	2.4	2.8	2.3	0.3
독일	0.5	0.5	0.6	0.6	0.6	0.6	0.5	0.7	0.7	0.7	0.2
그리스	1.9	2.2	2.5	2.0	2.2	1.9	1.4	2	2.5	-	-
헝가리	1.6	1.7	2.3	2.0	1.3	1.2	1.3	1.4	1.7	2.2	0.6
아이슬란드	3.2	2.3	2.5	3.0	2.4	2.1	2.2	2	2.6	3.4	0.2
아일랜드	2.3	2.5	2.7	2.7	3.1	3.0	3.1	3.4	4.3	4.7	2.4
이스라엘	3.1	2.9	3.1	3.3	3.2	3.1	2.7	3.5	4.3	3.6	0.5
이탈리아	2.1	1.9	2.1	2.1	1.9	2.0	2.1	1.9	2.9	2.8	0.7
일본	2.6	2.5	2.3	2.6	2.7	2.4	2.7	3.1	3.3	3.1	0.5
한국	2.8	2.7	3.0	3.2	3.8	3.8	2.9	3.4	4.8	3.6	0.9
라트비아	1.5	1.6	1.7	1.6	1.1	0.2	0.7	0.9	1	1.3	△0.2
리투아니아	1.4	1.5	1.6	1.5	1.5	1.6	1.7	2.1	2.3	2.7	1.3
룩셈부르크	3.1	3.1	3.1	3.6	4.6	4.2	3.3	3.1	3.1	3.4	0.3
멕시코	2.4	3.1	3.4	3.4	3.3	3.2	3.5	3.4	3.9	3.9	1.5
네덜란드	2.5	2.6	3.3	3.2	3.4	3.6	3.0	3.7	4.7	4.9	2.4
뉴질랜드	4.2	4.4	4.9	4.6	5.0	3.9	5.2	5.4	4.5	4.2	0
노르웨이	6.6	4.5	4.0	4.8	6.4	5.9	2.8	9.8	18.4	11.7	5.1
폴란드	1.4	1.4	1.4	1.5	1.6	1.7	1.8	2.1	2.3	2	0.6
포르투갈	2.6	2.9	2.8	3.0	3.1	2.9	2.5	2.2	3.1	3.2	0.6
슬로바키아	3.3	3.6	3.5	3.5	3.3	3.0	3.0	3.6	3.7	3.5	0.3
슬로베니아	1.4	1.5	1.6	1.8	1.9	2.0	2.0	2.5	2.3	2.4	1
스페인	1.9	2.1	2.1	2.1	2.3	1.9	1.8	2.5	2.6	2.8	0.9
스웨덴	2.7	2.9	2.7	2.8	2.9	3.0	3.0	3.3	3.4	3.6	0.9
스위스	1.3	1.5	1.6	1.5	1.6	1.6	1.7	1.7	1.7	1.8	0.5
튀르키예	1.4	1.2	1.4	1.5	1.8	1.6	1.8	2.2	3	2.7	1.3
영국	2.4	2.3	2.6	2.6	2.6	2.3	2.4	2.9	3.3	3.6	1.1
미국	1.9	1.8	1.7	1.2	1.1	1.0	1.0	1.2	1.4	1.5	△0.4
G7 평균	2.0	1.9	1.9	2.0	1.9	1.8	1.9	2.2	2.5	2.4	0.4
OECD 평균	2.5	2.5	2.6	2.7	2.8	2.7	2.5	3.0	3.6	3.5	1.0

주: 1. 한국의 GDP는 구계열 기준(2015년 기준년)으로, 2024년 공표된 신계열(2020년 기준) 수치와 차이 있음

2. 해당 수치는 법인세(국세) 이외에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지방소득세 법인분) 등이 포함된 기준임

3. 2023년 OECD 평균 계산 시, 2023년 자료 미발표국(호주, 그리스)은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2014~2023년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호주	16.3	15.1	16.3	18.3	18.9	17.1	18.8	22.5	21.8	-	-
오스트리아	4.9	5.2	5.6	5.9	6.4	6.4	5.1	6.4	7.9	7.7	2.7
벨기에	7	7.4	7.9	9.3	9.8	8.7	7.7	8.9	9.2	9.4	2.4
캐나다	10.7	10.4	11.3	11.8	12.2	11.3	12	14.1	13.9	13.4	2.7
칠레	21.3	21	20.9	21.1	22.1	23.4	24.3	17.1	23.7	25.3	4.1
콜롬비아	27.1	25.9	25.7	25.7	25.6	24.1	23.1	23.8	25.4	32.3	5.2
코스타리카	9.1	9.5	9.9	10.7	11	11.9	8.4	9.7	10.5	10.6	1.5
체코	10.6	10.8	11	10.7	10.4	10.1	9.4	11.4	12.9	13.9	3.2
덴마크	5.9	6.6	6.6	7.2	6.3	6.7	6.2	8.4	7.9	8.7	2.8
에스토니아	5.4	6.2	5.1	4.7	6.1	5.5	4.9	4.6	5	5.6	0.3
핀란드	4.4	4.9	5	6.3	6	6	5.1	6.3	7	6.8	2.4
프랑스	4.5	4.3	4	4.7	4.2	4.6	5	5.3	6.2	5.3	0.8
독일	4.6	4.5	5.1	5.3	5.5	5	4.2	5.8	6	6.1	1.5
그리스	5.2	5.8	6.4	5	5.5	4.8	3.6	5	6	-	0.9
헝가리	4.1	4.4	5.8	5.2	3.6	3.4	3.6	4.1	4.7	6.3	2.2
아이슬란드	8.6	6.5	4.9	8.2	6.5	5.9	6.1	5.7	7.4	9.4	0.8
아일랜드	8.2	11.3	11.6	12.2	14.3	14	16.1	17	21.5	21.7	13.4
이스라엘	10.1	9.5	9.9	10.3	10.4	10.2	9.3	11	13.1	12	1.9
이탈리아	5	4.7	5.1	5	4.5	4.6	4.8	4.4	6.7	6.5	1.5
일본	12.9	12.3	12	11.8	12.9	12	11.7	13.1	13.7	-	-
한국	12.8	13.1	13.6	14.2	15.7	15.7	12.1	12.8	16.8	14.4	1.6
라트비아	5.2	5.3	5.4	5.1	3.4	0.5	2.3	2.8	3.3	4.2	△1.0
리투아니아	5	5.3	5.4	5	5	5.1	5.3	6.4	7.4	8.1	3.2
룩셈부르크	11.5	12.2	12.3	13.6	16	15.2	12.5	11.8	11.5	12.2	0.8
멕시코	18.4	20.1	21	21.8	21.3	20.1	20.1	20.2	23	22.1	3.6
네덜란드	6.9	7.2	8.7	8.5	9	9.4	7.8	9.8	12.5	12.7	5.8
뉴질랜드	13.4	14	15.6	14.7	15.6	12.5	15.4	15.7	13.7	12.3	△1.0
노르웨이	17.1	11.7	10.4	12.5	16.4	14.9	7.2	23.6	42.3	28.3	11.2
폴란드	5.5	5.7	5.5	5.7	5.9	6.3	6.4	7.1	8.1	7.5	2
포르투갈	8.3	9.1	8.9	9.4	9.6	9	7.9	6.8	9.3	9.7	1.4
슬로바키아	10.3	11.2	10.5	10.2	9.6	8.8	8.6	10.2	10.4	10	△0.3
슬로베니아	3.8	3.9	4.3	4.8	5.2	5.2	5.3	6.5	6.2	6.4	2.6
스페인	5.9	6.5	6.6	6.6	7.1	5.9	5.3	7	7.2	7.9	2
스웨덴	6.3	6.8	6.2	6.3	6.5	7	6.9	7.8	8	8.6	2.3
스위스	10.3	10.7	11.3	10.8	11.4	11.2	11	10.9	11.9	11.9	1.6
튀르키예	6.4	5.7	6.5	6.8	8.7	7.9	8.7	10.7	16.1	12.8	6.3
영국	7.6	7.2	8	8	7.8	7.1	7.3	8.6	9.2	10.1	2.4
미국	8.7	8.1	7.5	5.5	5.6	5.3	5.4	6.2	7.4	8.3	△0.5
G7 평균	7.7	7.3	7.6	7.4	7.5	7.1	7.2	8.2	9.0	9.0	1.3
OECD 평균	9.2	9.2	9.4	9.7	10.0	9.6	9.1	10.3	12.0	11.8	2.6

주: 1. 해당 수치는 법인세(국세) 이외에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지방소득세 법인분) 등이 포함된 기준

2. 2023년 OECD 평균값 계산 시, 2023년 자료 미발표국(호주, 그리스)은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3. 2023년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2023년 자료가 없는 경우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추이(지방세 포함): 2014~2024년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차이 ('24-'14)
호주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0
오스트리아	25	25	25	25	25	25	25	25	25	24	23	△2.0
벨기에	34	34	34	34	29.6	29.6	25	25	25	25	25	△9.0
캐나다	26.2	26.7	26.7	26.7	26.8	26.6	26.3	26.2	26.1	26.1	26.1	△0.1
칠레	21	22.5	24	25.5	27	27	27	27	27	27	27	6
콜롬비아	34	39	40	40	37	33	32	31	35	35	35	1
코스타리카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0
체코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21	2
덴마크	24.5	23.5	22	22	22	22	22	22	22	22	22	△2.5
에스토니아	21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0
핀란드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0
프랑스	38	38	34.4	44.4	34.4	34.4	32	28.4	25.8	25.8	25.8	△12.2
독일	29.7	29.8	29.8	29.9	29.9	29.9	29.8	29.9	29.9	29.9	29.9	0.2
그리스	26	29	29	29	29	24	24	22	22	22	22	△4.0
헝가리	19	19	19	9	9	9	9	9	9	9	9	△10.0
아이슬란드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1	1
아일랜드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0
이스라엘	26.5	26.5	25	24	23	23	23	23	23	23	23	△3.5
이탈리아	31.3	31.3	31.3	27.8	27.8	27.8	27.8	27.8	27.8	27.8	27.8	△3.5
일본	34.6	32.1	30	30	29.7	29.7	29.7	29.7	29.7	29.7	29.7	△4.9
한국	24.2	24.2	24.2	24.2	27.5	27.5	27.5	27.5	27.5	26.4	26.4	2.2
라트비아	15	15	15	15	20	20	20	20	20	20	20	5
리투아니아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0
룩셈부르크	29.2	29.2	29.2	27.1	26	24.9	24.9	24.9	24.9	24.9	24.9	△4.3
멕시코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0
네덜란드	25	25	25	25	25	25	25	25	25.8	25.8	25.8	0.8
뉴질랜드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0
노르웨이	27	27	25	24	23	22	22	22	22	22	22	△5.0
폴란드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0
포르투갈	31.5	29.5	29.5	29.5	31.5	31.5	31.5	31.5	31.5	31.5	31.5	0
슬로바키아	22	22	22	21	21	21	21	21	21	21	21	△1.0
슬로베니아	17	17	17	19	19	19	19	19	19	19	22	5
스페인	30	28	25	25	25	25	25	25	25	25	25	△5.0
스웨덴	22	22	22	22	22	21.4	21.4	20.6	20.6	20.6	20.6	△1.4
스위스	21.1	21.1	21.1	21.1	21.1	21.1	21.1	19.7	19.7	19.7	19.6	△1.5
튀르키예	20	20	20	20	22	22	22	25	23	25	25	5
영국	21	20	20	19	19	19	19	19	19	25	25	4
미국	39.1	39	38.9	38.9	25.8	25.9	25.8	25.8	25.8	25.8	25.6	△13.4
G7 평균	31.4	31.0	30.2	31.0	27.6	27.6	27.2	26.7	26.3	27.2	27.2	△4.2
OECD 평균	25.2	25.2	24.9	24.8	24.3	23.9	23.7	23.6	23.6	23.7	23.9	△1.4

주: 1.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기준임

2.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정부 세율에 주별 지방세율의 가중평균 값을 합하여 계산한 수치임

3. 2024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추이(중앙정부 기준): 2014~2024년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차이 (‘24-’14)
호주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0
오스트리아	25	25	25	25	25	25	25	25	25	24	23	△2.0
벨기에	33	33	33	33	29	29	25	25	25	25	25	△8.0
캐나다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0
칠레	21	22.5	24	25.5	27	27	27	27	27	27	27	7
콜롬비아	34	39	40	40	37	33	32	31	35	35	35	1
코스타리카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0
체코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21	2
덴마크	24.5	23.5	22	22	22	22	22	22	22	22	22	△3.0
에스토니아	21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0
핀란드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4.5
프랑스	38	38	34.4	44.4	34.4	34.4	32	28.4	25.8	25.8	25.8	△12.2
독일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0
그리스	26	29	29	29	29	24	24	22	22	22	22	△4.0
헝가리	19	19	19	9	9	9	9	9	9	9	9	△10.0
아이슬란드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1	1
아일랜드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0
이스라엘	26.5	26.5	25	24	23	23	23	23	23	23	23	△2.0
이탈리아	27.5	27.5	27.5	24	24	24	24	24	24	24	24	△3.5
일본	23.9	23.9	23.4	23.4	23.2	23.2	23.2	23.2	23.2	23.2	23.2	△4.9
한국	22	22	22	22	25	25	25	25	25	24	24	2
라트비아	15	15	15	15	20	20	20	20	20	20	20	5
리투아니아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0
룩셈부르크	22.5	22.5	22.5	20.3	19.3	18.2	18.2	18.2	18.2	18.2	18.2	△4.3
멕시코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0
네덜란드	25	25	25	25	25	25	25	25	25.8	25.8	25.8	0.8
뉴질랜드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0
노르웨이	27	27	25	24	23	22	22	22	22	22	22	△6.0
폴란드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0
포르투갈	30	28	28	28	30	30	30	30	30	30	30	0
슬로바키아	22	22	22	21	21	21	21	21	21	21	21	△2.0
슬로베니아	17	17	17	19	19	19	19	19	19	19	22	5
스페인	30	28	25	25	25	25	25	25	25	25	25	△5.0
스웨덴	22	22	22	22	22	21.4	21.4	20.6	20.6	20.6	20.6	△1.4
스위스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	0
튀르키예	20	20	20	20	22	22	22	25	23	25	25	5
영국	21	20	20	19	19	19	19	19	19	25	25	2
미국	35	35	35	35	21	21	21	21	21	21	21	△14.0
G7 평균	25.2	25.0	24.5	25.2	21.8	21.8	21.4	20.9	20.6	21.4	21.4	△3.8
OECD 평균	23.4	23.5	23.3	23.1	22.5	22.2	22.0	21.9	21.9	22.1	22.2	△1.2

주: 1. 지방세를 제외한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기준임

2. 2024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가가치세

OECD 국가의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추이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변화 (‘23-’14)
호주	3.4	3.6	3.5	3.5	3.3	3.2	3.5	3.2	3.4	3.4	△0.1
오스트리아	7.6	7.6	7.6	7.7	7.6	7.7	7.4	7.6	8.0	8.0	0.3
벨기에	6.8	6.6	6.7	6.7	6.7	6.6	6.3	6.7	6.5	6.4	△0.4
캐나다	4.1	4.4	4.5	4.5	4.5	4.5	4.5	4.6	4.5	4.7	0.6
칠레	8.2	8.4	8.3	8.4	8.6	8.4	7.9	9.5	9.3	8.6	0.4
콜롬비아	5.1	5.2	4.8	5.5	5.7	5.8	5.4	5.9	6.2	6.1	1.0
코스타리카	4.5	4.4	4.4	4.2	4.1	4.3	4.4	5.1	4.9	4.9	0.3
체코	7.3	7.2	7.3	7.5	7.5	7.4	7.2	7.3	7.6	7.5	0.2
덴마크	9.0	9.0	9.3	9.3	9.6	9.4	9.8	9.5	9.2	9.1	0.1
에스토니아	8.4	8.9	8.9	8.8	8.8	8.7	8.8	9.1	9.1	9.1	0.7
핀란드	9.2	9.0	9.1	9.0	9.2	9.2	9.2	9.4	9.4	9.1	△0.03
프랑스	6.9	6.9	6.9	7.0	7.1	7.2	7.0	7.4	7.5	7.2	0.4
독일	6.9	7.0	7.0	6.9	7.0	7.0	6.5	7.2	7.5	7.0	0.01
그리스	7.2	7.3	8.2	8.3	8.5	8.4	7.8	8.4	9.0	9.0	1.9
헝가리	9.2	9.5	9.1	9.2	9.5	9.5	9.7	9.9	10.1	9.3	0.1
아이슬란드	7.7	7.9	8.2	8.9	8.6	8.0	8.0	8.5	8.3	8.5	0.8
아일랜드	5.7	4.3	4.6	4.2	4.2	4.2	3.3	3.7	3.7	4.0	△1.7
이스라엘	7.8	7.7	7.4	7.3	7.4	7.2	7.1	7.5	7.4	6.5	△1.3
이탈리아	6.0	6.1	6.0	6.2	6.2	6.2	6.0	6.6	7.1	6.7	0.7
일본	3.7	4.1	4.0	4.0	4.0	4.2	4.9	5.1	5.2	5.0	1.3
한국 ¹⁾	4.0	3.6	3.9	4.1	4.1	4.3	4.2	4.3	4.9	4.4	0.4
라트비아	7.6	7.6	8.0	8.0	8.4	8.6	8.4	8.6	9.5	9.3	1.7
리투아니아	7.6	7.7	7.8	7.8	7.7	7.9	8.0	8.3	8.4	8.2	0.7
룩셈부르크	7.2	5.4	5.5	5.7	5.8	5.8	5.7	5.7	6.1	6.1	△1.1
멕시코	3.7	3.7	3.8	3.6	3.8	3.7	4.1	4.2	4.1	4.3	0.6
네덜란드	6.3	6.4	6.6	6.6	6.7	7.0	7.2	7.3	7.1	7.1	0.8
뉴질랜드	9.5	9.5	9.4	9.5	9.5	9.5	10.3	10.1	10.0	10.0	0.6
노르웨이	7.7	8.2	8.6	8.5	8.3	8.5	9.0	7.8	6.5	7.4	△0.3
폴란드	7.2	7.0	7.3	7.8	8.1	8.0	8.0	8.6	7.3	7.3	0.1
포르투갈	8.5	8.6	8.5	8.6	8.7	8.8	8.4	8.9	9.4	9.0	0.5
슬로바키아	6.6	6.8	6.7	7.0	7.0	7.2	7.3	7.5	7.7	8.0	1.4
슬로베니아	8.4	8.3	8.2	8.1	8.2	8.2	7.5	8.2	8.2	8.2	△0.2
스페인	6.2	6.4	6.4	6.5	6.6	6.5	6.3	6.8	7.0	6.6	0.4
스웨덴	8.9	9.0	9.2	9.3	9.3	9.1	9.2	9.1	9.4	8.9	0.01
스위스	3.4	3.3	3.3	3.3	3.2	3.1	3.2	3.2	3.1	3.2	△0.2
튀르키예	5.0	5.1	5.0	5.0	4.7	4.2	4.6	5.3	5.0	5.5	0.5
영국	6.9	6.9	6.9	6.9	6.9	6.9	6.7	6.9	7.3	7.3	0.4
G7 평균 ²⁾	5.7	5.9	5.9	5.9	6.0	6.0	5.9	6.3	6.5	6.3	0.6
OECD 평균 ³⁾	6.7	6.7	6.8	6.9	6.9	6.9	6.8	7.1	7.2	7.0	0.3

주: 1) 한국의 GDP는 구계열 기준(2015년 기준년)으로, 2024년 공표된 신계열(2020년 기준) 수치와 차이 있음

2) G7 평균은 6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캐나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미국 제외) 기준

3) OECD 평균은 37개국(미국 제외)을 기준으로 하되, 2023년 자료 미발표국(호주, 그리스)은 전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추이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변화 (‘23-‘14)
호주	12.6	12.8	12.7	12.2	11.7	11.7	12.4	11.1	11.5	11.5	△1.1
오스트리아	17.9	17.7	18.3	18.3	18.0	18.0	17.6	17.5	18.4	18.6	0.8
벨기에	15.3	15.0	15.4	15.3	15.4	15.6	14.9	16.0	15.3	15.0	△0.2
캐나다	13.2	13.3	13.4	13.7	13.5	13.6	13.1	13.2	13.4	13.6	0.4
칠레	41.6	40.8	41.2	41.6	40.2	39.9	41.1	42.6	39.0	41.6	△0.02
콜롬비아	26.0	26.0	25.4	29.0	29.4	29.7	28.8	30.5	31.8	27.3	1.3
코스타리카	20.0	19.3	18.8	18.4	17.8	18.5	19.7	20.4	19.4	19.5	△0.5
체코	22.4	21.7	21.7	22.0	21.6	21.6	21.3	21.8	22.9	22.3	△0.1
덴마크	18.5	19.4	20.3	20.4	21.6	20.0	20.7	20.1	22.0	20.9	2.4
에스토니아	26.6	27.2	27.1	27.7	27.3	26.7	26.7	27.3	27.9	27.2	0.6
핀란드	21.0	20.6	20.7	21.0	21.6	21.7	22.1	21.7	21.7	21.5	0.5
프랑스	15.1	15.1	15.2	15.2	15.4	15.9	15.4	16.3	16.4	16.5	1.4
독일	18.5	18.4	18.1	18.0	17.8	17.9	16.9	18.1	18.9	18.3	△0.2
그리스	19.5	19.8	20.9	20.8	21.1	21.3	19.8	20.9	21.9	21.9	2.4
헝가리	23.9	24.5	23.3	24.4	25.9	26.2	27.1	29.3	28.9	27.2	3.3
아이슬란드	20.8	22.6	16.3	23.8	23.6	22.9	22.0	24.4	23.7	23.6	2.8
아일랜드	20.6	19.4	19.8	19.5	19.4	19.6	17.2	18.5	18.2	18.3	△2.3
이스라엘	25.4	24.8	24.0	22.8	23.9	23.8	23.9	23.2	22.5	21.9	△3.6
이탈리아	13.8	14.2	14.3	14.8	14.8	14.7	14.1	15.6	16.5	15.7	1.9
일본	12.2	13.7	13.3	13.0	12.8	13.2	14.9	14.9	15.1	15.1	2.9
한국	17.2	15.3	15.8	16.0	15.3	15.7	15.1	14.4	15.3	15.3	△2.0
라트비아	25.5	25.6	26.1	25.8	27.1	27.8	27.1	28.1	30.8	29.1	3.7
리투아니아	27.5	26.7	26.3	26.4	25.6	26.1	25.7	26.0	26.5	25.2	△2.3
룩셈부르크	20.0	15.6	15.5	15.6	14.7	14.7	15.0	14.9	15.8	15.0	△5.0
멕시코	27.9	23.9	23.7	23.1	24.3	23.4	23.8	25.2	24.7	24.2	△3.6
네덜란드	17.2	17.6	17.6	17.4	17.6	18.2	18.5	19.2	18.6	18.5	1.3
뉴질랜드	30.4	30.2	29.9	30.2	29.6	30.4	30.6	29.3	30.3	29.6	△0.9
노르웨이	20.0	21.3	22.3	22.1	21.1	21.4	23.3	19.0	15.0	17.9	△2.0
폴란드	22.4	21.6	21.6	22.8	23.1	22.6	22.4	23.3	21.1	20.9	△1.5
포르투갈	24.8	24.9	24.8	25.1	25.1	25.4	23.8	25.2	26.0	25.1	0.3
슬로바키아	20.6	20.8	20.2	20.6	20.7	20.9	21.0	21.1	22.0	22.5	1.8
슬로베니아	22.6	22.2	22.0	21.9	22.1	21.7	20.0	21.5	21.9	22.3	△0.3
스페인	18.3	19.0	19.2	19.2	19.0	18.7	17.1	18.1	18.6	17.6	△0.7
스웨덴	21.0	20.9	20.8	20.8	21.1	21.3	21.6	21.4	22.1	21.6	0.6
스위스	12.8	12.3	12.1	12.0	11.7	11.3	11.3	11.3	11.6	11.7	△1.2
튀르키예	20.4	20.6	19.8	20.1	19.8	18.1	19.2	23.2	24.0	23.6	3.2
영국	21.6	21.7	21.2	21.0	21.2	21.4	20.3	20.2	20.7	20.6	△1.0
G7 평균 ¹⁾	15.7	16.1	15.9	15.9	15.9	16.1	15.8	16.4	16.8	16.6	0.9
OECD 평균 ²⁾	20.9	20.7	20.5	20.9	20.9	20.8	20.7	21.2	21.4	21.0	0.1

주: 1) G7 평균은 6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캐나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미국 제외) 기준

2) OECD 평균은 37개국(미국 제외)을 기준으로 하되, 2023년 자료 미발표국(호주, 그리스, 일본)은 전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추이

(단위 : %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변화 (‘24-’14)
호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0
오스트리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0.0
벨기에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0.0
캐나다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0.0
칠레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0.0
콜롬비아	16.0	16.0	16.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3.0
코스타리카	-	-	-	-	-	13.0	13.0	13.0	13.0	13.0	13.0	0.0
체코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0.0
덴마크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0.0
에스토니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2.0	2.0
핀란드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0.0
프랑스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0.0
독일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0.0
그리스	23.0	23.0	23.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1.0
헝가리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0.0
아이슬란드	25.5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1.5
아일랜드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0.0
이스라엘	18.0	18.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0
이탈리아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0.0
일본	5.0	8.0	8.0	8.0	8.0	8.0	10.0	10.0	10.0	10.0	10.0	5.0
한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0
라트비아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0.0
리투아니아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0.0
룩셈부르크	15.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2.0
멕시코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0.0
네덜란드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0.0
뉴질랜드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0.0
노르웨이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0.0
폴란드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0.0
포르투갈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0.0
슬로바키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0.0
슬로베니아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0.0
스페인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0.0
스웨덴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0.0
스위스	8.0	8.0	8.0	8.0	7.7	7.7	7.7	7.7	7.7	7.7	8.1	0.1
튀르키예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20.0	20.0	2.0
영국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0.0
G7 평균 ¹⁾	15.2	15.7	15.7	15.7	15.7	15.7	16.0	16.0	16.0	16.0	16.0	0.8
OECD 평균 ²⁾	19.1	19.2	19.2	19.3	19.3	19.1	19.2	19.2	19.2	19.2	19.3	0.2

주: 1.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 일반세율을 기준으로 집계

2. OECD 평균은 37개국(미국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OECD Tax Database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호주	27.2	27.8	27.5	28.6	28.6	27.7	28.3	29.2	29.3	-
오스트리아	30.9	31.3	29.8	29.8	30.1	30.2	29.0	30.3	30.6	30.3
벨기에	30.3	30.0	29.3	29.9	30.0	28.5	27.9	28.7	28.5	28.3
캐나다	28.4	29.9	30.3	30.1	30.5	30.0	31.3	31.3	30.2	30.7
칠레	18.6	19.4	19.1	19.0	20.1	19.7	18.0	21.4	23.1	19.7
콜롬비아	17.8	18.2	17.3	17.5	17.4	17.8	16.9	17.4	18.0	20.6
코스타리카	13.9	14.1	14.6	14.1	14.1	14.2	13.2	15.7	16.1	15.7
체코	18.3	18.8	19.3	19.4	19.4	19.1	18.6	17.7	17.9	18.5
덴마크	48.7	46.5	45.8	45.4	44.4	47.1	47.2	47.2	41.9	43.4
에스토니아	26.4	27.4	27.5	26.6	26.9	27.2	27.1	28.0	27.3	28.0
핀란드	31.1	31.1	31.3	31.1	30.8	30.7	30.6	31.4	31.4	30.3
프랑스	21.2	21.4	21.5	22.2	21.9	21.0	20.9	20.6	21.0	19.5
독일	23.2	23.6	23.8	23.8	24.2	24.3	23.3	24.6	24.5	23.1
그리스	26.6	26.7	28.5	27.9	28.2	27.0	26.1	26.6	28.7	27.6
헝가리	25.5	25.7	25.7	25.7	24.8	24.8	24.9	23.4	25.4	24.8
아이슬란드	37.1	35.1	50.3	37.1	36.5	35.1	36.2	34.8	35.1	35.6
아일랜드	23.9	19.2	19.7	18.6	18.6	18.2	16.6	17.3	17.5	18.9
이스라엘	25.7	26.0	25.9	27.0	25.5	24.9	24.4	27.3	27.8	24.8
이탈리아	30.3	29.9	29.4	29.1	28.7	28.9	28.9	28.9	29.3	29.6
일본	18.2	18.4	18.1	18.7	18.9	18.5	19.6	20.7	21.5	-
한국 ¹⁾	16.3	16.6	17.4	17.9	18.8	18.8	18.8	20.6	22.1	19.0
라트비아	22.1	22.3	23.4	23.5	23.0	22.5	22.2	22.2	23.0	22.8
리투아니아	16.5	17.3	17.6	17.4	17.4	20.5	20.9	21.7	21.7	21.6
룩셈부르크	26.2	24.8	25.5	26.4	28.9	28.8	27.4	27.9	27.9	29.8
멕시코	11.1	13.2	14.0	13.6	13.6	13.7	14.8	14.4	14.5	15.3
네덜란드	22.1	22.7	23.3	24.5	24.4	25.3	25.7	25.6	25.5	26.4
뉴질랜드	31.6	31.9	31.9	31.8	32.6	30.8	35.2	35.1	33.7	34.2
노르웨이	38.6	38.3	38.8	38.6	39.3	39.9	38.7	41.3	43.4	41.4
폴란드	19.9	19.9	20.7	21.2	21.8	21.7	21.8	23.4	21.4	21.8
포르투갈	25.7	25.9	25.6	25.6	25.9	25.3	25.2	25.2	26.0	25.6
슬로바키아	18.7	19.2	19.2	19.7	19.7	20.0	19.8	20.3	20.8	20.8
슬로베니아	22.3	22.3	22.4	22.0	22.2	22.3	21.1	22.2	21.6	20.9
스페인	22.4	22.6	22.3	22.5	23.0	22.5	23.1	24.4	24.6	24.0
스웨덴	37.1	37.6	38.9	39.1	38.8	37.7	37.2	37.6	37.4	36.3
스위스	19.7	20.4	20.4	21.1	20.7	21.1	20.9	21.2	20.0	20.2
튀르키예	17.5	17.7	17.9	17.4	16.8	15.9	16.8	16.3	15.8	17.1
영국	25.8	25.9	26.3	26.5	26.5	26.0	26.0	27.4	28.1	28.3
미국	19.7	19.9	19.6	20.3	18.7	18.9	19.3	20.6	21.3	18.9
G7 평균 ²⁾	23.8	24.1	24.1	24.4	24.2	24.0	24.2	24.9	25.1	24.5
OECD 평균 ²⁾	24.6	24.7	25.3	25.0	25.0	24.9	24.8	25.5	25.6	25.4

주: 1)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24.6.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확정 GDP(신계열, 2020 기준년)를 반영하여 계산한 값임

2) 일본과 호주는 2023년 자료 미제출 국가로, 2023년 G7 평균 및 OECD 평균은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1. OECD 평균은 38개국 기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https://stats.oecd.org>)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호주	27.2	27.8	27.5	28.6	28.6	27.7	28.3	29.2	29.3	-
오스트리아	43.1	43.4	42.0	42.1	42.5	42.8	42.2	43.3	43.1	43.0
벨기에	44.5	44.2	43.5	44.0	43.9	42.3	41.9	42.2	41.7	41.8
캐나다	31.3	32.8	33.3	33.0	33.5	33.1	34.5	34.5	33.4	34.3
칠레	19.7	20.5	20.2	20.2	21.3	21.0	19.3	22.3	23.8	20.6
콜롬비아	19.6	19.9	19.1	19.0	19.3	19.7	18.8	19.2	19.7	22.2
코스타리카	22.6	22.9	23.5	23.0	23.2	23.4	22.6	24.8	25.2	24.9
체코	32.6	32.9	33.7	34.0	34.6	34.2	34.0	33.7	33.2	33.7
덴마크	48.8	46.5	45.8	45.5	44.4	47.1	47.2	47.2	41.9	43.4
에스토니아	31.6	32.7	32.9	31.9	32.3	32.7	32.8	33.5	32.5	33.5
핀란드	43.7	43.8	44.1	43.2	42.7	42.5	42.1	43.5	43.4	42.7
프랑스	45.4	45.4	45.4	46.2	46.0	45.0	45.2	45.1	45.8	43.8
독일	36.9	37.3	37.8	37.8	38.4	38.7	38.1	39.1	38.9	37.5
그리스	36.9	37.2	39.2	39.6	40.1	39.1	38.9	39.4	41.0	38.9
헝가리	38.3	38.6	38.9	37.8	36.6	36.1	35.7	33.6	35.0	34.1
아이슬란드	37.1	35.1	50.3	37.1	36.5	35.1	36.2	34.8	35.1	35.6
아일랜드	27.9	22.3	23.0	21.7	21.8	21.4	19.4	20.0	20.3	21.9
이스라엘	30.6	31.0	31.0	32.2	30.8	30.1	29.6	32.3	32.8	29.8
이탈리아	43.1	42.8	42.0	41.7	41.6	42.1	42.4	42.0	42.1	42.0
일본	30.2	30.4	30.3	31.1	31.5	31.4	32.9	34.0	34.9	-
한국 ¹⁾	22.3	22.6	23.5	24.1	25.2	25.7	26.2	27.9	29.7	26.8
라트비아	30.8	30.8	31.8	32.2	32.2	32.1	32.1	31.8	32.7	32.9
리투아니아	27.6	28.9	29.7	29.6	30.0	30.0	31.0	31.8	31.5	31.8
룩셈부르크	36.1	34.8	35.5	36.6	39.4	39.5	38.3	38.2	38.3	40.9
멕시코	13.2	15.4	16.1	15.7	15.7	15.9	17.2	16.7	16.8	17.7
네덜란드	36.7	36.5	37.8	38.0	38.1	38.5	39.0	38.3	38.1	38.5
뉴질랜드	31.6	31.9	31.9	31.8	32.6	30.8	35.2	35.1	33.7	34.2
노르웨이	38.6	38.3	38.8	38.6	39.3	39.9	38.7	41.3	43.4	41.4
폴란드	32.1	32.3	33.3	34.0	34.7	34.8	35.2	36.3	34.1	35.2
포르투갈	34.2	34.4	34.1	34.2	34.7	34.5	35.1	35.1	35.8	35.5
슬로바키아	31.8	32.4	32.9	33.9	33.9	34.5	34.5	34.8	34.9	35.5
슬로베니아	37.5	37.7	37.8	37.4	37.6	37.9	37.8	38.4	37.5	36.4
스페인	33.7	33.5	33.3	33.6	34.4	34.4	36.5	37.4	36.8	36.4
스웨덴	42.5	42.9	44.2	44.5	44.1	43.0	42.6	42.8	42.5	41.4
스위스	26.2	27.0	26.9	27.7	27.2	27.7	27.9	28.0	26.6	26.8
튀르키예	24.5	25.0	25.1	24.7	24.0	23.1	23.9	22.9	20.9	23.2
영국	31.7	31.9	32.5	32.7	32.8	32.5	32.8	34.2	35.1	34.9
미국	25.8	26.1	25.7	26.5	24.8	25.0	25.5	26.6	27.3	24.8
G7 평균 ²⁾	34.9	35.2	35.3	35.6	35.5	35.4	35.9	36.5	36.8	36.0
OECD 평균 ²⁾	32.8	32.9	33.5	33.3	33.4	33.3	33.5	34.0	33.9	33.8

주: 1)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24.6.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확정 GDP(신계열, 2020 기준년)를 반영하여 계산한 값임

2) 일본과 호주는 2023년 자료 미제출 국가로, 2023년 G7 평균 및 OECD 평균은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1. OECD 평균은 38개국 기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https://stats.oecd.org>)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문헌

- 감사원, 「감사연보」, 각 연도
- 강금윤,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KITA 통상리포트』 2024-2, 한국무역협회, 2024
- 관세청, 「관세통계연보」, 각 연도
- 국세청, 「2023년 한·일 세금상식」, 2023
- _____, 「2023년 한·미 세금상식」, 2023
- _____,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2021
-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
- 국회예산정책처,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2022
- _____,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2022
- _____, 「대한민국 재정」, 2024
- _____, 「조세의 이해와 쟁점」, 2017
- _____, 「한국 조세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2018
- _____, 재정통계시스템(<https://nabostats.go.kr>)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각 연도
- _____, 「조세조약 및 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2021
- _____,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4
- _____, 열린재정 홈페이지(<https://www.openfiscaldata.go.kr>)
- 김완석·박종수·이중교·황남석, 「주식 국세기본법」, 삼일인포마인, 2020
- 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20
-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20
- 김지혜·노민지·오민준·권건우,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①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제766호, 국토연구원, 2020
- 김학수,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2017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박훈·채현석·허원, 「상속·증여세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23

백덕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 기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개편방안 연구」, 2020

오종현·서동연·허윤영, 「세법연구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이경근, 「국제조세 이해와 실무」, 조세통람, 2023

이경근,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BEPS 프로젝트의 현안과 대응방안」, 『월간 조세』 제338호, 2016

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이용섭·이동신, 「국제조세」, 세경사, 2012

이재원, 「지방세 기능 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제의 개편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이창희, 「국제조세법(제2판)」, 박영사, 2020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0

정훈·권순오·이미연, 「금융투자소득 납세협력과 과세행정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조세심판원, 「조세심판통계연보」, 각 연도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5

최성은,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 『월간 재정포럼』 제318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한국석유공사 Opinet 홈페이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제1권), 2019

_____, 「주요국의 소득세제도」(제2권), 2020

_____, 「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 제2권 소비과세·관세」, 2012

_____, BEPS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ipf.re.kr/beps/>)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 지방세 교육교재-지방세기본법」, 2024 .

_____, 「한국지방세 60년사」, 2017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보고」, 2023
 _____, 「2023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2023
 _____, 「2024년도 지방세 개요」, 2024
 _____, 「지방세지출 기본계획」, 각 연도
 _____,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홍성훈·강성훈·허경선, 「에너지세제 및 공공요금체제 조정의 경제적 효과」, 한국조세재
 정연구원, 2014
 홍우형,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2025
 EC, Taxes in Europe Database v3([https://ec.europa.eu/taxation_cus-
toms/tedb/taxSearch.html](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tedb/taxSearch.html))
 EU, 「Council Directive (EU) 2022/2523 of 14 December 2022 on Ensuring a Global
 Minimum Level of Taxation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s and
 Large-Scale Domestic Groups in the Union」, 2022
 IEA, Energy Prices and Taxes for OECD Countries, 각 연도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Institue for Fiscal Studies, 「조세설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번역), 시그마프레스, 2015
 Jared Walczak, 「State and Local Sales Tax Rates, 2025」, Tax Foundation, 2025
 NCSL, Special Registration Fees for Electric and Hybrid Vehicles, 2025
 OECD, Tax Policy Reforms, 각 연도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24」, 2024
 _____, 「Pri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2024」, 2024
 _____, 「Tax Expenditure : Recent Experiences」, 1996
 _____, 「Taxing Wages 2023」, 2023
 _____, OECD Corporate Tax Statistics(<https://stats.oecd.org>)
 _____, OECD Revenue Statistics(<https://stats.oecd.org>)
 _____, OECD Tax Database(<https://stats.oecd.org>)
 Harvey S. Rosen·Ted Gayer, 「Rosen의 재정학」, 교문사, 2020
 WHO, 「Most Sold Brand of Cigarettes: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a Pack
 of 20 Cigarettes」, 2023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https://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

주요 조세통계 찾아보기

[조세개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현황	35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현황	35
과세전적부심사 처리 현황	36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현황	43
국세 세목별 행정소송 처리 현황	45
지방세 세목별 행정소송 처리 현황	46
2024년도 총 조세수입 규모	55
세목별 조세수입 현황	55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추이	57
OECD 주요국의 국세·지방세 비중	57
국세 세목별 수입 규모	58
지방세 세목별 수입 규모	59
총 조세수입 대비 세원별 비중	60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등 현황	65
국세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	66
총수입 대비 국세수입의 비중	68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 추이	71
최근 10년간 국민부담률 추이	72

[소득세]

소득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국제비교	79
총소득 대비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80
종합소득세의 소득구간별 1인당 평균 세부담 현황	83
근로소득세의 소득구간별 1인당 평균 세부담 현황	83
최근 소득세 수입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85
종합소득세 수입액의 추이	86
근로소득세 수입액의 추이	87
양도소득세 수입액의 추이	87
소득세 세목별 비중	88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89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89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추이	90
총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율	90
종합소득세 실효세율 추이	91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추이	91
종합소득세 부담구조	92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92
근로장려금 지급 추이	105
가구유형별 지급액	105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107
한국 및 OECD 주요국의 명목GDP 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162
한국 및 OECD 주요국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 추이	164
OECD 주요국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지방세 포함)	165
OECD 주요국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추이 (지방세 포함)	166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인상 국가	167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인하 국가	167
OECD 국가의 소득세 실효세율 (무자녀 단독가구 기준)	168
OECD 국가의 가구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171

[법인세]

명목GDP 대비 법인세 부담 추이: 국제비교	183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국제비교	184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추이(지방세 포함): 국제비교	185
OECD 국가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수 현황	185
법인세 실효세율	186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추이	187
기업규모별 실효세율 추이	187
법인세 평균유효세율 및 명목 최고세율 비교	188
법인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	189
최근 법인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190
법인세 신고법인 증감 추이	191
법인세의 소득금액 구간별 신고법인 수 및 비중	192
법인세 신고법인 현황: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203
기업규모별 신고법인수 추이	20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 현황	206
법인의 소득금액 규모별 기부금 신고 현황	215
법인세 감면액 추이	227
기업규모별 감면액 비중	227

기업규모별 부담세액	230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현황	233
한국 및 주요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	241
법인세 최고세율 현황(지방세 포함): 국제비교	242

[부가가치세]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 추이: 국제비교	248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추이: 국제비교	249
부가가치세율 국제비교	249
부가가치세 세율(VRR) 국제비교	250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및 부가가치세 추이	251
최근 부가가치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252
부가가치세 및 국내분과 수입분의 비중 추이	253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	254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 수 및 비중	254
OECD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구조	267
부가가치세 최종 납부할 세액(국내분) 및 비중 추이	273
OECD 주요국의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 추이	284
OECD 주요국의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추이	285
OECD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추이	286
OECD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286

[개별소비세]

최근 개별소비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290
OECD 국가의 쉐어링 담배(20개비) 가격 및 제세부담금 비율	305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제세부담금 현황	309

[교통·에너지·환경세]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313
휘발유·경유의 소비자판매가 대비 제세부담금 비중 추이	317
OECD 회원국의 도로교통 부문 휘발유·경유 소비세 부담	322

[상속세 및 증여세]

명목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비교	333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비교	333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336
과세유형별 피상속인 수 현황	337
자산종류별 상속재산 구성비중	338
과세유형별 증여세 결정 현황	338
자산종류별 증여재산 구성비율	339

[종합부동산세]

최근 종합부동산세 징수액과 부동산교부세액 추이	373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과 부동산교부세액	374
최근 종합부동산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376
납세자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	377
부동산·납세자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 현황	377
부동산·납세자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	391

[기타 국세]

최근 증권거래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395
증권거래세 납부세액 신고 현황	396
최근 인지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402
과세문서별 인지세 납부세액	405
최근 주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407
주세 감면 추이	410
주류별 주세 신고세액 추이(국내분)	411
국내분 및 수입분 주세 신고세액 현황	411
최근 교육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414
교육세의 세원별 징수액 현황	417
최근 농어촌특별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418
농어촌특별세의 세원별 납부세액 현황	421

[관세]

최근 관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424
우리나라 실효관세율 추이	434
항목별 관세 감면실적 현황	436
한국 및 G7 국가의 관세 세수 및 총조세 대비 비중 추이	441
RTA 발효 추이	442

[국제조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과세 추이	453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467

[취득세]

최근 취득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479
취득세 과세물건별 납부세액 현황	480
취득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481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세 국제비교	496

[재산세]

최근 재산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500
재산세 과세대상별 징수액 현황	500
재산세 지역별 징수액 현황	501

[지방소득세]

최근 지방소득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516
지방소득세 과세대상별 납부세액 현황	520
지방소득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521

[지방소비세]

최근 지방소비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523
지방소비세 배분기준별 세액 현황	526
지방소비세 지역별 배분 현황	527

[자동차세]

최근 자동차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529
자동차세 과세대상별 납부세액 현황	529
자동차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530

[담배소비세]

최근 담배소비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537
담배 제세부담금 현황(부가가치세 제외)	540
담배소비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542

[등록면허세]

최근 등록면허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546
등록면허세 과세대상별 납부세액 현황	546
등록면허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547

[레저세]

최근 레저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554
레저세 세원별 납부세액 현황	554
레저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555

[지역자원시설세]

최근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557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별 납부세액 현황	558
지역자원시설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558

[지방교육세]

최근 지방교육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562
지방교육세 세원별 납부세액 현황	563
지방교육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563

[주민세]

최근 주민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566
주민세 세원별 납부현황	567
주민세 지역별 납부세액 현황	567

[조세지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 감면액 현황	576
국세 감면액 추이: 2016~2025년	577
예산분류체계별 국세 감면액 추이	578
예산분류별 정부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	581
주요 세목별 국세 감면액 추이	582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분야별 국세 감면액 추이	584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현황	585
조세지출 관리유형별 항목수 및 조세지출액 현황	587
지방세 감면액 추이	588
세목별 지방세 조세지출 추이	589
근거법령에 따른 지방세 조세지출 추이	590
지원분야별 지방세 감면액 추이	591
2025년 일몰도래 조세특례 항목	592
2025년 일몰도래 지방세특례 항목	595
국세감면을 및 법정한도 추이	612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및 법정목표 추이	613

찾아보기

(1)

1세대 1주택자	389, 502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389
1세목 1세법주의	10, 48
1세법 다세목주의	10, 48

(B)

BEPS	244, 458

(F)

FTA	424, 442

(ㄱ)

가격변동지수	409
가상자산소득	102
가업상속공제	340, 35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343, 365
간이과세 기준금액	255
간이과세 포기	280
간이과세자	253, 260, 276
간이세율	433
간접감면	574
간접세	7
간주임대료	124, 209
간주취득	485
간편사업자	281
감가상각비	212
거주지국 과세원칙	445
결손금	220
결집효과	109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197
고유목적사업	182
공정시장가액비율	378, 502

과세대상	18
과세요건	15
과세요건 명확주의	12
과세요건 법정주의	11
과세전적부심사	33
과세표준	20
과세표준 상한제	503
과세환율	428
과소자본과세제도	457
관세평가	428
교육비 세액공제	129
국가 간 조세협력	465
국가전략기술	194
국내원천소득	17, 111, 448, 451
국민부담률	72
국세	6
국세·지방세 비중	57
국세감면율	611
국세수입	61, 66
국정관세율	429
국제적 이중과세	462
국제조세	445
근로소득	113
근로소득세액공제	95, 126
근로장려금	103
근로장려세제(EITC)	103
글로벌 최저한세	245, 459
금융투자소득	102
기본관세율	430
기부금	214
기부금 세액공제	130
기업소득환류세제	207
기업업무추진비	215, 217
기준조세체계	572
기타소득	115

(ㄴ)

납부	30
납부면제자	254
납부유예	392, 512
납세의무자	15
납세자 권리구제	33
납세지	233
내국법인	202
누진적 조세	3

(ㄷ)

다국적기업	455
다주택자 중과	101
담배 제세부담금	540
담세력	18
담세자	15
도시지역분	510
독립세	516
동거주택 상속공제	341

(ㄹ)

매입자납부특례	256, 282
면세	261
면세농산물	268
면세자	90
목적세	6, 69
물납	30, 366, 512
물적요건	15
미실현 자본이득	76
미환류소득	205

(ㄴ)

반대급부	2
배당소득	112
배당소득 이중과세	210
법정세율	22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120
보세제도	438

보충적 납세의무	17
보통세	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282
부가가치세 면세	263
부가가치세 면제	257
부가가치세 세수율(VRR)	250
부가세(附加稅 surtax)	414, 418, 516, 528, 562
부과취소	31
부동산 공시가격	386
부동산교부세	373
부분면세	264
부진정소급	13
분류과세	77, 109
분류소득	109
분류소득세	152
분리과세	110, 121
비거주자	17, 448
비과세소득	110, 221
비례세율	21
비례적 조세	3
비영리법인	17, 182, 202

(ㄷ)

사내유보금	207
사업소득	113
사전증여재산가액	351
상속공제	351
상속재산	347
성립시기	24
성실신고확인제도	150
세금계산서	273
세대생략할증과세	354
세부담 상한제	390, 511
세액감면	133, 225, 268, 388
세액공제	125, 225, 268, 355, 388
세원별 비중	60
세율	21
개별소비세	297
관세	429
교육세	415
농어촌특별세	419

담배소비세	539
법인세	225
부가가치세	266
상속세	353
양도소득세	145
재산세	508
종합부동산세	386
종합소득세	121
주민세	568
증권거래세	399
지방교육세	564
지방소득세	517
지방소비세	524
지역자원시설세	559
취득세	486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64
소급과세금지 원칙	1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120
소득공제	117, 222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94
소득과세	18
소득재분배	3, 77
소멸시효	32
소비과세	19
손금	181, 211
손금불산입	211
수입배당금	209
수출지원 관세환급	437
순자산증가설	181
시가표준액	486
시장실패의 교정	5
신고납부방식	28
신고법인	191, 203
신용카드 소득공제	97, 118
실질과세의 원칙	14
실효세율	22
법인세	186
소득세	80, 90, 168
실효관세율	434
심사청구	39
심판청구	40

(ㅇ)

양도소득세	140
업무용승용차	218
업종별 부가가치율	256, 278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94
연금계좌세액공제	127
연금소득	114
연금소득공제	115
연대납세의무	17
연부연납	366
열거주의 방식	76
영리법인	17, 182, 202
영세율	261
완납적 원천징수	111, 112
완전면세	264
외국납부세액공제	355, 463
외국법인	182, 202, 451
외국법인세액	462
외부불경제	5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12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214, 215
원천지국 과세원칙	445
원천징수	110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133
위임입법	11
의제매입세액공제	268
의제배당	208
이월결손금	221
이의신청	38
이자소득	111
이전가격과세제도	455
익금	181, 208
익금불산입	209
인건비	217
인적공제	117, 341
인적요건	15
일감몰아주기	331, 359
일몰제도	601
일반기부금	214
일반특혜관세율	433

(ㄷ)

자녀세액공제	96, 127
자동안정화 장치	5
자동확정방식	29
자본이득세	368
자산과세	19
잠재적 관리대상	586
잠정관세율	430
적극적 관리대상	586
전단계세액공제법	247, 259
전력산업기반기금	307
전세계소득과세주의	17, 46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271
전자적 용역	280
접대비	215
정보교환제도	466
정부부과방식	29
정액보전금	534
제세부담금	305, 316
제척기간 만료	31
조례	10
조세법률주의	11
조세부담률	71
조세정보교환협정	466
조세조약	10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LOB)	458
조세조약의 남용	458
조세지출	572
조세지출건의서	606
조세지출보고서	603
조세지출예산제도	600, 603
조세지출평가서	607
조세징수협조	465
조세특례 심층평가	60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606
조세특례사전평가제도	615
조세평등주의	13
조합법인	223
종가세	20, 297, 409
종량세	20, 297, 314, 408
종합과세	77
종합소득	109

종합소득공제	117
주택임대소득	122
중간예납	149, 231
중과세율	100, 378, 483, 488, 56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9
지방세감면건의서	609
지방세감면율 한도제	613
지방세감면평가서	610
지방세지출보고서	604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610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610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255, 524
직접감면	573
직접세	7
징수권	32
징수의무자	18

(ㄹ)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20
청산소득	205
최저한세	228
총당	31

(ㄴ)

탄력관세율	430
탄력세율	22, 297, 318, 397
톤세	223
통관제도	439
통합고용세액공제	19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206, 207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94
특례기부금	214
특례세율	478, 489
특별세액공제	128
특별소득공제	117
특별징수	522
특별징수의무자	525
특정외국법인	458

(Ⅱ)

평균유효세율	187

(ㅎ)

한계세율	22
한부모공제	117
합산배제 주택	384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466
협정관세율	433

2025 대한민국 조세

Tax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발간일 2025년 4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4744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ISSN 3022-8433

© 국회예산정책처, 2025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531-002072-10

ISSN 3022-8433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